

研究報告 96-2

大典會通 研究

- 刑典 · 工典編 -

研究擔當者 李鍾日 研究委員

한국법제연구원

發 刊 辭

한국법제연구원이 1990년 7월 창설된 이래 종래 법제처에서 직접 맡아왔던 國譯事業을 계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古法典 및 韓國法制史에 관한 調査·研究가 지연되어 오다가 1993년 5월에 이르러서야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經國大典》法制處譯註本(1962. 10)을 修正하여 발간하고 이어서 大典會通研究에 착수하여 동년말에 吏典, 1994년말에는 戶典·禮典, 1995년말에는 兵典의 譯註와 解説을 겸한 研究書를 出刊한 바 있다.

금년에는 同研究의 계속사업으로 刑典과 工典의 譯註書를 出刊하게 되었다. 大典會通의 刑典과 工典은 吏·戶·禮·兵典과 마찬가지로 經國大典·續大典·大典通編 및 좁은 의미의 大典會通 刑·工典의 내용을 총망라한 것이나 특히 刑典은 大明律을 依用·改作한 大明律直解의 補充法的 性格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朝鮮後期の 政治·經濟·社會 現象과 文化意識의 變化로 많은 특별 법령이 追加되어 一般 刑法典인 大明律直解에 우선하여 우리의 固有한 법률인 續大典·大典通編 내지 大典會通의 刑法典이 適用되는 事例가 대폭 늘어났다.

大典會通의 刑典은 用律·決獄日限·囚禁·推斷·禁刑日·濫刑·僞造·恤囚·逃亡·捕盜·贓盜·元惡鄉吏·罪犯準計·禁制·訴冤·殺獄·檢驗(檢屍)·姦犯 등 犯罪와 刑罰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才白丁團聚·賤妾·賤妻妾子女·公賤·私賤·賤娶婢產·闕內各差備·跟隨·外奴婢 등 下層身分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賤人들이 대개 處刑된 重罪人의 家族 내지 그 子孫인 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才白丁 등 異民族(北方 유목민족) 출신들이 우리의 前近代 농업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폐강도가 되어 全國을 橫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타 刑典속에는 停訟·聽理 등 소송법적인 것과 赦令·贖良·補充隊 등, 赦免令 내지 免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工典에서는 道路와 橋梁·營繕·度量衡·院宇·舟車·栽植·鐵場·柴場·寶物·京役吏·工匠 기타 雜令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으로 조선시대 500년간의 종합 법전인 大典會通을 完譯하고 註解하였다. 앞으로는 大典會通의 註解 部分을 정리하여 古法典 用語集(법제자료 110輯 1979년, 法制處)을 參考해서 「古法制 辭典」을 刊行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冊의 譯註와 解說은 본 연구원 연구위원이며 기획운영실장인 문학박사 李鍾日이 맡아서 하였다. 그동안의 同人의 勞苦와 평소 同人을 지도하여 주신 朴秉濠·李佑成·宋俊浩·南都泳·金昌洙 등 여러 元老 教授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표한다.

1996년 11월 30일

韓國法制研究院長
法學博士 朴松圭

일 러 두 기

- 이 책은 大典會通 刑典과 工典을 譯註하고 아울러 犯罪와 刑罰 및 奴婢 其他 賤民에 관한 중요문제와 그외 工典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解說한 研究書이다.
- 譯註의 底本은 國立中央圖書館 所藏의 高宗 2年(1865) 刊行의 木板本이다.
- 翻譯에 있어서는 直譯을 원칙으로 하되 直譯만으로 原文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意譯을 하였다. 意譯을 하면서 原文의 用語를 알기 쉽게 풀어 쓸 때에도 괄호 또는 註譯으로 原文의 內容을 정확하게 나타내려고 노력하였다.
- 번역을 통하여 原文의 의미가 變質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뜻으로 전달되기 쉬운 경우 및 法條文 內容의 沿革과 制定 및 改正過程을 설명해야 할 경우에는 註를 달았고, 註가 길어질 때에는 解說篇을 만들어 뒤로 돌렸다.
- 原典의 本文은 굵은 글자로 하고 原註는 작은 글자로 하였으며 原細註는 原註보다 더 작은 글자로 하되 < > 안에 넣었다.
- 註釋과 解說에 있어서 朝鮮왕조실록·비변사등록·승정원일기 기타 公私撰 古文書를 일일이 찾아 대조해 보면서 既成의 研究成果를 참고하였으며 특히 해설은 客觀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原史料의 內容을 거의 번역하다 싶이 하였고 가급적이면 解說者의 主觀을 排除하면서 通說的인 입장에 서도록 노력하였다.

目次

第1部 大典會通 刑典·工典 譯註

大典會通 卷之五(刑典)

刑典目錄

用律	15
決獄日限	15
囚禁	19
推斷	27
禁刑日	59
濫刑	61
偽造	63
恤囚	66
逃亡	70
才白丁團聚	75
捕盜	76
贓盜	82
元惡鄉吏	87
銀錢代用	89
罪犯準計	90
告尊長	90
禁制	92
訴冤	131
停訟	135
賤妾	137
賤妻妾子女	137
公賤	143
私賤	161

賤娶婢産	178
關內各差備	178
跟隨	182
諸司의 差備奴와 跟隨奴의 定額	183
外奴婢	186
殺獄	187
檢驗	195
姦犯	198
赦令	200
贖良	202
補充隊	204
聽理	205
文記	219
雜令	221
笞刑·杖刑·徒刑·流刑의 贖罪 布木(贖木)	226
訴訟의 判決(決訟)에 所用되는 用紙	228

大典會通 卷之六(工典)

工典目錄

橋路	231
營繕	234
度量衡	240
院宇	244
舟車	245
栽植	250
鐵場	258
柴場	258
寶物	259
京役吏	259
雜令	261

工匠	268
京工匠	270
外工匠	284

第2部 大典會通 刑典·工典 解說

第1編 刑典 解說

第1章 大明律의 依用과 刑罰의 種類

1. 大明律	289
2. 死罪(死刑)	290
3. 流刑	290
4. 徒刑	291
5. 杖刑	292
6. 笞刑	293
7. 刺字刑	293
8. 壓膝刑	296
9. 烙刑	297
10. 全家徙邊	298
11. 付處斗 安置	302

第2章 禁刑日 및 公私罪와 經赦·收贖 등

12. 禁刑日	303
13. 永不敘用	305
14. 經赦	306
15. 私罪	307
16. 同僚共犯公罪者	308
17. 誣告	309
18. 匿名書	310
19. 收贖	311

第3章 鄉吏와 驛吏·書員

20. 鄉吏와 驛吏	313
21. 元惡鄉吏	315
22. 書員	316
23. 成衆官	317
(1) 成衆官의 意義와 種類	317
(2) 成衆官의 入仕와 그 身分	321
(3) 成衆官의 任期와 流品官으로의 승진 및 그 대우	324
(4) 成衆官의 地位變動과 遞兒職	329
(5) 結言	332

第4章 雇工 및 奴婢·丘史와 才白丁團聚

24. 雇工	334
25. 奴婢	340
(1) 奴婢序說	340
(2) 朝鮮前期의 奴婢	343
(3) 朝鮮後期의 奴婢	364
(4) 結言	390
26. 妾子女와 義子女 및 養子女의 奴婢相續分	393
(1) 良妾子女分	393
(2) 賤妾子女分	394
(3) 義子女分	395
(4) 養子女分	396
27. 丘史	398
28. 才白丁團聚	398

第5章 立案·申聞鼓 其他

29. 立案	406
30. 申聞鼓	407
31. 號牌	413

第2編 工典 解説

1. 城底	415
2. 伐木・伐石禁止法	416
3. 蠶室	417
4. 京役吏	419
5. 工匠	420
6. 亂塵例	421
後記	423

第1部

大典會通 刑典・工典 譯註

大典會通 刑典 / 15

大典會通 工典 / 231

大典會通 卷之五

刑典目錄

用律	決獄日限
囚禁	推斷
禁刑日	濫刑
偽造	恤囚
逃亡	才白丁團聚
捕盜	賊盜
元惡鄉吏	銀錢代用
罪犯準計	告尊長
禁制	訴冤
停訟	賤妾
賤妻妾子女	公賤
私賤	賤娶婢產
關內各差備	跟隨
諸司差備奴跟隨奴定額	外奴婢
殺獄	檢驗
姦犯	赦令
贖良	補充隊
聽理	文記
雜令	

大典會通 卷之五

仁政殿編輯

刑典¹⁾ 〔原〕屬衙門은 〔掌隸院〕典獄署 〔增〕 장예원은 지금은 혁파되었다.

【用律²⁾】 〔原〕 大明律³⁾을 適用(依用)한다. 〔續〕 經國大典에 의거 大明律을 적용하되 經國大典과 續大典에 해당 律文이 있을 경우에는 두 法典에 따른다.

【決獄日限⁴⁾】 〔原〕 무릇 決獄(형사판결)에 있어

- 1) 刑典은 刑曹의 업무와 관련된 법규정을 모은 것이다. 經國大典의 형전은 六典 중 두 번째로 세조 7년 7월에 만들었으며 그 후 몇 차례의 改修를 거쳐서 다른 五典과 함께 성종 16년에 이른바 乙巳大典으로 확정된 것이다. 영조 20년의 續大典에서 많이 추가되어 조선후기 변동된 사회경제상황이 反映되었고 정조 9년 종합법전으로서의 大典通編이 만들어졌으며, 그 후 고종초까지의 법제를 增補하여 조선왕조 500년간의 법제를 집대성하여 최종적인 종합법전으로서의 大典會通이 고종 2년에 편찬된 것이다(한국법제연구원, 《大典會通研究》吏典編, 1993.12, pp.16~34). 형전의 내용은 형조의 職掌인 법률·사건심리·소송·刑獄·奴婢 등에 관한 것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 2) 用律은 형사법규의 적용 문제를 규정하였다.
- 3) 解說篇 1 大明律 參照.
- 4) 決獄日限은 형사재판의 판결까지의 期限이다. 經國大典에서 大事(死罪)·中事(徒刑·流刑)·小事(笞刑·杖刑)로 나누어 30일·20일·10일로 재판의 기한을 정한 것을 三限法이라 한다. 三限法은 본래 唐律에서 비롯된 것이며 宋代를 거쳐서 조선국초에 도입된 것이다(《태종실록》 권30-40, 태종 15년 12월 신미 및 《문종실록》 권6-20, 문종 원년 3월 임인). 法典에 三限法이 등재되기는 태종대의 經濟六典 續典이라 할 수 있는데, 세종 25년 4월 임금이 刑曹에 傳旨하기를 《續六典》 刑典에 의하면 소송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의 소재지의 遠近(程途)을 기준으로 辭證期限을 死罪는 30일로 하여 大事(큰 사건)라 하고 徒刑과 流刑은 20일로 하여 中事(중간 사건)라 하며 笞刑과 杖刑은 10일로 하여 小事(작은 사건)라 하였다. 그리하여 형사재판의 전체적인 심리기간(決獄期限)을 大事는 90일, 中事는 60일, 小事는 30일로 限定하였다(《세종실록》 권100-4, 세종 25년 4월 기해) 이와같은 규정은 세조 4년까지도 그대로였는데(《세조실록》 권12-5, 세조 4년 3월 기유) 그 후 辭證期限이 決獄期限으로 되어 經國大典에

서 큰 사건 死罪⁵⁾ 은 30일간, 중간 사건 徒刑⁶⁾과 流刑⁷⁾ 은 20일간, 작은 사건 笞刑⁸⁾과 杖刑⁹⁾ 은 10일간을 기한으로 한다. 文券¹⁰⁾이 모두 제출되고 증거와 증인(證佐¹¹⁾)이 모두 갖추어져서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날짜 계산을 시작한다. 辭證¹²⁾이 다른 곳에 있는 사건으로서 반드시 그 것을 참고하여 究明해야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遠近에 따라 往復日數를 제외하고 역시 기한내에 決獄(형사판결)을 마쳐야 한다. 만약 관련사건으로 부득이 期限을 넘기는 경우에는 事由를 갖추어 임금에게 보고한다. 민형사 소송사건(詞訟¹³⁾)도 이와 같다. ○ 무릇 誤判(誤決)은 父子·嫡妾¹⁴⁾·良賤¹⁵⁾의 分揀 등 사항과 같이 人情과 義理上 切迫한 사건

등재되었다고 하겠다. 그 이전의 《續六典》에 있어서도 사건의 大小間에 辭證이 境內에 있고 形跡이 명백한 경우에는 10일을 넘길 수 없고 그 중 쉬운 사건은 3일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권100-4, 세종25년 4월 기해).

5) 解說篇 2 死罪(死刑) 參照.

6) 解說篇 4 徒刑 參照.

7) 解說篇 3 流刑 參照.

8) 解說篇 6 笞刑 參照.

9) 解說篇 5 杖刑 參照.

10) 文券은 재판때 증거가 되는 권리의무관계 문서로서 일반적으로 땅·집·노비의 매매·교환·증여 등 물권(소유권)변동시에 작성하는 것이다.

11) 證佐는 證左 또는 證參이라고도 하는데 참고될 物證·人證·書證 등을 의미한다.

12) 辭證은 소송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말한다. 《續六典》刑典에서는 大事(死罪)·中事(徒刑·流刑)·小事(笞刑·杖刑)에 따라 辭證의 日限을 달리 정하였다.(주4)

13) 詞訟은 官에 提訴하여 判決을 구하는 소송행위로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분리되기 前인 前近代社會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민사소송의 제기 뿐만아니라 형사고소 고발도 포함된다.

14) 嫡妾은 正妻와 副室(妾)을 합친 말인데 嫡妾 여부의 分揀은 그 子孫의 신분지 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조선시대의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晉·唐·元代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말 까지, 복수의 正妻가 並存하였지만 조선국초 禮無二嫡이란 儒教 倫理 때문에 1인의 正妻 이외는 모두 첩이 되어야 했으므로 그 구분에 따른 문제가 많았고 그 구분 또한 그리 쉽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조선중엽의 壬辰·丙

의 경우에는 즉시 다른 관청(他司¹⁶⁾)에 上訴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외 사건은 판결(決折)한 堂上官 및 房掌¹⁷⁾이 교체된 후에 다시 提訴(更訴)하도록 하되 교체된 후 2년¹⁸⁾이 지나면 제소하지 못한다. ○ 잘못임을 알고 誤判한자, 故意로 사건을 지연(淹延¹⁹⁾)시킨 자에게는 杖 100에 처하고 영구히 임용하지 아

子 兩亂을 계기로 重婚關係에 놓인 집안이 많아서 嫡妾子孫 간의 분쟁이 代를 이어 가면서 계속 되기도 하였다(이종일 <조선후기의 嫡庶身分變動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65, 1989 및 《한국사》34, <조선후기의 사회>, 1995.12, 국사편찬위원회 pp.41~42).

- 15) 良賤의 분간은 조선시대의 큰 사회문제로 되었다. 고려시대 이래로 一賤則賤의 原則 때문에 조선초기에도 계속 賤口가 증가하였다(《성종실록》권91-9, 성종 9년 4월 기해:今者 齊民之中 私賤十居八九 良民僅一二) 그리하여 國役 부담자로서의 良人人口의 확보책으로서 賤者 從母法 또는 從父法이 講究되었다.(周藤吉之, <高麗末期より朝鮮初期に至る奴婢の研究(一)>, 《歴史學研究》9-1, 1939, pp.71~73). 특히 당쟁이 격화된 17세기 후기, 國益을 우선으로 하는 從良策(西人側)과 지배층의 私益을 重視하는 還賤策(南人側)이 번갈아 가면서 시행되었다(平木 實<朝鮮後期 奴婢制研究>, 知識産業社, 1982, pp130~145) 또 《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刑典에는 “編戶齊民曰良”이라 하고 “公私奴婢曰賤”이라 하였다. 또 公賤의 主를 “本司 本邑”이라 하고 私賤의 主를 “本主”라 하였다.
- 16) 他司는 제2심 재판관청(聽訟衙門)을 지칭한다. 예컨대 제1심이 守令일 경우 觀察使가 제2심 재판관청이 되고 漢城府가 제1심으로 재판(聽理)한 것은 刑曹가 제2심으로 재판한다. 원래 誤判에 대한 提訴는 재판한 관리의 교체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 審理가 오래 지체되어 문서가 유실되거나 증거물이 없어지는 수가 많아서 他司에 提訴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이태진의 4인 《譯註經國大典》註釋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673 및 《세종실록》권123-5, 세종 31년 정월 계묘).
- 17) 決折 堂上官 및 房掌이란 형사재판을 한 당사관 및 그 소송에 참여한 刑曹의 正郎과 佐郎을 의미한다. 형조의 정랑과 좌랑 즉 방장은 경국대전에서는 8인이었으나 속대전 이후 6인으로 되어 각각 소관업무를 분담하였는데 이를 郎廳 8房(6방)이라고도 하였다. 세종 19년 12월 형조의 啓에 따라 詳覆司·考律司·掌禁司·都官司(경국대전의 掌隸司)에 각각 1房과 2房을 두도록 하였는데(《세종실록》 권79-23, 세종 19년 12월 경진) 정조 6년의 《秋官志》에 의하면 상복사는 詳一房·詳二房으로 나누어 서울과 지방의 重罪에 대한 覆審을 분담하였고 고을사와 장급사는 모두 사무분장 없이 考一房·考二房과 禁一房·禁二房으로 나누었으며 장예사(도관사)는 隸一房·隸二房으로 나누어 각각 京奴婢와 外奴婢의 사무를 분장하였다. 그 후 別房으로 刑房을 더 두어 罪囚 다루는 일을 관장하였다. 각 방은 맡은바 임무 이외 각 관청으로 부터 이관되는 문서와 8도로 부터 올라오는 狀牒을 받아서 관리하는 일도 하였다. 예컨대 상일방은 의정부·중추부·사옹원·사복시·선공감·중학·북부·남부·현릉·희릉·효릉·함경도 등으로 부터 공문을 받아서 처리하였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674).
- 18) 《經國大典》에서는 3년으로 되어 있다.

나한다(永不敍用²⁰). 赦免令이 있어도(經赦²¹) 영구히 임용하지 아니한다.

[續] 민형사 소송사건을 맡은 관청(詞訟衙門)의 판결내용(決等公事²²)은 10일 마다 기록하여 임금에게 보고하고 有故하면 다음 달 5일 前에 舉行(보고)한다. ○ 刑曹에서도 이와 같이 한다. 決訟²³ 월일에 관하여 매달 要式을 갖추어 刑曹에 공문을 보내고 형조에서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살펴서 처리한다. 중앙관과 지방관이 형사사건(獄訟)을 빨리 處決하지 아니하고 죄수를 오랫동안 감옥에 넣어 두어(滯囚) 그 해가 지난 경우에는 조사 문책(查問)하여 파직한다. ○ 소송당사자가 사건을 지연시키고자 꾀하여 빨리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자신이 옳다고(理順) 주장하면서 재판을 거역한 경우에는 특별히 적발하여 그 죄를 다스

19) 淹延은 막히고 지연된다는 의미이다. 《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刑典에 淹은 浸(막힘, 담금)이라 하고 延은 遠이라하여 事件을 지연시키면서 오랫동안 보류해 두는 모양을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건의 지연은 前官과 新官의 친척관계로 인한 相避 등이 원인이 되는 수가 많다고 한다(《세종실록》권123-5, 세종 31년 정월 계묘). 재판의 지연을 막는 방책으로서 예종 원년 10월 임금이 吏曹와 刑曹에 傳旨하기를 무릇 決訟은 매 건 3월내로 하되 장예원의 小事(작은 사건)는 30道, 大事(큰 사건)는 20道, 형조의 小事는 50道, 大事는 30道씩 처리하도록 하였다(《예종실록》권8-10, 예종 원년 10월 경오). 그리고 그 대로 하지 않은 官員은 강등시킨다(《成宗實錄》권 21-5, 성종 3년 8월 병자)고 하였으나 그 후 심지어 살인사건도 지연되어 가깝게는 7·8년, 멀게는 20·30년간 방치되고, 罪囚와 함께 證人이 구속되어 獄死하는 수가 있었다.

20) 解說篇 13 永不敍用 參照.

21) 解說篇 14 經赦 參照.

22) 決等公事는 형사소송(公事)에 있어서 죄인을 재판하여 죄의 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決等은 또한 正案이나 續案을 만들 때 노비가 치를 役의 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소송사건의 판결내용 또는 판결건수를 의미하기도 한다.

23) 決訟은 決獄과 같은 뜻으로 소송사건(詞訟)을 結審하여 判決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決訟에는 告訴人(提訴者)이 있는 점에서 대체로 認知事件 내지 告發事件의 判決을 의미하는 決獄과 구별되고 또 決訟은 刑事判決 뿐만아니라 民事判決도 있다. 그 중 제일 많은 詞訟은 奴婢에 관한 소송이며 사건처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決訟期限을 설정한 것이다 (주13 및 19).

린다.

【囚禁²⁴⁾】〔原〕杖刑 이상의 죄수는 구금하되 文武官이나 內侍府의 內侍 및 士族²⁵⁾ 婦女·僧侶(僧人²⁶⁾) 등은 임금에게 보고하고 구금하며 예컨대 사옹원

24) 囚禁은 죄수를 구금하는 것을 말하는데 刑曹의 屬衙門인 典獄署가 이를 관장하였다. 전옥서는 承旨가 겸직하는 副提調의 감독하에서 主簿(중6품)와 奉事(중8품) 각 1인 및 參奉(중9품) 2인(續大典에서 1인 증원)등 관원이 일을 맡았다(《大典會通》 권1 吏典京官職 從6品衙門). 죄인을 가둘 수 있는 권한은 형조·병조·한성부·사헌부·승정원·장예원·종부시·관찰사·수령 등 관청이 갖고 있다. 전옥서에서 사헌부·사간원·한성부·도총부·병조·종부시 등 여러 관청의 推考罪人 및 의금부에서 이송된 죄인 등을 구금할 경우에는 각각 그 관청에서 10일 안에 일차 심사(磨勘)를 하여 임금에게 啓達하여야 한다(《성종실록》 권10-23, 성종 2년 5월 정유).

25) 士族은 士大夫가 될 수 있는 신분으로 兩班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었다(《세종실록》 권57-19 세종 14년 8월 기해). 士大夫는 燕巖 朴趾源이 〈兩班傳〉에서 “讀書曰士 從政曰大夫”라 하여 官員과 讀書人을 뜻하였다. 또한 士大夫를 4품 이상은 大夫, 5품 이하는 士(郎)라는 의미에서 官人을 뜻하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士大夫는 文班 뿐만 아니라 武班을 포함시켜서 文武兩班이라는 의미로 쓰였던 것이다. 다만 15세기 이전에는 지배층을 양반이라 부르기보다 士族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이성무의 4인, 《譯註 經國大典》 註釋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494). 성종 17년 3월 臺諫의 상소에 의하면 士大夫之族 만이 大夫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임금이 듣지 아니하였다(《성종실록》 권189-6, 성종 17년 3월 임자). 士族인 婦女에 관하여서 《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刑典에서는 “士族은 公卿之後요 門閥之人”이며, 婦는 服이란 뜻으로 《禮記》에서 이른바 “士妻曰婦人 言服事於夫也”라 하여 士夫의 正室로서 夫를 좇아서 섬기는 자를 의미하였다.

26) 僧人은 僧侶·중·僧徒라고 하는데 조선시대는 국초부터 崇儒抑佛策을 써서 승려들을 탄압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好佛의 君主였던 세조대에는 여러가지로 僧人을 우대하였다. 세조 2년 強竊盜가 많아서 中外에 가득차고 백성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세조는 刑曹에 傳旨를 내려 아전들의 행패가 걱정된다는 핑계로 임금의 명령없이 山寺에서 범죄인을 수색하는 것을 금지시켰다(《세조실록》 권3-19·20, 세조 2년 3월 무인). 또 세조 7년 3월 임금이 禮曹에 傳旨하기를 승려들의 불법행위가 많으니 中外 寺刹에서는 淸規(승려의 자치규정)에 따라 糾察하되 殺人·盜賊·淫行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 절의 住持가 官에 고발하도록 하고 만약 주지가 없는 절이라면 그 山의 巨刹에서 告官하도록 하며, 兩宗(教宗과 禪宗)에서 이를 統察하되 現行 犯人이 있는 경우에 兩宗에서 검거하지 못할 때에는 임금에게 아뢰어 推劾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또 세조는 刑曹에 傳旨하여 僧人이 殺人·盜犯·淫行 등 범죄행위를

· 액정서 등 부류의 모든 入番者도 이와 같다. 死罪를 범한 자는 먼저 구금한 후 임금에게 보고한다. 僧侶가 殺人·強竊盜·奸婬·傷害 등 죄를 범한 경우에도 같다. ○ 혹시 寺刹을 수색할 일이 있으면 임금에게 보고한다. ○ 사형수에게는 칼(枷²⁷)을 씌우고 수갑(杻²⁸)과 족쇄(鎖足²⁹)를 채운다. 流刑 이하의 죄수에게는 칼을 씌우고 수갑을 채운다. 杖刑의 죄수에게는 칼을 씌운다. ○ 議親³⁰과 功臣³¹ 및 堂上官이나 士族의 婦

한 경우에는 모두 還俗시키도록 하였다(《위의 책》권23-29, 세조 7년 3월 병진).

27) 枷는 罪囚의 목에 씌우는 獄具로서 나무 칼이다. 마른 나무로 만들었으며 길이 5자 5치, 頭闊이 1자 5치이다. 그 무게는 사형수에게 씌우는 것은 25근이고, 徒刑과 流刑에 해당하는 죄수 것은 20근, 杖刑의 죄수 것은 15근으로 각각 그 長短과 輕重을 그 나무 칼위에 새겨 놓았다(《大明律直解》獄具之圖 및 《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刑典).

28) 杻는 죄수의 손에 채우는 수갑으로서 마른 나무로 만든다. 두께가 1치, 길이가 1자6치이다. 남자가 死罪를 범하면 이 나무 수갑을 채우며, 流刑 이하 해당자와 婦人이면 사형수에게도 이를 채우지 아니한다고 《大明律直解》獄具之圖에서는 규정되고 있으나 《經國大典》의 규정이 우선하므로 流刑과 徒刑의 죄수에게도 수갑을 채운다고 하겠다. 그런데 《秋官志》 3편 考律部 除律 除刑에는 英祖 5年 除鞫囚兩杻라 하여 양손에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였고 《大典通編》 刑典 推斷條에서는 왼손에 수갑을 채우는 것도 폐지하였으므로 결국 수갑은 오른 손에만 채우도록 한 것이다(《六典條例》권9 刑典 刑曹 刑具).

29) 鎖足은 죄수의 발에 채우는 쇠사슬로서 쇠고리를 연결하여 만들었다. 이를 鑱라고도 하는데 무게는 3근이며 徒刑을 받은 죄수는 이 쇠사슬을 차고 勞役한다(《大明律直解》獄具之圖). 그러나 《經國大典》에서는 사형수에게만 鎖足을 채운다고 규정하였을 뿐 徒刑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의문이다.

30) 議親은 八議 중의 하나로서 임금의 袒免 이상 親 즉 高祖의 兄弟·曾祖의 從父兄弟·祖의 再從兄弟·父의 三從兄弟·自身の 四從兄弟 이상 親 및 대왕대비(임금의 조모)·왕대비(임금의 모친)의 總麻(3개월服) 이상 親·왕비의 小功(5개월服) 이상 親(《唐律疏議》卷1 名例7 八議)·왕세자비의 大功(9개월服) 이상 親이 여기 속한다(《大明律直解》卷1 名例律 八議). 八議는 周代의 八辟으로 議親이외 議故(왕가의 故舊之人)·議功(큰 武功이 있는 자)·議賢(큰 덕행이 있는 賢人君子)·議能(큰 才智와 學業이 뛰어난 자)·議勤(大小의 文武官員으로 직무에 성실한 유공자)·議貴(官爵이 1품이거나 官職이 3품 이상인 文武官 및 散官 2품 이상인 자)·議賓(前朝 君王의 자손으로서 國賓대접을 받는 자) 등이 있었지만 그 중 議親과 議貴가 제일 중요하였다. 袒免(단문)의 袒은 上衣의 왼쪽 소매를 벗어 어깨를 드러내는 것, 免은 冠을 벗고 머리를 묶는다는 뜻이다(《唐律疏議》卷1 名例 八議 및 김택민·임대희, 《譯註唐律疏議》名例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12, pp.131-135와 《大明律直解》卷1 名例律 八議).

31) 功臣에 관해서는《大典會通研究》史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3.12, pp.238~240

女는 죽을 죄(死罪)를 범한 경우에만 항쇄(鎖項³²)를 채우고 堂下官과 庶人の 婦女³³에게는 항쇄와 족쇄를 채우며 杖刑에 해당하면 항쇄만 채운다. 그러나 범죄가 宗廟와 社稷(宗社³⁴)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 무릇 逮捕 拘引(捉拿押行)할 때의 항쇄는 당상관과 사족부녀자에 대해서는 죽을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채우지 아니한다. ○ 무릇 구금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문인 서면(公緘)으로 심문(推問)하며³⁵ 7품 이하의 관원 및 승려에 대해서는 직접 불러다가 조사한다. ○ 사족부녀의 모든 소송행위는 아들·손자·사위·조카·노비 중에서 대행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 승려가 자기 일로 소송

참조.

- 32) 鎖項은 목에 채우는 쇠사슬로서 鐵索이라고도 하였다. 철쇄(항쇄)의 길이는 1발(丈)이며 輕罪를 범한 죄수에게도 채우도록 하였지만 (《大明律直解》獄具之圖) 議親·功臣·堂上官·士族婦女 등은 死罪의 경우에만 채운다. 또 堂下官이나 庶人 婦女에게는 항쇄와 족쇄를 채우되 杖刑의 경우에는 항쇄만 채운다. 물론 宗社에 관계되는 경우(國事犯)에는 그렇지 않다(此限不在)(《經國大典》卷5 刑典 囚禁).
- 33) 庶人인 婦女는 士族이 아닌 婦女 즉 平民(常民·良人)인 婦女를 의미한다. 《經國大典 註解》後集 下 刑典에 의하면 庶人은 衆庶之民이라 하고 庶人婦女는 奸犯·盜犯·死罪 등을 범한 경우가 아닌한 囚禁되지 아니하며 杖刑이나 笞刑 執行(決罪)時에는 單衣(속옷)를 입은 채 刑杖을 맞는다. 그러나 奸犯일 때에는 옷을 벗고 맞는다고 하였다. 또 工匠·樂戶 등 庶人인 婦女일지라도 刺字刑은 모두 면제된다고 하였다(《大明律直解》卷1 名例律 工樂戶 及 婦人犯罪).
- 34) 宗社는 宗廟와 社稷을 의미하는데 社稷을 위태롭게하려고 꾀하는 것을 謀反이라 하여 十惡 중 첫째로 꼽는다. 그 다음 宗廟를 훼손하려고 꾀하는 것을 謀大逆이라 하여 十惡의 둘째로 친다(《大明律直解》卷1 名例律 十惡, 《唐律疏議》卷1 名例6). 모든 범죄 가운데 十惡을 범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 이는 名教(儒教)를 훼손하고 士大夫의 衣冠을 찢는(儀禮의 破壞) 행위로서 그 처벌의 起源은 漢代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하였다(김택민·임대희, 《앞의 책》, p.106). 때로는 宗廟와 社稷(宗社)을 國家 그 자체로 보아서 “關係宗社”를 국가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본다.
- 35) 公緘推問이란 公文인 書面으로 審問(劾問)함을 말한다(《세종실록》 권48-26, 세종 12년 6월 경오). 推問은 調查와 審理를 하는 搜查 및 裁判節次로 볼 수 있다. 검찰기능과 재판기능이 未分化狀態였던 그 당시로서는 수사상의 조사와 재판상의 심리가 겹쳐 있다. 7품 이하의 관료나 승려에 대해서는 官庭에 직접 불러내어 심문(直推)하지만 6품 이상의 관료에게는 서면으로 심문한다. 공함추문에 대한 답변을 公緘答通 또는 緘答이라고 한다(윤국일, 《경국대전연구》, 신서원, 1990, 북한판 1986, p.455).

하는 것 및 독자인 승려가 부모일로 소송하는 것 외에는 審理(聽理³⁶))하지 아니한다. ○ 나이 70세 이상이거나 15세 이하인 자는 強盜와 殺人이 아니면 구금하지 아니하며 盜犯인 자에게도 刺字刑³⁷)을 면제한다. ○ 공무(公事)를 어긋나게 수행하거나 忌避한 자에 대해서는 집종(가동³⁸))을 구금하되 3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2일이 지나면 즉시 석방하고 3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구금하지 못한다. 兵曹·刑曹·漢城府·司憲府·承政院·掌隸院·宗簿寺·觀察使·守令외에는 형조로 이송하여 구금한다. [增] 종부시에서는 都監³⁹)을 설치하거나 璿源錄⁴⁰)에 관계되는 사건이 아니면 牌를 써서 죄수를 구금하지 못한다. [補] 종부시는 지금은 宗親府에 속한다.

[續] 內司獄⁴¹)을 혁파한다. 숙종 신묘(37년) ○ 議政은 자신이 惡逆⁴²)을 범한 경우 이외는 잡혀가서 심문

36) 聽理는 소송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審理하는 것을 말한다. 성종 원년 9월의 傳敎에서 僧徒는 자기일 이외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成宗實錄》권7-20, 성종 원년 9월 경진). 이것이 그대로 경국대전에 등재되었다고 하겠다. 《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刑典에서는 聽은 從也, 理는 治也, 治獄之官 亦曰理라 하였고 《周禮》 秋官 小司寇에는 辭廳·色廳·氣廳·耳廳·目廳 등 五廳으로서 獄訟을 듣고 民情을 求한다고 하였다(丁若鏞 《欽欽新書》 經史要義1).

37) 解說篇 7 刺字刑 參照.

38) 家僮은 家奴이다. 僮과 奴는 같은 뜻이다(《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刑典). 즉 공무를 기피한 官吏 대신으로 그 집 奴를 구속한다는 뜻이다.

39) 都監은 國葬·國婚 기타 큰 國事가 있을 때에 임시로 설치한 관청이다.

40) 璿源錄은 璿源系譜記略 또는 璿源譜略이라고도 하며 全州李氏 중 왕실의 嫡庶子孫을 수록한 族譜이다. 숙종때 처음 간행하여 그 후 새로 임금이 즉위할 때마다 重校·補刊하여 오던 것을 고종 34년(1897)에 合刊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마이크로 필름화 되어 있다.

41) 內司獄은 內需司안에 설치된 감옥으로서 내수사에 관계되는 죄인을 수감한다. 내수사는 왕실의 私財(官中財産)를 관리하는 관청이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校註大典會通〉》, 1939, p.651).

42) 惡逆이란 祖父母·父母·남편의 조부모·부모 등을 毆打하거나 謀殺하는 행위 및 伯叔父母·姑母·兄과 姉·外祖父母 및 남편을 죽이는 행위를 말한다(《大明律直解》권1 名例律 十惡).

당하지 아니한다. [增] 宗親과 儀賓의 資級이 顯祿大夫와 綏祿大夫에 이르거나⁴³⁾ 文臣인 宰相(文宰⁴⁴⁾)이 文衡⁴⁵⁾· 輔國⁴⁶⁾· 貳相⁴⁷⁾· 耆社⁴⁸⁾를 거친 사람인 경우에는 輕罪로서는 감옥에 수감하지 아니한다. [補] 顯祿大夫와 綏祿大夫는 지금은 上輔國大夫이다. ○ 朝官이 죄를 범하여 형조· 사헌부· 사간원에서 소추되어(被推) 구속해야 할 경우에는 모두 임금에게 보고하여 의금부로 이송한다. 堂上譯官은 刑曹에서 推問하여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 ○ 內侍에게 죄가 있을 경우에는 임금에게 보고하여 囚禁하되 죽을 죄를 범하였으면 먼저 囚禁한 후 임금에게 보고한다. 이에 위반한 자는 먼저 罷職한 후 推問한

-
- 43) 宗親은 왕의 동성동본인 親族(同姓曰宗, 父黨曰親) 즉 穆祖 이후의 歷代 임금의 子孫으로 無品階인 大君과 王子君 밑에 正1品인 君 이하(顯祿大夫 이하)가 있다. 儀賓은 임금의 사위로서 正1品인 尉 이하(綏祿大夫 이하)가 있다.
- 44) 文宰는 문과급제자(文臣)로서 宰相에 이른 자를 말한다. 宰相은 卿宰라고도 하며 종2품 이상인 자를 지칭한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651). 卿宰는 원칙적으로 종2품 이상인 官階와 官職을 가진 자로 보이나 예외로 官職이 정3품일지라도 官階가 종2품 이상인 자이면 해당되었다. 《國朝人物考》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8 影印本에 의하면 相臣과 卿宰를 나누어 수록하였는데 相臣은 領相· 左相· 右相 등을 지낸 사람이었고 卿宰는 府院君· 領樞· 判樞· 贊成· 判敦寧· 吏判· 禮判· 戶判· 刑判· 工判· 參贊· 知樞· 判尹· 大憲· 留守· 提學· 參判· 左尹· 右尹· 觀察· 同知· 僉知· 府使 등을 지낸 사람이었다. 첨지와 부사는 3품관이나 그 사람의 官階가 종2품이었기에 예외적으로 수록한 듯 하였다.
- 45) 文衡은 홍문관 大提學을 말하는데 文權을 장악한다는 뜻이다(同上).
- 46) 輔國은 正1品 輔國崇祿大夫를 의미한다. 經國大典에서는 宗親과 儀賓의 官階를 달리 호칭하였으나 大典會通에서 이를 東班官階(大匡輔國崇祿大夫이하)로 통일하였다.
- 47) 貳相은 의정부의 左贊成과 右贊成을 의미한다. 領議政과 左議政 및 右議政을 相臣이라 한데 대하여 次位の 相이란 뜻이다.
- 48) 耆社는 耆老所를 말하는데 《續大典》 吏典 京官職의 耆老所條에 의하면 조선국초 文臣(문과급제자인 관료) 正2品 이상의 實職者로서 나이가 70세 이상 되어야 入所를 허용하며 蔭官과 武官은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大典通編》의 같은 조항에서는 正2品 實職者로서 나이 70세된 사람이 없으면 從2品 한 두 사람을 임금에게 여쭙어 입소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금 중에서는 70세를 넘긴 사람은 태조(60세에 입소)와 영조(51세에 입소) 뿐이며 숙종도 59세에 입소하였다(《大典會通研究》 이전편 한국법제연구원 1993 p.121).

다. ○ 正科出身⁴⁹⁾ 및 東·西班 正職⁵⁰⁾인 자 이외 納粟·軍功·常賤出身⁵¹⁾ 등과 같은 부류는 의금부로 이송하지 아니한다. ○ 落點別將⁵²⁾은 僉使·萬戶와는 달라서 刑曹에서 推問하여 죄를 다스린다. [增] 直赴承傳⁵³⁾의 恩典을 입은 자라도 아직 科擧 합격자 발표(放榜⁵⁴⁾)가 되기 전인 경우에는 또한 이송하지 아니하나 비록 합격자 발표가 되기 前일지라도 壯元·探花⁵⁵⁾로서 이미 官職에

49) 正科는 文科와 武科를 말한다. 正科에 대칭되는 科擧로서 譯科·醫科·律科·陰陽科 등 雜科가 있다. 出身이란 科擧 시험 합격자를 말한다. 따라서 正科出身이란 文科及第者 및 武科及第者를 뜻한다.

50) 正職은 文武 兩班(예외로 中庶人)의 官職인 점에서 하층 신분자의 관직인 雜職과 구별되며, 實職인 점에서 散職·影職·老人職 등 職事가 없는 관직과 구별된다. 또 正職은 祿俸이 있는 관직(祿官)인 점에서 같은 實職이면서 祿俸이 없는 無祿官과 구별되고, 정규 관직인 점에서 임시 관직인(職事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음) 遞兒職과 구별된다(李成茂 《朝鮮初期兩班研究》, 일조각, 1981, p.98, p.114, pp.124~125, p.132, p.159, p.170).

51) 納粟授職은 군량미 조달 등 財政窮乏에 대한 해결책 및 흉년에 있어서의 飢民救護策 등의 목적으로 나라에서 벼슬(거의 影職이나 散官職)을 백성에게 팔아서 곡식을 조달하였던 것을 말하고(《大典會通研究》吏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3, pp.439~440), 軍功授職은 戰時나 事變에 있어서 武功을 세운 자에게 官職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납속과 군공으로 벼슬을 받은 자를 의금부로 이송하지 아니하도록한 것은 광해군 5년의 承傳에서 비롯되었다(《受教輯錄》刑典 推斷). 또 常賤出身은 常民이나 賤民(免賤된 자) 중 科擧(대개 武科)에 급제한 자를 말하는데 숙종 4년의 承傳에 의하면 前例대로 의금부로 하여금 임금에게 직접 보고하여 懲治하도록 하였으나(《典錄通考》刑典推斷 新補受教) 西人政權下인 숙종 12년의 承傳에 의거 의금부에서 일일이 구속하여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범행의 輕重에 따라 예컨대 倫常에 관계되는 범죄나 살인 強竊盜 따위는 刑曹에서 그때 그때 임금에게 직접 보고하여 구속 治罪하도록하였다(《受教輯錄》刑典推斷).

52) 落點別將은 別將의 후보자로 추천되어 임금의 落點에 의거 선발된 자를 말한다(조선 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652).

53) 直赴承傳은 일반적인 科擧節次(初試 覆試 殿試)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금의 특명에 의거 殿試에 곧 바로 응시하도록 하는 恩典을 말한다. 殿試에서는 원칙적으로 낙제가 없으므로 直赴殿試란 곧 바로 科擧 합격을 의미하는 것이다(《大典會通研究》禮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 p.547 및 pp.558~568).

54) 放榜은 科擧 합격자 발표를 의미한다. 文武科와 生員試의 放榜 儀式과 그 節次에 관해서는 《세종실록》권133 五禮 嘉禮儀式條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大典會通研究》禮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 pp.535~536에서 이를 해설하였다.

55) 壯元은 科擧의 수석합격을 의미하고 文科의 경우 차석합격자를 榜眼郎, 삼석합격자를 探花郎이라 하는데(이상 3인을 甲科及第者라 한다) 榜眼郎이 왜 빠졌는지 알 수 없으

임용된 자는 그렇지 않다. [補] 兼引儀⁵⁶⁾는 御醫例에 의하여 王府(義禁府)에 잡아다가 가둔다. ○ 經國大典의 直囚衙門⁵⁷⁾ 이외에 비변사와 [補] 지금은 의정부에 속한다. 捕盜廳에서도 직접 (범죄인을) 구속 수감(直囚)하고 그 나머지 각 관청 및 軍門에서는 모두 刑曹에 공문을 보내어 가두게(收監) 하며 이에 위반한 자는 엄중히 推問한다. 각 관청에서는笞 50은 스스로 처단하고 重罪 이외는 공문을 보내지 않고 수감(囚禁)한다. ○ 祿官⁵⁸⁾·錄事·將校의 正妻는 囚禁할 수 없다. [增] 掖隸⁵⁹⁾의 正妻도 이와 같다. ○ 무릇 사람을 囚禁하면 곧바로 罪名을 들추어서 囚徒記에 기록(懸錄)하고 막연히(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범죄자라고 호칭된 경우에는 刑曹에서는 벌하지 않도록 하며(勿施) 다른 죄로 무고되어 억울하게 구속된 것이 나타날 것 같으면 당해 관원은 파직된다. ○ 각 관청에서 사람을 拘留하는 폐단을 일체 막고 禁한다. 대단한 公的인 사건이 아니면 형조와 한성부(京兆)에서도 拘留하지 아니한다.

나 해석상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56) 兼引儀는 通禮院의 從9品 官職으로 續大典에 처음으로 등재되었다(《續大典》吏典 京官職 通禮院).

57) 直囚衙門은 직접 범죄자를 구속 수감(囚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관청으로 병조·형조·한성부·사헌부·승정원·장예원·종부시·관찰사·수령 등을 말한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652).

58) 祿官은 祿俸이 있는 관료로서 無祿官에 대칭된다. 官職 중에는 職事가 있는 實職과 職事가 없는 影職 散官職 虛職 등이 있는데 實職 중에는 祿官과 無祿官이 있으며 祿官 중에는 正職과 遞兒職이 있다(《大典會通研究》 한국법제연구원 1993, pp.232~243 및 註50 참조).

59) 掖隸는 宮中の 下人(奴隸)으로서 宮中을 掖庭이라 한데서 나온 用語이다.

○ 여러 宮家에서 사사로이 着庫⁶⁰⁾(桎, 足鎖)로 구류한 경우에는 임금에게 직접 보고하여 論罪한다. ○ 犯馬者와 犯禁者⁶¹⁾ 이외에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 拘留·知家⁶²⁾하는 것을 禁斷한다. [增] 番을 서고 내려가는 鄉軍이 죄를 범하면 관계 있는 자의 경우가 아니면 法司에서 구속 수감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자는 制書有違律⁶³⁾로 論罪한다.

[增] 부모로서 자식을 대신하고 형으로서 동생을 대신하며 처로서 남편을 대신하는 등으로 대리인(次知⁶⁴⁾)을 구속 수감(囚禁)하는 것을 모두 엄금하며 이에 위반하는 자(犯法者)는 制書有違律로 論罪한다. 英宗 辛巳(37년) ○ 犯法者에 대해서는 해당관서의 관원이 잡아서 승정원에 報告하며 그 자를 숨겨 두고 報告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論罪한다. ○ 卿宰⁶⁵⁾에 대한 禁推(의금부에서의 심문)에 관해서는 의금부에서 草記⁶⁶⁾하여 임금의 재가를

60) 着庫는 足鎖(桎)의 吏讀 表記로서 한국어 발음으로는 “차꼬”이다.

61) 犯馬者는 乘馬 通行의 禁止에 위반한 자를 말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652) 犯禁者는 기타 法禁을 위반한 자를 말한다.

62) 知家は 高官이 말을 타고 從者를 거느리고 路上을 통행할 때 常賤人들이 길옆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그냥 통과하는 등의 無禮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를 잡아서 길 옆에 있는 人家에 일시 감금한후 그 집을 法司에 알려서 감금된 자를 감옥으로 移監하는 것을 말한다 (同上).

63) 制書有違律은 《大明律直解》 卷3 吏律 公式 制書有違律條에 규정되어 있는데 임금의 制書(敎書)를 받들어 시행함에 있어서 어긋나게 행동하는 자 및 황태자(왕세자)의 命書(명령서)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자 등에게 杖刑을 科하고 임금의 敎書와 왕세자의 명령서의 시행을 지체시킨 자에 대해서는 杖刑 또는 笞刑을 科하도록 하였다. 이는 官吏만을 대상으로 한 律文이며 常人 犯法者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世宗實錄》卷 25-18, 世宗 6年 8月 계해).

64) 次知는 조선시대의 俗語로서 代理人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담당의 의미로도 쓴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652).

65) 주 44 (文宰 卿宰) 參照.

66) 草記는 임금에게 올리는 보고문서의 일종으로서 서울의 각 관청에서 政務上 그렇게

받은 후라야 죄인의 供辭(피의자 심문조서)를 받을 수 있다.

【推斷⁶⁷⁾】〔原〕 무릇 拷訊⁶⁸⁾(拷問)은 訊杖⁶⁹⁾(訊問用 刑杖)은 길이가 3자3치인데 윗 부분은 1자3치로 지름(圓徑)이 7푼이고 아랫 부분은 2자로서 너비가 8푼 두께가 2푼이며, 〈營造尺⁷⁰⁾을 쓴다.〉 그 하단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간단히 적어서 올리는 것이다.

- 67) 推斷條에서는 罪狀을 推問(심문)하여 처단하는 것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는데 濫刑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규정을 두었다. 특히 續大典 이후 壓膝刑·烙刑·刺字刑 등 非人道的인 형벌을 배제시켰다.
- 68) 拷訊은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서,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면서 심문하는 것을 말한다. 拷訊은 拷問·掠問(《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刑典 刑推·《受教輯錄》刑典 推斷 刑訊·《續大典》刑典 推斷) 등으로 表記되기도 하였다. 《大明律直解》卷28 刑典 斷獄 獄囚取服辯條에 의하면 徒刑·流刑·死刑 등에 해당하는 重罪人의 처벌에는 반드시 自服(自白) 또는 不服의 辯을 듣도록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拷訊을 허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상 自白(自服)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하였고(例 세조초의 金文起), 拷訊에 따른 罪단으로 피의자에 대한 杖殺(物故) 등이 자주 있어 이를 규제해야만 하였다.
- 69) 訊杖은 拷訊(고문)에 쓰는 매로써 길이가 經國大典에서는 大明律의 그것보다 약간 짧았으나 大典通編에서 大明律上의 訊杖의 길이에 맞추어 3자5치로 하였다. 訊杖의 재료는 大明律에서는 荊나무로 되어 있으나(《大明律直解》獄具之圖) 숙종 때의 《受教輯錄》刑典 推斷條에서는 柳木으로 만든다고 하였으며, Dallet의 《朝鮮教會史》序說에서는 참나무로 만든다고 하였다. 그러나 正祖代의 《欽恤典則》은 《大明律》의 규정을 들어 참나무로 만들 수 없다고 하고 軍門에서 사용하는 棍杖은 柳木으로 만든다고 하였다(이태진외 4인, 《앞의 책》 p.679). 조선초기에는 죄의 輕重을 不問하고 不服者에 대해서는 모두 訊杖을 썼는데 그 크기가 달랐으므로 世宗 3年 6月 의금부와 형조의 常用訊杖을 규격화하여(《世宗實錄》卷12-8, 世宗 3年 6月 庚子), 그것이 후일 《經國大典》에 등재되었다. 조선후기에는 逆獄과 綱常罪를 다루는데 쓰는 訊杖으로 常用訊杖보다 너비와 두께를 약간씩 더한 推鞠訊杖과 三省訊杖을 따로 규정하였다(《受教輯錄》 및 《續大典》의 刑典 推斷).
- 70) 營造尺은 토목공사 및 건축용으로 쓰인 자로서 1尺의 길이는 약 30.7cm이다. 《經國大典》工典 度量衡에 의하면 周尺 1尺의 길이가 黃鐘尺으로 6치6리이고 營造尺 1尺은 황종척으로 8치9푼9리이기 때문이다. 周尺 1尺의 길이에 관해서는 23.1cm(중국고궁 박물관)에서 20cm(수표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으나 1992.12, 문화재관리국에서 조선시대에 널리 사용하였던 周尺을 모아 과학자들에게 측정을 의뢰한 결과 20.7cm가 기준척이었음을 확인하였다(《大典會通研究》兵典編 한

으로서 무릎 아래를 치되⁷¹⁾ 정강이에는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고 한 차례에 30도를 넘지 않게 한다. [增] 길이는 3자5치로 한다. **임금의 지시를 받아서(取旨) 집행한다.** 庶人(일반 백성) 및 竊盜와 強盜罪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功臣과 議親에 대한 拷問을 임금에게 啓請(奏請)할 때에는 功臣이나 議親이라는 사실을 모두 기록해서 아뢰어야 한다.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보고한다. 濟州 세 고을에서는 節制使에게 보고한다. ○ 文武官·內侍府 內侍·士族婦女·僧人 등에 대해서는 觀察사가 임금에게 아뢰고 濟州 세 고을에서는 절제사가 觀察사에게 보고하여 임금에게 아뢰도록 한다. **형조·개성부·觀察사는 流刑 이하에 관해서는 직접 斷罪하며 (그외) 각 관청에서는 笞刑 이하를 직접 斷罪한다.** 刑杖을 쓰지 아니하는 관청(不用刑衙門⁷²⁾)에서는 가죽 채찍을 사용한다. ○ 節度使의 관할하의 사람이 軍務外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杖刑 이상은 觀察사에게 공문을 보낸 다음에 심문 처단(推斷)한다. ○ 宗親⁷³⁾이

국법제연구원 1995.12 pp.122~123 및 《같은 책》戶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 12, p.19).

71) 訊杖으로 치는 부분을 무릎 아래로 규정한 것은 《經國大典》이래 우리나라 法制의 일관된 원칙이었으나(《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刑典 및 《增修無冤錄》屍帳式: 무릎아래 발목위) 《大明律》에서는 訊杖으로 치는 부분을 볼기와 넓적다리라고 하였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679). 《經國大典》成立이전인 世宗 때에는 訊杖으로 自白하지 아니하는 죄인에게 엉덩이와 넓적다리를 쳤는데 죄의 輕重을 가리지 않고 모든 不服者에게 訊杖을 치고 또한 較板(기준되는 板木)도 없으므로 大小不同하니 그것을 規格化해야 한다는 刑曹의 啓에 따라 길이·굵기·너비 등을 정하였다(《世宗實錄》권12-8, 세종 3년 6월 경자).

72) 不用刑衙門을 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680에서는 《經國大典》刑典 囚禁에 규정된 병조·형조·한성부·사헌부·승정원·장례원·종부시·개성부·觀察사·수령 이외의 官府라 하여 囚禁할 권한이 없는 관청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대개의 경우는 두 가지 衙門이 일치할지 모르나 不用刑衙門은 刑訊시설이 없는 관청으로 보아서 非直囚衙門(不囚禁衙門)과는 개념상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집안의 奴婢들(奴屬)을 자기일로 구속 심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잡아다가 推問한다. ○ 私罪⁷⁴⁾를 범하여 杖 60을 맞게 되는 자(관료)에 대해서는 임금에게 아뢰어 告身(임명장)을 1등급 追奪(1계급 강등)하고 杖 70을 맞게 되는 자는 2등급 追奪(2계급 강등), 杖 80을 맞게 되는 자는 3등급 追奪(3계급 강등), 杖 90을 맞게 되는 자는 4등급 推奪(4계급 강등), 杖 100을 맞게 되는 자에 대해서는 모든 告身을 追奪(職牒을 모두 회수)하여 吏曹와 兵曹로 보낸다. 每品에 正·從으로 나누어 등급을 정하며 越等守職者⁷⁵⁾나 守職을 지낸 적이 있는 자 및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닌 未出謝者⁷⁶⁾ 등도 모두 함께 쳐준다. 告身을 갖고 도망쳐서 숨은 자에 대해서는 사면령이 있더라도 역시 追奪한다. ○ 2품 이상 관료에 대해서는 推問을 마치고 임금의 지시를 받으며(二品 以上 畢推取旨⁷⁷⁾) 3품 이하의 관료에 대해서는

73) 주 43 (宗親) 參照.

74) 解說篇 15 私罪 參照.

75) 越等守職者는 등급을 뛰어 넘어 守職을 받은 자를 말한다. 守職은 낮은 官階(散官)인 자가 높은 官職(職事)에 임명되는 경우이다. 그 반대의 경우를 行職이라 하는데 世宗 때 行守法을 만들 때에는 守職을 爲主로 하였지만 世祖代 이후 行職 爲主로 되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漢·唐·宋 모두 行職·守職이 있었으나 元代에는 散官과 職事의 품계가 같았다. 세종 12년 윤 12월 임금이 吏曹에 내린 傳敎에 의하면 官職(職事)은 才能에 따라 임용해야 하고 官階(散官)는 尊卑의 身分과 功勞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大典會通研究》 吏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3.12, p.233).

76) 出謝者는 임금에게 나아가서 君恩에 감사를 표시하는 자 즉 벼슬길에 나아가는 자를 의미한다(이태진외 4인 《앞의 책》 p.680). 敘職·加階 기타로 임금의 恩命을 입게 된 者는 일정 期限內에 입궐하여 謝恩肅拜하게 되는데 이를 出謝라 하였다. 太宗 5年 3月, 전직관료(監察)가 職牒을 반납하고 生員試에 응시한 바 있어서 司憲府에서 상소하기를 “生員은 入學之門이요 (文武科)及第는 入仕之路라”고 하면서 參上官이 名器의 重함을 생각하지 않고 “納謝牒而赴試”함은 부당다고 하였다. 따라서 謝牒과 職牒은 같은 의미로도 쓰였다(《太宗實錄》 卷9-7, 太宗 5年 3月 庚子). 또 조선시대의 告身法을 고려시대에서는 朝謝法·出謝法이라 하였다(《太宗實錄》 卷23-8, 太宗 12年 正月 甲寅).

77) 2品 以上 畢推取旨란 2品 이상의 관료에 대해서는 推問을 마치고 임금의 지시를 받는다는 뜻으로 보는 견해(조선총독부 중추원, 《譯文大典會通》 1921, p.372)와 끝까지 신문을 진행할 경우에는 임금의 지시를 받는다는 견해(윤국일 《國譯 經國대전연구》 1986, 평양, p.456)가 있다. 前者에 의하면 조사는 하되 처벌만은 임금의 지시가 있

비록 功臣·議親일지라도 律文(大明律)에 비추어 (論罪한 후) 임금에게 보고한다. ○ 무릇 같은 관청의 관료가 公罪를 같이 범한 경우(同僚共犯公罪者⁷⁸⁾)에 당상관이 있는 관청에서는 行首⁷⁹⁾가 長官⁸⁰⁾이 되고 次官 이하가 佐貳官⁸¹⁾이 되며 당하관은 首領官⁸²⁾이 된다.〈성균관과 같은 관청에서는 7품 이하관이 수령관이 된다⁸³⁾〉 당상관이 없는 관청에서도 행수가 장관이 되고 차관 이하가 좌이관이 되며 7품 이하가 수령관이 된다. 2등급의 관원만 있는 곳에서는 단지 장관과 수령관으로만 나누고 같은 등급의 관원만 있는 곳에서는 단지 수령관으로서만 논하며 (祿官과) 無祿官이 있는 곳에서는 祿官으로 通算(通計)한다. ○ 文·武官 및 內侍府의 內侍·有蔭子孫⁸⁴⁾·生

어야 한다는 것이고 後者는 임금의 지시가 없으면 조사조차 완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世宗實錄》卷56-10, 世宗 14年 4月 임금이 형조와 사헌부에 傳旨하기를 2품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작은 과실인 경우에는 照律論罪(법률에 비추어 죄를 논함)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조사를 마치기 전에는 작은 과실인지 큰 과실인지 알 수 없으므로 前者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78) 解說篇 16 同僚共犯罪者 參照.

79) 行首는 行伍(동아리)의 우두머리라 하였다(《經國大典註解》後集 上 戶典). 이는 같은 관청, 같은 系列의 관리의 우두머리란 뜻이다.

80) 長官은 각 관청(諸司)의 가장 上席인 官員을 말한다(《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刑典).

81) 佐貳官은 副長官 즉 協贊之官이다(同上). 六曹의 參判·參議나 仁順府의 少尹·判官 등이 여기 해당된다(《世宗實錄》卷68-35, 世宗 17年 6月 甲子).

82) 首領官은 人身의 머리(首)와 목(領)과 같은 것으로서 (《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刑典)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핵심적인 일을 맡은) 관료이다. 당상관이 있는 관청, 예컨대 六曹에서는 郎官, 仁順府에서는 南行이 여기에 속한다. 당상관이 없는 관청에서도 南行이 首領官이 된다(《世宗實錄》권68-35, 世宗 17年 6月 甲子). 《世宗實錄》卷148 地理志 京畿에 의하면 觀察使 1人 밑에 首領官 1人을 두도록 하였는데 首領官은 後日의 都事를 의미한 듯 하다.

83) 成均館에서 7品 以下官이 首領官이 된 것은 同館의 5·6品官이 文科出身者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682는 이해할 수 없음) 성균관에 있어서는 7品 以下官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성균관의 7品 以下官도 모두 文科及第者이며 他관청의 5·6品官이 대개 蔭職출신(?)인 것도 아니다(例 六曹의 郎官, 臺諫, 玉堂 등). 더구나 蔭職者가 대개 5·6品線이라는 것도 실제와 맞지 않다(9品, 參奉 등 多數 參下官이 蔭官임).

84) 有蔭子孫은 父祖의 덕택(庇蔭)으로 벼슬(官階 또는 官階·官職)하게 된 사람을 말하는데 門蔭子弟와 功蔭子弟 등이 있다. 門蔭子弟와 功蔭子弟의 敍用法은 과거제도가 실시

員·進士⁸⁵)가 十惡⁸⁶)의 罪·姦淫이나 도적질·不法殺人·법을 굽혀 뇌물을 받는 등의 죄를 범한 것 이외로 笞刑이나 杖刑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모두

된 고려전기 이후에도 주된 出仕路의 하나로서 存在하였는데 (《高麗史》 卷75-39, 志卷29, 選舉3), 조선시대에도 國初부터 있었다(《太宗實錄》 卷9-3, 太宗 5年 2月 乙亥 및 卷11-5, 太宗 6年 2月 戊辰). 世宗 27年 7月에는 2品 以上者의 子·孫·壻·弟·姪과 京官實行 3品, 外官 3品守令의 子·孫 및 臺省(臺諫의 誤記인 듯)과 政曹(吏曹·兵曹)를 거친 자의 子 등의 벼슬길을 열어 주기 위하여 忠順衛에 소속시켜서 (定額 600人을 4番으로 나누어 매년 150인1을 運번으로 傭내 入職) 陞階를 주었다(《世宗實錄》 卷109-8, 世宗 27年 7月 庚寅). 成宗 원년 3월 功臣과 2品 이상의 子·孫·壻·弟·姪에게는 直長同正, 京外實行 3品の 子·孫 및 臺諫·政曹를 거친 자의 子에게 副直長同正에 임용하였는데 이는 太宗代의 《續六典》門蔭條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成宗實錄》 卷4-3, 成宗 元年 3月 癸未). 또 蔭子弟에 대한 取才시험은 成宗 3年 5月부터 매년 春秋孟朔(첫달)에 실시(試取)하도록 하였다(《成宗實錄》 卷18-12, 成宗 3年 5月 甲子).

85) 生員·進士는 小科인 生員·進士시험에 합격된 자를 말하는데 生員·進士試는 入仕之路가 아니고 入學之門이므로 成均館入學시험 내지 士人으로서의 자격을 公認받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生員·進士試는 文科의 예비시험적인 성격도 있으나 文科에 응시하자면 반드시 生員·進士일 필요가 없다. 生員試는 고려 의종 원년, 進士試는 고려 덕종 즉위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生員試보다 進士試(進士科는 文科의 별칭)를 더 중요시 하였고 이를 國子監試·監試·成均館試·南省試라고 하여 詩·賦·銘·箴 등 詞章을 시험하였다. 그리하여 선비들이 進士試에만 몰려들어 經書研究를 등한히 하게 되었으므로 조선태조 원년에 進士試를 폐지한 이래 그 置廢를 거듭하다가 端宗 元年에 부활되어 다시금 선비들이 進士試를 선호하게 되었다. 生員試는 陞補試라고도 하며 四書疑와 五經義를 시험보였다. 生員·進士試는 式年과 增廣의 경우에만 실시하였으며 처음에는 단 한번의 시험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으나 太宗 14년부터 初試와 覆試로 나누었다. 合格者 定員은 生員·進士 各 100명씩이었으나 조선말기에 이르면 그 定員을 넘어서 大量合格시켰다. 특히 1894년의 경우 生員 279명, 進士 1043명이 합격되었다(宋俊浩, 〈李朝生員進士試의 研究〉 國회도서관 1970 및 曹佐鎬, 〈李朝司馬試攷〉 上·下, 《成大論文集》 14輯, 1969. 16輯, 1971와 李鍾日, 〈朝鮮後期の 司馬榜目分析〉, 《法史學研究》 11號, 1990).

86) 十惡은 《唐律疏議》 卷1, 名例6과 《大明律直解》 名例律 卷1에 규정되고 있는 謀反(社稷을 危害하려는 것)·謀大逆(宗廟·山陵·宮闕을 훼손하려는 것)·謀叛(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外國과 潛通하거나 따르려는 것)·惡逆(祖父母나 父母를 구타하거나 죽이려는 것 및 伯叔父母·고모·형·누님·외조부·남편을 죽이려는 것)·不道(한 집안의 死刑囚아닌 3人을 죽이는 등)·大不敬(大祀때 天神에 바쳐진 물건이나 임금의 물건을 훔치거나 御寶를 위조하는 것 등)·不孝(祖父母나 父母 등을 고소·고발하거나 욕지거리 하는 등)·不睦(有服親을 죽이려하거나 구타·고발하는 등)·不義(소속官長을 죽이는 등)·內亂(小功 이상 親을 奸하거나 父祖의 妾을 奸하는 것) 등 10가지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말한다.

贖罪金を 받도록(收贖⁸⁷)한다. 公罪로 徒刑 이상 받게 되거나 私罪로 杖 100 이상 刑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杖刑을 집행(決杖)한다. ○ 議親의 有服親⁸⁸인 女子는 비록 出嫁해도 請罪(求刑)할 때에는 本服(同宗의 服)에 의하여 論罪한다. ○ 鄉吏·驛吏⁸⁹·公賤과 私賤이 徒刑이나 流刑의 죄를 범하면 《大明律》의 天文生의 例⁹⁰로 論罪한다. 強盜의 妻子 이외는 公賤과 私賤이 永屬徙邊⁹¹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같다. ○ 軍인이 徒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充軍된 경우(犯徒充軍⁹²)에는 徒刑의 年限이 찬 후에 석

87) 解說篇 19 收贖 參照.

88) 有服親은 그가 죽으면 喪服을 입는 가까운 親族으로서 同宗8寸, 外4寸 이내와 配偶者 및 그 父母(女子의 경우에는 夫族 7寸 이상 포함), 사위 등을 말하는데 3년(斬衰·齋衰), 1年(期年), 9個月(大功), 5個月(小功), 3個月(總麻) 등으로 親等에 따라 服喪期間에 差異가 있다(《經國大典》禮典 五服).

89) 解說篇 20 鄉吏와 驛吏 參照.

90) 天文生은 天文學을 學習하는 生徒를 말하는데, 專門人인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大明律直解》名例律 工樂戶及婦人犯罪條에 「欽天監(書雲觀·觀象監)의 天文生이 학업을 성취해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만약 그가 流刑이나 徒刑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여도 각자에게 杖 100을 집행하는데 그치고 그 나머지 죄(杖·笞刑 해당죄)에 해당되면 속죄금을 받는다」라는 규정을 두었다. 이는 《唐律疏議》名例律에도 있는 규정이다. 여기서는 향리와 역리 및 公·私賤이 徒刑이나 流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大明律直解》名例律 天文生의 例에 의거 杖 100으로 論罪한다는 것이다.

91) 永屬徙邊이란 邊境지방으로 強制移住시켜서 영구히 그곳에서 服役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全家徙邊」도 邊方지방으로 全家族을 강제이주시키는 것이나 보통 定役이 있는 驛吏나 公奴婢 등이 죄를 지어 邊方으로 보내는 것을 「永屬徙邊」이라 하였다. 이는 流刑의 일종이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686). 《大明律直解》五刑 名義에 遷徙條를 두어서 犯罪人을 鄉土를 떠나 1000리밖으로 옮긴다고 하였다. 全家徙邊은 대체로 強盜와 그 가족 및 徙民인 도망자를 받아들인 자·살아있는 公賤을 故意로 죽였다고 한 아전과 그 가족 등의 경우에 적용하였다(《經國大典》刑典 逃亡 및 贓盜와 公賤條 및 주 107, 해설편¹⁰ 參照).

92) 充軍은 徒刑이나 流刑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杖 100을 친 후 다른 지방(徒刑 해당자는 2000리內, 流刑 해당자는 流刑할 곳의 遠近에 따름)에 보내어 苦된 役務에 充當하고 刺字刑은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充軍중에는 그외에도 邊遠充軍이란 것이 있어서 당초부터 法律에 의거 먼 邊方지방으로 보내어 軍役に 充當하는 형벌이 있었다(《大明律直解》卷1 名例律 軍官軍人犯罪免徒流條). 徙役은 본래 所定期間 配所에서 소금을 굽거나 冶鐵作業을 시키는 것이며 流刑의 경우에는 황무지나 해변 또는 섬에 配所를 정하여 安置하는 것이다. 邊遠充軍의 경우 서울에서는 경상도(먼곳 해당자)·전라도(중간거

방한다. ○ 喪事前에 犯한 徒刑 流刑 이하의 죄가 喪事後에 발각된 경우에는 十惡의 죄 이외는 속죄금을 받으며 스스로 죄를 받기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일 후에 형벌을 집행한다. ○ 감옥에 갇힌 죄수의 情狀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事由를 갖추어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임금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 무릇 亂言者⁹³⁾에 대해서는 임금에게 아뢰어 사실을 조사하고 杖 100 流 3000리에 처하며 만약 임금에 대한 범행(존엄을 해치는 등)으로서 情狀이 아주 나쁜 자인 경우에는 斬刑⁹⁴⁾하고 家産을 籍沒⁹⁵⁾한다. 誣告者는 도리어

리 해당자)로 보내어 充軍시키고, 西海道에서는 경상도에, 交州江陵道에서는 전라도에, 楊廣道에서는 平壤朔方道에 보내어 充軍시킨다(《위의 책》名例律 卷1 徒流遷徙地方).

93) 亂言은 유언비어로서 王政에 害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世宗 5年 正月 刑曹에서 啓하기를 永樂 20年(세종 4년) 윤 12월의 王旨에 의하면 亂言犯法者에 대해서 情狀의 輕重을 막론하고 모두 反逆罪로 法律을 적용함은 부당하니 형조에서 歷代刑律을 참고하여 의정부 및 各曹와 함께 의논해서 보고하라는 것인데 唐律에 의하면 情理가 나쁜 자는 斬刑(死刑), 그렇지 않은 자는 徒 2年으로 처벌하고 元史 刑法志에서는 亂言犯上者에 대하여 死刑에 處하고 그 집 재산을 몰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는 亂言犯上者중 情理가 아주 나쁜 자는 斬刑(死刑)에 처하고 그 家産을 籍沒하며 그렇지 않은 자는 杖 100, 流 3000리에 처하도록 하자고 하여 임금이 이에 따랐다(《世宗實錄》 卷19-1·2 世宗 5년 정월 병술).

94) 斬刑은 死刑중에서도 무거운 형벌이다. 絞刑도 死刑의 일종이나 신체를 온전하게 두는 반면 斬刑은 머리와 몸을 분리하는 형벌이기 때문이다(《大明律直解》 五刑之圖). 死刑 중에서는 漢律의 腰斬, 明清律의 陵遲處死 등 잔학한 형벌이 있었으나 (김택민·임대희 《앞의 책》 p.104) 조선시대는 斬刑이 최고형이었다. 斬刑은 중국에서 黃帝가 罔刑의 들판에서 蚩尤를 斬했다는 기록에서 비롯되며(春秋元命包) 犯罪의 一般豫防的인 目的이 있다.

95) 籍沒은 重罪를 범한 자의 全財産을 장부에 기록하여 官에서 몰수하는 것을 말한다. 《大明律直解》各例律 卷1 給沒贓物條에서는 일반 몰수(入官)와 籍沒을 나누어 규정하였는데 收賂罪의 목적물인 財物이나 兵器 및 禁書 따위는 몰수(入官)한다고 하고 謀反이나 叛逆 등의 죄를 범한 자의 전 재산은 적몰하고 기타 重犯者의 경우는 사면이 있기 전에 재산목록이 官에 접수 처리되면 모두 이를 籍沒하고 사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범죄에 緣坐된 사람의 家口도 官에 沒入하게 되는데 그 罪가 사면되면 역시 家口도

고발된 그 죄를 받으며(反坐⁹⁶)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그 죄의 형을 1등급 減하여 처벌한다. ○ 匿名書⁹⁷는 비록 國事に 관계될지라도 父子之間에도 말을 읊겨서는 안되며 만약 말을 읊기는 자가 있거나 여러 날 그것을 태우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大明律에 의하여 論罪한다. ○ 서울과 지방의 死刑에 해당하는 罪囚에 대해서는 형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한 후 상세하게 다시 審理(詳覆⁹⁸)한다. ○ 사형에 해당하는 죄수에 대해서는 세번 심리하여 임금에게 보고(死罪三覆啓⁹⁹)한다.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差使員¹⁰⁰을 정

사면되어 放免된다고 하였다.

96) 解說篇 17 誣告 參照.

97) 解說篇 18 匿名書 參照.

98) 詳覆은 死罪事件에 관해서 두번·세번 거듭 審理(三覆)하는 것을 말하며 刑曹의 詳覆司에서 관장한다. 死刑囚에 관해서 신증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刑曹에서 의정부에 보고한 후 상세하게 거듭 審理하도록 하였으나 義禁府의 死罪事件은 王命에 따른 獄事(詔獄)이므로 임금의 체면관계로 의정부에 보고하지 않도록 하였다(《成宗實錄》卷146-1, 成宗 13年 9月 己亥).

99) 三覆啓는 死刑에 해당하는 罪人의 審理를 慎重하게 하기 위하여 初覆·再覆·三覆(初覆과 三覆은 御前, 再覆은 刑曹에서 行함) 등으로 반복하여 調査해서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太宗 17年 10月, 임금은 生殺與奪權이 임금에게 있으므로 비록 죽을 죄를 지은 자라도 담당 관청에서 王命을 받들어 (有司奉教) 律文에 의하지 않고 죽이면 擅殺律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死罪處決法을 밝혔다(《太宗實錄》卷34-27, 太宗 17年 10月 丙午). 世宗 3年 12月 임금이 刑曹에 下旨하기를 死罪三覆啓는 人命을 重視하고 착오를 막자는 것이니 형조에서는 2覆·3覆할 때 元券(원심의 재판문서)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議定한 후에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世宗實錄》卷14-17, 世宗 3年 12월 辛亥). 《大明律直解》刑律 卷28 斷獄 死囚覆奏待報條에 의하면 死刑囚人에 대한 刑執行에 있어서 覆奏의 회답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집행한 자는 杖 80에 처하

하여 그 고을의 守丞과 함께 推問하게 하며 또 差使 2인을 정하여 재차 조사 심리(考覆¹⁰¹)하도록 하고 또 직접 심문하여서 임금에게 보고한다. 濟州의 세 고을¹⁰²에서는 節制使가 직접 심문하여 관찰사에게 보

고 복주의 회답을 받은 경우에도 3일이 되어야 집행하며, 만약 기한전에 집행(行刑)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行刑하지 아니한 자는 각각 杖 60에 처한다. 또 立春이후 秋分이전에 死刑을 집행한 자는 杖 80에 처한다. 다만 十惡의 罪를 犯하여 死刑될 자와 強盜 罪를 범한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不待時) 처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禁刑日에 처형하면 笞 40에 처하도록 하였다. 啓覆時에 참석해야 할 사람은 現職大臣과 의정부의 贊成·參贊·6承旨·6曹의 判書·該曹의 參判·參議 등이며 三相이 참석할 수 없거나 國喪時의 卒哭前 및 흉년으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冬至前日까지 임금에게 稟稟한다(《銀臺條例》刑攷 啓覆).

100) 差使員은 관찰사가 道內의 官員(주로 관내 守丞)을 선임하여 특정한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差는 시키다·파견하다·임명하다·심부름하다는 등의 뜻이 있는데 差使는 일정한 용무를 주어 다른곳으로 파견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差使가 官員일 경우 差使員이라 한다(윤국일 《앞의 책》 p.457). 각 고을의 守丞을 差使員으로 선임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관찰사에게 있으나 成宗 5年 3月의 吏曹의 啓에 의하면 병마 절도사와 수군절도사도 급하지 않은 일로 임의로 差使員을 差定하니 앞으로는 부득이 差使員을 差定할 때에는 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선임하도록 하되 永安·平安 양도에서의 軍情에 긴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成宗實錄》卷40-5, 成宗 5年 3月 戊戌).

101) 考覆은 前審에서 조사하여 作成한 獄案을 참고하여 다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02) 濟州三邑은 濟州牧·大靜縣·旌義縣을 말한다. 제주는 본래 탐라국으로 신라문무왕 때 신라에 투항하였다. 고려숙종 때는 탐라군이 되었으며 忠烈王 때 일시 몽고 직할 牧馬場을 두었으나 곧 환수하여 忠烈王 22년에 탐라를 제주로 고쳐서 牧使를 두었다(《高麗史》권57-54·55 志11, 地理2 全羅道耽羅縣). 제주에는 舊王族인 土着勢力이 컸고 元勢力의 잔재가 일부 남아 있는 등으로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선국초부터 土官制를 실시하여 그들을 회유하였다. 太宗 4년에는 제주의 土官號를 개칭하여 東道千戶所를 東道靜海鎮으로, 西道千戶所를 西道靜海鎮으로 하고, 都千戶를 都司守, 上千戶를 上司守, 副千戶를 副司守, 道之官을 都州官으로, 屋主를 都州官으로, 左都知管王子를 都州官右都知管으로 하였다(《太宗實錄》卷7-14, 太宗 4年 4月 辛卯). 太宗 10年 6月 임금은 濟州子弟중 從仕者에게 千戶·百戶로 임명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때 趙源이 啓하기를 千戶·百戶는 守丞의 선임에 따른 것이나 그들이 司直·副司直에 이르게 되면 무례해지며 제주 土人이 王爵(官職)을 輕視하고 土官을 重視하니 조정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자(從仕于朝者)에게 百戶·千戶로 임명하면 上下之分이 정해질 것이며 上京從仕하기를 원하는 제주子弟가 많아질 것이라 하였다(《太宗實錄》卷19-63, 太宗 10年 6月 甲寅). 世宗 11年 7月 제주土官(西班牙인)에게 등급별로 각각

고해서 임금에게 아뢴다. ○ 3일 안에는 재차 拷問할 수 없고 고문한지 10일 후에 형벌을 집행한다. 죄수를 報管廳¹⁰³에 移監해두고 待期시킨다. ○ 笞刑에 해당하는 죄는 고문한 때에 친 매수를 계산하여 그 만큼 減해준다.

[續] 壓膝刑¹⁰⁴을 廢止한다. 英宗 갑진년(영조 즉위년). ○ 烙刑¹⁰⁵을 폐지한다. 英宗 계축년(영조 9년). ○ 刺字刑¹⁰⁶을 폐지한다. 英宗 경신년(영조 16년). ○ 全家徙邊律¹⁰⁷을 모두 폐지한다. 肅宗 무진년(14년)과 정유년(43년)에 차례로 약간의 條項을 減定하였는데 英宗 갑자년(영조 20년)에 이 律文을 모두 폐지하고 杖刑과 流刑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 무릇 推鞠¹⁰⁸때의 訊杖은 너비가 9푼·두께가 4푼이고, 三省¹⁰⁹推鞠때의

10명에서 2명까지의 奉足을 주었다(《世宗實錄》卷45-10, 世宗 11年 7月 壬申). 睿宗 元年 2月 馬賊을 방비할 목적으로 제주土官의 통솔하에 餘丁들을 正軍으로 편성하여 奉足을 주어서 이들 土官·正軍·奉足들을 雜色軍이라 호칭하게 되었다(《예종실록》권3-36, 예종 원년 2월 갑인).

103) 報管廳이란 審問중의 피의자를 관리하는 곳이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688).

104) 解說篇 8 壓膝刑 參照.

105) 解說篇 9 烙刑 參照.

106) 解說篇 7 刺字刑 參照.

107) 解說篇 10 全家徙邊 參照.

108) 推鞠은 重罪人을 鞠廳에 잡아다가 訊問하는 것이다. 鞠廳은 의금부나 기타 장소에서 王命에 의거 설치된 임시法廷으로서 임금으로부터 指名을 받은 大臣이 委官이 되어 啓稟한다. 推鞠에는 現職·前職大臣과 의금부 당상관 및 兩司(臺諫)에서 進參하고 刑房承旨도 (당직을 마치고) 나아가며 事變假注書도 같이 간다. 問事郎은 4인이며 推案은 승지가 갖고 오면 承傳色으로 하여금 入啓하도록 하고 史官(注書)이나 宣傳官이 갖고 오면 司謁로 하여금 入啓하도록 한다(《銀臺條例》刑攷 推鞠). 또한 지방의 守令에 대하여 監司로 하여금 鞠問한 후 보고(鞠啓)하도록 하기도 한다(《成宗實錄》卷61-3, 성종 6년 11월 壬子).

109) 三省은 三省推鞠을 말하는데 綱常에 관계되는 죄인을 推鞠할 경우에는 보통 의정부·사헌부·의금부의 세 관청의 官員이 合坐하여 罪人을 鞠問한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p.655). 三省推鞠의 應參人員 및 節次는 일반 推鞠과 같으나 問事郎은 2인

그것은 너비가 8푼·두께가 3푼이다. 營造尺을 쓴다.

○ 무릇 刑訊¹¹⁰은 하루에 한 차례만 하고 推鞠은 비록 엄중히 해야할 경우에도 두 차례를 넘을 수가 없다. 英宗 을축년(영조 21년)의 下敎이다. [增]拷問하여 自白을 强要(拷掠)하거나 期限이 되기전에 형을 집행(用刑)한 경우에는 官員을 조사하여

죄준다. ○ 무릇 惡逆¹¹¹에 관계되거나 임금을 속이는 不道¹¹²한 행위를 하거나 大訓¹¹³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외는 鞠廳을 열지 아니한다. 文字 사이에서 직접 惡逆을 범한(글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숨겨진 뜻을 찾아내어 날조해서(挾摘捏合¹¹⁴) 임금의 존엄을 해쳤다거나(犯上) 不道한 짓을 했다고 하여 형벌을 科하는 것은 일체 금지한다. <英宗 을축년(영조 21년)의 下敎이다>

○ 婦女는 자신이 大逆¹¹⁵罪를 범하여 스스로 비

인 점이 다르다(《銀臺條例》刑攷 推鞠 附三省推鞠).

110) 刑訊은 刑具로 고문하면서 신문하여 自白을 받아내고자 하는 조사방법으로 刑問 또는 刑推라고도 하는데, 주로 정강이 부분을 刑杖으로 치면서 訊問하는 것을 말한다.

111) 惡逆은 《大明律直解》 卷1 名例律, 10惡條에 있는데 祖父母·父母·남편의 祖父母와 父母를 구타하거나 謀殺하는 것 및 父의 兄弟인 伯叔父와 그의 妻인 伯叔母·父의 同氣인 高모·자신의 兄과 누남·母의 父母인 外祖父母·자신의 남편 등을 殺害하는 反人倫인 범죄를 말한다. 그러한 범죄행위를 惡逆이라 호칭하게 된것은 극단적인 惡行·逆行이고 인간의 도리(人理)를 저버린 행위이기 때문이다(《唐律疏議》 名例律 卷1, 10惡).

112) 不道는 《大明律直解》 卷1 名例律, 10惡條에 있는데 一家內 死罪에 해당되지 않은 자 3인을 죽이거나 他人의 4肢를 절단하거나 他人의 生氣를 採取하거나 사람을 害치고자 毒蟲을 키우거나 呪術로서 남을 죽이고자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그러나 不道는 無道와 같은 뜻으로 보아 不道德한 것·反人倫인 것·不義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후자의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3) 大訓은 英祖가 지은 것으로서 忠逆을 闡明한 訓言이다.

114) 挾摘捏合이란 文字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임의로 찾아 내어 나쁜 뜻으로 해석하여(짜맞추어) 犯上(임금의 尊嚴을 害함)·不道(反人倫의이고 不義한 것)로 몰아가는 것을 말한다.

밀계획을 주도하였다는 것이 逆賊의 招辭에 분명히 나타난 경우 이외는 鞫問하지 아니한다. 英宗 을 축년(영조 21년)의 下敎이다. ○ 推鞫罪人에 대하여 刑問을 請하거나 拿捕를 청하거나 조사를 청하자면 鞫廳에서 완전히 합의하여서 임금에게 啓할 것이고 鞫問에 참여한 臺官(사헌부 관원)이 홀로 啓할 수는 없다. ○ 兵力을 動員한 逆賊의 首魁의 兄弟와 妻妾은 모두 緣坐¹¹⁶⁾하여 死刑(誅)에 처한다. 병력을 동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지 本律(《大明律直解》 卷18 刑律 盜賊 謀反大逆條)에 의한다. [增] 비록 劇逆¹¹⁷⁾일지라도 그 妻는 死刑(正法)에 처하지 아니한다. ○ 逆賊의 父가 나이 80이면 형벌을 減하여 멀리 떨어진 외딴 섬(絶島)으로 定配¹¹⁸⁾한다. 두 세살의 어린이로서 귀양을 보내야(放流)

115) 大逆은 《大明律直解》卷1 名例律, 10惡條에 있는데 宗廟와 山陵·宮闕 등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國家에 대한 큰 反逆에 해당하므로 大逆이라 하였다(《唐律疏議》 卷1 名例律, 10惡).

116) 緣坐法은 謀反이나 大逆 등 反國家事犯에 있어서는 主犯이든 從犯이든 死刑(凌遲處死)되며, 그 家族과 일정한 범위내의 가까운 親族은 비록 犯行에는 加擔하지 아니하여도 처벌을 받았는데 父子간인 경우 나이 16세 이상되면 모두 絞首刑에 처하고, 15세 이하인 자와 母·女·妻·妾 및 祖·孫·兄·弟·姉·妹 그리고 아들의 妻妾 등은 功臣에게 주어서 그집 노비로 삼는다. 역적집안의 재산은 모두 官에서 몰수한다. 그러나 男夫의 나이 80 이상 및 不治의 病者(篤疾)·婦人의 나이 60 이상 및 不具의 病者(廢疾)인 경우에는 모두 緣坐의 罪를 免한다. 그리고 伯叔父와 兄弟의 아들(조카)은 戶籍을 같이하던 달리하던 상관없이 流 3000리에 처하여 安置한다. 그러나 緣坐되는 사람이 同居者가 아닌 경우에는 財産을 官에서 몰수하지 아니한다. 또 시집간 딸이나 姉妹는 緣坐되지 아니하고 남의 養子가 된 경우 및 聘妻하였으나 그 節次가 未完成된 경우에도 연좌되지 아니한다(《太宗實錄》 卷22-39, 太宗 11年 11月 癸酉).

117) 劇逆은 大逆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나쁜 凶惡한 것을 말한다.

118) 定配는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죄인을 流配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경우에는 定配하지 아니한다. 노비로 삼은 경우에는 이 제한에 구애되지 아니한다. ○ 父子가 모두 惡逆을 犯하였거나 혹은 사건이 같지 아니하나 각자가 兇謀를 낸 경우 이외는 事情을 알고 同參하였다는 自白을 받아서 곧바로 緣坐律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 宦官의 養子는 본래 血屬이 아니므로 역적죄를 범한 경우 緣坐함은 법의 뜻에 맞지 아니하나 역시 무죄라 할 수는 없으므로 먼 곳으로 定配한다. ○ 逆獄에 관련되거나 緣坐되어 定配된 죄인에게는 말미(휴가)를 줄 수 없고 도망친 자에게는 杖 100대를 科刑한 후에 도루 定配(還配)한다. 말미(휴가)를 준 守令은 먼저 파직하고 뒤에 잡아 들인다. ○ 도망친 자를 즉시 還推하지 아니하였는데 營門(監營)에서 現出하여 적발하면 守令을 잡아다가 심문한 후 죄를 주고 죄인은 杖 100대를 친 후에 멀리 떨어진 외딴 섬으로 定配한다. ○ 逆賊事件으로 獄에 갇힌 죄인의 가련한 情狀(情節)이 顯著한데도 의금부(王府)의 아전이나 하인(吏隸)이 뇌물을 받고 毒殺한 경우에는 知情律(고의로 살인한 죄)을 적용한다. ○ 謀逆이라고 誣告한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斬(不待時斬¹¹⁹)한다. ○ 陵위에 放火한 자와 殿牌¹²⁰를 훔치거나 태우는 등으

119) 不待時斬은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斬刑을 집행하는 것이다. 원래 死刑은 봄·여름철에는 집행하지 않음이 원칙이고 가을철(秋分)을 기다려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重罪人은 가을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형을 집행한다는 뜻이다.

120) 殿牌는 각 지방의 客舍에 『殿』字를 새겨서 만든 나무牌를 두는데 이것은 國王을 상징하므로 出張간 京官이나 守令이 正朝·冬至·임금의 탄생일 등에 있어서 그 牌에다가 拜禮하여 임금에게 賀禮하는 정성을 나타내었다(金春東외 3인 《國譯大典會通》1960, 高大出版部 p.545). 이를 遙賀라고 하였다. 서울의 王宮에서는 중국황제를 상징하는

로 變故가 생기게 한 자는 의금부로 이송하여 鞫問한다. 從犯에 대해서는 輕重을 나누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이나 極邊으로 定配한다. [補] 殿牌에 變故가 생기게 한 경우에는 逆賊사건과 관련되는 것이외는 逮捕하여 鞫問하지 아니하고 그 곳(本處)에서 범인은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斬하나 그 자식들을 緣坐하여 죽이지는(孥戮) 아니한다. 純祖 임오년(22년)에 개정된 것이다.¹²¹⁾ ○ 父母 · 祖父母 · 媿父母 · 남편 · 伯叔父母 · 형과 누님 등을 죽이거나, 노비가 주인을 죽이고 官奴가 官長을 죽이거나, 이상은 既遂未遂를 막론한다. 雇工¹²²⁾이 家長을 죽이는 경우 및 後母(繼母)를 간음(烝¹²³⁾)하거나, 伯叔母 · 姑母 · 姉妹 · 子婦를 간음하거나, 奴가 女上典을 간음하는 경우, 嫡母를 放賣하거나, 父母를 毆打하거나 辱하는 경우, 아버지의 시체를 火葬하는 경우, 이상은 既遂에 한한다. 등에는 모두 의정부 · 의금부 · 사헌부의 관원이 合坐하여(三省) 推鞫한다. [補] 일시적인 雇傭人(傭人)이 값 10兩을 받고 5년간 이상을 일하기로 합의하여 계약(立券)하고 入籍한 경우에는 雇工으로 論罪하며, 값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하여 入籍해서 한

闕牌를 正殿에 두고 역시 正朝 · 冬至 · 중국황제의 생일에 조선국왕이 拜禮하였으며 이것을 望闕禮라 하였다. 殿牌를 흠치는 등 作變時에는 大逆과 같이 보아서 妻子息까지 死刑에 處함은 지나치다는 刑曹參判 李止淵의 건의와 領議政 金載瓚 등의 찬동으로 犯人 本人만 死刑에 처하도록 하였다(《純祖實錄》 卷25-11, 純祖 22年 5月 戊戌). 作變속에는 불에 태우는 것도 포함되며 殿牌를 망실당한 守令은 그렇게 엄하게 처벌되지는 아니한듯 하였다(《위의 책》 권25-13, 순조 22년 7월 기축).

121) 註 120 參照.

122) 解說篇 24 雇工 參照.

123) 烝은 밑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女人을 간음한다는 뜻이다. 《春秋左氏傳》에 衛나라 宣公이 그의 庶母인 夷姜을 烝하였다고 적고 있다.

두 해 심부름(使喚)한 경우에는 보통사람으로 論罪한다. ○ 綱常罪人¹²⁴⁾은 부모와 남편을 죽이거나 노비가 주인을 죽이고 관노가 관장을 죽인 경우 재판(結案)을 종결(結案)하여 死刑(正法)에 처한 후 그 妻와 子女를 노비로 삼고 家屋을 破壞하여 웅덩이로 만들며 그 고을의 호칭(邑號)을 낮추고 그 守丞을 파직한다. 죄인의 그 당시의 거주 邑을 기준으로 한다. ○ 縣令 이상을 縣監으로 강등하고 縣監은 혁파하지 아니하나 그 차례를 여러 縣의 끝으로 하되 10년 기한이 지나면 원상대로 復舊한다. ○ 反逆罪의 緣坐에 관해서는 本律(《大明律直解》 卷18 刑律 盜賊 謀反大逆條)에 규정이 있으므로 가옥파괴 이하의 규정만 이 律(《續大典》 刑典 推斷條)을 적용한다. [補] 守丞을 파직하지 아니한다. ○ 陵寢이 있는 고을은 낮추지 아니한다. 재판이 종결된 후 (死刑이 집행되기 전에 죄인이) 곧 바로 죽은 경우에도 같이 論定한다. ○ 孔子를 모신 祠堂의 位牌를 때려 부수거나 흠쳐낸 자는 모두 斬刑에 처한다. 從犯은 杖 100 流 2000리에 처한다. ○ 位牌를 失火로 태우고 사사로이 製造한 자는 杖 100 流 2000리에 처한다. ○ 儒生이 자기 고을의 守丞(土主)에게 發惡하거나 孔子의 사당 혹은 관청 문밖에 모여서 罵하는 경우에는 杖 100 流 3000리에 처한다. 단지 通文(通知文)에

124) 綱常罪人이란 三綱五常(倫)을 무너뜨리는 不道德한 罪를 범한 者이다. 예컨대 子女가 父母를 죽이고 官奴가 官長을 죽이는 따위와 같은 것이다. 綱常罪人이 살고 있던 집은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웅덩이나 못을 판다. 또한 그가 살고 있는 고을의 地位를 강등시켜서 府尹·牧使·府使·郡守 등의 고을을 縣이라 하고 縣令이 다스리는 고을은 縣監의 고을로 하는 것이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657).

따라 參加한 자는 徒配에 처한다. ○ 邑民이 官長을 향하여 發砲한 경우에는 變故가 생긴 곳(作變處)에서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斬首한다. 主謀者도 같이 처형(斬首)하고 협박을 받아 從犯이 된자는 死刑을 減刑하여 定配한다. ○ 鎭卒이나 屯卒이 將領을 원망하여 作黨해서(結黨하여) 發砲한 경우에는 비록 殺人 未遂에 그칠지라도 主犯은 斬首하여 효시하고 從犯은 刑杖으로 推問하여 定配한다. ○ 吏卒이 將帥(帥臣)를 謀殺(殺害 陰謀 포함)한 경우에는 主謀者는 斬首하여 효시하고 從犯은 모두 멀리 떨어진 외딴 섬으로 定配하며 官屬이 防禦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極邊으로 定配한다. ○ 軍服을 입고 말을 타고 官廳에서 變을 이르킨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斬首하며 그 妻子는 奴婢로 한다. 郡邑의 下人이 共謀共同(符同)하여 變을 이르켰다가 일제히 무너져서 흩어진 경우에도 首倡者는 死刑(一律)으로 論罪하고 從犯은 減等하여 杖 100 流 3000리에 처하되 赦免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성명을 바꾸어 가지고 漂流해 온 중국인을 詐稱하여 村民을 속여서 미혹하게 하고 국가를 欺罔한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斬首한다. ○ 奴가 그 주인집 사당의 位牌에 放火한 경우에는 絞首한다. 단지 故意로 官廳建物이나 民間의 房屋을 태운 刑律(《大明律直解》 卷26 刑律 雜犯 放火故燒人房屋條¹²⁵)을 적

125) 《大明律直解》 卷26, 刑律, 雜犯, 放火故燒人房屋條에 의하면 自己房屋에 放火하여 고의로 태운 경우에는 杖 100에 처하고 만약 官廳建物이나 民間의 家屋 또는 積聚物 등에 延燒되었을 경우에는 杖 100, 徒 3년에 처하되 그때 財物을 훔쳐낸 자에게는 斬刑에 처하고 사람을 殺傷한 경우에는 殺傷의 고의범으로 論罪한다고 하였다. 또 放火하여 고의로 官廳建物이나 民間가옥 및 官廳창고와 官廳에 쌓아둔 物件(積聚物)을 태운

용한다. ○ 撥卒¹²⁶)이 임금의 명령서(有旨)를 버려둔 경우에는 一律(死刑)로 論罪하고 당해 守令을 잡아다가 처벌한다. ○ 山殮¹²⁷)을 헐어내거나 假葬된 시체의 의복이나 이부자리를 찢아내거나 죽은 人體의 고기(人肉)를 먹은 자 등은 모두 強盜律로 論罪한다. 骸骨을 파낸 자는 律文에 의하여 罪를 科하여 처단하고 그러한 자를 체포한 자에게는 賞을 주도록 논의한다. ○ 나쁜 병의 藥用으로 兒童을 山間에 誘引 拉致하여 身體를 쪼개고 肝膽을 찢아낸 후 이어서 흔적을 없앤 자는 斬首하고 그 妻子는 流 2000리에 처하며 그러한 자를 잡거나 신고한 자는 布 100필을 賞으로 준다. ○ 毒蟲(독이 있는 동물)을 기르거나 毒藥을 製造하는(蠱毒造畜¹²⁸) 사람에게 대해서는 타인이 告訴(告發)하는 것을 허용하여 事實임이 확인 될 경우에는 綿布 30필을 주며 誣告者는 도리어 무고한 그 죄로 처벌(反坐)한다. 범 죄인의 이웃(切隣¹²⁹)이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인의 죄에서 4등

경우에도 斬刑에 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의로 태운 경우에도 빈집이거나 田場에 쌓아둔 物件에 대한 경우에는 위罪에서 1등급 減刑한다고 하였다.

126) 撥卒은 撥軍이라고도 하는데 驛馬를 타고 중요한 公文書를 신속히 遞送하는 軍卒이다(《위의 책》 p.658).

127) 山殮은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기 전에 山에 임시로 假葬해 두는 것을 말한다.

128) 蠱毒造畜은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毒을 제조하거나 毒蟲을 기르는 것이 된다. 《大明律直解》 卷1, 名例律 十惡 不道條에 여기 관한 규정이 있는데 造畜蠱毒의 呪呪(魘魅)도 不道條에 포함시키고 있다. 蠱毒을 劇毒藥의 일종으로 원래 苗族이 제조한 것이라 하고 그것이 迷信的 呪詛術의 일종으로 뜻이 轉化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조선 총독부 증추원《앞의 책》 p.659). 그러나 저주에 관한 것을 별도로 규정한 《大明律》의 취지로 볼 때 독이 있는 동물을 기르거나 독약을 제조한다는 뜻으로 번역함이 좋겠다. 南晚星, 譯註《大明律直解》 法制處 1964, p.120에서는 蠱毒을 뱀·지네·두꺼비 등의 毒氣로 풀이하였다.

급을 減하여 처벌하고 面任과 里任이¹³⁰⁾ 범인을 檢擧하지 못하여 사람과 동물에게 毒으로 인한 害를 끼치게 한 경우에는 制書有違律로 論罪한다. ○ 蠱毒案에 付錄된 사람이 다른 地境을 出入한 경우에는 죄를 다스리되 도망한 자는 杖 100 流 3000리에 처하고 그러한 자를 받아들인 자 및 이웃인 자에 대해서는 속죄금을 거두지 않고 杖 100에 처한다.

○ 綱常의 죄를 범하여 犯情이 깊고 道理가 매우 나쁜 자에게는 杖 100 流 3000리에 처한다. 아! 사람이 몇몇한 도리를 굳게 지킴은 본래 그 善性(天性)이 있어서인데 어찌 이러한 犯法行爲가 있겠는가. 그러나 만약 범법자가 있다면 教化가 펴지 못하고 官吏가 蘇瓊¹³¹⁾에게 미치지 못해서이다. 하지만 그러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이 刑律도 오히려 가볍지만 末世의 俗된 뜯 誹謗은 믿기 어려우나 古事에서 찾아 보아도 이러한 곳에서는 역시 원통함을 품은 자가 없지 않을 것인즉 이러한 때에 서울과 지방의 執法官은 두루 律文을 살펴서 처리하고 마땅히 眞情함과 거짓됨을 깊이 찾아 보아야 한다. <英宗 갑자년(영조 20년)의 下敎이다.> ○ 父母喪을 만나 급히 달려가서 服喪(奔喪¹³²⁾)을 하지 아니한 자가 그 父를 擘3寸이라 하

129) 切隣은 겨린의 원말이다. 겨린이란 살인사건 등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그 犯人의 집 이웃에 사는 사람을 뜻한다.

130) 面任과 里任은 各面·各里에서 호적 기타 주민에 관한 사무를 맡았던 실무자로서 (오회복《봉건관료기구 및 벼슬이름편람》 평양 1989, p.99) 그 신분은 아전에 준하나 下인에 속한 使役人이라 할 수 있다.

131) 蘇瓊은 北齊의 良吏였는데 德行으로서 백성들을 教化하였으므로 명성이 있었다. 蘇瓊이 일찌기 清河太守가 되었는데 그 郡이 본래 도적이 많았으나 그가 부임한 이후 民吏가 숙연해져서 姦盜가 終息되었다고 한다. 또 그때 백성중 乙普明이란 者가 있어 兄弟間에 땅싸움을 하여 몇년간이나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각각 증인을 원용함이 100명이나 되었으므로 蘇瓊이 普明兄弟를 불러서 여러 사람 앞에서 諭示하기를 天下에 얻기 어려운 것은 兄弟이고 求하기 쉬운 것은 땅이다. 가령 땅을 얻더라도 兄弟의 마음을 잃으면 무엇하겠는가. 그래서 普明은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한 후 드디어 그 땅을 半으로 나누었다고 한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659).

고 그 母를 3寸 叔母라고 하거나 奴婢를 다투어 訴訟하는 자가 庶名을 免하고 자 嫡母 및 外祖母를 다른 사람의 奴婢라고 하는 경우 등 위와 같은 죄를 범하면 모두 이 律文을 적용한다. ○ 주인을 배반한 奴婢는 여전히 本役을 진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으로 定配한다. ○ 시집간 姉妹의 奴가 그 주인의 同生인 親族(親 兄弟姉妹)을 구타한 경우에는 本服의 期親¹³³⁾을 구타한 경우의 형벌을 적용하여 처단한다. ○ 王子君과 大臣에게 醜한 辱을 한 자는 먼 邊境지방에 充軍한다. ○ 常民과 賤民이 士族을 구타한 事情이 명백한 경우에는 杖 100 徒 3년에 처한다. 傷害를 입힌 경우에는 杖 100 流 2000리에 처한다. [補] 常民과 賤民이 品階가 있는 技術官僚(雜岐官) 및 品階가 없는 士族에게 辱說을 한 경우에는 杖 60에 처하되 범죄사실과 도리가 매우 나쁜 경우에는 杖 60 徒 1년에 처하고 사실을 捏造하여 誣告한 경우에는 보통의 범인에 비하여 등급을 더하여 論罪한다.

○ 무릇 형사소송(獄訟)에 있어서 아비에 관하여 아들에게, 형에 관하여 동생에게, 남편에 관하여 妻妾에게, 주인에 관하여 奴婢에게 설령 물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도 證人으로서 삼을 수가 없다

132) 奔喪이란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父母喪을 만났을 때 이를 듣고 빨리 달려가서 服喪함을 말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不奔이라 한다.

133) 本服의 期親이라 함은 《經國大典》 禮典 五服條의 本宗의 期年服에 해당되는 친족을 의미한다.

(勿爲證質¹³⁴). 祖孫간에도 같다. ○ 죄인의 진술(原情)은 口頭로 하게해서 聽取하여 調書를 작성해야(口傳取招¹³⁵)하며 文字로 쓰내지 못하도록 한다. ○ 常民과 賤民으로서 科擧(대개 武科)에 及第한 자(常賤出身)가 重罪를 범하면 平問¹³⁶하되 自白을 하지 아니하면 刑曹에서 임금에게 품의하여 刑杖으로 推問(刑推)한다. 지방의 과거급제자의 경우에는 常賤民이나 士族을 막론하고 觀察使가 곧 바로 刑推한다. ○ 서울과 지방에서 법을 맡은 官員이 죄를 따질 때에 만약 死刑에 해당하는 죄(一律)를 범한 자가 있으면 비록 용서할 수 있는 情狀이 있더라도 반드시 임금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하고 멋대로 판단하여 死刑을 減輕해서는 안된다. ○ 의금부(王府)에서는 범죄의 경중을 評議(議讞)하여 곧 바로 律文을 적용할 것을 奏請해야하고 그것을 加減 取捨(參酌)하여 주청하지 못한다. 律文의 적용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승정원에서 살펴서 推問(察推)한다. 임금이 都城밖에 나가 있을 때(行在時)에는 都城에 남아 있는 의금부의 당상관이 모여 앉아 죄인의 口述을 듣고 調書를 작성(開坐

134) 勿爲證質은 證人으로 채택하여 質問할 수 없다는 뜻이다. 論語에서 父爲子隱 子爲父隱이라 한 바와 같이 儒教倫理에 따라 아버지가 비록 죄가 있어도 그 자식은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없다는 것이다.

135) 口傳取招는 罪人이 陳述하는 것을 청취하여 調書를 작성한다는 뜻이다.

136) 平問이란 刑具를 쓰지 않고 그냥 죄인을 審問하는 것이다(金春東外 3인《앞의 책》 p.545).

捧招)하여서 官印을 찍지 않고 목록을 붙여서(白文啓目¹³⁷) 行在所(임금이 임시로 거처하는 곳)로 보고하되 (임금이) 의논하여 처리하라는 명령이 내린 후에는 임금을 수행하는 長官이 도장을 찍어서 드린다. ○ 죄가 罷職에 해당하는 자가 大明律에 비추어 보면 奪告身(職牒을 회수)에 해당하여도 本意가 아닌 경우(과실범 또는 타인의 강박으로 인한 범죄)에는 續大典에 따라서 시행한다. ○ 守令이 還上¹³⁸을 허위로 기록한 경우에는 公罪로서 律文을 적용하여 올리지 못한다. ○ 倉庫와 軍器에 失火한 守令과 陵위에 失火한 陵官에 대해서는 이 律文을 적용하여 조사한 후 公罪로서 속죄금을 받고 기록하여 올린다. 조심하지 아니하여 倉庫를 불태운 倉吏와 庫子는 杖 100에 처한 후 그 道內의 피폐한 작은 驛(殘驛)으로 3년간 徒役(강제노동)에 처하고 사면령이 있어도 사면 대상이 되지 못한다.

○ 御史의 書啓¹³⁹에 貪贓¹⁴⁰이라고 論罪된 자에

137) 白文은 官印을 찍지 않은 公文書를 말하고 啓目은 啓本(上奏文)에 붙이는 목록이다.
 138) 還上은 還子·還穀이라고도 하는데 春窮期에 곡식을 貧民에게 빌려주고 豐年·秋收期에 이를 되돌려 받는 賑恤制度이다. 이 제도는 삼국시대부터 시행(194년 고구려)되었고, 고려 태조는 黑倉을 두어 빈민을 구제하였으며, 成宗 5년(986년), 이를 義倉으로 개칭 각 州府에 설치하였고 成宗 12年(993년)에는 常平倉을 兩京 12牧에 두어 진흥사업을 확장하였다. 조선태조 원년에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義倉을 설치할 때에는 無利子로 곡식을 빌려 주었으나 점차 수수료·자연소모량 보충 등의 명목으로 年 10~20%의 利息을 징수하였다. 文宗 元年(1451년)에는 義倉에 대한 보조기구로서 각 郡에 社倉을 두었다. 한편 世祖 4년에는 흉년을 대비하여 常平倉을 두었는데 仁祖 4년에 이를 賑恤廳에 통합하여 平時에는 常平廳으로서 물가조절을 맡고 흉년에는 진흥청으로서 곡식의 대여를 맡았다. 조선후기에는 국가재정의 피폐로 환곡이 軍과 官의 이식을 취하는 수단으로 되었고 탐관오리의 착남으로 民怨을 사게 되어 이른바 三政紊亂의 폐단으로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횡령착복 등으로 還上의 장부는 實數와 맞지 않은 虛錄이 보편화되었다(李弘植 《國史大事典》, 한국출판사, 1982, p.1775 및 《大典會通研究》 戶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 pp.44~47).

139) 御史의 書啓는 암행어사가 임금에게 文書로 보고함을 말하는데 암행어사의 별칭이 繡衣使道이므로 그의 書啓를 繡啓라고도 한다.

140) 貪贓은 公穀·公金횡령이나 受賂 및 民財를 강제로 빼앗는 등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대해서는 觀察使가 직접 살펴서 임금에게 보고하고 조사관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해당 道의 조사보고가 비록 事理에 벗어나는 것이 보여도 중요한 경우에만 의금부에서 다시 보고(覆啓)하여 재조사한다. [補] 이 경우 道에서의 조사는 허용하지 아니하며 곧 바로 律文적용을 논의한다. ○ 還上을 허위로 기록하고 田結米¹⁴¹⁾를 私私로이 쓴 경우에 구속되어 있으면서 죄가 확정·처벌되기 전(未及議處)에 赦免으로 석방되면 實犯을 추가로 조사한 후에 禁錮¹⁴²⁾한다. 의금부에서는 법률에 비추어 횡령착복·수뢰 등의 액수를 계산하고 곡식의 石數를 계산하여 吏曹로 이송하면 (吏曹에서는) 그 石數에 따라 조사해서 禁錮年限을 정하되 그 연한은 徒刑의 年限이 끝난 후에 비로소 起算한다. [補] 지방관이 횡령착복·수뢰 등의 죄를 범하면 곧 바로 이 律文을 적용하여 家奴를 구속하고 還徵(추징)한다. ○ 原從功臣은 죽을 죄(死罪)가 아니면 項鎖를 채우지 아니하고 拷問할 때에는 임금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 무릇 죄를 줄 때에는 功臣의 아들과 손자는 綱常의 죄와 賊盜¹⁴³⁾의 죄 이외로 杖刑 및 流刑 이하에 해

141) 田結米는 田稅로서 거두어 들인 곡식이 주된 것이나 그이의 均役法실시에 따른 부족분인 田結米와 大同法 시행으로 인한 貢納의 田稅化로 말미암아 貢物대신으로 받아들인 곡식 등을 모두 포함시켜 생각할 수 있다(《大典會通研究》 戶典編, 앞의 책, pp.309~484).

142) 禁錮는 지금의 禁錮刑과 개념이 다르며 罪過있는 경우에 벼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官人 資格停止刑에 해당(任官禁止)된다.

143) 賊盜의 죄는 《大明律直解》卷18 刑律 盜賊과 受贓(受賂 및 횡령착복 등)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당하는 경우에는 속죄금을 받도록 허용하고 曾孫 이하는 어느 王 때 [增] 어느 王 때를 쓰지 아니한다. 어느 功臣이라 표시를 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 原從功臣도 같다. ○ 功臣의 아들과 손자는 비록 工商賤隸라도 拷問할 때에는 임금에게 奏請(啓請)하여야 한다. 原從功臣도 같다. [補] 忠묘에 신주를 모신 配享功臣의 자손은 대대로 그 죄를 용서(世宥¹⁴⁴)받는다. ○ 橫領이나 受賂 등의 죄로 流配된 자는 功臣·議親 등으로 대우받지 못한다. ○ 아이를 밴(孕胎한) 부녀에게는 나이 70세가 된 老人의 例에 따라 刑推(刑杖으로 推問)를 면제하고 속죄금을 받는다.

○ 徒刑과 流刑 이하의 죄를 喪前에 범하여 喪後에 발각된 경우와 그 것이 喪前에 발각되었으나 喪後에 조사 처단할 경우에는 모두 조사 처단할 때(의 時勢)에 따라 속죄금을 받는다. [補] 雜犯¹⁴⁵으로서 徒刑이나 流刑을 받을 자가 獨身인 사람이고 그 사람의 부모 나이가 70세가 차지 아니하였으나 徒配나 流配된 후에 70세가 찬 경우에는 임금에게 稟議

144) 世宥란 功臣의 子孫은 代代로 罪를 용서받는다는 뜻이다. 《大明律直解》 卷1, 名例律 八議 議功條에 공신이란 “능히 敵將을 斬殺하고 敵旗를 탈취하며 萬里나 되는 먼 곳까지 추격하여 敵軍을 격파하거나 他國의 軍衆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받아 한나라의 人民을 安寧케 하며 국경을 넓히는 등 큰 공로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같은 책》 名例律 卷1 應議者犯罪에서는 議親·議故·議功·議賢 등 八議에 드는 자가 罪를 범하면 임금에게 密封한 文書로 아뢰어 지시를 받아야 召喚·訊問할 수 있고 임금이 지시를 받아 推問한 후에도 임금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죄를 의논하여 정하여도 임금이 결재를 받아야만 하도록 규정하였다.

145) 雜犯에 관해서는 《大明律直解》 卷26 刑律 雜犯에서 11가지 종류의 條項을 규정하고 있다.

하여 지시를 받아 속죄금을 받도록 허용한다. ○ 무릇 죄인의 刑을 酌量減輕 처분하여 出獄하기 前에 臺諫에서 범인의 刑量에 관하여 다투어 임금에게 上啓를 계속할 경우(臺啓爭執¹⁴⁶)에는 配所로 출발시키지 아니하나 이미 配所로 출발하였으면 그 대로 前進시킨다. 의금부(金吾)의 梲棘¹⁴⁷죄인 및 正2品 이상은 都事가 押送하여 가고 그 외는 書吏와 羅將¹⁴⁸이 品階에 따라 押送하여 간다. 刑曹의 죄인 중 徒配 이상은 京驛子가 押送하여 가서 次次(인계하여) 配所로 넘겨 준다. ○ 죄인을 押送하여 갈 都事가 실증내고 꺼리어 押送을 回避하고자 피하는 경우에는 먼저 罷職한 후 推問한다. ○ 멀리 떨어진 외딴 섬으로서 官守(官에서 경비하는 것)가 없는 곳으로는 죄인을 編配¹⁴⁹하지 아니한다. 흑산도 등 극히 나쁜 地域으로는 임금의 특별명령(特敎)이 있는 경우 외에는 定配하지 아니하고 濟州의 세 고을은

146) 臺啓爭執은 司憲府(또는 司諫院)에서 犯罪人에 대한 형벌의 적용문제로 임금에게 異議를 제기하여 다투면서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上啓하는 것을 말한다. 臺啓는 臺諫(사헌부와 사간원)의 啓란 의미인데 司憲府의 별칭이 霜臺이므로 臺는 사헌부, 諫은 사간원을 지칭한다.

147) 梲棘이란 임금의 特旨로 流配罪人에게 加하는 行刑의 한 방법으로서 중요한 國事犯에 대해서 이를 시행한다. 즉 流配된 罪人이 外出할 수 없도록 그를 가두어 둔 家屋의 주위에 가시로 울타리를 쳤다. 이를 加棘이라고도 하였다. 金吾梲棘이란 의금부에서 임금의 특명에 따라 流配罪人에게 加棘하는 것을 말한다.

148) 羅將은 西班의 京衙前으로서 의금부·사헌부·사간원·형조·병조·한성부 등 司正과 刑事업무를 맡은 관청에 소속되어 경찰·순라·看守(獄卒) 등 잡역을 맡았다. 羅將은 羅匠·所由·使令·喝導 등으로도 호칭되었으며 良人農民을 뽑아서 3교대로 나누어 1개월씩 복무시켰다. 당번 인원은 모두 460명이었는데 그중 과반수가 의금부에 배속되었다. 또 外衙前인 羅將도 있어서 各鎭에 배속되어 있었다(《大典會通研究》兵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5.12, p.109).

149) 編配는 流配人을 臺帳에 기입하는 것 또는 軍役に 充定(充軍)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명이 특히 重한 경우 외에는 定配하지 아니한다. [補] 추자도와 濟州牧으로
 는 임금의 특별명령이 있는 경우 이외는 定配하지 아니한다. ○ 濟州 세
 고을 사람으로서 流配할 자는 세 고을 안에서 相
 互 (지역을 바꾸어) 定配한다. 西北道の 죄인은 人蔘¹⁵⁰⁾에
 관한 禁令을 위반한 경우 외에는 道内の 江邊邑¹⁵¹⁾으로 相互 定配한다. ○ 서
 울과 지방의 죄인은 江華府로는 定配하지 아니한
 다. ○ 강화부에서는 流刑 이하에 해당하는 죄는
 직접 처단(直斷)한다. 開城府(의 直斷)에 관해서는 經國大典에
 (明文이) 있다. 강화부가 留守府로 승격된 후에는 역시 개성부의 例와 같이 한
 것이다. [補] 水原府와 廣州府도 같다.

○ 무릇 徒刑과 流刑 및 付處·安置¹⁵²⁾·定屬¹⁵³⁾될

150) 人蔘은 한국고유의 약용식물로서 백제의 條蔘·羊角蔘, 신라의 羅蔘, 고구려의 麗蔘
 등 삼국시대부터 山間에서 채취하였다. 人蔘은 통일신라시대이래 역대 왕조에서 중국
 황제에게 바치는 進獻品이 되었다. 즉 신라 소성왕 원년(799)에 인삼을 당나라에 바친
 이후 계속하여 朝貢品目속에 들어갔다. 고려왕조에서도 宋과 元에 인삼을 朝貢品으로
 바쳤고 조선왕조에서도 明과 淸에 대한 朝貢品目으로서 인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며
 國內需要 또한 컸다(이홍직 《앞의 책》 pp.1247~1248). 인삼은 이와 같이 國內外의
 需要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18세기 후기에 이르러서야 人工재배가 시작되었으므
 로 (《大典會通研究》戶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12, pp.414~415) 自然蔘에 의
 지하였던 오랜기간 人蔘의 品貴현상이 지속되어 높은 값으로 암거래되었으며 심지어 密
 輸出되었다. 世宗 2년 11월 判原州牧使 趙啓生의 上言에 의하면 인삼은 험준하고 막힌
 無人之境에서 採取해야 하므로 매우 고통되어 중국황제에게 보내는 進獻品이외는 작고 색
 같이 나쁜 것도 모두 收納(조선국왕에게 올리는 進上品 포함)하자고 하여 그대로 시행
 하였다(《세종실록》 권10-10, 세종 2년 11월 기사). 이와 같이 인삼은 물량확보가
 어렵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私私로운 國外流出을 엄중히 단속해야만 하여 때때로 蔘禁
 令이 발령되었다.

151) 江邊邑이란 압록강변의 의주·강계·초산·창성·삭주·위원·벽동 등을 말한다(《大
 典會通研究》兵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5.12, p.15).

152) 解説篇 11 付處와 安置 參照.

153) 定屬은 犯罪人을 配所에서 公奴婢로 삼아서 그곳 官衙에 소속시킴을 말한다. 世祖 4
 年 2月 安置人付處人과 마찬가지로 定屬人도 成年은 곧바로 定屬되었으나 未成年은 成

사람에 관해서는 刑曹에서 장부에 기록해 두며 다른 관청 및 지방에서 定配할 죄인도 형조로 공문을 보내어 장부에 기록하여 檢舉(증거수집이나 범인체포)에 참고하도록 한다. 서울과 지방의 죄인이 配所에 도착한 후로는 해당 道の 觀察使가 그 죄명과 配所에 도착한 날자를 써서 임금에게 狀啓로 아뢰어야 한다. [補] 配所로 출발하는 날자도 임금에게 아뢴다.

○ 포도청에서는 承服(自白)한 죄인을 刑曹로 이송하되 말을 바꾼 자(變辭者)는 還送하지 아니하고 날자의 차례(日次)대로 엄중히 訊問하여 自白을 받는다. ○ 지방의 死刑囚에 대해서는 각 고을의 守旣이 지정된 이웃 고을 수령과 함께 推問(同推¹⁵⁴)하며 매월 세 차례 시행(舉行)한다. 監營(巡營)에서 6·7일간 걸리는 곳이면 두 차례 舉行한다. 法式대로 하지 아니한 守旣은 推考한다. [增] 同推를 한 차례 缺한 자에게는 명령위반죄(違令律)로笞 50度を치고 두 차례나 세 차례 缺한 경우에는 稽緩制書律(《大明律直解》 吏律 卷3 公式 制書有違律의 한 항목)로 杖 100에 처하되 모두 公罪로한다. ○ 罪囚에 대하여 刑杖으로 訊問(刑訊)하기 전에 먼저 手寸¹⁵⁵의 圖形을 取하여야 하고 刑推時에는 枷(枷)을 풀어야 한다. ○ 檢屍

丁後 定屬되도록 하였다(《世祖實錄》 卷11-7, 세조 4년 2월 신묘).

154) 同推는 合同調査를 의미하는데 특히 死罪에 관하여 지방에 있어서는 관찰사가 그곳 守旣의 이웃 守旣을 同推官으로 定하여 두 守旣이 會坐해서 刑推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663).

155) 手寸은 왼손의 가운데 손가락의 첫째와 둘째 마디 사이의 길이를 재어서 그림으로 그려 놓는 것을 말한다. 죄수를 신문하기 전에 만들어 놓는데 지금의 피의자에 대한 指紋採取가 연상된다. 여하간 手寸은 左寸이라고도 하며 그의 노비 등이 대개 문서를 작성할 때 도장이나 手決(싸인)대신 쓰기도 한다.

후 즉시 모여서 推問(會推¹⁵⁶)하지 아니하거나 推問後 즉시 완결하지 아니하고 시일을 지연시킨 경우에는 당해 堂上官과 郎官을 制書有違律로 처벌한다.

○ 刑曹의 日次신문은 한달에 6차이며 3차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 缺推例에 따라 승정원에서 살펴서 推問한다. ○ 무릇 死刑囚에 대한 啓覆¹⁵⁷은 秋分後에 승정원에서 즉시 임금에게 품의하여 음력 9월과 10월 안에 擇日하여 舉行하며 죄인(死刑囚)에 대한 형집행(行刑)은 반드시 季冬(음력 12월)을 기다려야 한다. 啓覆後 立春 전에 추가로 보내진 죄수에 관해서는 임금에게 품의하여 지시를 받아 추가로 啓覆(追覆)한다. ○ 나라의 곡식을 훔친 자에 대해서는 훔친 액수를 계산하여 論罪하되 만약 그것이 사형에 해당(一罪)되면 考覆의 例에 따라서 (임금이) 직접 訊問할 것을 啓한다.

○ 무릇 中央官員과 地方官員에 대한 推考(조사)는 각각 그 관청에서 직접 공문으로 詰問하여 답변서를 받아서(直捧公緘¹⁵⁸) 法律을 적용하여 비

156) 會推는 범죄인의 推問을 命받은 官員이 合同하여 推問하는 것을 말한다.

157) 啓覆은 임금에게 上奏하여 死刑囚를 다시 심리하던 일을 말한다. 승정원에서 推問후에 즉시 임금에게 여쭙어(啓稟) 음력 9월과 10월중 날자를 골라서 시행하되 사형집행은 음력 12월에 하였다. 《審理錄》 卷1 啓覆式에 의하면 매년 10월내에 三覆을 행하는데 初覆日時에는 原任大臣·9卿·刑曹參判·刑曹參議·三司 및 6承旨 등이 黑團領을 입고 入侍하며 임금이 매번 1案을 읽고 여럿의 의견을 물은 후 判下한다고 하였다. 再覆은 刑曹의 3堂上官이 刑曹에서 開坐하여 임금의 判下를 기다린 후 三覆施行事를 다시 請한다고 하였고 三覆日의 入侍는 初覆例와 같다고 하였다.

158) 直捧公緘은 官員에게 職務上 輕微한 過失이 있거나 職務에 怠慢하였을 때에 封緘으로 된 公文書로서 詰問하여 그 官員으로 하여금 書面으로 그 事由를 開陳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緘答이라고 하며 直捧公緘이란 바로 이 緘答을 取하는 것을 말한다(조선 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664).

로소 임금에게 보고한다. 임금의 傳旨를 받들어 推考하는 것이라도 傳旨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實情을 물어서(原情) 진술을 받아야 한다. ○ 무릇 推考와 서면답변(緘答¹⁵⁹)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官人이 세 번(3度) 거부(抗拒)한 후에는 職牒을 回收하고 나와서 조사 받도록(推考)한다. 또 사건을 지연시켜서는 안될 경우에는(不遲晚) 임금에게 啓請(奏請)하여 刑杖으로 推問한다. 지방 고을의 守令이 세 번 거부하면 啓請하여 刑杖으로 推問하고 아울러 의금부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사헌부에 있어서의 書面調査가 임금의 傳旨를 받은 후 30일이 지나도(조사가) 덜된 경우에는 刑曹로 이송하여 法律에 비추어 조사하도록 한다. [增] 宗親·儀賓·文官·蔭官·武官 正1品인 자는 推考할 수 없으며 역시 서면조사(緘辭)도 하지 아니한다.

[增] 笞背刑¹⁶⁰을 폐지한다. 世宗 景壽(12년) ○ 코베는 형벌(劓鼻)과 발뒤꿈치 베는 형벌(刖足)을 금지한다¹⁶¹. 世宗 瓘(26년) ○ 絞首刑에 처할 사람을 방

159) 緘答은 주158 參照.

160) 笞背刑은 笞刑을 科함에 있어 불기에만 매를 치는 원칙에 구애되지 않고 등을 亂打하여 죽거나 廢人이 되도록 하는 혹독한 형벌이다. 英祖 원년 정월, 임금은 壓膝刑을 폐지하면서 중국에서는 漢文帝가, 우리나라에서는 世宗이 笞背刑을 폐지한 바 있다고 하였다(《英祖實錄》 卷3-30, 영조 원년 정월 정사). 사실 笞背刑은 이미 世宗 12年 庚戌에 폐지된 바 있으나 經國大典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大典通編에 처음 기재한 것이다(《大典通編》 刑典 推斷). 儒敎的인 德治主義 내지 仁愛思想을 理念으로 삼고 있었던 조선왕조에서는 國初부터 君臣간에 一笞一杖이라도 반드시 大明律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고, 笞杖·訊杖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엉덩이를 쳐야하는 데도 허리를 치고 넓적다리를 쳐야하는데도 등(背)을 때려서 人命을 傷하게 하는 일이 있어 이를 조사하도록 하였다(《太宗實錄》 권8-26, 태종 4년 10월 병신). 세종 때에는 먼저 양반의 子孫(有蔭子孫)은 비록 權務(임시직, 시보)일지라도 笞刑이나 杖刑을 科하지 말고 속죄금을 받도록 하고(《世宗實錄》 권21-1, 세종 5년 7월 기묘), 笞杖 등의 濫刑과 律外之刑의 시행을 금지하도록 거듭 주장(특히 贊成 許稠)되고 있었다(《위의 책》 권50-22-23 및 50-25, 세종 12년 11월 신유 및 12월 정묘). 그런 의미에서 笞背刑의 폐지는 어느 한 시대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망이로 쳐죽이는 것(椎殺)을 금지한다¹⁶². 孝宗 임진(3년) ○ 推鞠罪囚의 왼손에 수갑(杻)을 채우는 것을 폐지한다. 英宗 기유(영조 5년) ○ 죄인에 대한 판결문이 작성되기 전에 임금의 傳旨로 死刑(正法)하는 것¹⁶³, 죄인이 이미 죽었는데 逆律을 追後 실시하는 것, 軍法으로서가 아니고 梟首하는 것 등은 모두 금하고 폐지한다. 英宗 기묘(영조 35년) ○ 朱杖으로 치면서 訊問하는 것(朱杖撞問¹⁶⁴)을 금지한다. 비록 임금의 특별명령(特敎)이 있어도 법을 집행하는 官僚는 다투어 고집하면서 舉行하지 아니해야 한다. 英宗 기묘(영조 35년)의 下敎이다. ○ 亂

161) 劓鼻刑足은 코를 베는 형벌과 발뒷꿈치를 베는 형벌로서 조선국초 이래의 유교적인 덕치주의로 인한 寬刑策의 일환으로 세종 26년에 禁止된 것을 大典通編에 등재한 것이다. 이는 律外 刑罰로서 慣習上 古來로 傳來되었으며, 그것이 禁止되기 前에는 주로 奴婢가 나쁜 짓을 하면 그 主人이 任意로 施行하였던 것이다.

162) 絞首刑에 處할 사람을 방망이로 때려 죽인다고 함은 絞殺이나 打殺이나 죽이는 점은 마찬가지라 하여 종래 그것이 慣例化되었으나 孝宗 3年, 그것이 律外之刑이라 하여 禁止하였던 것을 大典通編에 등재한 것이다.

163) 死罪人에 대한 판결문이 작성되기 전(未結案)에 王命(傳旨)으로 사형을 집행(正刑)함은 滅口之計에 惡用된다는 特進官 洪鳳漢의 건의에 따라 英祖가 이를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英祖는 軍門梟示의 濫用과 死者에 대한 逆律의 追施 및 結案도 되기 전에 王命을 빙자하여 死刑을 집행하는 일 등의 不法性을 지적하고 그 폐지를 명령한 바가 있다(《英祖實錄》 卷94-45, 영조 35년 8월 병신). 또 《大明律直解》 卷28, 刑律 斷獄 死囚覆奏待報條에 覆奏(覆啓)의 회답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死刑을 집행한 자는 杖 80에 처한다고 하였다. 《審理錄》 卷1, 結案式에 의하면 죄인의 根脚(生年月日과 용모 및 祖上에 관한 사항)을 먼저 신문하고 그다음으로 범행사실을 자백받아 임금에게 올려 判下가 되면 담당 승지가 刑曹에 내리고 刑曹에서는 檢律로 하여금 法律을 적용하게 하고 原案에다 書目を 갖추어 의정부에 보내면 의정부에서는 開坐하여 의문점이 없을 때에 題送(刑決)한다고 했다.

164) 朱杖撞問이란 붉은 칠을 한 여러개의 긴 막대기(朱杖)로 罪人의 신체를 亂打하면서 訊問하는 것인데(沈載祐 <18세기 獄訟의 성격과 刑政운영의 변화> 《韓國史論》 34, 1995.12, 서울大, p.115) 그 慘酷함이 심하기 때문에, 또한 律外之刑(法律에 규정된 刑具가 아님)이기 때문에 영조 35년, 임금이 이를 폐지하였다.

杖刑¹⁶⁵⁾을 폐지한다. 英宗 경인(영조 46년) ○ 笞·杖·枷·杻의 길이·너비·두께·얇기 등은 大明律의 法式¹⁶⁶⁾에 準據하여 欽恤典則¹⁶⁷⁾에서 정한다. 正宗 무술(정조 2년) ○ 판결문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는데도 逆律을 적용하거나 死罪 다음의 형벌(次律 즉 流刑)로 판결문이 작성 되었었는데도 極刑에 해당하는 형벌을 科하는 것을 모두 禁하고 폐지한다. 正宗 병신(정조 즉위년) ○ 推鞠罪人에게 刑을 적용할 때에 訊問할 차례에 앞서 自白(直招)한 자 및 곧 죽을 우려가 있는 자와 혹은 가련한 정상(情節)이 있어 다시 訊問해야 할 자 등에 대해서는 委官이 임금에게 意見을 論啓하여 형집행을 정지한다. 正宗 경자(정조 4년)

○ 宗親(宗班)이 逆律을 범하여 처자식이 緣坐되어야 할 경우에 비록 本律(大明律)을 적용할지라

165) 亂杖刑은 죄인에게 杖을 亂打하는 형벌로서 價例上 도적을 다스리는데 이를 썼으나 역시 律外之刑이며 受刑人이 身體를 온전히 보존할 수 없었으므로 영조 46년 폐지하였다(《備邊司謄錄》154冊 영조 46년 6월 18일).

166) 大明律의 法式이란 《大明律直解》 獄具之圖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67) 欽恤典則은 正祖 元年 각 地方에서의 司獄이 私情에 따라 刑具를 혹은 가벼운 것을 쓰고, 혹은 무거운 것을 쓰는 한편 대개 罪人을 학대하므로 임금이 이를 가련하게 여겨서 欽恤의 政事를 베풀어 刑具를 바르게 하도록 綸旨을 반포한 것으로서 正祖 2년에 이를 刊行하였다(조선총독부, 《朝鮮圖書解題》, 조선통신사, 1932, p.81). 正祖 2年 正月 임금은 欽恤典則을 완성한 후 말하기를 丁酉年(正祖 元年) 여름에도 下敎한 바 있거니와 宋나라 때 황제가 獄吏에게 下詔하여 5일에 한번씩 檢視하고 獄舍와 刑具를 청소하도록 하며 貧者에게 給食하고 病者에게 給藥하며, 小罪는 즉시 처리하였다는 것과 조선왕조에 있어서도 역대 임금이 傳授한 心法으로서 欽恤之政을 편다고 하였다(《正祖實錄》 권5-5, 정조 2년 정월 계유).

도 (그 처자식을) 노비로 삼지 아니한다. 文廟에 從祀된 儒賢¹⁶⁸)의 嫡長孫도 같다. ○ 人倫 道德(倫常)에 관계되는 罪人은 비록 輕微한 죄일지라도 중앙관청에서는 草記하여, 지방에서는 狀啓로 임금에게 아뢰고 覆啓를 기다려서 처벌(舉行)한다. ○ 軍門에서 梟首할 죄인에 관해서는 敵과 臨戰할 때가 아니면 먼저 自白書(拷音)를 받고 다음에 임금의 傳旨를 받아야 한다. ○ 刑曹에서 重罪囚에 관한 사건을 완결할 때에는 세 堂上官이 合坐하여 舉行한다. ○ 收監된 죄수에게 칼(枷)을 씌워 空中에 매다는 (獄囚懸枷¹⁶⁹) 刑罰은 금지한다. ○ 宗親과 文官인 現職 史官¹⁷⁰) 및 侍從¹⁷¹)을 거친 자

168) 文廟에 從祀된 儒賢이란 공자의 사당에 종속적으로 모셔진 설총·최치원·안유·정몽주·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이이·성혼·김장생·송시열·송준길·박세채·조헌·김집 등을 말한다. 이들의 후손은 굉장한 영광으로 알려 남들도 그들을 품격 높은 양반으로 존경한다. 文廟에는 孔子를 正位로 하고, 顏子·曾子·子思·孟子 등 4賢을 配享하였으며 朱子 등 16인을 從享하였고(이상 中國人으로 殿內에 모심) 左丘明·司馬光 등 94인의 中國人과 함께 17인의 위 우리나라 儒賢이 東西廡에 從祀되어 있다.

169) 獄囚懸枷는 죄수에게 枷를 씌워 공중에 매다는 것을 말한다(《秋官志》 제3편 考律部 〈除律〉 禁刑).

170) 史官은 史草를 쓰던 관원으로서 임금의 言行과 政事, 백관들의 잘·잘못을 直筆하여 후세에 넘겨 거울로 삼게 하였다. 고려 때에도 藝文館과 春秋館을 두어 文章이 능통한 8인을 뽑아서 史官의 직책을 맡겼는데 한 때 供奉(정7품)이하 4인만 두었으나 공양왕 원년에 다시 8인으로 증원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예문관의 奉敎(정7품)·待敎(정8품)·檢閱(정9품) 등이 春秋館의 記事官을 겸하여 時政을 기록하는 직책을 맡았다(이홍직, 《앞의 책》, p.642 및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春秋館 記事官으로는 그의 承政院 注書(정7품)와 世子侍講院의 說書(정7품) 등도 겸직할 수 있었는데 보통 史官이라 함은 예문관의 奉敎·待敎·檢閱(모두 8명)과 승정원의 注書(2명)를 의미하였으며 (《大典會通研究》 吏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3.12, pp.297~319) 예문관의 관원 중 2명

이상의 사람과 武官인 內乘¹⁷²⁾ · 宣傳官 · 도총부의 郎官 · 闕帥(節度使) 등을 거친 자 및 현직인 사람, 蔭官으로서 돈령부의 都正 이상을 거친 사람은 殺人 및 횡령이나 수뢰 등 汚職罪에 관계되는 경우 이외는 該府(義禁府)에서 지연된 경우에 모두 刑問할 것을 請求하지 못하고 임금의 명령(受敎)에 따라 법률을 적용할 것을 곧 바로 청구해야 한다. 別軍職 · 長番인 內侍 · 醫官 2品 이상도 이 例를 적용한다. ○ 闕臣(규장각의 提學)에게는 현직과 전직임을 막론하고 刑問(刑杖으로 訊問)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項鎖(목에 채우는 쇠사슬)를 채울 수 없으며 현직자를 잡아서 推問할 경우에는 승정원에서 먼저 闕職(규장각의 관직)을 해임한다는 임금의 傳旨를 받아야 하고 該府(의금부)에서 잡아다가 가둘 수 없으며 같이 앉아(開坐) 진술을 받은 후 待命所로 내보낸다. 前職者에 대해서는 이러한 例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補] 凶年(年分¹⁷³⁾)이 매우 심한 고을로는 귀양보

씩 (처음에는 1명씩) 入侍하였고 승정원 주서는 1명씩 入直하였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狀啓나 임금이 내리는 敎書는 반드시 史官을 거치게 하여 史官이 이를 抄錄한후 六曹나 臺官에 넘겨 주도록 하였다. 또 廷請이 있으면 史官들도 같이 상소를 올렸으나 선조 21년부터 이를 폐지하였다.

171) 侍從은 임금을 측근에서 모시는 清宦으로서 홍문관의 관료 · 승정원 注書 · 世子侍講院의 說書 · 예문관의 奉敎 · 待敎 · 檢閱 등을 말한다. 그러나 예문관의 관료에 대해서는 英祖 43年 9月 영의정 金致仁의 건의에 따라 侍從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侍從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父祖에 이르기까지 많은 특전과 施惠가 있었다(《英祖實錄》권 109-21, 영조 43년 9월 경자).

172) 內乘은 內司僕寺에서 말과 수레를 맡아 보던 관직으로서 태조 원년에 설치하였다가 고종 2년에 폐지되었다(이홍직, 《앞의 책》, p.347).

173) 年分은 年分9等法을 의미하며 年分이 매우 심한 고을이란 9등급의 최하인 下下年으로 심하게 흉년이 든 고을을 뜻한다. 田分6等法과 年分9等法은 세종 26년에서 동왕

내지 아니한다(勿配). 귀양보낸 사람이 10인이 차면 道內에서 귀양온 사람이 적은 고을로 移定한다. ○ 配所는 죄인의 집이 있는 道內로는 定하지 아니한다.

【禁刑日¹⁷⁴⁾】〔原〕 서울과 지방의 각 관청에서는 임금과 왕비가 태어난 날, 왕세자의 생신, 大祭祀¹⁷⁵⁾ 및 致齋日¹⁷⁶⁾, 朔望과 上下弦¹⁷⁷⁾, 朝會와 저자를 停止하는 날(停朝市日¹⁷⁸⁾) 등을 만날 때 마

28년에 걸쳐서 만든 貢法(稅法)이다(《大典會通研究》 戶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 12. pp.447~457).

174) 解說篇 12 禁刑日 參照.

175) 大祭祀는 宗廟와 社稷 등에 대한 제사로서 국가의 제사중 가장 큰 것인데 임금이 親行하였다. 天神에 대한 제사를 祀, 地祇에 대한 제사를 祭, 人鬼에 대한 제사를 享(《國朝五禮儀》 序例, 卷1, 吉禮)이라 하였지만 이를 祭祀로 통칭하였으며 大祀·中祀(주로 正1品官이 주제)·小祀(3品官 또는 守令이 주제) 또는 大祭·中祭·小祭로 나누기도 하였다. 여하간 大祭祀인 宗廟에서의 제사는 4계절의 첫달 上旬 및 납일(음력12월 그믐날)에 지내고, 永寧殿(宗廟에서 옮겨온 임금의 神主를 모신 別廟)에서는 봄·가을 첫달 上旬에, 社稷에서는 봄·가을 중간달 첫번째 戊日 및 납일에 제사를 지낸다. 그의 宗廟와 宗廟에 버금가는 文昭殿에 있어서의 제사로서 초하루·보름날에 지내는 朔望祭와 설날·한식·단오·추석·동지 등 俗節에 지내는 제사가 있다(《大典會通研究》 禮典編, 한국법제연구원 pp.191~202).

176) 致齋는 제사지내기 직전의 일정기간(大·中·小祀에 따라 3일·2일·1일간), 통상 업무를 전폐하고 오로지 享所에서 제사에 관한 일만 보면서 정성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위의 책》 및 주180 참조)

177) 朔望은 초하루와 보름을 말하며 上弦은 음력 初 7일이나 8일, 下弦은 음력 22일이나 23일을 의미한다(《經國大典註解》 後集下 刑典).

178) 停朝市日은 임금·大妃·王妃의 흉거 등 國喪이 났을 때와 宗親 및 正2品이상 등이 죽었을 때 哀悼하는 禮로서 朝會와 저자를 停罷하는 기간을 말한다. 太宗 12年 3月 禮曹의 啓에 따라 資憲大夫(正2品)와 開城留後 이상자가 죽었을 때, 停朝·贈諡하도록 하였다(《太宗實錄》 卷23-20, 太宗 12年 3月 戊申). 종래 宗親 및 正2品 이상인 자가 죽었을 때의 停朝期日이 일률적으로 3일이었으나 世宗 15年 6月 禮曹의 啓에 따라 宗親의 경우 本服이 期年(1年)인 자에게는 3일, 大功(9개월)인 자에게는 2일, 小功인 자에게는 1일로 하고 大臣인 경우에는 議政을 거친 자에게는 3일, 기타의 1品 및 正2品 내에서 의정부 및 6曹判書를 거친 자에게는 2일, 그외에는 1일로 하였다(《世宗實錄》

다 拷問과 刑罰의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임금이 태어난 날은 그 전날과 다음날 각 하루씩도 그러하다. 위항목의 각 날자 및 24節氣¹⁷⁹⁾와 비가 개이지 아니한 때, 그리고 밤이 새기 전에는 死刑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續] 罪人の 行刑은 大祭의 齋戒日¹⁸⁰⁾과 中祀 이하¹⁸¹⁾의 親行(임금이 친히 지내는 제사)인 齋戒日이 아니면 구애되지 아니한다. 大祀와 中祀의 齋戒에 관해서는 禮典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 어두어지고 있는 초저녁

卷60-42, 세종 15년 6월 기해). 停市는 世宗 元年 9月 定宗(老上王)이 흥거하였을 때 5일간이었는데 그때 停朝는 10일간으로 停市는 停朝의 半이었다(《世宗實錄》卷5-19, 世宗 元年 9月 戊辰). 이것이 先例가 되어 그후 그대로 시행된 듯 하다. 世宗 26年 10月 임금이 승정원에 傳旨하여 停朝日에는 死刑에 관한 일을 임금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笞刑과 杖刑에 해당하는 죄도 임금에게 아뢰지 말라고 하였으며 이것을 永久한 恒式으로 하였다(《위의 책》 권106-14, 세종 26년 10월 을축). 조선후기의 停朝 停市에 관해서는 주378 참조

179) 24節氣는 冬至·小寒·大寒·立春·雨水·驚蟄·春分·清明·穀雨·立夏·小滿·芒種·夏至·小暑·大暑·立秋·處暑·白露·秋分·寒露·霜降·立冬·小雪·大雪 등이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690). 24節氣는 대체로 15일간격으로 된 季節의 구분인데 《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에 의하면 5일을 候라 하고 3候를 氣라 하였다.

180) 齋戒日은 제사를 지내기 전의 일정기일 동안 근신하면서 정성을 드리는 날을 말한다. 大祭를 임금이 직접 거행할 때에는 散齋를 4일간 하고 致齋(주176)를 3일간 하도록 하였다(《大典會通研究》禮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12, pp.195~196). 大祭(大祀)의 齋戒日과 中祀이하의 親行(임금이 예외적으로 주관하는 제사)의 齋戒日에는 罪人에 대한 行刑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여하간 齋戒에는 散齋와 致齋가 있는데 世宗 원년 8월 禮曹의 啓에 의하면 安神祭의 경우 前享 3일 중 散齋가 2일로서 正寢에서 행하고 致齋가 1일로서 享所에서 행한다는 것과 대체로 散齋에는 일을 종전대로 보면서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않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않으며 弔問이나 病問安을 가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行刑을 하지 않고 刑殺文書에 判書(사형판결서 작성)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나쁜일에 관여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또 致齋는 오직 享事만을 행한다는 것이다. 무릇 제사에 참여하는 자는 前享 2일에 모두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으며 陳設 前享 2일에는 守殿者는 殿內를 청소한다고 하였다(《世宗實錄》卷5-3, 世宗 元年 8月 庚辰).

181) 大祀(大祭)와 中祀 이하에 관해서는 《大典會通研究》禮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 12, pp.192~196 참조.

의 行刑은 법의 뜻에 어긋남으로 밤이 새기 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예에 따라 아침을 기다려서 行刑한다.

【濫刑¹⁸²⁾】〔原〕官吏가 濫刑하면 杖 100 徒 3년에 처하고 그로 인하여 致死하게 되면 杖 100을 친 후 영구히 官員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永不敍用).

〔續〕王命을 받고 지방으로 나간 官員(外方奉使者)과 正2品 이상인 자 및 의정부와 사헌부의 官員 이외는 用刑할 수 없다. ○ 朝官을 지낸 사람에게는 觀察使와 節度使가 棍杖刑을 科할 수 없다. 軍務로 인한 경우에는 狀啓로 임금에게 아뢰고 후에 棍杖을 칠 수 있다. ○ 비록 王命을 받은 使臣일지라도 私私로운 일(私事)로 殺人한 경우에는 역시 死刑에 처(償命¹⁸³⁾)한다. ○ 서울과 지방의 官吏가 不法으로 用刑한 경우에는 비록 우연히(邂逅¹⁸⁴⁾) (受刑者

182) 濫刑은 형벌권행사를 남용하여 함부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大明律直解》 卷28, 刑律, 斷獄의 故禁故勒平人條에서 「무릇 관리가 사사로운 원한을 품고 故意로 無罪한 사람(平人)을 囚禁한 경우에는 杖 80에 처하며 致死하게 한 경우에는 絞刑에 처한다고 하였다. 또 《위의 책》 권28 刑律 斷獄의 陵虐罪囚條와 官司出入人罪條 其他에 규정을 두어 함부로 죄수를 확대하거나 형벌권행사를 남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世祖 7年 4月 임금이 刑曹에 傳旨하여 죄수가 獄中에서 致死한 경우에는 그 관리를 죄주되 赦免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고 하였다(《世祖實錄》 권24-6, 세조 7년 4월 을유).

183) 償命은 殺人者는 자기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니 死刑에 處한다는 뜻이다.

가) 죽게 된 경우에도 이를 分揀¹⁸⁵⁾하지 아니하나 그 上官의 명령을 받고 행한 下屬(소속된 하급관리)은 처벌받지 아니한다. 經國大典에서 刑을 濫用(濫刑)하여 殺人한 경우에는 영구히 官員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평생 동안 禁錮한다는 뜻임으로 歲抄¹⁸⁶⁾ 때에 써올리지 아니한다. ○ 각 고을의 鄉所(座首와 別監 등)·軍官·面任·里任 등이 笞刑이나 杖刑으로 殺人한 경우에는 私私로운 뜻에서 나온 것이라면 법으로 처단(死刑)하고 공적인 일(公事)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濫刑 여부를 조사하여 輕重을 참작해서 죄를 정하되 色吏(담당 아전)는公私를 막론하고 無罪人(平人)을 서로 죽인 예에 따라 처벌한다. ○ 포도청에서 죄인을 주리트는 刑(剪刀周牢之刑¹⁸⁷⁾)은 엄금한다. ○ 竊盜犯이 아닌 자에게 足杖을 科하는 경우·軍務 이외로 棍杖을 쓰는 경우· 守令이 圓杖¹⁸⁸⁾을 쓰는 경우· 권세있는 집안에서

184) 邂逅는 우연히 서로 만난다는 뜻인데 故意가 아님을 의미한다. 또 受刑者가 고문을 당하여 상처를 입었더라도 다른 病으로 죽었을 경우에도 여기 해당한다.

185) 分揀은 사물의 선악·시비·크고 작은 정도 따위를 가리어 헤아리는 것을 말하거나 犯罪의 情狀을 살펴서 죄를 용서하여 결정함을 뜻한다.

186) 歲抄는 都目政이 있는 때(정기 인사이동 때) 吏曹와 兵曹에서 임금에게 官員들의 성적을 적어 올리는 것 또는 任用하는 것과 軍兵들의 결원을 보충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大典會通研究》兵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5.12, pp.41~42).

187) 剪刀周牢之刑은 포도청에서 죄인의 양다리를 묶어서(周牢) 그 사이에 두 자루의 막대기(木棒)를 끼워서 가위(剪刀)모양으로 벌려서 비트는 혹독한 형벌이며 주로 도적의 신문에 사용한다. 흔히 이를 주리(주뢰)를 튼다고도 하는데 본래 法定 刑罰이 아님으로 엄금한다는 것이다. 剪刀周牢刑은 戊申亂 때 포도청에서 사건을 移送받아서 역적을 다스리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영조실록》 권31-33, 영조 8년 6월 을해).

188) 圓杖은 訊杖 기타의 刑杖과 달라서 受刑者에 대하여 치는 부분이 넓적하지 않고 둥근 圓木 그대로이기 때문에 致死케 하는 수가 많았다. 이는 法規定 밖의 刑具로서 盜賊을 막자고 사용하게 된 것이나 도적이 아닌 사람도 도적으로 지목받아서 圓杖을 맞고 죽는 수가 많아서 예종 원년 9월 임금이 의금부와 형조에 傳旨하여 盜賊일지라도 情狀이 명백하고 또한 自白하지 않은 경우에만 圓杖을 쓰되 서울에서는 임금에게 事由를 갖

私私로이 刑罰을 쓰는(私門用刑¹⁸⁹) 경우 등은 모두 濫刑律로 論罪한다. ○ 各營의 裨將이 棍杖을 쓰는 경우에는 무거운 형벌로 다스린다. 지방관이 죄있는 자를 論罪하여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罷職하고 해당 營門에서 이를 檢察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推考(推問하여 조사함)한다.

[補] 하루에 杖은 100度を 넘을 수 없다.

【偽造¹⁹⁰】 [原] 도장(印信)을 偽造한 자는 도장

추어 啓請하도록 하고 지방 守令은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매계절 끝달에 圓杖으로 고문할 사람의 이름과 죄상을 임금에게 보고하게 하였다(《예종실록》 권7-21, 예종 원년 9월 기해). 성종도 즉위년 12월 형조에 傳旨하여 圓杖을 쓰지 않도록 하였다(《성종실록》 권1-8, 성종 즉위년 12월 계축). 그러나 성종 19년 윤정월 임금은 土民(백성)이 土主(守令)를 쓴 사건에 대하여 (일부는 杖下에 죽었고 나머지를) 圓杖으로 速決하고자 하면서 이는 亂臣賊子와 무엇이 다른가라 하고 圓杖이나 烙刑을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지만 大臣들이 반대하였다(《위의 책》 권212-6, 성종 19년 윤정월 갑술). 그후에도 지방의 죄수 중, 不服者(자백하지 않은 자)에 대한 圓杖의 사용이 있어서 中宗 11년 2월 임금이 그 잘못을 지적하였다(《中宗實錄》 卷24-16, 중종 11년 2월 갑술). 영조 9년 12월 임금은 歲抄(정기인사) 때 죄수를 함부로 죽인 官員을 賊吏(不正官員)와 같이 취급한다는 것과 地方官이 圓杖을 쓰는 것이나 亂杖을 치는 것 등은 모두 法外의 刑임을 엄히 신칙한다고 하였다(《영조실록》 권36-22, 영조 9년 12월 갑인). 영조 37년 8월에도 임금은 지방에서 圓杖을 쓰는 것을 금하도록 지시하였다(《위의 책》 권98-9, 영조 37년 8월 을해).

189) 私門用刑이란 권세있는 집안에서 사람을 사사로이 감금하거나 형벌을 加하는 것(私刑)을 말한다.

190) 《經國大典》刑典 偽造에서는 印信(도장)과 楮貨의 偽造만을 규정하였는데 《續大典》에서 中脯의 私造·錢文의 私鑄·假銀의 打造·號牌의 偽造·宰相의 書簡을 偽造하는 것 등을 추가하였다. 《大明律直解》 卷24, 刑律 詐僞 偽造印信曆日等條에서 印信偽造犯을 최고 斬刑에 처하게 함은 《經國大典》의 규정과 같으나 위 明律의 偽造寶鈔條에서 寶鈔(紙幣)를 위조한 경우에는 최고 斬刑에 處하도록 하였지만 經國大典에서는 絞刑에 처하도록 하였다. 반대로 위 明律의 私鑄銅錢條에서는 銅錢을 私鑄한 자를 絞刑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續大典에서는 不待時斬刑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大典通編》에서 宮家의 파견원이 궁가의 印章을 몰래 찍어서 關文이나 牒報를 위조한 경우에 엄중히 刑杖을 친 후 멀리 流配하도록 하였다. 위 明律의 詐僞制書條에서는 임금의 詔書를 위조한 자에게는 최고 斬刑에 처하고 官廳의 문서를 위조(서명을 위조하거나 印信을 盜

의 글자(印文)가 비록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斬刑에 처하고 妻子는 영구히 여러 고을의 노비로 소속 시키며 위조범을 잡거나 신고한 자에게는 범인의 財産을 준다. ○ 종이돈(楮貨¹⁹¹)을 僞造한 자는 絞首刑에 처하고 그러한 자를 잡거나 신고한 자에게는 官에서 正布¹⁹² 250필을 賞으로 주

用하는 등)한 경우에는 최고 杖 100, 流 3000里 또는 杖 100, 徒 3년에 처하도록 하였다.

191) 楮貨는 닥나무로 만든 종이돈(紙幣)이다. 紙幣를 중국에서는 寶鈔라 하였으며 漢나라 때의 楮幣法에서 비롯되었고 唐代에도 시행되었다고 하며(《太宗實錄》 卷6-9, 太宗 3年 8月 乙亥) 宋나라를 거쳐서 元나라 世祖 때 中統寶鈔를 만들어 諸路에 通行시켜 稅金으로도 받았다. 明나라에서는 太祖 때부터 寶鈔를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공양왕 3년에 楮貨를 만든 것이 紙幣制 導入의 효시가 된다. 조선시대에는 太宗 元年(1401)에 司贍署를 두고 楮貨를 발행하였는데, 太宗 2年 正月부터 3年 9월까지, 또 太宗 10年 7월부터 世宗 7年 正月까지 通用되었고, 다시 世宗 27年 12월부터 《經國大典》반포시까지 시행되었지만 兌換性이 약한 所以로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 《續大典》에서 이를 삭제하였다. 米布와의 交換比率은 太宗初에는 楮貨 한장에 5升布 1필, 米 2斗였으나 太宗末 世宗初에는 米 1斗로 가치가 떨어졌으며 《經國大典》戶典 國幣條에서는 米 1升으로 되었다(南晩星, 《國譯 大明律直解》, 法制處, 1964, p.275 및 이태진외 4인, 《앞의 책》, p.233).

192) 正布는 5升으로 짠 삼베(麻布)이다. 1升은 80울이므로 400울로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三國時代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麻布를 貨幣로 삼았으며 5升布를 썼는데 그후 奸僞가 날로 심하여 3升布가 유통하는 등 폐단이 있었다(《太宗實錄》 권6-10, 태종 3년 8월 을해). 正布 1필의 값은 조선국초에는 米12~15斗(五綜布 4필×3·4斗), 豆28~32斗였으나 世宗 19年 2月 당시에는 米5·6斗, 豆 不過 15斗이므로 穀價가 너무 높으니 앞으로는 米는 7斗5升, 豆로는 15斗로 改定하자고 하였다(《世宗實錄》 卷76-13, 世宗 19年 2月 己巳). 또 世宗 29年 正月의 諸司奴婢身貢法에 의하면 所耕田 收稅 1石 이상을 全貢이라 하였는데 이를 木綿布로 환산하여 2인이 1필을 바치게 하고 綿紬는 3인이 1필, 正布는 1인이 1필을 내게 하여 正布對 綿布의 비율이 2:1임을 나타내고 있다(《위의 책》 권115-3, 세종 29년 정월 계유). 正布는 태종·세종 年間의 楮貨·銅錢의 通用政策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억제되기도 하였으나 그 역할이 컸으므로 《經國大典》戶典 國幣에서 楮貨와 함께 國幣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후 綿布의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綿布가 正布로 통칭되었다고 한다(이태진외4인 《앞의 책》 p.233).

며 전부를 내주어 고르게 나누도록(都給平分) 한다. 또한 犯人の 財産을 준다.

[續] 祭祀에 소용되는 中脯¹⁹³를 사사로이 만들거나 사서 바치는(貿納) 자는 모두 一律(死罪)로 論罪한다. ○ 사사로이 錢文을 鑄造한 경우에는 匠人 및 助役人을 모두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斬刑하며, 主犯과 共謀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한 자도 역시 一律(死罪)로 論罪하고 火爐를 설치하였으나 未遂에 그친 자는 한등 낮은 流刑(次律)으로 論罪한다. 그러한 자를 잡거나 신고한 사람은 強盜를 잡은 예에 따라 상 주도록(論賞) 한다. ○ 가짜 銀을 두드려서 만든 자는 私鑄錢律로 論罪한다. ○ 도장(印信)을 위조하여 새기는 자(刻造者)와 篆文을 模造하여 그린자는 모두 一律(死罪)로 論罪한다. 戶長印을 위조한 자는 멀리 떨어진 외딴 섬으로 보내어 종으로 삼으며 赦免 對象이 될 수 없다. ○ 號牌¹⁹⁴를 偽造한 자는 印信偽造律로 論罪한다. ○ 宰相의 書簡을 偽造하였을 때에 관계되는 事案이 중요한 경우에는 먼 邊境지방으로 定配한다.

[增] 宮家の 파견자가 궁가의 印章(圖署)을 몰래 찍어서 關文이나 牒狀을 偽造한 경우에는 엄중히

193) 中脯는 나라의 제사 때 쓰던 魚肉의 脯이다. 祭物은 정성이 깃들어야하므로 私私로 이 만들어 팔거나 또는 이를 사서 바치는 행위자를 엄벌하도록 하였다.

194) 解説篇 31 號牌 參照.

刑問한 후 멀리 귀양 보내고 營邑에서 그 것을 숨기고 아뢰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각되는 대로 엄중히 죄를 조사(鞫問)한다.

【恤囚¹⁹⁵⁾】〔原〕 서울에서는 사헌부,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감옥의 죄수를 檢察한다. 罪囚가 죽으면 典獄署에서 刑曹에 보고하고 형조에서는 漢城府에 공문을 보낸다. 義禁府에서는 직접(한성부로) 공문을 보낸다. 지방에서는 守令이 인근 고을 수령에게 공문을 보내어 檢屍¹⁹⁶⁾하고 사실을 조사하여야만 卹恤로 埋葬이 허용된다. 그 致死의 근본 원인과 救療의 形狀을 한성부와 관찰사가 임금에게 보고(啓聞)한다. 무릇 檢屍는 檢屍圖¹⁹⁷⁾에 의한다. ○ 당해 官吏가 救恤하지 아니하여 (죄수가) 많이

195) 恤囚는 죄수를 救恤하는 것이다. 世宗 13年 6月 恤刑教旨를 새로 인쇄하여 서울 및 지방의 관료와 宗親 중 東班 5品 이상, 西班 3品 이상자에게 나누어 주었다(《世宗實錄》 卷52-39, 世宗 13년 6월 신해). 세종 30년 8월 임금이 各道 監司에게 諭示하기를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구속되어 있지만 庇護하지 않으면 非命橫死(橫罹天札)할 수 있으므로 그 庇護條件을 經濟六典에 싣고 또 여러번 傳旨를 내렸지만 官吏들이 이를 잘 奉行하지 않아서 죄수들이 疾病으로 죽으니 이를 잘 檢察하라는 것과 매년 4월에서 8월까지 감옥에 새로 길어온 甕수로 자주 물을 바꾸어 주고 5월에서 7월 10일까지 한차례, 원하는 바에 따라 죄수를 목욕시키며, 매월 한 차례 원하는 바에 따라 머리를 감게 하며 10월에서 정월까지의 짚을 감옥안에 두껍게 깔아 주도록 하라는 것이었다(《위의 책》 권121-39, 세종 30년 8월 무인). 成宗 6年 8月 徐居正과 柳洵에 의하여 恤刑教書(초안)가 製進되었고(《成宗實錄》 권58-14, 성종 6년 8월 기해), 또 成宗 6年 11月 刑曹의 啓에 따라 여러 고을의 獄囚들이 한달내에 죽은 수가 州府는 4인, 郡縣은 3인이면 그 고을 守令을 一階級 강등하도록 하였다(《위의 책》 권61-3, 성종 6년 11월 임자).

196) 檢屍는 變死者의 시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世宗 24年 2月 司律院의 보고에 의거하여 刑曹에서 啓하기를 무릇 檢屍는 서울에서는 各部官吏가 함께 하고 지방에서는 그 고을에서 行하면서 三班 首吏가 初檢을 하고 守令이 復檢을 하였는데 서울과 지방이 각각 다르니, 앞으로는 初檢官을 서울에서는 그 部의 官吏가, 지방에서는 守令이 맡고, 復檢官은 서울에서는 한성부 관리가, 지방에서는 인근 守令이 맡도록 하자는 것이었다(《世宗實錄》 권95-25, 세종 24년 2월 무오).

197) 檢屍圖는 無冤錄의 檢屍格例에 준하여 世宗 18년에 「檢屍狀式」이란 이름으로 한성부가 처음 간행하고 (이태진외 4인 《앞의 책》 p.691 및 沈羲基 〈朝鮮時代의 殺獄에 관한 研究〉(I), 부산대 《法學研究》 25의1, 1982, pp.5~7), 다시 세종 21년 2월

죽게된(物故¹⁹⁸) 경우에는 엄중히 論罪한다. ○ 비록 구속 수감된 사람(監禁人¹⁹⁹)이 아닐지라도 拷問 後에 죽은 경우에는 임금에게 보고한다. ○ 刑으로 죽은 사람을 거두어 葬事지낼 자가 없는 경우에는 官에서 묻어준다. 만약 獄舍가 堅固하지 아니하거나 修理하지 아니하여 비가 새거나 바람이 通하는 경우 및 罪囚를 侵害하고 虐待하는 등의 일이 있으면 杖 100에 처한다. ○ 罪人の 罪名과 처음 구금한 날자, 拷問한 회수와 罪를 決定(判決)한 건수 등을 각각 해당 관청에서 每 10일마다 기록하여 임금에게 보고하고 지방에서는 계절의 끝달에 임금에게 보고한다. 訴訟事件의 판결(決訟²⁰⁰)도 같다. ○ 몹시 춥거나 극히 더울 때에는 11월 초1일에서 정월 그믐날까지와 5월 초1일에서 7월 그믐날까지 이다. 事件이 人倫道德(綱常)이나 橫領 瀆職 盜賊 등에 관련되어 男子가 杖 60 이상, 女人이 杖 100 이상에 처하게 될 경우 이외에는 기타의 범죄로 杖 100 이하에 처하게 될 때에는 모두

한성부에 명령하여 「檢屍狀式」을 刊行하도록 하고 또 각도 관찰사 및 濟州 安撫使에게 傳旨하여 그 刊板을 模印하여 道內 각 고을에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世宗實錄》 권 84-15, 세종 21년 2월 을묘).

198) 物故는 죽는다는 뜻이다. 그 語源은 鬼物과 같이 오래된 것, 또는 그 服用之物이 모두 낡은 것, 혹은 物은 無요, 故는 死니 死者로서 다시 일할 수 없게 된 자 등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經國大典註解》 後集 上; 吏典).

199) 監禁人은 구속 수감된 사람을 말한다. 《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에 監은 囚(구속)이며, 禁은 사람이 있는 곳을 제한(감금)하는 것이라 하였다.

200) 주23 (決訟) 참조. 決訟은 민·형사의 당사자소송의 판결인 점에서 官에서 糾問하여 죄를 결정하는 判決인 決罪와 구별된다.

속죄금을 받으며 杖刑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들어 준다²⁰¹⁾.

[續] 獄이란 것은 죄있는 자를 懲戒하는 곳ियो 본래 사람을 죽게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혹독한 추위와 심한 더위로 얼거나 굶주리며 병들어 간혹 非命으로 죽게 되는 수도 있으니 중앙과 지방의 官吏들로 하여금 監獄을 깨끗이 청소하고 질병을 치료하도록 하며 養護할 집안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官에서 옷과 양식을 주도록하되 만약 게을러서 (王命을) 받들어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엄중히 糾察하여 다스리도록 한다. 英宗 乙卯年(영조 11년)의 下敎이다. ○ 重한 罪囚가 아니고 罪名이 약간 가벼우며 身病이 극히 重한 자인 경우에는 月令醫²⁰²⁾가 診察(看審)하여 典獄官에게 보고하고 전옥관은 이를 刑曹에 보고하여 保釋(保授²⁰³⁾)으

201) 成宗 12年 10月, 임금의 刑曹·義禁府·漢城府·司憲府·兵曹·都摠府에 傳旨하기를 極寒 極熱時에 만약 刑杖을 쓴다면 반드시 人命을 傷하게 할 것이므로 11月 初1日부터 正月 그믐날까지와 5月 初1日부터 7月 그믐날까지는 事件이 綱常이나 賊盜에 관계되어 杖 60 이상에 처해졌을 경우에는 法律에 따라 시행하고, 笞 이하는 속죄금을 받도록 하며, 女人이면 杖 90 이하는 속죄금을 받고 雜犯으로 杖 100 이하를 집행할 경우에도 속죄금을 받도록 하되 가난하여 속죄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원하는 바에 따라 杖刑을 받도록 하여 준다는 것이었다(《成宗實錄》 권134-9·10, 성종 12년 10월 을묘).

202) 原文의 月令은 月令醫를 말하며 典醫監에 소속된 當番 醫師로서 여러 감옥을 순회하면서 병든 죄수를 구호하는 일을 하였다.

203) 保授는 罪人을 언제든지 부르면 되돌려 보내줄 것을 조건으로 親族에게 내주는 것, 즉 친족에게 保證시켜서 釋放하여 내주는 것으로서 保釋과 비슷하다.

로 잠시 釋放(姑放)한다. 義禁府의 罪囚이면 月令醫가 의금부에 곧 바로 보고하고 의금부에서는 임금에게 품의하여 지시를 받아(啓稟) 保釋으로 석방한다. [補]病勢가 危重할 경우에는 한편으로 보석하여 석방하고 한편으로 임금에게 품의한다. ○ 死刑囚 이외는 親喪을 만난 자는 成服²⁰⁴⁾ 때까지 임금에게 품의하여 보석으로 석방한다. 定配된 죄인이 親喪을 만났거나 承重喪²⁰⁵⁾을 만난 경우에는 휴가를 주어서 本家에 돌아가서 葬禮를 치르고 3개월이 지난 후에는 定配된 곳으로 돌아 오도록 출발시킨다. ○ 무릇 죄인을 고문하거나 엄중히 刑問할 때에는 임금의 특별한 명령에 의하여 달리 취급할 경우(別判付²⁰⁶⁾) 이외에는 모두 通常의 例에 따라 刑杖을 치면서 推問(刑推)한다.

[增] 親鞫과 庭鞫²⁰⁷⁾을 막론하고 큰 비나 맹렬한

204) 成服은 初喪났을 때 처음으로 喪服을 입는 것을 말한다. 喪服은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기 위하여 喪主와 일정범위(同宗8寸, 外宗4寸이내 등)의 친족이 입는다(《大典會通研究》 禮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12, p.169). 여기서는 父母喪을 만났을 때 收屍→招魂→發喪→奠(이상 初終)→襲→小殮→大殮 다음날에 成服하게 되며(죽은지 4일 되는 날) 成服 다음에 治葬→遷柩→發輓→運柩→下棺→成墳→反哭하게 되는 것이다(《위의 책》, p.170 와 李締(숙종 때 사람) 《四禮便覽》 1844 木版本 卷3 및 卷4). 小斂과 大斂에 관하여 世宗 5年 10月 禮曹에서 啓하기를 古制에는 天子는 3일에 소렴, 7일에 대렴, 諸侯는 3일에 소렴, 5일에 대렴, 사대부는 2일에 소렴, 3일에 대렴한다고 하였다(《世宗實錄》 권22-2, 세종 5년 10월 을묘).

205) 承重喪이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嫡長孫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初喪을 치르고 斬衰 3年服(원래는 期年인 1年服)을 입는 것을 말한다(《經國大典》 禮典 五服 本宗).

206) 別判付는 임금의 특별한 명령에 의하여 그 취급방법을 특별히 通達하는 것을 말한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670).

207) 親鞫은 임금이 鞫廳(闕庭 즉 궁궐안에 설치된 法庭)에 親臨하여 罪人을 鞫問하는 것을 말한다. 親鞫한다는 명령이 있으면 處所 및 궁성 호위를 임금에게 여주고 참석해야

더위를 만나게 되면 訊問하는 곳에 草菴이나 假家²⁰⁸를 설치한다. 正宗 己亥 (정조 3년) ○ 현재 감옥에 收監 중인 죄수(時囚²⁰⁹)를 5일마다 기록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

[補] 流配되는 죄수의 家屬²¹⁰이 따라 가는 것을 허락한다. ○ 가벼운 죄를 범한 죄수가 석방된지 얼마 지난 후에 도루 收監하면 堂上官에게는 엄중히 죄를 조사(鞫問)하고 郎官은 먼저 해임한 후 잡아가며 아전(下吏)은 刑杖을 친 후 귀양(刑配) 보낸다.

〔逃亡²¹¹〕〔原〕移住시킨 백성(徙民²¹²)이 도망친

할 人員(現任大臣 및 前任大臣과 의금부 당상관, 사헌부·사간원의 官員, 좌우 포도청의 大將)을 王命으로 부른다(命招). 大臣 중 1인에게 명하여 委官을 삼았으며 問事郎은 의금부에서 8인을 差出한다. 親鞫의 장소는 때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慶熙宮 金商門內 또는 昌德宮 肅章門內 혹은 昌慶宮內 司僕寺 등이다. 또한 임금의 特命으로 禁衛營에서 親鞫할 때도 있다. 事變假注書(속대전에서 신설)는 親鞫에 入侍하여 文書를 관장하며 親鞫을 罷한 후에 담당承旨와 義禁府堂上 問事郎 등은 친국장소에 그대로 남아 推案을 正書하여 推案櫃에 넣어 封한 다음 承傳色으로 하여금 入啓하도록 한다(《銀臺條例》 刑攷 親鞫 및 徐壹教, 《朝鮮王朝刑事制度的 研究》, 博英社, 1974, pp.269~281).

庭鞫은 의금부 또는 사헌부에서 王命에 의거 罪人을 鞫問하는 것을 말한다. 鞫問장소는 殿庭 즉 궁전앞뜰이며 죄인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절차는 대체로 親鞫에 依하되 委官이 임금에게 보고하며 또 庭鞫에는 임금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호위절차는 없다. 그러나 임금의 특명이 있으면 호위문제를 啓稟하며 問事郎은 6인이다(《臺條例》 刑攷 庭鞫).

208) 草菴은 띠·부들 등의 풀로 거적처럼 엮어서 지붕을 한 것을 말하고 假家は 임시로 지은 집 또는 가게를 말한다.

209) 時囚는 현재 감옥에 수감중인 죄수를 말한다.

210) 家屬은 家族과 그 家族에 소속된 노비 등 종속적인 사람을 말한다.

211) 逃亡條에서는 徙民政策에 의거 이주시킨 백성 또는 특정지역에 노비로 永屬되거나

경우에는 그 妻子를 아주 작은 驛(殘驛)의 노비로 소속시키고 붙잡히면 戶首²¹³⁾는 斬刑에 처하되

徒刑·流刑·付處·安置·充軍·定役 등으로 특정지역에 거주제한 또는 감금시킨 자가 도망치거나 감옥에 수감된 죄수가 탈옥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大明律直解》 卷27, 捕亡條에 있는 여러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刑罰을 더 무겁게 한 것이다.

- 212) 徙民은 조선초기 새로 收復한 西北地方의 國土에 世宗·世祖·成宗代에 걸쳐서 他道民을 이주시켜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고자 한 정책으로 인하여 이주된 백성이다. 平安道와 咸鏡道 등 西北地方에 이주할 백성의 抄定은 富實하고 人丁이 많은 戶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었으나 실제상, 여러 고을에서 遷徙를 꺼리어 3丁 未滿의 殘戶가 뽑히고 4丁 이상의 富實多丁인 戶는 거의 빠졌다고 한다(《世祖實錄》 卷22-33, 세조 6년 12월 계미·갑신). 徙民은 죄를 범하여 전가족이 평안도와 함경도로 강제이주된 경우도 있으나(주107 및 해설편 10, 全家徙邊 參照) 自願에 따른 모집으로 入屬하게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세종 때에는 南道民의 沿邊移住를 장려하기 위하여 無役을 전제로 戶口成籍을 보류하는 등 西北 兩界의 徙民에 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였다(《世宗實錄》 卷76-29, 世宗 19年 3月 己酉 및 李樹健〈朝鮮初期 戶口研究〉, 《韓國史論文選集》 朝鮮前期篇, 一潮閣, 1983, pp.106~125). 그러나 世祖代에 이르면 徙民 중 도망자가 많이 생겨서 그들을 즉시 刷還하도록 하고 즉시 刷還하지 아니한 守畝은 파직하여 내쫓고 도망자를 받아들인 戶首는 制書有違律로 論罪하도록 하였다(《世祖實錄》 卷22-21, 世祖 6年 11月 甲申). 世祖 6年 閏 11月, 兵曹에서 啓한 下三道 敬差官의 徙民事目에 의하면 西北道로 徙居할 戶數는 敬差官과 관찰사가 같이 의논하여 分定하되 3丁 이상의 재산있는 자를 뽑고 이를 기피한 자는 죄주어 驛吏를 삼도록 하며 도망자와 도망자를 숨겨준 자는 물론, 즉시 追捕하지 않은 守畝 등도 처벌한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22-23·24, 세조 6년 閏 11월 갑진).
- 213) 戶首는 戶主 또는 家口主와 같은 뜻으로도 쓰이나 그 성격은 다르다. 戶에는 法制戶와 自然戶(家口)가 있는데, 戶主 또는 家口主는 家族으로 구성된 自然戶의 대표이나 戶首는 土地나 壯丁數에 의하여 몇세대로 구성 또는 분할된 法定戶의 代表로서 正軍 또는 立役하는 자를 지칭한다(윤국일 《앞의 책》 p.472). 즉 法制戶는 대체로 役이나 課稅의 부과대상으로 丁을 기본단위로 하였다. 예종 원년 6월 梁誠之는 三丁爲一戶를 주장하면서 그중 1인을 戶首로 삼아 治兵케 하고 1인은 率丁으로 하여 治農케 하며 1인은 餘丁으로 하여 平時에는 賦役을 바치게 하고 行軍時에는 輜重을 갖게 하자고 하였다(《睿宗實錄》 권6-28, 예종 원년 6월 신사). 戶의 규모는 自然戶의 경우 신분과 富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으며 戶籍은 대체로 自然戶 그대로를 나타내고 있어 15명 이상 수십명 家口인 大戶(上戶)와 10명 이상의 中戶, 5명 이상인 下戶, 家口 1·2명인 不成戶가 있었고(《增補文獻備考》 권161, 戶口考1 및 이수건 〈앞의 글〉 pp.111~113) 丁數(民丁 16세 이상 60세 이하)를 기준으로 大·中·小戶를 나누면 10丁 이상을 大戶, 5丁 이상을 中戶, 4丁 이하를 小戶라 하였다(《太祖實錄》 卷2-5, 太祖 元年 9月 壬寅). 17·18세기의 戶籍을 찾아보아도 노비 수백명과 大家族을 거느리고 있는 戶主가 있는가 하면 한 두 명만의 家族인 殘殘戶가 있었다. 세조 7년의 《經國大典》 刑典(辛巳大典)

그가 스스로 나타나면 원래 移住된 곳으로 되돌려 보내고 妻子를 석방한다²¹⁴). [增] 지금은 폐지되었다. 아래도 같다. ○ 강도죄를犯하여 영구히 奴婢로 定屬된 자가 두번 (도망죄를) 범행하면 斬刑에 처하고, 徒刑·流刑·付處(주거제한)·安置(監禁)²¹⁵·充軍(고된 軍役に 충당)·定役(身役に 定屬)²¹⁶ 및 절도죄로 인하여 영구히 (노비로) 定屬된 자가 세번 (도망죄를) 범하면 斬刑에 처한다. 徙民의 도망을 받아 들인 사람은 全家徙邊²¹⁷에 처하며 5명 이상 도망친 자가 있는 고을의 守令은 파직하여 내쫓고(罷黜²¹⁸) 그들을 관할하는 사람(所管人) 즉 서울이면 首領²¹⁹, 지방이면 勸農官²²⁰·里正·統主²²¹) 및 가까운 이웃 등이 알면서 신

에 의하면 徒刑·流刑·付處·安置·充軍·定役に 처한 자와 徙民이 도망친 경우에는 斬刑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예종실록》 권3-29, 예종 원년 2월 계묘), 成宗 6年 11月 임금이 刑曹에 傳旨하여 앞으로는 徙民의 逃亡이 3犯이라야 經國大典대로 施行(斬刑)하도록 하였다(《成宗實錄》 권61-3, 성종 6년 11월 계축).

214) 妻子를 석방한다고 함은 戶首가 스스로 나타나면(自首하면) 그 妻子를 殘驛의 奴婢로 계속 남겨두지 않는다는 뜻이다(《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215) 付處와 安置는 解說篇 11 (주152) 參照.

216) 充軍에 관해서는 주92 參照.

定役은 특정한 身役을 정하는 것인데 형벌로 科해지는 定役은 변방지역의 驛吏나 官奴婢로 박아 넣는 것이 대부분이었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693).

217) 解說篇 10 全家徙邊 (주107) 參照.

218) 罷黜은 파직하여 내쫓는다는 뜻이다. 《經國大典註解》 後集 上, 吏典에 黜은 貶下也라 하여 이를 나타내고 있다. 貶下는 강등이란 뜻도 있지만 貶斥과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19) 首領은 管領으로 생각된다. 서울 5部 밑에 坊이 있었으며 管領은 서울 각 坊의 행정 책임자로서 戶口의 파악과 捕盜 등의 임무를 맡았다. 隊正·隊副 등의 西班牙兒職 다섯이 할당되고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한성부와 소속部 외에는 論罪할 수 없게 하였으며 城底의 管領은 勸農官을 겸하였다. 세종 10년 당시의 坊數는 城內가 46개, 城底(밖) 10리내 15개 등 모두 61개이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212 및 《世宗實錄》 권 40-11, 세종 10년 윤 4월 기축).

220) 勸農官은 州·府·郡·縣 밑의 행정단위인 面에서 農務를 관장하던 留鄉品官이다.

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制書有違律로 論罪한다. ○ 徒刑·流刑·付處·安置·充軍·徙民·定屬人 등이 당자가 죽거나 도망친 경우에는 守令이 직접 스스로 사실을 조사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이를 다시 검사하여 임금에게 아뢰(啓聞) 후에 해당 중앙관청에서 장부에 기록하여 두도록 한다.

[續] 死刑囚가 도망친 고을의 守令은 먼저 파직 한 후 잡아다가 大明律²²²⁾에 의거 죄를 科한다.

[補] 도망친 사형수를 놓치고 잡지 못한 守令은 公罪로 (인정하여) 시행하고

典獄官은 보통의 常律(常律)로서 斷罪한다. ○ 賊人이 破獄하여 도망쳐서 避身한 경우에는 그 本罪의 承服(自白)을 기다려서 大明律²²³⁾에 의거 斬首한다. 刑獄의 獄鎖匠

고려시대에도 勸農使가 있었으나 (《高麗史》 권77-35, 百官2, 勸農使). 조선시대에는 태조 4년 7월부터 수령의 七事(宋朝由來)중 農桑독려를 보좌하기 위하여 각 면에 勸農官을 두게 되었다. 留鄕品官(閑良品官) 중에서 守令이 勸農官을 선임했으나 留鄕品官은 官職體系에 드는 자가 아니고 自治的인 성격의 留鄕所에 소속되었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211). 조선후기에 이르면 그들의 身分은 鄕族이라 하여 (주421) 京班이나 기타 在鄕의 公認된 士族에 比해서는 格이 많이 떨어졌다(《東野彙輯》 卷7, 雜職部, 要路院二客問答).

221) 里正과 統主는 里나 統의 행정 담당자인데 조선시대에서는 前期부터 五家作統法에 따라 5戶를 1統으로 하여 統主를 두며, 25戶를 1里로 하여 里正을 두었다. 그들은 戶口를 파악하여 官에 보고하는 것을 主任務로 하였다. 統은 거의 예외없이 5戶로 되어 있었으나 里는 자연부락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25戶 이상과 그 이하인 경우가 더욱 많았다. 五家作統法은 世祖초부터 隣保法을 대신하여 시행되었다(有井智德 <李朝初期の 戶籍法について>, 《朝鮮學報》 39-40合輯, 1966, p.59). 서울의 里는 古代부터 있었으나 지방의 里는 고려말기부터 있었다고 한다. 隣保法은 太宗 7년부터 시행되었고 隣保法이 시행되면서 隣保조직의 단위대표격인 正長은 人口파악과 良賤의 分別을 하여 官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그 후 세조 때부터 (五家作統法이 시행되자) 里正을 두어 戶口 파악과 함께 捕盜의 기능까지 부여하게 되었던 것이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210).

222) 《大明律直解》 권1 名例律 文武官犯公罪條 및 권27 刑律 捕亡의 獄囚脫監及反獄在逃條와 主守不覺失囚條·권28 刑律 斷獄의 囚應禁而不禁條 등을 종합하여 形벌을 정한 듯 하다.

223) 《大明律直解》 권27, 刑律 捕亡의 獄囚脫監及反獄在逃條를 뜻한다.

이(獄卒)가 收監된 罪囚(見囚)인 賊人과 符同(결탁 즉 共同)하여 枷(枷)과 수
 갑(桎)을 벗기고 獄門을 破壞하여 罪囚가 도망쳐 숨도록 한 경우에는 그 실상
 을 조사하여 治盜例에 의거 訊問해서 自白을 받아 임금에게 아뢰어(啓聞) 斬首
 하며 당해 守丞에게는 (監營의) 營門에서 杖刑을 科하되 杖刑을 집행하지 못하
 였는데도 그에 앞서 관찰사를 파직하여 내쫓지 못한다. ○ 탈옥하는 죄인을 다
 른 사형수가 먼저 고발하면 (고발인의) 사형을 감형하여 定配한다. ○ 殺
 人하여 도망치고 있는 자를 잡거나 신고한 사람
 은 主從(首從)을 가리지 않고 또한 度數(회수)에
 구애되지 않고 모두 經國大典의 捕盜條에 의하여
 賞 주도록(論賞) 한다. (도망친 살인범을) 받아들인 戶首는 藏匿
 罪人律²²⁴에 의거 論罪하고 自首者는 罪를 면제하여 주며 또 보통사람의 例에
 따라 賞을 준다. 가까운 이웃이나 面任·里任 등이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
 우에도 역시 藏匿律에 의거 論罪한다. (살인범을) 잡는데 마음을 쓰지 아니하
 는 官吏는 制書有違律(王旨 등 위반죄)로 論罪한다. ○ 濟州의 세 고
 을 사람이 다른 지방으로 도망쳐서 옮겨 간 경우
 에는 罪를 科하고 즉시 原籍地로 還元시키며 그
 러한 자를 받아들인 사람은 杖 100 流 3000리
 에 처한다.

[增] 임금의 특별명령으로 酌量減輕 처분한 죄인
 이 도망쳐서 숨은 경우에는 지방관의 죄를 엄중

224) 藏匿罪人律은 《大明律直解》 卷27, 刑律 捕亡에 있는 條文으로 “알면서 犯人을 자
 기집에 숨긴 경우”인데 그 범죄인의 죄에서 1等級을 減輕한 죄로서 처벌한다.

히 조사(鞫問)한다. 緣坐罪人이 제멋대로 떠나간 경우에는 지방관은 本律 이외에 죄를 1등급 더한다. ○ 定配罪人이 도망쳐서 놓쳐 버린 고을의 守令은 制書有違律로 論罪한다. ○ 定配罪人이 配所로 가는 도중에 도망쳐서 숨은 경우에는 지방관을 잡아다가 문초하여 엄중히 처리하며 죄인을 거느리고 간 護送人(將差²²⁵)에게는 刑杖을 치면서 推問하고 定配한다.

【才白丁團聚²²⁶】〔原〕 서울과 지방의 才人과 白丁을 모두 찾아내어 分居시켜 保護하며 各坊²²⁷과 各村²²⁸에서 帳籍을 만들어 官職이 있거나 安定된 生業으로 살고 있는 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刑曹·漢城府·本部·本道·本邑에서 각각 1건씩 보존하며 매년 그 출생·사망·도망 등을 조사하여 임금에게 보고하고 帳簿에 기록하여 둔다. 도망자는 徒刑·流刑·付處人의 逃亡例²²⁹에 의하여 論罪한다. 〔增〕 지금은

225) 將差는 監司나 守令이 죄인을 호송하기 위하여 심부름 보낸 사람이다.

226) 解說篇 28 才白丁團聚 參照.

227) 坊은 서울의 5부와 지방의 일부府의 面 밑에 있던 행정단위이다(正祖 13年 漆谷府 東面 西北坊 第二於巨洞 第五統 第五戶 準戶口). 조선국초, 서울의 坊數는 東部12坊, 南部11坊, 西部11坊, 北部10坊, 中部8坊으로 모두 52坊이었으나 뒤에 西部가 8坊이 되어 모두 49坊으로 되었다. 각 坊 밑에는 여러 洞里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世宗 10년 윤4월의 한성부의 啓에 의하면 城內는 46坊이고 城底10里內에는 15面이라 하였으며 (《世宗實錄》 권40-11, 세종 10년 윤 4월 기축), 明宗代의 《經國大典註解》 後集 上 吏典에는 中部8坊, 東部12坊, 南部11坊, 西部8坊, 北部10坊 등으로 모두 49坊으로 되어 있다(한우근·이태진의 3인, 《譯註經國大典》 註釋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110 및 p.212).

228) 村은 각지방 고을 面 밑에 있던 里를 나타내는 호칭이었다. 예컨대 慶尙道 丹城縣의 帳籍에 의하면 8개 面이 있는데 각면에는 제몇里 무슨村으로 되어 있다(英祖 35年 己卯 式年 戶籍大帳 등).

229) 《經國大典》 刑典 逃亡條 및 주211 參照.

폐지되었다.

【捕盜²³⁰⁾】〔原〕竊盜 및 소와 말을 죽인 자²³¹⁾ 1 인을 잡은 자에게 綿布 10필을 주되 1인이 늘어

230) 《經國大典》刑典 捕盜條項은 포상위주로 규정된 점이 《大明律直解》卷27, 刑律 捕亡 盜賊捕限條에서 처벌위주로 규정된 것과 다르다. 大明律에서는 도적을 체포할 직 무가 있는 弓兵이나 捕盜官이 소정기일내에 잡지 못하면 笞刑(弓兵의 경우)을 받거나 罰金(포도관)을 내도록 하였다. 經國大典에 규정된 포상규정은 世宗 17年 9월의 受敎에서 비롯하여(《世宗實錄》卷115-20, 세종 29년 3월 癸未) 世祖 7年의 辛巳大典(經國大典 刑典)으로 法制化된 것이다. 《世祖實錄》권39-40, 세조 12년 9월 丙戌에 인용된 同條文에 의하면 절도 1인을 신고하여 붙잡게 되면(告捕) 綿布 10필을 賞주고 1인이 늘어날 때마다 2필을 더하여 50필에 이르면 그친다는 것과 강도의 경우에는 비록 1인을 잡더라도 官職이 없는 자에게는 모두 官職을 賞으로 주고 원래 관직이 있는 자에게는 모두 加資하여 敍用하되 벼슬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는 면포 50필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사납고 독살스러운 자들이 作黨하여 여러 해 걱정을 끼친 경우에 그러한 자들을 잡으면 超3資(3자급을 뛰어넘어)로 官階를 올려(官職을) 주며 그 벼슬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는 면포 100필을 주고 賤口는 免賤시킨다는 등으로 現存 經國大典(성종16년의 乙巳大典)의 규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231) 소와 말을 죽인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大明律直解》卷16, 兵律 廐牧 宰殺牛馬條에 있는데 事案에 따라 徒刑에다 杖刑을 并科하거나 杖刑 또는 笞刑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經國大典》刑典 捕盜條에서 施賞爲主로 규정하였음은 앞 註230에서 살펴본바와 같다. 하지만 世祖 4年 3월 임금이 刑曹에 傳旨하기를 1貫 이상을 竊盜하면 얼굴에 刺字(黥面)하고, 初犯으로 10貫 이상을 竊取한 경우와, 再犯인 자는 絞首刑에 처하며, 牛馬賊은 初犯도 絞首刑에 처하도록 하여 《大明律》의 처벌규정보다도 매우 嚴重하므로 앞으로는 大明律에 의하도록 하였다(《世祖實錄》권12-6, 세조 4년 3월 을묘). 그후에도 牛馬賊이 犯罪를 恣行하여 宰殺여부를 막론하고 初犯이라도 主犯은 絞首刑, 從犯은 決杖한 후 刺字하며, 再犯은 사면령여부에 상관없이 絞首刑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종전에는 타인의 牛馬를 사서 죽인 자와 自己의 牛馬를 宰殺하는 자 및 그 情을 알면서 판 자 등은 杖 100刑 집행 후 水軍에 充定하고 盜殺한 者는 杖 100刑에다 刺字한 후 水軍에 充定하였으므로 위 傳旨에 의하면 他人의 牛馬를 盜殺한 자로서 從犯인 자는 牛馬를 사서 잡은 자보다도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어 부당하니 舊法에 따라 杖 100에 처한 후에 刺字하여 水軍에 充定하도록 하였다(《위의 책》권20-34, 세조 6년 5월 임인). 成宗 2年 12월, 임금이 刑曹에 傳旨하기를 牛馬賊인 主犯을 絞首刑에 처한다는 世祖 때의 법은 限時法(權宜立法)이며 永久히 遵守할 법이 아니므로 앞으로는 牛馬賊에 대하여 大明律에 따라 처벌하되 再犯만 絞首刑에 처한다는 것이었다(《成宗實錄》권13-23, 성종 2년 12월 임오).

날 때마다 2필을 더 주어 50필이 되면 그친다. 한
 꺼번에 내주어 고르게 나누어 갖도록 한다. 아래도 같다. 強盜를 잡으
 면 1인당 50필을 주고 1인이 늘어날 때마다 5필
 을 더주어 100필에 이르면 그치도록 하되 그 중
 앞장서서 강도를 잡은 경우에는 賞으로 官職을
 주고 원래 관직이 있는 자에게는 官階를 올려 준
 다. 鄉吏와 賤人이 앞장서서 강도 2인 이상을
 잡은 경우에는 綿布 50필을 주고 1인을 잡은 경
 우에는 그 3분의 2를 준다. ○ 10貫²³²⁾ 이상 훔
 친 도적(竊盜)을 5번이나 먼저 신고한 자와 強盜
 를 3번이나 먼저 신고한 자는 官階를 받으며 원
 래 官階가 있는 자에게는 官階를 올려 주며 그리
 한 자가 鄉吏나 賤人이면 綿布 50필을 준다. 무릇
 강도를 만난 경우에 소관 官吏 및 이웃 사람·院主²³³⁾·驛吏²³⁴⁾ 등이 救援하

232) 貫은 銅錢의 단위로서 1貫이 1000文(10냥)이다. 또 貫은 무게의 단위로서 1000
 돈중(약3.75Kg)이기도 하다. 《大明律直解》 卷18 刑律 盜賊 竊盜條에 竊取한 재물의
 값(貫)과 그 刑量이 규정되어 있는데 예컨대 10인이 공동정범으로 한집안의 財物 40
 貫을 훔친 경우, 1인당 4貫씩 훔친 것이 되나 이를 合計하여 각자 40貫 훔친 것으로
 論罪한다. 이를 併贓論이라 하는데 反面에 예컨대 두 집에서 재물을 훔친 경우에 그중
 많이 훔친 집의 재물을 표준으로 科罪하는 「以一主爲重」이란 원칙이 있다. 또 만약 竊
 盜를 犯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笞 50에 처한다. 재물을 얻은 경우에는 1
 貫이하는 杖 60, 1관 이상 10관까지는 杖 70, 20관까지는 杖 80, 30관까지는 杖
 90, 40관까지는 杖 100, 50관까지는 杖 60 徒 1年, 60관까지는 杖 70 徒 1年半,
 70관까지는 杖 80 徒 2年, 80관까지는 杖 90 徒 2년반, 90관까지는 杖 100 徒 3年,
 100관까지는 杖 100 流 2000里, 110관까지는 杖 100 流 2500里, 120관까지와 그
 이상은 杖 100 流 3000里에 처하도록 하였다.

233) 院主는 公務여행자(無料) 및 일반인(有料)의 숙박시설인 院宇의 관리인이다. 院主는
 고려말 조선국초에는 僧人이나 土姓官品 중에서 선임하였으나 도망자가 많이 생겨서 인
 근에 사는 백성중에서 선정하였으며 세종 때부터는 그들에게 잡역을 면제하고 여러가지

지 아니 한 경우에는 論罪한다. ○ 洞里 안에 盜賊이 살고 있는데도 그 가까운 이웃과 그 곳을 관할하는 사람이 알면서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엄중히 논죄한다.

[續] 捕盜將²³⁵⁾이 지방에서 盜賊을 잡을 때에는 반드시 犯罪의 證據(贓證)를 가려서 요건을 갖추어 사실을 조사하여 근거가 있는 자를 체포한다. 만약 犯情을 즉시 자백(輸情)하지 아니하나 반드시 사실조사를 해야할 경우에는 역시 捕盜將에게 質問하도록 한다. 체포된 사람은 모두 소재지 고을에 가두고 관찰사로 하여금 (有無罪를) 분간하여 형을 집행하거나 석방하도록 한다. 賊黨이 관련자라고 끌어들이는 사람이라도 여러 사람이 盜賊으로 다같이 알고 있는 자·전에 도적질하여 도망쳐서 잡히지 아니한 자·분명히 사건의 상태가 남아 있거나 혹은 杖刑을 받은 흔적이 있는 자 이외 기타 誣告로 끌어 들인 部類는 모두 受理하지 아니한다. ○ 도적이 잡힌 경우에는 그 고을에서 철저히 訊問해서 自白을 받은 후에 討捕使에게 移送하며 이에 위반한 자는 制書有違律(王旨 등 違反罪)로 論罪한다. ○ 평안도와 황해도의 治盜는 일체 兵營으로 하여금 主管하게 한다. ○ 賊人의 自白에 대한 재조사(考覆)결과는 討捕使²³⁶⁾

特典을 주었다(工典註 70 參照).

234) 驛吏에 관해서는 《大典會通研究》 兵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5.12, p.148 參照.

235) 捕盜將에 관해서는 《위의 책》 p.63 註 捕盜廳 參照.

236) 討捕使는 明宗 때 황해도 해주에서 평산에 걸쳐서 많은 도적떼들이 나타나서 30여개

가 직접 임금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觀察使가 친히 訊問하여 재판을 마치고 판결문을 작성한 후에 정리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 도적을 잡도록 지시한 사람(指示人)이나 체포한 사람(捕捉人)에 관해서도 사실을 조사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되 本土人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 賊人이 재조사(考覆)하기 전에 곧 바로 죽었을 경우에는 妻子의 定屬(적몰된 집의 사람을 종으로 박아 넣음)이나 指示人·捕捉人에 대한 施賞 등의 일은 모두 논의하지 아니한다.

○ 明火賊²³⁷⁾ 5명 이상을 잡아서 자백을 받아 임금에게 보고하면 그 범인을 사형에 처하였거나(正

처에 있는 民家를 분탕질하고 서울까지 숨어드는 등 그 세력이 컸으므로 威望과 智略을 갖춘 京將중에서 뽑아서 그들을 잡도록 한데서 비롯된다(《明宗實錄》 권27-56·57·63, 明宗 16年 10月 壬戌·癸亥·甲申). 討捕使(南致勤)는 많은 地方兵力을 동원하였으나 도적의 괴수는 쉽게 잡히지 않았지만 戰果는 적지 않았고 民弊 또한 컸으므로 서울로 오게하고 도적 잡는 일은 황해도와 강원도 監司와 兵使 책임으로 맡겼다(《위의 책》 권27-69, 명종 16년 12월 정축). 그러나 명종 17년 정월 도적의 괴수 임격정이 잡혔으므로 討捕使 南致勤과 軍官들에게 加一資하고 從事官에게도 賜馬하였다(《위의 책》 권28-1, 명종 17년 정월 계사). 그후 討捕使는 鎭營將이 겸직으로 임명되는 것이 通常例였다(오희복, 《봉건관료기구 및 벼슬이름 편람》, 여강출판사, 1992/북한판, 1989, p.329). 숙종 37년 10월 형조판서의 啓에 따라 討捕使가 治盜할 때에는 地方官이 함께 推問하게 하고 暗行御史 파견시에는 討捕使의 治盜의 잘잘못도 함께 廉問하도록 하였다(《肅宗實錄》 권50下-20, 숙종 37년 10월 계유 및 《正祖實錄》 권16-64, 전조 7년 10월 정해).

237) 明火賊은 徒黨을 지어서 橫行하는 強盜들을 말한다. 이들 強盜團은 항상 炬火를 밝히고 습격해 음으로서 火賊 또는 明火賊이라 하였다. 明火賊은 수십명이 말을 타고 산에서 내려와서 활을 쏘면서 官軍에게도 저항하며 新白丁(禾尺)들이 그 주된 구성원이었다고 한다(《世宗實錄》 권40-9, 세종 10년 윤 4일 갑신 및 권120-4, 세종 30년 4월 갑자). 文宗 元年 10月, 刑曹參判 安完慶의 啓에 의하면 各道에서 구속된 죄수중 強盜犯과 殺人犯이 380여명인데 그 半數가 才人新白丁이라 하였다(《文宗實錄》 권10-9, 문종 원년 10월 임오). 여기서 특기할 것은 中宗反正에 참가하여 原從功臣이 된 후 다시 捕盜將이 된 白丁 唐來와 彌勒 兄弟가 원래 金浦의 강도(明火賊)였다(《中宗實錄》 권2-44, 중종 2년 3월 辛未). 또 白丁인 林巨正이 황해도 일대를 중심으로 크게 세력을 떨친 도적의 두목이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주236).

刑²³⁸⁾) 처하지 아니하였음을 막론하고 체포를 지시한 사람과 체포한 사람은 出身²³⁹⁾과 閑良²⁴⁰⁾이면 加資²⁴¹⁾하고 加資의 教旨에는 반드시 체포된 도적의 이름자를 써서 그 濫發됨을 막도록 한다. 公賤과 私賤은 免賤하며 鄉吏와 驛吏는 免役한다. 그 免賤이나 免役과 受賞은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른다. 한 두 사람을 잡도록 지시하거나 체포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科擧)出身이면 6품 관직으로 올려 주고 良人과 賤人이면 쌀과 베(米布)로서 施賞한다. 賞주는 例는 經國大典에 있다 극히 사납고 흉악한 도적은 비록 1명이라도 잡으면 강도 5인을 잡은 例에 따라 賞줄 것을 논의(論賞)한다. 무릇 도적 잡은이에게 論賞할 때에는 도적이 훔친 장물을 모두 합계하여 준다. ○ 무릇 指示와 逮捕로 論賞할 사람에 대하여 討捕使와 守令이 만약 私意에 따라 허위로 기록할 경우에

238) 正刑은 正法이라고도 하는데 死刑에 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239) 出身은 文科에 급제한 후 아직 벼슬하지 못한 자에 대한 호칭이다. 文科에 급제한 후 벼슬하기 전인 자를 及第라 通稱하는 것과 대비되는데 文武科及第者 모두의 正式 호칭은 及第出身者이지만(《經國大典》 禮典, 紅牌式), 관례상 위와 같이 나누어 호칭하였다.

240) 閑良은 武藝를 익힌 자로서 아직 文科에 及第하지 못하고 또한 벼슬하지 못한 자를 의미한다. 文科志望生이나 生進科 응시자가 대개 幼學인 점에서 文科응시자가 대개 閑良인 것과 對比된다. 閑良의 身分은 고려시대에는 주로 6품 이하 관료의 子孫인 것으로 알려졌으며(李佑成, 〈閑人白丁의 新解釋〉 《歷史學報》 19, 1962), 조선전기에도 대체로 양반의 子弟가 많았을 것이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中庶人層이나 良人의 上層部에서 대거 文科에 응시하게 되어 閑良은 보통 良人上層部 또는 中庶人層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물론 士族중에서도 조선후기의 文科응시자가 있었으나 그들은 대체로 武班 名門家의 후예들로서 蔭敍를 받았으므로 文科응시자의 身分이 모두 閑良인 것은 아니었다.

241) 加資는 資級(官階)을 올려 주는 것과 官階가 없는 자에게 새로 官階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는 임금을 欺罔한 죄로 論하고 영구히 임용하지 아니한다(永不敘用). ○ 賊人이 같은 무리(同黨)를 만약 스스로(自相) 고발하여 자백을 받아(吐實) 처형(伏法)하게 한 경우에는 (고발자에게는) 죄를 면제하여 주고 銀 50兩을 주며, 7·8명 이상 (고발하여 處刑하도록 한) 경우에는 죄를 면제하고 官階를 줌(加資)과 동시에 銀 110兩을 준다. ○ 守令을 指示人이나 逮捕人으로 하여 論賞하는 것은 일체 禁止한다. 만약 관내에 사납고 흉악한 도적이 있어 기회를 틈타 잡는데 현저한 功力이 있었으면 經國大典에 의하여 官階를 올려(加資) 준다. ○ 각 邑의 官屬²⁴²⁾이 助捕人으로 특별히 정해져서 1년을 통산하여 잡은 도적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論賞한다. 吏胥와 軍卒로서 賊黨과 交通(왕래)한 경우에는 軍機를 漏泄한 律²⁴³⁾로 論罪한다. ○ 捕盜廳에 告發된 사람이 10里 밖에 있으면 반드시 임금에게 啓請한 후에 잡아 오도록 한다. ○ 돈과 곡식이 있는 각 官廳에서 晝間이나 夜間에 당직하는 官員이 조심하지 아니하여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罷職하되 돌아서서 즉시 도적을 잡은 경우에는 죄를 면제하고 隱蔽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파직한다. 逮

242) 官屬은 각 고을(官)의 아전과 軍校·軍卒·軍奴 기타 하인을 말한다.

243) 軍機를 漏洩한 罪에 관하여 《大明律直解》 권14 兵律 軍政편의 飛報軍情條·邊境申索軍需條·失誤軍事條 등에서 “失誤軍機者斬”이라고 하여 極刑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捕를 指示한 사람과 그 逮捕人에게는 强盜를 逮捕한 例에 따라 論賞한다. ○ 匿名書를 쓴 죄인을 잡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극히 흉악한 도적을 잡거나 신고한 例로서 論賞한다. ○ 선비로 (儒籍에) 이름이 올라 있는 자는 비록 推鞠해야 할 重罪의 情況(鞫情²⁴⁴)에 관계되는 경우에도 그를 포도청으로 送致하지 아니한다. 庶人(平民)도 强盜와 竊盜이외는 역시 송치하지 아니하고 비록 강도와 절도라도 마땅히 자세하게 살펴야 한다.

[增] 捕盜廳은 罪囚의 이름字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죄인을 조사(推覈)한 월일을 별도로 써서 文書(文案)를 작성하여 證憑으로서 뒷날 참고하도록 한다. 逆賊집의 婦女로서 緣坐해야 될 자는 포도청에 拘留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配所로 押送하도록 한다. ○ 무릇 推鞠할 罪囚로 係屬되어 이미의 金府(王府)에서 推問하는 경우에는 포도청으로 내려 보내지 아니한다.

【贓盜²⁴⁵】〔原〕 强盜로서 死刑에 처하지 아니할 자는 大明律에 의거 論罪한 후²⁴⁶ 强盜 두 글자를

244) 鞫情은 犯罪의 情況이 重하여 推鞠해야 할 경우를 말한다.

245) 贓盜에 관한 규정은 《大明律直解》 권18, 刑律 盜賊에 관한 규정의 특별규정으로서 《經國大典》 刑典에서는 强盜犯과 軍人인 竊盜犯에 관하여 刺字刑 등을 규정하였다. 또 《續大典》 刑典 贓盜에서는 宮中물건을 도적하거나 竊盜犯이 成群作賊하거나 夜間 强盜殺人犯·白晝市場 物貨약탈자·강간범·帳籍을 훔친 자·各邑上納綿布와 麻布 各5同 이상을 詐取하거나 훔친자 등에게 斬刑·邊遠定配·絶島爲奴 등으로 嚴重處罰하도록 규정하였다.

刺字(몸에 먹물로 새겨 넣음)하되 再犯者는 絞首刑에 처한다. 強盜의 妻子는 영구히 소재지 고을의 奴婢²⁴⁷⁾로 삼고 窩主²⁴⁸⁾의 律(大明律直解 刑律 盜賊窩主條)이 死刑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論罪 후에 強窩 두 글자를 刺字하며 全家族을 국경지대(極邊)로 強制移住 시키고(全家徙極邊) 3犯은 絞首刑에 처한다. 도적질을 하여 (竊盜犯으로서) 徒刑과 流刑에 처할 자는 평안도와 영안도에서는 각각 그 道의 極邊인 각 고을에, 그 나머지 道에서는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인 각 고을에 영구히 소속시켜 노비로 삼는다. 무릇 刺字한 자는 刺字한 곳을 封하여 서명날인(封署)한 후 죄수를 계속 가두되 3일이 지난 다음에 석방한다. 군인이 절도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도 역시 刺字한다²⁴⁹⁾. ○ 불법으로 국경밖을 나가서 野人(彼人²⁵⁰⁾)

246) 《大明律直解》 권18 刑律 強盜條에 依하면 強盜의 既遂(재물을 얻은 자)는 主犯·從犯을 가리지 않고 모두 死刑(斬刑)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強盜未遂犯은 杖100, 流3000리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強盜未遂犯을 의미한다(《經國大典註解》後集下, 刑典).

247) 解說篇 25 奴婢 參照.

248) 窩主는 강도나 절도 등 도적을 숙박시키거나 장물을 숨겨 주는 등으로 제집에 붙여 있게 하는 자(接主)를 말한다. 《大明律直解》 권18 刑律 盜賊 盜賊窩主條에서 窩主가 強盜罪를 首唱(教唆) 또는 共謀한 경우, 贓物을 나누어 가진 자는 斬刑에 처하고 犯行을 首唱하였으나 몸소 犯行하지 않고 장물도 나누어 갖지 않은 자는 杖 100 流 3000리에 처하며 共謀하였으나 몸소 犯行하지 않고 장물도 갖지 않은 경우에는 杖 100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한 장물인 것을 알면서 구매한 자는 買入한 장물을 계산하여 坐贓으로 論罪하고 情을 알면서 장물을 寄託받은 자는 贓物故買罪에서 1등급 減刑하며 각 罪는 杖 100에서 그치도록 하고 그 情을 알지 못하고 잘못 사거나 寄託받은 자는 모두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文宗 2년 4月 刑曹判書의 啓에 따라 도적의 窩主로서 西北兩界에 全家徙邊된 자의 사면에 관한 것을 立法하도록 하였고(《文宗實錄》 권13-16, 문종 2년 4월 병술), 그 다음달에 文宗이 흥거하고 단종이 즉위하여 의정부의 啓에 따라 사면전의 범행에 관하여서는 論罪하지 않도록 하였다(《端宗實錄》 권1-8, 端宗 즉위년 5월 신해).

249) 軍人인 竊盜犯에 관해서는 《大明律直解》 권18, 刑律 盜賊 竊盜條에 의하면 刺字刑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經國大典》 刑典 贓盜條에서는 역시 刺字한다고 규정

의 財物을 훔친 자는 絞首刑에 처하고 국내의 물건을 훔쳐서 그 곳(彼境)에서 轉賣한 자는 禁物을 몰래 판 죄로 論하며 모두 赦免對象으로 하지 아니한다(勿揀赦前²⁵¹). ○ 무릇 贓物과 贖物은 戶曹로 보낸다. ○ 무릇 도난을 당한 자는 잃어버린 물건의 모양과 표식을 상세히 기록하여 官에 신고해서 확인(立案²⁵²)을 받아 證憑으로서 훗날 참고하도록 한다.

[續] 수랏간(宮中の 廚房)의 물건을 몰래 훔친 자는 盜大祀神御物律²⁵³로 論罪한다. 內醫院의 銀그릇을 몰래 훔친 자도 같은 刑律에 해당된다. ○ 수랏간의 그릇(器皿)을 임금의 신하에게 내려 보낼 때(賜送)에 몰래 훔친 자는 그 물건이 殿內에 있을 경우와는 다르므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영구히 소속시켜서 노비로 삼는다. ○ 무릇 물건을 몰래 훔쳐서 사형에 처해야 할 경우에도 임금의 小功親²⁵⁴으로서 自首

하였다(《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刑典).

250) 彼人은 우리의 西北國境 넘어서 사는 野人 즉 울랑합족·울적합족·오도리족 등 女真人을 말한다. 조선전기(경국대전성립시기)에는 그들이 국가를 形成하지 못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곳을 彼境, 그들을 彼人이라고도 하였다(윤국일, 《앞의 책》 p.463 및 《成宗實錄》 권235-7, 成宗 20年 12月 壬辰).

251) 勿揀赦前은 범죄사실이 常赦·特赦 등 恩赦의 대상이 되는 경우 즉 사면령 이전(赦前)의 犯行임에도 그것을 가리지 않고 사면령 이후의 범행과 같이 처벌한다는 것이니 앞으로 사면령이 있더라도 사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252) 解說篇 29 立案 參照.

253) 盜大祀神御物律은 《大明律直解》 권18 刑律 盜賊에 있는 刑罰條項으로서 최고 斬首刑, 최하 杖100 徒 3년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254) 小功親은 喪事 때 5개월간 喪服을 입는 친족으로서 本宗의 嫡孫婦·兄弟의 妻·從祖父母·堂伯叔父母(5촌)·堂姪(5촌 조카)·再從兄弟姊妹(6촌) 및 外祖父母·외삼촌·이모·夫의 형제자매와 그 妻·夫의 伯叔父母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大典會通 研究》禮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12, pp.169~174). 여기서는 그냥 小功親이라 하였지만

하면 죄인을 減死定配한다. ○ 宮殿 뜰에 배열 되어 있는 벽들을 파내어 가진 자는 杖 100 徒 3년에 처한다. [增] 수랏간의 물건에도 역시 輕重이 있으므로 그때 그때 임금에게 품의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 궁중의 창고에 있는 물건을 몰래 훔친 자는 強盜律로서 論罪하고 申告(陳告)者와 逮捕者에게는 論賞한다. 각 관청의 銀이나 布를 몰래 훔친 자와 관청 창고에서 도적질한 자는 모두 같은 刑律(強盜律)로 (論罪)한다. ○ 각 중앙관청(各司)의 私庫²⁵⁵⁾의 雜物을 몰래 훔친 자는 단지 竊盜律로 論罪한다. ○ 帳籍을 훔쳐서 가진 자는 먼 변방지역으로 定配한다. ○ 竊盜의 初犯으로서 3인 이상이 무리를 지어 도적질하여 그 贓物이 1貫 이상 되는 자와 2인 이상이 도적질하여 贓物이 2貫 이상 되는 자 및 再犯者는 贓物의 多少를 막론하고 모두 主犯과 從犯을 가릴 것 없이 杖 100을 친 후에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이나 아주 작은 고을의 奴婢로 삼는다. ○ 밤을 틈타서 무리를 모아 人命을 殺戮하는 자는 財物을 얻은 여부를 막론하고 때를 기다리지 않고 斬首하며 그 妻子는 노비로 삼는다. 무리를 모아서 道路를 遮斷하여 타인의 財物을 暴力으로 빼앗는 자는 역시 明火賊을 처벌하는 律文으로 論罪한

해석상 小功이내 친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55) 각 중앙관청(各司)의 私庫란 관리들이 公務上으로 使用하는 붓·먹·종이 등 소모품을 저장하거나 그러한 소모품을 구입할 비용(布·米·錢) 등을 저장하는 창고이다. 따라서 武器庫 등 軍用倉庫와는 성격이 달라서 私庫라 하였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私的 창고와는 다른 것이다.

다. ○ 비록 횃불을 밝혀 도적질(明火作賊)하여도 같은 무리(同黨)가 원래 적고 훔친 물건도 많지 않으며 또 인명을 殺戮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竊盜의 例에 따라 멀리 떨어진 외딴 섬으로 보내어 노비로 삼는다. ○ 賊人의 妻子가 私奴婢로서 本主의 戶口내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公奴婢로) 定屬하지 아니하며 出嫁한 딸은 逆賊의 出嫁女의 例에 따라 역시 처벌을 (緣坐를) 論하지 아니한다. ○ 強盜의 窩主로서 刑律²⁵⁶⁾이 死刑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杖 100을 친 후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의 奴婢로 삼는다. 賊人이 14세 이하이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영구히 소속 시켜 노비로 삼는다. ○ 白晝에 市場에서 財物과 돈을 掠奪한 자와 女人을 強姦한 자는 모두 主犯이면 斬首하고 從犯이면 그 자신에 한하여 섬으로 귀양(島配) 보낸다. 무뢰배가 市場에 모여서 牛馬를 竊取하여 屠殺한 경우에는 本律²⁵⁷⁾에 의거 論罪한다. ○ 중국으로 가는 使臣이 가지고 가는 方物(進獻品 등)을 훔쳐서 淸國人에게 몰래 판 경우에는 主犯과 從犯 모두를 極刑(一律)으로 論罪하고 호위하는 領將에게는 杖刑을 집행한 후 定配한다. 通信使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일본에 도착하여 供帳(帳幕)이나 雜物을 훔친 경우에는 律文에 의거 처단하며 우리 境內에서 賂物을 구하여 어지럽게한 경우에도 같은 죄로 처벌한다. ○ 각 고을에서 상납하는 綿布와 麻布 각 5

256) 強盜의 窩主로서의 刑律은 《大明律直解》 18, 刑律 盜賊 盜賊窩主條에 규정되어 있다(주248 참조).

257) 《大明律直解》권16 兵律 廐牧 宰殺牛馬條 및 권18 刑律 盜賊 竊盜條를 의미한다.

同²⁵⁸⁾ 이상을 詐取하거나 竊取한 자는 斬首한다. 상납하는 綿布와 錢文을 해당 관청의 書吏집에 맡겨 두었을 경우에는 해당 書吏를 監守自盜律²⁵⁹⁾로 論罪한다. ○ 色吏가 牟利輩²⁶⁰⁾와 結탁(符同)하여 몰래 훔친 경우에는 포도청에 이송하여 기한을 정해서 독촉하여 거두어 들이도록 한 후에 刑曹에 이송해서 律文을 적용하여 處置한다. 기한이 지나도 끝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結손처분(蕩滌)하고 贓物을 계산하여 죄를 정하는 律文(《大明律直解》권18, 刑律 盜賊 竊盜)에 의거 論罪한다. 만약 守令이 事情을 알면서 양 건의 확인서(陳省²⁶¹⁾)를 작성하여 보낸 경우에는 잡아다가 문초한 후 죄를 준다.

【元惡鄉吏²⁶²⁾】〔原〕元惡鄉吏 守令을 조종하고 농락하면서 마음대로 권세를 부려 弊端을 만드는 자·賂物을 몰래 받아 賦役을 고르게 지우지 아니한 자·稅를 거둘 때에 마구 수탈하여 함부로 쓴 자·良民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숨겨두고(노비처럼) 부려먹은 자·田庄(農場)을 널리 두고 백성을 부려 밭갈고 씨뿌리게 한 자·마을에 제멋대로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을 침탈하여 私利를 도모한 자·權貴의 세력에 달라 붙어서 本役(鄉吏의 役)을 회피한

258) 1同이 50필이므로 (平木實 《朝鮮後期奴婢制研究》 p.63) 50同은 2500필이다.

259) 《위의 책》 권18, 刑律 盜賊 監守自盜倉庫錢糧條에 의하면 主犯과 從犯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贓物 액수를 합산하여 論罪하도록 하였다.

260) 牟利輩는 商道義를 돌보지 아니하고 利益만을 추구하는 자를 말한다.

261) 陳省에 관하여 《經國大典註解》 後集 上 戶典에서는 陳은 敷陳也 言陳其狀也라 하여 널리 진술하여 그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하였고 省은 察也 言當察視 不可妄也 又簡也라 하여 살펴서 망녕되지 하지 않거나 또 간결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 用例에 관하여서는 《大典會通研究》 吏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3.12, p.221에 例示한 바와 같이 守令이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 또는 그 보증서·확인서를 말한다(《太宗實錄》 권17-15, 《世宗實錄》 권10-13·권27-24 및 106-7, 《中宗實錄》 권23-19 등).

262) 解說篇 21 元惡鄉吏 參照.

자·(鄉吏)役을 피해서 도망하여 村落에 숨어 사는 자·官의 위엄을 빌리고 의지해서 백성을 侵虐하는 자·良家の 딸이나 官婢를 쫓으로 삼은 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陳情하고 告發하는 것(陳告)을 허용하며 또한 본고을의 京在所²⁶³)가 사헌부에 告發하여 죄상을 조사해서 형벌을 科하도록 하되 徒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本道の 아주 작은 역의 驛吏로 영구히 소속시키고 流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다른 道の 아주 작은 역의 역리로 영구히 소속 시킨다. 守令이 이를 알면서도 죄상을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制書有違律(王旨 등 위반죄)로 論罪한다.

[續] 수령이 교체될 때에 官吏가 틈타서 관청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杖 100 流

263) 京在所는 서울에 머물고 있는 지방출신 관료나 德望家들로 구성되어 鄉所(鄉廳)를 통제하고 출신 고을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맡았다. 대개의 고을에서는 고려 때부터 조선초기까지 아전들이 秩廳을 만들었는데 지방 士族들은 鄉廳을 만들어 질청을 감시감독 하였던 것이다(윤국일 《앞의 책》 p.463). 京在所의 起源에 관하여 고려 때의 事審官 제도에서 찾는 견해(周藤吉之 〈鮮初における 京在所と 留郷所について〉, 《加藤記念 東洋史集說》1941)와, 조선초기 留郷所제도가 발달하면서 제도화한 것이라는 견해(李泰鎮 〈士林派의 留郷所 復立運動〉上 《震檀學報》 34, 1972)가 있다. 여하간 이 제도는 중앙의 有力者들이 지방민을 침탈하는데 惡用되어 폐단이 컸으므로 宣祖 36年 이를 혁파하였다(李泰鎮외 4인 《앞의 책》 p.699). 京在所의 任員은 座首 1인, 參上別監 2인, 參外別監 2인이었으며 鄉中公務를 관장하되 本郷守令의 政治에는 관여할 수 없게 하였다. 연고지가 되는 內外郷은 官品에 따라 달랐는데 2品 이상은 8郷(8祖 戶口에 나타난 父의 內外郷·祖의 外郷·曾祖의 外郷·母의 內外郷·妻의 內外郷), 6品 이상은 6郷(8郷중 妻의 內外郷을 除外), 參外官은 4郷(6郷에서 祖 및 曾祖의 外郷을 除外), 官職이 없는 衣冠子弟(士族)는 2郷(父母外郷 除外) 등이었다(《世宗實錄》권69-20, 세종 17년 9월 기사).

3000리에 처한다. ○ 각 고을의 書員²⁶⁴⁾이 농간을 부러(조종하여) 폐단을 만든(作弊) 경우에는 元惡鄉吏의 例에 따라 論罪한다.

【銀錢代用²⁶⁵⁾】〔原〕大明律에서 銀錢이라한 것은 모두 國幣²⁶⁶⁾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銀의 값은 7品銀²⁶⁷⁾에 의하며 銀으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들어 준다. 銅錢 10文

264) 解說篇 22 書員 參照.

265) 銀錢代用이란 《經國大典》의 國幣인 正布와 楮貨대신으로 銀錢을 쓰는 것을 말한다. 銀錢은 《大明律直解》 刑律 人命편의 採生折割人條와 造畜蟲毒殺人條 등과 같이 악독한 범죄인을 신고하여 잡도록 하는 경우에 賞金으로 주도록 규정하였지만 《續大典》 刑典 捕盜條에서도 強盜團을 고발하여 잡아서 처형하도록 한 경우에 賞金으로 줄 것을 규정하였다. 銀錢과 正布의 교환비율은 世宗 14년에 10品銀(100%) 1兩값을 正布 9필, 9品銀 1냥을 8필, 8品銀 1냥을 7필, 7品銀 1냥을 6필로 정한 바 있으나 세종 16년 2월 戶曹의 啓에 따라 民間에서 金銀을 私적으로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각각 2필씩 減價하였다(《世宗實錄》 권63-23, 세종 16년 2월 정축). 그후 세종 19년 8월 의정부의 啓에 따라 金銀價를 새로 定하여 영구적인 恒式으로 하였는데 금 1錢 값을 10品은 正布 3필, 9品은 2필17척5寸, 8品은 1필17척5寸, 7品은 1필로 하고, 銀1냥 값을 10品은 4필, 9品은 3필, 8品은 2필, 7品은 1필17척5寸으로 정하였다(《위의 책》 권78-18, 세종 19년 8월 기미).

266) 國幣는 조선전기의 公式通貨로서 《經國大典》 戶典 國幣條에서 布와 楮貨를 규정하였다. 布貨는 고려초이래 民間에서 通用된 實物價値있는 화폐였다(윤국일, 《앞의 책》, p.294). 楮貨는 태종 원년에 발행되었으나 民間에서 이를 기피하여 태종 3년 9월에 그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태종 10년 7월에 再발행되어 세종 7년 銅錢制(朝鮮通寶)로 바뀔 때까지 사용되었다. 銅錢制도 세종 27년에 폐지되고 楮貨가 부활되어 布貨와 병용되었다. 세조 6년 8월에는 國幣를 3등급으로 나누어 5升布를 上等, 3升布를 中等, 楮貨를 下等으로 하고 布貨의 兩端에는 반드시 官印을 찍도록 하였으나(《世祖實錄》 권21-14, 세조 6년 8월 을묘), 同王 10년 8월 無印布를 금지하지 않고 함께 通用시켰다(《위의 책》 권34-13, 세조 10년 8월 기해). 楮貨는 그동안 기피현상으로 流通이 거의 중단되었으므로 成宗 3년 10월에는 收贖 등에 楮貨를 쓰게하는 등으로 興用策을 강구하였다(《成宗實錄》 권23-5, 성종 3년 10월 정축). 그때 楮貨 1張의 값은 米 1升이었으나 民間에서는 그 사용을 기피하여 조선후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大典會通研究》 戶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12, p.87).

267) 七品銀은 純度 70%인 銀으로서 이를 丁銀이라고도 하여 通貨의 표준으로 삼았다.

은 楮貨 1張에 準한다. [補] 저화는 지금은 폐지 되었다.

【罪犯準計²⁶⁸⁾】〔原〕大明律에서 罰俸錢²⁶⁹⁾ 10일
이라 한 것은 笞 10에 準²⁷⁰⁾하고 半月은 笞 20,
1月은 笞 30, 兩月은 笞 50에 準한다. ○ 充軍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杖 100 徒 3년에
準하고, 먼 변방지역으로 充軍되는 자·奴婢가
되는 자·전가족이 변방지역으로 強制移住되는
자·아주 작은 역의 驛吏로 소속되는 자 등은 모
두 杖 100 流 3000리에 準한다.

【告尊長²⁷¹⁾】〔原〕 아들과 손자·妻와 妾·奴婢

- 268) 罪犯準計란 大明律의 처벌규정중 일부를 우리실정에 맞게 환산기준을 세운 것이다.
269) 罰俸錢은 罰로서 일정기간 祿俸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大明律直解》 권3, 吏
律 公式편의 講讀律令條에 의하면 모든 관청의 관리는 法律을 熟讀하여 律意에 精通해
야 하는데 이에 위반하면 初犯인 경우 1개월의 祿俸을 회수(罰俸錢 1月)한다고 하였
다. 또 《위의 책》 권27, 刑律 捕亡편의 盜賊捕限條에 의하면 捕盜官이 1개월내에 强
盜를 잡지 못하면 罰俸錢 兩月에 처한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하여는 世宗 11年 4月 刑
曹의 啓請에 따라 罰俸錢 1月은 笞 30度, 半月은 笞 20度, 10日은 笞 10, 兩月은 笞
40度에 準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世宗實錄》 권44-10, 세종 11년 4월 무술).
270) 準은 본받다는 뜻이고 准(따르다, 의거하다)과 같은 뜻으로도 쓰인다. 准에 관해서
《大明律直解》 八分例字之義에서 眞犯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고 예컨대 枉法에 准하고
盜論에 准한다는 것은 단지 그 罪에 准한다는 것일 뿐 除名이라든지 刺字까지는 準用하
지 않고 杖 100 流 3000리에 처할 뿐이라는 것이다. 《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에서도 准은 그 罪에 그친다고 하여 附加刑까지 準用하지는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271) 告尊長條에서는 《大明律直解》 刑律 卷20 鬪毆편, 권21 罵詈편, 권22 訴訟편 등에
서 “子孫·妻妾·奴婢·下官 등이 父祖·夫·家長·上官 등을 구타·욕설·고소·고발
하는 등 不道德한 犯行을 한데 대한 처벌규정”을 두었는데 여기서는 이들을 골라서 그
刑罰을 加減·變更 등으로 정리한 것이다.

등이 父母나 家長²⁷²⁾을 告訴·告發하면 謀叛과 反逆의 경우 이외는 絞首하고 奴妻나 婢夫²⁷³⁾가 家長을 告訴·告發하면 杖 100 流 3000里에 처한다. 옛 奴婢나 雇工²⁷⁴⁾이 옛 家長을 毆打하거나 辱說·告訴·告發하는 경우에는 각각 家長을 구타·욕설·고소·고발하는 刑律에서 2등급을 減하여 論罪한다²⁷⁵⁾. ○ 무릇 下官이 한 등급 높은 官員에게 욕설한 경우에는 罵人本律(《大明律直解》 권21 罵詈 罵人)에서 1등급씩 刑을 더하고 두 등급 높은(隔等) 경우에는 또 1등급을 더하는 등으로 이렇게 차례로 더하여 杖 100에 이르면 그친다²⁷⁶⁾. 工·商·賤隸는 官職의 有無를 막론하고 각각 또 1등급씩 刑을 더한다. [補] 婢夫가 家長을 凌辱(없신여겨 욕보임)한 경우에는 杖 80 徒 2년에 처하되 家長이 밑에 거느리고 살아가는 婢夫가 아닐 경우에는 杖 100에 처한다. ○ 吏胥와 軍卒이 5品 이상의 官員에게 욕설한 경우에는 杖 100에 처하고

272) 家長은 前近代社會에 있어서 妻가 夫를 호칭할 때 쓰는 말이나 때로는 종이 上典에 대해서, 雇工이 집주인에 대해서도 썼다(윤국일, 《앞의 책》, p.464).

273) 奴妻는 奴의 妻로서 그 身分이 良人이거나 良賤相訟中인 자(《太宗實錄》 권26-31, 태종 13년 10월 임술)에 대한 호칭이다. 反面 婢夫는 婢의 남편으로서 그 신분이 奴가 아닌 자로서 대체로 雇工과 同一視 되었다(이태진외 4인 《앞의 책》 p.700). 그러나 실제상 사회적으로 그들은 노비와 다름없는 처지였지만 매매·증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노비와는 法制上 그 신분이 매우 달랐다.

274) 주 122 및 解說篇 24 雇工 參照.

275) 옛(舊)奴婢와 옛(舊)雇工 등이 옛(舊)家長을 구타·욕설·고발할 경우에 《大明律》에서는 통상인(凡人)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世宗 14年 9月 논의하여 그보다는 刑量을 높게 하되 奴婢와 雇工이 家長을 구타한 《大明律》의 형벌조항보다는 형의 등급을 낮추도록 한 것이다(《世宗實錄》 권57-35, 세종 14년 9월 계유 및 《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刑典).

276) 他人에게 욕설한 자에 대해서는 《大明律直解》 권21, 刑律 罵詈편에 의거 통상적으로는 笞 10에 처하고 奉命使臣에게 관리가 욕설하거나 관내 백성들이 守令에게 욕설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최고 杖 100度까지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이를 조정하여 差等官·隔等官 등을 욕설한 모든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加重할 刑量을 정한 것이다.

6품 이하 관원에게 욕설한 경우에는 3등급을 減刑하여 杖 70에 처하되 事理에 크게 어긋난 경우에는 杖 100 徒 3년에 처한다. 다른 관청의 官員에게 욕설한 경우에는 각각 1등급씩 감형한다²⁷⁷⁾.

[續] 친어머니나 혹은 친형제를 허위사실로 속여서 陳告함으로써 타인의 奴婢가 되게한 경우에는 아들과 손자가 조부모와 부모를 誣告한 律²⁷⁸⁾에 의거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絞首한다. ○ 무릇 아들과 손자가 그 조부모와 부모를 告訴하는 경우에는 曲直(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論罪하여 人倫을 밝힌다.

【禁制²⁷⁹⁾】〔原〕奔競²⁸⁰⁾者는 吏曹와 兵曹의 官員·堂上官인 諸

277) 《大明律直解》 권21, 刑律 罵詈 罵制使及本管長官條에서는 吏卒이 5品 이상의 長官에게 욕설한 경우에는 杖100, 6品 이하 長官에게 욕설한 경우에는 각각 3등급을 減刑하도록 규정하였고 또 佐貳官(參判·參議)이나 首領官(郎官)에게 욕설한 경우에는 遞減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여기서는 5·6품으로만 구별하여 규정하고 事理에 어긋난 경우에는 刑量을 높이고 다른 관청의 관원에 대한 욕설의 경우에는 1등급씩 감형하였다.

278) 아들과 손자가 조부모와 부모를 誣告한 律이란 《大明律直解》 권22 刑律 訴訟 誣告條를 말하는데 권21, 刑律 罵詈條도 아울러 준용하여 死刑(絞刑)에 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279) 禁制條에서는 여러가지 禁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世宗 11年 2月 司憲府의 啓에 따라 禁令條項을 板文으로 써서 光化門밖 및 都城各門·鐘樓 등에 걸어서 大小人員이 모두 알도록 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혼인에 있어서의 사치스러운 儀式등을 금지한다는 것과 말타고 종묘나 奎文 앞길을 가는 것, 신분에 따른 의복이나 관·금은 장식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는 것 등이다(《世宗實錄》 권43-14, 세종 11년 2월 신사). 세종 31년 정월 禁制條件에서도 신분에 따른 衣冠의 규제와 가족신은 班常(尊卑)을 막론하고 모두 금지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었다(《위의 책》 권123-6·7, 세종 31년 정월 병오). 성종 3년 정월에는 禁奢侈節目을 만들어 역시 衣冠이나 신의 사치를 규제하고 獻壽·婚禮·喪禮·祭享 때의 지나친 허례허식을 금지하였다(《成宗實錄》 권14-12, 성종 3년 정월 기미).

將281)·吏房承旨와 兵房承旨282)·司憲府와 司諫院의 官員·判決事283) 등의 집

280) 奔競은 이익을 추구하여 권세 있는 사람을 경쟁적으로 쫓아다닌다는 뜻으로 물을 먹여 엽관운동을 함을 의미한다(《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刑典 및 윤국일 《앞의 책》 P.465). 定宗 元年 8月 임금은 下敎하여 奔競을 금지하였는데 위로는 宗室·公侯大臣으로부터 아래로는 百僚庶士에 이르기까지 私的인 만남(私謁)을 금지하되 3·4寸이나 節制使의 軍官·功臣 등의 慶弔事時的 訪問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었다(《定宗實錄》 권 2-4, 定宗 원년 8월 경자). 武臣家와 執政家에 出入하는 자를 무차별로 구속하다 보니 사람마다 두려워하여 논의가 분분하므로 太宗 元年 5月 임금은 親家와 外家쪽의 5世를 같이 하는 친족(袒免親)이하부터 금지(따라서 同高祖 8寸이내는 허용)한다고 하였다(《太宗實錄》 권1-29, 태종 원년 5월 무신). 成宗 元年 正月 임금이 司憲府에 傳旨하기를 奔競法은 본래 요행을 바라는 무리가 權門에 달라붙어서 청탁하는 것을 금하는데 있으므로 宰相家에서 비록 친척이나 僚友일지라도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며 慶弔事나 迎送之禮도 행할 수 없게 하라는 것이 어찌 祖宗의 立法本意겠는가라 하고 앞으로는 吏·兵曹의 당상관, 吏·兵房의 승지, 臺省이나 도총부의 當상관, 衛將, 判決事 이외는 종전대로 금하지 않도록 하되, 만약 청탁하는 일이 발각될 때에는 依法論斷하라고 하였다(《成宗實錄》 권2-11, 성종 원년 정월 을미).

281) 여기서의 諸將이란 五衛의 當상관인 衛將을 말한다. 衛將은 《經國大典》兵典 京官 職에서는 從2品으로서 他官이 겸직했으나 《續大典》 같은 條에서는 正3品으로 낮추었다. 太宗 元年 5月, 執政家에 대한 奔競은 司憲府에서 禁하도록 함과 동시에 武臣家에 대한 奔競은 三軍府에서 禁하도록 하였다(《太宗實錄》 권1-29, 태종 원년 5월 무신). 世祖 9年 正月, 司諫院에서는 都鎮撫에 대해서도 奔競을 禁하도록 啓請하였다(《世祖實錄》 권30-4, 세조 9년 정월 계묘). 衛將에 대한 奔競금지 조치는 성종 원년의 傳旨로 서이다(《成宗實錄》 권2-11, 성종 원년 정월 을미).

282) 吏房承旨와 兵房承旨는 都承旨와 左副承旨를 말하는데 이들은 세종 22년 5월 이전에 이미 奔競금지 대상자였으며 그때 司憲府의 啓에 따라 6승지 모두를 奔競금지 대상으로 하였는데(《世宗實錄》 권89-18, 세종 22년 5월 병진), 앞서 살펴본 바(주280)와 같이 성종 원년의 傳旨에는 吏·兵房승지만 분경금지 대상으로 되어 그대로 《경국대전》에 등재된 것이다.

283) 判決事는 掌隸院의 長官으로서 正3品 堂上官이며 郎僚인 司議(正5品), 司評(正6品)과 함께 奴婢訟事에 대한 判決을 맡았고 誤決의 경우에는 모두 처벌당하였다(《成宗實錄》 권113-11, 성종 11년 정월 신축). 장예원은 태조 원년 7월에 설치된 刑曹都官(《太祖實錄》 권1-46, 태조 원년 7월 정미)이 개칭된 것으로서, 都官이 세조 11년이후 辨定院으로 되었다가 다시 세조 13년 정월(辨定院이) 掌隸院으로 개칭되었다(《世宗實錄》 권41-1, 세조 13년 정월 기사). 그러나 노비소송이 繁多하여 都官이외 별도로 태조 때부터 임시기구로서 奴婢辨定都監이 설치되었고(《定宗實錄》 권4-2, 정종 2년 4월 신축), 그후에도 그러한 임시기구가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刑曹나 한성부에서도 노비소송을 맡아서 장예원의 기능이 弱化되었으므로 영조 10년의 폐지논의를 거쳐서 결국 영조 45년경 폐지되었다(《英祖實錄》 권39-1, 영조 10년 9월 계유·권 79-7, 영조 29년 2월 신묘·권113-27, 영조 45년 12월 경신).

에 同姓 8촌·異姓 6촌과 妻親 6촌·婚姻家(사돈집)·이웃 사람 등이 아니면서 출입하는 자 杖 100 流 3000리에 처한다. ○ 중국 북경으로 가는 使臣(赴京使²⁸⁴) 및 일본·만주 등 이웃 나라에 使節로 가는 官員이나 수행인²⁸⁵이 정해진 數量 이외의 物品과 돈(銀貨)을 더 갖고 가는 경우와 북경으로 가는 正使와 副使는 布 10필, 書狀官²⁸⁶ 이하의 정식 官員(正官)은 각 5필, 打角夫²⁸⁷는 각 3필이 (허용되)며 人蔘은 正使 이하 각 10근이 (허용된)다. 遼東으로 가는 자²⁸⁸는 布 각 10필과 人蔘 각

284) 赴京使는 중국 서울인 북경으로 가는 使臣(正使)을 말하는데 正使·副使·書狀官을 三使라고 하였다. 그러나 《經國大典》 刑典 禁制註에서는 赴京使와 書狀官만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널리 正使와 副使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正使와 副使는 正3品 당상관 이상의 宗親이나 관료중에서 選定되었다. 赴京使節一行은 正·副使와 書狀官 각 1인 이외 譯官·押物官 등 正官이 30명 정도였으나 使行의 종류에 따라 그 수가 달랐다(이성무의 4인 《앞의 책》 P.398 및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1972, pp.64~65).

285) 이웃나라에 使節로 가는 官員이나 수행인이란 17세기 중엽이전에는 만주(女眞)와 일본으로 가는 通信使일행(正使·副使·從事官(三使)·軍官·譯官 이하 正官 기타 수행원)을 말하는데, 17세기 중엽 女眞族인 滿淸이 대륙을 정복하자 그후에는 일본으로 가는 通信使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286) 書狀官은 赴京三使중의 一員으로 外交文書를 맡았다. 書狀官은 보통 正4品에서 6品까지의 淸官이 임명되어 事件을 기록하고 귀국 후 임금에게 見聞을 보고하였다. 동시에 書狀官은 使臣一行을 감찰하고 渡江時에는 人馬와 짐을 점검하였다(이성무의 4인 《앞의 책》 p.399). 書狀官에 상당하는 직책을 隣國使行(通信使節)에서는 從事官이라 하였지만 赴京使行의 從事官은 무역 등 잡무를 맡은 수행원으로 보인다(《世宗實錄》 권 67-3, 세종 17년 정월 정해 및 《成宗實錄》 권174-16, 성종 16년 정월 계사).

287) 打角夫는 中國으로 가는 使臣一行의 諸具를 監守하는 從人이다. 태종 6년 정월부터 赴京使臣의 수행원으로서 醫員1인을 押物·打角夫 T/O중에서 선발·과견하여 藥材를 貿易하도록 하였고(《太宗實錄》 권11-3, 태종 6년 정월 기미), 또 外國語를 공부한 사람(譯學人)을 三等分하여 上等은 通事로, 中等은 押物·押馬로 下等은 打角夫로서 과견하였다고 하니(《文宗實錄》 권3-37, 문종 즉위년 9월 기미) 打角夫가 단순한 심부름만을 하는 雜役夫는 아닌 듯 하였다. 이와 같이 打角夫는 譯學人(위 《문종실록》 권 3-37 및 《端宗實錄》 권13-23, 단종 3년 정월 임신)중에서 선발되거나 醫官으로 充員(위 《太宗實錄》 권11-3)되었을 뿐만 아니라 書吏도 打角夫라 호칭하였으므로 吏曹에서는 그 호칭이 부적당하다고 하였다(《世宗實錄》 권48-27, 세종 12년 6월 임신).

3근이 허용된다. (迎送軍²⁸⁹)도 같다.) 일본 등 이웃 나라의 使節로 가는 正使와 副使는 布 20필, 從事官²⁹⁰은 布 10필, 수행인(從人²⁹¹)은 布 3필이 허용되며, 人蔘은 正使 이하 각 10斤이 허용된다. 布는 모두 열세배(10升布²⁹²)를 쓴다. [增] 人蔘 20兩을 1包로 하고 10斤을 8包로 하였으나 지금은 人蔘이 禁止品(禁條)에 들어가 있어서 銀을 人蔘대신 使用하며 每人蔘 1근을 銀 200兩으로 대신 셈해서 모두 8包라 하였다. 正使·副使 및 書狀官·從事官이 갖고 가는 인삼도 모두 폐지한다. 雜文書를 (몰래) 갖고 가는 경우에는 모두 杖 100에 처하고, 禁止된 物品을 몰래 파는 경우에는 闊細布²⁹³·綵紋席²⁹⁴·厚紙²⁹⁵·貂皮²⁹⁶·土豹

288) 遼東으로 가는 자란 公貿易관계로 요동에 왕래하는 通事를 말한다. 세종 14년 10월 임금이 예조에 傳旨하여 요동무역 通事에게 布10필을 사사로이 갖고 갈 수 있도록 하였다(《世宗實錄》 권58-4, 세종 14년 10월 경자). 또 세종 17년 정월에는 요동무역 通事の 定員을 4인으로 정하였다(《위의 책》 권67-3, 세종 17년 정월 정해).

289) 迎送軍은 中國으로 내왕하는 使臣일행을 遼東지역까지 迎護送하는 軍士로서 騎正兵으로 差定하였으나 中路에서 도망자가 생겨서 成宗 16년 정월 임금은 이 문제를 영돈녕 이상이 검토하여 의견을 내도록 하였다. 거기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면 迎·護送軍은 황해도와 평안도의 鄉戶役으로서 황해도는 길이 멀기 때문에 騎馬를 갖고 가는 부담을 덜어주고 平安道에만 그것을 부담시키자는 의견과 평안도는 千秋使·聖節使 기타 특별 使行時에 맡는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고 오히려 황해도는 단지 正朝 使行때만 맡으므로 부담이 가볍다는 의견 및 그 부담을 각 도에도 아울러 지우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成宗實錄》 권174-15·6, 성종 16년 정월 계사).

290) 從事官에 관해서는 주286 참조.

291) 從人은 使臣의 수행원으로서 通事·押物·醫員·軍官·三使의 伴尙·工人·領船 등이다(《成宗實錄》 권75-6, 성종 8년 정월 정미).

292) 10升布는 800올로 짠 베를 말한다. 正布가 5升(400올)布이므로 10升布는 아주 細布를 의미한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703).

293) 闊細布는 폭이 넓고 地質이 치밀한 布(조선총독부, 《앞의 책》, p.662)로서 세종 때부터 進獻用으로 경상도 지방에서 20升으로 특별히 짜서 만든 것이다(同上 및 《端宗實錄》 권4-16, 단종 즉위년 11월 경오).

294) 綵紋席은 綵花席 또는 花紋席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紋樣을 염색해 넣은 자리이다. 明나라 進獻用 花紋席은 黃花席·彩花席·滿花寢席·滿花簾席·滿花方席 등이 있으며, 慶尙道에서 貢物로 바쳐진 것이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292 및 p.703과 《世宗實錄》 권150-1, 地理志 慶尙道). 이들 席物의 원료는 莞(왕골) 기타로 되어 있다.

皮 297) · 海獺皮 298) 따위를 西北 兩界와 浦所 299) 및 客館 300)에서 파는 것도 역시 禁止한다. 아래도 같다. 杖 100 徒 3년에 처하며 죄가 重한 경우에는 鐵物 · 소와 말 · 金과 銀 · 珠玉 · 寶石 · 焰硝 301) · 軍器 따위 絞首刑에 처한다. 부탁한 자에게는 모두 1등급 減刑한다. ○ 역 말을 함부로 탄 자와 사사로이 내어준 자는 모두 杖 100 流 3000리에 처하며 말의 數를 더 내준 (加數) 자 · 길을 돌아서 간 자 · 驛을 지나면서

295) 厚紙는 두꺼운 종이로서 주로 明나라 進獻用 表紙와 國用表紙로 쓰였다. 세종 5년 9월 禮曹의 啓에 의하면 明나라 使臣이 厚紙중 表紙와 擣鍊紙를 많이 요구하였다(《세종실록》 권21-16, 세종 5년 9월 경인). 《世宗實錄》 地理志에 의하면 경상도(권 150-1) · 전라도(권 151-2)에서 나라에 바치는 貢物중, 여러 가지 종이에 관한 것이 적혀 있다. 즉 進獻表紙 · 國用表紙 · 擣鍊紙 · 眼紙 · 白奏紙 · 常奏紙 · 狀紙 · 表箋紙 · 咨文紙 · 副本紙 · 單字紙 · 奏本紙 · 皮封紙 · 書契紙 · 祝文紙 · 中幅紙 · 常表紙 · 甲衣紙 · 歲畫紙 · 火藥紙 · 油屯紙 · 油紙 등이다.

296) 貂皮는 담비의 毛皮로서 獺皮라고도 한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703). 세종 7년 8월 호조의 啓에 따라 평안도에서 700領, 함길도에서 1.365領씩 매년 尙衣院에 상납하도록 정하였다. 이것과 별도로 함길도에서는 甲山郡所産 貂皮 200領씩을 매년 사서 進上하도록 하였다(《世宗實錄》 권29-24, 세종 7년 8월 기사). 또 《世宗實錄》 권153-1, 地理志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바치는 貢物중에도 포함되어 있다.

297) 土豹皮는 속칭 時羅孫皮(스라소니 가죽)라고 한다(《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298) 海獺皮는 족제비과에 속하는 바다 짐승인 해달의 가죽으로서 다갈색이다. 해달피는 水獺皮와 함께 강원도의 貢物이 되어 있다(《世宗實錄》 권153-1, 지리지, 강원도).

299) 浦所는 乃而浦 · 富山浦 · 鹽浦 등 三浦의 倭人處所를 말한다. 세종 20년 2월 호조의 보고에 의거한 의정부의 啓에 따라 貿易을 원하는 자는 浦所에 가서 하도록 하되 禁止品을 갖고 가거나 賣買를 濫行하는 자는 守令으로 하여금 檢察하도록 하라고 하였다(《世宗實錄》 권80-18, 세종 20년 2월 을묘).

300) 客館은 外國使臣이 서울에 와서 거처하는 곳으로서 慕華館(中國人), 北平館(野人), 東平館(倭人) 등이 있었으나 17세기 중엽 이후 北平館은 없어졌다.

301) 焰硝는 화약제조용 기본원료이다. 瓦家의 지붕에 쌓인 塵土중에서 소금기가 많은 것을 구어서 取하였다. 이러한 煮取기술은 세종 때에 크게 발달하였으며 倭人에게 그 제조법이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언제나 官員의 감독하에서 煮取가 행해졌다고 하며, 세종 즉위년의 일년간의 소비량이 8000근이었다고 한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263 및 許善道 《韓國火藥發達史》 上, 陸士軍事博物館, 1969, pp.26~29).

말을 바꾸지 아니한 자 · 과거 시험장에서 응시자로서 남이 지은 글을 빌린 자 · 남에게 대신 글을 지어준 자는 모두 杖 100 徒 3년에 처한다. ○ 사사로이 官府에 출입한 자 父 · 子 · 壻 · 兄 · 弟는 이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驛에서 (私私로이 官府에 출입한 자를) 禁하지 아니하고 侵損한 경우에는(侵損者를) 杖 80에 처한다. 儒生이나 婦女로서 절에 올라간 자 비구니(女僧)가 있는 절도 같다. 朝官이 宮中에서 내보낸 宮女(侍女)나 水賜(水賜³⁰²)를 (妻妾으로)娶한 경우와 문서를 훔어서 다시 종이를 만든 자 종이를 쓴 사람은 2등급을 減刑하여 論罪한다. 都城안에서 野祭³⁰³를 행한 자 · 士族 婦女로서 山間水曲³⁰⁴에서 놀이 잔치를 벌인 자 및 野祭와 山川祭 · 城隍祭 · 祠廟祭³⁰⁵를 직접 행한 자 · 科擧시험장에서 吏

302) 水賜는 무수리라고도 하는데(元의 方言) 임금과 세자가 거처하는 大殿과 東宮의 청소 등을 맡은 婢子를 말하며 그러한 일을 하는 童男은 巴只라고 하였다. 조선국초에는 그들이 宮밖에서 번갈아 가면서(更番으로) 宮中을 出入하였으나 太宗 11年 윤 12月, 巴只를 少女(東殿)나 宦者(大殿)로 代替하고, 水賜伊도 궁밖출입을 못하게 하였다(《太宗實錄》 권22-51, 태종 11년 윤 12월 무오).

303) 野祭는 길가나 들판에서 무당이나 중을 불러 벌이는 雜神祭로서 굿이라고도 하였다. 세종 13년 8월 사헌부에서 啓하기를 무식한 무리들이 邪說에 惑하여 疾病者나 死亡者가 있으면 문득 野祭를 행하는데 男女가 무리를 이루고 무당이나 박수를 불러들여 酒肉을 많이 陳設하고 또 僧徒를 끌어들여 노래부르고 춤추며 염불을 외우는 등으로 난잡스러우니 守令으로 하여금 엄중히 금하도록 하되 위반자가 있을 경우에는 官吏 및 里正長 · 色掌 등을 모두 그죄로 다스리도록 하자고 하여 임금이 이에 따랐다(《世宗實錄》 권 53-10, 세종 13년 8월 갑오).

304) 山間水曲은 山間이나 水曲을 나누어 보는 견해도 있으나(윤국일 《앞의 책》 p.466 및 이태진외 4인 《앞의 책》 번역편, p.439), 山間의 계곡물이 굽이쳐 흐르는 곳(王羲之의 蘭亭詩序의 曲水宴 같은 곳)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05) 山川 · 城隍 · 祠廟祭에 관하여 일부 의견은 山川神과 城隍神을 모시는 壇祭를 의미한

典³⁰⁶)이나 僕隸³⁰⁷)가 문제를 漏洩³⁰⁸)하거나 왕래(交通)한 경우 및 그것을 고의로 점검·조사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杖 100에 처한다. ○ 貢物³⁰⁹)을 代納한 자는 杖 80 徒 2년에 처하고 영구히 임

다고 보고 그러한 제사는 국가에서 지내는 中祀 또는 小祀인데도 개인이 함부로 지내면 위법이라는 것이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704). 그러나 山川祭와 城隍祭는 祠廟祭와는 별개의 제사로 생각된다. 한국법제연구원 《大典會通研究》 禮典編 pp.192~201에서 山川·城隍·風雨神에 대한 제사를 설명하고 《國朝五禮儀》 序例 卷1, 吉禮 속에 그 절차규정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한 제사는 고려시대에도 있었으나 조선 태종 11년 5월 예조의 啓에 따라 洪武禮制에 의거 山川神·城隍神·風雲雷雨神 등 三位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太宗實錄》 권21-19, 태종 11년 5월 무진). 태종 14년 8월 예조의 啓에 따라 山川에 대한 제사를 分等하였는데 큰 산악과 바다의 神에 대한 제사는 中祀로 하고 그외 대부분의 山川神과 城隍神에 대한 제사는 小祀(소재지 守令이 지냄)로 하였다(《위의 책》 권28-14, 태종 14년 8월 신유). 祠廟祭는 山川神과 城隍神을 모시는 壇祭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神(先王·孔子·祖上·關羽 기타)을 모시는 여러 가지 祠廟에 있어서의 제사를 의미한다. 天神에 대한 제사를 祀, 地祇에 대한 제사를 祭, 人鬼에 대한 제사를 享이라 하였으므로(《國朝五禮儀》 序例 卷1, 吉禮) “祭”라 했으니 祠廟祭를 地祇에 속하는 제사로 좁게 볼수도 있겠지만 실제 祭·祀·享은 混用되고 있으므로 여러 雜神을 모시는 사당에 있어서의 제사를 지칭한다고 하겠다.

306) 吏典은 중앙관청의 下級吏胥로서 관청에 따라 令史(六曹등)·椽吏(승정원)·書史(尙瑞司)·典史(三軍府) 등으로 불리었다(《太宗實錄》 권18-44, 태종 9년 11월 계사). 그들은 소속관청의 高下에 따라 文武班 7品 또는 8品職으로 去官하였다(同上 및 《위의 책》 권3-8, 태종 2년 2월 임술과 《世宗實錄》 권3-29, 세종 원년 3월 임신). 그의 書員과 庫直 및 지방관청의 衙前과 將校도 吏典이라 하였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697).

307) 僕隸는 중앙 각 관청에 배정된 根隨奴·差備奴 등의 奴僕을 말한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705). 또 그러한 驅從과 使令외에 지방의 官奴와 使令도 僕隸라 하였다.

308) 漏洩은 새나가서(漏는 泄也) 퍼지는 것(洩은 散也)을 말하는데 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言語가 새나가서 퍼진다고 하였다(《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309) 貢物을 租稅(有田則有租) 및 力役(有身則有庸)과 더불어 고려·조선 봉건국가경영의 주요 財源이 되었다. 貢物은 원래 有家則有調(《增補文獻備考》 권149, 田賦考9-8)라 하여 家戶단위로 배정된 특산물의 收取를 의미하였으나(土貢) 그후 租稅的 성격으로 轉換되어 갔다(田貢). 또는 土貢(元定貢物)을 官備貢物과 民戶의 貢賦로 나눌 수 있고 常貢과 別貢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물품의 종류는 매우 많았다. 여하간 貢物을 포함한 조선시대의 貢納制度에 관하여는 《大典會通研究》 戶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12, pp.309~484(해설편)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용하지 아니하며(永不敍用) 그것을 들어 주고 따른 守令은 制書有違律(王旨 등 위반죄)로 論罪한다. 그 물건은 官에서 沒收한다. ○ 大小員人³¹⁰⁾으로서 紅色·灰色·白色³¹¹⁾의 겉옷(表衣)을 입거나 白笠³¹²⁾을 쓰거나 붉은 언치(紅靸³¹³⁾)를 사용하거나·술그릇(酒器)이외로

310) 大小員人은 크고 작은 官員과 官人이란 뜻으로 官人중에는 관직을 거친 자도 있으나 儒賢과 같이 林下에서 학문에만 專念하는 士君子도 있다. 대체로 前現職(時散)文武官과 生員·進士·錄事·有蔭子孫·妻子孫承重者가 여기 속한다고 볼 수 있다(《위의 책》 禮典編 p.177).

311) 紅色옷은 임금의 御衣와 색깔이 비슷하고, 灰色옷은 중의 緇衣와 같기 때문에 금한다고 하였으며 또 白色옷은 고려시대부터 의복으로서는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서 금지하였으나 正兵이나 庶人들에게는 이를 금지하지 않아서 이로써 貴賤을 변별하였다(《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紅衣에 대한 금지는 太宗 17年 6月 예조판서 변계량이 啓請한 바 있으나 임금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太宗實錄》 권33-68, 태종 17년 6월 신해). 그러나 세종 31년 정월, 예조의 보고에 의거한 의정부의 啓에 따라 양반婦女의 外衣와 庶人 및 賤口의 內外衣服 중 大紅色衣는(翌年부터) 금지하기로 하였다(《世宗實錄》 권123-7, 세종 31년 정월 병오). 大小人員과 庶人들의 紅色表衣 착용금지는 예종 원년 7월의 詳定所의 啓에서도 나타나 있다(《睿宗實錄》 권6-35, 예종 원년 7월 경인). 灰色옷은 태종 2년 3월에 금지하였으나(《太宗實錄》 권3-13, 태종 2년 3월 임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는지 태종 11년 12월 예조에서 玉色옷과 함께 灰色옷을 금지할 것을 啓請하여 翌年 正月 初1日부터 금하도록 하였다(《위의 책》 권22-46·47, 태종 11년 12월 신축). 세종 11년 2월 사헌부에서 啓하기를 大小人員이 各年度의 受教(法令)를 몰라서 犯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時散 大小人員이 灰色 衣服을 입는 것을 禁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禁令을 쓴 板을 도성 各門과 鐘樓에 걸도록 건의하였다(《世宗實錄》 권43-14, 세종 11년 2월 신사). 白色옷은 태종 원년 5월에 금지하였으나(《太宗實錄》 권1-29, 태종 원년 5월 갑진), 세종 7년 10월 職事가 있는 人員(現職者) 이외에는 白衣를 금하지 말도록 하였다(《世宗實錄》 권30-7, 세종 7년 10월 을미). 그러나 그후 職事 有無를 막론하고 士族인 大小人員은 모두 白色 表衣의 착용이 금지되고 正兵이나 庶人에게만 허용하였지만 세조 2년 3월 직제학 梁誠之의 상소에 나타난 바와 같이 白色은 元(몽고)人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숭상하여 慣行上으로 白衣가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世祖實錄》 3-26, 세조 2년 3월 정유).

312) 白笠은 平涼子(패랭이)인데 조선國初에는 士大夫들이 모두 썼으나 경국대전시행 이후부터는 喪人이나 常賤人이 쓰도록 하고 士大夫들이 平素에 쓰는 것은 금지하였다(《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313) 紅靸은 임금이 쓰는 乘馬用 鞍具이다(《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金銀이나 靑畫白磁로 된 그릇³¹⁴⁾을 쓴 자 庶人(平民)

남녀에게는 붉은 옷과 자주색 옷³¹⁵⁾ · 자주색 띠³¹⁶⁾ · 金銀이나 靑畫 酒器 · 交綺
 綯³¹⁷⁾ · 玉³¹⁸⁾ · 珊瑚³¹⁹⁾ · 瑪瑙³²⁰⁾ · 琥珀³²¹⁾ · 明珀³²²⁾ · 靑金石³²³⁾ 및 黃銅의 鞍

314) 靑畫白磁로 된 그릇은 흰바탕에 푸른 빛갈로 그림을 그려 넣은 磁器로서 法(經國大典)上 그 사용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大臣과 外戚들이 쓰기를 좋아하였으므로 成宗 8년 윤 2월 大司憲 金永濡가 啓하기를 그들은 지위가 높아서 法司의 관리들이 적발하기 어려우니 임금이 금지할 것을 신칙하여 달라고 請하여 임금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成宗實錄》 권77-10, 成宗 8년 윤 2월 신해).

315) 자주색옷에 관하여 세종 11년 2월 사헌부에서 啓하기를 進上用 및 靑內에서 쓰는 경우이외에는 庚戌年初(세종12년초)부터 그 사용을 금지하자고 하여 임금이 이에 따랐다(《世宗實錄》 권43-14, 세종 11년 2월 신사). 또한 세종 32년 정월 사헌부에서 朝士들이 공공연히 자주색 비슷한 색의 옷을 입는다고 하면서 이를 금지할 것을 啓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위의 책》 권127-10, 세종 32년 정월 계사).

316) 자주색 띠는 예종 원년 7월 詳定所의 啓에 따라 3品 이상만 허용하고 4品 이하는 금지하였다(《睿宗實錄》 권6-37, 예종 원년 7월 경인).

317) 交綺綯는 비단과 생명주(生絲)실을 섞어서 짠 얇은 紗붙이(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706) 또는 兩色무늬를 섞어서 짠 비단(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683)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318) 玉은 장식용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곳에서 產出되었다. 세종 30년 5월 의정부의 啓에 의하면 淸州 · 金浦 등지에서 생산되는 玉도 궁중용 복식에 쓰기 알맞음으로 碧瀆에서 생산되는 玉의 例에 따라 사람들이 함부로 採取하여 私用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과 碧瀆의 玉에 대한 禁命은 여러 번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채취해서 사사로이 매매하는 자들이 있으니 앞으로는 위의 여러 곳에서 생산되는 玉을 채취하여 매매하면 《大明律》 권12 禮律 儀制 服舍違式 僭用違禁龍鳳文條에 의거 官民을 막론하고 각자 杖 100, 徒 3년에 처하고 工匠은 杖 100에 처한다는 것이었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世宗實錄》 권120-14, 세종 30년 5월 신묘).

319) 珊瑚는 갯근의 장식용으로 썼다. 세종 11년 2월에는 工商賤隸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고(《世宗實錄》 권43-14, 세종 11년 2월 辛巳) 세종 24년 9월에는 鄉吏들이, 예종 원년 7월에는 庶人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위의 책》 권97-43, 세종 24년 9월 임오 및 《睿宗實錄》 권6-36, 예종 원년 7월 경인).

320) 瑪瑙는 차들의 하나이며 樹脂狀광택을 내고 간간이 다른 광물이 침투하여 고운 무늬를 나타내는 玉類로서 무늬가 交錯하여 馬腦와 같고, 西域에서 나왔다고 한다(《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그러나 世宗 29年 8월 강원도 감사가 三陟에서 產出된 마노를 進上하였다(《세종실록》 권117-10, 세종 29년 8월 계미)고 하니 國產品도 있었다. 마노도 산호와 함께 세종 24년 9월에는 鄉吏들이, 예종 원년 정월에는 庶人들이 갯근의 장식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주319의 실록기사).

321) 琥珀은 地質時代의 樹脂(송진)가 땅속에서 수소 · 산소 · 탄소 등과 화합하여 들처럼 단단하게 된 광물질로서 대개 누른 빛을 띤 투명체이며 광택이 있어서 장식용으로 쓰인다. 《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에서는 松脂가 땅에 들어가 1,000년이 되면 茯苓

飾324) · 무늬를 새긴 등자(鍍鎧子325) · 斜皮326) 등을 모두禁한다. ○ 수건 · 머리 띠 · 고삐 끈과 같은 부류의 자질구레한 물건은 비록 紗 · 羅 · 綾 · 段327) 등으로 된 것일지라도 禁하지 아니하며 鞋緣皮328) 따위와 같은 자질구레한 粧

(땅속의 소나무 뿌리에 寄生하는 흑갈색의 버섯류)이 되고 또 1000년이 지나면 호박이 되며 계빈국에서 産出된다고 하였다. 예종 원년 정월에는 庶人들이 산호 · 마노와 함께 갓끈의 장식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睿宗實錄》 권6-36, 예종 원년 7월 경인).

322) 明珀은 호박의 일종으로서 明貝라고도 하였다. 예종 원년 7월, 산호 · 마노 · 호박과 함께 庶人들의 갓끈 등 장식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同上).

323) 靑金石은 正矽酸鹽으로 광물의 하나이며 유리광택을 지니는 반투명체이다. 청색 · 청록색 등 아름다운 빛깔을 지닌다. 예종 원년 7월 산호 · 마노 · 호박 · 명박과 함께 庶人들의 갓끈 등 장식으로 쓰지 못하게 하였다(同上).

324) 黃銅의 鞍飾은 말안장의 낫쇠장식으로 예종 원년 7월에는 이를 黃銅事件이라 하고 庶人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同上).

325) 鍍鎧子是 무늬를 아로새긴 등자(말안장 밑에 늘어진 발걸이)를 말하는데 예종 원년 7월 庶人들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同上).

326) 斜皮는 장구의 줄을 늦추었다가 졸랐다가 하는데 쓰는 가죽고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獬皮(노랑담비의 毛皮)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후자를 의미하며 세종 11년 2월에는 庶人 및 工商賤隸들이 斜皮로 된 구두(靴鞋)를 신지 못하게 하였다(《世宗實錄》 권43-14, 세종 11년 2월 신사). 예종 원년 7월에도 庶人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品目속에 斜皮를 포함시켰다(《예종실록》 권6-36, 예종 원년 7월 경인).

327) 紗羅綾段은 絹織物(비단)의 이름인데 직조방법 · 품질 · 무늬에 따라 나누어진 것이다. 紗는 얇고 투명하게 짠 夏服地, 羅는 紋樣이 疏羅한 薄絹인 夏服地, 綾은 얼음결과 같이 섬세하게 직조된 春秋服地, 段은 광택이 있으며 두껍고 촘촘하게 짠 有紋 · 無紋의 冬服地인 것이다(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9, pp.118~123 및 이성무의 4인, 《앞의 책》, p.356).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는 물론 그 이전부터 양잠을 하여 견직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同上).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지나친 사치의 단속으로 직조기술이 쇠퇴하여 紗羅綾段은 거의 생산되지 아니하고 非本國産(《成宗實錄》 권7-28, 성종 원년 9월 계묘) 또는 上國(중국)之産이라 하였다(《위의 책》 권70-17, 성종 7년 8월 갑오). 그러나 세조 7년 6월과 연산군 8년 정월 綾羅匠을 중국에 보내어 직조기술을 배워 오도록 한 점으로 보아서 약간씩은 생산하였다고 하겠다(《世祖實錄》 권24-19, 세조 7년 5월 정묘 및 《燕山君日記》 권42-7, 연산군 8년 정월 을유). 여하간 紗羅綾段은 사치품으로 간주되어 세종 31년 정월 예조의 보고에 의거한 의정부의 啓에 따라 양반 婦女나 女妓이외는 그것으로 만든 신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이래(《世宗實錄》 권123-6, 세종 31년 정월 병오), 거듭되는 禁制와 中國제품의 流入으로 中宗代에 이르면 거의 생산이 중단되어 우리의 物産이 아닌 것으로 되고 말았다(《中宗實錄》 권7-16 · 17, 중종 3년 11월 임인 · 계묘).

328) 鞋緣皮는 목이 낮은 신의 가장자리에 붙이는 가죽이라 한다.

飾物은 禁하지 아니한다. ○ 질게 물들인 회색옷·雨衣로 쓰는 흰색옷·士族婦女 兒童 서울 妓生(京妓³²⁹) 등의 잡다한 粧飾으로 쓰는 金銀珠玉·正兵³³⁰이나 庶人의 흰색옷은 禁하지 아니한다. 궁궐안에서 절하고서 꿇어앉는 자(拜跪³³¹)·御前이나 대궐을 등지고 앉는 자(背坐³³²) 및 수행하는 하인(跟隨³³³)을 더

329) 京妓는 女樂 등을 맡은 서울 妓女로서 各邑妓中에서 뽑아올렸다. 妓女의 신분은 비록 官婢였으나 양반들의 사랑을 받아서 妓妾이 된 자 중에는 正妻를 소박하도록 하여 그 夫人 양반관료가 처벌되는 수도 많았다고 한다(周藤吉之〈高麗末期より 朝鮮初期に至る 奴婢の研究〉(三), 《歷史學研究》 9-2號, 1939, p.35). 세종 29년 3월에 京妓 125인이 많다고 하여 25인을 줄이고 100인만 남겨 使臣 및 內宴時 女樂 80인, 蓮花臺 20인으로 정하였다(《世宗實錄》 권115-19, 세종 29년 3월 경진).

330) 正兵은 조선시대의 良人兵種으로서 騎正兵·步正兵 등이 있었다. 숙종 6년 5월 병조판서 홍계희의 上書에 의하면 조선국초의 身役法은 매우 엄하여 위로는 公卿의 아들로 부터 밑으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入屬하였는데 有蔭者(士族)는 忠順衛·忠贊衛가 되고 無蔭者(良人)는 甲士·正兵이 된다고 하였다(《肅宗實錄》 권9-33, 숙종 6년 5월 갑오). 물론 그때에도 軍役대상자 모두가 實役인 諸衛나 甲士·正兵 등이 되는 것은 아니고 官職이나 吏役 기타 役務가 있는 자는 그것으로 軍役을 대신하였으며 조선중엽 이후에는 양반의 子弟들이 모두 學生 또는 幼學이라 하면서 軍役에서 빠졌다. 또 工匠이나 公노비들도 빠지다 보니 결국 良人農民들이 主대상자가 되었는데 그들의 番上으로 농사에 큰 지장이 있었다. 처음에는 신체건장한 富實者가 正兵으로 징집되고 허약하고 빈한한 자가 保人으로 되도록 하였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그리하여 조선후기에 이르던 대다수 良人正兵들은 納布軍化하여 正兵·保人의 구분조차 없어지게 되었다(《大典會通研究》 兵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5.12, p.32 및 pp.395~408).

331) 拜跪는 拜揖胡跪의 준말로서 절하고 무릎을 꿇어 앉는 것을 말한다. 胡跪는 元나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708) 《經濟六典》에서 禁止한 이래, 世宗 원년 정월, 同王 8년 7월, 同王 11년 2월에 거듭 靑內에서의 胡跪를 禁斷하였고 (《世宗實錄》 권3-3, 세종 원년 정월 을묘·권33-7, 세종 8년 7월 무오·권43-14, 세종 11년 2월 신사), 世祖 3년 4월에도 이것을 금지하였다(《世祖實錄》 권7-33, 세조 3년 4월 임술). 그러나 세조 10년 4월 工人이 龜城君 浚을 꿇어앉아(跪) 拜謁하였다고 兵曹 鎭撫所에서 工人을 잡아 갔으므로 龜城君이 세조에게 入啓하였던바 僕隸가 어찌 宗親과 같이 서 있겠는가 라 하고 公事郎官도 그러한데 知印이나 錄事의 부류는 堂上관과 對禮할 수 없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33-6, 세조 10년 4월 무술). 그리하여 예종 원년 8월에 靑內에서의 胡跪를 금하되, 衙前의 胡跪는 금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예종실록》 권7-7, 예종 원년 8월 을축).

332) 背坐는 背闕坐立의 준말로서 어전이나 대궐을 등지고 앉거나 서지 못한다는 것이니 세조 3년 4월과 예종 원년 8월에 거듭 禁습을 내렸다(《세조실록》 권7-33, 세조 3년

거느리고 다니는 자 衙前³³⁴이 꿰어 앉는 것은 금하지 아니한다. 宗親의 아내 딸이나 당상관의 어머니 아내 딸 며느리·蔭職을 받을 수 있는 집안(兩班家)의 新婦 이외의 자로서 덮개있는 轎子(有屋轎子³³⁵)를 使用하는 자·寺刹 이외의 곳에서 眞彩³³⁶를 쓰는

4월 입술 및 《예종실록》 권7-7, 예종 원년 8월 을축).

333) 跟隨는 根隨라고도 하며 뒤따르는(수행하는) 從者를 의미한다(《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성종 21년 11월 임금이 의정부에 傳旨하기를 宗親과 朝官에게 根隨를 지급한 所以는 使令으로서 수행시키자는 것이지 身貢을 거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成宗實錄》 권247-12, 성종 21년 11월 정유). 根隨 및 根隨奴의 定數는 《經國大典》 刑典 跟隨 및 諸司差備奴·跟隨奴 定額에 규정되어 있다.

334) 衙前은 吏胥로서 근무하는 관청이 중앙各司이면 京衙前, 지방관청이면 外衙前이라 하였다. 京衙前중에서도 上級吏胥인 錄事와 下級吏胥인 令史·椽吏·書吏·典吏(주306 吏典 參照) 등이 있었고(이상 東班에 屬) 西班에 속하는 下級吏胥로서 皂隸·羅將·諸員 등이 있었다(《大典會通研究》 兵典編, 1995.12, 한국법제연구원 p.107). 外衙前중에서도 監營에 근무하면 營吏, 各邑에 근무하면 邑吏라 하였다. 또한 外衙前을 鄉吏라고도 하였으며 鄉吏중에서도 戶長·記官·色吏 등 東班에 속한 자와 書員·日守·羅將 등 西班에 속한 자가 있었다(해설편 20, 鄉吏와 驛吏 參照). 또 兵營의 衙前을 營衙前이라 하였으며 이는 土官이나 鄉吏의 部類라고 하였다(《文宗實錄》 권10-12, 문종 원년 10월 갑신). 吏胥를 衙前이라 호칭하게 된 것은 그들의 근무장소가 관청의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이며 예종 원년 8월에 衙前의 胡跪는 금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주 331).

335) 有屋轎子는 덮개(지붕)가 있는 가마이다. 조선국초에는 덮개가 없는 平較子에 婦女가 탔으므로 가마메는 僕隸의 어깨에 치맛자락이 닿는 등으로 창피함과 수치심이 생길 정도였다. 그리하여 태종 4년 5월 예조에서 상소하여 3品 이상의 正妻는 有屋轎子를 타도록 하고 그외는 말을 타도록 하며 平較子는 禁하도록 하였다(《太宗實錄》 권 7-23, 태종 4년 5월 을축). 그러나 그후에도 士大夫 婦女가 平較子를 타는 수가 있어서 世宗 14年 8月 이를 禁하고 有屋轎子를 타도록 하였다(《世宗實錄》 권57-19, 세종 14년 8월 기해). 같은 해 10月 임금이 尙衣院에 명하여 2品 이상의 妻가 탈 青色 有屋轎子와 3品 이하의 妻가 탈 黑色 有屋轎子를 만들도록 하였다(《위의 책》 권 58-8, 세종 14년 10월 기유).

336) 眞彩는 물감으로 彩色하는 것 즉 畫具를 써서 丹青하는 것을 말한다. 문종 원년 2월 同知經筵事 安完慶이 啓하기를 眞彩 使用禁止는 經濟六典에 등재되어 있는데도 津寬寺의 丹青에 金銀眞彩를 全用하였으니 이를 禁해야 된다고 하였으나 임금은 官寺에는 眞彩를 써도 된다고 하였다(《文宗實錄》 권6-16, 문종 원년 2월 경인). 성종 2년 5월 禮曹에서 계속 奉行할 法條를 啓한 가운데에, 궁궐 이외의 丹青에 있어서 公私간에 眞

자·꽃방석(花席³³⁷)을 쓰는 자·朱漆器³³⁸를 쓰는 자·絲花鳳³³⁹이나 金銀露布花³⁴⁰를 쓰는 자·火藥(焰硝)을 쓰는 자·官舍에서나 당하관 이하로서 婚姻³⁴¹하는 사람이 紗羅綾段(각종 비단)이나 털담요(罽毯³⁴²)를 쓰는 자 士族의 婦女와 아동·서울 妓生 등이 쓰는 경우에는 禁하지 아니한다. ·私債를 지나치게 거두는 자 10分을 比率로 하여 매월 (利子를) 1분씩 取하여 10되에서 1되를 취하는

彩를 쓰지 못한다는 것과 이를 위반하면 서울에서는 사헌부,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규찰하여 그 물건을 官에서 몰수하고 匠人은 推考한다고 하였다(《성종실록》 권10-24, 성종 2년 5월 정유).

337) 花席은 꽃방석으로, 성종 2년 5월 예조에서 계속 奉行할 法條를 啓한 중에서 明나라에 進獻하는 것 및 國用 이외의 雜彩花席을 쓰는 것을 금한다고 하였다(同上).

338) 朱漆器는 御膳之器(임금의 반찬그릇)라 하여(《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御用 이외로는 朱漆한 것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世宗實錄》 권43-14, 세종 11년 2월 신사). 세종 11년 9월 예조에서 啓하기를 궁궐 이외에는 官府나 私處에서 朱漆한 것을 쓰지 못하도록 立法化하였는데도 京外의 無識한 무리들이 간혹 그것을 쓰므로 서울에서는 사헌부,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규찰하여 다스리도록 하자고 하여 임금이 이에 따랐다(《위의 책》 권45-19, 세종 11년 9월 신해). 성종 2년 5월의 예조의 啓에서도 進上器皿 이외의 諸司器皿은 黑漆한 것을 쓰고 朱漆한 것은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다(《成宗實錄》 권10-24, 성종 2년 5월 정유).

339) 絲花鳳은 色線으로 銅絲를 둘러 만든 花鳳모양을 한 것이다(《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光海君日記》 권108에 의하면 絲花鳳은 연회 때 만들어 쓰는 꽃이라 하나 꽃과 함께 봉황새도 만들었고 그 원료로는 명주실을 쓴 것 같다는 설이 있다(윤국일, 《앞의 책》 p.467).

340) 金銀露布花는 綵布(채색한 베)를 잘라 꽃잎모양을 만들고 金銀방울을 떨어뜨려 이슬모양을 낸 것(《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또는 金紙·銀紙로서 만든 假花(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684)라 하였다.

341) 婚姻이란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말하는데 婚이란 남자가 저녁 때 여자집에 장가든다는 뜻이고 姻이란 여자가 남자집에 의지한다는 뜻이다(《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342) 罽毯(계담)은 모직으로 된 담요이다. 성종 3년 정월, 예조에서 啓하기를 근래에 傳旨를 받은 바 있는 禁奢侈節目을 기록하여 보고한 가운데 續六典 婚姻條가 있는데 이 婚姻條에서 옷이나 이부자리(요)는 모두 綿紬(명주)나 棉布(무명)를 쓰도록 하되 綾錦段子(비단)는 쓸 수 없게 하며 혼인날 저녁의 拜席으로 털담요(계담)를 깔지 못하게 하고 單席으로 한다는 것이다(《成宗實錄》 권14-12, 성종 3년 정월 기미).

따위와 같은 것 · 매년 5분을 취하여 10되에서 5되를 취하는 따위와 같은 것이
 다. 연월이 비록 많더라도 원금의 배를 넘을 수가 없다. · 柴草場³⁴³⁾을
 사사로이 점유하는 자 등은 모두 杖 80에 처한
 다. ○ 獻壽³⁴⁴⁾ · 婚姻 · 祭享³⁴⁵⁾ 이외로 油蜜果³⁴⁶⁾를
 쓰는 자 · 거리에서 불공을 드리면서 혼령을 부르
 는 자³⁴⁷⁾ · 상주(喪人)나 庶人 · 僧人으로서 都城안

343) 柴草場은 딸감인 나무와 소 · 말의 먹이인 풀을 採取하는 곳이다. 成宗 12년 6월 大司憲 曹幹이 啓하기를 近日 大君 · 諸君 · 宰相의 受賜地라 하면서 他人이 손대지 못하게 하여 서울 근교에 풀벌 땅이 없다고 하였다. 또 經筵의 領事 洪應의 啓에 의하면 勢家の 奴가 主人의 세력을 빙자하여 어느 地區를 私私로이 占有하고 우리의 柴場이라 하면서 他人이 풀이나 나무를 채취하지 못하게 하여 왔는데 世祖 末年에 그 폐단이 더욱 심하여 그러한 행위를 禁止하도록 특명을 내렸고 經國大典에서도 柴草場을 私占함을 禁한다는 法條文을 특별히 만든 것이라 하였다. 이에 成宗은 兵曹로 하여금 檢察한 후 보고 하라고 하였다(《成宗實錄》 권130-17, 성종 12년 6월 임술).

344) 獻壽는 回甲잔치 등에서 卑族(子女나 조카, 손자)등이 長壽를 비는 뜻으로 술잔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데 回甲宴 등 잔치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345) 祭享은 제사와 같은 뜻으로 天神에 대한 제사를 祀, 地祇에 대한 제사를 祭, 人鬼에 대한 제사를 享이라 하였다(《國朝五禮儀》 卷1, 吉禮). 祭享은 때로는 私的인 제사와의 대칭으로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를 뜻하기도 한다.

346) 油蜜果는 밀가루나 쌀가루를 반죽하여 적당한 모양으로 빚어서 바삭 말린 후에 참기름(胡麻油)에 튀겨 꿀 또는 조청을 발라 튀밥이나 깨고물을 입힌 과자로서 油果 또는 蜜果라고도 한다. 太宗 18년 정월 禮曹의 건의에 따라 혼인하는 집(婦家)에서 油蜜果를 쌓은 큰床(大卓)을 차렸다가 먹다 남은 것을 사위집(舅姑之家)으로 보내는 폐습(弊法)을 금하도록 하고 위반자는 教旨不從으로 論罪하도록 하였다(《太宗實錄》 권35-9, 태종 18년 정월 계유). 그러나 성종 3년 정월 禮曹의 啓에 나타난 禁奢侈節目에 의하면 혼례 때(醮行)와 謁舅姑禮 때(新行)를 포함한 公私宴에 油蜜果의 使用을 금한다는 것이 《經濟六典》 續六典에 등재되어 있지만 《經國大典》 刑典 禁制의 규정에 따라 獻壽(回甲) · 婚姻 · 祭享 등에 이를 허용한다는 것과 그러나 守令이 使客을 접대하는 잔치를 벌일 때나 墳墓에서 제사상을 차릴 때에는 油蜜果의 使用을 엄중히 禁斷한다는 것이었다(《成宗實錄》 권14-12, 성종 3년 정월 기미). 이와 같이 守令이 油蜜果를 못쓰도록 강조한 것은 앞서 世祖가 八道觀察使에게 諭示하여 明나라 使臣을 접대하는 宴享 이외에는 油蜜果를 못쓰게 되어 있음을 말하고 이에 위반하는 守令이 있음에도 監司가 단속하지 않으면 엄히 징계하겠다고 한데서 비롯된다(《世祖實錄》 권5-17, 세조 2년 10월 경신).

347) 大小人員이 길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불공을 드리는 것을 금한다는 규정은 세종 11년 2월 사헌부의 啓에 따라 光化門外 및 都城各門과 鐘樓등에 게시한 禁令條畫속에 들어

에서 말을 타는 자와 老人이나 病者 및 兩宗判事³⁴⁸⁾는 禁하지 아니한다. 新屬人³⁴⁹⁾을 侵害하고 虐待하는 자 등에게는 모두 杖 60에 처한다. ○ 모든 禁令에 위반한 財物을 官에서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 오래된 무덤(古塚)을 葬地로 쓰는 경우에는 發塚律³⁵⁰⁾에 의하여 論罪한다. 무덤을 파헤치도록 허용한 자 및 地師(葬師³⁵¹⁾)도 이

있다(《世宗實錄》 권43-14, 세종 11년 2월 신사). 세종 27년 7월, 國俗에 의하면 7월 15일 절에 가서 招魂하고 제사지내다가 無賴僧徒들이 都城에 들어가서 거리에서 깃발을 내걸고 징과 북을 끊임없이 치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던 士女들이 떼지어 모여들어 粟布를 施捨한다는 것을 임금의 듣고 大怒하여 司憲府 관원을 불러 왜 그것을 금하지 않는가를 힐책하였다(《위의 책》 권109-6, 세종 27년 7월 병술). 세조 4년 7월의 사헌부의 啓에 의하면 무식한 무리들이 招魂한다고 하면서 都城內의 거리나 川邊에서 깃발을 내걸고 떡과 과일을 차려서 중들을 맞이하여 亡魂을 부르니 앞으로 이와 같은 犯令者가 있으면 엄중히 논죄하되 중과 家長 및 그 坊의 管領도 죄주자고 請하여 임금이 이에 따랐다(《世祖實錄》 권13-30, 세조 4년 7월 계축).

348) 兩宗判事는 禪宗과 教宗의 최고위직이다. 세종 6년 4월 불교각파를 教·禪 兩宗으로 통합하면서 서울의 興天寺를 禪宗의 都會所로 삼고 興德寺를 教宗의 都會所로 삼았는데 이때 나이와 행실이 높은 자를 兩宗의 行首掌務로 삼았다(《世宗實錄》 권24-2, 세종 6년 4월 경술). 이 行首掌務가 후일 兩宗判事로 개칭된 것으로 보인다.

349) 新屬人은 새로 임관된 관료를 말한다. 새로 관원이 出仕하게 되면 新來를 잡는다고 하면서 선배관원들에게 시달리는데 許參禮라 하여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곤욕을 치르며 10여일 후에는 免新禮라 하여 또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한편 욕을 보는 관례가 있었다(이태진외 4인 《앞의 책》 p.711 및 윤국일 《앞의 책》 p.468). 문종 즉위년 7월 사간원에서 啓하기를 그러한 관례가 폐단이 많았으므로 禁한다는 것이 《經濟六典》續典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成衆官 등이 그것을 어기고 심지어 홍문관·예문관·교서관 등 3館과 承文院·訓練觀(院) 등 有識者도 國法을 무시하고 그러한 짓을 멋대로 하니 이를 엄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임금이 사헌부에 명령하기를 분명하게 규찰하여 다스리라고 하였다(《文宗實錄》 권2-50, 문종 즉위년 7월 무진).

350) 發塚律은 《大明律直解》 권18, 刑律 盜賊 發塚條를 말하는데 남의 무덤을 파서 棺槨이 드러나면 杖100 流3000리에 처하고, 시체까지 보이게 하면 絞刑에 처하나, 관곽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杖100 徒3년에 처한다.

351) 葬師는 風水 또는 地師라고 하는데 묘자리를 잡을 때 그 좋고 나쁜 것을 전문적으로 감정하는 자이다. 성종 3년 2월 임금이 禮曹에 傳旨하기를 앞으로 陵室 이외로는 古塚에서 장사지낼 수 없으며 타인의 무덤을 파헤친 자·타인에게 무덤을 파헤치게 한 자·葬師(地師)로서 무덤을 파헤치도록 지시한 자 등은 모두 大明律에 의거 科罪하라고 하였다(《成宗實錄》 권15-19, 성종 3년 2월 신묘).

와 같이 한다. ○ 私奴婢³⁵²⁾와 田地를 절간(寺社)이나 무당·박수(巫覡³⁵³⁾)에게 시주하여 바친 자는 論罪한 후 그奴婢와 田地를 관청 소유(屬公)로 한다. ○ 선비(士人)로서 倫常을 무너뜨리거나 收賂·橫領罪(贓罪)를 범한 자와 士族의 婦女로서 행실이 바르지 못한 자(失行者)는 3명의 지아비를 다시 맞이한 자도 이와 같다³⁵⁴⁾. 文案에 기록해 두고 吏曹·兵曹·司憲府·司諫院에 공문을 보낸다. ○ 서울 都城안에 무당·박수가 거주하는 경우³⁵⁵⁾와 여염집

352) 解說編 25 奴婢 參照.

353) 巫覡은 무당(여자)과 박수(남자)를 말한다. 《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에 巫는 祝也라 하고 女曰巫, 男曰覡이라 하였다. 세종 13년 7월 贊成 許稠가 啓하기를 士大夫家에서 祖考之神을 巫覡家에 맡겨서 衛護한다고 하면서 奴婢 4·5명을 준다고 하니 사헌부로 하여금 엄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대사헌 申楸도 비단 노비만 줄 뿐 아니라 避病이나 問卜(점치는 것)을 한다고 하면서 士大夫 婦女가 공공연히 무당·박수집에 왕래하는 일이 있으므로 모두 금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임금은 祖考之神을 무당 등에게 맡겨 衛護함을 금하며 양반婦女가 巫覡家를 왕래하는 것을 금한다고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家長과 무당 등에게 죄준다고 하였다(《世宗實錄》 권 53-3·4·5, 세종 13년 7월 을해 기묘).

354) 여자의 再嫁는 조선국초에는 허용되었으며, 초기의 《經國大典》(甲午大典)에서도 更適三夫를 恣女와 같이 보아 規制가 있었지만 再嫁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성종 8년부터 再嫁女의 子孫을 禁錮하는 문제가 논의되어 성종 16년의 《經國大典》(乙巳大典)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三嫁女를 恣女案에 올려 규제하자는 주장은 이미 태종 6년의 《經濟六典》 續典에 등재되었고, 문종 때부터 三嫁女의 子孫이 東班職에 임용될 수 없게 되었다(《大典會通研究》 吏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3.12, pp.248~254에서 자세히 해설한 바 있다).

355) 무당과 박수가 성밖에서 巫覡里라는 마을을 이루고 살도록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세종 13년 7월 사헌부의 啓에 의하면 양반의 婦女들이 近來雜處(巫覡家)에 수시로 내왕하고 무당이 病人들을 성안에 모아서 전염병이 이웃으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 都城밖에 그들끼리 모여 살게 하되 양반집 婦女들이 巫覡家에 가는 것을 엄금한다고 하였다(주353). 세종 25년 10월 掌令 趙孜의 啓에 의하면 그 당시 巫女는 모두 城밖으로 쫓아내어 東西活院에서 病人들을 救療하도록 하였으나 國巫라 칭하는 자가 巫女 20여인을 데리고 아직도 城中에 있으니 國巫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活院에 소속시켜서 질병

안에 남녀 僧侶가 留宿하는 경우에는 양식을 구걸하거나 부모나 형제자매를 만나거나 齋物³⁵⁶⁾을 수송하는 남녀 승려는 禁하지 아니한다. 論罪한다. ○ 지방관은 貪汚罪를 범하거나 백성을 侵虐하는 경우 이외는 風聞만으로 (허물을) 들어 조사(舉劾)할 수가 없다³⁵⁷⁾. ○ 守令이 公務(公事)로 인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制書有違律(王旨 등 위반죄)로 論罪한다. ○ 이미 婚書³⁵⁸⁾를 받아 놓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許婚하여 成婚시킨 경우에는 그 主婚者³⁵⁹⁾를 論罪

을 救療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임금은 새로운 立法에는 반대하고 종전의 법대로 엄히 규찰하면 된다는 것이었다(《世宗實錄》 권102-8, 세종 25년 10월 정유).

356) 齋物은 法會에 쓰는 물건(주로 음식물)을 말한다. 法會는 설법하는 모임이란 뜻도 있지만 죽은 이를 위해 齋를 올린다는 의미도 있다. 세종 31년 정월 의정부의 啓에 의하면 승려가 都城內 出入할 수 있는 경우는 父母를 弔오러 가는 경우와 시장에서 물건 살 경우만이라 하였다(《世宗實錄》 권123-14, 세종 31년 정월 경술).

357) 《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에 의하면 風聞은 風聲 또는 傳聞이라 하고 劾은 罪를 案(살피다, 판결하다)한다는 것이라 하였다. 貪汚虐民은 그 상태가 이미 露로 되었으므로 舉劾하나 기타 毀謗의 경우는 無形可見으로 간혹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으므로 風聞만으로는 舉劾할 수 없다고 하였다.

358) 婚書는 신랑집에서 禮單(禮幣를 적은 單子)과 함께 신부집에 보내는 글이다. 남자측에서 신랑의 생년월일을 六甲으로 써서 (이를 四柱 또는 四星이라 함) 신부집에 보내면 (혼인의 신청) 신부집에서는 다시 혼인식을 치를 날자를 잡아가지고 신랑집에 보냄으로서 (혼인의 승락) 婚約이 成立되는데 이를 涓吉이라 하였다. 연길의 편지를 받은 신랑집에서 신랑의 의복 길이와 품을 적어 신부집에 보내는데 이를 衣製狀이라 하고 이를 보내는 절차를 章製回示라 한다. 연길과 의제장을 보내는 절차가 끝난 뒤 신랑집에서 보통 결혼식 전날 婚需와 婚書(禮狀) 物目を 적은 혼수함을 보내는데 이를 納幣라 한다. 혼수함을 예전(20세기 중엽까지도)에는 下人이 지고 갔으나 요즘은 신랑친구들이 지고 간다.

359) 主婚者는 婚約 기타 혼인에 관한 일체의 것을 主掌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서 신랑·신부 양가 모두 그 父가 主婚者가 되나 만약 祖父가 살아있으면 祖父가 主婚者가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祖父보다 父母가 主婚者인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전통예절에는 그렇지 않았다. 祖父와 父 모두 없을 때에는 伯·叔父 등 근친인 존속이 주혼자가 되었다.

하고 강제로 이혼(離異³⁶⁰)시킨다.

[續] 중국 북경으로 가는 사람이 使臣이 압록강을 건널 때에는 書狀官·地方官·本道の 都事³⁶¹)가 함께 일행의 卜物(말에 실은 물건)을 수색·검사한다. 人蔘과 銀貨를 몰래 갖고 가는 경우에는 國境上에서 斬首한다. 중국에 들어간 후에 발각된 경우에는 돌아올 때에 律文을 적용하며 搜檢官도 아울러 잡아다가 문초하고 首席譯官과 領將을 구속 수감하여 罪를 科하되 首席譯官과 領將이 그 事情을 알고 있었으면 범인과 같은 律文으로 처벌한다. 8包³⁶²)의 定數외에 銀貨를 가지고 가는 자는 一律(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論罪하고 수색·검사전에 發見하면 極邊으로 定配한다. [增] 정해진 包數外로 더 보내려면 임금에게 草記로 보고하여 允許가 내려야 비로소 허용되며 만약 제멋대로 수량을 넘기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監司와 府尹은 潛賣禁物律³⁶³) 로 論罪된다. 金銀을 먼저 보내어 灣上³⁶⁴) (義州)에 맡겨 두었을 경우에는 強盜律에 의하여 論罪

360) 離異는 강제이혼 시킨다는 뜻이다. 《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刑典에 離는 別也, 異는 分之也라 하고 婦女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歸宗)이라 하였다. 즉 女子가 前夫에게 돌아가는 것은 婦道에 어긋남으로 단지 두 번 째로 成婚시킨 사나이와 강제이혼시킬뿐, 前夫에게는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라 하였다.

361) 都事는 총훈부를 비롯한 중앙관청에도 있는 관직이나 여기서는 각道 관찰사 다음 벼슬로서 중5품직이다. 각도 都事는 과거시험 중 鄉試의 試官이 되고 (《光海君日記》 권 116-5, 광해군 9년 6월 임자) 道內 司法事務도 관장하였다.

362) 8包는 원래 인삼 10斤을 말하였는데 조선후기에는 인삼이 禁物이 되어 銀으로 인삼을 대신하여 인삼 1근을 銀 200냥으로 하고 이를 8包라고 하였다(《大典通編》 刑典 禁制).

363) 潛賣禁物律은 《經國大典》 刑典 禁制條에 규정되어 있으며 闊細布를 비롯하여 6종의 물품을 그 註에서 摘示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매매가 금지된 물품을 兩界와 浦所 및 客館에서 몰래 팔면 杖 100, 徒 3년에 처하고 事案이 重한 경우에는 死刑(絞刑)에 처하도록 하였다.

364) 灣上은 灣府라고도 하는데 평안도 義州府를 지칭한다.

하고 寄託을 받은 자와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杖 100 流 3000里에 처한다. 타인의 逮捕와 申告를 허용하며 체포·신고자에게는 綿布 50필을 주고 원래 官職이 있는 자에게는 官階를 올려 주되 當上官은 그러하지 않으며 鄉吏와 驛吏는 免役하고 賤人은 免賤하며 徒刑과 流刑 이하 해당자는 放免하여 그 범인이 소지하고 있던 物품(物色³⁶⁵)을 그대로 (갖도록) 내준다. 商賈³⁶⁶에게 物件과 銀貨(物貨³⁶⁷)를 사사로이 寄託하여 중국 물건과 貿易³⁶⁸한 자는 寄託을 받은 사람과 함께 杖 100 徒 3년에 처하며 物件과 銀貨가 20貫 미만이면 1등급 減刑한다. 檢擧하지 아니한 書狀官과 義州府尹은 모두 制書有 違律(王旨 등 違反罪)로 論罪하고 赦免對象으로 할 수 없다. 우리 國境에서 禁物(賣買가 禁止된 物件)을 몰래파는 자는 死刑을 減刑하여 定配한다. 義州府尹은 罷職한다. ○ 使臣一行이 돌아온 후에 禁物을 압수당하고 붙잡힌 자 및 사사로이 銀貨를 갖고 가서 몰래 장사하려다가 未遂에 그친 자도 같은 律文으로 처벌하며 고용된 運搬人은 定配한다. ○ 무릇 禁物이 압수되고 범인이 붙잡히면 모두 官에서 沒收한다. 本國의 事情을 누설한 자는 杖 100 徒 3년에 처

365) 物色이란 어떤 기준에 따라 쓸만한 사람이나 물건을 찾는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物件의 이두表記이다.

366) 商賈는 이익을 얻기 위해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인데, 商人은 원래 行商을 의미하고 賈人은 점포를 갖고 앉아서 하는 장사꾼을 의미하였으며 장사꾼은 통칭할 때 商賈라 하였다.

367) 物貨는 보통 物品과 財貨를 의미하나 여기서는 物件과 銀貨를 뜻한다.

368) 貿易은 各地의 物品을 交換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外國과 物品을 交易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며 關係가 重한 경우에는 絞首刑에 처한다. 檢舉하지 아니한 書狀官은 制書有違律로 論罪한다. 다른 나라 사람에게 路程記³⁶⁹⁾를 써준 자와 淸國人에게 負債를 진 자는 모두 一律(사형에 해당하는 죄)로서 論罪한다. 軍人의 성명을 사칭하여 들어간 자와 몰래 숨어서 들어간 자는 모두 杖 100에 처한다. 刷馬³⁷⁰⁾를 모는 사람이 點考를 받지 아니하고 도망쳐서 돌아간 경우에는 杖 100에 처하고 다른 道로 定配하되 중간에서 도망쳐서 滿洲 땅(彼地)에 떠돌아 다니는(流落하는) 자는 國境上에서 斬首한다. ○ 外國의 使臣(客使)이 나가거나 들어 올 때에 길을 막고 호소하는 자는 다른 道の 먼 땅으로 定配한다. 단지 首倡者³⁷¹⁾만을 論罪한다. 彼人(野人)을 憑藉하여 居間질하면서 賂物을 받은 자는 死刑을 減刑하여 定配한다. 小通事³⁷²⁾가 野人을 憑藉하여 폐단을 이르킨 경우에는 刑杖을 친 후 定配한다.

○ 倭館에서 市場을 열어 매매를 시작(開市)할 때에는 訓導³⁷³⁾·別

369) 路程記는 여행할 길의 순서와 里數 및 형편 따위를 적은 기록이다.

370) 刷馬는 지방에 배치하였던 官用馬이다. 刷馬契란 것이 있었는데 중국으로 使臣이 갈 때에 方物이나 咨文을 싣고 갈 말을 바치던契이다.

371) 首倡者는 우두머리가 되어 주창하거나 제일 먼저 주창하는 자를 말하는데 主犯이란 의미도 있지만 教唆犯을 뜻할 때도 있다.

372) 小通事는 鄉通事와 같은 것으로 보이며 (《增補文獻備考》 권179-12) 향통사는 의주나 부산 기타 지방에 두었던 통역원을 뜻한다. 小通事는 정규관원인 譯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자이다.

373) 訓導는 관상감·전의감·사역원 등 중앙관청에서 해당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던 종9품 관직 또는 지방의 각 고을에 두어 유학을 가르쳤던 종9품 관직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경상도 부산포에 두었던 倭學訓導(종9품)를 말한다. 語學을 전공한 地方의 從9品職으로서는 倭學訓導 이외에 譯學과 譯學訓導가 있었으며 譯學은 경상도 통영과 전라도 좌·우수영 및 제주도에 각 2명씩 있었는데 1명은 倭學 전공자였고 1명은 中國語

差³⁷⁴)·收稅算員³⁷⁵)·開市監官³⁷⁶)·監市軍官³⁷⁷) 등이 함께公私의 物件과 銀貨를 수색·검사한다. 人蔘과 銀貨로 몰래 매매하는 장사

전공자였다. 譯學訓導는 중국어 전공자로서 황해도 황주·해주·웅진과 함경도 및 평안도의 평양·의주·안주·선천·강계 등지에 각 1명씩 두었다. 조선후기에는 평안도의 주에 중국어 전공자 1명이외 淸學(女眞語)전공자인 역학훈도 1명을 더 두었다.(《大典會通》 吏典 外官職).

374) 別差는 경상도 동래와 초량의 場市에 특별히 파견하였던 통역원을 말한다.

375) 收稅算員은 稅錢을 징수하는 算員이다. 算員은 戶曹의 經費司에 30명 있는데 경비사는 서울의 중앙관청에 대한 支出事務와 倭人의 糧料 등 사무를 맡았다. 算員은 各地方廳 또는 中央의 兵曹와 刑曹 등의 書員(해설편22 참조)과 그 신분이 비슷한 吏胥職인 算學重監의 후신이라 할 수 있다(《世祖實錄》 권12-17, 세조 4년 5월 정유). 成宗 2年 5月 禮曹의 啓에 의하면, 전의 校正廳의 單字로서 經國大典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계속 奉行해야 할 限時法的인 法條文을 정리한 바 있는데 그 중에서 算員이 去官한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取才시험을 쳐서 채용하도록 하였다(《成宗實錄》 권10-20, 성종 2년 5월 정유).

376) 開市監官은 外國人과 交易하는 우리나라의 場市에 대한 감독관이다. 開市 또는 開市場은 우리나라의 對外貿易市場을 지칭하는 말이다. 고려나 조선시대의 무역은 朝貢時的 獻上과 皇帝의 賜與형식의 公貿易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조공이외의 公貿易으로서는 太宗 6年, 東北面 都巡問使 朴信의 上言에 따라 함경도 鏡城과 慶源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野人과 鹽鐵의 交易을 하도록 한 바 있고 世宗 14年, 明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소(耕牛) 1만마리와 중국의 絹布를 요동에서 交易하자는 제의가 있었다. 또 宣祖 26年 압록강 中流인 中江에서 開市한 이래 병자호란후 仁祖 때 함경도 회령과 경원에서 開市하여 北關開市라 하였다. 倭關(倭館)開市는 世宗 때 대마도 왜인의 청구에 따라 三浦(동래의 부산포·昌原郡 熊川面의 乃而浦 혹은 薺浦·울산의 鹽浦)에서 互市(무역)를 하도록 한 것이 처음이다. 三浦에는 倭人들의 常住人口가 늘어나서 中宗 때는 倭亂을 일으켰다(《增補文獻備考》 권164-3~12, 市糴考2, 附互市·中江開市·北關開市·倭關開市). 監官은 보통 官廳이나 宮房에서 돈이나 곡식을 거두어 들이고 내주는 일을 맡은 벼슬아치(오희복 《봉건관료기구 및 벼슬이름 편람》 여강출판사, 1992, 북한판 1989, p.8)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開市場의 감시인 또는 감독자로 보인다. 지방의 監官은 대체로 在鄕品官 또는 그 子孫이 맡은듯 하며 그 신분은 土班 내지 鄕族이라 할 수 있다.

377) 監市軍官도 開市監官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자로 보이는데 開市場을 감시하는 軍官으로서 官員의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다. 함경도의 開市場에는 朝官중에서 선발된 監市御史(때로는 北評事겸무)가 파견되어 監司·兵使와 함께 場市관계인을 지휘감독하였으나(《英祖實錄》 권106-19, 영조 41년 11월 정해·권111-35, 영조 44년 11월 을사·권113-12, 영조 45년 10월 갑인·《正祖實錄》 권40-28, 정조 18년 7월 임인), 경상도에 있는 倭關開市에 監市御史를 파견하였다는 實錄記事는 보이지 않으므로 監司 및 都事와 兵使가 場市를 감시·감독하였으리라 생각되지만 중앙에서도 監市御史가 별도로 파견되어 監市軍官이나 開市監官 등을 규찰하였으리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꾼은 主犯·從犯 모두를 倭館 앞에서 斬首한다. 왜 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붙잡힌 자와 뇌물을 받고 일부러 놓아준 자는 모두 엄하게 刑問한 후에 다른 道の 極邊으로 定配하고 붙잡거나 신고한 사람은 여러 가지를 참작하여 論賞한다. ○ 추후에 발각되었으면 그 당시의 訓導와 別差 이하를 잡아다가 訊問하여 엄중히 처리하고 東萊府使도 잡아다가 訊問하며, 訓導와 別差 이하가 사정을 알았으면 犯人과 같은 죄로 (처벌)한다. ○ 鄉通事 및 商賈 등이 倭人과 더불어 만나기를 期約하고 몰래 絶海孤島에 들어가서 매매한 경우에는 禁物을 몰래 판 例에 따라 論罪하며 檢舉하지 아니한 官員은 罷職한다. 商賈가 倭館中을 출입하면서 매매를 핑계삼아 事情을 漏泄하고 (倭人과) 密通한 자와 從犯은 減刑한다. 倭人에게서 賂物을 받아서 여자를 誘引하여 몰래 들어가서 간음을 하도록 한 자·그 女人은 杖 100에다가 徒配한다. 倭人에게 負債를 진 자·倭人의 물건을 훔쳐서 가진 자 등은 모두 倭館 앞에서 斬首하고 왜관에 허가없이 함부로 들어간 자도 一律(死刑)로서 論罪한다. 官吏가 (불법으로 왜관을) 출입하는데도 禁斷하지 못하면 訓導와 別差를 重罪로 다스린다. 倭館의 朝市³⁷⁸⁾에서 각 營各邑의 船舶 및 사사로운 商船의 運送米를 매매

378) 朝市는 여기서는 아침에 서는 市場을 의미한다. 그러나 停朝市할 때의 朝市는 朝廷(朝會)과 市井(저자)을 정지한다는 뜻(주178)이다. 大臣이 죽었을 때에는 2일간 朝市를 정지하고(《中宗實錄》 권42-31, 중종 16년 6월 임인), 先王의 後宮이 죽었을 때에는 3일간 朝市를 정지한다(《光海君日記》 권71, 광해군 5년 10월 29일)는 경우의 朝市는 朝廷(朝會)과 市井(저자)을 의미함은 분명하다. 또 仁祖 元年 10月 강화도에 圍籬安置되어 있던 前王妃(郡夫人) 柳氏가 죽자 朝市를 정지하였다(《仁祖實錄》 권3-13, 인조 원년 10월 을축).

한 자와 각 관청에서 (運送米를) 公貨³⁷⁹)라 칭하면서 訓導와 別差에게 公文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 왜인이 가지고 온 雜物을 浦口에서 몰래 매매하는 자는 사정을 알고 있는 通事도 같은 죄를 받는다. 모두 杖 100 徒 3년에 처한다. ○ 奉命使臣人으로서 商賈를 몰래 데리고 가는 자는 잡아다가 訊問하여 엄중히 처벌한다. 들어간 자는 軍人을 사칭한 例³⁸⁰)에 따라 論罪한다. ○ 西北 邊境에서의 開市場에 義州·會寧·慶源 등지에서 開市할 때에는 地方官과 差使員이 함께 不正 有無를 조사하되 禁物이 있는데도 적발하지 못하고 추후에 발각되면 그들을 잡아다가 訊問하여 죄를 준다. 人蔘과 銀貨를 (몰래) 갖고 가는 자는 使行時에 그것을 (몰래) 갖고가는 자와 같은 刑量(同律 즉 死刑)으로 처벌하고 捕捉人도 역시 論賞한다. 馬匹을 몰래 사고 파는 자는 그 다음 刑量(次律 즉 流刑)으로 論罪한다. [增] 守令이 私市를 침범한 경우에도 같다. ○ 淸國人과 왕래(交通)하면서 贓物을 협의하여 판매(和賣)한 경우에는 一律(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論罪한다. 把守將과 把守吏에게는 엄중히 棍杖을 친다.

379) 公貨는 公金을 뜻한다. 哲宗 14年 8月 官 및 軍의 公貨인 布木과 錢文을 서울의 市廳에 빌려주고 10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하였다(《哲宗實錄》 권15-9, 철종 14년 8월 정유).

380) 《大明律直解》 권24 刑律 詐僞 詐稱內使等官條에서는 官名을 詐稱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軍人을 사칭한 경우의 처벌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책》 권15 兵律 關津 詐冒給路引條에 民이 軍이라 사칭(冒名)하여 行狀(路引 즉 旅行허가증)을 받은 경우에는 杖 80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 西北 沿邊에서 國境을 넘는 죄를 범하여 山蔘을 캐거나 사냥하는 자는 주범과 종범 모두 國境上에서 斬首한다. 국경을 넘는 죄를 범한 자 중 主犯은 家産을 籍沒한다. ○ 국경을 넘어 나무를 베는 자는 山蔘을 캐 律文으로 論罪한다. ○ 국경을 넘는 사람을 容認하거나 教唆 또는 誘惑한 자는 犯人과 같은 죄를 주며, 앞에서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良人과 賤人은 변방의 아주 작은(衰殘한) 고을의 노비로 삼고 문무과거의 급제출신자 이상은 변방의 작은 성채(堡)로 充軍하며 申告(陳告)者에게는 潛商을 신고한 때와 같은 賞을 준다. ○ 국경을 넘은 境界地點을 관할하는 守令과 邊將은 徒 3년에 定配하고 座首·兵房·軍官은 섬으로 流配하되 守令과 邊將이 스스로 범인을 잡아다가 바친 경우에는 그 공을 참작하여 죄를 減하고 만약 감추어 두고, 국경을 넘은 사람에게 속죄금을 징수하면 (거두어 들인) 탐오 액수를 합계하여 論罪(計贓論)한다. 守令과 邊將이 적발하지 못하고 節度使에게 범인이 발각되어 捕捉되면 수령과 변장을 먼 邊境지방으로 充軍하며 그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범인과 같은 죄를 준다. 節度使가 적발하지 못하고 觀察使에게 범인이 발각되어 捕捉되면 節度使를 削職한다. 관찰사가 적발하지 못하고 다른 이로 인하여 발각되면 모두를 삭직하고, 국경을 넘다가 일이 생겨서 査問한 결과 나라를 辱되게 하였으면 관찰사 이하에게 형벌의 등급을 더하여 죄를 정한다. ○ 평안도의 압록강변 7읍에서 의주·강계·초산·창성·삭주·위원·벽당 錢文을 사용한 자는 一律(사형)로 論罪한다. 地方官(수령)과 道臣(관찰사)은 차례로 등급을 減하여 조사·처벌(勸律)한다. ○ 함경도 端川 이북도 이와 같다. 함경도 富寧 이북에 商賈가 들어간 경우에는

制書有違律(王旨違反罪)로 論罪한다. 禁飭을 위반한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禁斷하며 恠정하여 販매한(興販) 물건은 官에서 몰수한다.

○ 사정을 알면서 살펴보지 아니한 守令에게는 같은 죄를 준다. ○ 海浪島³⁸¹⁾에 왕래하는 자와 關所(防護所)와 要塞를 (허가없이) 몰래 넘어가서 國境밖으로 나가는 律文(出外境律³⁸²⁾)에 의거 처벌한다. 北路(함경도 북쪽)에서 西關(평안도 서쪽)으로 行狀(여행허가증) 없이 왕래하는 자 및 監營(巡營)에서 行狀을 만들어 주되 데리고 가는 사람과 말을 거기에 기록하여 證憑으로 삼는다. ○ 行狀이 없음을 발견하면 지방관은 잡아다가 訊問하여 죄를 정한다. 사람과 물건을 끌어들여 西北 兩界로 들어간 자는 사람의 多少를 막론한다. 모두 一律(死刑)로 論罪한다. 이미 들어간 자는 原籍이 있는 고을로 刷還하며 (데려다 주며) 만약 숨기다가(隱匿) 발각되는 자에게는 끌어들인 자와 같은 죄를 주고 이를 檢舉하지 아니한 守令은 잡아다가 처벌하며 어린이가 誘引되어 부모나 본주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公奴婢로 소속(屬公)시킨다. 兩界의 사람과 물건(노비)을 끌어들여 賣買한 자는 次律(流刑)로 論罪한다. 兩界의 邊民이 도망쳐서 內地로 옮겨간 경우에는 刑杖으로 推問하고 원적지 고을로 刷還하며 그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杖 100 流 3000리에 처한다. 邊民이

381) 海浪島는 중국 만주땅 요녕성 봉황현(大連근방)에 있는 大孤山의 南海中の 大鹿島 및 小鹿島를 말한다(《中國分省公路交通地圖集》 北京 中國地圖出版社, 1992).

382) 《大明律直解》 권15, 兵律 關津 私越冒度關津條에 行狀(통행증, 여행허가증) 없이 關所(防護所)나 나루(津), 要塞 등을 몰래 또는 거짓으로 (가짜증서로) 통과할 경우 杖刑이나 徒刑(및 杖刑)에 처하고 그로 인하여 國境外로 나갔을 경우에는 絞首刑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彼地(野人の 땅)로 도망쳐 들어갔는데도 守令이 숨기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罷職하여 내쫓으며 面任과 里任 등은 杖 100 流 3000리에 처한다. ○ 서울 都城 10里 내에 東으로 大菩洞·水踰峴·牛耳川·上下伐里·長位·松溪橋에서 中梁浦에 이르기까지 내(川)로서 限界를 삼는다. ○ 南으로는 中梁浦·箭串橋·新村·豆毛浦에서 龍山에 이르기까지 내와 江으로서 限界를 삼는다. ○ 北으로는 大보동·普賢峯·猪噬峴·峨嵋山·延曙舊館基·大棗里에서 石串峴 西南 합류처에 이르기 까지 산등성이로 限界를 삼는다. ○ 西로는 석곶현·時威洞·沙川渡·城山·望遠亭에서 麻浦에 이르기 까지 내와 江으로서 限界를 삼는다. 入葬하는 자는 園과 陵의 樹木을 도적질한 律文(盜園陵樹木律³⁸³)으로 論罪한다. 강제로 기한을 정하여 파 옮기도록 한다. [增] 陵寢의 火巢 外案의 禁標³⁸⁴內에 몰래 장사지낸(偷葬) 者는 死刑을 減刑하여 定配한다. ○ 빈 宮闕의 소나무를 盜伐한 者는 年限을 정하지 아니하고 먼 邊境으로 定配하고 서울 都城 10里 안의 소나무를 불법으로 베는 자는 大明律³⁸⁵에 의하여 죄를 정한다. 살아 있는 소나무의 元株(원줄기) 1株 이상을 베거나 말라 죽은 소나무의 元株(원줄기) 2주 이상을 베는 자는 모두 杖 100 徒

383) 《大明律直解》 권18, 刑律 盜賊 盜園陵樹木條에 의하면 杖100 徒3년에 처하도록 하고 他人의 분묘내의 樹木을 盜伐한 者는 杖80에 처하도록 하였다.

384) 陵寢은 陵內의 祭閣(丁字閣)을 의미하고 火巢는 산불을 막기 위하여 陵·園·墓 등의 外核字밖에 있는 둘레의 草木을 불살라 버린 空地이다. 核字는 陵·園·墓의 境界로서 內核字와 外核字가 있는데 內核字안에는 민간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딸 나무를 채취할 수도 없다. 外案禁標는 바로 外核字의 境界표시를 말한다(《大典會通 研究》 禮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12, p.204).

385) 주 383 參照.

3년에 처하고 살아 있는 소나무의 가지나 잎, 말라 죽은 소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伐取한 자는 모두 杖 100에 처하며 이를 덮어두고 官家에 신고하지 아니한 家長은 犯人과 같은 죄를 주고 犯人을 숨겨준(隱匿한) 자는 멀리 귀양보낸다.

○ 山直이가 산밑에 사는 사람을 대신 세우거나 혹은 핑개를 대어(憑藉하여) 소나무를 베는 자 혹은 그를 협박하여 뇌물을 요구하는 자는 杖 100에 처하고 監役官을 잡아다가 처벌한다. ○ 산직이가 무뢰배와 契를 만들어서 살아있는 소나무를 훔쳐낸 경우에는 먼 邊方으로 定配하고 犯人は 律文에 의거 論罪한

다. 四山³⁸⁶⁾의 禁標내에서 工典을 보라. 나무 뿌리나 잔디 뿌리를 採取하는 자와 土石을 파가는 자는 모두 살아 있는 소나무를 몰래 베어 가는 例에 의거 論罪하며, 살아있는 소나무 10株 이상을 불법으로 베면 監役官을 罷職하고 採石(伐石)하면 多少를 막론하고 같은 형벌을 科한다. 소나무와 잡목

50주 이상을 불법으로 베면 감역관을 잡아다가 처벌한다. 不法 耕作者는 官民의 山場을 強占한 律文으로 論罪한다. 神武門 밖의 白岳山(面岳) 밑의 땅파는 곳은 部官(서울 5부의 책임자)이 단속하여

엄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 道の 封山³⁸⁷⁾의 禁松(벌채

386) 四山은 한성부를 에워싸고 있는 東西南北의 山을 合稱한 것이다. 즉 北에 있는 白岳山(古稱 面岳)·南에 있는 木覓山(古名 引慶山)·西에 있는 仁王(旺)山·東에 있는 駝駱山을 말한다(《經國大典註解》後集上, 吏典). 문종 원년 6월에는 四山의 地脈을 保全하기 위하여 城內 四山뿐만 아니라 城外의 산등성이까지, 비록 國用일지라도 採石(伐石)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四山의 伐石之禁令은 그 이전에도 있었으나 伐石者가 많아서 工費에서 의정부를 통하여 위와같이 건의하여 임금이 따랐던 것이었다(《文宗實錄》권8-27, 문종 원년 6월 기사). 四山을 보호하기 위하여 四山 監役官(영조 30년 四山參軍으로 개칭)을 두었다(工典 註8).

387) 封山은 나라의 需要에 充당하기 위하여 伐採를 금지한 山이다. 正祖 2年 4月, 封山의 松材 50株 이상을 베자면 임금에게 품의하여 지시를 받아야만 허용되도록 하였다(《正祖實錄》권5-40, 정조 2년 4월 정미). 그런데 正祖 22年 10月 延日縣監 鄭晚錫

가 금지된 소나무)을 불법으로 베는 자는 엄중히 論罪한다. 큰 소나무를 불법으로 벤 것이 10株 이상이면 一律(死刑)로 論罪하고 9주 이상이면 死刑을 減刑하여 定配한다. ○ 재목을 도벌한 것이 1주 이면 杖 60에 처하고 10주이면 장 60 도 1년, 30주 이상은 장 80 도 2년에 처하며, 監官과 山直이 등이 이를 발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형벌을 받는다. ○ 살아있는 소나무를 불법으로 벤 사람에게 사사로이 속죄금을 징수한 守令과 邊將은 贓物을 합계하여 論罪한다. 宜松山³⁸⁸⁾의 船材를 節度使(帥臣)나 守令이 제멋대로 伐採를 허가하거나 제마음 대로 벌채한 경우에는 軍器를 사사로이 販賣(私賣軍器律³⁸⁹⁾)로 論罪한다. 중앙과 지방의 관청 건물을 改修할 때에도 나무를 베는 것(斫伐)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守令이 (벤 나무를) 주거나 받았을 경우에는 營門에서 刑杖을 치고 (나무베는 것을) 허가한다는 題辭를 쓴(許題³⁹⁰⁾) 경우에는 重罪로 推問한다. 소나무 밭에 放

의 應旨上疏에 의하면 바닷가 여러 고을에 모두 封山이 있어 그 폐단이 있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49-47, 정조 22년 10월 임인). 더구나 封山이 盜伐당하면 山下居民이 고통을 받는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54-6, 정조 24년 4월 무술). 純祖 11年 3월에, 비변사에서 封山의 폐단에 관해서 지적하고 있다(《純祖實錄》 권14-14, 순조 11년 3월 무인).

388) 宜松山은 소나무를 잘 成長시킨 곳이다. 고려중엽 이전의 우리나라의 산에는 소나무가 거의 없고 상수리나무·도토리 나무 등과 같이 木質이 딱딱한 것 뿐이었는데, 麗元 연합함대를 편성하여 일본을 정벌할 때 軍船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서 고생한 후 소나무를 심기 시작하여 보호하였으며 특히 船材用 소나무는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植物學者の 말).

389) 私賣軍器律은 《大明律直解》 권14, 兵律 軍政章에 있는데 杖 100을 친 후 먼 변방에 보내어 充軍하도록 하였다. 軍官의 경우도 죄가 같으며 그러한 官職者는 파직한 후 充軍하도록 하였다.

390) 許題는 題辭(題音)를 허용한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나무의 벌채를 허가한다는 의미이다. 題辭 또는 題音이란 당해 관청(官長)이 백성으로부터 제출된 申請願書의 餘白에 指令을 써서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는데 바로 그 指令文을 말한다.

火한 자는 一律(死刑)로 論罪한다. 山直이와 監官이 적발해내지 못하면 不覺失囚律³⁹¹)로 論罪하고 財物을 받고 고의로 놓아준 경우에는 枉法律³⁹²)로 論罪한다. ○ 封山에서 失火하거나 혹은 封山 밖에서 元田焚灰³⁹³)함으로 인하여 불이난 경우에는 고의적인 방화범과는 다르므로 田主에게 杖刑을 집행한 후 定配하며 監官과 色吏에게는 엄중히 棍杖을 친다. [增] 소나무 밭에서 失火한 경우에 監官과 山直이에게는 엄중히 곤장을 치되 守令은 罷職하지 아니한다. 封山の 禁標內에서 農庄을 설치한 자에게는 杖 100 流 3000里에 처한다. 만약 불법으로 耕作하는 자가 있어 山直이와 監官이 고발하였으면 단지 범인의 죄만을 다스리고 鄉所에서 조사 적발하여 고발하였으면 산직이와 監官에게는 범인과 같은 죄를 주며 守令과 邊將이 발각하였으면 鄉所의 座首와 別監에게도 같은 죄를 주고 營門에서 발각하였으면 守令과 邊將을 隱結律³⁹⁴)로 論罪한다. 嶺陁의 禁養處³⁹⁵)의 定標內에서 산허리를 한계로 삼는다. 불법으로 耕

391) 不覺失囚律은 《大明律直解》 권27, 刑律 捕亡에 있는데 獄卒이 깨닫지 못한 사이에 죄수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그 옥졸은 죄수의 罪에서 2등급 減刑하고 만약 죄수가 獄內로부터 破獄하고 逃走하였으면 獄卒은 또 2등급 減輕한다. 도망친 죄수에 관해서는 100일내에 잡아오도록 하되 기한내에 잡아오거나 다른 사람이 잡아오든가 죄수가 이미 죽었든지 自首하면 獄卒은 免罪된다. 典獄官員과 令史는 獄卒의 罪보다 3등급 減輕하며 主掌官員이 직접 죄수를 점검하고 刑具를 자세히 살피는 등 최선을 다했으면 罪에 緣坐되지 아니한다.

392) 枉法律은 《大明律直解》 권23, 刑律 受贓 官吏受財條에 있는데 祿俸을 받는 사람(官員)이 法을 굽혀서 받은 재물은 여러 사람에게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전부 에 대하여 科罪하되 杖(1貫 이하) 杖 70에서 최고(80貫 이상) 絞首刑까지 처하도록 하였다.

393) 元田焚灰는 황폐한 田地에 불을 놓아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元田은 量案을 고칠 때 元帳에 기록되어 있는 논·밭으로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이다.

394) 隱結律은 《大明律直解》 권5, 戶律 田宅 欺隱田糧(田稅)條에 있는데 隱結의 넓이에 따라 笞 40에서 杖 100까지 科刑하고 그 田地는 官에서 몰수하도록 하였다.

395) 嶺陁은 軍事施設(要塞)의 하나로서 交通의 要衝地인 山嶺(산마루, 고개)의 험하고 좁은 곳에 關門을 설치하고 把守·守備하는 곳이다. 禁養處는 草木따위를 베지 못하도록

作하거나 放火한 자는 소나무 밭을 불법 경작하거나 방화한 例에 따라 論罪한다. 監官과 色吏 및 山直이도 소나무 밭의 감관·색리·산지기와 죄가 같다. ○ 奔競者(업관운동자) 都目政³⁹⁶이 정해진 날 후에 吏曹와 兵曹의 당상관 집이나 都政이 지난 후 署經³⁹⁷하기 전에 兩司(사헌부와 사간원)의 官員 집에 同姓 6촌과 異姓 4촌 및 사돈집(婚家)이 아니면서 출입하는 자 소와 말을 私私로 이 屠殺하는 자 庶人이 禁命을 위반한 경우에는 杖 100 徒 3년에 처하고 士夫이면 그 家長이 연좌하여 같은 형벌을 받는다. ○ 兩都(개성과 강화)·水原·廣州 등 고을 및 기타 道에서 屠殺을 허가하지 않을 수 없는 곳에서는 5일에 소 한마리를 도살하도록 하되 그것을 초과한 官長은 엄중히 論罪한다.

都城內에서 庶人으로서 말을 탄 자 三醫司³⁹⁸·譯官·律官·日官³⁹⁹·寫字官⁴⁰⁰·算員·畫員 등 雜科 出身者 및 前職 官僚에게는 (말 타는 것을) 禁하지 아니하고 錄事⁴⁰¹와 禁軍⁴⁰²에게도 禁하지 아니한다. 그러

한 곳이다.

396) 都目政은 보통 매년 6월과 12월, 文武官員의 근무성적을 살펴서 任免(승진·강등포함)·黜陟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都目政事, 都目, 都政 또는 大政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1년에 두번 人事를 하면 兩都目, 네번하면 四都目이다(《會通研究》 吏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3.12, p.126 및 兵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5.12, p.168).

397) 署經에 관해서는 《위의 책》 吏典編 pp.254~260 참조.

398) 三醫司는 內醫院典醫監·惠民署 등 의료기관 세 곳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세 곳의 醫官을 의미한다.

399) 日官은 觀象監소속의 기술관원으로서 吉日을 골라 잡는 일을 맡았다.

400) 寫字官은 承文院에서 글씨 쓰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中人官僚로서 40명이 定員이다.

401) 錄事는 上級 京衙前으로서, 근무일수 514일이 차면 官階를 주도록 《經國大典》 吏典 京衙前條에 규정되어 있다. 고려시대의 錄事는 品官이었고 조선국초까지도 양반신분인 자가 거기에 任用되어 流品內로 進出하기도 하였으나 그 地位가 점점 떨어져서 16세기경에는 吏胥로서 陞班의 길이 막혔다고 하겠다(《大典會通研究》 吏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3.12, pp.177~178).

402) 禁軍은 국왕의 親衛兵이다. 조선중엽까지는 禁軍이 內禁衛·兼司僕·羽林衛 등 內三廳으로 분리되었으나 孝宗이 禁軍 600명 모두를 騎兵化하고 左·右別將(龍大將·虎大

나 都城內에서 말을 몰아 달리는 자는 잡아서 兵曹에 보내어 棍杖을 친다. 귀신에게 祭祀하는 자 서울 都城 안밖의 크고 작은 淫祀⁴⁰³)로서 城밖 10리를 限界로 한다. ○ 告祀⁴⁰⁴) 지내는 것은 禁하지 아니한다. 모여서 술마시는 자 3인 이상이 안주와 반찬을 갖추어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단지 辦主(음식물 제공자)만을 治罪한다. ○ 禁軍에게는 禁하지 아니한다. [增] 길거리에서 술주정하는 사람은 杖 100에 처한다. 남녀 중(僧尼)으로서 都城에 함부로 들어오는 자는 杖 100을 친 후 아주 작은(최소한) 고을의 노비로 영원히 소속시키고 그 들을 받아들인 사람(許接人)은 制書有違律(王旨위반죄)로 論罪하며 처녀(童女)로서 여자 중(尼)이 된 자는 그 죄를 다스리고 俗世로 돌려 보낸다. ○ 僧人으로서 公事가 있는 자는 (都城 출입을) 禁하지 아니한다. [增]公私를 막론하고 모두 禁한다. 모두 禁斷하고 舊典(옛 制度)을 엄하게 펴서 외람되게 되지 않도록 한다. ○ 위로는 宮中에서, 밑으로는 백성들의 마을(閭閻)에 이르기까지, 章服⁴⁰⁵)과 戎服⁴⁰⁶)이외로는 토산품이 아니면 着服할

將)에게 나누어 통솔하게 해서 임금의 거동시에 左右에서 호위하도록 하였다(《위의 책》 兵典編 1995.12, pp.60~63).

403) 淫祀는 바르지 못한 잡스러운 귀신(邪神)을 제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404) 告祀는 한 몸이나 집안에 액운이 없어지고 행운이 오도록 신령에게 비는 제사를 말한다.

405) 章服은 무늬가 있는 옷으로서 당상관 이상의 祭服이다. 公式的인 祭服은 고려 仁宗 때 처음 만들었는데 宋制를 모방한 것이었다. 조선에서도 고려 服制를 이어서 태조 4년 7월 中國官等에서 대체로 2등급 낮추어 祭服을 제정하였는데 1等服은 中朝의 2등복인 七旒五章으로 宗室과 宰臣이 입었으며 2등복은 中朝의 4등복인 五旒三章으로 中樞가 이를 입었고 3등복은 中朝의 5등복인 五旒一章으로 典書가 이를 입었으며, 4등·5등복은 中朝의 6등·7등복인 三旒無章으로 3·4품이 이를 입었고 6·7등복은 無旒無章으로 5품에서 9품까지가 입었다(《太祖實錄》 권8-2, 태조 4년 7월 경자). 旒는 면류관 앞뒤에 드리운 珠玉을 쥔 술이며 天子는 12줄 諸侯(國王)는 9줄이었는데 宋의 輿服志

수 없도록 하고 禁軍·扈衛軍官 및 醫女·針線婢⁴⁰⁷⁾에게는 僭衣⁴⁰⁸⁾를
 禁하지 아니한다. 士族婦女는 그 남편의 官爵과 品階에
 따라 着服하도록 하되 그 외에 大緞(중국 비단)
 · 錦繡(비단에 수놓은 것) · 鳳釵(봉황 모양을 새
 긴 비녀) · 金비녀 · 玉비녀 · 珠釵(진주비녀) · 假鬢⁴⁰⁹⁾
 등을 사용하는 것 · 오직 新婦는 禁하지 아니한다. [增] 紗·緞·綾
 · 紬⁴¹⁰⁾를 막론하고 무릇 무늬가 있는 것에 해당되면 이를 일체 엄금하며 위
 반자와 장사꾼(市民)에게 모두 一律(死刑)을 시행한다. 譯官과 商賈는 의주부
 에서 먼저 목베어 내건 후(梟示後) 임금에게 狀啓를 올려 보고하며 그 물건은
 柵門⁴¹¹⁾ 밖에서 태운다. 堂下官의 말안장에 銀이 들어 있

에 의하면 大尉·司徒·司空·中書令·侍中이 七旒冕七章服이었으니 비록 중국의三公
 이나 大臣일지라도 諸侯보다는 한등급 낮았던 것이다. 여하간 七章服은 옷(玄衣)에 3
 章紋을 그렸고 아래옷(纁裳)에 4章紋을 繡놓았다. 또 五章服은 옷에 3章紋을 그렸고
 아래옷에 2章紋을 수놓았다. 三章服은 옷에 2章紋을 그렸고 아래옷에 1章紋을 수놓
 았으며 一章服은 아래옷에만 1章을 수놓았다(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
 교 출판부, 1989, pp.175~177 및 p.315).

406) 戎服은 官服의 일종으로서 文官이나 武官 모두 몸을 가볍고 민첩하게 해야할 때 입
 었다. 따라서 戰時뿐만 아니라 御駕(임금의 거동)를 수행할 때와 외국으로 使臣이 되어
 떠날 때에도 입었다. 임진왜란 때에는 7년간이나 大小朝官이 모두 戎服을 입었다고 한
 다. 戎服은 갓·철릭·띠·신 등인데, 당상관과 당하관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였다. 조
 선후기에 이르면 戎服과 별도로 軍服이 있었다(柳喜卿 《위의 책》 pp.336~342 및
 《正祖實錄》 권38-28, 정조 17년 10월 기사 와 《純祖實錄》 권34-6, 순조 34년 4
 월 갑자).

407) 針線婢는 尙衣院에 예속된 官婢로서 바느질을 하여 衣服을 만들었으며, 후세에 이르
 면 官妓와 같이 취급하였다고 한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693).

408) 僭衣는 신분에 상응하지 않는 의복을 외람되게 입는 것 또는 그옷을 말한다(同上).

409) 假鬢은 婦女가 盛裝할 때 쪽진 머리위에 얹는 큰머리나 어머머리를 말한다.

410) 紗·緞·綾·紬 또는 綾羅錦繡는 명주실로 짠 비단의 총칭으로서 얇은 비단과 두꺼
 운 비단 모두를 말한다.

411) 柵門은 울타리의 문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만주에 있는 九連城과 봉황성간의 邊門을
 뜻하는데 柵門밖은 柵門後市라 하여 淸나라의 밀무역시장이 있었다. 1660년에 비롯되
 어 1700년, 中江後市가 폐지된 후 여기서 朝淸商人간에 무역이 성행하였으며 우리나라

는 실을 쓰는 것 · [增] 당하관으로서 가마를 타는 자에게는 濫騎律(말을 함부로 타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시행하되 북경으로 가는 書狀官·通信使·從事官은 論罪하지 아니한다. ○ 內侍(中官)로서 가마를 타는 자에게는 당상관·당하관임을 막론하고 당하관이 가마타는 경우의 律文(처벌규정)을 시행(적용)한다. 庶人の墳墓에 石物을 規制를 넘게 설치하는 것 · 돌로 만든 人形(石人)과 望柱石을 설치하지 못하며 墓表石은 2척을 넘을 수가 없다. 國喪이 났는데도 風樂을 울리고 娼妓를 끼는 것 · 良賤人을 막론하고 무기한으로 定配한다. 나라의 제삿날과(國忌正日⁴¹²) 致齋日⁴¹³에 풍악을 울리는 것 등은 모두 엄금하고 罪를 科한다. ○ 市中의 物價를 간사한 毘로서 올리는 자·말과 되(斗升)를 법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도록 한 자·나무로 만든 절구를 써서 쌀을 나쁘게 한 자·외상이라고 하면서 專賣商人(塵人)으로부터 물건을 강제로 산 자·平市署⁴¹⁴에서 모두 주관하되 저자 마을의 禁舍 위반자에게는 본

라에서는 淸나라의 요청과 使行경비의 보충을 위하여 1755년, 매년 4만兩의 세금을 받고 이를 公認하였다. 그러나 수출량이 막대하여 1787년에 公認을 취소하였지만 그후에도 밀무역은 계속되었다(이홍직 《앞의 책》 p.1516).

412) 國忌正日은 國忌日(임금과 왕비의 제삿날)과 正日(정월 초하룻날)로 나누어 볼 수도 있으나(《大典會通研究》 禮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12, p.201), 조선총독부 중추원 《譯文大典會通》 1921, p.400에서는 「國忌의 正日」이라 하여 國忌당일로 보고 있다.

413) 致齋日은 제삿날 직전 大祀·中祀·小祀(大祭·中祭·小祭)에 따라 3일, 2일, 1일간 치성을 드리는 날이다(주176 및 180). 國忌日의 제사는 王이 親行하는 大享祀일 것이므로 제사전 3일간 치성을 드린다고 하겠다(《大典會通研究》 禮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12, pp.192~201 및 p.207).

414) 平市署는 東班의 從5品衙門으로서 시장의 점포를 단속하고 度量衡을 통일시키며 물가조절 등을 맡는다.

署에서 속죄금을 징수할 수 없고 刑曹에 보고하여 죄를 科한다. [增] 都庫와 契房⁴¹⁵⁾을 행하는 자에게는 刑杖을 친 후 귀양(刑配)보낸다. 專賣商人名簿(塵案⁴¹⁶⁾)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허가 상행위(亂塵⁴¹⁷⁾)를 하는 자 · 한성부(京兆)가 주관하며 무릇 亂塵行爲者는 市塵人으로 하여금 붙잡아서 보고하고 推問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는데 (압수한) 亂塵의 물건은 그 값을 정하되 贖罪金(贖錢)에 미치지 못하면 贖罪를 할 수 없고 杖 80을 치도록 한다. 여러 宮家의 소속인으로서 亂塵行爲가 특히 심한 자는 法司에 가서 고발하도록 하여 엄중히 그 죄를 다스리고 그 물건은 官에서 몰수한다. ○ 士夫家의 奴僕이 亂塵行爲를 하다가 적발된 후 禁吏를 구타하고 市塵人을 拘留하며 贖罪金(贖錢)을 도루 받아낸 경우에는 그 家長을 적발하여 律文에 의거 죄를 정한다. ○ 여러 軍門의 軍兵이 손으로 만든 물건은 亂塵으로 취급(시행)하지 아니한다. [增] 上部官廳(上司)에 여러 軍門의 소속인의 訟獄(민형사사건)이 계류되는 경우에는 한편으로 그 소속 軍門에 事由를 통지하고(進來하고) 한편으로 그 사건을 處決한다. ○ 市塵民이 亂塵이라 칭하면서 지방에 폐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찰사(道臣)가 발각하는 대로 엄중히 刑을

415) 都庫는 물건을 독점하여 혼자 맡아서 파는 것을 말하고 契房은 賊役의 면제나 또는 다른 도움을 받기 위하여 미리 組合을 만들어서 下吏들에게 錢穀(뇌물)을 주는 것을 말한다.

416) 塵案은 나라에서 어떤 물품의 판매를 허가 받은 專賣商人(塵人)을 등록한 명부이다.

417) 亂塵은 官으로부터 物品의 專賣를 허가받은 商人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물품을 無許可로 판매하는 불법적인 상행위를 함을 말한다. 이러한 난전행위에 대해서는 六矣塵을 중심으로 하는 37개의 市塵이 단속하여 상품을 몰수하고 杖 80까지 科刑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숙종 때부터는 국가에서도 직접 난전을 단속하는 반면에 연말연시 10일간은 난전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난전을 단속하는 市塵의 수도 늘어나서 47개가 되었고 그 단속권이 남용되기도 하여서 영조 38년(1762년)에는 亂塵弊節目을 제정하여 禁亂塵의 特權부여를 7개전으로 제한하였고 난전의 금지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적극 관여하였다(이홍직 《앞의 책》 p.325). 工典 解說編 6 亂塵例 參照.

科하며 亂塵人을 구박(虐待)하는 자에게는 杖刑을 집행하고 亂塵으로 시행하지 (禁亂塵權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 亂塵의 물건을 屬公시키지 아니하며 이에 위반한 자는 制書有違律(王旨違反罪)로 처벌한다. ○ 扈衛廳 소속인으로서 亂塵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法司에서 곧 바로 刑을 科하여 罪를 다스리며 進來之規(소속 軍門에 事由를 통지한다는 法規定)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補] 가게(塵)를 닫아 걸고 撤市하면 해당되는 商人의 頭目에게 刑杖을 친 후 귀양(刑配)보낸다. 모두 禁斷한다.

○ 三法司는 刑曹·司憲府·漢城府 집(自宅)에서 禁令을 낼 수 없고 어둡고 깊은 밤에 禁令을 낼 수 없으며 서울 都城의 禁標 밖에서 禁令을 낼 수 없고 亂塵도 같다. 禁條 이외로 다른 條文을 만들어 낼 수 없으며 時刻을 量定하였으면 그 시각을 넘어설 수 없다. 먼저 禁條로서 거듭 엄중히 타이르고 격려한 후에 매달 6차 禁令을 내되 4시의 명절에는 모두 禁令을 해제한다. 禁吏가 禁令을 빙자하여 함부로 사람을 잡는 경우에는 杖 100에 처한다. 禁吏를 假稱하고 여염 마을에서 난폭한 행위를 하는 자는 멀리 귀양 보내는 律로 論罪한다. [增] 三法司에서 木牌(나무로 만든 牌札) 이외로 紙牌를 더 만드는 것은 일체 엄금한다. [補] 監察의 出牌는 일체 禁斷한다. ○ 여염집을 빼앗아 들어간 자는 徒 3년으로 定配한다. 그것을 빌렸거나 傳貰내었다고(借貰⁴¹⁸) 하였을 경우에도 같은 律에

418) 借貰는 借家와 貰家를 말하는데 借家は 借賃(월세)을 주고 남의 집을 빌리는 것이고 貰家は 傳貰金을 주고 남의 집을 빌리는 것으로 옛날의 전세금은 집값의 10분의 1정도라 한다(조선총독부 중추원 《校註大典會通》 1938, p.695).

해당된다. ○ 매월 部官(5부의 책임자)이 그 (犯法)有無를 조사하여 한성부에 보고하고 한성부에서는 입궐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 그런데 그 것을 덮어두고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制書有違律(王旨등 위반죄)로 論罪한다. ○ 지방에서는 觀察使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해서 모두 조사하여 죄주도록 한다. ○ 스스로 그 몸을 판자는 賣妻律⁴¹⁹⁾로 論罪한다. 산자(買者)에게도 같은 죄를 준다. ○ 花郎⁴²⁰⁾이나 游女(노는 계집) 및 巫女가 城中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발하여 論罪한다. 花郎과 游女가 있는 곳에서 적발하였을 경우에 그가 良家の 子女이면 쇠잔한(아주 작은) 고을의 노비로 영구히 소속시키고 그가 公私賤이면 杖 100 流 3000리에 처한다. ○ 巫女가 城中에 있으면 모두 찾아 내어 내쫓되 그들을 검거하지 아니하는 관원은 파직하여 내친다. [增] 巫女를 데리고 사는(畜妾한) 자는 三司와 다른 관청 소속임을 막론하고 모두 刑杖을 친 후 귀양보낸다. ○ 女服으로 變裝하여 입고 人家에 出入하는 자는 杖 100을 친 후 絶海孤島로 定配한다. 良賤을 가리지 아니한다. ○ 豪强品官⁴²¹⁾

419) 賣妻律은 《大明律直解》 권6, 戶律 婚姻 典雇妻妾條를 의미한듯 한데, 同條에 의하면 재물을 받고 자신의 妻妾을 他人에게 내주어 그의 妻妾으로 삼게한 자는 杖 80에 처하도록 하였다. 南晚星역주 《大明律直解》 法制處, 1964, p.271에 의하면 典은 자기의 妻妾을 남에게 돈받고 期限을 정하여 내주었다가 기한이 되면 原價를 갚고 도로 찾아온다는 식으로 條件附로 파는 것이고 雇는 자기의 妻妾을 하루에 얼마씩으로 샀을 받고 남에게 내주었다가 (원가를 돌려주지 않고) 기한이 되면 도로 찾는 것이라 하였다.

420) 여기서의 花郎은 男子인 遊藝人으로서 歌舞와 行樂을 주로 하는 광대와 비슷한 무리였다. 신라시대의 花郎은 上流階級에 속하여 귀족 청소년의 으뜸인 민간수양단체의 中心人物이었으나 조선시대의 花郎은 천민계급에 속하였다.

421) 豪强品官은 지방에서 세력을 떨치는 土豪로서의 品官이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지방에서 세력을 떨치는 品官이란 退職한 朝官을 의미하기 보다는 주로 일정지역에 世居하는 有力者로서 品階를 받은 鄉族 즉 座首와 別監 따위를 말한다(주220). 조선전기의 品官은 流品內의 官僚 모두를 의미하였고 또한 前職官人으로서 지방에 머물고 있는 留鄉

이 鄉曲을 武斷하여⁴²²⁾ 백성을 침범하고 학대하는 경우에는 杖 100 流 3000리에 처한다. ○ 鄉戰⁴²³⁾을 하는 자는 彼此(이편 저편)를 막론하고 모두 杖 100을 친 후 먼 곳으로 定配한다. ○ 守令이 民家와 民塚에 가시 울타리를 치는(梲棘⁴²⁴⁾) 경우에는 制書有違律(王旨 등 위반죄)로 論罪한다. [增] 시골 백성(鄉民)이 磨崖⁴²⁵⁾·築臺⁴²⁶⁾·刻石⁴²⁷⁾ 등으로 守令(土主)

品官을 의미하였으며(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714) 座首·別監도 在鄉의 士大夫였지만 조선후기에는 위와 같이 品官의 의미가 변질되었고 좌수·별감도 安東을 제외하고는 거의 士族이 아닌 鄉族들이 많았다고 한다(宋俊浩, 《朝鮮社會史研究》, 一潮閣, 1987, pp.148~149). 그리고 고려시대의 鄉職과 조선시대의 土官도 品官이라 하였다.

422) 鄉曲을 武斷한다는 것은 暴威로서 鄉村을 억압·專斷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지방의 村民을 강제로 부려 먹거나 제멋대로 科刑하는 등으로 학대함을 말한다.

423) 鄉戰은 지방의 價例에 따라 일정한 날에 甲地住民과 乙地住民간에 행하여 졌던 놀이의 일종으로서 石戰·車戰·줄당기기를 의미한다는 說(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695)이 있으나 그러한 놀이를 무거운 형벌로 다스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18세기와 19세기의 향촌 곳곳에서 격렬하였던 鄉戰은 주로 新班(庶族)과 舊班(嫡派)간의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패싸움이었는데(李鍾日 <朝鮮後期の 嫡庶身分變動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65, 1989, pp.87~108 및 —, <조선후기의 몰락양반에 관하여>, 《韓國史學論叢》 上, 박영석교수논문총간행위원회 1992, pp.931~932와 張泳敏 <1840年 寧海鄉戰과 그 背景에 관한 小考>, 《忠南史學》 2, 1987·《庚子鄉變日記》, 19세기 후기 手筆書 등) 여기서 엄한 형벌로 다스리는 鄉戰이란 바로 그러한 싸움이라 할 수 있다. 英祖 51年 5月 서얼들의 鄉案入錄문제로 평안감사 蔡濟恭이 사직하였다. 그가 鄉戰이 점차 치열해져감을 걱정하여 經筵席上에서 서얼들의 향안入錄문제에 국가에서 介入하지 말 것을 주장하여 사실상 반대한 바 있었기에 서얼 李定이 이를 원망하여 평안도에까지 와서 체제공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으므로 刑杖을 쳐서 귀양을 보내자 그 妻가 신문고를 쳤다(《英祖實錄》 권124-16, 英祖 51年 5月 을축).

424) 梲棘(천극)이란 重罪로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에게 가하는 형벌의 하나로서 귀양살이 하는 자가 있는 집의 울타리에 가시나무를 둘러치는 것을 말하는데(주 147) 여기서는 民家나 民塚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쳐서 出入을 통제함을 의미한다. 또 천극은 가난하여 입을 옷이 없어서 밖에 나가지 못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425) 磨崖는 여러 사람의 눈에 띄이는 절벽(石壁)의 돌을 갈아서 기념할만한 자의 이름이나 초상화를 새겨 넣는 것을 말한다. 宋나라 張詠이 益州刺史로 있으면서 善政을 베풀었으므로 백성들이 山崖의 石壁을 갈아서 그의 초상화를 새겨서 功績을 기념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p.695~696).

에게 아침하는 경우에는 主唱者는 刑杖을 친후 귀양보내고 守令에게는 엄중히 그 죄를 따져 묻는다. ○ 집을 헐고 鄉里에서 내쫓는 것을 일체 禁斷한다. [增] 民家를 강제로 허는 자에게는 자기 房屋을 고의로 태운 刑律⁴²⁸)로 論罪한다. ○ 각 중앙관청의 官員 및 下吏等屬이 免新罰禮나 許參禮 등의 일로 徵責하는 (新參人에게서 酒食을 받아 먹는) 경우에는⁴²⁹) 官吏가 財物을 받고 法을 굽히지는 아니한 律文⁴³⁰)에 의거 (받아 먹은) 酒食의 금액을 합산하

426) 築臺는 樓臺를 쌓아서 기념할 자의 官職이나 別號 등으로서 그 臺에 이름을 붙쳐 그를 후세에 기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고려侍中 尹瓘이 北鎭을 개척한 功이 컸으므로 백성들이 臺를 쌓아 侍中臺라고 한 故事가 있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696).

427) 刻石은 돌에다가 그림이나 글자를 새기는 것을 말한다.

428) 自己房屋을 고의로 태운 刑律은 《大明律直解》 권26, 刑律 雜犯 放火故燒人房屋條에 있는데, 放火하여 그의 家舍를 고의로 태운 자는 杖 100에 처하고 그로 인하여 官民의 房屋이나 쌓아둔 財物을 連燒시킨 경우에는 杖 100 徒 3년에 처한다고 하였다.

429) 免新罰禮와 許參禮 등의 일로 徵責(채)한다는 것은 새로 文科에 급제한 자가 承文院·藝文館·成均館·校書館 등 이른바 4館의 官員 또는 權知로 임명 내지 分館되었을 때 先輩官員들이 新參官員(新來라 함)의 오만한 氣勢를 꺾고 先後輩의 名分을 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初入仕때 酒食을 제공받는 한편, 온갖 방법으로 모욕을 加하였던 것(이를 許參의 禮라 하였다)과 그로부터 10수일이 지난후 또 먼저와 같이 酒食을 제공받았던 것(이를 免新의 禮라 한다)을 말한다. 新來者들은 許參의 禮를 마쳐야만 公事에 參與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免新의 禮를 치러야만 先輩들과의 同坐가 허용되었다. 後에 이르면 위 4館뿐만 아니라 일반관청과 諸衛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풍조가 波及되어 위로는 官員으로부터 아래로는 吏胥와 僕隸에 이르기까지 許參·免新이라 하면서 新來者에 대하여 酒食을 徵責하는 등 폐단이 컸다고 한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696). 傳言에 의하면 氣概있는 新來의 선비들 중에는 그러한 許參·免新禮 때의 酒食徵責와 여러 가지로 先輩관료들이 加하는 짓곳은 작난에 모욕감을 느끼고 下鄉해 버린 후 出仕를 포기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430) 판리가 재물을 받고 법을 굽히지는 아니한(官吏受財不枉法) 律文은 《大明律直解》 권23 刑律 受贓 官吏受財條에 있다. 판리가 他人의 재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贓物(받은 재물)을 계산하여 例에 따라 죄를 주되, 無祿人이면 각각 1등급 減刑하고 官職이 있는 사람이면 파직한다고 하였는데 刑量은 받은 재물의 액수에 따라 달라서 最低(1貫 이하) 杖 70度, 最高(80貫) 絞首刑까지 처하게 하였다. 不枉法(法을 굽히지 않은) 경우에는 받은 재물 액수를 통산하여 半으로 계산해서(折半) 科罪한다고 하였다.

여 論罪(計贓論)한다. 그러한 자들을 검거하지 아니한 官員은 罷職한다. ○ 지방에서의 鄉校나 鄉所의 任員 및 官屬(衙前) 등이 犯法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청의 例에 의거 論罪한다. 여러 軍門의 將校 및 軍卒이 免新禮라 하면서 徵斂(新參人에게 酒食을 받아내는 등)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棍杖을 친다. 그것을 발각하지 못한 將領은 엄중히 論罪하고 犯法을 한 당사자는 軍律에 의하여 처벌한다. ○ 지방의 將校와 軍官 및 軍卒이 犯法한 경우에는 여러 軍門의 例에 의거 論罪한다.

[增] 陵·園·墓의 나무를 불법으로 베는데도 적발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벤 사람 및 陵官을 輕重으로 나누어 論罪한다. 陵·園·墓의 아릅드리(拱抱⁴³¹) 大木<版木을 만들기에 적합할 것> 1株가 盜伐 되었으나 적발하지 못하면 陵官을 徒 3년에 처하고 陵軍은 流 2000리에 처하며 2株 이상이 (盜伐)되면 차례로 형의 등급을 더하여 流 3000리에 그치도록 한다. 松大木과 雜大木<家舍材木으로 적합한 것>이 1株 이상 (盜伐)되면 陵軍은 杖 100에 처하고, 4株 이상이면 徒 2년에 처하며, 7株 이상이면 徒 3년에 처한다. 陵官은 5株 이상이면 罷職하고, 7株 이상이면 官階를 3등급 降等(奪告身3등)하며, 10株 이상이면 陵軍은 流 3000리, 陵官은 徒 3년에 처한다. 中木이 10株 이하 (盜伐)되면 陵軍은 杖 80, 10株 이상이면 杖 100, 20株 이상이면 徒 1년, 30株 이상이면 徒 2년에 처한다. 陵官은 50株 이상이면 奪告身 3等, 30株 이상이면 罷職한다. 小木이

431) 拱抱(拱包)는 처마끝의 무게를 받치려고 기둥머리 같은 곳에 짜맞추어 댄 나무쪽들인데 包作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大典通編》 刑典 禁制 細註에서는 拱包大木을 板木 만들기에 적합한 것으로 풀이하였다. 板木은 大型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매우 큰나무(아릅드리 큰나무)라 할 수 있다.

10株 이상 (도벌)되면 陵軍은 笞 40, 20株 이상이면 杖 60에 처한다. 그러나 (도벌자를) 적발하여 刑曹에 보고하면 論罪하지 아니하고 반면 陵에 속한 자 자신이 도벌하는 경우에는 大明律에 의하여 刑을 3등급 加重한다.⁴³²⁾

【訴冤⁴³³⁾】〔原〕 원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는 서울에서는 주무관청(主掌官)에 올리도록 하고 지방에서는 觀察使에게 올리도록 하되 그렇게 하여도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으면 司憲府에 告訴하고 그래도 또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으면 申聞鼓⁴³⁴⁾를 치도록 한다. 북은 義禁府의 當直廳에 있으며 무릇 임금에게 올릴 말씀(上言)은 당직원이 사헌부의 退狀⁴³⁵⁾을 살펴 보고 그 것을 받아서 임금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의금부와 사헌부에서 처리한 것이면 退狀을 살펴보지 아니한다. ○ 무릇 上言에 대한 裁可(啓下⁴³⁶⁾)가 있는지 5일 이내에

432) 《大明律直解》 권18 刑律 盜賊 盜園陵樹木條에 의하면 園陵內的 樹木을 盜伐한 자는 모두 杖 100 徒 3년에 처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서 刑을 3등급 더하면 杖 100 流 3000리가 된다.

433) 訴冤條에서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官이나 임금에게 호소하는 절차와 그 副作用을 예방하기 위한 단속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규정들은 태종·세종 연간에 비롯되어 (《太宗實錄》 권3-18·19, 태종 원년 11월 경자 및 《世宗實錄》 권15-7, 세종 4년 2월 경인 과 권51-27, 세종 13년 3월 병자) 《경국대전》 형전 소원에 등재된 후 《속대전》의 같은 항목에서 추가된 것이다.

434) 解說篇 30 申聞鼓 參照.

435) 退狀은 呈狀(진정서)을 보고 기각한다(見退)는 뜻인데(《太宗實錄》 권30-31, 태종 15년 11월 무술) 여기서는 소송의 재판, 기타 주무관청의 처분에 관해서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자가 다시 사헌부에 呈狀하였으나 사헌부의 官員은 이를 受理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에 기각하면서 사헌부의 官印을 찍어 呈狀者(진정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436) 啓下는 관료들의 건의(啓聞)에 대해서 임금이 재가하는 것 또는 회답이나 의견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담당관청에서는) 결과보고(回啓437))하여야 하고 만약 그 기한이 지나면 즉시 回啓하지 못한 사연을 적어서 임금에게 보고해야 한다. 宗廟社稷에 관계되거나 不法殺人에 관한 것 이외로 吏典이나 僕隸⁴³⁸⁾가 그 官員을 告發한 경우와 品官·吏·民이 그의 觀察使나 守令을 고발한 경우에는 모두 接受하지 아니하고 (고발자를) 杖 100 徒 3년에 처한다.⁴³⁹⁾ 品官과 吏·民은 그 지방에서 내쫓는다(黜鄉⁴⁴⁰⁾). 다른 사람을 몰래 使嗾하여 고발장을 내게한 자의 죄도 같다. 그러나 그 자신이 원통하다고 호소하는 경우(自己訴冤⁴⁴¹⁾)에는 모두 들어서 審理하여 주되 誣告者는 杖 100 流 3000리에 처한다. 品官⁴⁴²⁾과 吏·民은 역시 그 지방에서 내쫓는다.

437) 回啓는 임금의 啓下에 대하여 관료들이 답하여 올리는 啓를 말한다.

438) 吏典과 僕隸는 주306 및 주307 참조.

439) 세종 2년 9월 임금은 예조판서 許稠 등의 啓에 따라 府史·胥徒가 그 (上司인) 官吏를 고발하거나 品官(座首 別監 등, 주421 참조)이나 吏(營吏·邑吏 등)·民(四民) 등이 그 守令과 監司를 고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宗社의 安危나 不法殺人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또한 不實한 것이면 論罪하도록 하였는데(《世宗實錄》 권9-16, 세종 2년 9월 정축), 세종 4년 2월 다시 임금이 刑曹의 啓에 따라 宗社와 不法殺人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면 위의 경우 受理하지 않고, 監司나 守令을 고발한 品官이나 吏·民 등을 杖 100 流 3000리에 처하도록 하였다(《위의 책》 권15-7, 세종 4년 2월 경인). 그후 刑量이 徒 3年으로 낮추어져서(《위의 책》 권47-30, 세종 12년 3월 병인) 《經國大典》刑典 訴冤에 등재된 것이다.

440) 黜鄉은 留鄉所의 주관 아래 反倫理的이고 不道德한 行爲를 한 자 또는 그 가족을 그 지방에서 살지 못하도록 내쫓는 것을 말한다(이태진외 4인, 《앞의 책》, p.715).

441) 自己訴冤이란 스스로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인데 세종 13년 3월 部民이 守令을 고소하지 못하게 한 예외조치로서 自己訴冤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君臣間에 논의가 있었다(《世宗實錄》 권51-27, 세종 13년 3월 병자).

442) 주 421 豪强品官 參照.

[續] 申聞鼓를 칠 수 있는 경우는 형벌로서 그 자신이 죽게된 경우와 父子의 分揀·嫡妾의 分揀⁴⁴³⁾·良賤의 分揀⁴⁴⁴⁾ 등 사항의 4件에 관한 일 및 子孫이 父祖를 위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것·동생이 형을 위하는 것·노비가 주인을 위하는 것·기타 지극히 원통한 事情이 있는 것 등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杖이나笞로) 가볍게 치면서 問招하여 陳述을 듣되(例刑取招⁴⁴⁵⁾) 그 이외 일로 (申聞鼓를) 치면 모두 엄중히 刑杖을 치고 임금에게 아뢰되 (呼訴를) 들어 주지 아니(勿施)한다. 申聞鼓는 지금은 없고 원통함을 호소하는 자는 差備門⁴⁴⁶⁾ 밖에서 징을 치는 것(擊金⁴⁴⁷⁾)은 허용하며 이것을 擊錚이라 한다. [增] 申聞鼓를 經國大典에 따라 다시 설치한다. ○ 무릇 임금에게 말씀을 올릴 자(上言者)는 3일 이내에 戶口⁴⁴⁸⁾를 갖고 나타나야(現身)하며 해당 당상관이 그 眞否를 직접 심사한다. 3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아니하면 들어 주지 아니(勿施)한다. ○ 上

443) 嫡妾의 分揀은 正妻나 妾이나를 분간하는 문제로서 특히 有妻娶妻의 경우 그 후손들 간에(서열이 되지 않기 위하여)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爭嫡투쟁이 전개되었으며 그러한 싸움이 300년 이상 代를 이어갔던 적도 있었다(李鍾日 〈朝鮮後期の 嫡庶身分變動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65집 1989, pp.77~117).

444) 良賤分揀에 관해서는 해설편 25 奴婢 參照.

445) 例刑取招는 杖이나笞로서 가볍게 치면서 죄인을 訊問하여 진술을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698).

446) 差備門은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便殿의 앞문과 宗廟의 上門 및 下門을 뜻한다.

447) 擊金은 擊錚이라고도 하는데 錚은 鉦의 類로서 징의 일종이다. 임금에 대한 直訴수단으로 申聞鼓 대신 많이 利用하였다. 특히 임금이 궁밖으로 거동할 때 호위선 밖에서 치는 경우(衛外擊錚)가 많았다(해설편 30 申聞鼓 참조).

448) 戶口에 관해서는 《大典會通研究》 戶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12, pp.15~18 참조.

言의 말투(語套)가 (正常이 아니고) 不敬스러운 것이거나 임금의 恩賜를 이유 없이 求하는 일 등은 들어 주지 아니하고 杖 100을 치되 贖罪金으로 형을 속죄하여 주지 아니한다. 만약 (호소문을) 대신 지어준 자가 있으면 그 자의 죄도 같다. [補] 擊錘한 것이 비록 4건에 관한 일이 아닐지라도 民弊에 관계되면 猥濫律⁴⁴⁹을 시행할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 비록 4건에 관한 일이라도 血書로 된 것은 취급하지 아니(勿施)한다. ○ 山訟이나 기타의 訴訟을 막론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決定(題辭)이 나지 아니한 陳情書(題外原情)를 붙에 태운 경우에는 訟理의 曲直을 막론하고 刑의 등급을 더하여 罪를 조사하여 벌을 준다. ○ 고을 백성이 守令의 刑杖을 맞아 죽어서 징(錘)을 치게 된 경우에는 먼저 觀察使로 하여금 조사(按查⁴⁵⁰)시켜서 죄가 守令에게 있으면 그에게 죄를 주고 만약 誣告(誣罔)에 해당되면 部民告訴律⁴⁵¹로 論罪한다. 告訴狀內에서 매우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쓴 것 이외에 自己에게 관계되지 아니한 일을 아울러 기록한 자는 經國大典에 의거 처벌(施行)한다. ○ 非理로 訴訟을 좋아하여⁴⁵²

449) 猥濫律은 《大明律》에 규정된 조문은 없으나 《大明律直解》 권3, 吏律 公式의 事應奏不奏條와 권21 刑律, 罵詈, 罵本營長官條에 비추어 유추 해석할 수 있다.

450) 按查는 按察使 즉 觀察使가 은밀히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698)

451) 部民告訴律은 《大明律直解》 권21, 刑律 罵詈의 罵制使及本營長官條와 비교하여 볼 수 있다. 즉 部民(관내백성)이 本屬 牧使·知官(知府事·知郡事)·縣令·監務(縣監) 등 員(守令)을 욕하고 꾸짖는 경우에는 杖 100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經國大典》 刑典 訴冤條에서는 品官과 吏·民이 그의 관찰사나 守令을 고소(고발)하면 杖 100 徒 3년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452) 非理로 訴訟을 좋아하여(非理好訟) 처벌된 사례로서는 18세기 후기 河回의 豊山柳氏 즉 柳成龍의 宗孫이 노비소송에 있어서 醴泉郡守의 판결에 불복하여 慶尙監營에 上訴하여 覆審재판 결과 예천군수로 하여금 재조사하게 하였는데 예천군수는 柳氏측(代訟者 庶從弟)에게 刑杖을 친 후 구속수감한 일이 있다(金景淑 <18세기 후반 奴婢爭訟의 事

징을 친 자는 杖 100 流 3000里에 처한다. ○ 守丞이 留任되기를 願하여 징을 친 자는 杖 100에 처하고 (罪質이) 重한 경우에는 徒 3년에 처한다. ○ 事案이 微細하여 해당 道 및 해당 중앙관청에 올려 처리할 수 있는데도 猥濫되이 임금에게 上言한 자는 越訴律⁴⁵³⁾에 의거 論罪하고 事理가 重한 경우에는 上書詐不實律⁴⁵⁴⁾에 의거 論罪한다. 事理上 시행할 수 없는 것인데도 해당관청이 흐리멍텅하여 受理한 경우에는 엄중히 추궁한다.

【停訟】〔原〕 지방의 訴訟은 訴訟停止(務停)後와 訴訟開始(務開)前에는⁴⁵⁵⁾ 春分日에 소송이 정지되고 秋分日에 소송이 개시된다. 十惡·姦淫·盜犯·殺人·逃亡奴婢를 붙잡아서 官에 넘기는 것·남에게서 빼앗은(據奪⁴⁵⁶⁾)

例分析). 《古文書研究》 8, 1996.3, pp.69~96).

453) 越訴律은 《大明律直解》 권22 刑律 訴訟의 越訴條를 말하는데 무릇 軍民이 소송할 때에는 반드시 下級官廳을 거쳐서 上級官廳으로 陳告해야 하며 곧바로 上級官廳으로 提訴하면 笞刑 50度에 처한다. 또 임금의 가마앞(駕前)에서 호소하거나 登聞鼓(신문고)를 쳐서 申訴하는 경우, 그 내용이 거짓(不實)이면 杖 100에 처하고 그것이 진실이면 죄를 免한다.

454) 上書詐不實律은 《大明律直解》 권24 刑律 詐僞의 對制上書詐不以實條를 말하는데 對制(임금의 고문에 응함)文書나 申聞狀 등 上書의 내용에 거짓이 있으면 杖 100 徒 3년에 처하고 비밀이 아닌데도 비밀이라고 거짓말한 경우에는 刑을 加1等한다. 또 王命을 받들어 推問한 事狀을 不實하게 보고한 자는 杖 80 徒 2년에 처한다.

455) 務停은 농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송에 관한 일반업무(庶務)를 정지함을 말하고 務開는 농사철이 끝나 訟務를 개시함을 뜻한다(《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世宗 13年 3월에 務停은 春分日, 務開는 秋分日로 정하였다(《世宗實錄》 권 51-35, 세종 13년 3월 계미). 春分日은 24節氣의 하나로 양력 3월 21일 전후시기이고 秋分日도 24節氣의 하나로서 양력 9월 22일 전후이다.

奴婢를 계속 부리는 것 등 타인의 田地를 不法 占據(據執)·盜耕·盜賣⁴⁵⁷)하는 것도 같다. 一應 風俗에 관계되거나 타인에게 侵損⁴⁵⁸)하는 것을 제외한 雜多한 訴訟은 모두 聽取·審理(聽理⁴⁵⁹)하지 아니한다. 서울에서는 오직 지방에 常住하는 자의 訴訟을 들어 주어 돌아가서 농사를 짓게 하되 그 소송의 判決에 臨하여 형세를 관망하면서 돌아가 농사를 짓고자 하는 자의 소송은 들어주지 아니한다⁴⁶⁰).

[續] 흉년을 만나면 刑曹에서 임금의 지시를 받아 해당 道에 공문을 보내어 모든 奴婢推刷 또는 貢布追徵(推奴⁴⁶¹)과 債務徵收(徵債) 등에 관한 사

456) 據奪은 남을 억눌러서 강제로 빼앗거나 거짓 文書에 의거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

457) 據執은 거짓문서(僞造文書 또는 虛僞文書)를 빙자하여 남의 것을 차지하여 돌려주지 아니하는 것 또는 남을 억눌러 강제로 남의 것을 占據하는 것을 말한다. 또 盜耕은 남의 땅을 훔쳐서 혹은 不法으로 빼앗아 갈아먹는 것이며 盜賣는 남의 것을 훔쳤거나 빼앗은 물건을 몰래 팔아 먹는 것이다.

458) 侵損은 재물의 竊取(侵)와 신체의 損傷 즉 鬪毆·投傷(損) 등을 말한다(《經國大典 註解》 後集 下 刑典).

459) 주 36 (聽理) 參照.

460) 이것은 成宗 2年 5月 禮曹의 啓에 의하면 《經國大典》(己丑大典 또는 辛卯大典)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계속 奉行할 法條중에 있는데 그 내용은 서울에서는 地方에 常住하는 자로서 스스로 소송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외에는 모두 들어 주어서 돌아가 농사짓게 하되 원고·피고(元隻) 한쪽만 계속 소송하기를 원하는 경우 및 決訟에 臨하여 형세를 관망하면서 돌아가서 농사짓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들어 주지 아니한다고 하였다(《成宗實錄》 권10-23, 成宗 2年 5월 정유). 이를 수정·정리하여 새로 增修한 新定《經國大典》(甲午大典 및 乙巳大典) 本文에 등재하였던 것이다.

461) 推奴는 도망친 노비를 찾아서 데려오는 것(推刷)을 의미하기도 하나 外居노비의 경우 그 자손이 번창하여 한마을을 이루고 살아도 그 노비의 祖上들의 주인의 子孫에게 貢布를 내어야 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 貢布를 추징하게 되는데 이것도 推奴라고 한다.

항을 일체 停止하도록 한다.

【賤妾⁴⁶²⁾】〔原〕 2품 이상의 官人은 子女가 있는 公私賤妾을 자기의 婢로서 掌隸院에 신고하여 몸값을 치르고 免賤(贖身)시킬 수 있다. 私奴婢(私賤)는 本主人이 진정으로 願하는 바에 따른다. ○ 무릇 贖身은 반드시 나이가 비슷한 노비로서 하며 만약 그가 도망친 경우에는 본인(公私賤妾)이 살아 있으면 다른 노비를 代身 주어 立役시키고 대신 입역 시키지 못하면 (본인을)도로 賤人으로 한다⁴⁶³⁾.

【賤妻妾子女⁴⁶⁴⁾】 〔原〕 宗親인 總麻 이상의 親

462) 賤妾은 公私奴婢등 賤人신분으로서 남의 妾이 된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는 2품 이상의 고위官人의 賤妾이 그 몸값을 치르고(贖身) 良人이 되게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에 의하면 公私賤婢는 그 아버지가 비록 大小員人의 부류에 들지 않아도 2품 이상자의 첩이 되어 子女까지 있으면 贖身爲良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태종 14년 정월 婢妾所産 限品贖身法을 만들었는데 이때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아뢰기를 중국에서는 本宗을 重視하여 父가 良人이면 모두 良人이 되나 우리나라의 혼인법은 舊俗대로 男歸女家하여 그 子女가 外家에서 生長하고 本宗의 重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母가 賤人이면 모두 賤人이 된다는 것과 그러나 조선이 건국된 후 自己婢妾所産을 身良役賤으로 하여 司宰監水軍에 소속시키는 등 良人化정책을 취하였으며 勳舊之臣의 婢妾所出 중 識字開通者에게는 限品으로 관직을 주자고 하여 이에 임금은 2품 이상의 自己婢妾子를 영구히 良人으로 삼아서 5品까지 주도록 하되 自己婢子로서 몸값을 치르고 免賤(贖身)시키도록 하라고 하였다(《太宗實錄》 권27-1·2, 태종 14년 정월 기묘).

463) 《經國大典註解》 前集 刑典에 의하면 여기서 도망친 노비는 公賤을 의미하며 公賤이 죽으면 檢屍하여 立案을 작성하는데 檢屍와 立案이 없다면 모두 도망자로 論罪하여 充立하게 하고 充立하지 못하면 本人을 還賤한다는 것이다. 私賤이 죽은 경우는 檢屍立案法이 없어서 死亡과 逃亡이 구별되기 어렵기 때문에 公賤과 같이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464) 賤妻妾子女는 賤人 특히 노비신분의 妻와 妾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말하는데 노비 내지 그 자녀에 관해서는 해설편 25 奴婢와 《大典會通研究》 吏典編 한국법제연구원

族⁴⁶⁵과 外戚으로 小功 이상인 親戚⁴⁶⁶의 賤妾子女는 모두 良人으로 삼고(從良) 몸값을 치르거나(贖身) 身役을 지우는 일(立役)은 없다⁴⁶⁷. 親功臣의 賤妾子女도 이와 같다⁴⁶⁸. ○ 娼妓⁴⁶⁹와 女醫⁴⁷⁰의 경우에는 그가 집안에서

1993.12 pp.363~433 참조.

- 465) 宗親인 總麻이상의 친족이란 임금의 3從兄弟姊妹(8촌)·族曾祖父母·曾孫·玄孫 기타 3개월간의 服에 해당되는 친족이다. 조선초기에는 宗親들은 親疎를 가리지 않고 懿親이라 하다가 세종 22년 9월부터 期功親(太祖子孫과 桓祖子孫)·總麻親(度祖子孫)·袒免親(翼祖子孫) 등으로 五服의 等數에 따라 分揀하여 시행하였다(《世宗實錄》 권 90-37, 세종 22년 9월 경술).
- 466) 外戚으로 小功 이상인 친척이란 임금의 外祖父母·外3寸·從母(이모)·생질 및 생질녀 등 5개월간의 服에 해당되는 친족이다(《經國大典》 禮典 五服).
- 467) 從良은 賤人 또는 賤人이 될 身分을 良人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賤妾子女는 賤者隨母法에 따라 원칙적으로 賤人이 될 것이나 임금의 有服親인 宗親과 小功 이상의 外戚인 賤妾子女는 贖身이나 立役없이 良人이 되도록 하였다. 世宗 19年 6月 임금이 刑曹에 傳旨하기를 穆祖 이하 各代子孫중 甲午(太宗 14年) 6月 28日 이후의 賤妾所産인 宗姓子孫은 男女간에 모두 《經濟六典》에 의거 良人이 되었으나(從良) 그 이전의 賤妾子孫은 免賤되지 못하여 불쌍하니 그들도 從良한다는 것이다(《世宗實錄》 권77-42, 세종 19년 6월 신사). 世宗 26年 6月 宗簿寺의 啓에 따라 袒免(9·10寸) 이상의 宗姓子孫과 總麻이상의 外孫에 限하여 從良토록 寸數를 제한하였고(《위의 책》 권104-36, 세종 26년 6월 을사). 成宗初에 그것을 더욱 제한하여 《經國大典》 刑典 賤妻妾子女條에 등재한 것이다(《成宗實錄》 권76-1, 성종 8년 2월 신미).
- 468) 親功臣은 自己自身の 공로로 錄勳된 功臣을 말하며 父祖의 음덕으로 功臣이 된 承襲功臣과 구별된다. 親功臣의 公私賤妾所生을 모두 從良시킨 것은 世祖 5年 正月 임금이 刑曹에 傳旨한데서 비롯되었다(《世祖實錄》 권15-6, 세조 5년 정월 신축)(주31).
- 469) 娼妓는 서울과 지방관청의 妓籍에 올라 官衙에 배속된 妓生을 말한다. 世宗 28年 正月 사헌부에서 朝官이 지방관으로 나갈 때(出使者) 娼妓를 사사로이 갖지 않도록 할 것을 건의하여 의정부에서 의논하게 하였던 바 右의정 河演이 건의하기를 옛날 軍士중 妻가 없는 자를 위하여 기생들과 同寢하도록 하였으나 營鎮軍士가 기생을 거느리고 赴防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大小使臣과 守令이 淫欲을 恣行하여 폐단이 많고 풍속을 더럽히니 사헌부의 啓대로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그대로 두었다(《世宗實錄》 권 111-11 세종 28년 정월 무술).
- 470) 女醫는 童女로서 醫藥을 배워서 진찰과 치료를 맡은 여자 醫員이었으나 신분이 매우 낮았다. 太宗 6年 3月 檢校 漢城尹 知濟生院事 許道가 上言하기를 婦人이 병이 있을 때 男醫가 진찰하여 치료하면 부끄러움 때문에 그 병을 나타내지 않아서 죽게 되는 수가 있으니 倉庫와 官司에 속한 童女 수십인에게 脈經과 針灸法을 가르쳐서 救治케 함이 좋겠다고 하여 임금이 이에 따라 濟生院에서 그일을 맡도록 하였다(《太宗實錄》 권 11-11, 태종 6년 3월 병오). 태종 18년 6월 濟生院의 건의에 의거 禮曹에서 啓하기를

데리고 사는 妾(家畜者)의 소생이 아니면 良人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
 다⁴⁷¹). 大小員人의 경우도 같다. ○ 大小員人으로서 文官·武官·生
 員·進士·錄事·有蔭子孫(父祖의 음덕으로 벼슬할 수 있는 子孫) 및 嫡室의
 자손이 없을 경우의 妾子孫인 承重者(承嫡者 즉 奉祀者) 公私婢를 娶
 하여 妻妾으로 삼은 자⁴⁷²)의 子女는 그 父가 掌隸
 院에 신고하고 (장예원에서)사실을 조사해서 帳

醫女가 모두 7명이나 成才者는 5명뿐이므로各司 婢子중 나이 13세 이하인 자 10명을
 加定함이 어떻겠는가 라고 하여 임금의 이에 따랐다(《太宗實錄》 권35-75, 태종 18
 년 6월 경자). 世宗 16年 11月 禮曹에서 啓하기를 나이 15세이하 10세 이상으로 女
 醫에 可合한 婢子를 충청·전라·경상도에서는 知官(知郡事)이상 고을에서, 경기·강원
 ·황해도에서는 界首官(州牧 이상)인 고을에서, 《經濟六典》에 의거 가르쳐서 글자를
 알게되면 뽑아 올릴 것을 의논케 하였던 바 모두 각도가 흉년이 들어 어려우니 풍년을
 기다려서 뽑아올리자고 하여 임금의 이에 따랐다(《世宗實錄》 권66-20, 세종 16년
 11월 기축). 文宗 元年 4月에는 禮曹의 건의에 의거한 의정부의 啓에 따라 女醫에게
 女妓들과 같이 年 1石의 歲米를 주도록 하였다(《文宗實錄》 권7-7, 문종 원년 4월 경
 진).

471) 집안에서 데리고 사는 첩이 아닌 경우(非家畜)에는 그 아버지를 변별할 수 없으므로
 良人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成宗 9年 11月 임
 금이 刑曹에 傳旨하기를 娼妓는 일정한 남편이 없어서 아이를 잉태하면 근거없이 某宗
 宰의 아이라고 말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宗親 및 大小人員이 집안에서 同居하는 妓妾이
 외로 相好하여 낳은 子女는 贖身從良을 不許한다고 하였다. 그때 史臣이 쓰기를 宗親이
 그의 賤妻子女를 만드시 士族과 억지로 혼인시키려고 하여 사람들이 모두 수치스럽게
 여기고 원망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둔 것이라 하였다(《成宗實錄》 권98-13·
 14, 성종 9년 11월 무인). 그러나 宗親들은 여기에 반대하면서 만드시 正室과 같은 집
 에 同居하지 않더라도 父母집에 산다든지 旣집에 살림을 차렸을 때에는 家畜例에 따라
 贖身從良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에 따라서 傳旨를 고쳤으나 그 다음날에도
 이 문제는 經筵席上에서 계속 논의되었다(《위의 책》 권98-15·16, 성종 9년 11월
 기묘·경진).

472) 大小員人이 公私婢를 娶하여 妾이 아닌 妻로 삼은 것에 관하여 《經國大典註解》 前
 集 刑典에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妾子孫承重者를 지칭한 것이거나 혹은 舊大典(甲午大典
 이전의 經國大典)에서 「大小員人及良人」이라 한 것을 「及良人」을 삭제하면서 「妻妾」의
 妻를 삭제하지 않은 탓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국초의 多妻중 賤人출신의 妻도 妻라
 고 하였기 때문이란 주장도 있다(李泰鎮의 4인 《앞의 책》 p.718). 혹시 立法者가 예
 컨대 수양대군의 奴 조득림이가 出世하여 양반이 된 후 士族女에게 새장가 들었을 때,
 婢였던 先妻 및 그 자식 등의 免賤을 염두에 두고 규정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簿에 기록(錄案)하여 父가 없으면 嫡母가, 嫡母가 없으면 兄弟姉妹(同生)가, 兄弟姉妹(同生)가 없으면 祖父母가 신고한다. ○ 자기소유의 婢와 妻소유의 婢가 낳은 (자기) 子女 이외는 모두 몸값을 치러야(贖身) 하는데 병이 없고 나이가 비슷한 자로서 贖身해야 한다. 노비의 본주인이 만약 듣지 않으면 官에 신고하도록 한다(473). 鄉吏·驛吏·鹽干(474)·牧子(475) 등에게 시집간 자기 소유인 婢의 所生子女는 그 아버지의 身役處에 定役하고 벼슬길(仕路)은 터주지(通하지) 아니한다. 兵曹에 공문을 보내어 補充隊(476)에 소속시킨다. 나이가 16세가 차도 신고하지 아니한 자·申告狀을 제출한 후 3년이 경과하여도 확인서(立案)를 받지 아니한 자·장부에 올려 立案한 후에도 立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타인이 陳告할 수 있도록 하여 도루 賤人이 되게 한다(477). 女子는 役이 없다. ○ 陳告者에게는 奴婢를 陳告한 例(478)에 따라 論

473) 本主人이 만약 듣지 않는 경우에는 官에 신고하라는 것은 本主人이 비록 듣지 않더라도 官에 신고하여 贖身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士族의 子女를 重要視하기 때문이며 《經國大典》 刑典 賤妾條에서 賤妾은 本主人의 진정한 所願에 따라 贖身할 수 있게 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經國大典註解》 前集 刑典).

474) 鹽干은 섬이나 해변 고을에서 소금굽는 일을 하는 자로서 염전이 있는 인근에 설치된 鹽倉으로 일정량의 소금을 “貢物이나 稅”로 바쳐야만 하였다(이태진외 4인 《앞의 책》 pp.718~719). 세종 27년 8월 당시의 鹽干중 式干은 매년 소금 10石을 貢納하고 私干은 4石을 貢納한다고 하였다(《世宗實錄》 권109-25, 세종 27년 8월 무진).

475) 牧子는 國役으로서 養馬하는 임무가 부여된 身良役賤인 자였다(《大典會通研究》 戶典編, 1994.12, p.57). 世宗 20年 7월에 海岸과 섬지방의 목장에서 일하는 牧子에게는 목장구역내에서 소금 굽는 것을 허용하였고 그들로부터 받는 稅鹽은 여위고 병든 말의 養料로 쓰도록 하였다(《世宗實錄》 권82-3, 세종 20년 7월 경인).

476) 補充隊에 관해서는 《大典會通研究》 兵典編 1995.12, pp.374~376에서 상세히 해설하였다.

477) 《經國大典註解》 前集 刑典에 民丁이 16세가 되면 마땅히 國役に 복무해야 하므로 補充隊에 소속시킬 자는 반드시 16세 이전에 신고장을 제출하여 贖身케 하고 16세후에 신고장을 제출하면 贖身을 不許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壯丁의 나이가 되어도 國役に 복

賞한다. ○ 有服親은 陳告하지 못한다⁴⁷⁹). ○ 他人所有의 奴婢는 몸값을 치른 (贖身)후 補充隊의 帳簿에 기록(錄案)되어 立役하는 자와 이미 벼슬을 받아서 나간 자(去官者⁴⁸⁰)에 대해서는 陳告할 수 없다⁴⁸¹).

[續] 先王(大王)의 男系後孫(姓孫)으로서 6代 이상(以內)이면 몸값을 치르지 않고(無贖身) 良人 이 되게(從良)하며 7대에서 9대 까지는 다른 노 비를 대신 바치도록 하여 贖身(代口贖身⁴⁸²)한다. 先王(大王)의 女系後孫(外孫)은 6대 이상이면 代 口贖身하고 7대 이하면 (贖身을) 논의하지 아니 한다. 贖身해야 할 자가 임금에게 上言하면 掌隸院에서는 반드시 먼저 敦寧 府와 宗簿寺에 공문을 보내어 그 代數를 상세히 살펴 보도록한 후에 임금에게 回啓한다. ○ 四王(穆祖·翼祖·度祖·桓祖) 子孫의 從良에 관한 법(受教)은

무하지 않고 良人이 되려고 하는 것이며 또한 등록 확인서를 받지 않거나 立役하지 않고 모두 良人으로 행세하려는 逃役者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陳告를 허용하여 還賤시킨다는 것이다. 陳告는 위 註解 後集下 刑典條에서 「敷告曰陳, 啓訟曰告」라 하여 위에 신고(上訴)하여 널리 알리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78) 노비를 신고(陳告)한 例라 함은 《經國大典》 刑典 公賤條의 逃亡·隱漏奴婢의 신고자(陳告者)에 대한 給賞규정을 말한다.

479) 《經國大典註解》 前集 刑典에 비록 신고장 제출기한을 어겼거나 不法으로 贖身한 경우에도 有服親이 賞을 바라서 陳告하여 이미 良人이 된 자를 還賤시키는 것은 親愛之道를 크게 잃는 것이므로 陳告를 不許한다고 하였다.

480) 去官者는 어떤 職役(관직이나 신역)에 일정기간 복무한 후 그 관직 또는 신역을 떠나 (혹은 마치고) 벼슬(주로 差役이나 影職 또는 雜職)을 받아서 물러나는 자를 말한다(《大典會通研究》 兵典編 1995.12, p.19). 補充隊에 立役한 경우에도 기간이 차면 從9品の 雜職으로 去官할 있었다(《經國大典》 兵典 番次都目 補充隊).

481) 《經國大典註解》 前集 刑典에 他人의 노비는 그 主人에게 使役되므로 身役이 없는 자라 할 수 없다는 것과 비록 16세 이후에 官에 신고하여 贖身한 경우라도 補充隊에 이미 錄案(장부에 기록)되어 立役한 자 및 이미 去官한 자는 陳告할 수 없다고 하였다.

482) 代口贖身이란 몸값을 치러야 할 자와 비슷한 나이와 체격을 가진 다른 노비를 대신 바쳐 贖身(몸값 치르는 것)하는 것을 말한다.

孝宗 6년 (乙未) 이후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增] 선왕의 嫡孫은 代數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庶孫은 9대에 한하며 外孫은 7대에 한하여 公·私賤을 막론하고 代口贖身하도록 한다. ○ 功臣이 公賤을 娶하여 낳은 자식은 모두 良人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東·西班 3품(이상)의 正職⁴⁸³⁾인 자의 아들과 손자 및 軍職인 僉使의 部類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吏曹·兵曹·司諫院·司憲府·弘文館·都摠府·宣傳官 등 (官職)을 거친 자의 아들이 公賤을 娶하여 낳은 자식은 代口贖身을 허용한다. 士族 朝官인 자의 아들과 손자 및 嫡妻에게서 자식이 없어 公賤이 낳은 자식으로서 대를 잇게 할 자(承重者)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하여 진실(자기 핏줄)임이 확인되면 역시 代口贖身을 허용하나 西北(평안도와 함경도)의 公賤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⁴⁸⁴⁾. 비록 西·北의 公賤일지라도 先王의 男系後孫(姓孫)이면 贖身을 허용한다. ○ 宗親 및 大小人員이 娼妓流·女醫 등을 妾으로 삼아

483) 正職은 實職중에서도 雜職이나 土官職 등을 제외한 流品內의 正規官職 즉 文武兩班의 관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관료들(醫·譯·律·算 등)의 관직(正·主簿·教授·直長·奉事·參奉 등)도 正職이라 할 수 있으며 法制上으로는 양반관료의 관직과 구별되지 않는다. 비록 社會的인 差待는 있었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면 中人이라 호칭되는 이들 기술관료들은 양반의 관직인 守令 등 外官職으로 나가는 수가 적지 않아서 더욱 양반관료와 法制上 구별하기가 어렵게 된다. 正職은 또한 遞兒職과 구별되고 虛職·影職·散官職과도 구별된다(《大典會通研究》 吏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3.12, pp. 231~244에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484) 西北 즉 평안도와 함경도의 公賤중에서는 특히 內需司 소속 公奴婢가 많기 때문이라 하였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701).

한 집안에서 同居(家畜)한 경우의 所生子女를 良人으로 할 수 있도록한 법은 經國大典을 보라. 오직 (娼妓 또는 女醫의) 근무가 면제되어(除仕) 집박으로 출입함이 없는 경우에만 바야흐로 한 집에서 同居한 것(家畜)으로 인정(論)한다. ○ 妾의 婢를 娶해서 낳은 子女는 經國大典에 있어서의 妻의 婢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의 例에 따라 몸값을 치르지 않고(無贖身) 良人이 되게(從良)한다. 다른 사람의 婢를 妾으로 삼아 낳은 자식을 買入하여 자기의 奴로 삼았을 경우에는 自己婢妾의 소생 자식의 경우에 따라 補充隊에 소속됨을 허용한다.

【公賤⁴⁸⁵⁾】 〔原〕 公賤(公奴婢)에 관해서는 3년마다 續案⁴⁸⁶⁾을 작성한다. 중앙各司의 官員은 먼저 스스로 (公

485) 公賤은 公處奴婢·公奴婢라고 하는데 所有주가 內需司나 宮房이면 內奴婢, 中央各司이면 寺奴婢, 地方의 州府郡縣이면 邑奴婢, 監營이나 兵營이면 營奴婢라 하였다. 邑奴婢와 營奴婢를 官奴婢라 통칭하였고 또 소속관청이 驛이면 驛奴婢, 향교이면 校奴婢라고 하였다(全炯澤, 《朝鮮後期奴婢身分研究》 一潮閣, 1989, pp.1~2). 여하간 公賤은 私賤보다는 처지가 좀 나았다고 하는데 納貢奴婢가 대부분이었다. 노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해설편 25에 있으며, 주로 周藤吉之·全炯澤·平木實 등의 연구업적을 요약한 것이다. 특히 조선초기의 公賤에 관해서는 周藤吉之의 연구업적 이외 林英正〈朝鮮初期公賤에 대한 研究〉, 《史學研究》 23, 1973이 있다.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公賤의 經濟的 價値를 重要視하여 推刷에 온힘을 쏟는 한편 太宗 6·7년간에 寺社를 통폐합하면서 寺社의 奴婢를 各관청으로 謫게는 몇천명 혹은 몇백명, 적게는 몇십명 혹은 몇명씩 移屬시켜 公奴婢化하였다(《太宗實錄》 권11-14, 태종 6년 4월 신유 및 권13-1·2, 태종 7년 정월 정묘).

486) 續案은 흔히 계속하여 만든 文簿 즉 補充文簿라는 뜻으로 보나(윤국일 《앞의 책》 p.472) 여기서는 노비의 출생과 사망 등 변동사항을 3년마다 작성한 帳籍이다. 太宗 14年 2月, 의정부의 啓에 따라 중앙 各司奴婢를 상세히 推刷하여 成籍하도록 함에 있어 매계절의 끝달(3월·6월·9월·12월)에 그 출생·사망을 仰曹에 보고하여 3년에

賤을) 찾아내어(推刷) 사실을 조사하고 장예원의 관원과 함께 재심사(磨勘)하여 帳籍을 만든다. 지방에서는 각 고을의 守令이 推刷하여 觀察使에게 보고한다. ○ 公賤 중에서 流亡者⁴⁸⁷⁾가 있으면 소속관청(本官)이 즉시 상급관청(上司)에 보고하여 諸道에 공문을 보내서 그 근거지를 수색하도록 하여(도망자 및 그 소생 모두를) 소속 관청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며(根尋發還⁴⁸⁸⁾) 그 때 도망쳐 있는 곳에서 안정된 生業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계속 머물게 하고 續案에 기록한다. ○ 京奴婢(서울에 속해 있는 노비)가 지방에 도망가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論罪하고 붙잡아서 되돌려 보낸다. 檢舉하지 못한 官吏 및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所管人과 가까운 이웃은 모두 制書有違律(王旨 등 위반죄)로 論罪한다. 만약 身役을 피하여 중(僧尼)이 된 자가 있으면 杖 100을 쳐서 極邊의 작은 고을(殘邑)의 官奴婢로 영구히 소속시키며 그 事情을 알고 있는 스승중(師僧尼)은 制書有違律로 論罪하고 俗人으로 되

한 차례 改籍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것을 奉行하지 않은 관리는 教旨不從으로 論罪한다고 하였다(《太宗實錄》 권27-10·11, 태종 14년 2월 임자).

487) 流亡者란 流離乞食하거나 逃亡치는 者를 말한다. 조선왕조에서는 특히 전기에 公賤의 流亡을 막기 위하여 公奴婢 推刷을 위한 임시관청(辨正都監 刷卷色 등)을 거둬 설치하는 한편 노비 10명마다 頭目을 두고 공노비의 도망을 막도록 하되 도망노비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施賞하며 그러한 자를 숨겨두고 몰래 부려먹는 자 등을 엄벌하였다(해설편 25 노비 참조).

488) 根尋發還은 뒤쫓아 찾아 가서 原籍에 되돌린다는 뜻으로(《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도망노비를 추적하여 그 父母兄弟姊妹나 조카 또는 子女 등이 살고 있는 근거지를 수색하여 찾아 내어 續案에 기록하고 그 所生과 함께 소속관청으로 송환한다는 의미이다.

돌려 보내서 身役을 지운다(還俗 當差⁴⁸⁹). 私賤이면 論罪하고 주인에게 내준다. ○ 20년마다 正案⁴⁹⁰을 작성하여 刑曹·議政府·掌隸院·司贍寺·本司·本道·本邑에서 保存하도록 한다. 正案에 올라 있는 奴婢가 良人임을 呼訴하거나 혹은 서로 訴訟하는 경우(의 대상자) 또는 正案內에 부모나 조부모 혹은 노비 자신의 이름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외에는 投托⁴⁹¹ 事實을 끌어다 대는 경우에도 모두 들어서 審理하여 주지 아니한다. ○ 內需司의 奴婢는 監院에서 檢舉(조사보고)해서 正案과 續案을 작성하여 掌隸院·刑曹·本司·本道·本邑에서 각각 1건씩 보존하도록 한다. ○ 서울과 지방에서 立役하는 奴婢는 身貢⁴⁹²을 면제하고 奉

489) 還俗이란 出家하여 俗世를 버린 僧人이 죄를 지어 그를 다시 俗世로 돌려 보내어 보통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刑典). 그리고 當差는 良役을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자유롭게 승려가 될 수 없게 하고 일정한 布를 바쳐서 度牒(허가서)를 받아야만 出家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太祖 원년 9월 都評議使司의 上言에 따라 중이 되려는 자는 양반子弟이면 5升布 100필, 庶人은 150필, 賤口는 200필을 내어야만 給牒하여 出家할 수 있게 하였다(《太祖實錄》 권 2-6, 태조 원년 9월 임인). 또한 太宗 8年 4月에는 出家의 요건을 더욱 엄하게 하여 양반子弟의 경우에는 미리 임금에게 아뢰어 지시가 있어야만 丁錢 5升布 100필을 징수하여 度牒(帖)을 내줄 수 있게 하고 기타의 有役人丁(평민 이하) 및 獨子·處女는 아예 出家의 길을 막았다(《太宗實錄》 권15-24, 태종 8년 5월 무오).

490) 正案은 흔히 정식문부 즉 原文簿라는 뜻으로 보나(윤국일 《앞의 책》 p.472) 여기서 續案을 토대로 하여 20년마다 작성하는 公奴婢의 帳籍(案籍·元籍)이다. 태종 17년 윤 5월의 各司奴婢 刷卷色의 上疏에 따라 正案 및 逃亡 未推案 內에 이름이 나타나 있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陳告를 모두 禁斷한다고 하였는데 그해(丁酉年)에 새롭게 만든 奴婢案을 萬世之元籍이라고 하였다(《太宗實錄》 권33-46, 태종 17년 윤 5월 신유). 여하간 그때(태종 17년 윤5월)에 奴婢案을 2本씩 작성하여 1本을 本司에 두고 1本은 架閣庫에 두며 지방은 1本은 本邑(本官)에 두고 1本은 營庫에 두어 奸僞를 방지하고 後來의 續案도 이 例에 의하도록 하였다(同上).

491) 投托은 公私賤 또는 良民이 身貢·租稅·賦役 기타의 무거운 役務를 피하기 위하여 王室직속의 內需司 또는 大君·諸君 기타 權勢家에 스스로 들어가서 依託하는 것을 말한다(周藤吉之 <앞의 글>(二) 1939, pp.65~66 및 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 721).

492) 身貢은 公·私奴婢가 所有主에게 직접 나아가서 노동력으로 봉사(立役)하는 대신으

足⁴⁹³) 2명을 준다. 戶首⁴⁹⁴)는 奉足에게서 해(1년)마다 綿布와 正布 각 1필을 거둔다. ○ 서울에서는 2番으로 나누어 서로 교체하여 立役하고 지방에서는 7番으로 나누어 서로 교체하여 뽑아 올린다(選上⁴⁹⁵). 選上奴⁴⁹⁶)가 有故하여 代替하기를 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청(고을 守令)이 代價를 거두되 그것을 보증서(陳省⁴⁹⁷)에다 모두 기록하여서 1개월마다 綿布 2필을 보낸다. ○ 選上奴婢가 立役に 빠졌을 경우에는 杖 80에 처하고 그 기간 만큼 추후에 立役시키며 그러한 자를 즉시 붙잡아서 보내지 아니한 담당 아전은 杖 100 徒 3년에 처하고 守令은 制書有違律(王旨 등 위반죄)로 論罪한다. ○ 담당 아전이 뇌물을 받고 다른 奴로서 不正으로 代替한 경우에는 杖 100을 친 후에 아주

로 外居하면서 그 對價를 米 또는 錢이나 布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노비의 身貢에 관해서는 해설편 25 노비 參照).

493) 奉足은 身役을 직접적으로 지는(立役) 자 즉 正丁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助丁 또는 餘丁을 말하는데(《大典會通研究》 兵典編, 1995.12, pp.395~408 保人 參照), 여기서는 서울과 지방에서 立役하는 公奴婢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2명씩)를 말한다. 고려시대의 公奴婢는 모두 立役하였으나(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722), 조선시대에는 태조 7년 9월부터 2명중 1명만 立役시켰고 10명중 1명을 골라 頭目을 삼아서 도망자가 생기면 그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太祖實錄》 권15-4·5, 태조 7년 9월 정해). 그러나 太宗 6년에 寺社奴婢의 屬公조치를 단행한 이후, 同王 12년 11월에 各司奴婢중 正役 1명에게 奉足 1명과 월급(朔料)을 주되 월급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奉足を 주도록 하고 66세 이상과 15세 이하 자는 使役시키지 않도록 하였다(《太宗實錄》 권24-23, 태종 12년 11월 갑신).

494) 주 213 戶首 참조.

495) 選上이란 각 지방에서 外居하는 노비를 서울로 뽑아 올려서 京居奴婢와 더불어 궁중이나 중앙 각관청에서 기술업무·기예 기타 잡역을 맡도록 한 것이다. 공노비의 交代立役制(分番制)는 세종 때 확립되었고, 성종초의 經國大典(辛卯大典)에서는 5番으로 나누어 輪次立役시키도록 규정하였으나 經國大典(乙巳大典)에서 서울에서는 2番으로 나누어 교대로 立番시키고 지방에서는 7番으로 나누어 교대로 選上하도록 규정하였다(《大典會通研究》 禮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12, pp.98~99 및 《世宗實錄》 권30-15, 세종 7년 11월 임자와 《成宗實錄》 권16-11, 성종 3년 3월 기미).

496) 選上奴는 각 지방에 거주하는 公賤을 뽑아 올려서 서울의 각관청(各司)과 궁중(궐내)에서 일을 시키는 노비로서 各司의 差備奴와 根隨奴 闕內各差備 등으로서의 役務를 맡기도 하였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723)

497) 주 261 (陳省) 參照.

작은 驛의 驛吏로 영구히 소속시키고 그 것을 적발(檢舉)하지 못한 守令은 파직하여 내쫓는다. ○ 중앙各司의 奴로서 7품 이하의 官職을 받았다가 물러난(除仕) 경우⁴⁹⁸)에는 본래의 身役處로 되돌려 보낸다. ○ 여러 고을의 邑奴婢에게는 奉足이 없다. ○ 奴婢 중에서 나이 15세 이하 및 60세 이상 자·篤疾者와 廢疾者⁴⁹⁹)·所生 자식 3명 이상이 身貢이나 身役(貢役⁵⁰⁰)을 부담하고 있는 자 등은 貢役을 면제한다. 所生 자식 5명 이상이 貢役을 부담하거나 나이 70세 이상으로서 所生 자식 3명 이상이 貢役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모두 1명의 貢役을 면제하고 나이 80 이상이면 또 侍丁⁵⁰¹) 1명을 더

498) 奴婢의 受職문제에 관해서는 해설편 25 노비에서 별도로 설명하였지만 주로 工匠人인 노비신분자 중에서 司正(7品)·副司正(8品)·隊正(9品) 등으로 관직을 받은 자가 상당히 많았으며 그중에서 세종 때의 蔣英實은 護軍(4品)이 되었다. 또 세조 때의 佐翼功臣 趙得琳은 노예출신으로서 君號까지 받았다(周藤吉之 <앞의 글>(三) pp.60~61).

499) 篤疾者는 惡性질환·지랄병·두 눈이 먼 자와 팔다리(4肢)중 2개가 切斷된 자를 말하며 廢疾者란 바보·병어리·난장이·곱사등이·4肢 중 하나를 못쓰는 자 등이다(《大典會通研究》 兵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5.12, p.295).

500) 貢役이란 納貢 또는 立役하는 것을 말한다. 世宗 14年 11月 임금이 刑曹에 傳旨한 바에 의하면 公處奴婢 所生 3명 이상이 貢役하면 父母의 身貢을 면제해 주고, 5명 이상이 貢役하면 그중 1명(1子)의 身貢도 면제한다는 法이 이미 立法되었다고 하였다(《世宗實錄》 권58-18, 세종 14년 11월 정축).

501) 侍丁은 늙거나 병든 父母를 시중할 자식으로서 良民의 軍役 또는 賤民의 貢役을 면제받는 자이다. 世宗 14年 9月 임금이 詳定所에 傳旨하기를 軍民의 老病父母에 대한 侍丁復戶法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나 오직 公賤侍丁法과 私賤復戶法은 未備하니 軍民의 例에 따라 詳定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世宗實錄》 권57-35, 세종 14년 9월 계유). 그리하여 世宗 14年 11월에 임금이 刑曹에 傳旨하여 90세 이상자의 자식은 全員, 80세 이상자에게는 侍丁 1명을 주도록 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홀아비로서 10세 이하인 독자를 둔 경우의 독자와 70세 이상자의 독자, 그리고 70세 미만이라도 篤疾者의 독자 등은 모두 選上하지 않고 또 立役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또 80세 이상자의 人丁(아들)이 4명이 안되거나 田地가 4結이 안될 경우에는 公私賤을 막론하고 모두 復戶(戶役免除)해준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58-18, 세종 14년 11월 정축). 軍民의 侍丁에 관해서는 《大典會通研究》 兵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5.12, p.138 병전 주313에서 설명하였다.

주고 90 이상이면 모든 아들을 侍丁으로 해준다. 부모가 비록 公賤이 아니더라도 역시 준다. ○ 서울의 노(京奴)로서 나이가 50이 되면 樂籍⁵⁰²에서 삭제하여 貢役을 면제하여 준다. ○ 奉足이나 侍丁으로서 貢役을 면제 받은 奴婢는 3년마다 모두 찾아내어(推刷) 立案(立案)을 고쳐서 내준다. 奉足은 비록 有故(사망 등)하더라도 立案을 고칠 때라야 補充하여 준다. ○ 立役하는 婢子는 출산시기에 임박하여 한달, 출산후에 50일 동안 휴가를 주고 그 남편에게는 출산후 15일간의 휴가를 준다. ○ 노비를 뽑아 올릴 때나(選上時) 身貢을 거둘 때에 侍丁이 貢役을 면제 받으면 부모의 나이 및 소생자식의 立役處를, 奉足이면 戶首의 이름 및 立役處를 都目狀⁵⁰³에 기재하고, 확인을 받은 연월도 모두 기록하여 조사시(檢舉)의 증빙으로 한다. ○ 功臣의 丘史⁵⁰⁴ 및 丘史의 奉足으로는 外居奴婢⁵⁰⁵를 주되 (공신이) 죽은지 3년 후에는 본래의 身役處로 돌려 보낸다. 공신의 妻가 살아 있으면 그대로 주되 그 노비가 有故하여도 보충하여 주지 아니한다. ○ 逃亡이나 隱漏한 奴婢를 申告(陳告)한 자에게는 그 노비 每 4명당 1명을 賞으로 준

502) 樂籍은 樂工의 帳籍으로서 樂工을 都廳이라고도 하였다(《文宗實錄》 권10-6, 문종 원년 10월 갑술).

503) 都目狀은 公奴婢의 戶首·侍丁·奉足 등을 모두 기록해 둔 총괄적인 帳籍을 말한다. 도목이란 전체를 망라한다는 뜻이고 狀은 문서나 장적을 의미한다(이태진외 4인, 《앞의 책》 p.724 및 윤국일 《앞의 책》 p.473). 그런데 侍丁의 경우 父母가 죽은 후에도 신고하지 않고 계속 避役하고 있었으므로 刑曹의 啓에 따라 侍丁 및 免貢奴婢의 立案은各司奴婢의 奉足の 立案例에 따라 3년마다 1차례씩 사실을 조사하여 고쳐주도록 하였다(《成宗實錄》 권11-21, 성종 2년 9월 임오).

504) 해설편 27 丘史 참조.

505) 外居奴婢는 노비주와 同居하지 않고 독립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노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公賤으로서 官廳 소재지 밖인 각지방에 거주하는 자로서 京居奴婢에 대칭되는 노비이다. 그들은 서울로 뽑혀 올라와서(選上) 立役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身貢을 바치는 納貢奴婢가 되는 것이다.

다. 3명 이하이면 各年の 貢布⁵⁰⁶ 및 楮貨를 追徵하여 賞으로 준다. ○ 숨겨서 使役시킨 자에 대해서는 論罪 후에 身役의 값(役價)으로서 매 1명에 하루마다 楮貨 6장을 징수하되 本役의 값(本價)의 倍에서 그친다. 도망하거나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役價를 징수한 후에 그의 노비로서 補償시키되 〈私賤도 같다〉 이름이 正案이나 續案에 있는 자는 5년이 지나면 陳告를 허용하며 나이 4세 이하 60세 이상인 사람은 인명수를 계산하여 賞을 주는 事例에 해당시키지 아니한다. ○ 良人은 비록 良籍⁵⁰⁷이나 良族이 없더라도 良役⁵⁰⁸을 진지 오래되었으면 陳告하여 賤人으로 되게(屬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무릇 賤人의 身役소속(所係)은 母役に 따른다⁵⁰⁹. 오직 賤人이 良女를 娶하여 낳은 자식은 父役に 따르게 하고 僧人이 낳은 자식은 비록 良人일지라도 賤役을 지운다. 신고자는 逃亡·隱漏奴婢의 경우와 같은 賞

506) 貢布는 노비가 身貢으로서 납부하는 綿布를 말하는데, 貢布에 관한 것 및 逃亡이나 隱漏한 노비를 陳告함에 따른 賞給에 관한 것은 해설편 25 노비 참조.

507) 良籍은 良人으로서 戶籍(帳籍)에 나타나 있는 것을 말하는데, 戶籍이의 軍籍이 별도로 작성되었으므로 軍役대상자(正兵과 保人)의 명부인 軍籍도 良籍이라 할 수 있다(《大典會通研究》 兵典編 1995.12, pp.286~290).

508) 良役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良人이 지는 身役으로서 주로 軍役(兵役)을 의미하는데 조선중엽 이후에는 軍布납부의무를 뜻하게 되었다(《위의 책》p.199 및 pp.295~298).

509) 賤者隨母法은 高麗靖宗 5년에 처음 만들었으며, 忠烈王 26년에는 元나라에 대해서 一賤則賤의 원칙을 천명하고 八世戶籍上에 賤類가 섞이지 않아야 벼슬할 수 있음을 밝혔다(《高麗史》 권85-44, 志39, 刑法2, 奴婢). 조선시대에도 世宗 13年 正月 刑曹의 啓에 따라 甲午(太宗 14年) 6월이후 公私奴子와 公私婢子간의 所生子女는 그 父가 비록 뒤에 良人이 되었더라도 그 賤時에 낳은 경우에는 從母法에 의하도록 하였다(《世宗實錄》 권51-3, 세종 13年 正月 乙亥). 그러나 그후에는 그 父가 당초부터 良人이었던 경우에도 그 母가 賤人이면 원칙적으로 賤人이 되었으며 一賤則賤의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해설편 25 노비 참조 및 《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公私賤人이 良女를 娶하는 것은 일찌기 太宗 5年 9月, 의정부의 受判으로 同王 6年 1月 1일부터 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에 위반하면 처벌하고 강제이혼시켰으며 그 所生子女는 公奴婢로 삼았다(《太宗實錄》 권10-17, 태종 5年 9월 갑인). 그러나 그후 奴娶良妻경우가 많았으며 그 所生子女의 良賤問題로 논란이 많았다(해설편 25 노비 참조).

을 준다.

○ 公賤이 子女없이 죽은 경우에는 그의 奴婢와 田地 및 住宅이 (중앙의) 本司나 (지방의) 本邑에 속하게 된다.⁵¹⁰⁾ 私賤이면 모두 그 財産을 노비의 원주인(本主)이 처분하도록 한다. ○ 公賤이 죽으면 서울안에서는 本司 및 거주지인 部の 官員이, 지방에서는 守令이 직접 가서 檢屍(監視)하고 所管人과 一族 및 가까운 이웃 등의 供招⁵¹¹⁾를 받아서 확인서(立案)를 작성하여 刑曹·本司·本道·本邑에 각각 1건씩 保存하도록 하며 사망자의 親族(屍親⁵¹²⁾)에게도 1건을 주어서 證憑으로서 뒷날 참고하도록 한다. 해당 吏胥나 일가 親族 등이 事情을 알면서 生을 死라 한 경우에는 赦免措置가 있더라도 용서하지

510) 子女없이 죽은 노비의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私奴婢의 경우, 子孫없이(無後) 죽었을 때 태종 14년 7월 12일의 刑曹受教(노비)와 세종 10년 11월의 漢城府의 啓(家舍와 資産)에 따라 奴婢主(本主)에게 귀속되었으며(《世宗實錄》권 42-15, 세종 10년 11월 임술), 公賤의 경우에는 《經國大典》 刑典, 公賤條에 「公賤無子女 身死者 奴婢田宅 屬於本司本邑」이라 하였고, 또 《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에 의하면 公私賤이 子女없이 죽었을 경우에 使孫之法을 적용하지 않고 本官이나 本主에게 그 재산이 귀속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선국초에는 비록 노비가 자녀없이 죽더라도 4寸 이내의 친족(使孫)이 있으면 재산(노비와 田舍)을 상속시킬 수가 있었지만 太宗 14년 및 世宗 10년 이후, 특히 경국대전 이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된다. 조선시대에는 노비가 노비를 소유하는 수가 많았으므로 노비의 재산 중 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511) 供招는 官의 訊問에 대하여 被訊問者의 供述(陳述)을 받아 쓰는 것을 말한다. 供招는 지금의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에 해당되는데 이를 國招라고도 한다.

512) 屍親은 죽은 자의 親族 즉 부모·형제·자매·처자식 등을 말한다.

않고 全家族을 邊方으로 強制移住(全家徙邊) 시키며 官吏는 制書有違律(王旨 등 위반죄)로 論罪한다.

[續]各司의 奴婢는 式年(3년)마다 推刷(索出)하고 內奴婢(內需司의 奴婢)는 10년 기한으로 推刷한다. 內需司에서 推刷할 때에는 觀察使가 특별히 廉察하여 奴婢를 침해하는 자를 임금에게 아뢰어 定配하고 중앙各司의 파견인(差人)의 收奪(徵斂)이 특히 심한 경우에는 本道에서 刑杖을 친 후 定配한다. ○ 각 관청의 京奴婢가 출생하거나 사망하면 그 관청이 漢城府에 곧바로 통보하여 歲抄 때에 임금에게 아뢰도록 한다. [增] 寺奴婢의 출생이나 사망에 관해서는 지금은 매년 각 해당 고을에서 조사하여 戶曹에 보고한다. ○ 각 고을에서는 公賤이 늙어서 役을 지지 않게(除役) 되거나 죽으면 掌隸院을 經由(關由)하여 확인서(立案)를 작성 송부하여 시행(削除)한다. 죽거나 늙어 除役하면 綿布를 내도록(作木)할 수가 없고 補充隊로 내는 錢文은 2兩이며 증명서(立案)를 만들어 주는데(斜出⁵¹³)는 때 1명 당 錢文 1兩으로 한다. ○ 立案을 3개월이 지나도록 작성하여 주지 아니한 守令은 罷職한다. ○ 生을 死라고 한 자는 杖 100 流 3000리에 처한다. [增] 公賤이 죽어도 당해 邑의 檢屍狀이 없으면 시행하지 못한다. ○ 掌隸院이 혁파되어 刑曹에 소속된 이후에는 寺奴婢에 관계되는 것은 戶曹에서 맡아 관리하고(旬管) 免賤과 相訟 등에 관한 일은 刑曹에서 맡아 관리한다. (公賤이) 逃亡하여 이미 30년이 지난 경우

513) 斜出은 官廳에서 증명서(立案)를 작성·교부(成給)하는 것(下付)을 말한다.

에는 續案⁵¹⁴⁾을 磨勘(재심사 또는 재작성)할 때에 근거문서를 해당 曹에 올려 보내어 證憑을 살펴서 削除(頃下)하도록 하고 逃亡者에게 부모가 있으면 도망이라고 기록하지 못한다. ○ 도망자가 나이 70 이상이면 늙은이로서 除役은 시키지 못한다. 奴婢의 帳籍(正案 및 續案)에는 계속 남긴다. 外案(지방관청에서 保存하는 正案 또는 續案)에 付錄된 奴婢가 서울로 도망가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머물게 하여 노비의 帳籍에 기록(錄案)해서 使役시킨다. 서북 兩界의 人物은 일일이 찾아내어 돌려 보내고(刷還) 京役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針線婢와 醫女 등속이 上京 후에 낳은 자녀는 京案(중앙관청에서 保存하는 正案 또는 續案)에 付錄하지 아니하고 조사하여 本邑으로 돌려 보낸다. 奴婢의 소생 자식 6명이 實役者인 경우에는 立役이나 實貢이 같다. 그 父母가 모두 公賤이면 1명을 免貢시키고 3명이 實役者인 경우에는 부모를 免貢시킨다. 비록 父母가 모두 죽은 후에도 兄弟姉妹(同生) 5명이 實役者인 경우에는 1인이 免貢되고 10인이 實役者인 경우에는 2인이 免貢된다. 軍功과 納粟으로 免賤·免役·免貢⁵¹⁵⁾될 자는 임금이 裁

514) 주 486 (續案) 참조.

515) 軍功과 納粟으로 인한 免賤免役免貢은 임진왜란을 계기로 본격화 되었는데(《宣祖實錄》권33-8, 선조 25년 12월 을미) 宣祖 27년 5월 軍功廳의 啓에 의하면 公私賤이 敵의 목을 하나 베면 免賤하고 둘이면 羽林衛, 셋이면 許通 넷이면 守門將으로 任用한다고 하였다(《宣祖實錄》권51-8, 선조 27년 5월 을유). 노비들의 納粟免賤은 이미 成宗때에도 나타나 있고 明宗代에 정책에 반영되었으나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임진왜란을 계기로 빈번하게 실시되었던 것이다(李章熙, 〈奴婢制의 崩壞〉, 《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1984, pp.515~517 및 pp.475~486). 宣祖 26년 2월 당시의 納粟事目에 의하면 鄉吏도 일정량의 벼를 바치면 限時 또는 終身 免役하고 또 庶孽도 소정

可한 公文이 아니면 시행하지 못한다. 功勞로서 王命을 받들어 免賤되기를 스스로 願하는 경우에는 부모·자기·처·형제·자녀·며느리·사위 이외는 免賤 대상자(望)로 選定될 수가 없고 만약 不正과 거짓이 있다는 것이 탄로되면 문서를 작성하여 准 堂上官과 郎官을 엄중히 推考(조사)하고 해당 吏胥를 멀리 귀양보내며 告狀(願書)을 낸 사람은 欺罔律⁵¹⁶에 의거 論罪하고 免賤人은 還賤한다. [增] 무릇 免賤帖에 관하여 입궐하여 임금에게 보고할 때에 먼저 서울과 지방의 帳籍을 살펴보고 免賤을 허용해야할 경우 이외에 속임수와 거짓으로 濫雜하게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고 私情에 따라서 免役 免貢을 허용한 경우에는 해당 堂上官과 해당 道の 觀察使는 (죄상이) 나타나는 대로 조사 처벌(勘律)한다. 實貢奴婢의 漏落이 3명 이상이면 私情을 쓴 色吏는 杖 100 徒 3년에 처하고 守令은 推考(推問)하며 5명 이상이면 色吏는 杖 100을 쳐서 먼 곳으로 定配하고 守令은 罷職하며 10명 이상이면 色吏와 守令에게 刑의 등급을 더하여 論罪한다. 나이를 줄이는 등으로 挾雜한 자가 5명 이상이면 守令과 色吏는 奴婢를 3명 이상 누락시킨 律에 의거 論罪하고 7명 이상이면 5명 이상을 누락한 것과 刑律이 같다. ○ 防軍의 寺奴를 거짓으로 탈이 있다고 하거나 帳籍(案)에 누락시킨 자가 3명 이상이면 守令을 監營(營門)에서 決杖한다. [增] 잡아다가 訊問한다. 만약 숨겨서 使役시킨 자가 있다면

량의 버를 바치면 羽林衛나 兼司僕·西班牙軍職·許通影職은 물론 東班職까지 준다고 하였다 (《宣祖實錄》권35-25·26, 선조 26년 2월 신축).

516) 欺罔律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大明律直解》권24, 刑律 詐僞, 對制上書詐不以實條를 준용하여 徒刑 및 杖刑에 처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인명수의 多少와 使役이 오래 된 여부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杖 100 徒 3년에 처하고 役價를 追徵하며 私賤도 같다. ○ 도망자를 받아 들인 것이 만 1년이 되면 죄가 같다. ○ 도망친 驛吏를 받아 들인 자에게도 죄가 같으며 그 役價는 追徵하여 本驛에 준다. 公私賤이 公私賤을 숨겨 두고 使役시킨 경우에는 杖 100 流 3000리에 처하며 역시 役價를 追徵한다. 面任과 里任 및 가까운 이웃이 알면서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와 守令이 檢舉(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두 制書有違律(王旨등 위반죄)로 論罪하고 赦免對象이 될 수 없으나 만약 그 숨긴 자가 自首하면 罪를 면제하고 役價의 追徵도 면제한다. 도망치거나 隱漏한 본인이 自首하면 罪를 면제하고 前의 身貢(의 追徵)도 면제한다. 도망쳤거나 帳籍에서 누락된 奴婢를 申告(陳告)한 자에게는 每 6명당 1명을 賞으로 주되 5명을 초과하여 줄 수가 없고 北道(함경도)의 奴婢를 申告한 者에게는 다른 道의 노비를 賞으로 준다. ○ 申告한 奴婢數가 5명 이하이면 신고된 노비의 3년간의 身貢을 (신고 자에게) 준다. ○ 신고된 노비 모두가 도망친 경우에는 賞으로 준 노비를 都魯屬公(公處로 소속)시킨다. [增] 田土와 奴婢를 宮房에 몰래 申告하여 그 訴訟을 대신 맡게한 경우에는 엄중히 刑杖을 친 후 變방으로 귀양보낸다. 30명 이상 (陳告)하면 公賤은 免賤하고 私賤은 公賤을 대신 주어 免賤시키며 (지방의) 官奴婢이면 반드시 官노비를 신고하게 하고 (중앙의) 各司奴婢이면 반드시 각사노비를 신고하도록 한 후 免賤시

킨다. ○ 推刷官이 蓄妾한 官婢를 申告(陳告)라 칭탁하여 免賤시키고 掌隸院에
 는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削職하고 免賤人은 도루 賤人으로 한다. 時도
 때도 없이 申告(陳告)하는 것은 일체 금지하고
 式年의 推刷 때에 비로소 申告를 허용하며 거짓
 됨과 참됨(虛實)을 守令이 직접 조사하여 賞罰을
 시행한다. 10세 이하인 자는 申告할 수 없다. ○ 公賤의 누락이나 중
 (僧)이 간음하여 낳은 자녀를 申告하고 提訴(立訟)한 사람에게는 賞을 준다.
 ○ 申告된 公賤으로서, 續案 중에 그 祖父母의 이름자가 있어 그 戶籍 및 官文
 書의 이름과 부합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들어서 심리(聽理)하되 續
 案에 연속된 실마리(階梯)가 없고 혹은 오래된 노비의 자손이라 하여도 그 호
 적과 한 字의 착오라도 있으면 聽理하지 아니하며 誣告律로 論罪한다. ○ 각
 지방의 官奴婢가 현재 使役되고 있으나 단지 官案(지방관청의 文書)에만 등재
 되어 있고 續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漏落이라고 하면서 申告하여 賞
 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守令과 推刷 差使員(과견관)은 모두 欺罔律로 論罪한
 다. 무릇 逃亡쳤거나 漏落되었던 숫자와 나타난(現
 出한) 숫자는 歲抄 때마다 임금에게 아뢴다. 그 祖
 와 父가 文武科의 及第出身者이거나 生員 進士이고 그 子와 孫이 계속 거짓으
 로 良人 행세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대로 良人됨을 허용하며 그 父가 문무
 과 급제출신자이거나 생원 진사이고 그 子들이 거짓으로 良人 행세를 하고 있
 거나 그 父祖가 노비 帳籍에서 몰래 빠져나가 거짓으로 良人 행세를 하며 비록
 登科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孫子가 문무과 급제출신자이거나 생원 진사인 경우
 에는 모두 몸값을 대신 치를 수 있도록(代贖) 한다. <女子도 같다.> 비록 3代 이

상 등과자라도 반드시 自首한 후라야 위와 같이 하며 陳告하여 現出한 者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 宮女로는 단지 중앙各司의 下人(下典⁵¹⁷)을 뽑아서 入宮시킨다. 內婢(內需司의 婢子)는 즉시 선발하여 충원 시킬 수 있으나 寺婢⁵¹⁸(중앙 각 관청 소속의 婢子)는 임금의 特命(特敎)이 없으면 선발할 수 없다. 良家집 딸은 일체 거론할 수가 없고 良人을 寺婢로 추천하여 올리거나 投入시킨 자에 대해서는 杖 60 徒 1년에 처한다. ○ 종친부와 의정부의 노비는 侍女와 別監으로는 抄定(뽑아서 定屬)하지 못한다. ○ 私賤이 工匠案⁵¹⁹에 入屬되거나 奉常寺의 料理人(熟手)으로 입속된 경우에는 (奴婢主에게) 公賤을 대신 준다. 5년이 지난 후에 대신 준다. ○ 工曹의 工匠은 經國大典의 定數(額數)를 한결같이 遵守하며 定數外로는 대신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른 관청에서도 같다. ○ 奉常寺의 熟手는 良賤人을 막론하고 60명 <〔增〕 지금은 70명으로 한다>을 選定하여 영구히 소속시키며 늙어서 除役시키거나 죄를 지어서 내보내는 경우에는 推刷할 때에 점호를 받도록 한다. 〔增〕 奉常寺와 掌樂院의 役員(아전)으로는 本寺의 典僕(吏隸)이나 該院의 樂工과 樂生을 差出하여 定屬시킨다. ○ 功臣에게 賜牌하는 노비는 寺奴婢로서 하고 丘史는 官奴婢(지방관청의 노비)로서 하며 功臣의 本家에서 指名한 후보자 중에서

517) 下典은 上典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下人을 의미하는데 지방관청의 아전을 말하기도 하나 노비를 지칭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중앙 각 관청(各司)에 딸린 婢子를 말한다.

518) 일부 견해는 寺婢를 國家에서 寺刹에 賜與한 婢라고 하나(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709 및 金春東外3인, 역주《大典會通》, 고려대출판부, 1960, p.580), 內婢(내수사의 婢子)의 대칭되는 중앙관청(各寺)소속의 婢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견해는 寺社奴婢와 寺奴婢를 혼동한 所致일 것이다.

519) 工匠案은 官에 속한 각종 工匠을 등록한 名簿를 말한다.

정하되 掌隸院에서 입궐하여 임금에게 보고해서 정하여 주며 1등 功臣에게는 奴婢 13명과 丘史 7명, 2등 공신에게는 노비 9명과 구사 4명, 3등공신에게는 노비 7명과 구사 2명을 준다. ○ 오래된(久遠) 功臣에게 賜牌하였으나 무슨 일로 인하여 賞賜를 못한 경우에는 각각 그 門長과 顯官이 보증인이 되어 글로 써 올려서 간사함과 거짓을 막는다. [增] 여러 宮房과 각 官廳의 賜牌 경우는 新舊를 막론하고 일시에 받아 내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거듭 받을 수는 없다. 宮家에 賜牌하는 奴婢는⁵²⁰⁾ 寺奴婢로서 정하여 주고 官奴婢는 일체 허용되지 아니하며 받아내기를 도모한 자는 해당 관원과 함께 무거운 형률로 다스린다. 賜牌奴婢 및 丘史⁵²¹⁾는 사망 이외로는 각종 사유로서 대신 받을 수가 없다. ○ 아주 작은 고을 및 大路(直路⁵²²⁾)가 있는 고을의 노비와 禮賓寺의 노비·江都(강화도)와 松都(개성)에 있는 노비는 모두 허용하지 아니한다. ○ 功臣에게 賜牌하는 丘史는 서북 兩界·海西(황해도)·경기·강원도를 제외한 三南의 直路가 아닌(곳에 위치한) 큰 고을(完邑⁵²³⁾)에 있는 노비 중에서 정하여 준다. ○ 公私賤 및 官屬⁵²⁴⁾으로서 本主와 本官을 배반하고 內需司에 投托한 자는 그 자신에 한하여 변방 고을의 官奴로 삼는다. 내수사 노비를 불법점유하는 자는 良民을 불법점

520) 賜牌하는 奴婢는 임금이 노비를 준다는 증서(賜牌)와 함께 내려 주는 노비를 말한다.

521) 해설편 27 (丘史) 참조.

522) 直路는 서울에서 의주 또는 부산에 이르는 大路를 말한다.

523) 完邑은 殘邑(아주 작고 피폐한 고을)에 대칭되는 것으로서 비교적 크고 넉넉한 고을을 말한다(이상 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p.709~710).

524) 주 242 (官屬) 참조.

유한 律⁵²⁵)로 論罪한다. ○ 成均館의 노비는 免賤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4學과 鄉校 및 奉常寺의 노비도 같으며 비록 免賤할 만한 공로가 있더라도 다른 賞을 주도록 한다. 本司(성균관)外에로 다른 役을 지우지 아니하고 4學·濟用監·通禮院도 같다. 舟師나 格軍⁵²⁶)으로도 差定하지 아니한다. 社稷署도 같다. ○ 刑曹의 京奴婢는 여러 관청(各司)에서 부릴 예정자로 定(望定)할 수가 없다. ○ 중앙의 여러 관청(諸司)의 奴婢로서 쫓겨난 곳을 피하여 수월(편)한 곳에 가는 자 및 官吏로서 사사로운 부탁에 따라 제멋대로 옮겨준 자는 모두 軍籍을 제멋대로 옮겨주는 律⁵²⁷)에 의거 杖 100 徒 3년에 처한다. 쌀과 밀가루를 맡고 있는 여러 관청(諸司)의 노비는 依付(斜付)나 投托(投屬⁵²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官奴婢(지방관청의 노비)를 중앙 諸司로 移屬시키는 것을 禁斷하고 罷하여 돌려 보낸다. 濟州의 세 고을의 노비를 樂工이나 奉足으로 差定하지 못한다. ○ 官奴가 寺婢를 娶하여 낳은 자식을 각 고을에서 假官屬⁵²⁹)

525) 良民을 不法占有하는 律(冒占良民律)은 《經國大典》刑典 元惡鄉吏條 註에 있다.

526) 舟師는 水軍을 범칭하기도 하나 沙工 또는 船頭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格軍은 水夫의 하나로서 沙工의 일을 돕던 사람인데 船格 또는 格人·결꾼이라고도 하였다.

527) 軍籍을 제멋대로 옮겨주는 律은 《大明律直解》 권14, 兵律 軍政에는 보이지 않으나 本文(《續大典》刑典 公賤)과 비슷한 律文으로서 위 兵律 軍政편에 縱放軍人歇役條가 있는데 刑量은 杖 100度 이하이다.

528) 斜付는 상당한 세력 있는 자에게 依付(기대는 것) 또는 投托(投託)하는 것을 말하고 投屬도 投託과 같은 뜻이다. 흔히 投託이라 함은 관리나 양반의 착취에 의거 破産된 良民이 土豪에게 의탁하여 그 노비가 되던 일 또는 조상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유명한 남의 조상을 자기 조상으로 삼아 섬기던 일을 말한다(주491).

529) 假官屬은 假吏 또는 假官奴婢를 의미하며 일반 鄉吏가 그 지방의 토착인으로서 세습

이라 稱하면서 立役시키는 경우에는 적발하여 조사해서 論罪한다. ○ 營奴婢를 觀察使가 朝廷에 품의하지 아니하고 書院에 할애하여 주는 것을 엄중히 防止한다. ○ 官婢를 법에 따라 贖身하여(몸값을 치르고) 免役시키는 以外로 妾을 삼아서 데리고 사는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하도록(嚴立科條) 하고 모두 찾아내어(刷還) 도루 賤人이 되도록 한다. 守令으로서 私私로이 내준자와 찾아내어 돌려 받지(推還) 아니한 자는 모두 制書有違律(王旨등 위반죄)로 論罪하고 그 것을 발각하지 못한 觀察使도 마찬가지로 論罪한다. ○ 品官으로서 (관비의)身役을 면제시켜서 妾으로 데리고 사는 자는 土豪律⁵³⁰로 論罪한다. ○ 官奴婢로서 대신 몸값을 바친(代口納贖) 자는 모두 還賤시키며 그 家長은 杖 100에 처하고 觀察使는 推考하며 守令은 罷職한다. ○ 무릇 公賤에 대하여 守令이 私私로이 몸값을 치르고 良人이 되도록한(贖良시킨) 경우와 救恤할 때(設賑時)에 官奴婢에게 贖良을 함부로 許容한 경우에는 모두 무거운 형률로 다스린다. ○ 公私賤으로서 良妻를 娶하여 낳은 자녀는 모두 母役에 따르게 한다. 顯宗 己酉(10년)에 처음으로 良人이 되도록(從良) 명령하였고 肅宗 乙卯(원년)에 다시 賤人이 되게(還賤)하였다가 辛酉(7년)에 또 從良하였으나 己巳(15년)에 還賤하였는데 이미 良役에 속한자는 거론하지 아니하였다. 英宗 庚戌(英祖 6년)에 또 명령하기를 辛亥(7년) 정월 초1일 子時를 시작으로 하여 그때부터 태어난 자들은 모

하는 직역인데 反하여, 假吏는 다른 고을에서 온 아전으로서 거의 官奴婢와 같은 처우를 받았다. 假官奴婢는 임시적인 관노비라는 뜻이다.
530) 土豪律은 《經國大典》刑典, 元惡鄉吏條 및 (해설편 21 참조) 그 註에 규정되어 있다.

두 母役に 따르도록 하였다.

○ 驛吏가 良女를 娶하여 낳은 아들은 驛吏가 되고 딸은 驛女가 되며, 公私賤을 娶하여 낳은 아들과 딸은 모두 母役に 따르게 한다. 스스로 그 몸값을 치른 자는 그대로 父役으로 올려 준다. 驛女가 良夫에게 시집가서 낳은 아들은 驛吏가 되고 딸은 驛에 소속시키지 아니한다. (驛女가) 公私賤에게 시집가서 낳은 아들은 母役に 따라 良人이 됨을 허용하여 驛吏가 되도록 하고 딸은 驛에 소속시키지 아니한다.

驛奴가 公私賤을 娶하여 낳은 아들은 父役に 따르게 하고 딸은 母役に 따르게 한다. 良女를 娶하여 낳은 자녀가 驛役을 自願할 경우에는 從良例에 의하여 驛吏로 올려 주고 그 子女를 모두 驛에 소속시킨다. ○ 內需司의 婢가 驛奴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는 驛에 소속시키지 아니한다. 驛婢가 良夫나 賤夫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는 모두 驛奴婢로 所屬시킨다. 三水·甲山·6 鎭의 官婢가 驛吏나 驛奴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는 모두 母役に 따르게 하고

그 나머지 端川 이북에서는 딸만 母役に 따르게 한다. 驛에는 驛吏·驛女·驛奴·驛婢의 4名目⁵³¹이 있는데 郵官(察訪)이 값을 받고 (納價) 부탁에 따라서 驛奴를 驛吏로 올려 주고 驛婢를 驛女로 올려 준 경우에는 그 數의 多少를 막론하고 觀察使가 적발하여

531) 名目은 事物을 지목하여 부르는 이름(명칭)을 말한다. 또 名目은 구실이나 理由를 뜻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前者의 의미이다(驛吏·驛女·驛奴·驛婢 등 4名目の 身分歸屬에 관해서는 解說篇 20 鄉吏와 驛吏 및 25 奴婢 參照).

임금에게 보고해서 죄를 준다. ○ 一應 屬公(官所有化)할 奴婢 및 強盜의 妻·子·女에 관해서는 각 道의 觀察使가 歲抄 때에 兒名(小名)을 임금에게 보고한다. 서울의各司에 속한 奴婢의 兒名에 관해서도 刑曹에 공문을 보내어 모두 장부에 기록해 두고 檢學(재조사)한다. ○ 屬公할 기한이 當到한 노비의 자손은 빠짐없이 推刷(색출)하여 訟案에 모두 기록하여 屬公한 후에 곧 續案에 따라서 시행한다. ○ 強盜의 妻나 子女로서 각 고을에 영구히(노비로) 소속된 자는 소재지 고을에서 產業을 갖고 있는 鄉戶에게 保授하여 存恤에 힘쓰게 하고 觀察使가 순행하여 엄중히 살피도록 하되 만약 도망자가 있으면 守令 및 保授人을 治罪한다. ○ 범죄로 屬公된(公賤이 된) 사람이 만약 본래 公賤이었으면 각각 그의 소속 관청(其司)으로 돌려 보낸다. ○ 公賤이 도적질(犯盜)을 하여 奴가 되어 변방의 堡로 定配되었을 경우에 이미 配所에서 使役(仰役)하였으면 본래(公賤으로서)의 身役은 減할 수 있다.

[補] 官婢로 定屬된 자는 단지 身役이 그 몸에 그칠 뿐이고 소생 子女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勿侵). ○ 內奴婢와 寺奴婢를 모두 혁파한다. 純祖 辛酉(원년). ○ 籍沒된 奴婢(籍産奴婢)가 서울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刑曹에 나누어 주고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대로 해당 고을에 소속시켜서 使役시킨다

【私賤⁵³²⁾】〔原〕 分配하지 못한 노비⁵³³⁾는 아들과

532) 私賤은 私人의 所有物인 노비로서 私奴婢라고도 한다. 노비가 노비를 소유하기도 하

딸의 生死를 막론하고 나누어 준다. 죽은 자에게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分財規定이) 定한 數에 미달될 경우에는 嫡子女에게 고루 나누어 주고(均給) 만약 우수리로 남는 數가 있으면 承重子⁵³⁴에게 먼저 주며 그래도 또 남는 수가 있으면 長幼의 차례대로 준다⁵³⁵. 嫡妻에게 子女가 없

였으나 주로 노비 소유주는 양반이었다. 私奴婢 중에는 率居奴婢와 外居奴婢가 있었으며 率居奴婢는 主人과 同居하면서 家內勞動을 하였고 外居奴婢는 독립된 家庭을 이루고 살면서 主人의 田地를 耕作하는 등 농업노동력을 제공하였다. 外居奴婢는 地代(小作料) 이외에 身貢도 매년 바쳤다. 私賤(私奴婢)은 원칙적으로 國役(兵役等)은 지지 아니 하였으나 徭役은 부담하였다. 조선중엽의 私賤의 수는 良人수의 근 3배라 하였다(《增補文獻備考》 권162-15, 戶口考二). 私奴婢에 관한 최근의 연구성과로서는 池承鍾〈朝鮮前期 奴婢身分에 관한 社會學的研究〉1993,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과 김용만〈朝鮮中期 私奴婢研究〉영남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김경숙〈18세기후반 노비쟁송의 사례분석〉《古文書研究》8, 1996.3·安承俊〈조선시대 私奴婢推刷와 그 실제〉《위의 책》 등이 있다.

533) 分配하지 못한 奴婢(未分奴婢)는 財主인 父母가 死前 또는 死後의 遺書를 통해서 子女에게 分配할 몫을 밝히지 못한 노비를 뜻한다(이태진외 4인 《앞의 책》 p.727). 未分奴婢의 子女均等分配는 고려 때의 奴婢均分 相續制의 慣習에 따라 일찍부터 확립된 法制였다(旗田巍, 〈高麗時代における 土地の 嫡長子相續と 奴婢の 子女均分相續〉《朝鮮中世社會史의 研究》, 日本 法政大 出版局, 1776, pp.346~359). 조선전후기에 걸친 分財記를 살펴보면 奴婢는 물론 田地까지도 17세기 후기까지는 아들·딸 구별없이 대체로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음이 확인된다(李鍾日, 〈朝鮮前期의 戶口·家族·財産 相續制研究〉, 《國史館論叢》 14집, 국사편찬위원회, 1990, pp.63~75).

534) 承重子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祖父의 상속자가 된 자를 의미하나 여기서는 넓게 보아 제사를 받드는 책임을 이은 사람 즉 奉祀者를 말한다. 承重子는 원칙적으로 嫡子孫이나 庶子도 承嫡을 하면 奉祀子 즉 承重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承嫡子가 바로 嫡子가 되는 것은 아니다(이종일, 〈18·19세기의 서얼소통운동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58, 한국사연구회, 1987.10, pp.70~79). 또한 奉祀者중에서도 同宗姪行에서 立後한 繼後子가 있다. 繼後子는 傍系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承重子와는 구별된다. 俗言에 繼後子는 붓으로 만든 자식, 承重子는 몸으로 만든 자손이라 하였다.

535) 長幼의 차례로 준다는 것은 1명이 남은 경우 먼저 承重子에게 주고, 남은 수가 1명 이상이나 모든 형제에게 고루 줄 수 있는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長幼의 차례대로 준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承重子에게 먼저 주는 것은 奉祀를 重하게 여기기 때문이다(《經國大典註解》 前集 刑典).

으면 良妻子女에게 주고 良妻子女도 없으면 賤妻子女에게 마찬가지로 준다. 田地도 같다⁵³⁶).

○ 父母의 奴婢는 [承重子]에게 5분의 1을 더 준다. 예컨대 衆子女에게 각각 5명을 준다면 承重子에게는 6명을 주는 것과 같다. [衆子女]에게는 均等하게 나누어 (平分) 준다. [良妻子女⁵³⁷]에게는 7분의 1을 준다. 예컨대 嫡子女에게 각각 6명을 준다면 良妻子女에게는 각각 1명을 주는 것과 같다. 아래도 같다.

○ 嫡母의 奴婢는 주지 아니한다. 賤妻子女에게도 같다. [賤妻子女⁵³⁸]에게는 10분의 1을 준다.

○ 嫡妻에게 子女가 없는 경우의 奴婢는 [良妻子女]에게 均等하게 나누어 주되 承重子에게는 5분의 1을 더 준다. [賤妻子女]에게는 5분의 1을 준다.

○ 嫡妻에게 아들은 없으나 딸이 있는 경우의 奴婢는 [良妻子]인 承重子에게는 그 몫에 10분의 2를 더 준다.

○ 子女가 없는 嫡母의 奴婢는 [良妻子女]에게 7

536) 田地의 子女均分相續制에 관해서는 주 533에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18세기 이후의 分財記에서는 子女差等相續分이 나타나고 있다. 田地의 均分相續에 관한 것은 세종 3년 정월 경기관찰사가 꺾한 田地決絶條款속에 있다. 즉 父母가 일찍 죽은 후 그 자식들이 同居하면서 共同으로 田地를 갈아 먹으면서도 작은 아들이 결혼하여 살림이 따로 나도 分給하지 않은 자가 있으니 앞으로는 均分하라고 하였다(《世宗實錄》 권11-6, 세종 3년 정월 임오).

537) 解說篇 26 妻子女와 義子女 및 養子女의 奴婢相續分(1) 參照.

538) 解說篇 26 妻子女와 義子女 및 養子女의 奴婢相續分(2) 參照.

분의 1을 주되 承重子에게는 10분의 3을 더 주고 나머지는 本族(親庭)에게로 돌려 준다. 同生(兄弟姊妹)이 없으면 3촌(고모 및 조카와 질녀 포함), 3촌이 없으면 4촌인 親族⁵³⁹)에게 주되, 良妾子孫에게는 7분의 1을 주고 賤妾子孫에게는 10분의 1을 준다. 本族의 사람수가 비록 많더라도 한꺼번에 주고(都給) 만약 奴婢數가 적을 것 같으면 妾子女에게 먼저 준다. 本族이 없으면 公處에 소속(屬公)시킨다. 아래도 같다. [賤妾子女]에게는 10분의 1을 주되 承重子에게는 10분의 2를 더 준다.

○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嫡母의 奴婢는 [良妾子]인 承重子에게 7분의 1을 주되 3명을 넘을 수가 없다. [賤妾子]인 承重子에게는 10분의 1을 주되 3명을 넘을 수가 없다.

○ 嫡妻 및 良妾에게 子女가 없는 경우의 奴婢 [賤妾子女]에게 均等하게 나누어 주되 承重子에게는 5분의 1을 더 준다.

○ 嫡妻 및 良妾에게 모두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의 奴婢는 [賤妾子]인 承重子에게는 그 몫에 10분의 2를 더 준다.

○ 嫡妻에게 子女가 없고 良妾에게 아들은 없으

539) 子女가 없는 자의 所有物은 그 父母에게 돌아가서 屬하게 (還係) 됨으로 그 同生(형제자매)의 子女나 孫이 本族이 되고 3寸叔이나 4寸兄弟는 관여하지 못하나 同生이나 同生의 子 및 孫 즉 4寸孫(從孫)까지 없으면 그 재물은 당연히 祖父母에게 올라가서 3寸叔이나 4寸兄弟가 本族이 되기에 親族이라 널리 말하였으며 叔姪이나 兄弟·孫 등으로 지적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다(《經國大典註解》前集 刑典).

나 딸이 있는 경우의 奴婢는 [賤妾子]인 承重子에게는 5분의 1에다가 10분의 2를 더 준다.

○ 子女가 없는 前母나 繼母⁵⁴⁰⁾의 奴婢는 [義子女⁵⁴¹⁾]에게 5분의 1을 주되 承重子에게는 10분의 3을 더 준다.

○ 子女가 있는 前母나 繼母의 奴婢는 [義子]인 承重子에게는 9분의 1을 준다. ○ 子女가 없는 養父母의 奴婢는 [養子女]에게 7분의 1을 준다. 3세 전의 養子이면 전부 준다. 宦官이 宦官을 아들로 삼은 경우에는 모두 3세 전의 경우에 따른다.

○ 嫡妻에게 子女가 있는 경우의 養父母의 奴婢는 [養子女⁵⁴²⁾]에게 10분의 1⁵⁴³⁾을 주되 3세 前이면 7분의 1을 준다. 10분의 1을 준다는 것은 嫡妻에게 子女가 있으면 侍養子女에게는 10분의 1을 준다는 것이다. 만약 嫡妻에게 子女가 없고 단지 妾子女만 있으면 父의 奴婢는 養子女에게 7분의 1을 주고 나머지는 모두 妾子女에게 주며 母의 奴婢는 규정된 몫(本分)에 따라 첩자녀와 양자녀에게 주고 나머지는 本族에게 돌려 준다. 7분의 1을 준다는 것은 嫡妻에게 子女가 있으면 收養子女에게 7분의 1을 주고 만약 嫡妻에게 子女가 없고 단지 良妾子女만 있으면 父의 奴婢를 收養子女와 더불어 균등하게 나누어 주며(平分)

540) 前母는 後妻의 子가 父의 前妻에 대하여 稱하는 것이고, 繼母는 前妻의 子가 父의 後妻에 대하여 칭하는 것이다.

541) 解說篇 26 妾子女와 義子女 및 養子女의 奴婢相續分(3) 參照.

542) 解說篇 26 妾子女와 義子女 및 養子女의 奴婢相續分(4) 參照.

543) 大典會通 原文(木板本)에는 七로 되어 있으나 經國大典 原文(木板本)에 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前後文脈으로 보아서 十이 명백하므로 고쳐서 번역하였다.

賤妾子女에게는 5분의 1을 준다는 것이고 母의 奴婢는 규정된 몫에 따라 妾子女에게 주고 나머지는 모두 收養子女에게 준다는 것이다.

○ 父母・祖父母・外祖父母・妻父母・夫・妻・妾 및 兄弟姊妹(同生)가 協議(和會⁵⁴⁴)하여 (노비를) 나누어 가지는(分執) 경우 외에는 官署文記⁵⁴⁵를 쓴다. 아들이 어버이에게서 받은 경우에는 역시 관서문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 반드시 證人과 筆執(執筆者)⁵⁴⁶을 갖추어야 하나 <族親 및 顯官 중에서 2·3인 ○ 田宅의 경우도 같다.> 형제자매 이상이 文記를 직접 손으로 쓰는(手書) 경

544) 和解는 양쪽이 서로 順應한다는 뜻으로 형제자매 끼리 협의하여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그렇게 하여 작성된 文書를 和解文記라고 한다. 《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兵典에서 「和는 兩順也, 會는 相應也」라 하여 이를 나타내고 있다.

545) 官署文記는 官의 認證이 있는 文書로서 財産의 歸屬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 당초에 官이 處分의 效力 및 그 當否를 심사하도록 해서 뒷날의 분쟁을 미리 막으려 한 것이다(조선총독부 증추원 《앞의 책》 p.44~45). 태종 4년 6월 노비를 사사로이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면서 官에서 私人間의 法律行爲(노비의 상속 또는 증여)에 적극 개입하게 된 것이다. 즉 그때 刑曹 都官이 上言하기를 앞으로 서울과 지방의 大小人員이 子息이나 收養子·侍養子에게 奴婢를 주도록(許與)하거나 贈與(贈與) 경우에는 數目을 모두 써서 所在 官司에 직접 신고하고 그 官司는 노비주의 본의를 알아 본 후 확인(公證)을 해주기로 하였으며, 또 財主가 갑자기 죽어서 나누어 주지 못한 노비는 子孫으로 하여금 名目을 바치게 해서 官이 財主가 되어 平均分給하도록 하였다(《태종 실록》 권7-26, 태종 4년 6월 기사).

546) 證筆은 證人과 筆執(執筆者)를 말한다(朴秉濠 《韓國法制史考》 法文社, 1987, pp.40~41). 태종 5년 4월에 奴婢相續(傳繼)에 관한 文字法式을 만들었는데 證人과 執筆者는 族親이나 官職이 있는 자 2·3인 이상으로 하되 그들이 立證해야만 立案(官의 확인서·공증서)을 작성해 준다고 하였다(《太宗實錄》권9-14, 태종 5년 4월 을해). 또 세종 12년 2월 刑曹의 啓에 따라 노비와 財物의 相續(傳係)에 관한 문서에는 반드시 財主의 所在官(邑)에 告狀하여 證·筆과 財主 등 證人訊問(憑問)후에 文書(文案)를 작성해 주도록 하였다(《世宗實錄》 권47-24, 세종 12년 2월 정유). 이것은 조선중기 이후의 文記와 立案을 보아도 그렇다고 하였다(박병호 《앞의 책》 p.40). 위 《태종 실록》에서는 官職이 있는 자(有職者)라고만 하였는데 《경국대전》 刑典 私賤條에서는 族親 및 顯官이라 하였다. 이는 族親이면 無顯官者도 좋고 顯官이면 族親 아닌 자도 괜찮다는 뜻이다(《經國大典註解》 前集 刑典). 그러나 證筆이 族親中의 顯官 이라야 하는 경우도 있다(주 551 참조).

우에는 (證人과 筆執을)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다⁵⁴⁷⁾. ○ 子女가 없는 夫와 妻의 노비는 비록 相續(또는 贈與)한다는 것(傳係)이 없더라도 生存者(夫 또는 妻)가 분별하여 처리(區處⁵⁴⁸⁾)하되 本族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으며 만약 妻子女·義子女·養子女가 있으면 또한 그 몫을 넘어서 줄 수가 없다. 妻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을 경우에는 그가 처리한 것은 소용(效力)이 없다. ○ 文記를 偽造하여 詐欺친 것이 뚜렷이 드러난(현저한) 자는 다른 관청에 이송하여 다시 조사해서 罪를 科하고 영구히 임용하지 아니하며 (永不敍用) 赦免令이 있어도 朝官은 永不敍用하고 庶人은 徒 3年에 처한다. 證人과 筆執도 같다. 지방에서는 임금에게 아뢰어 다시 조사한다. (文記를) 고치고자 하는 자가 事由를 갖추어 官에 신고하면 고쳐 주도록 하되 (고쳐) 받을 자가 죽으면 고쳐 주지 아니한다⁵⁴⁹⁾. 부모·조부모·외조부모의 그것을(文記를) 아들과 손자에게 고쳐주거나 夫의 그것을(文記를) 妻妾에게 고쳐주는 것은 허용한다.

○ 祖父母 이하는 遺書⁵⁵⁰⁾를 쓴다. 祖父나 父는 반드시 직

547) 父子 兄弟간에는 署名이나 筆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반드시 證人이나 筆執者를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한 것이다(《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548) 區處는 分別하여 處置한다는 뜻이다. 궁박하여 放賣한 경우에는 區處之法에 구애되지 아니한다(同上).

549) 고치고자 하는 文書는 官署文記나 白文文記(官署가 없는 文記)를 모두 말한다(《經國大典註解》 前集 刑典). 그러나 고쳐야 할 事由를 갖추어 官에 申告하면 改給되나 고쳐 받을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고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주로 官署文記를 말하는 것이지 白文文記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白文의 경우에는 註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父母·祖父母·外祖父母가 자손에게 주는 文書라든지 남편이 妻妾에게 주는 문서로서 본인이 죽어도 官에 告하여 고칠 수 있게 한 것이다. 대체로 官署가 있는 公文은 私私로이 고칠 수 없으므로 事由를 갖추어 官에 신고하도록 하되 받을 자가 죽으면 고쳐야 할 사유를 조사할 수가 없으므로 고칠 수 없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白文의 경우에도 妻父母의 사위에 대한 文書는 받을 자가 죽으면 못고치게 하였다(《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550) 遺書는 自身の 死亡으로 效力이 발생하도록 遺言을 쓴 文書로서 遺言者의 單獨意思

접 손으로 쓴 글(手書)이라야 하고 祖母나 母의 경우는 반드시 親族 중의 顯官이 證人이나 執筆者가 되어야 한다. 직접 쓰지 못하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는 경우와 疾病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모두 婦人의 例에 의한다⁵⁵¹⁾. ○ 3세전에 기른 養子女와 承重한 義子(奉祀者인 義子)는 즉 親子女와 같으므로 비록 遺書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말이 있더라도 그 말대로 하지 아니한다⁵⁵²⁾.

○ 奴婢를 相續(또는 贈與) 받은(傳得)⁵⁵³⁾ 자는 1

表示이다. 遺書의 法的效力을 公認한 것은 世宗 8年 正月 都官(장예원 前身)의 보고에 의한 刑曹의 啓에 따른 것인데 그때 刑曹에서는 의정부 및 各曹와 의논하여 임금에게 啓하기를 遺書가 비록 一家之法이나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임금의 승락을 받았다(《世宗實錄》 권31-7, 세종 8년 정월 정사).

551) 《經國大典註解》 前集 刑典에 遺는 留라 하고 遺書는 財主가 사망한 후에 提出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때 詐僞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祖나 父의 경우는 손으로 쓴글(手書)이 아니면 效力이 없으나 모두가 다 아는 무식자나 不具者(未手書者)·疾病者 등은 祖母나 母와 더불어 手書하지 않아도 族親중 顯官이 있어 그가 證人이 되거나 筆執이 되면 遺書의 效力을 인정하고 顯官이 아닌 族親의 證·筆의 경우는 效力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앞의 文記 證筆의 경우와는 다르다고도 하였다.

552) 世宗 15년 7월 임금은 永樂 3年(太宗5年) 9월의 受判에 子息없는 사람을 전적으로 繼嗣할 3세전의 어린이와 버려진 어린이를 거두어 기른 경우 즉 收養子는 자기 子息과 같으므로 비록 傳繼(상속이나 증여)가 없더라도 노비를 全給한다고 하였고, 洪熙 元年(世宗 7年) 10월의 受教에는 祖上の 遺書에 따른다고 하였는데, 3세전의 收養子の 경우 祖宗의 遺書여부를 막론하고 노비를 全給할 것인지, 비록 3세전의 收養이라도 孫外(傍孫 5寸 이하, 즉 使孫이 아닌 경우)이면 遺書에 따라 노비를 주지 않을 것인지를 의논하여 啓하라고 하였다(《世宗實錄》 권61-8, 세종 15년 7월 을축). 그 해 윤 8월 刑曹의 啓에 따라 세종은 孫外人(使孫이 아닌者)의 경우에만 遺書에 따르도록 하였다(《위의 책》 권61-31·32, 세종 15년 윤 8월 임자). 그러나 세종 20년 9월 의정부에서 啓하기를 《續刑典》(《續六典》의 刑典)에서 祖業奴婢를 그 자손이 祖上の 遺書를 돌보지 않고 제멋대로 남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으니 遺書에 따라 決給하도록 하였고, 乙卯年(세종 17년)의 教旨에서는 無後한 婦人의 노비는 分半하여 그 奉祀 義子에게 주고 義子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續六典》에 의거 遺書에 따라 주되 無繼嗣의 경우 同宗支子로서 立後하였으면 친자식과 같이 그의 노비와 재산을 유언에 구애되지 않고 決給하도록 하자고 하여 임금이 이에 따랐다(《위의 책》 권82-22, 세종 20년 9월 계사).

553) 노비를 상속 또는 증여 받은(傳得) 경우에 태종 5年 4월에 만든 奴婢傳繼文字法에서는 4年내에 呈狀하도록 하였는데(《太宗實錄》 권9-14, 태종 5년 4월 을해) 이것이 그후 期年(1年)으로 단축되었다. 傳得·傳繼·傳給 등 用語를 흔히 相續과 같은 뜻으로

년(期年) 내에 官에 신고하여 公證(立案)을 받아야 한다. 만약 財主가 文書(文契)를 작성하고 죽은 경우에는 병을 간호하던 親族이나 奴婢를 불러다가 사실을 조사하여 公證(立案)을 해준다. 田地와 住宅도 이와 같다. 각각 그 거처하는 곳에서 官(고을)에 신고하도록 하며 相避者⁵⁵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官(고을)으로 이송한다. ○ 무릇 訟事가 비록 判決이 나도 판결문(立案)을 작성하지 못하고 官吏가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交代한 官吏가 작성하여 준다.

○ 무릇 奴婢를 賣買할 경우에는 官에 신고해야 하며 사사로이 協議하여 매매할 경우에는 그 노비와 값(價物)을 모두 官에서 몰수한다. 나이 16살 이상 50살 이하의 값은 楮貨 4000장이고 15살 이하 51살 이상(의 값)은 3000장이다⁵⁵⁵. 만약 훔쳐서 판 경우(盜賣)에는 훔쳐서

보나 相續·贈與·遺贈 등을 모두 포함한 뜻이다. 그의 分給·分執·許給·決給 등도 같은 뜻이다(조선총독부 중추원 《李朝의 財産相續法》 앞의 책 p.1).

554) 相避는 서울이나 지방의 官員으로서 所定의 寸數內의 친족이나 처남 동서 등 인척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소송의 심리 때의 官員이 元隻(원고·피고)과 그러한 친척관계에 있거나 科擧시험 때의 擧子(응시자)와 그러한 친척관계에 있는 시험관 등이 避嫌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相避法은 《經濟六典》에 규정되어 있었다(한우근의 4인 《譯註經國大典》 註釋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p.202~203 및 《世宗實錄》 권94-3, 세종 23년 10월 무진).

555) 태조 7년 6월 刑曹都官의 上言에 의하면 그 당시의 奴婢 값이 대개 5升布 150필에 불과하였는데, 말값은 4·5백필에 이르고 있으니 이는 重畜輕人이라 하고 앞으로는 노비값을 男女를 막론하고 나이 15살 이상 40살 이하인 자는 400필, 14살 이하 41살 이상인 자는 300필로 정하며 도망친 자의 役價는 1명당 한달에 5升布 3필로 하되 그 年月이 비록 많더라도 그 값(매매값)을 넘을 수 없도록 하자고 하였다. 임금의 이를 允許하였다(《太祖實錄》 권14-15, 태조 7년 6월 임술). 《經國大典》 刑典 私賤註에서는 楮貨로 노비 값을 表記하였는데, 楮貨 1張의 값은 태종 2년 정월에 常 5升布 1필, 米 2斗로 정하였으나(《太宗實錄》 권3-4, 태종 2년 정월 임진), 그 값이 계속 떨

판자에게서 값을 追徵한다. 田地와 住宅도 이와 같다.

○ 奴婢의 身役을 면제(放役) 시킨 후에 태어난 자식도 (主人의) 子孫이 使役시킬 수 있다. ○ 子孫없이 죽은 사람의 노비는 收養子와 使孫⁵⁵⁶⁾ 등이 3년 내에는 서로 나누어 갖지 못한다. 田地와 住宅 기타의 財産도 이와 같다. ○ 무릇 奴婢가 功을 세운 일로 인하여 良人이 되었을 경우에는(본래의 主人에게) 公賤으로서 補充하여 준다. ○ 다른 사람의 노비를 거짓 문서로(強制로) 차지하거나 判決 후에도 계속 차지하는 자는 杖 100 徒 3년에 처하고 부러먹은 값을 追徵하여 주인에게 준다. 그것을 不均等하게 나누어 가진 자와 모두 차지하여 이익을 독점하는 자는 論罪 후에 그가 배당

어져서 세종 3년 4월에는 楮貨 한장이 米2升으로 되었다가(《世宗實錄》 권11-17, 세종 3년 4월 무술), 그 후 下品인 경우에는 1·2升 또는 그 이하라 하였다(《위의 책》 권110-3, 세종 27년 10월 임자). 세종말의 楮貨의 값이 《經國大典》 戶典 國幣註에 기록되었다고 하겠는데 正布 1필은 常布 2필에 準하고 常布 1필은 楮貨 1장은 米 1升到 準한다고 하였다.

556) 使孫은 本族·本孫·本宗이라고도 하였다(조선총독부 중추원 《李朝의財産相續法》 1936, p.287). 그러나 《經國大典註解》 後集下 刑典 끝의 使孫圖에 의하면 自己가 無子女일 때 父의 子孫인 同生과 3寸姪·4寸孫 및 祖의 子孫인 3寸叔·4寸兄弟로 되어 있다. 使孫이란 바로 子女없는 사람의 노비를 부릴 수 있는 이들 4寸 이내의 친족을 의미한다. 明宗 때 編纂되어 宣祖 때 刊行된 詞訟(決訟)類聚에도 使孫의 범위를 圖面으로 표시하였다. 《太祖實錄》 권12-2, 태조 6년 7월 갑술에서는 전해오는 文件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使孫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여 使孫은 재산상속권이 인정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使孫보다는 寸數가 멀어서 법상으로 재산상속권이 없는 친족은 孫外라 하였다. 또 불교재산의 상속자는 法孫이라고 하였다(윤국일 《앞의 책》 p.479).

받을 奴婢를 官에 소속(屬公)시킨다. 田地와 住宅도 이와 같다.

○ 奴婢에 관한 訴訟(相訟奴婢)에 있어서 원고(元告)와 피고(被論)⁵⁵⁷⁾ 중에서 스스로 理致가 그르다는 것(자기편이 불리함)을 알고서 여러 달 나타나지 아니하여 다시 그 집 종(家僮⁵⁵⁸⁾)을 가둔 후 30일이 차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⁵⁵⁹⁾와 소송을 시작한 후 50일 내에 이유없이 法廷(訟庭)에 나오지 아니한지 30일이 지난 경우에는(소송목적물인 노비를) 모두 法廷(訟庭)에 나온 자에게 준다. 法廷(訟庭)에 나와서 직접 이름을 썼다는 것이 증명 되면 비록 잘못된 判決이라 하여 上訴하여도 들어서 審理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접 이름을 쓸 때 속임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다시 審理하는 것을 허용한다. 세번 勝訴(得伸⁵⁶⁰⁾)하면 다시 審理할 수가 없다. 通常의 爭

557) 元告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始訟人)으로서 지금의 原告에 해당된다. 被論은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 즉 被告를 말한다. 庶人인 婦女는 비록 代訟이 허용되지 않으나 그 남편이 就訟하게 되면 代訟을 제한하지 아니한다(《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또한 被告를 元隻이라고도 하는데 元隻은 元告의 元字와 元隻의 隻字를 合稱하여 원고·피고 모두를 의미하기도 한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740).

558) 家僮은 家奴와 같은 것으로서 奴曰僮이라 하였다(《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559) 이것은 소송제기후 처음부터 法廷(訟庭)에 나오지 아니하는 자(初不就訟者)를 말한다(《위의 책》 前集 刑典). 世祖 9年 11月 한성부에서 啓하기를 이미 내린 傳旨에 의하면 奴婢 相訟에 있어서 元告와 被論(被告)중 3개월내에 無故로 滿 30일간 就訟(法廷에 出席)하지 않으면(소송목적물인 노비를) 就訟者에게 준다는 것과, 他處에 거주하거나 出入하는 자에게는 所在邑에 公文을 보내서 문서가 송달된 날(給狀日)로부터 계산하되 그 途程日數만큼 빼고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田宅 기타의 財産에 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전혀 法廷에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로 就訟을 회피하니 노비 예에 따라 處決하자는 것이었다(《世祖實錄》 권31-25, 세조 9년 11월 갑자).

560) 得伸이란 勝訴한 것을 말한다. 初審·再審·三審의 세번(三度) 勝訴한 자에 대해서

訟도 이와 같다. ○ 서로 소송한 노비(相訟奴婢)는 더불어 같이 소송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주지 아니 하나 부모의 노비는 반으로 減하여 준다. 田地와 住宅도 이와 같다. ○ 奴婢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이 끝난 후 서울에서는 10일, 서울과 가까운 道에서는 30일, 먼 道에서는 50일 내에 노비의 이름과 숫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官에 제출하도록 하며 기한이 지나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杖 80에 처한다.

[續] 父母의 奴婢에 관하여 協議(和會)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官에 올려서 나누어 갖도록 하며 자녀가 자손 없이 죽은 경우에는 나누어 주지 아니하나 그 妻가 守節하면 준다. ○ 田地와 住宅도 이와 같으며 田地 10負는 奴婢 1명에 준한다. 新奴婢는 文書(文券)가 없는 것이 例이므로 당사자 雙方을 조사하여 그 歸屬이 분명한 경우(相辨歸一者⁵⁶¹) 이외는 元奴婢의 例로서 均等하게 나누어 준다(平均分給). 乳母의 新奴婢를 얻은 후의 소생 자식은 형제자매(同生)간에 나누어 갖는 數에 들어 가지 아니하는 것이 例이나 가령 형제 중에서 본디 乳母의 新奴婢가 없고 또 나누어 가질 다른 노비가 없으면 반드시 등짐을 지고 물을 길어도 생활할 수 없게 되는 폐단이 생기게 되므로 얻어낸 것의 4분의 1을 除하여 준다.

○ 子女가 없는 嫡母의 奴婢는 妾子女에게 나누어 주는 몫(分數) 이외의 나머지는 本族에게 되

는 敗訴者가 다시 提訴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561) 相辨歸一이란 소송당사자 雙方을 조사하여 그 歸屬을 明白히 하는 것을 말한다.

돌려 주되 生死者를 막론하고 골고루 나누어 준다. 經國大典에서의 형제자매가 없으면 3寸, 3촌이 없으면 4寸親에게 준다고 하는 법은 대개 형제자매가 모두 죽은 然後에 3촌에게 주고 3촌이 모두 죽은 然後에 4촌에게 준다는 것이나 官吏가 단지 現存者에게만 주고 죽은 자에게는 주지 아니한다면 심히 不當하므로 다시 법의 뜻을 밝힌다. 3촌 이하도 같다.

○ 嫡妻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의 奴婢는 만약 繼後子가 있을 것 같으면 嫡妻에게 아들이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 나누는 몫(分數)은 嫡子인 承重者로서 論한다.

○ 嫡妻에게 딸이 있고 또 繼後子가 있으며 또 養子女가 있는 경우의 노비는 嫡女와 繼後子에게 均等하게 나누어 주되(平分) 계후자에게는 奉祀條로 더 주고 養子女에게는 단지 그 나누어 줄 몫 대로 준다.

○ 子女가 없는 前母와 繼母의 노비를 義子女⁵⁶²⁾에게 몫에 따라 나누어 줄 때에는 乳母의 新奴婢의 所生은 奉祀와 服喪을 하는 義子女에게 全部 주고 使孫(4촌 이내)에게는 주지 아니한다(勿論). 子女가 있는 前母의 奴婢를 그 아들이 차지하여 부리면서 이미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나 그가 子女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經國大典의 子女없는 자의

562) 義子女는 正室로서 前後娶夫人이 있을 경우 前娶所生子女의 繼母에 대한 관계에서 나온 호칭인 동시에 後娶所生子女의 前母에 대한 관계에서 나온 호칭이기도 하다. 前母는 繼母와 對稱되는 개념으로서 後娶所生子女의 前室夫人에 대한 호칭이다.

노비를 本族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법규정에 따라 異腹 형제자매(異母同生)에게 傳해 주고(相續시키고) 자녀가 없는 前母의 奴婢의 例로서 몫을 나누어 덜어내지 못하며 또한 前母측의 使孫에게도 주지 못한다. ○ 使孫圖는 決訟類聚에 보인다.

○ 班附人⁵⁶³의 奴婢는 먼저 主祭者에게 5분의 1을 주되 10명을 넘을 수가 없으며 나머지는 使孫에게 준다. 남녀를 不問하고 무릇 자손이 없어(無後하여) 附食해야 할 경우에는 비록 그가 父母 보다 먼저 죽었어도 그 형제자매(同生)들이 分財할 때에는 모두가 그 받아야 할 奴婢數 안에서 나누어줄 몫을 쟁하여 뽑아내어 시행하며 나머지는 本族에게 주되 만약 노비수가 적을 것 같으면 主祭者에게만 준다. 田地도 이와 같다.

○ 子女가 없는 夫妻의 奴婢는 生存한 配偶者가 分別하여 처리하되 本族 이외의 他人에게는 줄 수가 없다. 經國大典에 本條가 보인다. 이미 他人에게 주지 못한다면 스스로 放賣할 수도 없고 그 放賣文記에 公證(立案)하여 주지(斜給⁵⁶⁴)도 못한다. 처음에 子女가 없는 자가 그의 奴婢와 田地·住宅을 이미 他人에게 分別하여 처분하였으나 元財主가 후에 子女를 두게 되면 그 것(노비와 전택)을 도루 찾아갈 수 있게 한다. 받을 자가 비록 죽어도 역시 죽으면 고치지 못한다는 법에 구애되지 않고 고치는 것을 허용한다. ○ 繼母가 그 남편이 그의 財物을 (자신에게)

563) 班附人은 자식없이 죽은 자로서 그의 位牌는 宗家(祖上)의 家廟(사당)에 함께 모시게 되는데, 이는 班附 즉 班例에 따라 合祀하게 되는 無子인 死者를 의미한다.

564) 斜給은 노비의 매매를 증명하는 立案을 작성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특별히 준 것(別給)이라 하면서 放賣하거나 자신이 낳은 子女에게 偏頗적으로 주면 前母의 아들은 살아갈 財物이 없게 됨으로 經國大典에서 말하는 子女가 없는 夫妻의 奴婢는 生存한 配偶者가 分別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자녀가 있는 자의 노비를 생존한 배우자가 본디 分別하여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보아서 다시 법의 뜻을 밝힌다. 田地와 住宅도 이와 같다.

○ 무릇 父祖로 부터 傳來된 奴婢는 그 一般奴婢 처럼 贈與(許與)하거나 放賣할 수가 없다.

○ 무릇 親族(親屬人)의 婢를 娶하여 낳은 子女가 本主와 5촌 이하의 친족이 될 경우에는 身役이 免除(放役)된 奴婢가 낳은 子女의 例에 따라 本主가 使役시킬 수 있도록 한다. 骨肉相殘으로 부릴 수가 없다는 글은 본래 法典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는데도 官吏가 傳해 오는 속된(俚俗) 말에 현혹되어 判決(決訟)할 때 마다 屬公시킴(官의 所有로함)은 심히 不當하며 祖父의 婢妾 所生은 곧 4촌 형제자매(同生 4촌)이므로 使役시킬 수 없다는 것이나 5·6촌에 이르면 親屬이 점점 멀어져서 부리는 것이 본디 불가능하지 아니하므로 屬公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 妻가 남편이 죽은 후에 自己 親族을 收養하여 子女로 삼은 경우에는 그 남편쪽 奴婢는 奉祀條⁵⁶⁵로서 나누는 몫에 따라 나누어 준다. 남편의 妻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이와 같다. 田地도 이와 같다.

565) 奉祀條는 父祖의 遺産중 일부를 남겨 先祖의 제사비용에 충당하도록 정한 재산(노비나 토지)을 말한다.

○ 私賤이 子女없이 죽은 경우에는 그(私賤)의 財物은 그의 主人(上典)에게 준다. 經國大典 公賤條에 보인다. ○ 公賤이면 그가 속한 官廳에 준다는 것도 역시 經國대전에 보인다.

그러나 죽은지 오래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본인(當身)이 살아 있을 때에 證人과 筆執을 갖추어 他人에게 放賣한 경우에는 (그 노비의 재산으로) 섞어서 넣을 수가 없고 만약 다른 사람의 婢를 娶하여 子孫이 있는 경우에 그 主人이 자기의 소유인 노비처럼 書面에 記錄하여 올린(記上⁵⁶⁶) 경우에는 制書有違律(王旨 등 違反罪)로 論罪한다. 公賤도 이와 같다. ○ 公賤을 거두어 길러서(收養) 자식으로 삼아 계속 續案에 넣어서 子孫에게 相續시킨 경우에도 역시 記上할 수가 없다.

○ 숨어서 帳籍에서 빠진 奴婢(隱漏奴婢)를 推尋한 경우에는 비록 여러 해가 지난 후일지라도 단지 3년간의 身貢만 徵收한다. 1년간의 身貢은 奴는 綿布 2필 婢는 綿布 1필 반으로 한다⁵⁶⁷). ○ 서울 사람 및 他道 사람 所有의 北道(함경도) 奴婢는 단지 身貢만 거둘 수 있을 뿐이고 데리고 와서 부릴 수는 없으며 關

566) 記上이란 자기의 所有物인 것처럼 書面에 記入하여 올리는 것(申告하는 것)을 말한다.

567) 私奴婢의 身貢에 관하여 《續大典》 刑典 私賤條에서는 年間 奴는 綿布 2필, 婢는 1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顯宗代에 이미 奴 1필반, 婢 1필로 減量(성균관 등은 例外)되었고 英祖때 다시 各司奴婢의 身貢이 奴 1필 婢 반필로 되었다가, 婢의 身貢은 면제하도록 하였다(해설편 25 노비의 (3) 參照).

西(평안도)도 이와 같다. 一切 賣買는 허용되지 않고 몰래 서로 매매한 경우에는 그 文券(賣買文書)을 태워서 그 것을 無效化(勿施)한다. 만약 奴婢를 推尋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守令이 직접 조사하여 사실이 인정되면 4金6金の 定式⁵⁶⁸에 따라 贖良하며 官廳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侵虐하는 자는 各別로 罪를 주고 처음에 精密하게 조사하지 아니하여 本主가 連이어 나타나면(繼起) 당해 守令을 임금에게 아뢰어 論罪한다. ○ 兒童을 誘拐하여 숨겨 두었다가 壯丁이 되기를 기다려 奴婢로 삼은 자에 대해서는 杖 100 流 3000里에 처하고 管領과 가까운 이웃 사람이 알면서도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 등급을 減하여 處罰하며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官吏는 엄중히 推問한다. 北道(함경도)의 官屬人 및 土豪·品官이 同居婢夫·雇工 이외로 良人을 불법으로 차지(冒占)하여 숨겨서 使役시키는 경우에는 制書有違律(王旨 등 違反罪)로 論罪하되 3인 이상을 冒占하면 杖 100 徒 3년에 처하며 事情을 알고 있는 色吏와 面任·里任·가까운 이웃 등은 같은 律을 적용하고 官屬人이 이 罪를 犯하면 內需司의 別差(특별 派遣

568) 일설에 의하면 4金6金の 正式이란 40%의 鉛과 60%의 銀의 合成인 六成銀을 말한다고 한다. 金屬을 보통 金이라 통칭하는데 100%의 銀을 十成·十品 또는 天銀이라 하였고 그 다음이 銀 90% 鉛 10%인 九成, 또 그 다음이 銀 80% 鉛 20%인 八成, 銀 70% 鉛 30%인 七成이 있다는 것과 七成銀을 丁銀 또는 倭銀이라 하여 표준으로 삼았지만(《大典會通》戶典 國幣條 및 刑典 銀錢代用條), 노비의 贖身은 六成銀으로 通用한다는 것이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p.721~722 및 金春東의 3인 《앞의 책》 pp.590~591). 그러나 《戰國齊策》의 註에서 20兩을 1金이라 하였으니 4金6金은 80兩 내지 120兩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또 《春秋公羊傳》 隱公 5年條의 註에 「百金猶百萬也, 古者以金重一斤 若今萬錢矣」라 하였으니 4金6金은 400錢 내지 600錢을 뜻하는 것이 되는데 여하간 노비의 贖良價를 규정한 것으로도 보인다.

人)를 罷職하여 내쫓으며 赦免令이 있어도 사면하지 아니한다(勿揀赦前⁵⁶⁹).

【賤娶婢產⁵⁷⁰】 [原]公私賤이 自己所有의 婢를娶하여 낳은 자식은 自己가 屬해 있는 官廳이나 主人(上典)에게 주고⁵⁷¹ 妻所有의 婢를娶하여 낳은 자식은 妻가 屬해 있는 官廳이나 주인에게 준다. (公私賤이) 만약 良人인 妻를娶하고 또 그 良妻의 婢를娶하여 낳은 자식은 자기가 소속한 官廳이나 주인에게 주되 만약 그 良妻에게 다른 남편이 있어서 그 사이에도 낳은 子女가 있으면 그 子女에게 준다.⁵⁷²

【闕內各差備⁵⁷³】 [原] 2番으로 나눈다.

569) 勿揀赦前은 赦免令이 있기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비록 사면령이 있어도 그 죄를 면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722).

570) 賤娶婢產이란 公私賤이 婢子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식에 관한 從父·從母法에 따른 신분귀속을 규정한 것이다.

571) 이 조항은 太宗 14年 8月, 辨正都監이 올린 啓目에서 公私賤口의 自己婢妻 所生子女가 公賤이면 屬公하고, 私賤이면 奴子의 本主에게 決給한다는 것(《太宗實錄》 권 28-16, 태종 14년 8월 계해)을 등재한 것이다. 이는 태종 14년 6월에 정한 從父法에 의거한 것이다(이태진외 4인, 《앞의 책》, p.735).

572) 이 조항은 世宗 18年 6月, 議政府의 啓에 따라 公私賤口가 妻의 婢를娶하여 낳은 자식은 本妻의 자식과는 兄弟가 됨으로 使役시킬 수 없으나 本妻에게 他夫之子가 있으면 그에게 주고, 없으면 妻의 本主에게 주며, 그 妻가 良人이면 夫의 本主에게 주도록 한 것(《世宗實錄》 권72-37, 세종 18년 6월 무오)을 정리하여 등재한 것이다.

573) 闕內各差備는 文昭殿(太祖妃 韓氏의 魂殿)·大殿(임금이 거처하는 곳)·王妃殿·世子宮 등에서 雜役을 맡았던 자이다. 差備라는 말은 채비라고도 하여 일을 준비하거나 맡긴다는 뜻으로 담당자가 奴子이면 差備奴라 하였고 官員이면 差備官이라고 하였다(윤국일, 《앞의 책》, p.480). 그런데 《中宗實錄》 권11-51, 중종 5년 6월 기해條에 의하면 의정부의 노비가 闕內 差備로 되어 있음이 나타나 있고 細註에서는 “下人執役者名

【文昭殿】〔原〕 飯監⁵⁷⁴) 2인, 別司饗⁵⁷⁵) 4인, 湯水色⁵⁷⁶) 4인, 牀排色⁵⁷⁷) 4인, 炙色⁵⁷⁸) 4인, 飯工⁵⁷⁹) 6인, 泡匠⁵⁸⁰) 4인, 酒色⁵⁸¹) 4인, 茶色⁵⁸²) 2인, 餅工⁵⁸³) 4인, 蒸色⁵⁸⁴) 겸 莊子色⁵⁸⁵) 4인, 城上⁵⁸⁶) 4인,

曰差備"라 하였으니 심부름하는 下人을 의미한다. 關內에 배정된 차비노의 수는 세종 5년 2월의 關內信符佩持人數를 통해서 살펴보면 大殿에 388명(奴 376명, 婢 12명), 恭妃殿 및 世子殿 119명(奴 104명, 婢 15명), 懿嬪殿 및 明嬪殿 83명(奴 74명, 婢 9명) 등이다(《世宗實錄》 권19-14, 세종 5년 2월 신유). 이를 합계하면 모두 590명인데 경국대전에 규정된 숫자보다 훨씬 많다.

574) 飯監은 關內의 差備人(供役人)의 하나이며, 諸邑匠人으로서 職品이 있더라도 本役에 從事한다고 하였다(《世宗實錄》 권65-11, 세종 16년 7월 신축). 飯監은 반찬 등 궁중음식을 맡아 보는 下人으로서 殯殿의 飯監을 內瞻寺奴가 맡는 등(《成宗實錄》 권14-10, 성종 3년 정월 정사), 그 신분이 대체로 賤人이었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736).

575) 別司饗은 음식물을 요리하는 자로서 太宗 17년 5월 關內 供役人(差備人)의 칭호를 고칠 때 漢波吾赤를 改稱한 것이다(《太宗實錄》 권33-35, 태종 17년 5월 경인). 波吾赤는 割肉者(《世宗實錄》 권78-39, 세종 19년 9월 병신)라 하였으니 고기 다루는 사람이란 뜻이다(同上).

576) 湯水色은 關內에서 물끓이는 일을 하는 差備人이다(同上). 世宗 5년 2월의 關內信符佩持人數에 나타난 差備人으로서 湯水托飯·湯水蒸色·湯水水工 등이 있다(《世宗實錄》 권19-14, 세종 5년 2월 신유).

577) 狀(床)排色은 關內에서 床차리는 일을 하는 差備人이다. 태종 17년 5월 關內 供役人의 칭호를 고칠 때 粧子色을 進上床排色과 多人床排色으로 나누어 호칭하였다(《太宗實錄》 권33-35, 태종 17년 5월 경인).

578) 炙色은 關內에서 생선굽는 일을 맡은 자이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736).

579) 飯工은 關內에서 밥짓는 일을 하는 자이다(同上).

580) 泡匠은 關內에서 두부 만드는 일을 하는 자이다(同上).

581) 酒色은 關內에서 술빚는 일을 하는 자이다(同上). 태종 17년 5월 關內 供役人의 칭호를 바꿀 때 酒房城上을 개칭한 것이다(《太宗實錄》 권33-35, 태종 17년 5월 경인).

582) 茶色은 關內에서 茶끓이는 일을 하는 자이다(同上).

583) 餅工은 關內에서 떡을 만드는 일을 하는 자로서 餅母라고도 하였다(《世宗實錄》 권19-14, 세종 5년 2월 신유).

584) 蒸色은 關內에서 음식물을 찌는 일을 하는 자로서 태종 17년 5월 關內 供役人의 칭호를 바꿀 때 外方을 蒸色으로 고쳤다(《太宗實錄》 권33-35, 태종 17년 5월 경인).

585) 莊子色은 음식물 관리인인 듯한데 太宗 17년 5월 牀排色으로 개칭하기 전의 粧子色(주577)과 같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또 세종 5년 2월의 關內信符佩持人數에 보이는 藏子色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만약 모두 같은 것이라면 이미 改稱한 것이 왜 되살아났는지도 알 수 없다. 여하간 음식과 관계되는 差備人임은 확실하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737).

586) 城上은 궁중을 감시하는 小吏를 의미하기도 하나 여기서는各司의 奴隸로서 器物을

守僕⁵⁸⁷⁾ 4인, 水工⁵⁸⁸⁾ 2인, 別監⁵⁸⁹⁾ 6인, [續] 闕內 各 差備는 經國大典과 같으나 文昭殿⁵⁹⁰⁾의 差備는 지금은 없다.

【大殿】 [原] 飯監 6인 4인은 多人廳,⁵⁹¹⁾ 別司饗 14인 8인은 多人廳, 湯水色 14인 10인은 多人廳, 牀排色 10인 8인은 多人廳, 炙色 6인 4인은 多人廳, 飯工 12인 10인은 多人廳, 泡匠 2인, 酒色 4인, 茶色 4인, 餅工 2인, 蒸色 10인 8인은 多人廳, 燈燭色⁵⁹²⁾ 4인, 城上 34인 2인은 水賜間,⁵⁹³⁾ 6인은 銀器⁵⁹⁴⁾ 26인은 多人

典守(말아서 看守)하는 자를 말한다. 전에는 각관청의 城上이나 各殿房直 등의 일을 其人(質子)이 맡았는데 世宗 4年 3月부터 各殿에 供上할 負木 및 繕工監 助役·各處의 炊料用 負木 등 其人이 하던 일을 奴子가 맡게 하였다(《世宗實錄》 권15-15, 세종 4년 3월 기묘).

587) 守僕은 여러 壇廟나 陵寢의 청소를 맡은 자들로서 세종 20년 3월, 고려이래의 上所라는 호칭을 개칭한 것이다. 개칭의 명분은 周禮 夏官 隸僕徒를 모방한 것이라 하였다(《위의 책》 권80-26, 세종 20년 3월 정해).

588) 水工은 궐내에서 물기는 일을 맡은 자이다.

589) 別監은 궐내 各 差備의 한 部類로서 掖庭署와 掌苑署에 소속하되 諸宮殿에 배치되었다(한우근의 4인, 《앞의 책》, p.139). 定宗 2年 11月(太宗 卽位年 11月) 門下府郎舍 孟思誠 등의 上言에 의하면 微賤한 무리들이 임금 가까이서 심부름할 수 없다고 하고 司謁·司鑰 등은 奉書之官으로서 7品階로 하고 內侍別監 중 廉謹端正한 자로서 그 자리를 채우자고 하였다(《定宗實錄》 권6-7, 정종 2년 11월 계유). 世祖 元年 11月 大殿을 비롯한 各 宮殿에 別監을 配定하였는데 그들에게는 7品 이하의 遞兒職을 주었으며 掖庭署와 慶昌府 및 上林園(후일掌苑署)으로 나누어 소속시켰다(《世祖實錄》 권2-42, 세조 원년 11월 갑신).

590) 文昭殿은 仁昭殿을 개칭한 곳이다. 太祖 7年 11月 節妃 韓氏를 神懿王后로 追尊하여 別殿에 奉安하고 이를 仁昭殿이라 하였는데(《太祖實錄》 권15-9, 태조 7년 11월 계미), 이 仁昭殿을 太宗 8年 8月 文昭殿으로 改稱하였다(《太宗實錄》 권16-8, 태종 8년 8월 신축). 文昭殿에는 그후 太祖와 太宗의 位牌가 奉安되었다(《世宗實錄》 권58-10, 세종 14년 10월 갑인 및 권59-48, 세종 15년 3월 무진).

591) 多人廳은 宦官의 處所이다. 세종 5년 2월의 闕內信符佩持人數에는 內侍府로 기록되었다(《위의 책》 권19-14, 세종 5년 2월 신유). 多人은 원래 궐내 供役人의 호칭이라 한다(한우근의 4인, 《앞의 책》, p.130).

592) 燈燭色은 궐내에서 등축을 밝히는 일을 하는 자이다.

593) 水賜間은 궐내청소를 맡은 무수리(水賜伊)들의 處所를 말한다. 水賜 즉 水賜伊(무수

廳, 水工 18인 2인은 茶房,⁵⁹⁵⁾ 12인은 多人廳, 別監 46인 4인은 洗手間,⁵⁹⁶⁾ 4인은 水賜間, [增] 東山別監 2인은 掖庭署에 속하고 承政院에서 추천 하여 임명하며, 2인은 掌苑署에 속하여 本署에서 임용 후보자를 보고 한다.

【王妃殿】 [原] 飯監 4인 2인은 多人廳, 別司饗 6인 2인은 多人廳, 湯水色 4인 2인은 多人廳, 牀排色 4인 2인은 多人廳, 炙色 4인 2인은 多人廳, 飯工 6인 4인은 多人廳, 泡匠 2인, 酒色 2인, 茶色 2인, 餅工 2인, 蒸色 4인 2인은 多人廳, 燈燭色 4인, 城上 8인 4인은 銀器, 4인은 多人廳, 水工 6인 2인은 多人廳, 別監 16인

【世子宮⁵⁹⁷⁾】 [原] 飯監 4인 2인은 多人廳, 別司饗

리)는 各司奴婢 중 童女를 데려다가 闕內에서 일을 맡긴 자이고 童男의 경우는 巴只라고 하였다(한우근의 4인, 《앞의 책》, p.141 및 《太宗實錄》 권22-51, 태종 11년 윤12월 戊午).

594) 銀器는 궁중에서 사용하는 銀그릇을 보관하는 곳이다.

595) 茶房은 임금의 술시중 또는 儀式時의 酒禮進爵을 맡은 官員이 있는 곳이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737). 太宗 11年 11月 임금이 처음 벼슬하는 자를 모두 茶房에 소속시키도록 명령하였다. 그때 吏曹判書 李稷이 進言하기를 지금의 茶房은 고려 때의 阿介赤로서 阿介赤에 근무하는 자는 모두 庸人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士大夫의) 子弟들이 茶房에서 근무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여 이같은 王命이 있게 된 것이다(《太宗實錄》 권22-35, 태종 11년 11월 경신). 太宗 14年 12月 茶房에 명령하여 兩殿에 茶소를 배치도록 한 일도 있다(《위의 책》 권28-46, 태종 14년 12월 임진). 세종 29년 3월 茶房을 司尊院으로 改稱하였으나(《世宗實錄》 권115-15, 세종 29년 2월 병진) 경국 대전에서는 도로 茶房으로 하였다. 단종 즉위년 5월에는 內直院과 司樽院에 있는 자들을 內禁衛·忠義衛·忠順衛·別侍衛 등 部類와 더불어 成衆官이라 하였다(《端宗實錄》 권1-2, 端宗 즉위년 5월 을유).

596) 洗手間은 闕內의 변소를 말한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738). 一說은 글자 그대로 세수하는 곳으로 보았다(조선총독부, 《앞의 책》, p.723).

597) 世子宮은 世祖 8年 12月에 처음 落成되었는데(《世祖實錄》 권29-30, 세조 8년 12월 경오), 그 이전에는 世子가 大殿이나 中宮殿에 함께 거처한 듯하다(주573). 世子라는 호칭은 세종 16년 4월, 임금을 殿下, 中宮은 王妃, 東宮을 世子라고 부르도록 한

4인 2인은 多人廳, ○ 兩宮⁵⁹⁸(世子와 世子嬪)이면 2명을 더한다.
 湯水色 4인 2인은 多人廳, ○ 兩宮이면 2명을 더한다. 牀排
 色 4인 2인은 多人廳, 炙色 4인 2인은 多人廳, 飯工 6인
 4인은 多人廳, 泡匠 2인, 酒色 2인, 茶色 2인, 餅
 工 2인 兩宮일 때 둔다, 蒸色 4인 2인은 多人廳, 燈燭色
 2인, 城上 10인 2인은 水賜間, 4인은 銀器, 4인은 多人廳, 水
 工 4인 2인은 多人廳 ○ 兩宮이면 2명을 더 둔다, 別監 18인
 3인은 洗手間, 3인은 水賜間.

【世孫宮⁵⁹⁹】 [續] 飯監 2인, 燈燭色 겸 酒色
 2인, 城上 2인, 別監 10인, 水賜間別監 世子宮
 의 水賜間別監이 겸한다.

【跟隨⁶⁰⁰】 [原] 大闕 안에서는 大君에게는 4명, 王子君에게는 3명,

데서 비롯된다(《世宗實錄》 권64-4, 세종 16년 4월 을묘).

598) 兩宮은 世子와 世子嬪을 합칭한 말이다. 임금과 왕비를 兩殿이라 합칭하는 것과 같
 은 이치이다.

599) 世孫宮은 英祖때 世孫(후일의 正祖)을 위해서 만든 궁이다.

600) 跟隨는 大君이하 宗親이나 文武官員을 수행하는 奴子이다. 《經國大典》에서는 根隨
 라고 하였으며 《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에서는 根과 跟은 같은 말로서 追蹤而隨
 也라 하였다. 世宗 원년 3월, 根隨의 數를 처음 定할 때 大君은 公私行간에 모두 10
 인, 正1品은 9인, 從1品 8인, 正2品 7인, 從2品 6인, 正3品內 僉摠制 이상은 4인, 기
 타는 3인, 代言(承旨)이 王命을 出納할 때는 從2品例에 의하고, 從3品에서 6品까지는
 2인으로 하며, 7品에서 9品까지 및 양반으로서 관직이 없는 자는 1인으로 하였다. 또
 雨雪日에는 2명씩 더하는 등으로 예외가 있었다(《世宗實錄》 권3-17, 세종 원년 3월
 무신). 文宗 元年 7月, 兵曹의 보고에 의거한 의정부의 啓에 나타난 《續六典》의 규정
 을 보면 朝官이 宮門을 出入할 때에 2品 이상은 根隨 각 2명, 3品 이하는 각 1명을 거
 느리도록 하였다(《文宗實錄》 권8-38, 문종 원년 7월 병진). 《經國大典》 刑典 跟隨
 條 本文의 數는 대체로 官階를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參上官 이상(예외로 景연관)
 에게 배당된 跟隨의 수를 정했고, 그 註에서는 官職을 기준으로 畿내 畿외로 나누어서

宗親과 文武官 堂上官에게는 2명, 3품 이하에게는 1명으로 하고, 大闕 밖에서는 모두 公私間에 대군에게는 13명, 왕자군에게는 12명, 1품에게는 10명, 2품에게는 9명, 3품 당상관에게는 7명, 3·4품에게는 5명, 5·6품에게는 4명, 7품 이하에게는 3명으로 한다. 【大君】 10인 【王子君】 8인 【1品】 宗親 6인, 文武官 5인 【2品】 宗親 5인, 文武官 4인 【3品】 宗親 3인 堂上官에게는 1인을 더한다. 文武官 2인 堂上官에게는 1인을 더한다. 【4品】 宗親 2인, 文武官 1인 【5·6品】 宗親과 文武官 각 1인 經筵에 참여하는 官員이면 9품에 이르기 까지 각 1인.

【諸司의 差備奴와 跟隨奴의 定額⁶⁰¹⁾】 [原]

【差備奴】 서울에 사는 奴(京奴) 및 지방에서 뽑아 올린(選上) 奴로서 充定한다. 跟隨奴도 이와 같다. 뽑아 올린 것이 부족한 곳에서는 補充隊의 人員으로서 充定한다. ○ 매번 刑曹에서 京奴가 늘고 주는 것을 살펴서 뽑아 올릴 숫자를 정하여 그 數를 갖추어 임금에게 보고한다.

〔續〕 差備奴와 跟隨奴로서 經國大典에서는 모두 公賤을 뽑아 올려 立役시켰으나 지금은 서울사람을 선정하여 일을 맡기고 매달 布를 준다.

거느리고 갈 수 있는 跟隨의 최대한의 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參下官職者 중에서도 參上官階者가多數있으므로 7품 이하에게도 跟隨를 두도록 註에 明示한 듯하다.

601) 諸司差備奴와 跟隨奴의 定額은 서울의 각관청에 배정된 差備奴와 跟隨奴의 定數(T/O)이다. 모두 91개 관청이고 差備奴 2,416명 跟隨奴 약 1,478명으로 합계 3,894명이다. 이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노비와 지방에서 뽑아 올린 노비로 充定하였으나 《續大典》에서는 서울사람을 差定(雇立)하여 매월 布를 주도록 하였다(跟隨奴의 定數에는 加減이 있음).

【宗親府】 人員에 정해진 數(定額)가 없으므로 人員이 增加하면 跟隨도 늘이고 人員이 減少하면 跟隨도 줄인다. 忠勳府와 儀賓府도 이와 같다. ○ 差備奴 10인, 跟隨奴 552인.

【議政府】 差備奴 24인, 跟隨奴 36인. 【忠勳府】 差備奴 17인, 跟隨奴 130인. 【儀賓府】 差備奴 8인, 跟隨奴 14인. 【敦寧府】 差備奴 8인, 跟隨奴 31인. 【中樞府】 差備奴 12인, 跟隨奴 93인. 【義禁府】 差備奴 11인, 跟隨奴 10인. 【吏曹】 差備奴 12인, 跟隨奴 17인. 【戶曹】 差備奴 17인, 跟隨奴 20인. 【禮曹】 差備奴 15인, 跟隨奴 17인. 【兵曹】 差備奴 69인, 跟隨奴 22인. 【刑曹】 差備奴 15인, 跟隨奴 22인. 【工曹】 差備奴 14인, 跟隨奴 17인. 【漢城府】 差備奴 11인, 跟隨奴 15인. 【司憲府】 差備奴 12인, 跟隨奴 34인. 【都摠府】 差備奴 26인, 跟隨奴 12인. 【忠翊府】 差備奴 7인, 跟隨奴 2인. 【五衛將】 差備奴 20인. 【內侍府】 差備奴 21인, 跟隨奴 37인. 【承政院】 差備奴 9인, 跟隨奴 18인. 【掌隸院】 差備奴 7인, ○ 差備奴 262인은 여러 곳으로 보낼 人員이다. 跟隨奴 10인. 【司諫院】 差備奴 7인, 跟隨奴 8인. 【經筵】 差備奴 6인. 【弘文館】 差備奴 11인, 跟隨奴 21인. 【藝文館】 差備奴 5인. 【成均館】 差備奴 38인, 跟隨奴 15인. 【訓練院】 差備奴 12인, 跟隨奴 15인. 【尙瑞院】 差備奴 4인, 跟隨奴 1인. 【春秋館】 差備奴 3인. 【承文院】 差備奴 12인, 跟隨奴 9인. 【通禮院】 差備奴 9인, 跟隨奴 22인. 【奉常寺】 差

備奴 151인, 跟隨奴 10인. 【宗簿寺】 差備奴 10인, 跟隨奴 4인.
 【校書館】 差備奴 12인, 跟隨奴 5인. 【司饗院】 差備奴
 11인, 跟隨奴 5인. 【內醫院】 差備奴 7인, 跟隨奴 7인. 【尙
 衣院】 差備奴 65인, 跟隨奴 7인. 【司僕寺】 差備奴 14인,
 跟隨奴 8인. 【軍器寺】 差備奴 200인, 跟隨奴 12인. 【內資
 寺】 差備奴 79인, 跟隨奴 7인. 【內贍寺】 差備奴 63인, 跟隨
 奴 7인. 【司導寺】 差備奴 17인, 跟隨奴 6인. 【禮賓寺】
 差備奴 100인, 跟隨奴 13인. 【司贍寺】 差備奴 17인, 跟隨奴 6
 인. 【軍資監】 差備奴 32인, 跟隨奴 12인. 【濟用監】 差
 備奴 35인, 跟隨奴 7인. 【繕工監】 差備奴 52인, 跟隨奴 7인.
 【司宰監】 差備奴 30인, 跟隨奴 6인. 【掌樂院】 差備奴
 7인, 跟隨奴 5인. 【觀象監】 差備奴 13인, 跟隨奴 11인. 【典
 醫監】 差備奴 13인, 跟隨奴 9인. 【司譯院】 差備奴 9인, 跟
 隨奴 10인. 【世子侍講院】 差備奴 6인, 跟隨奴 5인. 【宗
 學】 差備奴 6인, 跟隨奴 4인. 【修城禁火司】 差備奴 10인,
 跟隨奴 5인. 【典設司】 差備奴 6인, 跟隨奴 6인. 【豐儲倉】
 差備奴 19인, 跟隨奴 2인. 【廣興倉】 差備奴 9인, 跟隨奴 2인.
 【典艦司】 差備奴 16인, 跟隨奴 6인. 【典涓司】 差備奴
 48인, 跟隨奴 5인. 【內需司】 跟隨奴 4인. 【翊衛司】 差
 備奴 4인, 跟隨奴 8인. 【昭格署】 差備奴 44인, 跟隨奴 3인.
 【宗廟署】 差備奴 14인. 【社稷署】 差備奴 9인, 跟隨奴
 1인. 【平市署】 差備奴 4인, 跟隨奴 1인. 【司醞署】 差備

奴 10인, 跟隨奴 2인. 【義盈庫】 差備奴 15인, 跟隨奴 2인. 【長興庫】 差備奴 14인, 跟隨奴 2인. 【水庫】 差備奴 6인, 跟隨奴 4인. 【掌苑署】 差備奴 22인, 跟隨奴 4인. 【司圃署】 跟隨奴는 現在員의 職品에 따라 加減한다⁶⁰². 差備奴 120인, 跟隨奴 8인. 【典牲署】 差備奴 29인, 跟隨奴 1인. 【司畜署】 差備奴 36인, 跟隨奴 3인. 【造紙署】 差備奴 90인, 跟隨奴 5인. 【惠民署】 差備奴 12인, 跟隨奴 2인. 【圖畫署】 差備奴 5인, 跟隨奴 2인. 【典獄署】 差備奴 4인, 跟隨奴 1인. 【活人署】 差備奴 14인, 跟隨奴 4인. 【瓦署】 差備奴 97인, 跟隨奴 3인. 【歸厚署】 差備奴 29인, 跟隨奴 6인. 【四學】 差備奴 各 10인, 跟隨奴 各 2인. 【五部】 差備奴 各 4인, 跟隨奴 各 1인. 【文昭殿】 差備奴 7인.

【外奴婢⁶⁰³】 [原] 元定數(元額)에 미달되면 다른 곳에 주지 아니

602) 參外官에게는 跟隨가 없으므로 司圃署에 別提(6品)를 두게 되면 加하고 別檢(8品)을 두게 되면 減한다는 뜻이다(《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

603) 外奴婢는 일명 官奴婢라고도 하는 邑奴婢 및 營奴婢와 校奴婢·驛奴婢 등 각 지방관청 소속의 公奴婢를 말한다. 外奴婢의 定額은 太宗 13年 4월에 처음 정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景國대전 外奴婢條의 定額을 규정한 것이다(해설편 25, 노비(3) 참조). 다만 鄉校奴婢의 定數는 太宗 13年 11월에 처음 정하였는데 留守官 20戶(60丁), 大都護府와 牧 15戶(45丁), 都護府 10戶(30丁), 知官 7戶(21丁), 縣令·縣監 5戶(15丁)를 초과하면 노비가 없는 鄉校로 移屬시켜서 定數를 채우게 하였다(《太宗實錄》 권 26-38, 태종 13년 11월 정해). 太宗 17年 5월에 鄉校奴婢 定數를 다시 定하였는데 留守官 30명, 大都護府와 牧官 25명, 單府官 20명, 知官 15명, 縣令·縣監 10명으로 그 나머지는 모두 典農寺에 소속시켰다(《위의 책》 권33-35, 태종 17년 5월 戊子). 驛奴婢는 世宗 2年 8월 경기도와 충청도 및 강원도·황해도의 여러 驛에 각각 최고 20戶, 보통은 10戶·8戶·6戶(各戶는 正役 1명과 奉足 2명)씩 주었던 것으로 비롯된다(《世宗實錄》 권9-3, 세종 2년 8월 무신). 世宗 10年 正月에는 평안도 각 驛에 補充

한다. 604)

兵馬節度使鎮 200명 ○ 水軍節度使鎮 120명
 ○ 府 600명 ○ 大都護府와 牧 각 450명
 ○ 都護府 300명 ○ 郡 150명 ○ 縣 100명
 ○ 屬縣 40명 ○ 府의 鄉校 30명 ○ 大都護
 府와 牧의 鄉校 각 25명 ○ 都護府의 鄉校
 20명 ○ 郡과 縣의 鄉校 각 10명 ○ 上等驛
 50명 ○ 中等驛 40명 ○ 下等驛 30명 ○ 水
 軍 20명

【殺獄⁶⁰⁵】 [續] 무릇 殺人에 관한 刑律은 비록
 의심나는 端緒가 있다 하더라도 推官⁶⁰⁶이 오직

軍과 革去된 寺社奴婢를 定屬시키되 보충군은 館夫라 하고 寺社奴는 轉運奴라 하여 3
 丁爲1戶로 하며, 每館에 6·7戶를 定하여 助役하도록 하고, 口分田으로서 근처의 軍資
 田을 주며 所耕田으로서 流亡絶戶人田과 閑田을 주자고 하였다(《위의 책》 권39-14,
 세종 10년 정월 경술).

604) 官房이나 功臣들에게 주는 賜牌奴婢를 흔히 外奴婢 중에서 골라 주는 경향이 있었으
 므로 지방 각 관청 노비의 定額이 미달될 때에는 다른 곳에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각 지방의 官奴婢가 많이 부족하여 거의 定數의 반의 반도
 채울 수 없었다(해설편 25 노비(3) 참조).

605) 殺獄條에서는 殺人罪에 관한 實體法과 節次法을 규정한 것이다. 《經國大典》 刑典
 에서는 전혀 규정을 두지 않고, 《大明律直解》 刑律 卷19 人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
 도록 하였으나 《續大典》 刑典에서 새로 여러 條文을 두어서 우리 刑法의 특수성을 나
 타내고 있다.

606) 推官은 죄인을 訊問하는 官員으로서 조선중엽 이후의 推案·鞫案을 살펴보면 領中
 樞府事 및 領議政 이하 10수 명의 堂上官과 2명·4명 또는 6명의 (別)問事郎廳(주로
 校理·修撰 등 玉堂의 官僚와 吏·兵曹의 正郎 등 銓郎 및 侍講院의 判書 등 清宦임)
 ·1명 또는 2명의 (別)刑房(義禁府都事)·1명 또는 2명의 文書色(義禁府都事) 등으로
 訊問團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別)刑房과 文書色 등은 죄인을 데려오거나 文書(推
 案作成) 등을 맡은 자들로서 推官이 아니고 推官은 鞫廳에 참여하는 大臣과 의금부 당

自白(承款)에만 기대 하여 細細하게 追究하지 말아야 한다. 詳覆⁶⁰⁷⁾ 후에도 세번 審理하(여 임금에게 아뢰)는 등(三覆啓⁶⁰⁸⁾) 심리를 신중히 하는 것은 대체로 恤刑⁶⁰⁹⁾하는 까닭인데 만약 살인에 관계되는 데도 신중히 심리하지 아니하고 法(三尺⁶¹⁰⁾)을 적용하면 이 어찌 왕자의 道理이겠는가. 일찍이 情狀을 참작하고 法에 비추어 減刑하는 따위는 비록 續大典의 法條文에 없으나 이는 刑曹의 臚錄⁶¹¹⁾에 갖추어 있다. 무릇 啓覆에 있어서는 情狀을 참작하고 法에 비추어 前例를 살펴서 하되 自白에만 의거하지 말고 소상하게 밝히는데 힘 써서 임금에게 품의하여 결재를 받으라. 英宗 甲

상관 및 兩司의 長官·承旨 등을 의미하며(《推案·鞫案》 12冊~19冊 참조) 아주 좁은 의미로는 의금부 당상관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金自點等逆獄推案四, 辛卯, 12月17日, 上曰諸大臣·推官·兩司長官之意如何). 高宗 7年の 《銀臺條例》 刑攷에서는 問郎을 의금부에서 差下(선임)하며 親鞫時에는 8명, 庭鞫時에는 6명, 推鞫時에는 4명으로 하되, 문서가 많고 번잡하면 더 뽑는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推官의 補佐官이라 할 수 있다.

607) 주 98 (詳覆) 참조.

608) 주 99 (三覆啓) 참조.

609) 恤刑은 刑의 施行을 엄정하게 하되, 가혹한 고문행위를 排除하고 죄수를 신중하게 다루어 慰撫하는 것을 말한다. 《大典通編》 刑典 推斷條에 여러가지 가혹한 行刑을 禁하도록 규정하였다.

610) 三尺은 法令을 의미한다. 옛날에 三尺의 竹簡에 法律(律令)을 써두었으므로 法令을 三尺이라 하게 된 것이다.

611) 臚錄은 베낀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法令集을 의미한다. 永久不變의 法을 “典”으로表記한 반면 일시적으로 시행될 法을 “錄”으로 기록하였는데 《典錄通考》 刑典 殺獄條에 의하면 〈受教輯錄〉과 〈新補受教〉에서 여러가지 情狀을 참작하여 또 法感情(道德律)에 비추어 死罪를 減刑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중 일부만 《續大典》에 등재되었고 나머지는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子年(英祖 20년)의 下敎이다. ○ 殺人事件(殺獄)에 관계되는 것은 매우 중대하니 반드시 상세하고 신중하게(審理)해야 하므로 나이가 차지 아니한 아이 15세 이하는 證人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 故意的인 殺人者에게는 모두 保辜期限(辜限⁶¹²)을 적용한다. ○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형이 아우를 죽이더라도 그 犯意가 흉악하고 참혹한 경우에는 모두 鬪毆殺의 律⁶¹³로 論罪한다. 자녀를 죽이고자 꾀(謀殺⁶¹⁴)하였으나 實行하지 못한 자는 먼 땅으로 定配한다. ○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형이 아우를 죽이는 罪는 杖刑이나 徒刑에 그치는 것이 法制의 본 뜻(本意)이나 先朝의 受敎(法律)에서 一罪(死罪)로⁶¹⁵ 定하였음은 대개 그 惡함을

612) 辜限은 保辜期限을 말한다. 사람을 구타하여 傷害를 입힌 경우에 官에서는 그 凶器의 種類 및 상처의 상태 등을 참작하여 保辜期限을 定해서 被害者의 상처를 치료하게 함과 동시에 그 기간중에는 加害者에 대한 罪名의 결정을 保留하였다가 被害者가 그 기간내에 死亡하면 殺人罪를 적용하고 그 期限이 지난후에 死亡하면 傷害罪를 적용한다는 것이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p.730~731). 保辜期限에 관해서는 《大明律直解》 刑律 권20 鬪毆 保辜限期條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光武 9年(1905年)의 刑法大典 제25조에서도 保辜期限을 규정하였다.

613) 鬪毆殺의 律이란 《大明律直解》권19, 刑律 人命, 鬪毆及故殺人條를 말하는데 故意로 殺人한 경우에는 斬刑에 처하고, 傷害致死·暴行致死(싸우다가 죽인 경우)일지라도 絞刑(이상 死刑)에 처하며 實行하지 않고 共謀만 한 자는 流刑 또는 杖刑에 처하도록 하였다. 鬪毆의 뜻에 관하여 《위의 책》권20, 刑律 鬪毆條에서는 相爭을 鬪, 相打를 毆라고 定義하였다.

614) 謀殺을 “죽이려고 꾀(계획)한다”로 번역하였는데 光武 9年(1905年)의 刑法大典(法律 第2號 刑法 1905.4.29)에서는 謀殺人律(473~476조)과 故殺人律(477조~478조) 및 鬪毆殺人律(479조~481조)을 節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또 同法(法例 用法 範圍, 名稱 分析) 제45조에서는 謀라 稱함은 “1인 혹은 2인 이상이 密計함을 謂함이라”하였고 同47조에서는 “故라 稱함은 用意恣行함을 謂함이라”고 하였다. 現行刑法에서는 謀殺이든 故殺이든 모두 故意的인 殺人이므로 살인죄로 통일한 것이나, 日帝時代의 日本 刑法에서도 위와 같이 謀殺과 故殺을 구분한 바가 있었다.

615) 一罪 一律이란 모두 死刑에 해당하는 큰죄라는 뜻이다(李家源外 2人, 《東亞漢韓大辭典》, p.10). 《大明律直解》 권19, 刑律 人命 謀殺 祖父母·父母條에 尊長이 아랫사람

懲治하고자 함이요 그 자식의 생명으로 報償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후로는 한결같이 法文에 의하여 시행하되 만약 情狀이 아주 나빠서 특별한 방법(別樣)으로 처단하지 않으면 안될 자는 담당 官員이 수시로 품의하여 決定하도록 한다. ○ 繼母가 그 남편을 使嗾하여 (前妻의) 子女를 故意로 죽인 (故殺) 경우에는 一律(死刑)로 論罪한다. 妖妄한 妾에게 매혹되어 그의 妻와 딸을 쫓아내었으므로 그 딸이 마침내 乞(乞丐)가 되어 상놈(常漢)에게 시집가서 子女를 낳아서 자라난 후에 그 子女를 거느리고 나타났으나 그 아버지가 家門을 더럽혔음을 미워하여 그 外孫을 몰래 죽였을 경우에는 그 요망한 妾과 함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絞首한다. ○ 妻父母를 죽인 자는 總麻親을 計劃的으로 죽인(謀殺) 刑律⁶¹⁶로 論罪한다. ○ 妻의 上典을 죽인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斬首한다. 죽이고자 꾀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자는 年限을 정하지 아니하고 먼 邊方으로 定配한다. ○ 미치광이가 精神을 잃고 殺人한 경우에는 死刑을 減輕하여 定配한다⁶¹⁷. 殺人者가

(族下·卑幼)을 謀殺한 경우, 未遂者(實行着手者)는 故殺罪에서 減2等, 致傷케한 자는 減1等, 이미 殺害한 자는 故殺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法制의 본뜻(制法本意)이 杖刑과 徒刑에 그친다고 한 것은 殺人未遂에 관한 위 大明律의 규정을 의미한 듯하나 여하간 《續大典》에서는 殺人未遂犯까지도 先朝의 受教에 따라 死刑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616) 總麻親을 謀殺한 律이란 《大明律直解》권19, 刑律 人命 謀殺 祖父母·父母條속에 규정되고 있는데 實行에 착수하였으나 死傷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단순 未遂犯은 杖100 流2000里, 傷害를 加한 자는 絞首刑, 殺害한 者는 斬首刑에 처하도록 하였다. 總麻親이란 本宗의 衆孫妻, 曾孫, 玄孫, 從兄弟妻, 姪孫妻, 5·6寸大父 및 妻, 5·6寸大姑母, 堂姪妻, 曾姪孫, 7·8寸, 6寸孫과 外親생질의 처, 外4寸 그리고 妻父母·사위 등을 말하며 女子의 경우 시댁의 증조부모, 고조부모, 시4寸과 그 妻, 시증조부모, 시5寸숙부모, 시堂姑와 시당질, 시6·7촌 등이다(《經國大典》禮典, 五服).

617) 《大明律直解》卷1, 名例律, 老少廢疾收贖條에서는 80세 이상, 10세 이하 및 篤疾

귀머거리나 병어리라서 推問할 수 없다고 하여 自白을 받지 아니하고 곧바로 먼저 處斷함은 通常的인 法에 어긋남으로 역시 이 律에 依(減死定配)한다.

○ 이웃 집 아이가 서로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죽게 되었으나 犯人의 나이가 10세 미만이면 그 죄를 용서(分揀)한다. [增] 10세 이상 15세 이하인 자가 장난으로 인하여 殺人한 경우에는 次律(流刑)로 刑의 등급을 減輕한다⁶¹⁸. ○ 그의 어머니와 他人이 몰래 姦通하여 그 아들이 姦通場所에서 姦夫를 찢러 죽였을 경우에는 (情狀을) 參酌하여 定配한다⁶¹⁹. ○ 그의 아버지가 他人에게 毆打 당하여 傷處가 重해서 그 아들이 그 사람(犯人)을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死刑을 減輕하여 定配한다. ○ 그의 아버지가 被殺되어 (殺人事件을) 審理·裁判하게 되었는데도(成獄⁶²⁰) 調査와 審判(究覈)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그 원수(讐人)를 죽인 경우에는 死刑을

(미치광이 포함)인자가 反逆罪나 殺人罪를 범하여 死刑에 처해야 할 경우에 임금에게 아뢰어 贖罪金을 받고 死刑을 免할 수 있게 하였는데 《續大典》에서는 이를 減死定配로 규정하였다.

618) 《大明律直解》 권19 刑律 人命 戲殺 誤殺 過失殺傷人條에 의하면 나이의 구별없이 장난치다가 죽인 경우에도 鬪毆 及 故殺人罪를 適用하여 絞首刑이나 斬首刑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續大典》에서는 이웃 아이들 끼리 장난치다가 죽인 경우, 10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고 또 《大典通編》에서는 10세 이상 15세 미만은 次律(流刑)로 減輕하여 처벌하도록 특별히 규정하였다.

619) 《大明律直解》 권19 刑律 人命 殺死奸夫條에 의하면 妻妾과 간통한 姦夫를 姦通現場에서 죽였을 때에 그 犯人이 本夫人인 경우에는 論罪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 犯人이 本夫의 아들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서 일반 故殺罪로 死刑시키기는 가혹하므로 이와 같이 《續大典》에서 특별히 규정을 준 것이다.

620) 成獄이란 살인사건을 재판하는 것 즉 殺獄을 成立시키는 것을 말한다.

減輕하여 定配한다⁶²¹⁾. 그의 아버지가 被殺되었는데도 官에 申告하지 아니하고 讐人과 더불어 사사로이 和解하여 葬禮費用을 받고 오랜 후에 讐人을 함부로 죽여서 復讐한 경우에는 復讐律⁶²²⁾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私和律⁶²³⁾을 적용하여 杖 100 徒 3년에 처한다. ○ 그의 아버지와 他人이 싸우다가 물려서 傷處가 썩어 60일이 지난 후에 죽게 되었는데도 그 자녀와 며느리가 그 讐人을 함부로 죽였을 경우에는 大明律 附例에서 팔다리와 몸에 傷處를 입혔으면 20일간의 保辜期限을 더한다는 例(50일이 지난 후에 죽으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 의하여 그의 아들에게는 단지 함부로 殺人한 경우의 本律을 적용하고 그 며느리와 딸의 罪는 分揀(용서)한다⁶²⁴⁾.

○ 아내가 남편의 怨讐에게 復讐하고 어머니가 아들의 怨讐에게 復讐하여 그 讐人을 함부로(제멋대로) 죽인 경우에는 子孫이 行凶人(祖父母와 父

621) 父母를 죽인 원수는 不俱戴天之讐(父之讐弗與共戴天)라 하여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것이 儒教倫理(禮記, 曲禮上)이므로, 父母 위한 복수라면 비록 殺人한 것일지라도 용서받아야 하겠지만 公權力에 의한 처단을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죽였으므로 減死 定配한다는 것이다. 《大明律直解》 권20 刑律 鬪毆 父祖被毆條에서도 祖父母와 父母가 남에게 被殺되었을 경우 그 子孫이 殺人者(行凶人)를 함부로(제멋대로) 죽이면 杖 60에 처하고 범행현장에서 즉시 살인범을 죽이면 不問에 부쳤다. 《續大典》에서 귀양을 보내도록 한 것은 官에서의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제멋대로 죽인 데 대한 처벌일 뿐이다.

622) 復讐律이란 《大明律直解》 권20 刑律 鬪毆 父祖被毆條를 말한다.

623) 《大明律直解》 권19 刑律 人命 尊長爲人殺 私和條에 의하면 祖父母나 父母를 죽인 원수와 사사로이 和解한 자식과 손자는 杖100, 徒 3년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를 私和律이라 한다.

624) 이는 《大明律直解》 권20 刑律 鬪毆 保辜限期條를 적용함을 의미한다. 保辜限期가 지난후인 60일후에 피해자가 죽은 경우에는 犯人을 死罪에 처할 수 없는데도 복수를 핑계삼아 그를 죽였을 경우에는 본래의 殺人律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단순 상해 경우의 保辜限期는 20일, 흉기 등을 사용하면 30일이나, 팔다리와 몸에 심한 상처를 입혔을 경우에는 20일을 더하여 50일이 된다. 며느리와 딸에게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중국과 다른 특징이다.

母를 죽인 怨讐)을 함부로 죽인 律⁶²⁵⁾에 의하여 杖 60에 처한다. ○ 官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의 奴婢를 함부로 죽인 자에게는 大明律의 杖刑과 徒刑의 法을 적용하되⁶²⁶⁾ 그 (奴婢의) 同居家族(當房人口)을 모두 放免하여 良人으로 삼는다는 條文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婦女가 妬忌로 인하여 婢를 죽였을 경우에는 鐘路에서 刑杖을 친 후에 定配한다. [補] 거느리고 함께 사는(率接) 婢夫가 放恣하게 發惡하면서 말하는 것이 人情과 道理에 크게 어긋나서 (몹시 모질고 패악하여) 罪를 다스리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살인 사건으로 삼지(成獄) 아니한다. 몹시 모질고 패악하지는 아니한 罪를 다스리다가 우연히 죽게 되면 (加害者를) 刑具를 갖추어 조사한 후에 그 내용을 간단히 적어서 임금에게 품의하여 결정(草記稟決)을 받는다. ○ 雇主(雇傭主)가 雇工(머슴, 傭役人)을 죽였을 경우에는 보통 사람(平人)이 서로 죽인 경우에 비해서 1등급을 減刑하여 杖 100 流 3000리에 처한다⁶²⁷⁾.

625) 子孫이 行凶人(조부모나 부모를 죽인 怨讐)을 제멋대로 (함부로) 죽인 律은 《大明律直解》 권20 刑律 鬪毆 父 祖被毆條(杖 60)의 법규정을 의미한다.

626) 大明律의 杖刑과 徒刑의 法을 적용한다는 것은 《大明律直解》 권20 刑律 鬪毆 奴婢毆家長條 後尾에 “만약 노비가 有罪하여 家長이나 家長의 期親 혹은 外祖父母가 官에 신고(보고)하지 않고 그 노비를 때려 죽였으면 杖100에 처하고 죄가 없는 노비를 때려 죽였으면 杖60 徒1년에 처한다”는 것을 말한다. 同法條에서는 또 노비가 教令(가르침과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法에 따라 죄를 다스려 벌을 주다가 그로 인하여 致死하거나 過失(失錯)로 致死케 한 경우에는 論罪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627) 《위의 책》 같은 條에서는 “만약 家長 및 家長의 期親 혹은 外祖父母가 傭役人(머슴, 雇工)을 구타하여 致死케 한 경우에는 杖 100 徒 3년에 처하고 故殺인 경우에는 絞首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도 “만약 傭役人이 주인의 教令(가르침과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法에 따라 治罪 施罰하다가 致死케 한 경우와 過失致死의 경우에는 論罪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大典會通》 刑典 殺獄條에서는 雇主가 雇工을 죽였을 경우에는 보통 사람의 경우에 비하여 1등급 감경하여 杖 100 流 3000리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雇工에 관해서는 해설편 24 참조).

○ 明火賊을 즉시 때려 죽인 경우 외에는 官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사람을 죽인 자는 법에 따라 처벌(抵罪)한다. ○ 殺人事件에 있어서 賂物을 받고 私私로이 和解한 자는 本律⁶²⁸에 의거 그 罪를 조사한다. ○ 被殺人의 親族(親屬)이 正犯의 家舍를 때려 부수고 財物을 掠奪한 경우에는 强盜律⁶²⁹로 論罪하고 빼앗은 財産은 되돌려준다. ○ 지방의 살인사건은 觀察使가 道內의 剛直하고 明皙한 守令과 함께 조사하여 다스리도록 하되 그 것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금에게 보고하여 刑曹로 移牒해서 품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增] 지방에 있는 堂上官인 朝官이 殺人을 하면 해당 道의 觀察使가 임금에게 보고하여 訊杖을 치면서 調査(拷訊⁶³⁰)한다. [補] 內侍가 殺人에 관계되면 朝官의 例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獄官이 스스로 判斷하여 訊杖으로 推問한다.

[增] 殺人事件으로 罪人을 오랫동안 가두어 나이가 80이 찼는데다가 證據와 證人이 모두 없어졌을 경우에는 死刑을 減輕하여 定配한다. [補] 가둔 지가 오래되어 나이 70 이상이 된 자는 區別하여 임금에게 狀啓로 보고해서

628) 本律이란 私和律(주623)을 말한다.

629) 强盜律이란 《大明律直解》 권18 刑律 盜賊 强盜條를 말하는데 강도가 재물을 取得하지 못하면(未遂의 경우) 杖100 流3000리에 처하나 재물을 取得하면 主犯從犯 가릴 것 없이 모두 斬首한다.

630) 拷訊은 拷問과 같은 뜻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經國大典》 刑典 推斷條註에 써있는 그대로 訊杖을 정강이 밑으로 치면서(30度이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품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正宗 庚戌(正祖 14年)의 下敎이다.

○ 시집가지 아니한 處女가 他人에게 強姦 當하여 그의 父母가 그 犯人을 強姦 場所에서 때려 죽였을 경우에는 死刑에 처해야할 자를 제멋대로 죽인 律로서 杖 100에 처한다.

[補] 姦通한 證據를 姦通 場所에서 잡지 못하여도 남녀가 한방에서 같이 食事한 곳이 바로 그 姦通한 場所와 같다고 한다면 사건을 완결하지 말고 임금에게 狀啓로 아뢰어 품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檢驗⁶³¹⁾】 [續] 무릇 檢屍에 있어서 서울은 해당 部の 官員(部官)이, 지방은 地方官이 屍體가 머물러 있는 곳에 직접 가서 屍體의 상태를 檢閱(檢驗)한 후 확인서(立案)를 작성하여 준다. 致死者가 비록 다른 고을 사람일지라도 지방관은 例에 따라 檢屍해야 하며 다른 일을 핑개 삼아서 그 것을 回避할 수(推諉⁶³²⁾)가 없다. ○ 守令이 管下人을 때려서 致死케한 경우에는 영구히 임용하지 아니한다(永不敍用)는 律文이 본래 있으며 이러한 경우의 檢屍는 理致와 形便上 꺼리기는 것이므로 檢屍하지 아니 하도록

631) 人命에 관한 범죄가 있었을 경우에는 法官이 現場에 나아가서 피해자의 시체의 상처를 검열(檢屍)하게 되는데 이를 檢驗이라 하였다. 조선시대는 법률 전문직인 律官과 구별하여 주로 儒學을 공부한 三法司(형조·사헌부·한성부)의 관원이나 지방관을 法官이라고도 하였다.

632) 推諉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 또는 다른 일을 假託하여 해야 할 일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勿論) 한다. [增] 무릇 서울의 獄事(京獄)에 있어서의 檢驗은 일체 지방 고을의 예에 따라서 하되 備邊司의 事目으로 舉行한다. ○ 初檢과 再檢(覆檢)에서 死亡의 實因에 致死의 實際 原因을 말한다. 만약 의심스러운 端緒가 있으면 三四檢을 행한다. 서울에서는 覆檢을 漢城府의 堂下官이 하고 三檢은 刑曹에서 임금에게 품의하여 郎官을 파견해서 거행하도록 한다. ○ 지방에서는 觀察使가 派遣員을 定하여 覆檢을 행한다. [增] 사람을 죽여서 몰래 파묻은 경우에는 예에 따라 檢驗(檢屍)하지만 기타 이미 파묻은지 오래된 경우(已瘞者)에는 파서 檢屍하지 아니한다. ○ 일반적으로 마땅히 파서 檢屍해야 할 경우에도 곧바로 墳墓를 파서 檢屍(徑自開檢⁶³³)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먼저 임금에게 보고하고 거행해야 한다. ○ 初檢과 覆檢(의 狀況·內容)은 서로 알게 해서는 안되는(不敢相通) 법인데 檢屍하는 官吏가 사사로이 檢屍의 狀況 등 (意見 포함)을 漏泄한 (私自宣泄⁶³⁴) 경우에는 엄중히 刑杖을 친 후 定配한다. [補] 기타 이미 파묻은지 오래된 경우에는 檢屍하지 말라고 한 것은 白骨檢驗의 경우를 指稱한 것이고 만약 오래된 與否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이미 파묻은 것을 通稱한 것이라면 어찌 몰래 파묻은 것을 檢驗한다는 下教(法)이 있었겠는가. 앞으로 또 혹시 여러 해가 되어도 파서 檢屍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금에게 보고한 후에 시행하라. 正宗 丁酉(正祖 元年)의 下教이다. ○ 檢驗을 피하려고 꾀한 守令은 잡아다가 문초하여 엄중히 罪를 따져 묻는다. ○ 임금의 裁可를 받은 罪

633) 徑自開檢이란 檢屍하는 官員이 먼저 임금에게 보고하지 않고 곧바로 自身이 분묘를 파도록 해서 檢屍하는 것을 말한다.

634) 私自宣泄이란 처음에 檢屍하는 官員이 그 檢屍의 狀況 및 自己意見을 다음 檢屍하는 官員에게 제멋대로 말하여 그 내용을 누설함으로써 再檢屍人(覆檢하는 官員)으로 하여금 先入見을 갖게 하여 再檢의 의미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人(啓下罪人⁶³⁵)이 죽으면 해당 관청에서 漢城府로 공문을 보내어 檢屍한 후 간단한 보고서(單子)를 임금에게 올려서 보고한다. 單子⁶³⁶는 해당 관청에서 작성보고(舉行)한다. [增] 正職과 雜職인 사람의 妻와 士族의 婦女가 殺人罪를 범하여 비록 死刑(正法)에 처할지라도 檢驗은 하지 아니한다. 定配된 罪人이 죽으면 地方官이 직접가서 檢驗(檢屍)하여 監營에 보고해서 監營에서 이를 다시 임금에게 보고(轉啓)하여 아뢰도록 한다. 羅州의 黑山島는 羅州官門에서 물길(水路)로 千餘里이므로 때 맞추어 빨리 달려가서 檢屍할 수 없으므로 別將도 또한 印信官⁶³⁷이니 (혹산도)別將으로 하여금 빨리 달려가서 檢屍해서 監營에 보고하여 임금에게 아뢰도록 한다. [增] 鞠獄⁶³⁸ 이외로 定配된 宗親·勳臣·文官·蔭官·武官인 下大夫 이상 자⁶³⁹ 및 侍從臣을 지낸적이

635) 啓下罪人이란 처벌에 관하여 임금의 裁可를 받은 죄인을 말하는데 보통 刑曹에서 임금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는다.

636) 單子는 남에게 보내는 물건의 품목과 수량을 적은 종이 쪽지를 말하기도 하고 우주 만물을 조직한 客體의 實在의 요소를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보고내용을 간단히 적은 약식보고서를 말한다.

637) 印信官은 임금으로부터 임명받은 관원중 印信을 주고 받는 官員을 말한다. 여기서는 주로 지방 守令을 의미하나 武將인 別將도 印信官이라는 것이다. 地方官員이 임명될 때 그 印信은 관찰사이면 道境界상에서, 절도사와 첨사·만호이면 鎭門에서, 守令·察訪·驛丞·渡丞이면 그 관청(衙門)에서 新舊官이 대면하여 주고 받는다(《大典會通研究》 禮典編, 用印, 한국법제연구원, 1994.12, p.228).

638) 鞠獄이란 親鞠·庭鞠(주207)·推鞠(주108) 등 임금이 직접·간접으로 참여하는王府의 재판으로서 國事犯이나 綱常犯 등 重罪人에 대한 재판을 말한다.

639) 下大夫는 周禮의 九命중 四命에 해당된다. 夏殷周의 三代이래 公·卿·大夫·士·庶人의 신분계급이 있었고 그중 大夫는 唐宋代에는 從2品에서 從5品까지의 文散階를 말하고, 高麗文宗 때 이를 거의 그대로 繼受하였으나 忠烈王 이후 조선시대에 걸쳐서 4品 이상을 大夫, 그 이하를 郎(士)이라 하였다. 明나라에서도 從5品 이상 正1品까지를 大夫라 하였다. 大夫중에서 또 上大夫·中大夫·下大夫로 나누었는데 조선시대의 下大夫는 대체로 正3品 通訓大夫에서 從4品 都事까지를 말한다(《周禮》 卷21, 春官宗伯, 典命 및 《孟子集注》 권10, 萬章下와 《大唐六典》 卷2, 尙書吏部·《宋史》 권

있는 자는 비록 죽더라도 檢驗하지 아니한다. ○ 士族인 婦女도 이와 같다.

【姦犯⁶⁴⁰】〔續〕 무릇 姦犯에 관한 刑罰은 마땅히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나 (死刑囚가) 妊娠하였으면 出産을 기다려서 行刑한다. ○ 士族人이 總麻 이상의 친척⁶⁴¹이나 總麻이상 친척의 妻를 姦淫한 경우에는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絞首하며 大功 이상 친척⁶⁴²의 良妾을 간음한 경우에도 絞首한다. 常賤人이 妻母(丈母)를 간음한 경우에는 斬首하고 同母異父姊妹를 간음한 경우에는 絞首하며 伯叔父(從父)의

169. 志122, 職官9, 文散階·《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文散階·《明史》 권72, 志48, 職官1, 吏部, 文之散階). 大夫가 아니라도 侍從臣(주171)의 경우에는 (郎官이지만) 죽은 후 檢屍하지 아니한다.

640) 姦犯은 娶妻 또는 娶妾 이외의 男女의 性關係를 말하는데 지금의 姦通과 强姦事犯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士族인 경우 친 8寸 외 4寸이내의 친족이나 가까운 인척간의 간통을 모두 死刑에 처하도록 하였다. 常賤人도 丈母를 犯姦하면 역시 死刑에 처하였다. 그리고 婢夫가 妻의 上典을 犯姦하면 死刑에 처했으며, 士族女를 강간할 경우에는 主犯·從犯을 모두 既遂犯은 물론 未遂犯까지 死刑에 처하였다. 常賤인 女子를 강간하였을 경우에도 既遂인 主犯에게는 死刑에 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極邊爲奴 또는 杖100 流3000里 등에 처하도록 하였다. 《大明律直解》권25 刑律 犯奸 親屬相姦條에서도 近親相姦과 强姦事犯은 모두 死刑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續大典》에서는 士族과 常賤인의 경우를 나누어서 규정하여 士族女의 보호와 士族社會의 性道德 문란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

641) 석달간의 喪服을 입는 總麻親의 범위에 관해서는 주 616 참조.

642) 大功親은 本宗의 衆子の 妻, 衆孫, 姪妻, 4寸兄弟姊妹 등이고, 女子의 경우 시댁의 祖父母·衆子の 妻·嫡孫(長孫)·衆孫·시3寸 및 그妻·시댁姪妻(子나 嫡孫 또는 시3寸이나 시고모·시댁조카나 질녀 등이 16세에서 19세간에 죽었을 경우에도 大功), 친정의 兄弟姊妹·伯叔父母·고모·조카·질녀 등이다. 이들이 죽으면 9개월간 喪服을 입는다.

妻나 從兄弟의 妻를 간음한 경우에는 杖 100 流 3000리에 처한다. 남녀 모두 刑量이 같으며 强姦의 경우에는 남자는 斬首하고 여자는 罪를 주지 아니하며 모두 本律(大明律直解 권25 刑律 犯奸 親屬相姦條)에 의한다. ○ 士族인 婦女가 淫慾을 恣行하여 風俗과 敎化를 더럽히고 어지럽게한 경우에는 姦夫와 함께 絞首한다. 그 것이 窮迫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 道路에 떠돌아 다니면서 丐乞(丐乞)가 되어 남에게 몸을 의탁한 경우에는 常賤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士族으로 論할 수가 없으니 姦夫와 함께 推問하지 아니한다. ○ 婢夫가 妻의 上典을 姦淫한 경우에는 남녀 모두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斬首한다. 强姦의 既遂인 경우에는 남자는 같은 刑律에 처하나 여자는 罰하지 아니하며 未遂의 경우에는 (남자를) 때를 기다려서 斬首한다. 그러나 벼슬을 하지않은 庶人(閭巷人)의 婢夫이면 단지 妻로 삼아서 거느리고 살 경우에만 雇工(머슴)의 경우와 같이 論罪한다⁶⁴³). ○ 士族의 妻와 그 딸을 强姦하는 경우에는 强姦의 既遂 未遂를 막론하고 主犯과 從犯 모두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斬首한다. 士族의 妾과 그 딸을 强姦한 경우에도 같은 刑律이다. ○ 常賤인 여자를 强姦하여 既遂가 된 경우에는 主犯은 絞首하고 從犯은 그 자신에 한하여 極邊(國境地方)으로 보내어 奴婢로 삼으며 未遂인 경우에는 杖 100 流 3000리에 처한다. ○ 宮女가 外部人과 姦通하였을 경우에는 남녀

643) 閭巷人은 여염집 사람, 보통의 마을사람 등으로 볼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벼슬하지 않은 보통의 民間人(庶人)을 지칭한 것이라 하겠다. 雇工의 경우란 《大明律直解》 권 25 刑律 犯奸 奴及雇工人姦家長妻의 규정을 의미한다.

모두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斬首한다. 妊娠한 경우에는 역시 出産을 기다려서 行刑하되 産後 100일간의 例(行刑保留)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赦令⁶⁴⁴】 [續] 赦免令이 있을 때 마다 罪人을 放免하거나 放免하지 아니할 것을 서울에서는 刑曹와 義禁府에서, 지방에서는 觀察使가 등급을 나누어서 기록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 이미 配所에 도착하였거나 도착하지 못한 경우와 收監(囚禁)되지 못한 경우를 모두 擧論하되 配所에 도착하지 못한 서울과 지방의 時囚(그 당시 獄에 갇혀 있는 罪囚)로서 徒刑者 명부(案)와 流刑者 명부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서 조사해 내어 別單⁶⁴⁵으로 써넣는다. ○ 死刑이 減輕된 罪人을 觀察使가 放免할자와 混同하여 기록(混錄放秩⁶⁴⁶)한 경우에는 刑曹에서 상고하여 살펴 본다. [增] 配所에 도착하지 못한 罪人이 만약 赦免의 恩典을 받게 되면 發配地의 官員은 이를 적어서 임금에게 보고한다. 무릇 徒刑(徒年)에 해당되면 輕重을 막론하고 모두 放免한다. 減死 定配나 流 3000리를 막론하고 刑의 등급을 減輕하면 모두 徒年이 되므로 罪囚를 寬典으로서 處決(疏決⁶⁴⁷)할 때에 刑의 등급을 減輕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

644) 赦令條는 임금의 恩赦의 명령인 사면령에 관한 규정이다. 사면에는 常赦와 特赦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설편 14 經赦에 있다.

645) 別單은 임금에게 보고하는 문서(奏本)에 첨부하는 부속문서나 人名簿를 말한다.

646) 混錄放秩이란 大赦免令이 있을 때 放免할 죄수와 放免하지 못할 죄수를 구별하지 않고 뒤섞어서 기록해둔 것, 즉 방면못할 죄수를 방면할 죄수명단에 혼합하여 기록한 것을 말한다.

647) 疏決은 죄수를 寬典으로 處決하는 것을 말한다(조선총독부 《앞의 책》 p.736).

도록 힘써야 한다. ○ 무릇 特別赦免의 명령(宥旨)이 있기 전의 일은 임금이 (赦免의) 裁可를 하도록 啓請 한다. 犯罪가 赦免令이 있기 6개월 전인 경우와 사건의 발생이 사면령이 있기 6개월 후인 경우에는 모두 學論하지 아니한다. ○ 영구히 官職에 임명하지 아니할 자(永不除職者⁶⁴⁸)가 10년이 경과하여 赦免을 맞게 되거나 영구히 敍用되지 (벼슬하지) 못할 자(永不敍用者⁶⁴⁹)가 3년이 경과하여 赦免을 맞게 되면 임금에게 품의하여 지시를 받아 써넣는다. 大赦에는 이 제한에 구애 되지 아니한다. ○ 같은 죄로 귀양가게 되었으나 살아 있는 자는 放免되어 다시 벼슬하게 되었지만(收敍⁶⁵⁰) 죽은 자는 여전히 罪籍에 있으면(옳지 못함으로) 赦免令이 있을 때마다 의금부에서 罪目を 갖추어 別單으로 임금에게 품의하여 지시를 받는다. ○ 貪贓⁶⁵¹이 현저한 자는 守令이나 邊將의 官職이나 官階(職秩)의 高下를 막론한다. 비록 大赦를 만나도 審理하되 (사면대상자로) 기록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지 아니한다. ○ 代射나 代講⁶⁵²을 하여 定配된 자는 10년내는 赦免

648) 永不除職이란 官員에 대한 懲戒罰의 일종으로서 罪過있는 官員에 대해서 無期限으로 官職에 任命하지 않도록 하는 것(終身禁錮)을 말한다.

649) 永不敍用に 관해서는 해설편 13 참조.

650) 收敍는 收用하여 敍用한다는 뜻으로 거두어서 다시 官員으로 任用한다는 것이다.

651) 주 140 (貪贓) 참조.

652) 代射는 武科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활 잘쏘는 자를 내세워 활쏘기 시험을 대신 보게 하는 것을 말하고 代講은 文科의 講經시험(生進試에는 없음)에 있어서 經書에 밝은 사

하지 아니한다. 大赦의 경우에는 이 제한에 구애되지 아니한다. ○ 疏放은 赦宥⁶⁵³와 다르므로 그 때 조사받는 사람(時推人) 이외는 사건이 발각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로 赦免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贖良⁶⁵⁴】〔續〕公賤을 代口贖身⁶⁵⁵할 경우에는 代身할 奴婢의 여러 式年の 戶籍을 조사(相考)하여 이름이 확실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연 후에 나이가 서로 비슷한 자로서 인원수를 계산하여 奴는 奴로서 代身하고 婢는 婢로서 代身하게 한다. 만약 不正과 거짓이 탄로되면 그 해당자와 監官·담당 아전(色吏)·奴婢 頭目 등을 모두 杖 100 流 3000리에 처하고 守令은 削職⁶⁵⁶하며 觀察使는 罷職한다. 몸값을 치른 후(贖身 후) 10년내에 代

람을 대신 내세워 대리시험을 보게하는 것을 말한다.(講經시험에 관해서는 《大典會通研究》 禮典編 pp.487-488).

653) 疏放은 “疏決(주647)·放免” 즉 寬大하게 處決해서 罪人을 赦免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赦宥는 나라에 慶事가 있을 때 특별히 赦免令을 내려 죄수를 赦免하는 것을 뜻한다 (조선총독부 《앞의 책》 p.737).

654) 贖良은 몸값을 치르고 良人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해설편 25 노비 참조.

655) 代口贖身은 公賤이 贖良될 때, 각관청에서 所定의 노비수를 유지하여 公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병이 없고 性別이 같으며 나이가 비슷한 노비를 바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私奴婢에 있어서도 2品 이상자의 有子女 賤妾이나 大小員人(양반관료나 생원·진사·녹사 有蔭子孫)의 賤妾子女를 從良함에 있어서 代口贖身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해설편25 노비 참조).

656) 削職은 削奪官職을 의미하는데, 罷職이 단순히 官職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반하여 削職은 官職任命 자체를 처음부터 無效化시키는 것으로 그러한 벼슬을 받지 않음과 같은 효과를 낳게 하는 것이다. 또 削職이 官職의 任命을 무효화 시키는 점에서 官階·官職을 강등시키는 奪告身과 구별된다.

納한 奴婢가 죽었을 경우에는 (贖良된 자를) 도루 賤人으로 한다. ○ 公賤이 속임수로 贖身한 경우에는 도루 賤人으로 하고 담당 아전(色吏)은 杖 100을 쳐서 먼 곳으로 定配하며 官員은 制書有違律(王旨 등 위반죄)로 論罪한다. ○ 工匠⁶⁵⁷⁾의 代給奴의 贖身(贖良) 값은 錢文 100兩을 넘을 수 없으며 초과하여 함부로 징수하는 자는 詐不以實律⁶⁵⁸⁾로 論罪한다. 私奴婢의 贖良 값도 이와 같다. ○ 寺奴(公賤)가 私賤을娶하여 낳은 자녀의 贖良을 妻의 上典에게 한 경우와 私賤의 자녀가 母의 上典에게 贖良한 경우에는 모두 良人이 되는 것을 허용하며 父의 上典이 강제로 奴婢로 삼는 경우에는 壓良爲賤律⁶⁵⁹⁾로 論罪한다. 贖良된 자가 기한내에 확인서(立案)를 받지 아니하면 掌隸院으로 소속시켜 公奴婢로 삼는다. ○ 무릇 賤人(賤口)은 비록 子孫과 함께 영구히 良人이 됨을 허가 받았더라도 賤人에게 시집가거나 장가들어 낳은 자녀는 免賤됨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 함경도의 私賤으로서 다른 道에서 옮겨 온

657) 工匠중에서는 良人도 있었으나 대개 公賤이 많았다(《世宗實錄》 권119-7, 세종 30년 2월 병인). 工匠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匠人으로서 그 종류가 아주 많았다. 工匠에게는 奉足을 주거나(《위의 책》 권27-11, 세종 7년 정월 경인) 月給(朔料)을 주었다(《成宗實錄》 권35-5, 성종 4년 10월 경신). 《續大典》 刑典 公賤條에서는 私賤이 工匠案에 入屬할 경우에는 奴婢主에게 公賤을 대신 준다(代給)고 하였다.

658) 詐不以實律은 《大明律直解》 권24 刑律 詐僞 對制上書 詐不以實條를 말하며 徒刑에 처하도록 하였다.

659) 壓良爲賤律은 冒占良民律(주525)을 의미한듯 하다(《經國大典》 刑典 元惡鄉吏條註). 다만 《大明律直解》 권25 刑律 犯奸買良爲娼條(杖100)이외는 明律에 이와 비슷한 條文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자는 몸값을 치르고 良人이 되는 것(贖良)을 許可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거주민으로서 贖良되기를 원하는 자는 역시 스스로 그 주인에게 가서 贖良하도록 한다. ○ 이미 贖良된 奴婢로부터 선물이라 칭하면서 侵徵⁶⁶⁰하는 자와 先代의 贖給奴婢⁶⁶¹를 子孫代에 이르러 도루 빼앗아 가는 자(撓奪者⁶⁶²)는 모두 壓良爲賤律로 論罪한다. 贖良된지 이미 여러 代 지난후에 옛 上典이라 칭하면서 사람을 바꾸어 가며 와서 侵奪하는 자도 같은 律로 처벌한다. ○ 자기의 노비가 아닌 것을 혹은 훔쳐서 팔고 혹은 거짓으로 贖良하였다가 노비의 본 주인이 推尋하게 되면 훔쳐서 판 값을 훔쳐서 판 자에게 追徵하고 거짓으로 贖良해 준 값도 이와 같이 한다. 이미 贖良된 노비에게는 侵害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자는 壓良爲賤律로 論罪한다.

【補充隊⁶⁶³】〔續〕 公賤과 私賤이 贖良한 후에 補充隊로부터 다른 道와 다른 고을로 빠져 나가

660) 侵徵은 威力을 빌려서 不法으로 收奪하는 것을 말한다(조선총독부, 《앞의 책》, p.738).

661) 贖給奴婢는 奴婢가 贖良될 때 자신의 몸값으로 대신 주는(代給) 노비를 말한다(同上).

662) 撓奪은 贖良文記를 이유없이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한다.

663) 補充隊는 賤人으로서 贖良하는 자, 특히 各品の 婢妾所生子女를 贖身(몸값을 치름)한 후 入屬시켜서 복무하게 하는 부대로서 일정기간 복무를 해야 從良이 되는 것이다. 보충대에 관해서는 해설편 25 노비와 《大典會通研究》 兵典編, 1995.12, pp.374~376에 자세히 해설하였다.

기를 피하는 경우에는 良人이 되지 않도록(勿施)한다. ○ 女人으로서 이미 補充隊에 속한 경우에는 男丁과 함께 모두 從良한다. ○ 자기의 婢妾이 낳은 자녀가 補充隊에 소속되지 아니하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公賤으로 定屬시키며 本主人은 使役시킬 수 없다. 만약 그의 嫡族⁶⁶⁴)으로 부터 告發을 당하여 公賤으로 沒入되면 심히 人倫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일로 인하여 발각된 경우 이외에 그의 嫡族의 陳告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다. 연달아 2대에 걸쳐서 良役을 졌고 또 그러한 지가 60년 전이며 그 당시의 당사자가 남아 있지 아니하면 비록 (補充隊 入屬의) 帖文이 없더라도 公賤으로 沒入하지 아니한다. [補] 지금은 폐지되었다.

【聽理⁶⁶⁵】 [續] 田地와 奴婢(田民)에 관한 訴訟의 審理(聽訟⁶⁶⁶)는 각각 그 담당(該掌)이 있는데 漢城府에서는 田地와 住宅을 管掌하고 掌隸院에서는 奴婢를 管掌하며 刑曹에서는 田地와 住宅 및 奴婢에 관한 法律(범죄와 형벌)을 모두 管掌한다. ○ 成均館의 奴婢에 관한 訴訟은 여러 法司에서 직접 판결할 수 없고 成均館으로 이

664) 嫡族은 비록 母系가 庶族과 다르나 父系는 그들과 동일한 兄弟姊妹間 또는 그 子孫이므로 嫡出子女나 그 子孫이 官에 신고하여 그들의 庶族을 公奴婢로 삼게하는 것은 人倫을 傷하게 하는 것이 된다. 嫡族이란 보통 庶系子孫이 그 父系의 嫡室子孫에 대하여 쓰는 호칭이며 嫡室子孫 相互間에는 잘 쓰지 아니한다. 禮記에서는 次嫡子도 庶子라 하였으므로 嫡族이란 嫡長子계통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顯宗·肅宗年間の 禮訟에서 문제된 것) 우리나라의 慣習上으로는 嫡室子孫 모두를 嫡族이라 하였다.

665) 주 36 (聽理) 參照.

666) 聽訟은 재판하기 위하여 소송당사자 및 관계인에게 사건에 관해서 듣는 것(聽取하는 것)을 말한다.

송하여 조사 처리하도록 한다. ○ 宗親家の 일로 雜訟에 계류되었을 경우에는 宗簿寺에 올리지 아니하고 刑曹에 고발하여 推問해서 죄를 다스리도록 한다. 간혹 한통(一道)의 文記⁶⁶⁷⁾ 안에 田地와 奴婢(田民)를 아울러 記載하였으면 나누어 맡지(分掌) 않도록 하고 함께 들어서 審理(聽理)한다. 단지 奴婢만 爭訟하고 田地와 住宅은 다투지 아니하는 것과 단지 田地와 住宅만 爭訟하고 奴婢는 다투지 아니하는 것이면 다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元告⁶⁶⁸⁾(原告)로 부터 진술을 받은 후(取招後)에 단지 爭訟하는 것만 聽理한다. 元告(原告)와 元隻⁶⁶⁹⁾(被告)이 바친 證據가 될만한 文書(可考文書)는 官吏가 살펴서 封印(監封)하고 원고와 피고가 함께 서명하여 帳簿에 적어 두어 證憑으로서 후일의 참고가 되도록 한다. 소송을 판결(決訟)한 후에 敗訴하게된 측의 文書(落訟文券)가 偽造된 것이 확실하고 그 情狀이 나쁜 경우에는 관청에서 封印하여 두며(官上封置⁶⁷⁰⁾) 이것을 태우는 것을 禁斷한다. 무릇 訴訟은 前任官이 이미 확정판결(決折)하였으나 아직 확인서(立案)를 내주지 아니하고 交遞되었을 경우에는 비록 交代(인계인수)한 것이 아닐지라도 後任官이 작성하여 준다. ○ 訴訟을 시작한 후 50일이라는 期限은 經國大典 刑典 私賤條

667) 文記는 文券과 같은 말로서 땅·집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문서를 말한다.

668) 주 557 (元告) 참조.

669) 元隻은 소송당사자 중에서 被告(被論)를 말한다. 그러나 元告(原告)의 元字와 元隻(被告)의 隻字를 合稱하는 의미에서의 元隻은 原·被 모두를 뜻하기도 한다(주 557).

670) 官上封置라 함은 官廳에서 封印하여 保存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를 보라. 官員이 裁判을 할수 없는 날(不坐日⁶⁷¹)은 除外하고 계산한다. 50일 동안에 法廷(訟庭)에 나오지 아니한 것이 30일이 지난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 날짜에 法廷에 직접 출석하여 署名한 자(就訟親着者⁶⁷²)에게 (勝訴시켜 소송목적물을) 준다는 법이 經國大典에 있으나 반드시 50일을 채운 후에 판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가령 甲인 자가 30일이 지나도록 法廷에 나오지 아니하면 乙인 자가 法廷에 나온 것이 비록 30일 미만이라도 乙에게 주나 乙이 직접 출석하여 署名한 것이 반드시 21일은 되고 甲의 불출석이 반드시 30일이 찬 후라야 乙에게 勝訴시켜 (소송목적물을) 준다(決給)는 것이다. 乙의 출석 署名이 21일간이고 甲의 불출석이 30일간이면 원고와 피고가 불출석한 날짜를 모두 계산하여 채운다. 또 甲이 스스로 理致에 맞지 아니하여 불리할 것을 알고 물러나 법정에서의 출석을 回避(理屈退避⁶⁷³)하고 乙은 출석한지가 21일이 가까이 되면 甲의 하루 이틀간의 출석으로 도리어 乙의 출석 署名을 無視하는 것(旋棄)은 옳지 않으므로 甲의 간헐적인 출석서명은 쳐 주지 아니(勿用)한다. 일반적인 爭訟도 이와 같다.

○ 무릇 訴訟은 訴狀을 제출한 후 所定 年限內에 원고와 피고가 동시에 출석(齊現)하여 조사를 받는(取招) 경우 이외에 단지 한 두번 추가로 提訴

671) 不坐日은 裁判을 할수 없는 날을 말한다. 《經國大典》 刑典 禁刑日條에는 임금이나 왕비의 탄신일·왕세자의 생신·나라의 큰제사 등을 비롯한 일정한 날에는 拷訊 등을 禁하였으므로 그러한 날에도 재판을 할 수가 없겠지만 재판을 맡은 官員의 개인적인 事情(發病 등)으로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672) 就訟親着者란 裁判期日에 法廷에 직접 출석한 당사자를 말한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740).

673) 理屈退避는 法廷(訟庭)에 있어서의 辨論에 저서 물러나서 법정출석을 회피하는 것(同上), 즉 자기의 주장이 事理에 맞지 않아서 꺾이어 자기편이不利함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서 법정출석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追呈) 한 두번 上言하는 경우에는 모두 연이은 소송(連訟)으로 보지 아니한다. 만약 甲이 기한내에 訴狀을 제출하고 法廷에 오래 서있으면서 피고의 출석을 독촉하였으나 (長立督現⁶⁷⁴) 乙은 끝내 나타나지 아니하여 期限을 넘기게 되었을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비록 동시에 출석한 것이 아닐지라도 조사를 받도록(取招⁶⁷⁵)하여 期限이 지난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다시 소송할 수 있도록 한다. ○ 祖上의 奴婢에 관해서 서로 소송하다가 勝訴하지 못하고 기한이 지나서 몰래 다른 자손을 사주하여 訴狀을 내게 하는 것은 일체 기한이 지난 것으로 쳐서 연이어 소송하는 것(接訟)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무릇 소송이 잘못 판결되었다고 上訴(呈)한 경우에는 임금에게 보고하여 다른 관청으로 이송해서 먼저 官吏(재판관)의 판결이 옳은가 그른가를 가려서 혹은 소송당사자의 잘못으로 因하였거나 혹은 法外의 相避로 인하였거나 간에 임금에게 보고하여 다른 관청에 이송한 경우에는 승정원에서 살펴서 推問하도록 한다. 그 잘못된 판결을 다른 관청으로 移送하여 다시 옳고 그름을 고쳐서 가리도록 하는 것(改分揀者)은 度數를 計算하지 아니한다. ○ 세번 勝訴(三度得伸)하였다고 하는 것은 연이어 세번 소송(接訟三度)한 가운데에서 피고 중 한 사람(一隻)이 두차례 勝訴(再伸)한 것을 말하며 두 번 敗訴(見

674) 長立督現은 원고가 법정에서 출석하여 오랫동안 서 있으면서 피고의 출석을 독촉하는 것을 말한다(同上).

675) 取招는 問招하여 범죄사실을 진술케 하는 것을 말한다.

屈)한 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자는 非理好訟律⁶⁷⁶⁾로 論罪한다. 한번 敗訴하고 한번 勝訴하면 다시 소송할 수 있으나 두 번 승소한 후에는 다시 소송할 수 없다. ○ 甲이 두 번 승소한 후에 乙이 설혹 다시 승소하여도 거듭(累度) 소송할 수는 없다. ○ 지방에서 이미 판결한 소송일지라도 掌隸院에서 판결된 것과는 한 가지로 쳐서 처음 소송한 것으로 한다. ○ 재차 官에서 財主를 대신하여 처분(官作財主⁶⁷⁷⁾)하였으면 재차 승소한 例에 따라서 審理(聽理)하여 주지 아니한다. ○ 재차 勝訴한 후에 屬公(官에 소속)시킬 경우에도 역시 들어서 審理하기에 합당하면 屬公시키지 아니한다. ○ 간단한 소송(短訟)은 연 3차 승소한 경우에는 들어서 審理하여 주지 아니한다. 一般奴婢는 그 族屬이 비록 사람을 바꾸어서 訴訟하여도 판결을 받은 회수를 조사·계산해서 (피고가) 두번 勝訴한 후라면 들어 주지 아니하며 만약 앞의 소송과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이 명백한 文記를 갖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다시 審理함을 허용하며 이미 판결한 것에 구애되지 아니한다. 敗訴하여 上言(上訴)한 것이 세 번째 이후라면 該曹에서 受理하지 아니한다. ○ 노비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의 양쪽 당사자가 (모두) 不當한 경우에는 (그 노비를) 官에 소속(屬公)시킨다. 만약 甲과 乙이 다시 소송하여 乙이 스스로 理致에 맞지 않다(불리하다)

676) 非理好訟律은 明律에는 보이지 않고 《續大典》 刑典 訴冤條에 非理로 好訟하여 錮을 친 자에게는 杖 100 流 3000리에 처한다(주452)고 하였다.

677) 官作財主는 奴婢나 田宅 등 재산의 소유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死亡하였으므로 그 遺産分割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公平하게 分配하기 위하여 官에서 재산 소유자를 대신하여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741).

는 것을 알고 나타나지 아니하여도 甲에게 (그 노비를) 決給⁶⁷⁸(판결하여 내 주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屬公한다. 서로 訴訟하다가 屬公된 노비는 3년이 지나면 그 소송을 들어 주지 아니한다. 36개월을 期限으로 한다. ○ 經國大典에 있어서 보통 잘못 된 판결이 父子·嫡妾·良賤의 分揀 등 事項의 情狀과 事理가 切迫한 사건으로서 판결(決折)한 堂上官과 郎官의 교체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다른 관청에 소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3년간의 정해진 期限內라야 하며 3년이 지나면 소송을 들어 주지 아니한다. ○ 良人을 억압하여 賤人을 삼은(壓良爲賤) 경우에는 비록 3년이 지나도 마땅히 그 소송하지 못한 까닭을 辨別하여 律文에 따라 罪를 가려 刑罰을 준다. ○ 무릇 오랫동안 未決로 있는 田地와 奴婢(久遠의 田民)에 관한 소송은 大限과 小限을 定하여 시행하며 60년간을 大限이라 하고 30년간을 小限이라 한다. ○ 만약 祖上의 田地와 奴婢를 독차지(合執)하여 몰래 팔아 먹은 것에 관한 소송과 도망쳤거나 누락된 公賤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모두 이 期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內需司의 奴婢(內奴婢)는 宣頭案⁶⁷⁹에 넣고 驛奴婢는 形止案⁶⁸⁰에 넣는다. 그러나 노비의 본 주인이라 칭하면서 推尋하는 자에게는 小限을 적용하여 사건이 30년 이전에 있었던 것이면 10 式年間 탈(시효중단 사유)이 없으면 들어 주지 아

678) 決給은 判決하여 내주는 것 즉 勝訴를 言渡하는 것을 말한다.

679) 宣頭案은 內需司의 公賤을 20년마다 精査해서 原籍簿를 만들어 임금이 보도록 한 것을 말하고 그후의 異同사항을 조사하여 3년마다 帳簿(案)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續案이라 하였다.

680) 形止案은 驛奴婢를 精査해서 作成한 原籍簿를 말한다.

니하고 만약 주인을 배반하고 (다른 곳에) 投屬하여 본 주인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았으나 도피하여 30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기한이 지났다고 論하는 것은 옳지 못하므로 60년간의 大限을 적용한다. 혹은 祖上의 逃亡奴婢라 하고 혹은 奴와 良妻間에 낳은 자식이라 하여 爭訟하였으나 당사자가 現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限을 적용하여 사건이 60년 이전에 있었던 것이면 들어 주지 아니한다. 良人이나 다른 사람의 노비를 불법으로 占有하여 爭訟하는 경우에는 각각 本律에 의거 論罪한다. 事件(도망 등)이 60년 이전에 있었고 2代를 연속하여 良役을 진 자는 비록 자기의 노비에 관한 것일지라도 들어 주지 아니하며 함부로 침해하는 자는 壓良爲賤律로 論罪한다. 비록 2代를 연속하여 良役을 졌더라도 혹은 投屬하였거나 혹은 이미 訟辨(訴訟과 辨正)에 들어간 경우에는 代數를 論하지 아니한다. 소송에서 얻어진 (승소)판결의 회수가 서로 같더라도 사건이 60년 이전에 있었던 것이면 그 당시 (그 노비를) 차지하고 있는 자(時執者)를 主人으로 한다. ○ 經國大典에 있어서의 5년 戶典 田宅條를 보라. 3년 (刑典) 公賤條를 보라. 의 期限은 月로서 계산하고 續大典의 60년·30년의 기한은 年으로서 계산한다. 罪를 저서 徒刑·流刑·充軍에 처하여 지거나 公務로 지방에 파견된 자(公差681) 이외의 官職者(任人682) 중에서 아

681) 公差는 궁중이나 관청에서 파견하는 使者를 말한다.

682) 任人은 여러가지 뜻이 있으나 여기서는 항시 政事를 맡아보는 官職者를 말한다.

들·사위·노비 등 대리로 소송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 이외는 그 간에 지방에 있던 연월은 계산하여 제외시키지 아니한다. ○ 무릇 詞訟官이 違法으로 소송을 들어서 審理한 경우에는 制書有 違律(王旨 등 違反罪)로 論罪한다. [補] 部官⁶⁸³이 (訴價) 20兩 이상의 소송을 들어서 審理하면 엄중히(重한 罪名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論勸)하고 部屬(부에 소속된 衙前등)은 刑杖을 쳐서 刑配(刑配) 보낸다.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해당 部에 있지 아니하면 역시 訴狀을 접수하지 못한다.

○ 무릇 소송의 한 피고가 지방에 있으면 피고가 있는 고을의 守令에게 (提訴하여) 就訟 해야하며 서울의 法司는 범죄자를 조사하여 체포(推捉)할 수 없다. 소속 고을(本官)에서 잘못 판결하여 勝訴(伸理)하지 못한 경우 이외에 불법으로 越訴한 자에게도 역시 들어 주지 아니한다. ○ 田地와 奴婢(田民)를 다투어 소송하는 자는 당초에 聯名으로 訴狀을 내는 것인데도 中立으로 있으면서 (소송의) 趨勢를 觀望하다가 판결에 임박하여 (勝訴 가능성이 있는 측에) 문득 (참가하여 그 이익을) 같이 나누어 갖고자 하는 자(輒欲共分者)에게는 그 소송에 참석한 날자수를 살피서 3분의 1을 주고 그 중 한번도 法廷에 나오지 아니

683) 部官은 대체로 漢城 5部の 令(《大典會通》에서 《續大典》의 都事를 개칭한 것, 從 5品)을 의미하며 각 部의 행정책임자인 동시에 일정범위내의 간단한 소송사건을 맡은 재판관이기도 하다. 部에는 令으로서 都事(종9품)와 參奉(종9품)이 있는데 이들도 部의 官員이기는 하다. 部屬은 官屬 즉 部에 소속된 아전이나 下人들로서 이들은 관원과 는 신분이 다르다

한 자에게는 주지 아니한다. ○奴婢와田地 및住宅을放賣한 후에 그 값이 전 보다 배가 뛰었으므로 도루 물리고자 스스로 피고가 되어 거짓으로勝負를 하여 그利益을 나누고자 한 자는 일체 오른 값(今價)을 기준으로對價를 징수하여 돌려 주게한다. ○다른 사람이 현재 차지하여 부리고 있는 노비를 소송하기도 전에放賣한 자와 무릇田地와奴婢에 관한 소송의 판결(敗訴)후에도 계속 차지하고 있는 자는 모두杖 100徒 3년에 처한다. ○무릇 노비를 훔쳐서 판 경우의役價는 훔쳐서 판 자에게서 징수한다. 田地의花利⁶⁸⁴도 이와 같다. ○무릇士族이服喪 중에 제멋대로(持衰甘心⁶⁸⁵)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들어주지 아니하되山訟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대리인(代訟人)이 없어서事勢가窮迫할 경우에는葬禮 후에 다시 소송하도록 한다. 그 피고인(被論人)이喪中에 있을 경우에도 역시 장례후에 들어서審理한다. ○親族이

684) 花利는 田地의 경작권 또는 수확물(벼)을 매매대상으로 할 때의 (얻어지는) 값으로서 禾利라고도 한다.

685) 持衰甘心이란 服喪中임에도 불구하고 근신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함을 말한다. 父의喪에는 斬衰 3년, 母에게는 齊衰 3년, 祖父母에게는 齊衰 1년, 曾祖父母에게는 齊衰 5월, 高祖父母에게는 齊衰 3월 등으로 각각 本宗의 直系尊屬에게는 衰服을 입는다(《大典會通研究》禮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12, pp.170~171). 斬衰服은 거친 삼베로 짓되 아랫도리를 접어서 꿰매지 않은 喪服을 말하며 齊衰服과 다르다. 齊衰服은 굵은 삼베로 짓되 아랫가를 좁게 접어 꿰맨 상복을 말한다.

서로 소송하여 尊長을 凌辱하거나 卑幼者를 脅迫할 경우에는 먼저 그 죄를 바르게 다스린 후에 들어서 審理한다. 親兄弟와 叔姪間에 이유없이 싸움의 端緒를 이르킨 자는 임금에게 아뢰어 罪를 준다. ○ 裁判을 하는 관청(決訟衙門)에 오랫동안 서성거리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爭訟할 것을 가르치거나 誘惑하는 것을 業으로 삼는 자는 杖 100 流 3000리에 처한다. 強盜例에 따라 사람들에게 逮捕와 申告를 허용하여 賞으로 배 50필을 준다. ○ 한 사람이 두 세 곳에 이유없이(非理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同律)을 한다. ○ 터무니 없는 일을 꾸며 訟官을 속인 자는 杖 80에 처하고 그 것이 지나친 경우에는 杖 100에 처하며 罪質(事理)이 重한 경우에는 徒 3년에 처한다. 서로 거느리고 作黨하여 訟官을 侵害하고 辱되게 한 자는 모두 먼 땅으로 定配한다. ○ 山訟(墓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의 實體(訟體)를 갖추어 시행한다. ○ 士大夫가 勒葬·誘葬·偷葬⁶⁸⁶⁾하는 따위는 각별히 엄금하고 犯禁者는 奪入閭家律⁶⁸⁷⁾에 의거 論罪하며 해당 고을의 守令이 알면서 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잡아다가 처벌한

686) 勒葬은 他人의 墓地 또는 山林에 無理하게 (강제로) 埋葬하는 것을 말하고 誘葬은 사람을 유혹해서 他人의 墓地 또는 山林에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偷葬은 他人의 墓地나 山地에 사람의 눈을 속여 몰래 暗葬하는 것이다.

687) 奪入閭家律은 《續大典》 刑典 禁制條에 있는데 여염집을 빼앗아 들어간 자는 徒 3年으로 定配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常賤人이 父母의 墓所가 있는 山에 계속 葬事 지낼 곳⁶⁸⁸)에 士大夫가 접거하여 빼앗은 경우에도 같이 처벌(同律)하며 기한을 정하여 강제로 移葬하도록 한다. ○ 士大夫의 墳墓는 그 品階(品秩)에 따라 각각 步數가 정해져 있으며 法禁에 위반하여 몰래 葬事를 지내는 자(冒禁偷葬者)는 법에 따라 發掘하여(과서) 移葬하도록 하고 다만 먼 祖上(高玄)의 墳墓에 대하여 子孫이 祭祀를 廢止하거나 혹은 타인이 그 墓所를 侵害하여 葬事 지내는 것을 禁止하지 아니한 지가 2·3년에 이른 후면 經國大典에 있어서의 무릇 田地와 住宅에 관한 소송은 5년이 지나면 (들어주지 아니한다는) 例에 따라 들어 주지 아니하되⁶⁸⁹) 偷葬이나 墳墓를 侵犯하는 것이면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비록 步數의 定함이 없는 사람일 지라도 <[增] 蔭職을 받는 士人을 말한다> 그의 左靑龍 右白虎 內의 山에 있어서 禁養(養山)하는 곳⁶⁹⁰)에는 타인이 入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左靑龍 右白虎 밖이면 설혹 禁養하는 山일지라도 廣占함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左靑龍 右白虎가 아주 넓어서 혹시 5·6百步에 이르면 역시 좌청용 우백호에 관한 규정을 똑같이 準用할 수가 없고 오직 訟官이 彼此의 山勢가 싸고 돌아서 이루어진 땅의 形局(圖局⁶⁹¹)과 그 遠近을 헤아리고 참작하여 처결한다. 主人의 山所와 人家가 있는 근처에 偷葬하는 것을 禁斷한다. 비록 1인의 家舍라도

688) 父母의 墓所가 있는 山에 계속 장사지낼 곳이란 父母를 매장한 墓所가 있는 山地에 그 子孫이 그 옆이나 그 밑으로 계속 매장할 것이 예상되는 곳을 의미한다.

689) 무릇 田地와 住宅에 관한 소송은 5년이 지나면 例에 따라 들어 주지 아니한다는 것은 《經國大典》 戶典, 田宅條에 있다.

690) 左靑龍·右白虎內의 山에 있어서 禁養하는 곳이란 墳墓左右에 있는 山줄기의 區域內의 나무나 풀 따위를 베지 못하게 함으로서 분묘의 尊嚴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691) 圖局은 山勢가 싸고 돌아서 이루어진 땅의 形局을 말한다.

百步 內에는 入葬할 수 없으며 偷葬者가 百日內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墓地의 소유자(山主)가 官에 신고하여 임금에게 아뢴 후에 官에서 파서 移葬하도록 한다. ○ 법의 理致로 보아서(法理) 禁해야 할 땅에 山所를 잡았다가(占山) 敗訴한 자와 法理上 禁止하는 것이 부당한 땅에 葬事를 금지하다가 패소한 자는 모두 刑杖으로 推問하여 懲戒하고 큰 마을(大村)안 및 타인의 墳墓가 있는 山과 아주 가까운 땅을 불법 占據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것을 指示한 地師는 刑杖으로 推問하여 懲戒하고 喪主人 사람은 定配하며 그 것을 판결해준 訟官은 論罪한다. 事理를 歪曲하여 官의 조사(擲奸)에 나아가서 辨別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만 30일이 될 동안 法廷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정에 출석하여 署名한 사람(親着人)에게 勝訴判決하여 준다. ○ 사사로이 葬事를 禁止시켰으나 그 것이 법에 위반하여 어지럽게 한 자는 모두 엄중히 論罪한다. 婦女를 거느리고 山에 올라가서 葬事를 禁止한 경우에는 家長이 있으면 家長에게 罪를 주고 家長이 없으면 거느리고 있는 아들(率子)을 定配한다⁶⁹²). ○ 軍士를 동원하여 서로 싸운 자와 칼을 뽑거나 총을 쏜 자 및 활을 쏜 자는 杖 100 徒 3년에 처하며 사람을 傷害한 것이 重한 경우에는 杖 100 流 3000리에 처한다. ○ 作黨하여 伐喪하거나⁶⁹³) 喪輿를 때려 부순 자는 남의 무덤을 뺐으나 棺槨을 드

692) 婦女를 거느리고 山에 올라가서 葬事를 禁止시킨 자를 특히 거론한 것은 儒敎의인 傳統社會의 慣習上 양반집 婦女子의 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만 남자가 손댈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惡用하여 婦女子를 거느리고 山에 올라가서 他人의 入葬을 沮止하면 그 婦女子의 남편(家長)이나 아들을 定配한다는 것이다.

러나게는 하지 않은 刑律⁶⁹⁴)에 의거 論罪하고 널(柩,棺)을 침범한 자는 남의 무덤을 파서 棺槨이 드러나 보이게한 刑律⁶⁹⁵)에 의거 論罪한다. ○ 金井⁶⁹⁶)을 破壞하고 築灰⁶⁹⁷)를 허물어 뜨리는 자는 타인의 墳墓(무덤)에 있는 封墳을 없애고 그 무덤을 平地로 하여 밭이나 동산(田園)을 만든 刑律⁶⁹⁸)에 의거 論罪한다. ○ 壙을 판 곳(穿壙處⁶⁹⁹)에 放火하거나 혹은 더러운 물건을 던져 넣어 장난치는 자는 더러운 물질을 타인의 입과 코에 흘려넣는 죄의 刑律⁷⁰⁰)에 의거 論罪한다. ○ 분묘를 만든 후에 放火하거나 혹은 나무를 쫓아 놓은 자는 官民의 房屋을 延燒시킨 刑律⁷⁰¹)에 의거 論罪한다. ○ 假墓(置塚⁷⁰²))를 진짜 무덤(眞塚)이라고 한 자는 詐不以實律⁷⁰³)에 의거 論罪한다. ○ 무릇 山

693) 作黨하여 伐喪한다는 것은 他人의 埋葬을 沮止하기 위하여 徒黨을 꾸며서 매장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葬禮참석자 및 喪輿매는 자들에게 폭행하는 것을 말한다.

694) 남의 무덤을 파으나 棺槨을 드러나게는 하지 않은 刑律은 《大明律直解》 권18 刑律 盜賊 發塚條에 있는데 杖 100 徒 3년에 처하도록 하였다.

695) 남의 무덤을 파서 棺槨이 드러나 보이게 한 刑律도 위 發塚條에 있는데 杖100, 流 3000리에 처하도록 하였다.

696) 金井이란 무덤의 壙穴에 사용하는 井字形의 나무틀(木型)이다.

697) 築灰는 무덤 안쪽에 石灰와 沙土를 混合하여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든 곳을 말한다.

698) 타인의 墳墓에 있는 封墳을 없애고 그 무덤을 平地로 하여 밭이나 동산(田園)을 만든 刑律은 《大明律直解》 권18 刑律 盜賊 發塚條에 있는데 杖 100에 처하도록 하였다.

699) 穿壙處는 壙을 판 곳이라는 뜻인데 壙은 흙을 파서 棺을 넣는 곳을 말한다.

700) 더러운 물질을 타인의 입과 코에 흘려 들어가게한 刑律이란 《大明律直解》 권19 刑律 人命 屏去人服食條에 있는데 더러운 물질 대신 他物로 되어 있으며 그러한 물질이 귀나 코, 기타 구멍 (입·눈 등)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질식하도록 하면 杖 80에 처하고, 그로 인하여 殘疾·廢疾에 걸리면 杖 100 徒 3년에 처하며, 篤疾에 걸리면 杖 100 流 3000리에 처하도록 하였다.

701) 官民이 房屋을 延燒시킨 刑律이란 官廳 건물이나 민간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태운데 대한 처벌규정을 말하며 《大明律直解》 권26 刑律 雜犯 放火故燒人房屋條에 규정되어 있는데 杖 100 徒 3년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것이 放火가 아니고 失火로 官民의 房屋이 延燒된 경우에는 笞50에 처하도록 하였다(《같은 책》 권26, 刑律 雜犯 失火條).

702) 置塚은 장차 시체를 매장할 목적으로 설치한 假墓 내지 예비적인 분묘를 말한다.

703) 주454 (上書詐不實律) 참조.

所에 관한 訴訟에 敗訴한 후에도 卽서 移葬하지 아니하고 속여서 錘을 친(擊錘⁷⁰⁴)자는 詐不以實律로 論罪하며 卽서 移葬하겠다고 官에 (書面을 제출하는 등으로) 약속(納招)한 후에 도망쳐서 숨은 자는 判決 후에도 계속 차지하고 있는 刑律⁷⁰⁵로 論罪하고 官吏가 判決한 것이 法理에 위반함이 있는 경우에는 非違임을 알면서 잘못 판결(誤決)한 律⁷⁰⁶로 論罪한다. ○ 觀察使와 守令이 道內와 境內에서 山을 占據한 경우에는 잡아다가 問招하여 罪를 정한다. 鄉校의 바로 앞에 있는 山(案山)의 (鄉校에서) 바라다 보이는 곳에 入葬한 경우에는 家長을 論罪하고 아울러 期限을 정하여 강제로 卽서 移葬 하도록 한다. ○ 墳墓나 山所에 관한 爭訟으로 인하여 남의 臣下로서 감히 말하지 아니하여야 할 이야기를 하거나 何等 근거없이(白地) 남을 誣告하여 上言하거나 官에 글을 올린 자는 엄중히 訊問하여 事實이 인정되면 사

704) 擊錘에 관해서는 해설편 30 신문고 참조.

705) 判決後에도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 대한 刑律은 《經國大典》 刑典 私賤條에 있는데 不法으로 他人의 노비를 차지하고 있는 자가 敗訴判決後에도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杖 100 徒 3年에 처하도록 하였다. 《續大典》 刑典 聽理條에서도 田民에 관한 소송이 판결(敗訴)된 이후에도 계속 차지하는 자는 杖 100 徒 3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06) 非違임을 알면서 잘못 판결한 律은 《續大典》 刑典 聽理條에 있는 詞訟官 違法聽理者는 制書有違律로 論罪한다는 규정을 의미한 듯 하다.

람을 惡逆으로 誣告한 本律⁷⁰⁷⁾에서 刑의 등급을 減輕하되 贖罪金을 거두게 하는 條項은 排除하고 杖 100度を 쳐서 섬으로 귀양 보낸다.

[補] 奴가 주인의 山所를 侵犯하면 事理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아니하고(無論曲直) 엄중히 刑杖으로 訊問을 세 차례 한 후에 섬으로 귀양 보내어 계속 奴役(本役)을 시키되 赦免令이 있어도 赦免하지 아니한다.

【文記⁷⁰⁸⁾】 [續] 父母의 奴婢에 관한 和會文記⁷⁰⁹⁾는 1인이라도 署名하지 아니하면 시행하지 못한다. 父母가 分配하지 못한 奴婢는 그 子女들이 協議(和會)하여 몫을 나누어 草文記⁷¹⁰⁾를 作成 備置한다. 설혹 1인이 有故하여 署名하지 못하였으나 각자가 차지하여 여러 해 使役시켰으면 文記가 작성되지 못한 것으로 論할 수는 없고 그대로 주어야 하며 고치지 못한다. ○ 고치고자 하는 자는 事由를 갖추어 官에 보고한다는 법은 經國大典에 보인

707) 사람을 惡逆으로 誣告한 本律이라 함은 《大明律直解》 권22 刑律 訴訟 誣告條 중 “사람을 死罪로 誣告하여 被誣告人이 이미 死刑 當하였으면 誣告人은 死刑에 처하고 被誣告人이 아직 處決되지 아니하였으면 誣告人은 杖 100 流 3000里에 처하며, 3년간 勞役을 加한다”는 규정을 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惡逆은 《위의 책》 권1 名例律 十惡중에 있는데 祖父母나 父母 등 尊屬을 謀殺하거나 毆打한 罪로서 대개 死罪에 해당되는 犯罪이다.

708) 주 667 (文記) 참조.

709) 和會文記는 父母의 遺産을 各相續人들이 協議해서, 分割하기 위하여 作成하는 文券을 말한다.

710) 草文記는 아직 權利關係의 當事者나 筆執·證人 등이 署名을 完了하지 않은 文記이다.

다. 白文文記와 官署文記⁷¹¹⁾를 모두 指稱해서 말하는 것이며 白文文記도 역시 官에 보고하면 고쳐주도록 한다. 응당 白文文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외에 違法으로 白文文記를 써서 그 罪를 謀免하고자 하는 자는 他人의 奴婢를 據執하는 律⁷¹²⁾로서 論罪한다. ○ 外祖父母의 遺書는 모두 通用한다. ○ 繼母의 傳係⁷¹³⁾(相續 또는 遺贈)文記는 官署文記를 사용한다. 嫡母와 庶母의 경우도 이와 같다. ○ 文記를 僞造하여 간사하게 남을 속인 것이 뚜렷하게 나타난 자는 杖 100 流 3000리에 처하며 만약 그 것이 先祖의 所爲라면 刑의 등급을 減輕하여 論罪한다. 잃어 버리거나 불에 타버린 立案(확인서)을 간사하게 僞造하다가 탄로된 경우에도 律이 같다. ○ 무릇 文記의 官署는 財主가 있는 곳(관청)이 아니면 受理하지 아니한다. ○ 相續 또는 遺贈으로 취득(傳得)하거나 買得한 奴婢에 관해서 期限內에 申告狀을 官에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期年(1년)후에 있어서도 모두 확인(立案)을 해주되 期年 후 또 1년이 경과하면 들어 주지 아니한다. ○ 萬曆 壬辰(宣祖 25년) 5

711) 白文文記는 官의 認證이 없는 私文書(契約書 등)를 말하고 官署文記는 官의 認證이 있는 文書(주545)이다.

712) 他人의 奴婢를 據執하는 律은 허위문서 등으로 타인의 노비를 자기 노비처럼 차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 《經國大典》 刑典 私賤條에 있는데 杖 100 徒 3년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713) 傳係는 傳繼라고도 하는데 相續 또는 遺贈하는 것을 의미한다. 傳係로 인하여 取得하는 것을 傳得이라 한다.

월 이후 戊戌(선조 31년) 12월 이전의 賣買文記는 비록 立案을 成給(斜出)하지 못하여도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모두 시행함을 허용한다.

【雜令】 [續] 宗親과 宰相 自身の 訴訟에 관하여 해당 官廳이 들어서 審理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번거로이 임금에게 啓達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엄중히 推問한다. ○ 중앙관청(京司)이 巡營과 兵營(觀察使와 節度使)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지방 고을에 關文을 보낸 경우에는 2품 이상은 엄중히 推問하고 3품 이하는 罷職한다. 5軍門⁷¹⁴과 捕盜廳에서는 일이 軍務나 讖捕⁷¹⁵에 관한 것이면 곧바로 關文을 보낸다. ○ 지방의 監官과 色吏는 중앙관청에서 推問하거나 逮捕(推捉)할 수가 없다. [增] 京畿의 고을 아전이나 병졸이 죄를 범하여 처벌(犯科)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監營 또는 兵營에 關文을 보내어 조사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하고 중앙관청에서 직접 구속 수감하지는 못한다. ○ 각 고을에서 身役으로 바칠 돈과 베(錢布)를 京主人⁷¹⁶에게서 대신 徵收하지 못하도록

714) 五軍門은 訓練都監·禁衛營·御營廳·守禦廳·摠戎廳 등이다.

715) 讖捕는 強盜와 竊盜를 讖察(探索)하여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조선총독부 《앞의 책》 p.749).

716) 京主人은 京邸吏 또는 邸人이라고도 하는데 고려초기 地方 豪族의 子弟로서 중앙에 파견하는 質子에서 由來한다. 그후 중앙집권이 強化되자 豪族은 鄉吏로 전락되었고 麗初에 우대받았던 質子 또한 賤待를 받아서 中央과 地方間의 연락사무나 말고 上京하는 소속 지방민에게 침식을 제공하는 한편 중앙의 각관청으로부터 온갖 의무를 부담하고

한다. [增] 儒生이 疏廳을 빙자하여 지방 고을에 비용을 청구해서 먼저 京主人(邸人)에게서 돈을 징수하는 것도 역시 禁斷한다. [補] 疏廳에 도움을 주고 주장하는 사람은 刑杖을 쳐서 귀양 보낸다. ○ 여러 상급관청 및 軍門에서 만약 5部에 명령(分付)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漢城府를 경유하여 關文을 보내어 시행한다. ○ 중앙各司의 奴婢로서 다른 役을 지는 경우에는 그 提調가 되돌려 줄 것을 (임금에게) 啓請하지 못한다. 一應 匠人이면 비록 都提調라도 되돌려 줄 것을 啓請하지 못하고 刑曹에 공문을 보내면 형조에서는各司의 殘弱과 豊盛을 分揀⁷¹⁷⁾하고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粘啓⁷¹⁸⁾한다. [補] 지금은 폐지되었다. ○ 貢物이 있는各司 및 5部の 官員이 임금을 수행하거나 祭官으로 임명되었을 때에 貢人⁷¹⁹⁾과 坊民⁷²⁰⁾에게서 馬匹을 내도록(責立)하거

책임을 졌으며 수탈당하였다. 또한 지방에서 올라오는 貢物이 기한내에 도착하지 아니하면 京主人이 代納해야만 하였다. 물론 京主人은 代納후에 몇배의 이자를 붙여서 해당 지방관청에 요구하는 등 폐단이 수반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17세기 大同法 實施 이후는 地方民을 京主人으로 삼던 제도는 폐지하고 서울사람을 京主人으로 고용하여 役價를 주어서 그 일을 맡겼지만 폐단은 더욱 컸다. 조선후기에는 京主人은 대체로 權門勢家의 下人들이 맡아서 地方官廳 내지 地方民을 수탈하는 것을 많이 하였고 각 지방관청마다 4·5천냥의 부채(邸債)를 京邸에 지고 있었다(이홍직, 《앞의 책》, p.82).

717)各司의 殘弱과 豊盛을 分揀한다고 하는 것은 중앙 각 관청의 노비수 및 기타 재물의 많고 적음을 구분하여 살펴본다는 의미이다.

718) 粘啓는 啓本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임금에게 보고(上啓)하는 것을 말한다.

719) 貢人이나 貢物에 관해서는 《大典會通研究》 戶典·禮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 12, pp.309~484 참조.

720) 坊民은 서울의 各坊에 살고 있는 백성 즉 서울시민을 말한다.

나 여러 道具를 내게(責出)⁷²¹⁾할 경우에는 모두 制書有違律(王旨 등 違反罪)로 論罪한다. [增] 貢人
으로 하여금 祭祀에 差出되는 것을 免하도록 피하는 자도 같은 律로 처벌한다.

○ 시골에 있는 宗親이 백성(人民)들에게 폐를 끼친 경우에는 宗簿寺에서 엄중히 申飭하여 禁斷한다. 지방에 橫行하면서 官府에 弊를 끼친자는 잡아다가 처벌하고 守令이 이를 즉시 임금에게 아뢰지 아니한 경우에는 罷職하여 내쫓는다. ○ 奴婢를 推刷(推奴)하거나 빚을 받아낸다(徵債)고 청탁하면서 사사로운 집안에서 私刑을 科(私門結縛)하여 그 몸에 어지러이 傷處를 입힌 자는 먼 땅으로 귀양보낸다.

[增] 宗臣⁷²²⁾이나 士夫가 외상이라 하면서 각 商人(塵人⁷²³⁾)을 침해하여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平市署에서 草記(간단히 기록하여 임금에게 보고함)하여 죄를 科한다.

○ 무릇 王命을 받은 大小의 使臣(奉命使臣)이 統制使·兵使·水使·營將·都事도 이와 같다. 奴婢를 推刷하거나 빚을 받아들이는(徵債) 경우에는 해당 道の 觀察使가 발견하는 대로 임금에게 狀啓로 아뢴다. ○ 서울과 지방에서 賂物을 주어 청탁하는 것(關節⁷²⁴⁾)을 금지한다고 특별히 申飭⁷²⁵⁾하였는데 이에 위반

721) 責立은 책임을 지고 人夫나 牛馬를 내도록(動員)하는 것을 말하고 責出은 기타의 물건이나 道具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722) 宗臣은 나라의 元勳 및 王族으로서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723) 塵人은 國策商店인 六矣塵의 特權的인 獨占商人을 비롯하여 기타 市塵(商店)에서 각종물품을 파는 商人을 말한다. 塵人은 周代에서는 稅吏를 의미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가게를 가진 商人을 의미한다. (자세한 것은 工典解說 6 亂塵例 參照).

724) 關節은 要路에 있는 자에게 뇌물을 주어 請託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자는 貴賤을 막론하고 엄중히 論罪하여 處斷한다. ○ 宮中(掖庭)의 下人이 (남을) 侵虐하여 賂物을 요구하는 경우와各司의 吏屬이 농간(操縱)을 부려 賂物을 받은 경우에는 多少를 막론하고 法司에 告訴하도록 하고 贓物(受賂額)을 합계하여 論罪한다⁷²⁶⁾. ○ 西北 兩界의 良人을 冒認⁷²⁷⁾하여 奴婢를 삼아서 거느리고 오는 자 및 장사꾼(興販人)들을 몰래 誘引하여 서울로 데리고 오는 자는 모두 杖 100 流 3000리에 처한다. ○ 지방 商賈⁷²⁸⁾가 牛馬에 실은 짐(馱載)을 길에서 만나 강제로 차지하여 賣買한 자는 杖 100 徒 3년에 처한다.

[增] 東班의 雜職을 거친적이 있으면 임금의 도장(御寶)이 찍힌 임명장(告身)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刑杖을 치지(決杖하지) 아니하고 義禁府(王府)의 決杖은 贖罪金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監營(營門)의 決杖은 잡아다가 문초함으로서 대신한다. 英宗 辛巳(영조 37년)의 下敎이다. ○ 각 道의 錄啓罪人⁷²⁹⁾은 新任 觀察使가 赴

725) 申飭은 申明戒飭의 뜻으로서 禁制가 있음을 明示하여 戒飭하는 것을 의미한다.

726) 《大明律直解》 권23 刑律 受贓 官吏受財條에 의하면 受賂(贓物)額數에 따라 刑量이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727) 冒認은 거짓으로 인정하는 것, 또는 남의 물건을 자기 물건이라 하는 것을 말한다.

728) 商賈는 장사하는 사람, 즉 商人을 말한다. 원래 商은 行商을 의미하고 賈는 가게를 가지고 하는 장사를 의미하나 商賈라고 할 때에는 商人을 통칭한다.

729) 錄啓罪人은 書面으로 錄案하여 임금에게 보고한 罪人을 말한다. 錄案은 文案(文書)

任한 후에 文案을 상세히 살펴서 만약 살려 주어
야할 실마리(傅生의 端緒⁷³⁰)가 있으면 기록을 고
쳐서 임금에게 狀啓로 아뢰고(狀聞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어도 역시 없다고 狀聞해야 하며 期限
이 지나도 狀聞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承旨
(該房)와 해당 曹에서 파악하여 上奏한다. 正宗 乙巳
(정조 9년)의 下敎이다. ○ 각 관청(衙門)·각 軍門·각
宮房에서 平市署에 공문을 보내지 아니하고 商人
(塵人)을 잡아다가 조사하는 것을 엄금한다. ○ 각
宮房에서 導掌⁷³¹의 임명과 해임, 땀감과 곡식의
운송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면서 圖署牌子⁷³²로서
서울과 지방의 관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여 侵害
하는 경우에는 해당 宮의 수석 담당자(首任)에게
刑杖을 쳐서 귀양 보내고 不正行爲者(作俑人⁷³³)
에게는 엄중히 세 차례 刑問한 후 無期限으로 멀
리 귀양 보내며 이를 숨기고 임금에게 아뢰지 아
니한 道臣(觀察使)과 帥臣(節度使)은 먼저 罷職
한 후 잡아 들이고 守令은 徒 3년으로 定配하며

에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730) 傅生의 端緒는 死刑에 처할 罪人에게 의문점이 있어서 減刑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 및 그 실마리를 의미한다. 傅生이란 輔生과 같은 뜻으로서 도와서 살려준다는 뜻이다.

731) 導掌은 宮房田의 管理와 그 地代(小作料)의 徵收를 맡은 자를 말한다.

732) 圖書牌子는 宮房의 印章을 찍은 委任狀 비슷한 書面을 말한다.

733) 作俑人은 不正當한 것을 首唱한 者를 말하며 俑은 허수아비를 말하므로 作俑人은 거
짓을 만든 자 즉 不正行爲者를 의미한다.

5년간 禁錮(資格停止)한다. ○ 命牌⁷³⁴를 毀壞·
損傷한 자는 杖 80 徒 2년에 처한다. 馬牌⁷³⁵를 破壞·
損傷한 자도 이와 같다.

[補] (治績이 나빠) 解任(貶下⁷³⁶)된 守令이 도
리어 上司인 觀察使(上營)를 욕하면 投印律⁷³⁷에
의거 論罪한다.

笞刑·杖刑·徒刑·流刑의 贖罪 布木(贖木)⁷³⁸ [續]

734) 命牌는 命字를 쓰고 붉은 칠을 한 나무패를 말한다. 임금의 命으로 3品 이상의 官員을 부를 때 이 牌에 姓名을 써서 해당자에게 보내는데 이것을 받은 朝臣이 出席하려면 進字를 쓰고 不出席하려면 不進이라 써서 반환한다(金春東外 3인, 《앞의 책》, p.613). 해석상 《經國大典》 및 《續大典》 兵典 符信條에 있는 兵符나 標信·命召·密符·通符 등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735) 馬牌는 지름이 9cm~10cm 쯤 되는 둥근 구리패로서 字號와 年月을 새기고 다른 한쪽에는 말을 1필에서 7필까지 그렸다. 馬牌는 大小官員이 公務로 지방에 출장갈때 驛馬를 징발하여 쓰도록 한 것으로서 官員의 地位에 따라 쓸 수 있는 말이 정해져 있으며 尙瑞院에서 내주는데 驛에서는 馬牌에 그려져 있는 마리수의 말을 내준다. 暗行御史의 馬牌는 대체로 2馬牌이며 가끔 印章으로도 쓴다. 《經國大典》에서는 최고 7馬牌로 되어 있으나 《續大典》에서는 최고 6馬牌이고 高宗 때의 《六典條例》에서는 최고 5馬牌로 되어 있다(田鳳德, 〈暗行御史制度研究〉, 《韓國法制史研究》, 서울大出版部, 1968, pp.120~126).

736) 貶下는 守令의 治績이 좋지 못하여 해임되는 것을 말한다. 《經國大典》 吏典, 褒貶條에 의하면 地方官에 대해서 관찰사가 매년 6월과 12월에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는데 10번 평정하여 10번 모두 上을 받으면 進級시키고 두번 中을 하면 無祿官(무보수인 관원)으로 옮기고 세 번 中을 맞으면 파직시킨다. 더구나 堂上官인 守令은 한번 中을 받아도 파직된다.

737) 《大明律直解》 권21 刑律 罵詈 佐職統屬罵長官條에 의하면 소속관원이 5品 이상인 長官을 꾸짖고 욕하면 杖 80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여기서는 投印律에 따라 論罪한다고 하였다. 《위의 책》 권3 吏律 公式 棄毀制書印信條에 의하면 各官廳(衙門)의 印信을 고의로 내버리면 斬刑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棄와 投를 같은 뜻으로 보아서 同條文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알수 없다.

738) 이것은 《大明律直解》 권1 名例律 五刑條에 해당하는 것인데 明律보다는 《續大典》에 규정된 속죄금의 액수가 매우 적다. 즉 笞10의 경우 明律은 贖銅錢 600文이고 또 이것은 5升布 3필로 보고 있으나 《續大典》에서는 錢文 7錢(70文)이고 또 이것은 綿

筓 10은 綿布 7尺으로 하되 錢文 7錢으로 대신 한다. ○ 筓 20은 綿布 14尺이고 錢文 1兩 4錢으로 대신 한다. ○ 筓 30은 綿布 21尺이고 錢文 2兩1錢으로 대신한다. ○ 筓 40은 綿布 28尺이고 錢文 2兩8錢으로 대신한다. ○ 筓 50은 綿布 1匹이고 錢文 3兩 5錢으로 대신한다. ○ 杖 60은 綿布 1匹7尺이고 錢文 4兩2錢으로 대신한다. ○ 杖 70은 綿布 1匹14尺이고 錢文 4兩9錢으로 대신한다. ○ 杖 80은 綿布 1匹21尺이고 錢文 5兩6錢으로 대신한다. ○ 杖 90은 綿布 1匹28尺이고 錢文 6兩3錢으로 대신한다. ○ 杖 100은 綿布 2匹이고 錢文 7兩으로 대신한다. ○ 徒 1년은 綿布 2匹이고 錢文 7兩으로 대신한다. ○ 徒 1년반은 綿布 3匹이고 錢文 10兩5錢으로 대신한다. ○ 徒 2년은 綿布 4匹이고 錢文 14兩으로 대신한다. ○ 徒 2년반은 綿布 5匹이고 錢文 17兩5錢으로 대신한다. ○ 徒 3년은 綿布 6匹이고 錢文 21兩으로 대신한다. ○ 流 2000리는 綿布 8匹이고 錢文 28兩으로 대신

布 7척으로 보아서 明律에 비해서 약 9분의 1~15분의 1에 불과하다. 流 3000리의 경우에도 明律은 贖銅錢이 36貫이고 5升布로 환산해서 180필이나 《續大典》에서는 錢文 35兩, 綿布 10필에 불과하여 明律에 비하여 10분의 1~18분의 1에 불과하다.

한다. ○ 流 2500리는 綿布 8匹22尺6寸이고 錢文 31兩2錢6分으로 대신한다. [補] 流 2500리는 綿布 9匹로 하고 錢文 31兩5錢으로 대신한다. ○ 流 3000리는 綿布 10匹로 하고 錢文 35兩으로 대신한다. ○ 刑杖으로의 推問 한 차례의 贖罪金은 杖 100의 것을 준용한다.

訴訟의 判決(決訟)에 所用되는 用紙 [續] [補] 지금은 폐지되었다.

家舍에 관한 訴訟의 勝訴判決(得決)에는 기와 집 1間에 2卷이고 草家 집 1間에 1卷이다. 立案을 작성하여 주는(斜出)데는 기와 집 1間에 1卷이고 초가 집 1間에 10張이다. 田地의 勝訴判決에는 10負에 2卷이고 立案의 작성 交付(斜出)에는 1卷이다. 奴婢에 관한 訴訟의 勝訴判決에는 노비 1명당 3卷이고 立案의 작성 交付에는 1卷이다. 모두 楮注紙⁷³⁹⁾를 쓰되 20卷을 초과할 수 없다. 空垞地 4間은 기와 집 1間에 準한다.

739) 楮注紙는 楮貨로 쓰던 종이로서 닥나무 껍질로 만들었다. 그 규격은 길이가 1자 6치, 너비가 1자 4치이다.

大典會通 卷之六

工典目錄

橋路
度量衡
舟車
鐵場
寶物
雜令
京工匠

營繕
院宇
栽植
柴場
京役吏
工匠
外工匠

大典會通 卷六

仁政殿編輯

工典¹⁾〔原〕屬衙門은 尙衣院·繕工監·〔修城禁火司〕·〔典涓司〕·掌苑署·造紙署·瓦署 등이다.〔增〕수성금화사와 전연사는 지금은 혁파되었다.

【橋路】〔原〕都城안의 道路²⁾와 大路는 너비 56尺, 中路는 16척, 小路는 11척이며, 길 양옆의 도랑의 너비는 각 2척이다.〈營造尺³⁾을 쓴다.〉 만약 道路를 침범하여 차지하거나 (侵占) 도로의 흠을 파가지고 가거나 혹은 도로에 더러운 것을 버려 두었을 경우에는 그 행위자는 해당 部의 官吏 및 管領 등과 함께 모두 죄준다. 내(川)⁴⁾와 못, 城의 담장을 근방 사람에게 나누

- 1) 工典은 周禮의 六官 중 冬官에 해당되는데 工曹소관의 橋梁·道路·營繕·度量衡·院宇·舟車·나무심기·鐵場·柴場·寶物·京役吏·工匠 기타를 규정하고 있다. 太祖 3年の《朝鮮經國典》(정도전의 私撰)에도 工典에 관한 사항이 상당부분 들어 있고 《經國大典》의 前身인 《經濟六典》의 元六典·續六典에도 도량형·院宇·栽植·舟車·柴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田鳳德, 《經濟六典拾遺》, 亞細亞文化社, 1989, pp.158~160 및 p.260). 위 경국대전 공전의 규정은 太宗 14년에 橋路, 世宗 13년에 雜令의 家舍條의 규정을 비롯하여 成宗 때까지의 法令을 모은 것이다(權五榮外 4인, 《譯註經國大典》 註釋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745).
- 2) 道路는 큰길(道)과 작은 길(路)을 합친 말이다. 太宗 15년에 한성부에 의하여 都城안팎의 도로에 관한 논의가 있어 한성부와 戶曹·工曹의 당상관이 함께 계획을 추진하여 世宗 8年, 漢城府의 啓에 따라 《周禮》의 冬官 匠人 營國條의 “天子의 經途는 9軌, 諸侯의 經途는 7軌, 環途는 5軌, 野途는 3軌”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大道는 56尺(7軌), 中路는 16尺(2軌), 小路는 8尺(1軌)으로 정하도록 하되 다만 도로 양옆의 물도랑의 너비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世宗實錄》卷32-1, 世宗 8年 4月 戊辰). 그후 世宗 17年 10월에 다시 都城內의 道路의 너비를 정하였으나 城둘레의 도로인 環途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였는데(權五榮外 4인, 《앞의 책》, p.746) 世宗 21年 10월에 工曹의 보고에 따라 都城 內面의 도로는 2軌에다 2尺을 더하고(18尺) 外面의 도로는 2軌에다 4尺을 더하도록(20尺) 하였다(《世宗實錄》卷87-3, 世宗 21年 10月 辛巳).
- 3) 營造尺은 兵器·刑具·築城·橋梁·道路·建築·船舶·車輛 등을 만드는데 사용하던 자이다. 銅으로 만들기도 하고 象牙로 만들기도 하였다. 木匠들이 쓰는 曲尺으로 唐代人들은 大尺이라고도 불렀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궁궐을 건조하거나 말이나 되 같은 量器를 만드는데 썼다(權五榮外 4인, 《앞의 책》, p.746).
- 4) 川은 도성안을 흐르는 내인 開川을 의미한다. 북악산·인왕산·남산의 물이 合流하여 도성 가운데를 거쳐서 동쪽으로 흘렀다. 太宗 12년에 開川 本流의 役事를 하였고 同王

어 맡겨서 장부에 적어두고 看守하도록 한다. 도랑(溝渠)⁵⁾ · 橋梁⁶⁾은 工曹와 漢城府에서 살펴 보고 수리한다. [增] 지금은 瀋川司에 속하는 일인데 松杞橋에서 長通橋까지는 훈련도감에서 맡고 장통교에서 太平橋에 이르기까지는 금위영, 태평교에서 永渡橋에 이르기까지는⁷⁾ 어영청에서 맡으며, 四山參軍⁸⁾이 나누어서 맡아 巡視를 하되 모래가 쌓여 도랑이 다리 높이와 같게 되거나 石築이 무너진 곳은 淸천사에 보고하여 修築하도록 한다. 지방 道路에는 10리마다 작은 장승(小墩)⁹⁾

13·14년에는 支流細川의 개착 공사를 하였다(同上).

- 5) 溝渠는 큰 물도랑(溝)과 작은 물도랑(渠)을 합친 말로서 水路를 의미한다(《經國大典 註解》後集 上 吏典). 都城 안의 水路는 世宗 4年 11월부터 工曹에서 관할하다가(《世宗實錄》卷18-15, 世宗 4年 11月 己巳) 世宗 8年 6월부터 禁火都監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世宗實錄》卷32-33, 世宗 8年 6月 戊寅).
- 6) 橋梁은 물위의 다리를 말하는데 수레나 말이 통행할 수 있는 다리를 橋라 하고 사람이 건너다니는 다리를 梁이라 하였다(《經國大典 註解》上, 後集, 吏典). 도성 안에 있는 다리는 溝渠와 같이 世宗 4年 11월부터 工曹에서 관할하다가(《世宗實錄》卷18-15, 世宗 4年 11月 己巳), 世宗 8年 6월부터 禁火都監에서 관할한 것으로 보인다(權五榮 外4인, 《앞의 책》, p.747).
- 7) 松杞橋는 서대문 근처, 長通橋는 관철동 근처에 있는 石橋이고 大平橋는 예지동 근처, 永渡橋는 동대문 밖 東關王묘 남쪽에 있던 石橋이다.
- 8) 四山參軍은 서울주위의 山을 나누어 맡아서 城이나 돌·나무를 지키고 보호하던 軍職이다. 조선초기에는 四山監役官을 두었는데 英祖 30年 이를 四山參軍으로 改稱하고 三軍門과 淸應청에 分屬시켰다(정재각외3인, 《앞의 책》, p.616 및 刑典 주381 참조).
- 9) 작은 장승은 10리(3,600步)마다 설치한 里程標였다. 장승의 기원은 夏나라 禹임금이 治水할 때 땅을 판 곳에 푸른 진흙으로 봉하여 기록해 둔 것에 유래한다고 하였다(《經國大典 註解》後集 下 工典). 조선시대의 장승은 太宗 14年 使臣의 파견과 納貢의 기한을 예정하기 위하여 10리 마다 작은 장승, 30리 마다 큰 장승을 세우도록 한데에서 비롯하였다(《太宗實錄》卷28-33, 태종 14年 10월 정해). 또 端宗 元年 5月, 의정부의 啓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大路 좌우에 토질에 따라 소나무·갯나무·배나무·밤나무·해나무·버드나무 등을 심어 베지 않도록 하여 길을 표시하는 周制를 모방하게 하였다(《端宗實錄》卷6-25, 단종 원년 5월 무진). 이와 같은 里程標는 중국에서는 5리가 1亭, 10리가 1墩(장승)라 하여 5리마다 旛말을 세우고 10리 마다 墩人(장승)을 세웠으며, 거기에다 4方의 里數와 地名을 새겨 넣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장승을 흙으로 만들어 세웠으므로 비가 오면 허물어졌다. 그리하여 北周에서 魏效관이 翁주자사가 되었을 때 흙으로 만든 장승 대신 槐나무(槐木)를 심도록 하여 里程을 나타내었다. 그 후 1리 마다 나무 한 그루, 10리 마다 두 그루, 100리 마다 다섯 그루를 심게 하였다(《牧民心書》36 工典 및 권오영, 《앞의 책》, p.747).

을 세우고 30리 마다 큰 장승(大墩¹⁰)을 세우며 驛을 둔다. 장승(이정표)에는 里數와 地名을 새긴다.

[續] 8道の 道路의 里程에는 명나라의 例에 따라 周尺을 써서 6尺을 1步로 하고 360보를 1리로 하며 30리를 1息으로 한다.¹¹⁾ ○ 무릇 祭享에서 受香¹²⁾할 때에는 그에 앞서 길을 깨끗이 한다. 서울에서는 部官이 지방에서는 地方官이 掃除를 하도록 한다. ○ 西路에는 騎撥¹³⁾을 두고 서울에서 義州까지는 45站이 있다. 南路와 北路에는 步撥¹⁴⁾을 둔다. 서울에서 東萊까지는 35站, 서울에서 鏡城

10) 큰 장승은 太宗 14年 30리 마다 설치하도록 한 里程標였으나(《太宗實錄》卷28-33, 태종 14년 10월 정해) 그 후 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여 世宗 23年 8月, 兵曹의 啓에 따라 평안도가 使臣이 왕래하는 지역이므로 새롭게 만든 步數로 측량하여 30리 마다 一標를 세우도록 하되 혹은 흙과 돌을 쌓아 표하기도 하고 혹은 나무를 심어서 표시하였다(《世宗實錄》卷93-26, 世宗 23年 8月 癸巳).

11) 周尺 1자의 길이는 20.7cm(《대전회통연구》 戶典·禮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 12, p.19 및 工典주 57)이므로 1步의 길이는 124.2cm이고 1리는 447.12m이며 10리는 4,471.2m, 30리(1息)는 13.4Km정도이다. 息은 行人이 한번 쉬어 간다는 거리이며 俗言으로 站이라고도 한다(조선총독부, 《校註大典會通》, 1939, p.758).

12) 受香은 國家的인 祭享時에 獻官이 임금으로부터 香과 祝文을 받는 것을 말한다(《續大典》 禮典, 祭禮). 祭享은 土地神에 대한 제사인 祭와 人鬼에 대한 제사인 享을 합친 말이다(《大典會通研究》 戶典·禮典編, 1994.12, 한국법제연구원, p.192).

13) 騎撥은 邊方에 공문서를 빨리 전달하기 위하여 25리~30리 마다 站을 설치하여 騎馬兵으로 하여금 릴레이식으로 문서를 傳送시켰던 통신제도를 말한다. 馬撥을 西撥(서울에서 경기·황해도와 평안도로 가는 45站)에 활용되었으며 每站에는 撥將 1인과 軍丁 5인·말 5필을 두었다(조병로, <조선시대 驛制研究>, 1990,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44~54 및 이홍직, 《國史大事典》, 한국출판사, 1982 上, p.240·p.594 및 下, p.1612와 《續大典》 工典, 橋路). 역참제도는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에도 있었으며 통신과 물품수송의 두가지 기능을 겸하였다. 그러나 조선 선조 30년부터 통신만을 위주로 하는 파발제도를 실시하여 변방으로 가는 공문서의 신속한 전달을 꾀하였다는 것이다(同上).

14) 步撥은 邊方에 공문서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하여 30리 단위로 站을 두고 사람이 달려가서 릴레이식으로 문서를 傳送하였던 통신제도를 말한다. 西撥중 間路와 北撥(서울에서 경기·강원도와 함경도로 가는 59참)과 南撥(서울에서 경기·충청·경상도로 가는 35참)에 활용되었다. 每站에는 撥將 1인과 軍丁 2인씩을 두었다(同上).

까지는 59站이 있다.

【營繕¹⁵⁾】〔原〕 궁궐은 典涓司에서, 관청건물(公廡¹⁶⁾)은 각각 그 관청의 官員이 분담해 가지고 看守하되 물이 새거나 허물어진 곳이 있으면 工曹에 보고하고 修理한다. 매년 봄 가을에 工曹에서는 巡行審査하여 (그 실태를) 임금에게 보고한다. 경복궁·창덕궁·창경궁은 工曹의 당하관 각 2인이 분담하여 建物(間閣¹⁷⁾)과 雜物을 점검하고 살펴서 인계 인수서(解由)에 그 것을 기록하여 주고 받는다. <敬德宮¹⁸⁾은 開城府의 都事가 맡는다.〔增〕 경덕궁은 지금은 폐지되었다> ○ 궁궐내의 건물이 관청건물로 된 곳은 그 官司의 관리가 看守한다. 軍士가 入直하는 곳은 당번이 교대되는 날에 典涓司의 官員이 部將과 함께 돌보고 살펴되 만약 破損되거나 遺失된 물건이 있으면 刑曹로 공문을 보내어 사실을 조사하여 追徵하도록 한다. ○ 都城의 各門과 각처의 軍營 및 警守所¹⁹⁾는 그것이 소재하는 部の 관리가 부근에 살고 있는 백성을 정하여 간수하게 하며 인계인수서(解由)에 기록하여 주고 받도록 한다. 만약에 파손되거나 유실된 물건이 있으면 속직

15) 營繕은 궁궐이나 관청의 건물 또는 橋梁을 補修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營繕을 건축물의 신축이나 土木工程(營造)을 포함시키는 의미로도 쓴다(권오영의 4인, 《앞의 책》, p.748).

16) 公廡는 좁게는 관리들이 집무하는 청사만을 의미하기도 하나 넓게는 부속건물과 창고를 포함하는 관청건물 전체를 의미한다.

17) 間閣은 건물의 칸수를 말한다. 間은 平屋, 閣은 高層건물(누각)을 의미하기도 한다(同上). 따라서 間閣은 보통 건물을 총칭하여 쓴다.

18) 敬德宮은 이성계와 이방원이 임금되기 전에 거처하였던 집으로서 태종때 增修하여 경덕궁이라 하였다. 개성부 난한방(추동)에 있으며 서울을 한양으로 옮긴 후 別提 2인을 두어 지키도록 하였다(《新增東國輿地勝覽》卷4-14, 開城府上, 宮室).

19) 警守所에 관해서는 《大典會通研究》 兵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5.12, p.409 參照.

군사나 간수인에게 나누어 추정한다. ○ 군사가 당번을 교대하는 날에는 번갈아 가면서 서로 돌보고 살피면서 인계인수한다. 지방의 관청건물(公廨)은 임금에게 보고한 후에 營繕한다. 修理는 단지 觀察使에게만 보고하고 人吏·日守·官奴를 시켜서 한다. ○ 여러 道의 鄕校 건물은 守丞이 훼손되는 대로 補修하며 인계인수서에 모두 기록하여 주고 받는다. <갈자리 등속도 같다> 관찰사는 관내를 순행할 때 이를 살피고 점검한다.

○ 중국사신이 來往하는 여러 驛은 인근 고을에 분담시켜서 修理하도록 하며 갈자리와 그릇도 또한 分定하여 보충시킨다. 倭人과 野人이 來往하는 여러 역은 소재지 고을에서 수리하게 한다. [增] 지금은 폐지되었다.

[續] 紫門監²⁰⁾과 九營繕²¹⁾은 궁내와 궁외 각처를 수리하는 일(役)을 分掌한다. 자문감은 時御所의 各殿·各堂·궁내各司 건물의 補修와 차비문 안의 각종 用器의 제작과 內水庫²²⁾의 供上을 관장한다. ○ 營繕 1所는 종묘의 상하·비변사·耆老所·右巡廳·첨성대·先蠶壇²³⁾·肅靖門·二間水口門·典獄署²⁴⁾를 관장한다. ○ 2所는 社稷·德興大

20) 紫門監은 繕工監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임금이 잠시 머무는 時御所의 各 건물과 궁내 각 관서 건물의 補修를 맡으며 差備門(궁궐 正殿의 앞문과 宗廟의 上下門 등)안의 각종 用器의 제작과 內水庫의 얼음供上을 관장한다(이홍직, 《앞의 책》下, p.1290). 그러나 內水庫의 얼음供上을 관장하는 일은 《大典會通》에서 혁파되었다.

21) 九營繕은 궁궐이나 관청의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리하는 일을 맡은 9개의 營繕所이다. 9개의 영선소는 《大典會通》에서 5所로 정비되었고, 갑오개혁후인 1895년에는 왕실의 건축 토목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여 營繕司라 하였다. 영선사는 宮內府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官員으로는 長(奏任官) 1명과 技師(奏任官) 2명, 主事(判任官) 9명을 두었는데 1907년에 폐지되었다(이홍직, 《앞의 책》, p.933).

22) 內水庫는 궁궐안에서 왕실전용인 얼음을 보관·관리하던 곳이다. 水庫는 《경국대전》 吏典 京官職에서는 종5품 아문이었으나 영조 《續大典》에서 종5품인 別坐가 삭감되어 《大典會通》에서는 이를 종6품 아문으로 규정하였다. 水庫에는 東水庫·西水庫와 內水庫 등이 있었다.

23) 先蠶壇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었으며(사적 83호) 定宗 2년에 건립되었다. 先蠶祭

院君의 사당·의금부·金吾當直·敦寧府朝房²⁵⁾·북한행궁·南關王廟·廣智營·旅帥營·西活人署·동대문을 관장한다. ○ 3所는 永禧殿·毓祥宮²⁶⁾·於義宮·彰義宮²⁷⁾·奉常寺·의정부·중추부·宣仁門 外の 政府朝房·종각·남대문을 관장한다. ○ 4所는 光明殿·芳林苑·돈화문 外の 政府朝房·中學·사간원·사헌부·慕華館²⁸⁾·漢江壇²⁹⁾·五間水口門을 관장한다. ○ 5所는 慶熙宮³⁰⁾·十

壇은 고려때부터 전하던 의식으로서 양잠의 창시자라는 中國 황제의 元妃인 西陵氏를 제사하던 곳이다. 지금은 그 壇은 없고 성북초등학교 안에 그 터만 있다(이홍직, 《앞의 책》, pp.731~732).

24) 典獄署는 종6품 아문으로서 獄에 갇힌 죄수 즉 구금되어 있는 죄수에 대한 行刑을 맡았다. 官員은 승지가 겸하는 副提調의 감독하에서 主簿(종6품) 1명을 비롯하여 奉事(종8품) 1명(속대전에서 삭감), 參奉(종9품) 2명(속대전에서 1명 증원)이 있었다. 기타 실무자로서는 書吏 4명과 羅將 30명이 있었다. 典獄署는 서울 中部 瑞麟坊에 있었으며 그 문앞에는 홍살문을 세웠다. 典獄署는 고려초기에 설치하였는데 고려 成宗 14년(995)에 大理寺로 개칭하였다가 文宗 때 다시 典獄署로 고쳤으며 충선왕 때 일시 폐지하였고 공민왕 때 다시 설치하였던 것을(이홍직, 《앞의 책》, p.1330 및 《高麗史》 卷77-10, 志31, 百官2) 조선시대에 그대로 두었다.

25) 朝房에 관해서는 《大典會通研究》 兵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5.12, p.252.

26) 永禧殿은 서울에 있으며 조선 태조·세조·원종·숙종·영조·순조의 초상화를 모신 곳이고(《대전회통연구》 吏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3.12, p.153), 毓(육)祥宮은 영조의 생모인 淑嬪崔氏의 사당인데(《增補文獻備考》 卷61-2, 禮考8 宮廟, 육상궁), 純宗 때(1908년) 임금의 私親(왕의 생모인 후궁)을 궁정동에 함께 모시고 후일의 嚴妃까지 합쳐서 宮井洞 七宮이라 하였다. 여기에 모신 神位로는 위 崔氏·嚴氏 이외에 仁嬪金氏·禧嬪張氏·靖嬪李氏·映嬪李氏·綏嬪朴氏 등이 있다(이홍직, 《앞의 책》, p.202).

27) 於義宮은 서울 社稷洞에 있던 궁궐로서 仁祖가 등극하기 전에 살던 곳이고, 彰義宮은 서울 종로구 通義洞(順化坊)에 있던 英祖의 潛邸(임금되기 전에 거처하던 곳)이다(이홍직, 《앞의 책》, p.907 및 p.1511).

28) 慕華館은 조선시대에 중국 使臣을 영접하던 곳이다. 太宗 7년, 松都의 迎賓館을 모방하여 서대문 밖에 건립하고 이름을 慕華樓라고 하였다. 모화루 앞에는 迎恩門을 세우고 남쪽에 못을 파서 연꽃을 심었다. 세종 11년에 그 규모를 확장·改修하였고, 그 후 모화관이라 개칭하였다. 청일전쟁후 모화관은 폐지되었으며, 1896년 獨立協會에서 영은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우고 모화관을 독립관이라 하였다(이홍직, 《앞의 책》, p.477).

29) 漢江壇은 서울쪽 한강 北岸에 있으며 여기서 春秋로 제사지냈다(《新增東國輿地勝覽》 卷3-39, 漢城府 祠廟).

30) 慶熙宮은 서울 서대문 쪽에 있던 궁궐로서 광해군 8년 仁慶宮·慈壽宮과 함께 건립하였으며 처음에는 慶德宮이라 하였다. 이곳은 원래 仁祖의 生父인 元宗의 潛邸가 있던 곳으로 광해군이 王氣를 없애기 위하여 건립하였으며 英祖 36년에 경희궁으로 개칭하였다. 경희궁에는 여러 殿·堂·門·亭이 있었으나 순조 29년 화재로 인하여 대부분 소실되어 同王 31년에 重建하였다. 그러나 日帝때 남아있는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

二別堂·鄉校洞本宮·含春苑·放馬苑·南學·돈녕부·驛馬營·左巡廳·霽祀壇

31) ·홍문관朝房·光熙門을 관장한다. ○ 6所는 長生殿³²⁾·의빈부·南別宮³³⁾
·훈련원·上林苑·西營³⁴⁾·南壇³⁵⁾·木覓堂·彰義門³⁶⁾을 관장한다. ○ 7所는
司寒壇³⁷⁾·先農壇³⁸⁾·성균관·동학·蠹所·太平館·東關王廟·療病家·혜화문
을 관장한다. ○ 8所는 空闕內的各司·경복궁·종친부·西學·宣武祠·南
營³⁹⁾·興化門 外的 政府朝房·北郊厲壇⁴⁰⁾·東活人署·牛毛煮取假家·昭義門을

고, 경성중학교(서울중·고교의 전신)를 그 자리에 설립하였다(이홍직, 《앞의 책》, p.86).

- 31) 霽(우)祀壇은 서울 東郊에 있으며 바람·구름·벼락·비 등을 통제한다는 여러神들에게 제사지내는 곳이다(《증보문헌비고》권63-1, 禮考10, 諸壇).
- 32) 長生殿은 왕실의 棺을 제작·보관하던 관서로서 都提調 1인은 영의정 겸직이고 提調 3인은 戶·禮·工曹判書가 겸직하며 郎廳 3인은 戶·禮·工曹의 郎官이 겸직한다(《大典會通》吏典, 京官職).
- 33) 南別宮은 小公洞에 있던 별궁으로서 太宗 때 慶貞公主의 남편 평양부원군 趙大臨(태종의 사위)에게 그곳을 주어서 속칭 小公主宅이라고 하였는데 宣祖 때 義安君의 신궁으로 되면서 南別宮이라 하였다. 宣祖 26년에 明將 李如松이 거처한 후로 중국사신이 머무는 곳이 되었다. 고종 때(1897年) 이곳에 圓(원)丘壇을 세웠으나 일제 때(1913) 그것을 헐고 그 자리에 조선호텔을 지었다(이홍직, 《앞의 책》, p.329).
- 34) 西營은 경희궁 서쪽에 있던 훈련도감의 分營을 의미하기도 하고 창덕궁 서쪽에 있던 금위영의 分營을 의미하기도 하였다(《위의 책》, p.710).
- 35) 南壇은 五方土龍祭(祈雨祭)를 지내던 곳으로 서울 南山 쪽에 있었다. 원래는 南方土龍壇으로 土地神을 위하던 곳이었으며 서낭밭고제를 남단에서 지내고 3일후에 다시 厲祭를 北郊에서 지냈다(《위의 책》, p.328 및 《增補文獻備考》卷63-10, 禮考10 諸壇附禱水旱).
- 36) 彰義門은 서울 四小門의 하나로서 일명 紫霞門이라고 하며 종로구 창의동에 있다. 태조 5년 서울 都城축조 때 세운 문이다. 仁祖反正때 이 문을 거쳐서 들어갔으므로 反正功臣의 명단이 다락에 걸려 있다(《위의 책》, p.1512).
- 37) 司寒壇은 司寒祭를 지내던 곳으로 동대문 밖에 있다. 사한제는 음력 설달에 얼음을 떠서 水庫에 넣을 때와 음력 2월 빙고문을 열때 지내는 제사이다(《위의 책》, p.661).
- 38) 先農壇은 神農氏와 后稷氏를 모시고 제사지내던 곳으로 동대문 밖 普院東洞에 있었다. 신농씨와 후직씨에 대한 제사는 해마다 경칩 뒤 첫 亥日에 그 해 농사가 잘되기를 비는 제사로서 임금이 직접 지냈다(《위의 책》, p.727).
- 39) 南營은 敦化門 밖에 있던 훈련도감의 分營을 의미하기도 하고 경희궁 開陽門 위쪽에 있던 금위영의 分營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느곳이나 哨官 1명이 있어 騎馬兵 55명(前者) 또는 鄉軍 50명(後者)을 거느렸다(《위의 책》, p.333).
- 40) 厲壇은 北郊에 있으며, 定宗 2년에 設壇하면서 각 고을에도 역시 設壇하도록 하였다. 成宗 15년에 평안도와 황해도에 疫疾이 크게 유행하였으므로 서울에서 官員을 보내어 그 곳 산(려단)에서 厲祭를 지내도록 하였다. 五禮儀에 의하면 春 清明과 秋 7月15日 및 冬 10月初1일에 厲祭를 지낸다고 하였다. 中宗 20년에도 평안도에서 역질로 죽은자가

관장한다. ○ 9所는 隆福殿·昭顯宮·璿源錄廳·闕外軍堡·集春營·吏曹·종친부·사간원朝房을 관장한다. ○ 繕工監 관원 각 一人에게 분담시켜(分差) 파손되는 대로 이를 보수하게 한다. [增] 2所는 儲慶宮⁴¹⁾·西壇을 관장한다. 3所는 禮曹를 관장한다. 4所는 大嬪宮⁴²⁾·鞍峴을 관장한다. 5所는 車洞碑閣·延祐宮⁴³⁾을 관장한다. 6所는 流霞亭·규장각朝房을 관장한다. 7所는 중추부朝房을 관장한다. 8所는 景慕宮⁴⁴⁾·北一營⁴⁵⁾을 관장한다. 9所는 淨業院⁴⁶⁾·碑閣⁴⁷⁾·돈의문을 관장한다. ○ 북한행궁은 지금은 충음청에 속한다. [補] 九營繕은 지금은 五所로 분장되었다. 1所는 종묘·육상궁·연호궁·장생전·독소·

7,700여인이 되었으므로 관원을 보내어 厲祭를 지냈고 宣祖 18年에도 역질이 특히 극성하였던 평안도와 황해도에 近臣을 보내어 厲祭를 지내게 하였다. 顯宗·肅宗·英祖年間에도 역질이 극성하여 北郊나 東西南郊에서 厲祭를 여러번 지냈다. 또한 19세기 純祖代와 高宗代에도 厲祭를 몇차례 지냈다(《위의 책》卷63-16~18, 禮考10, 諸壇, 厲).

- 41) 儲慶宮은 仁祖의 潛邸로서 소공동(남대문안)에 있었다. 원래 이곳은 元宗의 舊邸로서 松峴宮이라 하였는데 영조 31년 6월에 仁嬪金氏의 神位를 모시고 저경궁이라 개칭하였다. 이 궁은 1908년 육상궁과 합쳤으며(주26) 1927년 4월, 서울齒大 신축으로 헐어 버렸다(《위의 책》, p.1318 및 《增補文獻備考》卷61-1, 禮考8, 宮廟, 儲慶宮).
- 42) 大嬪宮은 희빈 張氏를 모신 곳으로 1908년 육상궁 등과 합쳐 宮井洞七宮이라 하였다(주26). 張氏는 罪를 짓고 賜死되었으므로 그의 무덤을 園이라 할 수는 없었지만 한때 王妃의 몸이었고, 景宗의 生母이기도 하여 서오능에 있는 그의 무덤을 大嬪之墓라고 하였다.
- 43) 延祐宮은 육상궁 안에 있으며, 靖嬪李氏를 제사지내던 사당이다(《增補文獻備考》卷61-3, 禮考8, 宮廟).
- 44) 景慕宮은 사도세자(莊祖)와 그의 嬪(妃) 洪氏를 모신 사당이다. 원래 사도세자의 사당은 영조 40년 봄에 北部 順化坊에 건립되었는데 그 해 여름에 東部 崇教坊으로 移建하여 垂恩廟라 하던 것을 正祖 즉위년에 다시 지어서 경모궁이라 하였다. 경모궁은 헌종 5년(1839)에 불에 타버려 그때의 入直官과 守門將이 처형되고 提調는 파직되었다(《위의 책》, p.67). 사도세자와 그의 嬪 洪氏는 高宗 光武 3年에 각각 皇帝와 皇后로 추존되어, 景德宮內的 景慕殿을 魂殿으로 삼았다(《增補文獻備考》卷60-14, 禮考7, 景慕殿).
- 45) 北一營은 훈련도감의 分營으로 慶熙宮의 북쪽에 있었다(《위의 책》, p.623).
- 46) 淨業院은 서울 동대문 東望峰 밑에 있던 僧房으로서 端宗妃 宋氏가 머물던 곳이다. 3칸 茅屋에 불과하였다고 한다(《위의 책》, p.1360).
- 47) 碑閣은 무덤 아래 따로 비석을 세워서 비석을 정중히 모시기 위하여 지은 집을 말한다. 조선 태조·정종·태종의 능에는 神道碑가 있어서 임금의 事蹟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세종의 陵에도 신도비가 있었으나 여주로 옮길때 임금의 事蹟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필요없다고 하여 땅에 묻어버렸다(《위의 책》, p.634).

종친부·중학·돈녕부朝房·의빈부·홍문관朝房·정업원·선잠단·첨성대·목
 덕당·馬祖壇⁴⁸⁾·右巡廳을 관장한다. ○ 2所는 社稷·덕흥대원군궁·光明殿
 時御所·搖鈴幕·경복궁·耆老所·의정부朝房·돈녕부·이조·동학·류하정·
 종각·선농단·養正齋·하합춘원·좌순청을 관장한다. ○ 3所는 영희전·저경
 궁·선원록청·대빈궁·남별궁·봉상시의 神室⁴⁹⁾·北壇⁵⁰⁾·려단·內資寺·捲
 草閣⁵¹⁾·상합춘원·중추부·禮曹·서학·內瞻寺·牛毛假家·상하 당직을 관장
 한다. ○ 4所는 경모궁·景祐宮⁵²⁾·동관왕묘·경희궁·십이별당·어의본궁·
 의금부·의정부·班列朝房·사간원朝房·모화관·남학·상림원·승문원·우사
 단·한강단을 관장한다. ○ 5所는 성균관·창의궁·릉복전·文禧廟⁵³⁾·남관왕
 묘·全溪大院君宮·宣武祠⁵⁴⁾·연서비각·차동비각·남단·사한단·의정부·중

48) 馬祖壇은 馬神을 수호하는 별을 제사지내던 壇이다. 마조단에서의 제사는 고려 태조
 때에도 있었는데 그 때의 마조단은 높이가 3자로서 사방으로 출입하는 층계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와 같이 仲春에吉日을 택하여 임금의 신하를 보내어 동대문 밖
 에 마조단을 쌓고 제사지냈으며 1894년 갑오경장 때 폐지되었다(《위의 책》, p.457).

49) 奉常寺의 神室은 사직단·선농단·한강단·우사단·장춘단 등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
 는 제단으로서 神位가 상설되지 않은 곳의 神位(34位)를 모신 곳이다(《增補文獻備考》
 卷63-19, 禮考10, 諸壇, 附神室).

50) 北壇은 南壇과 더불어 祈雨祭(土龍祭)를 지내던 곳이다. 제사에 희생되는 짐승은 소·
 양·돼지 등이다(《위의 책》卷63-9, 禮考, 諸壇, 附禱水旱).

51) 捲草閣은 捲草禮를 행하던 곳으로 보인다. 捲草禮는 妃嬪에게 產候가 보이면 內醫院提
 調가 모든 執事官을 거느리고 產殿房에 들어가吉한 방향에 產座를 만들고 방 4方에
 順產을 비는 부적을 붙치며 방울을 軒廳에 달아 有事時에 醫官을 부르게 하는 것을 말
 한다. 이렇게 產座를 안배한 다음 顯草할 문을 정하고 門楣(문에 가로 댄 나무)에 못을
 박고 紅纓(붉은 끈)을 드리워 두었다. 產後에는 홍영을 문미에 매어달고 7일이 지난후
 廳上으로 도로 두었다가 多子無災한 朝官 중에서 뽑힌 권초관이 命銀·命米·命絀·命
 絲 등을 진열, 분향하고 藁席(짚자리)을 漆階에 넣고 紅褌로 싸서 남자이면 內資寺, 여
 자면 內瞻寺의 창고에 넣어 두었다(이홍직, 《앞의 책》, pp.211~212).

52) 景祐宮은 純祖의 생모인 綏嬪 朴氏의 사당이다. 1824년 北部 觀光坊 桂洞의 龍虎營
 이 있던 자리에 사당을 세우고 神位를 모셨다가 建陽 元年(1896)에 이를 順化坊 玉洞
 으로 옮겼다. 1908년에는 육상궁에 合祀하였다(이홍직, 《앞의 책》, p.75 및 《增補
 文獻備考》卷61-4, 禮考8, 宮廟, 景祐宮).

53) 文禧廟는 北部 安國坊에 있었는데 文孝世子(正祖子, 純祖兄)를 제사(享)지내는 사당이
 었다(《增補文獻備考》卷61-6, 禮考8, 宮廟).

54) 宣武祠는 서울의 南門안 太平館 서쪽에 있으며 明나라 兵部尙書 형개와 經理 양호를

추부朝房·사헌부·內閣朝房·방마원·전옥서를 관장한다. ○ 자문감에서 내빙고의 供上을 관장하는 일은 지금은 혁파되었다. ○ 무릇 營繕할 곳에 대해서는 담당 官員이 本司의 官員과 함께 조사하여 시행(檢舉)한다. 각처의 營繕(補修工事)에 있어서 수량을 더하여 허위보고한 경우에는 그 官員을 파직한다. [增] 대궐안에서의 시급한 改修가 그 役事는 크고 工期는 촉박할 경우에는 9營繕이 일을 분담하여(分力) 함께 役事를 하도록 한다. ○ 무릇 修理를 함에 있어서는 어느 것으로부터 어느 것 까지 했다는 것과 그 年條를 기록하여 두었다가 3年이내에 무너지거나 훼손될 경우에는 해당 工匠을 科刑하여 다스리고 (관계) 官員을 문책한다. [增] 宮闕의 담장(宮牆)은 都城例에 따라 三軍門에 分屬시켜 훼손되는 대로 石築하도록 한다.

【度量衡⁵⁵⁾】〔原〕 여러 관청(諸司)과 여러 고을의 도량형은 工曹에서 제정하여 만든다. 여러 고을에서 量을

제사지내는 사당이다(《增補文獻備考》권64-5, 禮考11, 諸廟).

55) 度量衡은 길이(度), 부피(量), 무게(衡)를 재는 자(尺), 말이나 되, 저울을 합친 말이다. 중국에 있어서의 度量衡은 黃鐘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度의 체도는 크기가 중간인 기장 90매를 나란히 배열하면 황중관의 길이와 같게 된다. 기장 1매를 1分으로 하고, 10分을 1寸, 10寸을 1尺(황중관의 길이는 90分), 10尺을 1丈, 10丈을 1浬으로 하였으며, 量의 체도는 기장 1,200개를 채운 그릇의 부피를 1龠(1勺)이라 하고 10龠을 1合(10勺), 10合을 1升, 10升을 1斗, 10斗를 1斛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衡의 체도는 기장 1,200개를 黃鐘의 管에 넣어 1약으로 하고 1약의 12분의 1(기장 100개의 무게)을 1銖, 24銖(2약)를 1兩, 16兩을 1斤, 30斤을 1鈞(근), 4근을 1石으로 정하였다. 조선시대의 度量衡체도는 대체로 중국의 그것을 受容한 것이나 量制에 있어서 15斗 또는 20斗를 1斛으로 하였다. 度制에 있어서 分 밑으로 釐(리)·毫·絲·忽·微·纖·沙·塵·埃·渺·漠(100억분의 1리) 등이 있고 量制에 있어서는 合 밑으로 勺(작)·撮(찰)·抄·圭·粟(6만분의 1합) 등이 있으며 衡制에 있어서는 兩 밑으로 錢·分·釐·毫·絲·忽(100만분의 1량) 등이 있었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p.749~750).

측정하는 그릇을 각각 하나씩 각 道로 보내어 관찰사로 하여금 규정(制)에 따라 바르게 고쳐서(平校)⁵⁶⁾ 낙인하도록 한다. 私處에서 제조한 것은 매년 秋分日에 서울에서는 平市署, 지방에서는 巨鎭에서 바르게 고쳐서(平校) 모두 낙인한다. 길이(度)의 제도(制)는 10리(釐)를 1푼(分)으로, 10푼을 1치(寸)로, 10치를 1자(尺)로, 10자를 1발(丈)로 한다. 周尺⁵⁷⁾을 黃鐘尺⁵⁸⁾에다 대비하면 주척 1자는 황종척으로 6치 6리이고, 營造尺⁵⁹⁾을 황종척에다 대비하면 영조척 1자는 황종척으로 8치9푼9리이며, 造禮器尺⁶⁰⁾을 황종척에다 대비하면 조예기

- 56) 平校는 각종 度量衡 器具인 자와 되·말 등의 長短과 大小를 가지런하게 통일하고 저울의 輕重의 差를 고르게 하는 등, 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한다(《經國大典註解》下, 後集 工典). 斗量器에 대한 平校는 조선국초부터 시행되었고 저울에 대한 平校는 태종 10년 정월 부터인데, 서울에서 斗斛을 平校할때 저울도 함께 바꾸며 지방에서는 監司가 京市署에서 平校한 斗斛과 저울을 갖고 관내 고을에 가서 不時에 그 곳 되·말·저울과 서로 비교하여 어긋남이 있으면 守令과 담당아전을 칠저히 단속(구속)한다는 것이다(《太宗實錄》卷19-7, 太宗 10年 正月 乙未). 그러한 平校는 世宗代에도 이어졌다. 世宗 13年 4月 工曹의 啓에 따라 각 관서의 長官이 '되와 말, 을 平校하여 각 고을에 나누어 주고 특히 布帛尺에 관해서는 일찌기 平校하지 아니하였으므로 京外의 尺度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각 고을에서 竹尺을 만들어 서울로 올려 보내서 京市署로 하여금 그 '자, 를 바르게 고쳐서 돌려 보내도록 하였다(《世宗實錄》卷52-5, 世宗13年 4月 辛丑).
- 57) 周尺은 周代에 쓰던 尺度로서 春秋時代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발굴품(北京故宮博物館所藏)인 周尺의 길이는 23.1cm였으나 조선시대의 그것은 20.7cm가 표준형이었다(남문현, <조선시대 척도 자료 조사 용역 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92.12). 조선시대의 周尺은 태조 2년 許稠가 《朱子家禮》에 있는 司馬公의 石刻周尺과 元의 中樞院使 金剛의 象牙周尺 및 陳友諒의 아들 陳理家에 소장하고 있던 周尺을 참고하여 만들었다고 하며(《增補文獻備考》卷91-4, 樂考2, 度量衡), 여러가지 尺度의 기준이 되었고 家禮·喪禮와 道路의 里數射場의 步數 등을 재는데 쓰였다. 周尺은 구리(銅)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玉石 또는 象牙로도 만들었다(남문현 <앞의 글> 및 권오영외4인, 《앞의 책》, pp.750~751).
- 58) 黃鐘尺은 세종7년에 박연이 황해도 해주産 기장 중 크기가 중간치를 골라 100알을 나란히 배열하여 그 길이를 1尺으로 한 자이다. 기장한 알의 길이를 1分으로 하고 10알을 배열한 것을 1寸으로 하였다(黃鐘의 길이는 9寸). 이는 박연이 國樂의 기본음을 중국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黃鐘음을 낼 수 있는 黃鐘律管의 길이를 정하는데 쓰였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51).
- 59) 營造尺은 주3 참조.
- 60) 造禮器尺은 文廟와 宗廟의 祭禮器를 만들 때와 印信用으로 쓰였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51).

척 1자는 황종척으로는 8치2푼3리가 되고, 布帛尺⁶¹⁾을 황종척에다 대비하면 포백척 1자는 황종척으로 1자3치4푼8리이다. ○ 용량(量)의 제도는 10작(勺)을 1흡(合), 10흡을 1되(升), 10되를 1말(斗), 15말을 보통 섬(小斛 平石), 20말을 큰섬(大斛 全石)으로 한다.⁶²⁾ ○ 저울(衡)의 제도는 黃鐘管⁶³⁾에 담을 수 있는 물의 무게를 88푼(分)으로 하되 10리를 1푼으로, 10푼을 1돈(錢), 10돈(錢)을 1兩, 16량을 1斤으로 하고 큰 저울(大稱)은 100근, 보통의 저울(中稱)은 30근 혹은 7근, 작은 저울(小稱)은 3근 혹은 1근의 무게를 달 수 있

61) 布帛尺은 바느질 자이다. 쇠로 만들거나 대나무로 만들었다. 포백척은 옷감을 재는데 썼을 뿐만 아니라 세종 26년 이후에는 1등 田尺의 길이를 표시하는 基準尺으로도 쓰였고 또 한강 水位를 재는 데도 쓰였다(同上).

62) 흡은 10勺이 드는 量器이고, 升은 10合, 斗는 10升, 小斛은 15斗, 大斛은 20斗가 드는 量器이다. 세종 28년 9월에 更定된 斛斗升合制에 의하면 新營造尺으로 大斛(全石)은 길이가 2尺, 너비가 1尺1寸2分, 깊이가 1尺7寸5分으로 容積이 3,920寸이고, 小斛(平石)은 길이가 2尺, 너비가 1尺, 깊이가 1尺4寸7分으로 容積이 2,940寸이며, 말(斗)은 길이가 7寸, 너비가 7寸, 깊이가 4寸으로 容積이 196寸이고, 되(升)는 길이가 4寸9分, 너비가 2寸, 깊이가 2寸, 容積이 19寸6分이며, 흡은 길이가 2寸, 너비가 7分, 길이가 1寸4分, 容積이 1寸9分6厘였다(《世宗實錄》卷113-36, 世宗 28年 9月 壬辰). 이는 대체로 1합이 56.76cm³, 1升이 567.6cm³, 1斗가 5676cm³로 계산된다. 各地方에 있어서 度量衡器의 통일은 成宗代에도 이룩되지 못하였다. 成宗 5年 11月, 신숙주가 啓하기를 戶曹에서는 3年마다 升斗斛을 改造하여 各道 界首官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界首官은 소속 諸邑으로 하여금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제작하도록 하였으나 大小가 不同하므로 鐵尺을 만들어 各道로 보내서 界首官이 大小深淺을 헤아려 斗斛을 제조하도록 하고 또한 監司로 하여금 巡行檢察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成宗實錄》卷49-8, 成宗 5年 11月 己巳).

63) 黃鐘은 6律과 6呂 등 12律 중 가장 긴 것으로 6律의 시작이라 하였다. 黃鐘管은 지름이 3分4釐6毫(호)이고 둘레가 9分이며 길이가 9寸이다. 세종 12年 9月, 君臣間의 대화에 의하면 黃鐘管은 박연이 宋元의 제도에 의거하여(海竹으로) 만들어 그 管 속에 기장(唐黍) 1,200개를 넣어서 그 관이 내는 소리를 國樂의 기본으로 정하였다는 것이다(《世宗實錄》卷49-32, 세종 12年 9월 己酉 및 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52). 黃鐘管은 度量衡의 기준이 되는데 度制는 管의 길이를 90分으로 定하여 10釐를 1分, 10分을 1寸, 10寸을 1尺, 10尺을 1丈으로 하였으며 量制는 管 속에 기장 1,200개를 담아서 1勺으로 정하여 10勺을 1合, 10合을 1升, 10升을 1斗, 15斗를 小斛, 20斗를 大斛으로 하였고, 衡制는 黃鐘管 속에 우물물을 가득 채워 그 물무게를 88分으로 정하여 10釐를 1分, 10分을 1錢, 10錢을 1兩, 16兩을 1斤으로 하였다(주 55.58 및 권오영외4인, 《앞의 책》, pp.752~753).

게 한다.64)

[續] 매년 秋分日에 서울에서는 工曹, 지방에서는 營과 鎭에서 公用·私用의 말(斗)과 섬(斛)을 거두어 다시 檢定(平校)·烙印하되 그 말과 섬의 규격(制)과 용량(造)이 法定기준과 같지 아니한 경우와 낙인의 흔적이 불명한 경우에는 違令律⁶⁵⁾

로서 論罪한다. 여러 관청과 여러 고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큰섬(大斛)의 용량은 20말(斗)이 들어 가고, 길이는 2자, 너비는 1자 1치 2푼, 높이는 1자7치2푼이다. 보통섬(小斛)의 용량은 15말이 들어 가고, 길이는 2자, 너비는 1자, 높이는 1자4치7푼이다. 말(斗)의 길이·너비는 각 7치, 높이는 4치이고, 되(升)의 길이는 4치 9푼이며 깊이와 너비는 각 2치이다. [增] 軍門의 큰섬(大斛)은 모두 호조의 銅斛⁶⁶⁾에 따른다. ○ 무릇 公用·私用으로 쓰히는 것 모두 호조(地部)의 말(斗)과 되(升)를 기준으로 하며, 간사한 백성이 사사로이 용량을 줄인 경우에는 발각되는 대로 엄중히 조치(구속)하며 해당 官署의 官員은 制書有違律⁶⁷⁾로 論罪한다.

64) 큰 저울(大稱)은 무거운 물건(100근)을 달수 있는 저울이고 보통저울(中稱)은 30근이나 7근 정도의 물건을 달수 있는 저울로서 큰저울과 마찬가지로 架를 만들어 매어 달았는데 그 모양이 햇대(衣架)와 같았다(《林園經濟志》 贍用志4, 度量之具). 저울(稱)에는 저울대 위에 分·錢·兩·斤을 새긴 衡과 노끈으로 錘槃을 매단 準이 있다. 錘(權)와槃은 모두 銅으로 만들었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53). 小稱은 3근 혹은 1근의 무게를 다는 작은 저울로서 주로 한약방에서 많이 이용된다.

65) 違令律에 관해서는 《大明律直解》刑律 卷26 雜犯 違令條에 규정이 있으며笞(태)50에 처한다고 하였다.

66) 戶曹의 銅斛이란 全國의 斛의 模範(기준)으로서 구리로 만들어 호조에 비치하여 둔 것을 말한다(조선총독부, 《앞의 책》, p.762).

67) 制書有違律이란 國王이나 世子의 教旨와 명령에 위반한 죄로서 《大明律直解》吏律 卷3 公式 判書有違條에 규정되고 있다. 刑量은 笞50에서 杖100까지이다.

【院宇⁶⁸⁾】〔原〕 서울 근방(城底)⁶⁹⁾의 院은 5부에 서, 지방의 院은 守旣이 부근에 살고 있는 백성을 선정하여 院主⁷⁰⁾로 삼아서 補修하게 하며 濟川亭은 한강나루의 渡丞이 살피서 看守한다. ○ 서울에서 開城府·竹山·稷山·抱川에 이르는 길을 大路로 하고 5戶를 定(하여 院主로) 하며, 서울에서 楊根가

68) 院宇는 院의 건물을 의미하며, 대체로 역과 역의 중간지점에 설치되어 있다. 院은 官吏가 公用으로 여행하는 경우에 숙박하는 시설이다. 院은 고려시대에도 있었지만 조선시대의 院은 태조 원년 9월 배극렴과 조준의 상소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奉使人(王命으로 출장가는 官員)과 守旣 이외에는 무료 宿食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들도 단순한 宿食만 허용될 뿐 宴飲은 금지하였다(《太祖實錄》卷2-6, 태조 원년 9월 壬寅). 조선시대의 院宇는 고려시대의 寺院이 院으로 바뀐 것도 있고, 개인의 주택이나 樓亭 가운데 院宇로 개조된 것도 있으며, 官家 혹은 私家에서 院宇를 신축한 경우도 있었다. 院은 公務 여행자용 숙박시설이었지만 私的인 여행자나 商人들의 宿食所(有料)로도 이용되었다. 임금이나 관찰사가 지방을 순시할 때, 혹은 임금의 피난길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院은 숙식제공 이외에도 馬匹을 준비해 두어 관찰사의 순행등에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때로는 신구 관찰사가 道界 부근의 院에서 교대하기도 하였다(崔在京, 〈조선시대 院에 대하여〉, 《嶺南史學》4, 1975, pp.62~70 및 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54). 院宇는 각 고을의 守旣이 보살폈으며, 관찰사는 순행할 때 守旣이 院宇에 관하여 관심을 쏟는 여부(用心與否)를 점검하여 守旣을 내쫓거나 올려주는 근거로 한다(《世宗實錄》卷30-16, 세종 7년 11월 乙卯).

69) 해설편 1 城底 參照.

70) 院主는 院宇를 수리하고 여행자를 접대하는 일을 맡은 자이다. 고려말 조선초기에는 土姓品官이나 승려들이 院主역을 맡았으나 과중한 雜役과 손님(大小使客)의 길안내 및 擧火를 맡겨,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등으로 본래의 일을 잘 수행할 수가 없었으므로 世宗 7年 11月 院主에게 잡역과 指路擧火 등의 일을 면제하도록 하여 본래의 업무인 院宇의 補修와 여행자 접대에 마음을 쏟도록 하고 監司가 巡行할 때에 守旣의 用心여부를 점검하여 승진 또는 면직의 자료(증빙)로 하였다. 또 城底 10里的 院館은 한성부로 하여금 살피서 수리하도록 하였고 興仁門 밖, 普濟院은 弘濟院의 例에 따라 田 2結 50負를 주도록 하였다(《世宗實錄》卷30-16, 世宗 7年 11月 乙卯). 世宗 10年 윤4月, 院主인 僧人에게 잡역을 면제하되, 구휼을 완벽하게 하고 補修를 잘하는 경우에는 임금에게 아뢰어 僧職을 주며 원래 관직이 있는 자에게는 승진시키도록 하였다(《위의 책》卷40-14, 世宗10年 윤4月 戊戌). 成宗 3年 2月 工曹에서 啓하기를 守旣들이 《經國大典》에 있는 院主의 定數를 채우지 아니하여 쉽게 院宇가 퇴락하여 훼손되기에 이르렀으므로 관찰사로 하여금 직접, 守旣 중 法을 받들지 아니한 자를 점검하여 죄를 주며 院宇가 파괴된 곳은 관찰사로 하여금 僧人들을 모집하여 보수케 하자는 것이었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成宗實錄》卷15-20, 成宗 3年 2月 乙未)(刑典註 232 參照).

지, 竹山에서 尙州까지, 鎭川에서 星州까지, 稷山에서 全州까지, 開城府에서 中和까지, 抱川에서 淮陽까지 이르는 길을 中路로 하고 3戶를 定(하여 院主로) 한다. 나머지는 小路로 하고 2戶를 (院主로) 定하여 雜役을 면제시킨다. 漢城府와 觀察使가 살핀다.

【舟車】〔原〕水路로 運行하는 여러 배와 나룻배(渡船)는 5년이 되면 修理하고 10년이 되면 改造한다.⁷¹⁾ 바다로 다니는 배(海船)는 길이가 42자 너비가 18자9치 이상이면 大船이라하고, 길이가 33자6치 너비가 13자6치 이상이면 中船이라 하며, 길이가 18자9치 너비가 6자3치 이상이면 小船이라한다. 강으로 다니는 배(江船)⁷²⁾는 길이가 50자 너비가 10자3치 이상이면 大船이라 하고, 길이가 46자 너비가 9자 이상이면 中船이라 하며, 길이가 41자 너비가 8자 이상이면 小船이라 한다. <모두 營造尺을 쓴다. ○ 고깃배의 척수도 같다.> ○ 여러 중앙관청과 여러 고을 및 여러 驛에는 모두 大車⁷³⁾ · 便

71) 水路(강물)로 운행하는 여러 渡船은 海路로 운행하는 선박(海船)보다 쉽게 썩거나 파손 됨으로 10년이 되면 改造하도록 하였다(《經國大典註解》前集, 工典). 海船은 8년 만에 修理하고 그 후 6년에 改修하며 또 다시 6년 후(20년후) 改造하는 것이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56).

72) 여기서의 江船은 租稅米를 운반하는 漕轉船을 의미한다. 世宗 28년 9월 戶曹의 보고에 따른 의정부의 啓에 의하면 漕轉船에 싣는 곡식의 石數를 詳定하지 아니하였으므로 船主들은 배의 크기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過多하게 米穀을 실어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하기 쉬웠기에 앞으로는 길이 50자 너비 10자3치 이상인 大船에는 米 250石을 싣고 길이 46자 너비 9자 이상인 中船에는 200石, 길이 41자 너비 8자 이상인 小船에는 130石 싣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만약 이보다 더 싣는 경우에는 담당 관리도 함께 論罪 하자는 것이었고 임금도 이에 따랐다(《世宗實錄》卷113-35, 世宗 28年 9月 辛巳).

73) 大車는 平地에서 짐을 실어 나르는 큰 수레이다(《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工典). 소나무를 이용하여 짐을 나르는 수레로서 軍務로도 有益한 것이었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56 및 《燕山君日記》卷4-14, 燕山君 元年 4月 己巳).

車⁷⁴⁾ · 曲車⁷⁵⁾ · 杠輓⁷⁶⁾를 두고 物品을 수송한다. 험난한 곳에서는 반드시 수레(강주)를 쓸 필요는 없다.

[續] 각 나루의 官船은 帳簿에 기록해 두고 額數(隻數)를 정하여 여러 軍門에 나누어 소속시키며 別將을 임명하여 점검하며 살피도록 한다. 廣津에 4척, 松坡에 9척, 三田渡에 3척, 新川에 2척, 漢江에 15척, 露梁津에 15척, 楊

74) 便車는 작은 수레(小車)로서(《經國大典註解》下 後集, 工典), 偏車라고도 하였다. 서울에서는 여러 관청의 雜物수송에 사용되었고 지방에서도 驛路 중 險路가 아닌 곳에서는 모두 사용되었다(《世祖實錄》卷30-7, 世祖 9年 正月 戊午). 편차는 소나 말이 끄는 번거로움이 없고 짐신기에도 편리하였으므로 세조 9년 3월 각도에 2대씩 보내어 道內의 險路가 있는 여러 고을 이외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 사용하게 했다(《위의 책》卷30-19, 세조 9년 3월 癸卯). 그러나 세조 10년 2월, 兵曹에서는 便車를 사용하지 말자고 건의하였고 임금도 便車는 무거운 짐을 실을 수도 없고 견고하지도 않다고 하였다. 便車는 3인이 끄는데 실는 짐이 많지 않아도 도로가 험난하면 쉽게 부서진다고 하였다(《世祖實錄》卷32-22, 世祖 10年 2月 癸卯).

75) 曲車는 童車라고도 하는데 앞에는 작은 바퀴, 뒤에는 큰 바퀴를 달아서 회전하기에 편리하며 손으로 밀고 다니는 작은 수레를 말한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p.756~757).

76) 杠輓는 輶軒과 비슷한 수레로서 두 수레바퀴의 앞뒤에서 각각 한사람씩 밀고 당기도록 만들었다. 杠輓는 일명 流馬 혹은 江州車子라고 하는 운수기계로서 蜀漢의 제갈량의 木牛와 流馬의 運米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流馬는 通鑑에서는 獨推車라 하였으며 2斛 3斗를 실을 수 있었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57 및 《經國大典註解》前集 工典). 조선시대의 杠輓 제작에 관한 논의는 太宗代의 張子和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나 반대자 때문에 건조에 착수하지 못하다가 世宗 7年 9월에 200輪을 만들어 그 해 11월에 2品 이상 및 6 代言(승지)들에게 自願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世宗實錄》卷29-26, 世宗 7年 9月 庚子 및 卷30-9, 世宗 7年 11月 戊戌). 杠輓는 미곡의 수송 뿐만 아니라 銅錢의 수송에도 사용하였다(《위의 책》卷51-31, 世宗 13年 3月 戊寅). 또한 世宗 14年 6月, 異姓諸君府·議政府·敦寧府·六曹·漢城府·司憲府·宗簿寺에 杠輓를 나누어 주었다(《위의 책》卷56-36, 世宗 14年 6月 辛丑). 중국으로 왕래하면서 오로지 杠輓體制를 傳習하도록 하기 위하여 杠輓를 담당하는 杠輓局(司宰監소속)의 別坐를 모두 譯官으로 任用하였으나 출장(出使)이 잦아서 杠輓를 보살필 겨를이 없으므로 世宗 20年 7月 부터는 別坐 1명을 朝官으로 任用하도록 하였다(《위의 책》卷82-1, 世宗 20年 7月 乙酉). 그 후 杠輓局은 轉運色으로 개칭되었지만(《위의 책》卷102-30, 世宗 25年 11月 乙亥) 世宗 29年 5月, 平地가 적은 우리나라의 道路사정上 杠輓가 운송도구로서 부적당하다는 大臣들의 주장에 따라, 杠輓局을 혁파하였다(《위의 책》卷116-11, 世宗 29年 5月 辛卯).

花渡에 9척, 孔巖에 5척, 鐵串에 1척을 둔다. ○ 松坡別將은 광진·삼전도·신천을 겸하여 관할하며, 수어청에 소속된다. 漢江別將은 훈련도감에 소속되고 露梁別將은 금위영에 소속되며 楊花渡別將은 공암과 철곳을 겸하여 관할하고 어영청에 소속된다. (이들 별장은) 兵曹에서 임용(差出)한다. ○ 楊根의 龍津은 훈련도감에 소속되고 坡州의 臨津은 충융청에 소속되어 각각 그 軍門에서 별장을 스스로 임용제청(自辟)한다. 지방관은 津夫를 정하여 復戶(戶役면제)를 해주고 私船을 賃借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增] 한강진 및 노량진에 각 10척, 서빙고에 5척, 銅雀에 5척을 둔다. ○ 나루의 선박(津船)을 타고서 제멋대로 다른 곳으로 건너 갔을 경우에는 大夫·士人·庶民을 막론하고 定配律로 논죄한다. 船主가 官에 즉시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죄로 처벌한다. ○ 각 나루의 過涉船(지나가는 배) 및 往來船이 破船 또는 침몰되었는데 다른 선박의 사람들이 즉시 구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船主와 津夫는 모두 杖 100에 처하고 別將에게는 엄중히 곤장을 친다. ○ 京江의 私船은 매년 이를 찾아내어(推刷하여) 경국대전의 大·中·小船의 尺數에 따라 字號를 모두 새기고 烙印하며 船主의 성명 등 기록을 갖추어 장부를 만들어 1년에 한번씩 稅金을 거둔다. 每船에 錢文 3兩을 세금으로 바치되 낙인이나 여행허가증(路引)이 없거나 장부에 기록되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두 배를 징수하고, 왕실이나 관공서(公家)의 땀감이나 野草를 싣고 왕래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반으로 감하

여 이 돈으로써 나룻배의 改造에 쓰도록한다. ○ 지방에서는 소재지 고을의 守
 令이 장부에 기록하여 세금을 거두어서 軍需用으로 쓰도록하고 每歲抄⁷⁷⁾에 관
 찰사가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 여러 宮家와 각 관청의
 선박도 척수를 정하고 장부에 기록하여 적절히 減稅하되 정해진 척수 이외의 경우는 減稅하지
 아니한다. 司饗院에 200척, 훈련도감에 40척, 糧餉廳에 10척, 강화도에
 200척, 영종도에 20척, 喬桐에 3척을 두되 모두 세금 전부를 감해준다. 內需
 司에 10척, 壽進宮에 10척, 龍洞宮에 10척, 明禮宮에 10척, 於義宮에 10척,
 彰義宮에 10척, 大君房에 8척, 公主房에 8척, 王子君房에 6척, 翁主房에 6척,
 여러 嬪宮房에 5척, 郡主房에 1척, 宗親府에 6척, 耆老所에 6척, 議政府에 12
 척, 敦寧府에 6척, 內農圃에 4척, 금위영에 27척, 어영청에 10척, 수어청에
 34척, 총융청에 10척, 경기감영에 6척, 司僕寺에 2척, 繕工監에 8척, 軍器寺
 에 2척, 讀書堂에 4척을 두며, 매척에서 거두는 세금을 減하여 錢 40文으로
 한다. ○ 漁鹽의 商船으로서 內需司(宮中) 및各司
 (중앙 각관청)에 속한 것을 혁파하고 뱃사람(江
 上人)이 판매를 독점하여 이익을 독차지 하는 것
 을 엄중히 禁斷한다. 이에 위반하는 자는 亂塵例⁷⁸⁾로 처벌한다.
 ○ 公私用 차량은 한성부에서 烙印하여 장부에
 기록한다. 他人의 차량을 (자기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그 家長
 및 官吏를 制書有違律로 論罪한다. [增] 軍門 및 瀋川司의 모래 운반차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않다.

77) 《大典會通 研究》 兵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5.12, pp.41~42.

78) 解說 6 亂塵例 參照.

[增] 여러 宮家와 각 관청의 선박은 모두 均役廳에 속한다. 英祖 경오년(26년, 1750) ○ 균역청에서 掌標를 주어서 세금을 거둔 후에는 工曹에서 烙印하여 선박을 점검한다는 규정과 관찰사가 歲抄 때에 임금에게 이를 보고한다는 법은 모두 폐지한다. ○ 훈련도감에 25척, 금위영에 7척, 어영청에 7척, 강화도에 131척, 충청도의 採鰓船 12척, 禦邊船 22척, 漕運 護送船 7척, 統營의 채복선 8척, 경상도 左右倉의 漕船 50척, 蒜山의 運鹽船 14척, 진주목장의 運藁船 5척, 전라도 左右倉의 漕船 122척, 강원도의 進上船 3척, 함경도 함흥과 영흥 兩 本宮에 321척, 瀋源殿에 1척, 交濟倉⁷⁹⁾에 44척, 北兵營⁸⁰⁾에 28척을 두며 모두 免稅를 허용한다. 그외 속대전에 등재되어 있는, 사옹원·내수사·수진궁·용동궁·명례궁·어의궁·창의궁·대군방·공주방·옹주방·왕자군방·여러 빈궁방·군주방·중친부·기로소·의정부·돈령부·내농포·수어청·총융청·경기감영·사복시·선공감·군기시·독서당과 같은 여러 관서(諸司)로 보낼 보통 땀감이나 말먹이 풀(柴草)을 운반하는 선박은 모두 賃借하여 쓰도록한다. 三津別將도 역시 均役廳에 속하며 매년 漕運船의 建造用 材木 중 불용품(불합격품)을 그에게 주어서 나룻배(津船)를 改造하는데 쓰도록하고 왕래하는 公私船舶을 句檢(旬檢)하도록 한다.

79) 交濟倉은 영조 13년 왕명에 의거 함경도 덕원에 交濟元山倉을 설치하여 救荒(흉년 대비)用 곡식을 저장하였던 것에서 비롯된다. 원래 궁중소속 奴가 6鎭에 많이 있어 歲收米를 1인당 1斛씩 布木으로 바꾸어 저장하였던 것이나 숙종때에 易布法이 폐지되어 그 고을에 곡식을 저장하여 救荒에 需用되도록 하였던 바 매년 곡식의 출납이 1만여斛이나 되었다. 그러나 6鎭에 곡식을 저장해 두는 것이 부적당하므로 元山(德源)에 창고를 옮겼던 것이다. 그 후 영조 18년에 監賑御史 홍계희의 건의에 따라 또 雲田交濟倉을 함흥에, 그 외 交濟倉을 利城에 설치하였으며, 정조 8년에는 北關에도 交濟倉을 설치하였다(《증보문헌비고》권168-3·4, 시적고6, 諸倉).

80) 北兵營은 함경북도 병마절도사(北兵使)의 軍營이다. 북병영의 위치는 함경도 鏡城에 있었으며 北兵使는 경성도호부사를 겸직하였다(《大典會通》 吏典, 外官職)

【栽植(나무심기)】〔原〕 여러 고을에서는 옷나무(漆木)⁸¹⁾ · 뽕나무(桑木)⁸²⁾ · 과일나무(果木)⁸³⁾의 그루수(條數) 및 닥나무밭(楮田)⁸⁴⁾ · 왕골밭(莞田)⁸⁵⁾

81) 옷나무에서는 器物에 옷칠하는 滋汁을 채취함으로 그것을 심어서 기르기를 권장하였다. 즉 세조 13년 春分 경 부터 고을의 大小에 따라 그루수를 정하여 기르게 하고 每歲抄에 그 숫자를 계산하여 (조정)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에서는 파견관(差人)을 각 고을에 보내어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世祖實錄》卷41-21, 세조 13년 3월 己卯). 그러나 각 지방관아에서는 직접 기르지 않고 민간에서 徵納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成宗實錄》卷1-17, 성종 원년 정월 己亥). 옷의 滋汁 채취는 음력 6월이었다(《經國大典註解》下, 後集, 工典).

82) 뽕나무의 종류로는 잎이 크고 두터운 白桑, 오디가 먼저 생기고 잎이 나중에 피는 子桑, 잎이 뾰족하고 긴 山桑, 키가 작고 가지가 긴 女桑, 기타 鷄桑·金桑 등 여러 종류가 있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58 및 《才物譜》8, 物譜3). 太宗 10年 11月の 司憲府의 上書에 의하면 뽕나무를 심어 衣帛을 풍족히 하도록 하는 法은 옛날에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種桑法은 《經濟六典》에 실려 있어 그것이 백성들을 너덕하게 하는 길이지만 백성들 중에는 그것(뽕나무심기)을 실천하는 자가 적고 守令도 그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으니 이는 懲罰함이 없는 탓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임금은 뽕나무 種植法을 限年 行移(行文移牒)하도록 명령하였다(《太宗實錄》卷20-29, 太宗 10年 11月 戊子). 文宗 元年 3月에는 각 관청으로 하여금 채소밭에 뽕나무 100그루씩 심게 하였으나 뽕나무 묘목이 적어서 일시에 所定量을 심을 수가 없어 기름진 땅을 골라 뽕나무 씨(오디) 1斗를 심은 후 채소밭에 옮겨 심도록 하며, 그루수를 계산하여 장부에 적어 두고 歲抄 때 마다 工曹에 공문을 보내면 工曹에서는 여기에 의거 보살피도록 하였다(《文宗實錄》卷6-27, 文宗 元年 3月 丙辰). 成宗 3年 2月에는 桑木培養節目을 내려 중앙 각 관청으로 하여금 뽕나무 묘목을 심도록 함과 동시에 잠실로 하여금 오디를 취하여 땅을 골라 심게 해서 그루수의 多少를 살펴서 상벌을 주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 民戶를 大中小로 나누어 뽕나무를 차등있게 심도록 하되 심은 수를 허위로 과장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守令을 파직하여 내쫓고, 監司도 죄를 준다고 하였다(《成宗實錄》卷15-14, 成宗 3年 2月 戊寅).

83) 과일나무는 각 지방관서에서도 심도록 하여 官需用으로 充當하였거니와(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59) 서울에서는 원래 上林園 과수원이 창덕궁 서쪽의 좁은 땅에 있었으나 世宗 10年 12月 부터 연희궁·장생전·연화원 터에도 과수를 심었다. 또한 경기도 강화府에서는 柑子·柚子·석류·木瓜 등 여러 종류의 과일나무를 심도록 하였다(《世宗實錄》卷42-21, 世宗 10年 12月 丙戌). 기타 제주도에도 唐柑子·唐柚子·乳柑·洞庭굴 등 과일나무를 심어 가꾸도록 하고 경기도의 남양·개성·과천·고양·양주·부평에 掌苑署의 과수원을 두어 과일나무를 재배하도록 하였다. 서울 栗島의 果木은 島內에 계속 살고 있는 濟用監·司圃署의 奴子와 부근에 사는 백성들에게 분담시켜 지키도록 하였다. 이상 서울과 지방 여러 곳의 과수원직이는 잡역이 면제된다(《大典會通》 工典, 栽植).

84) 닥나무 밭에서는 종이 원료인 닥나무를 재배하였다. 닥나무 중에서 껍질이 흰것을 靱이라 하고 껍질이 얼룩진 것(班)을 楮라 하였다(《經國大典註解》後集 上 戶典). 世宗

· 살대나무(箭竹)⁸⁶⁾가 생산되는 곳에 관한 장부를 작성(成籍)하여 옷나무·뽕나무·과일나무에 관해서는 3년 마다 장부를 고쳐 작성한다. 工曹·本道·本邑에서 보존하며, 나무를 심어 가꾸고 키운다. 都城 안팎의 山에는 표말을 세우고 근방에 사는 사람에게 분담시켜서 伐木과 採石을 禁하도록⁸⁷⁾ 하며 監役官⁸⁸⁾과 山直⁸⁹⁾이를 定하여 看守하도록 한다. 감역관과 산직이는 兵曹에서 정하며 감역

10年 12月の 上林園의 啓에 의하면 世宗 8年 부터 장의동에 닳나무를 심어 중국황제에게 올리는(進獻) 表箋紙를 만들게 하였으나 심은 것이 적어서 需用에 부족하였으므로 留後司(開城府)와 무너진 절터 및 公有의 빈터 중 넓고 좋은 곳에 여러가지 과일나무를 심어서, 上林園의 관원 한사람이 왕래하면서 留後司의 祿官과 함께 살피도록 한다는 것이었고 임금이 이에 따랐다(《世宗實錄》卷42-21, 世宗 10年 12月 丙戌).

85) 왕골밭은 자리를 만드는 원료인 왕골을 생산하는 곳이다. 성긴 왕골을 蒲라 하고 가는 왕골을 莞이라 하였다. 莞은 小蒲라고도 하였다(《經國大典註解》上, 後集, 戶典).

86) 살대나무(箭竹)는 화살을 만드는 대나무로서 전국에서 생산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강원도와 함경도의 각 浦口나 해안이 주된 생산지였다. 세조 5년 5월 임금이 각도 관찰사에게 諭示하기를 箭竹은 너무 어려서 베어 쓸모가 적으니 앞으로는 民家에서 사사로이 배양하는 箭竹 이외에, 각 고을의 公有地인 竹林에 대해서는 관찰사가 사람을 시켜서 禁伐培養하게 하고 각 고을에서도 貢竹을 바칠 경우에도 함부로 베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서 베게 하되 이에 위반한 자는 制書有違律로 論罪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관찰사는 道內 箭竹의 생산지를 일일이 찾아서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관서로 하여금 장부에 이를 기록하도록 할 것이며 대나무를 배양함에 있어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관하여 사람을 파견·조사하게 할 것과 관찰사도 관내순행시에 직접 또는 사람을 시켜서 점검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世祖實錄》卷16-23, 世祖 5年 5月 甲辰). 箭竹은 화살 이외에도 竹席·竹枕·皮竹箱 등의 재료로도 썼으며, 세종때에는 강원도와 경상도와 충청도·전라도에서 각각 1만개 내지 2만개 석의 화살대를 함경도와 평안도로 보냈고 세조 때에는 더 많은 수량을 북쪽 국경지대로 보냈다(《大典會通研究》戶典編, 1994.12, 한국법제연구원, pp.108~109 및 이태진외4인, 《앞의 책》, p.300).

87) 해설편2 伐木禁止法 參照.

88) 監役官은 都城內외의 四山 등의 山林(石材포함)保護와 城堞의 看守를 맡은 관원이다. 성종 5년 12월 兵曹에서 啓하기를 四山監役官이 5·6년 혹은 3·4년씩 장기근속함으로써 태만하여지니 앞으로는 30개월이 차면 교체하자고 하여 임금이 이에 따랐다(《成宗實錄》권50-7, 성종 5년 12월 壬辰). 四山 監役官은 원래 定員이 4인으로 蔭官 初仕職이었으나 英祖 30年 四山 參軍으로 고쳐서 武官으로 임용하고 그 후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충무청에 각각 소속시켰다(《增補文獻備考》권226-23, 職官考13, 四山).

89) 山直이는 四山の 城堞과 材木을 보호 감시하는 자로서 京正兵 중에서 골라 정하되 서울에 살고 있는 下番인 破敵衛·隊卒·正兵 중에서 山이 넓은 곳은 7명을, 山이 좁은 곳은 5명을 따로 정하여 工曹에서 圓牌를 주어서 巡行하도록 하였다. 山直이가 斫伐人

관은 軍職人이지만 東班의 例에 따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승진 또는 전보시킨다. ○ 경복궁과 창덕궁의 主山⁹⁰⁾ 및 산줄기(來脈)⁹¹⁾·산등성이·산기슭에는 耕作을 禁止하고 (都城) 바깥 山인 경우에는 단지 산등성이에만 (경작을) 금지한다. ○ 공조와 한성부의 당하관이 협의해서 分掌하여 살피되 만약 벌목하거나 채석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杖 90에 처하며 (산림 보호를) 분담한 (근방) 사람과 산지기에게는 杖 80, 해당 관원에게는 杖 60에 처하며⁹²⁾ (벌채하거나 채취한) 木石은 모두 官에 몰수한다. 나무인 경우에는 벌목한 자로 하여금 벌목한 그루수 대로 植栽하도록 한다. ○ 東·西蠶室⁹³⁾ 근방 땅에는 여러 관청으로 하여금 매년 2월 안에 뽕나무 苗木을 심거나 씨를 뿌려서 그루수를

을 잡아서 보고하면 특별근무일수를 쳐주었고, 허위 보고하거나 뇌물받고 석방하거나 부지런히 捕告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성부에서 推考하여 論罪하며 아울러 근무일수를 15일간 삭제하였다. 不法행위가 山直에게서 연유하였다면 斫伐人 및 山直이는 制書有違律로 論罪된다(《大典續錄》 工典, 雜令).

90) 主山은 住宅이나 궁궐·분묘 등의 바로 後面에 위치한 산봉우리이다. 풍수지리설에서 쓰는 용어로서 正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경복궁과 창덕궁의 主山은 白岳山이고 서울의 主山·來脈은 道峰山이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61 및 p.423).

91) 來脈은 主山에서 뻗어내려온 山脈이다. 풍수지리설에서 쓰는 용어로서 來龍과 같은 말이다(同上). 서울의 主山·來脈은 함경도의 長白山脈 등지에서 비롯되었음은 工典 解說 2 伐木禁止法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

92) 山林훼손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世祖代 이전에도 있었다. 세조 7년 4월, 병조에서 啓하기를 禁伐松木之法은 매우 엄하나 京外의 관리 및 山直이 등이 오로지 糾檢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造船用·材木이 斫伐되어 거의 없어졌으므로 앞으로는 國用 이외 官家 및 兩班家에서는 造船할 松木을 쓸수 없으며 庶人家에서는 雜木을 쓰도록 할 것과 松木이 있는 京外의 諸山에는 근실한 자를 골라 山直이를 삼고 서울에서는 병조와 한성부의 郎官이, 지방에서는 守令과 萬戶 등이 不時에 살피고, 매 계절끝에 兵部·의금부의 郎官과 監司 및 首領官(주된 고을 守令)이 道를 나누어 조사하여 임금에게 아뢴다는 것이다. 그 때의 처벌규정은 1·2株 斫伐한 자는 杖100에 처하고 山直이는 杖80, 官吏에게는 笞50에 처하며, 또 3·4株 작별한 者에 대해서는 杖100 후에 充軍하고, 山直이는 杖100, 官吏는 杖80에 처하며, 10株이상 작별한 자에게는 杖100 후에 全家徙邊, 山直이는 杖100 후에 充軍하고, 官吏는 杖100 후에 파직하여 내쫓는다는 것이다. 또 10년 이내 단 1株도 作별함이 없는 경우에는 山直이에게는 賞으로 散官職을 주어서 勸戒하자는 것이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世祖實錄》卷24-9, 세조 7년 4월 정유). 또 예종 원년 3월의 都城內外 松木禁伐事目에 있는 벌칙에 관해서는 工典 解說 2 伐木禁止法에서 해설한 바와 같다.

93) 해설편3 蠶室 參照.

계산하여 근방에서는 백성들에게 주어서 가꾸고 키우게 한다. 밤섬(栗島)⁹⁴⁾에 있는 봉상시·내자시·예빈시·제용감·사포서 등 여러 관청의 밭을 경작할 때에는 뽕나무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며 각 관청의 구역안의 뽕나무도 그루수를 계산하여 장부에 기록해 두고 아울러 工曹에서 調査(擲奸)하여 잘 檢察(점검하고 살핌)하지 아니한 관리에게 죄를 따져 벌(論罪)준다. ○ 掌苑署의 여러 곳의 과수원은 관원이 분담하여 매년 과일나무를 심거나 접을 붙쳐 그 그루수를 장부에 기록해 두고 工曹에 공문을 보내면 공조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잘 檢察하지 아니한 관리에게 論罪한다. 나무를 심거나 접을 붙인 사람이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不用心) 말라 죽거나 損傷된 경우에는 그 多少에 따라 論罪한다. 각 관청의 구역내의 과일나무도 그루수를 계산하여 장부에 적어 두도록 하고 공조에서 이를 모두 살핀다. ○ 지방에서는 禁山을 정하여 伐木과 放火를 禁하도록 한다. 安眠串과 邊山에는 海運判官이, 海島는 萬戶가 살피서 매년 봄에 소나무 묘목을 심거나 혹은 종자를 뿌려서 가꾸고 키우도록 하며 歲抄때에 심은 묘목수와 뿌린 종자수를 자세히 적어 임금에게 보고한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山直이는 杖 80에 처하고 해당 관원은 杖 60에 처한다. ○ 蠶室都會⁹⁵⁾處에는 뽕나무를 심어 가꾸고 民戶에서도 모두 뽕나무 씨를 뿌리게 하되 大戶에서는 300株, 中戶에서는 200株, 小戶에서는 100株를 심게하며 守令이 가꾸는 것을 점검하고 살핀다.⁹⁶⁾ 주인 없는 야생의 뽕나무도 잘라내는 것을 금하며 관찰사

94) 栗島는 土性이 뽕나무가 자라는데 적합하여 自生 뽕나무가 많았으며 世祖 13年 5월에 신숙주의 건의에 따라 밭사이(田間)에 公用 뽕나무를 심도록 하였다(주93 및 《世祖實錄》卷42-12, 世祖 13年 5月 甲戌).

95) 蠶室都會는 양잠을 장려하기 위하여 함경·평안도를 제외한 6道에 각각 한 곳씩 설치한 시범적인 잠실로서 태종 17년 정월에 비롯하였다(이태진외 4인, 《譯註經國大典》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p.255~256).

96) 이 條項은 뽕나무를 民間에서 심도록 권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經濟六典》(元六典)에 이미 등재되어 있었으며, 成果있는 자에게는 1年間 復戶(호역면제)하고 法대로

가 순찰하면서 살피고 위반자에게 論罪한다. ○ 오동나무⁹⁷⁾는 각 중앙관청에서 각각 10그루 심어서 가꾸도록 하며 工曹에서 이를 점검하고 살핀다. 지방의 여러 고을에서는 각각 30그루를 심어서 가꾸도록 하고 관찰사가 이를 점검하고 살핀다. ○ 살대(箭竹)는 반드시 1년이 지나감을 기다려서 剪取(베어서 취함)하도록 하며 또한 땅을 골라 옮겨 심도록 한다.⁹⁸⁾ ○ 濟州 세 고을의 감귤나무(柑橘)⁹⁹⁾와 유자나무(柚木)¹⁰⁰⁾는 매년 심거나 접을 붙이고, 비자나무(樅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守丞을 治罪하였다(《世祖實錄》卷10-25, 世祖 3年 12月 丁未). 또 世祖 5年 6月에는 양잠조건(條例)을 中外에 반포하였는데 각 고을에서는 境內 길옆 혹은 官舍나 창고 혹은 담밑 등 빈터에는 뽕나무를 심도록 하고 그 株數를 기록하여 戶曹에 보고하며 戶曹에서는 이를 임금에게 아뢰되, 과장되게 보고하거나 培養하지 아니한 守丞을 조사하여 科罪한다는 것과 함경도와 평안도에서도 뽕나무를 심도록 할 것, 근실한 品官 중에서 監考를 골라서 정할 것, 양잠을 부지런히 하여 명주실을 많이 얻은 경우에는 蠶母(公婢 중 양잠에 能한 자로 지정)에게 米布를 상으로 주고 監考에게는 復戶(호역면제)한다는 것이었다. 反面에 양잠을 잘못하여 명주실을 제일 적게 얻은 경우에는 잠모와 감고를 처벌한다는 것과 또한 民間에서 所定의 株數(大戶 300株, 中戶 200株, 小戶 100株)를 심지 못한 경우에는 家長과 守丞을 아울러 科罪한다는 것이다(《世祖實錄》卷16-33, 世祖 5年 6月 戊寅).

97) 오동나무는 樂器와 軍器를 만드는데 쓰이는 나무로서 열매로는 기름을 짜서 선박에 칠하였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63). 成宗 12年 2月 工曹의 啓에 따라(桐木培養節目에 의거) 서울의 각 관청에서는 각 10條, 地方의 諸邑에서는 각 30條 씩 오동나무를 심게 하고 工曹와 觀察使가 이를 살피도록 하였다(《成宗實錄》卷126-8, 成宗 12年 2月 丁卯).

98) 살대(箭竹)는 2년이 지나야만 베어서 쓸수 있는데도 베는 것이 無度하므로 세조 5년 5월 임금이 각도 관찰사에게 諭示하기를 民家에서 私事로이 기르는 살대 이외에 諸邑의 公處 竹林에는 관찰사가 사람을 보내어 禁伐·培養하게 하고 諸邑에서 마음대로 벌채하지 못하게 하며, 벌채시에는 반드시 관찰사에게 보고하도록 해서 그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制書有違律로 論罪하며 또 道內 箭竹 생산지를 일일이 찾아내어 임금에게 보고하고 담당관청으로 하여금 培養의 勤慢상황을 장부에 적어두고 사람을 보내어 조사하도록 하며, 관찰사가 관내를 巡行하면서 檢察하도록 하라고 하였다(《世祖實錄》卷16-23, 世祖 5年 5月 甲辰). 세조 7년 2월에는 江原道の 箭竹을 咸吉道로 옮겨 심어서 培養하도록 하였으며(《위의 책》卷23-17, 世祖 7年 2月 丁亥) 그 후 해마다 5月初에 江原道에서 竹根을 캐어 함길도 安邊의 浪城浦까지 배로 싣고 가서 土厚可植處(北靑이남땅)에 나누어 주어서 심게하여 그 심고 자라난 숫자를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 평안도와 황해도에도 箭竹이 생산되지 않았으므로 함길도의 예에 따라 먼저 風土가 대나무 심기에 적절한 곳 한두 고을에 시험삼아 심도록 하였다(《위의 책》권25-31, 세조 7년 9월 丁巳).

99) 감귤나무(柑橘)는 제주가 土產地로서 柑은 黃柑·乳柑 등 몇 종류가 있다(《新增東國

木)101) · 로나무(櫨木)102) · 산유자나무(山柚子木)103) · 二年木104)은 근방에 사는 사람을 정하여 이를 돌보고 지키도록 하며, 歲抄 때에 그 숫자를 자세히 적

輿地勝覽》권38-9, 濟州, 土産). 감귤(柑橘)은 宗廟祭祀와 賓客接待에 쓰이는 과일로서 金橘·乳柑·洞庭橘이 上品이고 柑子·靑橘이 그 다음이며 柚子와 山橘이 또 그다음이다. 橘柚은 대체로 3월에 結實하여 9월에 익기 시작하여 겨울에 성숙하는데, 半熟期에 종자(씨)를 取하여 심으면 乳柑이 柑이 되고 柑이 柚이 되며 柚이 枳(탱자)로 된다. 만약 다음해 3·4월 까지 난숙하기를 기다려서 종자를 取하여 심으면 半은 本色이 되고 半은 他種이 된다. 또 柑子를 처음 딸 때 껍질이 두껍고 속이 단단한 것은 4·5월이 되어도 色味가 不變이라 하였다. 그리고 乳柑의 종자를 뿌려 柑子가 된 것은 알이 적고 껍질이 연하여 그 맛이 다른 것보다 倍라고 하였다. 如何間 제주 3군의 守令으로 하여금 위로는 國用을 充足시키고 아래로는 民弊가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世祖實錄》卷2-53, 世祖 元年 12月 丙寅).

귤(橘)은 金橘·洞庭橘·靑橘·山橘·倭橘 등 5종이 있다. 金橘은 음력 9월경, 동정귤은 음력 10월경에 익으며 靑橘은 그해 가을과 겨울에는 너무 시어서 먹을 수 없으나 이듬해 2·3월경이 되면 신맛이 조금 가시고 5·6월이 되면 해묵은 열매는 누렇게 변하고 새열매는 푸르게 변하여 한 가지에 같이 열린다. 해묵은 열매는 이때 꿀처럼 달다. 山橘은 열매의 크기가 柚子와 같고 맛이 달다. 倭橘은 최하품이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64 및 《邑誌》제주도 탐라지).

원래 감귤나무와 유자나무는 제주도 土産物이었으나 太宗 12年 11月 上林園 別監 金用을 제주도에 파견하여 감귤나무 수백 그루를 順天 등 전라도 沿海邑에 옮겨 심게 하였고(《太宗實錄》권24-25, 태종 12년 11월 임인), 그 이듬해 10월에도 감귤나무 수백 그루를 전라도 해변 여러 고을로 上林園 別監 金用이 제주에서 옮겨 왔다는 實錄 記事가 있다(《위의 책》권26-32, 태종 13년 10월 丙寅). 世宗 8年 2月에는 전라도와 경상도 沿邊 각 고을에 심은 柚子나무와 柑子나무의 그루수와 그 實不實을 損實敬差官(파견관)으로 하여금 직접 심사하여 戶曹에 보고하도록 하였다(《世宗實錄》권31-13, 세종 8년 2월 무진).

- 100) 유자(柚子)나무는 감귤나무의 씨를 빼서 심은 것이다. 즉 柑子는 柚子가 되고 柚이는 枳(탱자)가 된다(주99). 또 큰 것을 橘이라 하고 작은 것을 柚라 한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64).
- 101) 비자(檜子)나무는 一名 野杉·椴子木·赤果·玉櫪·玉山果라고도 하며 松栢科에 속하는 常綠喬木으로서 잎은 線形이다. 봄·여름 사이에 開花하는데 꽃은 單性이고 암수 딴 그루이다. 木材는 흰색이며 나무의 결이 곱고 香氣가 있어 건축용 또는 器具用으로 쓰인다. 열매(비자)는 대추씨와 비슷하며 먹을 수 있다(권오영외 4인, 《앞의 책》, p.765).
- 102) 櫨나무는 蕓木科에 속하는 낙엽 喬木이다. 잎은 둥글고 나무 색깔은 누르며 황색을 물들이는데 쓰인다. 암수 딴 그루로 5·6월에 황록색 꽃이 피고 흰 核果가 10월에 익는다. 따뜻한 저지대에 生長하며 제주도와 완도에 분포되어 있다(同上).
- 103) 山柚子나무는 제주도 한라산에서 生長하며 제주牧의 土産用으로 열레빗을 만드는데 쓴다(同上).
- 104) 二年木은 한라산 중턱에서 生長하는 제주도 土産木으로서 軍器寺의 將軍箭을 만드는데 쓰인다. 二連木으로도 표기한다(同上).

어서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 경상도와 전라도의 해변 여러 고을의 감골 나무와 유자나무는 매년 가을 관찰사가 파견관(差使員)¹⁰⁵을 정하여 돌보게 (看審)하고 그 數를 자세히 적어서 임금에게 보고한다. [增] 監役官¹⁰⁶을 지금은 四山參軍¹⁰⁷이라 하였으며, 都城 안팎의 山의 벌목과 채석(浮石)에 관하여 三軍門에 (사산참군이) 分屬되어 이를 엄금하도록 한다. 창의문 밖으로는 충융청에 소속되어 (벌목과 채석을) 禁하고 (산림을) 보호하도록 한다. ○ 안면곶과 변산은 지금은 兩道(충청도와 전라도)의 水使 및 지방관에 속한다.

[續] 매년 봄과 겨울에 2월과 10월 四山의 分擔人으로 하여금 분담인이 없는 곳에서는 坊里人 소나무와 잡목을 심도록 하며 이에 위반한 자에게 죄를 준다. 비변사에서는 갖고 있는 海松子를 산기슭의 빈곳(童濯處)에 많이 播種하도록 한다. 매월 工曹의 郎官이 순찰하며 살펴서 伐採를 禁하도록 한다. ○ 守令은 그 境內의 人民들로 하여금 뽕나무를 심게 하고 이를 工曹에 보고하며, 공조에서는 장부를 작성하여 그 虛實을 살펴보고 賞과 罰을 내려 懲戒 또는 勸獎한다. ○ 임금이 都城 밖으로 나갈 때(幸行時) 머무는 곳 [增] 그 限界

105) 差使員은 일정한 임무를 맡겨 파견하는 임시관원으로서 點馬差使員·頒敕差使員·橋梁差使員·藥材差使員·陞戶差使員·漕運差使員·箋文差使員·價布差使員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增補文獻備考》권227-9, 職官考14, 差使員). 지방에서는 觀察使가 守令을 差使員으로 파견하였으며 兵使와 水使도 差使員을 파견할 수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관찰사에게 公文을 보내야만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永安道와 平安道에 있어서 軍情이 긴급한 事由로 差使員을 보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成宗實錄》권40-5, 성종 5년 3월 무술). 兵使나 水使의 差使員은 邊將이었다.

106) 주88 (監役官) 參照.

107) 주8 (四山參軍) 參照.

를 정하여 이에 위반하여 耕作하는 것을 엄금한다. 기타 講武場이나 활쏘기 연습장에 所在官으로 하여금 雜木을 심게 하고 禁火 禁伐하도록 한다. ○ 掌苑署의 서울과 지방 과수원에는 苑直이를 選定(差定)하여 보살피고 지키도록(看守) 하며 官員이 왕래하면서 살펴 보게 한다. 강화·남양·개성부에 있는 과수원에는 장원서의 奴를 差定하고, 과천·고양·양주·부평에는 부근의 백성을 나누어 配定하되 그들에게 雜役을 모두 면제하여 준다. ○ 용산·한강등지의 과수원을 짓밟아서 損傷을 입힌 자에 대해서는 禁獵例에 의하여 (죄를) 논한다. ○ 제주 등 세고을에 있는 희귀한 과일나무는 주민들로 하여금 심어서 가꾸게 하며 그 부지런함과 태만함을 살펴서 賞罰을 주어 권장 또는 징계한다. 唐柑子·唐柚子 각 8株, 乳柑 20주, 洞庭橘 10주를 심은 자에게는 復戶(호역면제)를 해주고 당감자·당유자 각 5주, 유감·동정굴 각 15주를 심은 자에게는 綿布 30필을 준다. 만약 賞을 받거나 復戶 후에 가꾸는데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서 (과일나무가) 말라 죽거나 손상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賞布를 반납하도록 하고 또 本役으로 되돌아 가게 한다. 復戶된 사람이 심은 (과일) 나무수를 6년 마다 통산하여 元數이의 倍數를 심은 자에게는 賞布를 헤아려 주며 歲抄 때마다 임금에게 보고한다. [增] 지방의 고을 사람이 私私로이 소나무 1000주를 심어서 材木이 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守令이 직접 심사하여 觀察使에게 보고해서 賞주도록 한다. ○ 강화부의 해변으로 매년 海松子를 보내서 播種하도록 하고 그 種子와

가지(묘목) 수효를 別單(별도로 첨부하는 문서나 목록)으로 해서 임금에게 보고한다. ○ 鴨島¹⁰⁸⁾와 栗島에서 소와 말을 放牧하는 경우에는 그 本主人을 違令律로 論罪한다.

【鐵場¹⁰⁹⁾】〔原〕 여러 고을의 쇠가 생산되는 곳에 冶場을 두고 장부를 작성하여 工曹·本道·本邑에서 보존하도록 하며, 농한기를 만날 때마다 製鍊(吹鍊)하여 上納하도록 한다. 관찰사는 각 鐵場 부근 여러 고을에서 바치는 쇠(貢鐵)의 多少를 헤아려 人夫를 定하고, 본읍 및 여러 고을 중에서 관직이 있고 청렴 근실한 자 1인을 골라 監冶官¹¹⁰⁾을 삼아서 그 일의 감독(監役)을 전담하도록 하며 守旣이 이를 살피도록 한다.

【柴場¹¹¹⁾】〔原〕 땔감을 쓰는 여러 官署에는 물가에 있는 柴場을 준다. 奉常寺·尙衣院·司僕寺·軍器寺·禮賓寺·內需司 등에는 모두 周圍 20리를 주고, 內資寺·內膳寺·司宰監·繕工監·昭格

108) 鴨島는 경기도 高陽縣 남쪽 江中에 있는 섬으로서 東西가 7리이고 南北이 4리이며 繕工監의 물역새풀 채취장이 있다(《世宗實錄》 地理志, 경기 고양현 압도). 鴨島에 있어서의 國用 물역새풀 베기와 채취로 民弊가 컸다(《成宗實錄》권 34-2, 성종 4년 9월 기사 및 《仁祖實錄》권 16-56, 인조 5년 7월 계미).

109) 鐵場은 鐵의 생산지에 설치한 製鍊場으로서 沙鐵石鐵 등을 제련하여 正鐵로 만들었다. 太宗 7년에 처음으로 鐵場을 설치하여 백성을 모집, 제철하여 國用に 쓰도록 하였다. 아울러 백성들로 부터 쇠를 거두는 法은 원칙적으로 폐지하였다(《太宗實錄》권 13-29, 太宗 7년 6월 癸未). 그 후 농번기에 백성을 동원하여 鐵場에서 使役시키는 폐단이 생겨서 충청도를 비롯한 일부 鐵場을 혁파하기 시작하였는데 예종 원년 11월 한명회·신숙주 등의 건의에 따라 그것을 復設하였다(《睿宗實錄》권8-17 예종 원년 11월 경인).

110) 監冶官은 冶場의 감독관으로 일명 鐵場官 또는 監鍊官이라 한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67).

111) 柴場은 땔감 채취장으로서, 나라에서 땔감을 쓰는 각 관청으로 지정해 준 곳이다.

署·典牲署·司畜署 등에는 모두 주위 15리를 주며, 司圃署에는 주위 5리를 준다. [增] 사재감의 柴場은 지금은 폐지되었다.

[續] 각 陵寢의 香炭山¹¹²⁾으로는 陵官이 그 후보지를 보고하고 定標한다. 宮房의 柴場內의 山直이는 20戶를 限定하여 해당 宮에 소속시키며 그 나머지 거주민은 소속 고을(本官)의 徭役에 응하도록 한다. ○ 奉常寺의 坡平山の 柴場은 혁파하고 戶曹와 宣惠廳에서 그 代價를 주어서 각각 500양을 보낸다. 奉常寺에서 사서 쓰도록 한다. ○ 성균관의 柴場은 주위 20리로서 표말을 세워서 割讓하여 준다. [增] 楊根의 南面 淵陽里에서 驪州와 廣州의 境界에 이르기 까지이다.

【寶物】 [原] 여러 고을의 보물 생산지에 관해서는 장부를 작성하여 工曹·本道·本邑에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돌보며 지키게 한다.

【京役吏¹¹³⁾】 [原] 여러 고을의 鄉吏는 경기도에서는 90인 마다 1인을 정하고 강원도와 황해도에서는 70인 마다 1인을 정하며 경상·전라·충청도에서는 50인 마다 1인을 정하여 모두 332인이 된다. 매년 차

112) 香炭山은 山陵제사용 향나무와 숯굽는 나무를 재배하는 곳이다. 正祖 16년 4월 閣臣(규장각提學) 李晩秀가 上奏하기를 (경상도) 金山郡 도암면에 있는 香炭山の 位田은 民弊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지만 거둔 田稅가 너무 적어서 榷場을 改築하는데 근방 5개邑의 赴役民이 年間 수천명이나 동원되어 位田이 有名無實하다고 하였다(《正祖實錄》권34-27, 정조 16년 4월 壬寅).

113) 해설편4 京役吏 參照.

례대로 돌아가면서 서울에 오게 되는데 工曹에서는 이들을 중앙 각 관서로 나누어 배정하여 숯과 장작(炭木)¹¹⁴⁾을 마련하도록 한다. 司宰監에는 233인이 배정되는데 1인이 매일 장작(燒木) 57근과 2일 마다 싸리나무 햇불(柹炬)¹¹⁵⁾ 한 자루 무게 10근씩을, 남은 것이 많으면 혹은 3일 마다 한 자루씩을 마련하도록 한다. 繕工監에는 99인이 배정되며 1인이 매일 숯(炭) 5말 5되씩 마련하도록 한다. ○ 여러 곳에 공급하고 남은 장작과 숯은 모두 戶曹에 보고하여 회계장부에 기록하도록 한다. ○ 代立價¹¹⁶⁾는 한달에 綿布 5필로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論罪하고 그 값(價物)을 官에서 몰수한다.

[續] 其人貢物制¹¹⁷⁾를 대신 설치한다. 舊例에 의하면 여

114) 숯과 장작(炭木)은 조선시대의 주요한 땔감으로서 《세종실록》地理志에 의하면 숯은 강원도의 貢物이고, 장작은 경기도·황해도의 貢物이었다. 太宗 17年 11月 戶曹의 啓에 따라 임금은 70斤을 1石(경국대전에서는 150근을 1石)으로 하여 收納하고 그것을 쓸때에는 斤量으로 달아서 내주도록 하였다(《太宗實錄》권 34-30, 태종 17년 11월 丙辰).

115) 싸리나무로 만든 햇불은 太宗때 부터 쓰기 시작하였으나 불이 너무 성하여 화재의 염려가 있었으므로 5升布에 밀납을 발라서 만든 布燭을 쓰도록 하되 그것을 매일 大殿 및 東殿에 각 1枚씩 바치도록 하였다(《世宗實錄》卷43-28, 世宗 11年 3月 辛未). 종전에는 소나무로 만든 햇불인 松炬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소나무는 집과 배를 建造하는데 긴요한 것이므로 일찌기 禁令을 立法한바 있거니와 世宗 5年 3月 호조판서 李之剛의 啓에 따라 司宰監에서는 松炬 대신 싸리나무와 도토리나무로 햇불을 만들도록 하였다(《위의 책》권19-20, 세종 5년 3월 甲申).

116) 代立價는 番上의 차례에 당한 役人 또는 軍士가 番上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代役을 시킬 경우의 對價이다. 成宗 3年 6月 詳定廳에서 啓하기를 其人을 대신하여 立役하는 자가 은밀히 守令과 結탁하여 그 값을 倍로 징수하니 앞으로는 役に 빠지는(闕役) 其人의 한달 役價로 5필을 초과하여 濫徵하는 자에 대해서는 서울은 司憲府에서 지방은 觀察使가 고발을 받아서 그 값의 초과분(價利)으로 고발인에 施賞하며, 그 濫徵人에 대해서는 杖100에 處하고 守令은 파직하여 내쫓자고 하였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成宗實錄》권 19-12, 成宗 3年 6月 丁亥).

117) 其人貢物制는 종래 鄉吏가 上京하여 땔감을 조달하여 바치는 제도가 大同法 창설 이후 폐지되자, 서울사람이 그 값을 미리 받아서 종전과 같이 숯과 장작을 마련하여 각 관청으로 바치는 제도이다. 고려초기의 其人은 고려 文宗代 이후 그 地位가 낮아져서 고종때에는 농사일에 동원되었고 충렬·충선왕 代에는 노예 비슷한 地位로 떨어졌다가

러 고을의 鄉吏가 매년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서울에 오면 工曹에서는 그들을 여러 관서로 나누어 배정하여 숯과 나무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나 大同法이 창설된 후 그 법(鄉吏가 上京하여 役을 지는 법)을 혁파하고 서울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그 값을 받아서 종전과 같은 물건(숯과 장작)을 마련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였는데 이들을 其人이라 한다. ○ 進上하는 숯(進排炭)은 15말을 1섬(石)으로 하고 매 1섬은 150근으로 한다. [增] 왕명을 전달하는 宦官(承傳中官)이 햇불용 싸리나무를 대신 진상하도록할(望炬大柵木進排) 때에 농간을 부려 폐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환관 및 그 것을 단속하지 못한 해당 관서의 堂上官과 郎官을 모두 조사 처벌(勘罪)한다. ○ 임금이 陵行할 때에 길 양쪽에 햇불을 세우는 일(植炬)은 한성부에서는 길닦을 때(治道)에 국한하고 그외는 지방고을에 속하는 일이다.

【雜令】〔原〕 구워낸 기와가 몹씨 나빠서(濫惡)¹¹⁸⁾ 법에 규정된 규격과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엄중히 論罪한다. 사사로운 가마이면 논죄후에 본 기와는 관에서 몰수하고¹¹⁹⁾ 槩木¹²⁰⁾은 工曹에서 篆字로 烙印하여 표를 해둔다. ○ 은·주

충숙왕때에는 폐지되었으나 충혜왕 때에 부활되어 조선시대로 넘어온 것이며 大同法 실시 이후 炭木代納人을 其人이라 하게 되었다(解說편 4 京役吏 참조. 朝鮮時代 貢納制의 전반적인 변동과정에 관해서는 《大典會通研究》 戶典 解說編, 1994.12, 한국법제연구원, pp.309~425 참조).

118) 濫惡은 물건의 꼴이 이지러지거나 추악하여 흠이 많은 것을 말한다. 또 견본이나 公定體制와 같지 아니하는 등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69 및 《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工典).

119) 世祖 5年 8月, 사헌부에서 보고한 禁令可行條件에 의하면 사사로운 가마에서 구운 기와가 法에 규정된 규격과 같지 아니하면 司憲府와 漢城府에서 檢察(조사)하여 論罪하고 그 기와는 官에서 몰수하였다(《世祖實錄》권17-10, 世祖 5年 8月 甲寅). 이러한 경우 犯法者는 杖刑에 처하며 그 기와가 官瓦인 경우에는 書吏를 杖刑에 처하고 官人에

석·놋쇠·구리로 된 그릇(器皿)¹²¹⁾에는 모두 무게(斤兩) 및 제작 연월일을 새긴다. ○ 家舍(의 규모)는 大君이면 60間, 王子君과 公主이면 50間, 翁主와 宗親 및 文武官 2品 이상이면 40間, 3품 이하면 30間, 庶人이면 10間으로 (제한)한다.¹²²⁾ 다듬

은 돌(熟石)이나 꽃무늬 두공(花拱) 및 풀무늬 두공(草拱)은 쓰지 못한다.¹²³⁾

[續] 都城의 周圍는 14,935步인데 周尺으로 측량하면 89,610자 동서남북으로 그 땅의 험한 곳과 평탄한 곳을 헤아려서 三軍門에 분담시켜서 훼손되는 대로 修築하게 하며 肅靖門 東邊의 舞砂石으로 부터 敦義門 北邊에 이르는 4,850步는 훈련도감에서 분담하고, 돈의문 북변의 무사석에서 光熙門 南

계는 笞刑을 科하였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69).

120) 槩木은 기와의 형태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本製 기와틀(瓦樣)이다(《經國大典註解》下, 後集, 工典).

121) 器皿은 식품을 담는 그릇이다(《위의 책》後集 下 禮典). 太宗 7年 正月, 영의정 成石璘의 上書(陳時務二十條)에 따라 金銀器皿은 宮內用과 國用을 제외하고는 서울과 지방할 것 없이 일체 금지하며 國內에서는 모두 沙漆器를 쓰도록 하였다(《太宗實錄》권 13-5, 太宗 7年 正月 甲戌). 그리고 進上品인 器皿 밑바닥에는 모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제작한 工匠人의 이름을 써넣어서 물건의 不實한 제작을 방지하고 만약 不注意로 器皿을 잘못 만들었을 경우에는 追徵하도록 하였다(《世宗實錄》권 11-20, 세종 3년 4월 戊申).

122) 이 규정은 세종 13년 정월에 제정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며(《위의 책》권 51-4·5 세종 13년 정월 丁丑), 세종 22년 7월에는 집 칸수 뿐만 아니라 기둥 높이와 樓의 높이 및 칸수, 대들보 등의 길이도 규정하였다(《위의 책》권 90-18, 世宗 22年 7月 丁卯). 또한 세종 31년 정월에는 그 기둥의 높이와 대들보·들보 등의 길이를 약간 수정하였다(《위의 책》권 123-9, 세종 31년 정월 丁未).

123) 熟石은 石工이 잘 다듬은 돌이며, 花拱은 꽃모양을 새겨 놓은 두공이고 草拱은 풀무늬를 새겨 놓은 두공이다. 두공은 대들보를 받치는 부분이다. 그리고 세종 13년 정월 부터 주춧돌(柱礎)이외에는 熟石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花拱 및 眞彩 丹青도 쓰지 못하게 하여 검약에 힘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祠堂 및 父母로부터 傳해 받은 家舍, 買得한 家舍, 地方의 植柱之家 등은 이 제한을 받지 아니 하였다(《위의 책》권 51-5, 세종 13년 정월 丁丑).

邊 南村 집 뒤까지의 5,042보반은 금위영에서 분담하며, 광희문 남변 남촌 집 뒤에서 숙정문 동변까지의 5,042보반은 어영청에서 분담한다. 근방에 사는 사람에게 분담시켜서 돌보고 지키도록 한다. 人家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四山監役官이 그 山直이로 하여금 分掌하여 살피도록 한다. ○ 한성부의 郎官은 四山을 分掌하여 긴요한 곳과 禁忌處를 찾아내어(檢舉) 표말을 세운다. 都城안의 全域과 도성 밖의 玄武主山¹²⁴) 및 동쪽을 가리키는 긴요한 곳(緊關)인 外靑龍¹²⁵)은 석가재의 內沙乙閑 南邊으로 부터 狄踰峴을 거쳐서 廣平大君家 북쪽 고개와 先蠶祭壇에 이르는 곳 및 普濟院 서쪽 건너 편의 安巖洞·豬房洞과 동대문밖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산등성이 안팎으로 표말을 세우고, 서쪽을 가리키는 긴요한 곳인 外白虎¹²⁶) 즉 慕華館뒤에서 沙峴과 司畜署 고개를 거쳐 靑坡뒤에 이르는 곳은 산등성이 內面에 표말을 세운다. 朱雀案山¹²⁷)인 南山外面 즉 남대문의 성밖에서 典牲署 뒤를 거쳐 伐兒峴에 이르는 곳과 벌아현 동쪽으로 가서 豆毛浦 뒤산과 왕십리 뒤산을 돌아서 水口에 이르는 곳에는 산등성이 內外面 모두에 표말을 세운다. ○ 무릇 집터(家垆)가 산에 의지한 곳이면 觀象監으로 하여금 산등성과 산기슭을 살펴 보게해서 臨壓禁忌處¹²⁸)

124) 玄武主山은 北方에 있는 主山을 말한다. 主山은 도읍이나 집터·무덤 등의 뒷쪽에 있는 山으로 主龍이라고도 한다. 玄武는 北方의 神으로서 水神이며, 東方의 靑龍, 南方의 朱雀, 西方의 白虎와 함께 4神이라 하였다. 玄武의 형상은 거북이와 뱀이 하나로 된 모양이다. 또는 北方에 있는 일곱 星宿을 의미하기도 하고 기타 북방 일반을 지칭하기도 한다.

125) 外靑龍은 主山左方의 來脈인 서울 都城의 東方에 있는 靑龍의 外方의 山脈으로 內靑龍에 대칭된다. 靑龍은 東方을 의미하는 神 또는 별자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126) 外白虎는 主山右方의 來脈인 서울 都城의 西方에 있는 白虎의 外方의 山脈으로 內白虎에 대칭된다. 白虎는 西方을 의미하는 神 또는 별자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127) 朱雀安山은 南方에 있는 安山이다. 安山은 도읍이나 집터·뫼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山으로 靑龍·백호·主山과 함께 풍수지리학상의 4요소의 하나이다. 朱雀은 南方의 神 또는 별자리를 의미하며 봉황의 모습으로된 상징적인 새이다. 朱鳥라고도 한다.

이면 折給(割讓)하지 못하게 하며 이를 속여 몰래 땅을 받아서 집을 지은 자에게는 죄를 다스리고 그집은 철거한다. ○ 社稷壇의 뒷담 안팎을 분담시켜 看守하도록 하되 社稷署의 官員이 매일 이를 살핀다. 담장 안에는 사직서의 奴가 분담하고 밖은 담장 근처에 사는 사람이 분담하되, (담장 근처에) 人家가 없는 곳이면 警守軍士 4명을 두어서 교대로 지키게 한다. 만약 기와가 벗겨졌거나 훼손된 곳이 있으면 분담하는 사람 및 軍士에게 책임을 추궁(推論)하고 비용을 거두어 補修하도록 한다.

○ 社稷署의 內外 祭壇의 補修와 掃除 및 담장이 무너진 곳에 대한 修築은 兵曹에서 때맞추어 시행한다. ○ 尙衣院에서는 매년의 5織造所의 (絹織物) 進上과 生産을 停罷하도록 한다.¹²⁹⁾ 영조 계축년(1733)의 下敎이다. ○ 司饗院에서 구워 만든 磁器는 1년에 두 차례, 봄과 가을에 進上한다. 廣州·楊口·晉州·昆陽 등 燔土로 쓰기에 가장 적합한 흙이 있는 곳에서 흙을 파서 배로 운반하여 도자기를 구워 만들 때 장작을 베는(伐木하는) 지방의 고을에서는 30분의 1을 稅로 바치지만¹³⁰⁾ 거쳐가는 각 고을에서는 稅를 바치지 아니한다. 이

128) 臨歷禁忌處는 墳墓의 바로 上部에 他人이 분묘를 만들거나 또는 家屋을 건설하는 것을 금기한다는 뜻이다. 그러한 곳에 또다른 분묘를 설치하거나 가옥을 건축하는 것은 “壓腦한다”라는 풍수지리설에 근거하여 禁忌하는 풍속이 있었다.

129) 5織造는 尙衣院의 織造色에 屬하는 5개 絹織物 製造所이다. 매년 5織造所는 제조된 絹織物을 進上하였다. 그러나 英祖 9年 12月 임금은 그러한 絹織物이 사치를 助長한다고 하여 그 進上을 정지시키고 나아가서는 그 生産을 못하도록 下敎하였다. 그 때 英祖는 “匹庶(庶民)의 사치는 朝士를 본받은 것이고, 朝士의 사치는 貴戚을 본받은 것이며 貴戚의 사치는 본래 王公에서 비롯되었다”라 하고 尙方(尙衣院)에 있어서의 每年의 “織造之品(비단)의 進上을 近年에 모두 그만 두도록 명령하였으니 “該院(尙衣院)으로 하여금 그 제조기계를 철거하도록 할 것과 이 사치풍조를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겠는가”라 하면서 이 諭示는 바꾸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英祖實錄》卷 36-39, 英祖 9年 12月 己巳).

에 위반한 경우에는 守令은 잡아서 처리하고 監官과 色吏는 刑杖을 친 후 定配한다. ○ 司饗院에서 江의 뗏목에 대하여 稅를 거둘 경우에는 內需司의 木物이나 焰硝廳의 吐木¹³¹⁾을 막론하고 每 10木당 1木의 稅를 내게 한다. ○ 稅를 거둘 때에 만약 用木을 가로채는 일이 있으면 監官에게는 刑杖을 쳐서 멀리 귀양 보내고 燔官은 賊律¹³²⁾로서 論罪한다. [增] 燔官이 별도로 구워서 길을 꾸며 만든 경우에는 조사 처리한다. ○ 燔院의 柴場과 山田이 廣州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관으로 하여금 현지를 踏查하여 稅를 거두게 하되 강제징수하여 民弊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咨文紙와 表文紙¹³³⁾를 거칠게 만든 匠人은 첫 번째이면 杖 80에 처하고 每次에 杖10을 더하여 杖 100에 그친다. 종이 만드는 器具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각 해당 관청에서 즉시 고치도록 한다. ○ 靚내외의 여러 상급관청에서 사용되는 종이(紙地)는 長興庫와 豐儲倉에서 매월 정하여진 규격(定式)

130) 30분의 1을 稅로 받는다든 것은 伐木者가 立木을 30株 배면 그 중 1株를 稅로 바쳐서 도자기를 구워 만드는 곳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선총독부, 《校註 大典會通》, 1939, p.773).

131) 焰硝廳은 國用의 火藥을 제조하는 곳이며, 훈련도감에 소속된 관청이다(오희복, 《봉건관료기구 및 벼슬이름 편람》, 여강출판사, 1992, 분한판 1989, p.220). 吐木은 취사용 또는 기와를 굽거나 화약제조용으로 제공하는 雜木으로서 짧게 잘랐다. 《世宗實錄》권 85-36, 世宗 21年 6月 庚辰에 國人 謂燔瓦木曰 吐木이라 하였고 《中宗實錄》권11-5, 中宗 5年 4月 癸巳에도 炊爨所用雜木 短截者俗謂之吐木이라 하였다. 또 光海君日記에도 吐木에 관한 記事가 보인다(《光海君日記》권153, 광해 12년 6월 14일).

132) 燔官은 궁중 進上用 도자기를 굽는 陶工을 감독하는 司饗院의 官員으로 보이며 賊律은 官吏의 職務에 관련된 범죄로서 《大明律直解》刑律 卷23에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133) 咨文은 조선과 중국(明·淸)간에 왕복하던 外交文書이고 表文은 임금 내지 朝廷(중국 임금 포함)에 올리던 글이다. 따라서 咨文紙와 表文紙는 두껍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야만 하였다.

대로 마련하여 올린다.(進排한다.) 만약 定式에 어긋남이 있는 경우에는 官員은 파직하고 아전(下吏)은 그 죄를 다스린다. 楮注紙¹³⁴⁾는 길이가 1자6치 너비가 1자4치, 楮常紙¹³⁵⁾는 길이가 1자1치 너비가 1자이다. [增] 啓目紙와 草注紙¹³⁶⁾는 1卷의 무게가 11兩 이상, 次草注紙¹³⁷⁾의 무게는 9량 이상, 公事紙¹³⁸⁾의 무게는 6량 이상, 官教紙¹³⁹⁾의 무게는 4斤 이상, 上品인 搗鍊紙¹⁴⁰⁾는 6근 이상, 搗鍊楮注紙는 2근 이상, 大好紙¹⁴¹⁾와 白綿紙¹⁴²⁾는 길이가 2자4치5푼 너비가 1자7치5푼 (권당) 무게가 3근14량, 小好紙¹⁴³⁾는 길이가 2자2치5푼 너비가 1자5치5푼 무게가 2근5량이다. ○ 궐내외의 여러 상급관청에서 소용되는 遮日帳¹⁴⁴⁾은 典設司에서 (마련하여) 進上한다. ○ 江上の 運石·募民 兩契¹⁴⁵⁾는 國役을 나누어서 맡는다. 內需司의 郊草¹⁴⁶⁾는 運石

134) 楮注紙는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서 楮貨用紙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승정원의 注書가 임금 앞에서 王命을 기록하는데 쓰는 종이를 의미한다(조선총독부, 《앞의 책》, p.774).

135) 楮常紙는 닥나무 껍질로 만든 통상의 用紙이다(同上).

136) 啓目紙는 임금에게 보고하는 事目을 쓴 종이이고 草注紙는 임금에게 올리는 草記를 쓰는 종이로서 특히 두껍고 또 하얗게 만들었다(同上).

137) 次草注紙는 草注紙 중 약간 劣等한 것이다(同上).

138) 公事紙는 관청에서 보통 쓰는 종이이다(同上).

139) 官教紙는 官員의 임용 또는 승진발령시에 사용하는 용지로서 가장 두껍고 潔白한 用紙이다(同上).

140) 搗鍊紙는 刀鍊紙라고도 하는데 종이의 四面을 裁斷한 것이다(同上).

141) 大好紙는 應製試의 試券에 사용하는 종이로서 그 모양이 크고 純白色으로 되어 있다(同上).

142) 白綿紙는 중국으로 매년 보내는 禮幣로 쓰이는 종이로서 대체로 大好紙와 同一한 紙質이다(同上).

143) 小好紙는 大好紙보다 약간 좁고 짧은 종이이다(同上).

144) 遮日帳은 햇볕을 가리려고 치는 포장으로서 천막과 같은 것이다.

145) 運石契와 募民契는 서울 漢江邊에 살고 있는 平民들로 조직된 契로서 지방에서 중앙 관청으로 올라오는 여러가지 物品을 荷役·入庫 또는 운송하는 일 등의 國役을 맡았다.

146) 郊草는 서울 부근의 들판에서 베는 柴草(땃감)를 말한다(조선총독부, 《앞의 책》,

契가 단독으로 그 운송을 맡으며, 宣惠廳과 戶曹 및 각 관청(各司)의 外倉의 穀物 짐을 풀어 내리거나 운반하는 것 및 창고에 넣는 등의 일은 兩契에서 반반씩 나누어 거행한다. ○ 兩契人들에 관해서 명부(案)를 두건씩 만들어 1건은 한성부에 남겨 두고 1건은 내수사로 보내어 마음 대로 올려 주거나 내쫓는 폐단을 없앤다. 郊草를 배로 운송할 때에 간혹 민간인에게 돈을 거두는 일이 있는데 (그러한 행위자는) 大小人¹⁴⁷⁾을 막론하고 刑曹에 移送하여 杖100을 친 후 定配한다. ○ 貰馬錢¹⁴⁸⁾은 江村의 坊民(시민)이 運石契와 募民契 兩契人들과 함께 徵收(舉行)하는데 핑계를 대어 세마전 징수를 모면하려는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강촌의 양반이 스스로 尊位¹⁴⁹⁾라 칭하면서 종을 보내어 作弊하며 契人들이 짐을 풀어 내리거나 짐을 싣는 일을 못하게 방해하여 契人들이 (그자를) 指名하여 官에 고발하면 그 家長은 豪强律¹⁵⁰⁾로 論罪한다. ○ 짐을 실을 때에 間雜人¹⁵¹⁾이나 무리배가 무단이 惹鬧를 부려(시비를 걸어서) 물건을 掠奪하려는 경우에는 杖 100을 친 후 국경지방으로 옮겨 살게(遷徙) 한다. [增] 戶曹와 兵曹의 運水馬의 貰錢을 강변 백성에게 내주어 사람을 모집하여 契를 만들어 納水을 담당시키면서 만약 私私로이 매매하는 폐단이 있게 되면 契의 任員을 刑配(형장을 쳐서 유배)한다.

[增] 繕工監의 兩提調가 有故하면 무릇 時急한

p.774).

147) 大小人은 大小官員과 官人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대체로 大人은 지배계급, 小人은 피 지배계급을 의미하기도 한다.

148) 貰馬錢은 말을 빌린데 대한 삿이다.

149) 尊位는 面 또는 里의 어른을 말한다.

150) 豪强律은 《大明律 直解》나 《大典會通》刑典 등에는 보이지 않으나, 豪强이란 豪姦과도 相通하여 옛날부터 誅滅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漢書》 田延年傳: 誅鉏豪强 奸邪不敢發).

151) 間雜人은 일정한 직업도 없이 놀고 먹는 雜類를 말한다(조선총독부, 《앞의 책》, p.775).

啓目(임금에게 올리는 보고문서 목록)은 工曹에서 작성·보고(舉行)한다. 陵의 改修와 奉審¹⁵²⁾도 이와 같다. ○ 선공감에서 進上하는 대나무·동아줄·材木(長木)을 사사로이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에는 발각되는 대로 조사 처벌(勘罪)한다. 각 관청에서는 사사로울 일로서 工匠을 불법으로 수탈(橫侵)하여서는 안 된다. ○ 무릇 貢物을 보관하는 관청의 창고에 대한 司憲府 監察의 檢査(臺庫監察¹⁵³⁾)에 있어서 公的인 사유로 依幕(막사용 천막)·鋪陳(돛자리와 방석 등)·雜物 등을 내주는 貢人의 進上규정을 혁파하고 원래 정해진 곳은 賑恤廳에 소속시키며 원래 정해진 것 이외는 戶曹에서 出納(上下)하도록 한다.

【工匠¹⁵⁴⁾】〔原〕京工匠과 外工匠에 관해서는 帳籍을 만들어 (成籍하여) 工曹·本司(소속 관청)·本道·本邑에서 보존한다. 私賤은 여기에 소속시키지 아니하며 나이가 60이 되면 身役을 면제한다.

〔續〕 각 관청의 匠人에 관해서는 名簿(案)를 만들어 工曹와 本司(소속 관청)에 備置해 두며 가장 긴요한 匠人이 결원이면 軍士·保率(保人)·官屬·公賤임을 막론하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充定한다. 未成의 才人은 기한을 정하여 傳習시키며 부지런히 배우지 아니하는 자는 訓誨匠人과 함께 違令律에 의거 論罪하며 해당관청의 官員은

152) 奉審은 陵園墓에 損壞處가 있나 없나를 정성스럽게 살피는 것을 말한다(同上).

153) 臺庫監察은 사헌부 감찰의 立會下에서 行하는 창고의 檢査를 말한다(同上).

154) 해설편 5 工匠 參照.

다른 일로 데리고 부릴 수(帶喚)가 없다. ○ 甕器店의 匠人은 軍兵 및 公私賤을 막론하고 도자기 굽는 것을 業으로 삼는 자로서 工曹는 (그들에게서) 稅를 거두어 사용한다. ○ 무쇠(水鐵)匠人의 原定員(元額)이 充定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자가) 나타나는 대로 즉시 充定한다. 閒雜人이 爐冶(쇠붙이를 녹이는 화로)를 설치한 곳은 工曹에서 조사하여 명부에 기록해 두며(錄案) 軍兵인 경우에는 匠人의 定員(匠額)으로 옮겨 정할 수가 없으며 亂塵例¹⁵⁵에 의거 法司¹⁵⁶로 넘겨서 죄를 준다. ○ 舊例는 宗廟·社稷·各陵寢과 여러 상급관청에서 소용되는 무쇠기구(水鐵器)를 工曹에서 황해도로 配定하여 進上하도록 하였는데 詳定法(大同法) 시행후에는 本道로 부터 그 價米를 수송하여 선혜청으로 바치게 하며 선혜청에서는 貢人을 정하여 (그 價米를) 내주고 그로 하여금 담당하여 무릇 11종의 무쇠기구를 마련하여 바치게 하였다. ○ 司甕院 沙器匠人의 자손은 다른 身役에 배정되지 아니하며 그 業(도자기 만드는 업)을 世傳하도록 한다. ○ 임금이 나누어 주는 書冊의 表裝(粧纘)이 법규 대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校書館의 掌務官을 造作不如의 法律로 論罪하며 (書冊이) 임금이 사용하는 것으로 바쳐진 경우에는 (刑을) 2등급 加重한다. [增] 尙衣院(尙方)의 弓人과 矢人¹⁵⁷은 그 고장에

155) 해설편 6 亂塵例 參照.

156) 法司는 刑曹·司憲府·漢城府 등 三法司를 말한다(《續大典》 刑典, 禁制).

157) 尙方の 弓人과 矢人이란 尙衣院에서 활과 화살을 만드는 工匠을 말한다(조선총독부,

살고 있지 않는 사람(非在鄉者)을 함부로 入錄시킬 수가 없으며, 재능을 시험보여(取才) 選定한다.

【京工匠】〔原〕〔工曹〕 草笠匠¹⁵⁸ 8명, 紗帽匠¹⁵⁹ 2명, 都多

《앞의 책》, p.776).

158) 草笠匠은 草笠을 만드는 匠人이다. 草笠은 패랭이(平涼子)를 거쳐서 갓(黑笠)으로 발전하는 중간 단계의 것인데 조선초기에는 士庶人 구별없이 이것을 썼으나 갓이 나타난 후 초립은 常民이 주로 쓰게 되었다. 또한 胥吏와 冠禮前인 士族의 少年도 草笠을 썼다(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9, pp.353~354).

갓이 보편화 되기 前, 士庶 구별없이 草笠을 쓸때에도 竹數로서 貴賤을 구별하였는데 《經國大典》禮典, 雜令에 의하면 士族의 草笠은 50竹이고 庶人의 草笠은 30竹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成宗 16年の 經國大典(乙巳大典) 반포전인 成宗 3年 정월과 同王 7年 6月의 實錄記事에 의하면 士族의 草笠은 30竹, 庶人의 草笠은 20竹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成宗 5年の 經國大典(甲午大典)의 규정은 그와 같았다고 하겠다. 또한 취라치(吹螺赤)는 비록 士族은 아니나 본래 賤人도 아니므로 官職있는 그들을 庶人과 같이 보는 것도 未便하여 30竹이내로 하도록 하였다(《成宗實錄》卷14-12, 成宗 3年 正月 己未 및 《같은 책》卷68-6, 成宗 7年 6月 壬午).

原文에는 匠다음에 숫자로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匠人의 名數를 의미하는 것인지 戶數를 의미하는 것인지 不明하나 匠人의 戶首(戶의 대표)를 나타낸 숫자로 이해하고 명이라 표기하였다(以下 同).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9, p.599에서는 이를 戶數로 이해한 듯하나 총수는 중앙 3개 司 129種 2,805人 및 36戶, 外方은 八道에 27種 3,511人으로 기록, 역시 인원수로 파악하였다.

159) 紗帽匠은 紗帽를 만드는 匠人이다. 紗帽는 百官이 常服을 입고 쓰던 冠帽로서 고려 말 禡王 13年 6月, 明나라 제도(明制는 宋制 계승)를 받아 들인 데에서 비롯된다. 李濟臣의 글에 의하면 조선국초의 紗帽는 양편에 깎이 없고 뒤에 검은 땀기를 드리워서 唐巾과 비슷하였는데 明宗 21年, 吏曹參判 朴忠元이 副使로 중국에 가서 涼紗帽를 갖고 온 후로 우리의 紗帽와 중국 것이 같아졌다고 하였다(柳喜卿, 《앞의 책》, pp.323~325).

紗帽를 百官들에게 쓰도록 한 것은 世宗 2年 常服 制定 이전인 太宗 17年12月이다. 그때 禮曹와 儀禮詳定所에서 논의하기를 무릇 大小관리가 朝路에서 雨雪日도 아닌데 着笠하고 있어 실로 未便하므로 中國制(華制)에 따라 三軍 甲士外의 東西班 文武官吏 및 전직관료(有官守者)는 雨雪日이 아니면 항상 紗帽를 쓰도록 하여 朝儀를 엄숙하게 하고 違反者는 科罪하여 처단하자고 하였다. 이에 임금은 戊戌(태종 18年) 正月 初1日 부터 시행하도록 명령하였다(《太宗實錄》권34-40, 태종 17年 12월 신축 및 권 35-1, 태

益匠¹⁶⁰) 2명, 多繪匠¹⁶¹) 2명, 網巾匠¹⁶²) 2명, 帽子匠¹⁶³) 6명, 甕器匠¹⁶⁴) 13명 등이며, 각각 助役 2인을 준다. 和匠¹⁶⁵) 4명, 銀匠¹⁶⁶) 8

종 18년 정월 壬子 百官始着紗帽於朝路). 成宗 9年 5月에는 사헌부의 關文에 의거 禮曹에서 啓하여 官職이 있던 자는 前現職(時散)을 막론하고 모두 紗帽와 品帶를 허락하고 婚姻時에는 前職관료 뿐만 아니라 官職이 없는 자에게도 紗帽를 쓰고 角帶를 띠는 것을 임금이 허락하였다(《成宗實錄》卷92-19, 成宗 9年 5月 丁丑). 그리하여 紗帽는 조선말기까지 (흔인시는 현재까지) 많이 쓰인 冠帽가 되었다. 紗帽는 幘頭에서 출발하여 처음에는 그 뿔이 軟角이었으나 차차 硬角으로 변천하였고 (조선국초의 그것은 軟角이라기 보다 黑纓) 조선중엽이후 兩角은 平直으로 폭이 넓어졌으며 末期에는 폭은 그대로이나 길이가 짧아졌다. 임금의 翼善冠의 뿔이 頂上에 있어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데 反하여 紗帽의 뿔은 左右 양쪽 下部에 平直으로 되어 있어 땅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君臣의 身分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뜻이다(柳喜卿, 《앞의 책》, pp.324~327).

- 160) 都多益匠은 도투락 박는 匠人이다(《百憲摠要》卷3, 難解匠名). 都多益은 도투락의 吏讀式 표기이며, 도투락은 어린 계집아이가 드리우는 땀기로서 자주빛의 형겼을 겹쳐 포개고 머리카락에 넣어서 땅았다. 도투락에는 金箔으로 壽福의 글자 또는 꽃모양의 印을 찍어 발까지 드리운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p.773~774 및 《百憲摠要》譯註本, 法制處, 1979, p.391).
- 161) 多繪匠은 실로 짠 끈(띠)을 만드는 匠人이다(《百憲摠要》卷3, 難解匠名). 끈의 둘레가 둥근 것이 童多繪이고, 넓고 납작한 것이 廣多繪이다. 동다회는 노리개·주머니 끈 등과 각종 流蘇(旗와 가마 등에 드리우는 술)를 만드는 소재로 쓰기 위해 짜는 것이고 광다회는 주로 허리띠로 쓰인다. 多繪는 生絲·合絲·練絲·染絲의 工程을 거쳐서 만들어진다(同上).
- 162) 網巾匠은 網巾을 만드는 匠人이다. 망건은 상투를 틀고 머리 뒷부분의 털을 걷어 올려 가지런히 하기 위하여 이마에서 뒷통수 까지 눌러쓰는 그물처럼 생긴 頭巾이다. 망건은 말꼬리털(말총)로 그물처럼 짠 것으로(《文宗實錄》卷12-40, 문종 2년 3월 辛酉) 明나라 초기에 創案된 것이라 한다. 그러나 崔南善의 《朝鮮常識》에서는 網巾이 唐代에 起源한 것이라 하였다(柳喜卿, 《앞의 책》, p.306). 망건은 처음에는 실로 짠으나 後代에 말총으로 만들었다. 망건의 각 부분의 명칭은 上部에 줄라매는 곳을 당이 라 하고 下部에 줄라매는 곳을 편자(邊子)라고 하며, 그리고 망건을 매는 줄을 당줄이라 한다. 망건의 당은 무수한 고를 맺어 두른 것이며 망건을 쓸때 고의 구멍에 가는 당줄을 꿰어서 뒤에서 머리를 줄라 상투에 잡아맨다. 편자는 양쪽끝에 든든한 당줄을 달고 그 귀 뒷부분에 貫수를 달아서 좌우쪽 당줄을 맞바꾸어 편자에 꿰어 다시 망건뒤로 가져다가 엇걸리게 매고 두 끝을 상투앞으로 돌려다가 칭칭 동여 맨다. 조선에서는 貫纓의 고리로 등급을 나누었으며 環玉·環金·刻金·刻玉의 구분이 있었고 下士와 庶人은 모두 玳瑁圈을 썼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74 및 《林園經濟志》贍用志3, 427쪽과 沈載完·李殷昌, 《韓國의 冠帽》, 영남대학교, 1972, p.59).
- 163) 帽子匠은 모자를 만드는 匠人이다. 모자는 갖의 부분품으로 涼太의 위에 달려있기 때문에 俗稱 대우라고 한다(鮎貝房之進〈市塵攷〉, 《雜攷》). 이 모자는 원통형으로 위로 올라 갈수록 좁으며, 맨위는 평평하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75).
- 164) 옹기장은 독 또는 옹기를 만드는 匠人으로 전국각처에 설치된 옹기제조소(陶器所)에서 옹기를 생산하였다(同上).

명, 金箔匠¹⁶⁷⁾ 2명, 裘皮匠¹⁶⁸⁾ 2명, 靴匠¹⁶⁹⁾ 6명, 鞞鞋匠¹⁷⁰⁾ 6명, 熟皮匠¹⁷¹⁾ 10명, 花兒匠¹⁷²⁾ 2명, 斜皮匠¹⁷³⁾ 4명, 氈匠¹⁷⁴⁾ 4명, 入絲匠¹⁷⁵⁾ 2명, 漆匠¹⁷⁶⁾ 10명, 豆錫匠¹⁷⁷⁾ 4명, 鑄匠¹⁷⁸⁾ 20명, 螺鈿匠¹⁷⁹⁾

- 165) 和匠은 옥섭주디(지)匠人이다(《百憲摠要》卷3, 難解匠名). 和匠은 冠玉匠 혹은 섭자·섭장이라고도 하며, 和는 높고 깊게 새길섭 또는 幹長·섭수·기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주지는 가장 좋은 玉인 羊脂玉을 의미하여 옥섭주지 장인은 羊脂玉을 다루는 匠人이다. 그외에도 옥섭주지 장인은 金帶銀帶를 만드는 匠人(《經國大典註解》後集下 工典) 혹은 佩刀用 쇠갈고리인 띠돈을 새기는 匠人이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75).
- 166) 銀匠은 은으로 그릇 등 제품을 만드는 장인이다. 태종 7년 정월 영의정 成石璘이 上書한 時務策 20條에 따라 金銀器皿은 궁내용과 國用(공식적인 국가행사시) 이외에는 일체 금지하도록 하였다(《太宗實錄》卷13-5, 太宗 7年 正月 甲戌). 그러나 그 후에도 金銀器皿의 사용이 근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世宗 11年 2月 司憲府에서 進上服用器皿·闕內酒器·朝廷使臣支應品皿·朝官品帶·命婦首飾·士大夫子弟耳環·女妓首飾 이외로는 金銀을 器皿 기타로 쓸수 없도록 啓하였다(《世宗實錄》권43-14, 世宗 11年 2월 辛巳).
- 167) 金箔匠은 금박을 만드는 장인이다. 금박은 금을 두드리거나 눌러서 매우 얇게 만든 조각으로 옷감·부채·현판 등의 곁치장을 하는데 쓰인다. 또 漢方에서는 淸心丸·玉樞丹 등 한약에 금박을 바른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76).
- 168) 裘皮匠은 가죽 싸는 장인이다. 大浪皮·白魚皮 등으로 말안장을 싸는 일을 하는 장인이다(同上).
- 169) 靴匠은 목이 있는 신을 만드는 장인이다(同上).
- 170) 鞞鞋匠은 男鞋 즉 임금의 御履를 만드는 장인이다. 삼혜는 가죽으로 만들며 앞이 깊고 뒤축이 없다(同上 및 《百憲摠要》역주본, 법제처, 1979, p.391).
- 171) 熟皮匠은 가죽을 다루는 장인이다. 熟皮는 털과 기름을 뽑아 生皮를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76).
- 172) 花兒匠은 돛자리에 꽃놓는 일 또는 색실로 꽃놓는 일을 하는 匠人 혹은 신코에 꽃무늬를 새기는 장인을 의미한다(同上).
- 173) 斜皮匠은 주로 노랑담비가죽인 貂皮를 다루는 장인이다. 斜皮는 가죽신이나 안장 또는 화살통을 만드는데 쓰이는 가죽이다. 장구의 줄을 늦추었다 죄었다가 하는 가죽고리를 斜皮라고도 한다. 斜皮는 또 黍皮와 혼용되기도 하여 鞋工등을 지칭하는 수도 있다고 한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p.776~777). 世宗 11年 2月 사헌부에서는 庶人 및 工商賤隸들이 斜皮로 된 靴鞋(가죽신)를 못 신도록 금지시킬 것을 啓하였다(《世宗實錄》권43-14, 世宗 11年 2月 辛巳). 庶人에 대한 斜皮사용금지 條項은 睿宗 元年 7月의 詳定所의 啓에서도 나타나 있다(《예종실록》권6-36, 예종 원년 7월 경인).
- 174) 氈匠은 담요를 만드는 장인이다. 氈은 짐승의 털을 물에 빨아서 깃이겨서 평평하고 두툼하게 만든 조각으로 담요 따위의 재료로 쓴다(권오영외 4인, 《앞의 책》, p.777).
- 175) 入絲匠은 말안장·눗그릇·무쇠화로 등에 金絲 또는 銀絲를 새겨 넣는 장인이다. 그 무늬로는 소나무·사슴·不老草·七寶·壽·福·禧와 같은 吉祥文字 등이 있다. 그러나 예종 원년 7월 詳定所의 啓에 따라 大·小人(班常·士庶모두)의 金銀入絲 馬粧을 금지하였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77 및 《예종실록》권6-35, 예종 원년 7월 경인).

2명, 鑰匠¹⁸⁰⁾ 8명, 楷貼匠¹⁸¹⁾ 2명, 針匠¹⁸²⁾ 2명, 鏡匠¹⁸³⁾ 2명, 雕刻匠¹⁸⁴⁾ 2명, 銅匠¹⁸⁵⁾ 4명, 周皮匠¹⁸⁶⁾ 6명, 汗致匠¹⁸⁷⁾ 2명, 鞍籠匠¹⁸⁸⁾ 2명, 看多介匠¹⁸⁹⁾ 2명, 筆匠¹⁹⁰⁾ 8명, 竹匠¹⁹¹⁾ 2명, 鞞骨匠¹⁹²⁾ 2명, 印

- 176) 漆匠은 옷칠을 하는 장인이다. 漆은 옷나무에 틈을 내어 받아들인 生漆과 옷나무를 불에 구워 수분을 제거하여 얻어낸 熟漆 등이 있다. 생칠을 하면 검은 빛을 띄나 점차 검붉은 빛이 되고, 時日이 경과함에 따라 발그레한 투명색으로 변해서 맑은 윤이 흐른다. 그리고 熟漆은 生옷을 바탕칠로 併用하나 鐵分을 첨가해서 검게 걸칠하거나 안료를 섞어 주홍바탕의 두꺼운 불투명체가 되도록 한다. 이와같은 옷칠은 자개로 장식하는 器皿뿐만 아니라 갓이나 소반·쟁반 등의 木器와 長竹·竹器·紙器 등 용품에도 널리 이용되었다(권오영, 《앞의 책》, pp.777~778 및 맹인재, 《한국의 민속공예》 교양국사총서3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p.192).
- 177) 豆錫匠은 豆錫으로 나무 그릇에 장식을 파넣던 장인이다. 豆錫은 黃銅을 말하는데, 구리(赤銅)에다 함석(倭鉛)을 섞어서 만든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78).
- 178) 鑄匠은 놋그릇을 만드는 匠人이다. 鑄匠은 쇠를 끓여 부어 器物을 만드는 鑄鐵匠 또는 校書館에 소속되어 活字를 鑄造하는 鑄字匠을 말하기도 한다. 활자를 주조하는 법은 먼저 黃楊木에 여러 글자를 새기고 印板에 海浦의 연한 진흙을 평평하게 편뒤에 나무에 새긴 글자를 진흙에 착 눌러 글자가 박힌 곳은 오목하게 들어간다. 이에 두 印板을 합쳐서 구리를 녹여 쏟아내려 보내면 오목한 곳으로 고루 들어가서 글자의 形體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중복된 것을 깎아내어 정돈하면 글자가 완성된다(권오영외 4인, 《앞의 책》, pp.778~779 및 《용제총화》7).
- 179) 螺鈿匠은 자개박는 匠人이다.
- 180) 鑰器(놋그릇)를 만드는 匠人으로 鑰鐵匠이라고도 한다. 놋그릇에는 향합·접시·잔·복자·병·바리·소반 등이 있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79).
- 181) 楷貼匠은 表具하는 匠人으로 종이·형질·얇은 널조각 등을 여러 겹으로 포개서 붙이는 기술자이다(同上).
- 182) 針匠은 바늘을 만드는 匠人이다. 바늘은 옷 등을 재봉하는데 쓰는 가늘고 끝이 뾰족한 쇠이다. 생활필수품이었으나 만드는 법을 알지 못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였다고는 하나(《林園經濟志》贍用志3, 服飾之具) 조선초기에 針匠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때 이미 바늘이 생산되었다고 하겠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p.779~780).
- 183) 鏡匠은 거울을 만드는 匠人으로 일명 磨鏡匠이라고도 한다(同上).
- 184) 彫刻匠은 아로새기는 장인 또는 器物을 조각하거나 글자를 새기는 장인이다(同上).
- 185) 銅匠은 赤銅과 黑鉛을 함께 녹여서 銅器를 만드는 장인이다(同上).
- 186) 周皮匠은 말갈레 앞걸이·뒤걸이를 만드는 장인이다. 뒤걸이를 주피(鞞皮)라고도 한다(同上).
- 187) 汗致匠은 말의 땀언치(汗於赤)를 만드는 장인이다. 땀언치는 여름철에 사용하는 땀받이 언치(汗致)를 말한다(同上).
- 188) 鞍籠匠은 鞍籠을 만드는 장인이다. 안룽은 수레나 가마·말을 덮는 우비의 한 가지로서 대개 소가죽이나 말가죽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나(《世宗實錄》권38-4, 세종 9年 10月 庚午) 進上用 鞍籠은 사슴가죽으로 만들었다(同上). 일설에는 안룽을 油紙로 만들었다고 하나(《古法典用語集》法制處, 1979, p.503) 위 세종실록의 記事와 맞지 않는다.

匠¹⁹³⁾ 2명, 水鐵匠¹⁹⁴⁾ 30戶 大·中·小冶 各 10戶. ○ 20인에서 25인
까지를 大冶라 하고, 15인 이상을 中冶, 14인 이하를 小冶라 한다. 冶
匠¹⁹⁵⁾ 4명, 珠匠¹⁹⁶⁾ 2명, 韃甫老匠¹⁹⁷⁾ 2명, 每緝匠¹⁹⁸⁾ 2명, 鞍子

189) 看多介匠은 말가슴 앞에 드리우는 繁纓을 만드는 장인이다. 繁은 官馬의 배에 대는 끈(馬腹帶)이고 纓은 가슴걸이이다. 繁纓은 말가슴 밑으로 드리우는 장식을 지칭하기도 하고(《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工典) 또는 御馬의 가슴사이에 드리우는 紅象毛와 御鞍의 가슴걸이에 다는 것 및 말목 아래 다는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82).

190) 筆匠은 붓만드는 장인이다. 처음으로 붓을 만든 사람은 舜임금이라는 說과 秦나라 蒙恬장군이라는 說이 나누어져 있다(同上 및 張志淵 《萬國事物 起原歷史》와 千字文의 恬筆倫紙 등).

191) 竹匠은 竹製品(竹器)을 만드는 장인이다.

192) 鞞骨匠은 말고들개를 만드는 장인이다. 고들개는 말갈레의 턱밑으로 들어가는 방울이 달린 가죽이다. 추골장은 당상관의 周皮 혹은 뼈가락지 기타 말갈레의 장식을 박는 장인을 의미하기도 한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82).

193) 印匠은 도장을 새기는 장인이다. 도장은 나무·상아·뿔·수정·돌·금 등에 글자나 무늬를 새겨 넣은 것이다(同上).

194) 水鐵匠은 무쇠를 다루는 장인이다. 水鐵은 生鐵이라고 하는데 술과 農器具 등 중요한 물건을 만드는 쇠이다. 水鐵匠이 軍役に 充定되어 있고 또 稅鐵을 내도록 하였으므로 남아있는 자가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成宗 4年 2月 戶曹에서 啓하기를 水鐵匠으로 부터는 公役日과 軍役日을 제외하고 收稅하도록 《經國大典》(辛卯大典)에 등재되어 있는데도 守衛이 立法의 本意를 돌보지 아니하고 全期間 徵稅하므로써 民怨이 있다고 하니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엄중히 살피도록 하여 安定되게 영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여 임금의 이에 따랐다(《成宗實錄》卷27-1, 成宗 4年 2月 丙寅). 그리고 收稅額에 관해서 世宗 7年 9月 戶曹에서 啓하기를 각도 각고을 水鐵匠의 大·中·小爐冶를 分別하기가 어려우니 20명이상을 거느리면 大爐冶, 15명이상은 中爐冶, 14명이하는 小爐冶로 하고 그 收稅는 경상·전라도 小爐冶의 春等(春期)이 錢660文이고, 秋等(秋期)이 米4石6斗이며, 平安道는 半減하여 1年間 米4石6斗를 징수한다는 것과 경기·충청·황해·강원도의 稅鐵은 80斤 등으로 그 小爐冶의 稅는 額數를 이미 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大·中爐冶의 稅는 경상도 大爐冶의 春等(春期)의 경우 錢980文, 秋等(秋期)의 경우 米6石8斗이고, 中爐冶의 春等(春期)이 錢920文, 秋等(秋期)이 米6石2斗라는 것이다. 平安道는 半減하여 1年間 大爐冶에서는 米6石8斗, 中爐冶에서는 米6石2斗라는 것과 경기·강원·황해도에서는 1년간 大爐冶의 稅가 鐵100斤, 中爐冶는 90斤을 定額으로 하여 매년 收稅 上納하도록 한다는 것으로서 임금이 이에 따랐다(《世宗實錄》권 29-25, 世宗 7年 8月 戊戌).

195) 冶匠은 대장장이 즉 打鐵 및 鍊鐵로 鐵製器具를 만드는 자이다.

196) 珠匠은 구슬을 만드는 장인이다.

197) 韃甫老匠은 말다래(馬粧)와 甫老(치마)·障泥 등 馬護衣를 만드는 장인이다. 말다래 등 馬護衣는 말의 배 양쪽에 늘어뜨려 진흙이 튀는 것을 막도록 한 것이다. 세종 22년 3월, 임금이 工曹에 傳旨하여 앞으로 進上馬韃(말다래)에는 籠을 그려 넣고 世子의 馬韃에는 기린을 그려넣도록 하였다(《世宗實錄》권88-32, 세종 22년 3월 신유).

匠¹⁹⁹⁾ 10명, 於赤匠²⁰⁰⁾ 4명, 靴匠²⁰¹⁾ 2명, 木梳匠²⁰²⁾ 2명, 梳省匠²⁰³⁾ 2명, 筒介匠²⁰⁴⁾ 2명, 貼扇匠²⁰⁵⁾ 4명, 表筒匠²⁰⁶⁾ 2명, 稱子匠²⁰⁷⁾ 2명, 圓扇匠²⁰⁸⁾ 2명, 竹梳匠²⁰⁹⁾ 2명, 針線匠²¹⁰⁾ 10명, 草染匠²¹¹⁾ 6명, 木纓匠²¹²⁾ 4명. [奉常寺] 甕器匠 10명, 花匠²¹³⁾ 6명, 籩筐匠²¹⁴⁾ 4명.

- 198) 每緝匠은 매듭을 만드는 장인이다. 매듭은 어떤 물건을 달아매거나 묶을때의 장식용 공예로서 그 종류는 여러가지 있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p.783~784).
- 199) 鞍子匠은 말안장을 만드는 장인이다. 안장은 말의 등에 얹어서 사람이 타는데 쓰는 가죽으로 만든 器具이다. 안장은 때로는 짐신는데 필요한 器具와 駕車馬具를 의미하기도 한다(同上).
- 200) 於赤匠은 언치를 만드는 장인이다. 언치는 말이나 소의 안장 밑에 가는 毛布 즉 방석이나 담요이다(同上).
- 201) 靴匠은 말의 다래를 만드는 장인이다(《百憲摠要》卷3, 難解工匠名). 靴은 다래(月乃) 또는 馬鞍具를 의미하며(《經國大典註解》後集 下 禮典) 方言으로 언치라고도 한다(권오영외 4인, 《앞의 책》, p.784).
- 202) 木梳匠은 나무 열레빗을 만드는 장인이다. 제주도産 山柚子 나무로 만든 것이 좋다(同上).
- 203) 梳省匠은 빗솔을 만드는 장인이다. 省은 솔을 의미하며 빠로서 빗솔의 몸체를 만들고 말총으로 그 머릿부분을 꾸며 빗의 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梳刷라고 하는 빗솔은 말총으로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가늘고 길다. 자루는 骨角으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기도 하였다(同上).
- 204) 筒介匠은 화살통(筒介)을 만드는 장인이다. 筒介는 矢服이라고도 하며 활집은 弓袋라 한다(《明宗實錄》권23-14, 명종 12년 7월 癸亥). 화살통(矢服)은 猪皮로 만들었으며 그 띠로는 鹿皮를 썼다(《世宗實錄》권133-51, 五禮 軍禮 序例, 兵器).
- 205) 貼扇匠은 부채살에 종이나 비단을 붙이는 장인이다.
- 206) 表筒匠은 事大文書인 表箋文을 넣는 통을 만드는 장인이다. 表筒에는 龍이 그려져 있다.
- 207) 稱子匠은 저울을 만드는 匠人이다. 저울에는 大稱中稱小稱의 세종류가 있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86).
- 208) 圓扇匠은 둥근 부채를 만드는 장인이다.
- 209) 竹梳匠은 대나무로 된 열레빗을 만드는 장인이다.
- 210) 針線匠은 바느질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이다.
- 211) 草染匠은 大殿別監이 쓰는 草笠에 황색을 물들이는 장인 또는 화문석에 꽃무늬를 넣는 장인이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88).
- 212) 木纓匠은 나무갓끈을 만드는 장인이다. 木纓은 나무로 구슬을 만들어 옷칠을 하여 꿰 갓끈이다. 그중 竹纓은 가는 대나무의 토막을 꿰고 구슬로 格子를 쳐서 만든 갓끈이다(同上).
- 213) 花匠은 造花를 만드는 장인이다.
- 214) 籩筐匠은 祭祀에 쓰는 祭器를 만드는 장인이다. 籩과 筐는 祭器로서 《世宗實錄》권128-16, 五禮 吉禮序例의 州縣釋奠 正配位 饌實圖에 의하면 神位의 右편(祭官의 右側)에 左八籩이라하여 鹿脯·黃栗·乾棗... 등을 陳設하고 오른편(祭官의 左側)에 右八

〔內醫院〕 粉匠²¹⁵⁾ 2명, 香匠²¹⁶⁾ 4명, 〔尙衣院〕 綾羅匠²¹⁷⁾ 105명, 초립장 6명, 襦笠匠²¹⁸⁾ 2명, 사모장 4명, 涼太匠²¹⁹⁾ 2명, 도다익장 2명, 다회장 4명, 망건장 4명, 모자장 2명, 도련장²²⁰⁾ 2명, 箄匠²²¹⁾ 10명, 玉匠²²²⁾ 10명, 옹기장 10명, 화장 8명, 은장 8명, 금박장

도라 하여 생선과 사슴·토끼... 등 고기를 陳設하며 (이상 등근 그릇) 神位의 正面 향로 뒷쪽(祭官 기준으로는 앞쪽)에 幣篋(직사각형의 그릇)를 둔다. 반대로 《經國大典輯註》65(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86)에 의하면 籩이 幣帛을 담는 그릇이고 篋가 과일(果)을 담는 그릇으로 되어 있다.

- 215) 粉匠은 粉을 제조하는 장인이다. 粉은 약품·화장품 등으로 사용된다. 食用으로는 米粉·小麥粉 등이 있다(鮎貝房之進, 〈市塵攷〉, 《雜攷》 1930년대, 1985 民俗苑 影印本, p.272, 塵名攷, 粉塵).
- 216) 香匠은 香을 만드는 장인이다.
- 217) 綾羅匠은 두꺼운 비단과 얇은 비단을 짜는 장인이다. 조선초기에는 능라를 짤수 있는 장인은 많았으나 고치로 실을 뽑는 기술과 염색하는 기술이 중국에 못미치어 赴京使行(중국으로 가는 사신일행)에 綾羅匠을 한명씩 딸려 보내어 그것을 배워 오도록 하였다(《世祖實錄》권24-19, 세조7년 5월 丁卯). 그 무렵 尙衣院 소속의 綾羅匠은 126명이며 裨事·副裨事 각1명씩으로 2명이었다(《위의 책》권21-9, 세조 6년 8월 甲辰).
- 218) 襦笠匠은 氈裘笠(털실 등으로 짠 갓)을 만드는 장인이다(《經國大典註解》後集 下工典). 갓의 겉을 짜는 毛·布·絲를 紗개라 하는데 上下貴賤에 따라 紗개의 종류가 다르다. 말총으로 된 것은 馬尾笠(당상관용), 豚毛로 된 것은 猪毛笠, 대를 실같이 가늘게 해서 만든 竹絲笠, 竹絲笠위에 羅紬를 입힌 布笠, 豚毛와 대를 섞어서 만든 竹猪毛笠 등이 있다. 또 대우(帽子)는 말갈기로 만들고 涼太(갓의 등근창)는 布로 짠 陰陽笠이 있다(柳喜卿, 《앞의 책》 pp.354~355). 또한 襦笠은 御笠·馬尾甲笠을 이르기도 하고 山行習陣時의 御着毛笠을 지칭하기도 하며 兵曹都摠府의 官員이 머리에 쓰는 것 또는 너울을 의미하기도 한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73). 氈笠은 戰笠이라고도 하는데 下隸들이 쓰는 것은 甁거지라고 하였다. 전립은 원래 胡族계통의 것으로서 조선시대의 笠制와는 다른 것이고 고려말에 우리나라에 들어 왔으며 병자호란후 士大夫들도 썼다(柳喜卿, 《앞의 책》, pp.340~341).
- 219) 涼太匠은 갓량태를 만드는 장인이다. 량태는 涼太 또는 涼臺로 표기하기도 한다. 갓의 遮陽부분인 등근테를 말하는데 갓의 부분품이다(鮎貝房之進, 〈市塵攷〉, 《雜攷》, 앞의 책, pp.297~298, 涼太匠). 량태 제작의 工程은 대울뜨기와 량태견는(짜는) 일로 양분된다. 대울은 머리칼보다도 가늘게 떠내는 절대와 쇠털정도로 가늘게 뽑아내는 빚대, 그리고 말총만큼 가늘게 떠내는 날대 등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의 竹絲를 결어서(엮어서) 량태를 만드는데 버렁은 약간 곡선을 이루도록 하였다(同上). 士大夫의 갓의 량태는 조선중엽까지도 매우 넓었으며 숙종 때에 그것이 좁아졌다고는 하나 正祖 때의 화가 晝隱 신윤복의 풍속도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여전히 량태가 넓었다. 결국 그것을 좁게 통일한 것은 조선말기 고종 때 대원군에 의해서였다(柳喜卿, 《앞의 책》 pp.355~358).
- 220) 搨鍊匠은 종이를 두드려 단단하게 만드는 장인이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75).

4명, 과피장 4명, 靴匠 10명, 삼혜장 8명, 숙피장 8명, 화아장 4명, 사피장 4명, 毛衣匠²²³⁾ 8명, 氈匠 8명, 入絲匠 4명, 毛冠匠²²⁴⁾ 2명, 絲金匠²²⁵⁾ 4명, 칠장 8명, 두석장 4명, 磨造匠²²⁶⁾ 4명, 弓弦匠²²⁷⁾ 4명, 油漆匠²²⁸⁾ 2명, 주장 4명, 나전장 2명, 荷葉綠匠²²⁹⁾ 2명, 生皮匠²³⁰⁾ 2

221) 箴匠은 織造에 사용하는 바디를 만드는 장인이다. 바디는 베틀에 딸린 기구의 하나이다(同上).

222) 玉匠은 玉을 다루는 장인이다. 玉匠은 일명 玉工, 玉人이라고도 하는데 玉을 다듬고 갈아서 圭璧琬琰같은 符瑞나 玉佩瓊琚와 같은 服飾 따위의 물건을 만드는 工人이다(同上 및 鄭道傳〈朝鮮經國典〉《三峯集》卷14 工典 金玉石木攻皮埴埴等工).

223) 毛衣匠은 防寒用 털옷을 만드는 장인이다.

224) 毛冠匠은 毛冠(毛皮로 만든 모자)을 만드는 장인이다. 毛冠은 毛衣와 마찬가지로 임금 臣下에게 下賜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종 12년 8월 예조의 啓에 따라 婦人이 外出할때 그 얼굴을 가릴 것이며, 毛冠을 쓰지 아니하도록 하였다(《世宗實錄》卷49-22, 世宗 12年 8月 癸未).

225) 絲金匠은 말안장에 은실을 넣는 장인이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77).

226) 磨造匠은 맷돌을 만드는 장인, 또는 돌을 깎아 돌호박·돌방아 등을 만드는 장인이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78).

227) 弓弦匠은 활시위를 만드는 장인이다. 弓弦(활시위)의 재료는 소나 말의 힘줄(同上) 및 生絲 등이다. 세조 5년 6월 병조에서 啓한 軍政可行條件에 의하면 軍器監에서 弓弦(弓絃)을 정밀하게 제조하지 못하여 쉽게 끊어진다는 것과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監造官 및 匠人을 죄준다는 것이다. 또 兩界에서 所用되는 弓絃은 生絲로 만들되 守令으로 하여금 監造하게 하여 역시 위의 예에 따라 (匠人 등을) 장부에 적어두고 (줄이 끊어지면) 죄준다고 하였다(《세조실록》권16-24, 세조 5년 6월 壬子). 또 성종 원년 정월 申叔舟의 啓에 의하면 활 하나에 거의 3·4마리의 소나 말의 힘줄이 所要됨으로 활 값이 매우 높아져서 軍士들이 그것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하였다(《성종실록》권2-4, 성종 원년 정월 병술).

228) 油漆匠은 油漆을 제조하는 장인이다. 油漆은 들기름(荏子油)에 唐黃丹 및 無名石을 넣고 끓여서 만든 塗料이다. 箱子에 종이 또는 베를 붙친 위에 바른다(권오영외 4인, 《앞의 책》, p.778).

229) 荷葉綠匠은 초록색의 塗料를 만드는 장인이다. 荷葉綠은 황해도 海州 동쪽 청태암에서 생산되었으며(《世宗實錄》권 152-6, 地理志, 황해도 해주) 길은 녹색에 黛色을 띤 染料로서 색깔이 연잎과 같기 때문에 하엽록이라 불렀다(《林園經濟志》贍用志3 設色之具). 처음에는 하엽록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썼으나 태종 3년 10월 崔仁桂가 처음으로 제조하여 바쳤는데 중국산과 다름없었다고 하였다(《태종실록》권6-22, 태종 3년 10월 경오). 그후 세종 13년 前司正 崔義가 海州所產 荷葉綠을 採取하여 進上하였으며 圖畫院에 명령하여 시험케 하였던 바 염료로 쓸 수 있다고 하였다(《세종실록》권 51-24, 세종 13년 3월 경오). 세종 19년 7월 金璽를 비롯한 7명의 中國人이 野人の 포로가 되었다가 우리나라로 도망쳐서 왔는데 그중 荷葉綠 제조기술등 여러가지 재주가 있다는 김새를 우대(妻以妓厚待之)하면서 蔣英實을 보내어 그 기술을 傳受받게 하였다(《위의 책》권78-3, 세종 19년 7월 갑오). 그러나 그것이 널리 보급되지 아니하였던

명, 鑰匠 4명, 배첩장 4명, 침장 2명, 鏡匠 2명, 風物匠²³¹⁾ 8명, 조각장 4명, 墨匠²³²⁾ 4명, 銅匠 4명, 弓人²³³⁾ 18명, 矢人²³⁴⁾ 21명, 刀子匠²³⁵⁾ 6명, 冶匠 8명, 鍊匠²³⁶⁾ 10명, 每緝匠 4명, 木梳匠 2명, 裁金匠²³⁷⁾ 2명, 都目介匠²³⁸⁾ 2명, 都結兒匠²³⁹⁾ 2명, 熊皮匠²⁴⁰⁾ 2명, 狝皮

지 문종 원년 2월 승지들은 黃金荷葉綠이 우리나라 생산품도 아닌데 佛畫를 그리고 진관사를 단청하면서 다 써버렸다고 하면서 宗廟나 文昭殿·永寧殿도 아직 채색하지 못하였는데 어찌 그렇게 쓸 수 있는가 라고 啓하였다(《文宗實錄》권6-13, 문종 원년 2월 을유).

230) 生皮匠은 生皮 즉 털만 뽑고 熟皮를 하지 아니한 가죽을 다루는 장인이다(권오영의 4인, 《앞의 책》, p.779).

231) 風物匠은 農樂에 쓰는 팽과리·날라리·북·장구·징 등을 만드는 장인이다(《위의 책》, p.780).

232) 墨匠은 먹을 만드는 장인이다. 먹은 고려시대는 墨所, 조선국초에는 墨房에서 제조하였으나, 단종 원년 5월 墨房이 尙衣院에 숨겨졌다(《端宗實錄》권6-16, 단종 원년 5월 무오).

233) 弓人은 활을 만드는 사람으로, 모든 장인의 위에 있기에 弓匠이라 하지 않고 弓人이라 하였다. 그러나 《世宗實錄》권64-38, 세종 16년 6월 병진에서는 弓匠이라 하였다. 본래 활은 黃帝의 신하인 靑陽氏가 처음 만들었으며 그 功으로 張이라는 姓을 下賜받았다고도 하고 혹은 偃가 만들었다고도 한다. 혹은 少昊의 아들 盤이 활을 만들었다고도 한다(권오영의 4인, 《앞의 책》, pp.780~781). 세조 6년 8월 尙衣院 소속 弓人은 定額이 15명으로 각 5명씩 3번으로 나누어 일을 하였으며 軍器監에는 90명이 소속되어 각 30명씩 3番으로 나누어 立役하였다(《世祖實錄》권21-9, 세조 6년 8월 갑진).

234) 矢人은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다. 弓人과 더불어 모든 장인의 위에 있기 때문에 矢匠이라 하지 않고 矢人이라 하였다. 화살은 黃帝의 臣下인 夷則이 처음 만들었다고도 하고 牟夷가 만들었다고도 하였다(권오영의 4인, 《앞의 책》, p.781).

235) 刀子匠은 작은 손칼을 만드는 장인이다. 刀子의 종류로는 三并刀子·孤刀子·單刀子·小刀子 등이 있다. 칼자루와 칼집은 木·竹·角·金·銀·銅·玉·玳瑁·琥珀 등으로 만들고 深彫·高彫·毛彫·象服 등 치밀하게 技工을 하였다(鮎貝房之進〈市塵攷〉, 《雜攷》, 앞의 책, p.277 刀子塵).

236) 鍊匠은 쇠를 단련하는 일을 하는 장인이다.

237) 裁金匠은 피륙에 금실을 수놓는 장인이다.

238) 都目介匠은 매 앞히는 도구인 버령을 만드는 장인이다(《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工典). 버령은 새를 잡은 매를 받을 때 끼는 두꺼운 장갑으로 동개벼개 매토리·매버레·토알이라고도 한다(권오영의 4인, 《앞의 책》, p.786).

239) 都結兒匠은 죄음장이다(《百憲摠要》卷3, 難解匠名). 죄음이란 말은 늘어진 것을 조인다는 뜻이다. 도결아장은 鞭稍(챗열) 등속을 만드는 장인을 뜻하기도 한다(《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工典). 챗열은 채찍의 끝에 늘어진 노끈이나 가죽오리를 말한다. 또한 도결아장은 鞍後垂鞭·큰 매듭·周皮鞭等物의 都結匠을 의미하거나 가죽채 죄는 장인 혹은 말 고들개에 쌍채나 채에 매는 것을 말한다(同上).

匠²⁴¹⁾ 2명, 火鑪匠²⁴²⁾ 2명, 竹梳匠 2명, 環刀匠²⁴³⁾ 12명, 針線匠 40명, 合絲匠²⁴⁴⁾ 10명, 靑染匠²⁴⁵⁾ 10명, 紅染匠²⁴⁶⁾ 10명, 洗踏匠²⁴⁷⁾ 8명, 擣砧匠²⁴⁸⁾ 14명, 鍊絲匠²⁴⁹⁾ 75명, 紡織匠²⁵⁰⁾ 20명, 草染匠 4명.

〔軍器寺〕 칠장 12명, 마조장 12명, 궁현장 6명, 유칠장 2명, 주장 20명, 생피장 4명, 甲匠²⁵¹⁾ 35명, 弓人 90명, 矢人 150명, 錘匠²⁵²⁾ 11명 開城府 5명, 木匠²⁵³⁾ 4명, 야장 130명 개성부 50명 楊根 10명,

240) 熊皮匠은 곰의 가죽을 다루는 장인이다(同上).

241) 狢皮匠은 염소가죽을 다루는 장인이다. 狢皮로는 鞋·靴·合包·皮替를 만드는데 쓰였다(同上).

242) 火鑪匠은 環刀를 갈아서 빛내는 장인으로 칼날을 예리하게 하거나 環刀를 닦는 장인이다. 鑪는 갈아서 빛낸다는 뜻이다. 세종때 화빈방이 설치되었으나 문종때 조각방·목방과 함께 尙衣院에 소속되었다(《단종실록》권6-16, 단종 원년 5월 무오).

243) 環刀匠은 環刀를 만드는 장인이다. 환도는 긴칼(長劔)인데 활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중요한 軍器로서 文宗 元年 2月の 규정에 의하면 步卒用 환도는 길이가 1자7치3푼, 너비가 7푼이고 馬兵用 환도는 길이가 1자6치, 너비가 7푼이었다(《문종실록》권6-17, 문종 원년 2월 갑오).

244) 合絲匠은 여러가닥의 실을 합쳐서 굵은 실을 만드는 장인이다. 合絲의 工程은 生絲 한타래씩을 자애(繰車)에 걸고 외올로 옮겨 감은 후 여러 올로 올을 맨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87).

245) 靑染匠은 衣服에 푸른 물을 들이는 染色匠이다(同上).

246) 紅染匠은 衣服에 붉은 물을 들이는 염색장이다(同上).

247) 洗踏匠은 빨래하는 장인으로 尙衣院과 濟用監소속으로 세종 5년 2월, 大殿과 恭妃殿에 각각 4명씩 배치되어 있었다(《세종실록》권19-14, 세종 5년 2월 신유).

248) 擣砧匠은 종이나 피륙을 다듬이돌에 얹어서 두드려 반듯하게 다듬는 일을 하는 장인이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87).

249) 鍊絲匠(鍊絲匠)은 生絲를 비누나 잿물에 쉬는 일을 하는 장인이다. 그 工程은 合絲한 실을 다시 자아서 옮겨 감아 타래를 만들고 실의 양과 비누의 양을 맞추어 적당한 시간동안 삶아 익힌 후에 깨끗이 행구어 말린다(《위의 책》, p.788).

250) 紡織匠은 실로 옷감을 짜는 장인이다. 넓게는 실을 뽑아 천을 짜고 물감을 들이는 일 까지 통털어 방직장이라고 한다(同上).

251) 甲匠은 갑옷을 만드는 장인이다. 일명 造甲匠이라고도 한다. 세종 16년 6월, 軍器監소속 造甲匠人은 元額이 14명인데 29명을 추가하여 모두 43명이 되었다(《세종실록》권64-38, 세종 16년 6월 병진). 그 후 세조 6년 8월에는 45명으로 되었으며 《경국대전》에서는 많이 줄어들어서 35명이 되었다(《세조실록》권21-9, 세조 6년 8월 갑진 및 《경국대전》 工典, 京工匠).

252) 錘匠은 놋쇠로 쟁과리 또는 징(鉦)을 만드는 장인이다(권오영외 4인, 《앞의 책》, p.781).

253) 木匠은 나무를 다루어 집을 짓고 舟車 기타 물건을 만드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자로

鍊匠 160명 개성부 50명 양근 10명, 阿膠匠²⁵⁴⁾ 2명, 鼓匠²⁵⁵⁾ 4명, 鍊
 絲匠 2명. [校書館] 冶匠 6명, 均字匠²⁵⁶⁾ 40명, 印出匠²⁵⁷⁾ 20명,
 刻字匠²⁵⁸⁾ 14명, 주장 8명, 조각장 8명, 木匠 2명, 紙匠²⁵⁹⁾ 4명. [司

서 木工 또는 木手라고도 한다. 木手 중 大木手는 宮室 등 집을 짓는 자이고 小木手는 그릇을 만드는 자이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82 및 정도전, 〈朝鮮經國典〉, 《三峯集》卷14, 工典, 金玉石木攻皮埴埴等工). 세조 6년 8월 繕工監소속 木手는 100명이며 그들에게 배당된 체아직 수는 典事1, 副典事1, 給事2, 副給事2 등이다(《세조실록》 권21-10, 세조 6년 8월 갑진).

254) 阿膠匠은 阿膠를 제조하는 장인이다. 아교는 중국 산둥성의 阿縣에서 산출되는 갖풀에서 由來하여 그와 같이 호칭하게 된 것이다. 아교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색깔이 투명하고 얇은 것은 畫家들이 물감으로 쓰며, 맑고 짙은 것은 覆盆膠라 하여 藥用으로 쓴다. 그리고 흐리고 검은 것은 단지 접착제로 쓴다. 조선시대에는 아교를 짐승의 가죽·뼈·창자·힘줄 등을 고아서 만들었으며 줄곧 접착제로 쓰여서 활·선박·공예품 등의 제작에 쓰였다(권오영외 4인, 《앞의 책》, p.785). 세종 16년 6월, 軍器監에 소속된 阿膠匠은 元額 2명에 2명을 증원하여 4명이었으며(《세조실록》권64-38, 세종 16년 6월 병진) 그후 세조 6년 8월에는 6명이 되었고 체아직으로는 漆匠·明油匠·矢服匠·彫刻匠 등과 함께 副給事1인 뿐이다(《세조실록》권21-9, 세조 6년 8월 갑진). 阿膠이외의 접착제로는 魚膠·年魚皮膠 등이 있다. 魚膠는 물고기의 부레로 만들기 때문에 부레풀이라고도 한다. 특히 조기(石首魚)의 부레로 만든 것이 최상이며, 활이나 公私船舶을 만드는데 아교 대신 쓰이는 중요한 접착제였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85 및 《세조실록》권21-1, 세조 6년 7월 을해).

255) 鼓匠은 북을 만드는 장인이다. 북은 金·石·絲·竹·匏·土·革·木의 八音 중 革音에 속하는 악기로서 小吳氏가 만들었다고 한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86).

256) 均字匠은 活字와 活字사이의 空間에 대나무 조각이나 찢어진 종이를 매꾸어 넣어서 활자를 굳고 精緻하게 하며, 움직이지 않게 하는 匠人이다. 본래는 대나무 조각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板바닥에 蠟을 녹여 붙여서 활자를 심었으므로 활자가 움직여 인쇄에 지장이 있었다고 한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88 및 《용제총화》7). 그리고 인쇄된 책 한권당 글자 한자의 오류가 있으면 均字匠은 監印官·監校官·唱準·守藏 등과 함께 筭30으로 처벌 받게 되며 매1자에 1등을 더하는 등으로 오자수를 계산하여 처벌받게 된다(《대전후속록》 예전, 잡령).

257) 印出匠은 刻字 또는 鑄字를 거쳐서 均字까지 모두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책을 박아내는 장인이다. 인쇄된 책 한 권당 글자 한 자가 너무 진하거나 희미하면 筭 30으로 처벌 받고 한 자마다 한 등을 더하되 잘못된 글자수를 계산하여 처벌하였다(同上).

258) 刻字匠은 木板에 글자를 새기는 장인이다.

259) 紙匠은 종이를 만드는 장인이다. 종이는 漢나라 和帝 때 蔡倫이 최초로 제조하였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紙所에서 만들었다. 조선 때에는 세종 16년 7월, 造紙所와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에 用紙計 300.000권을 주어서 資治通鑑을 인쇄하도록 하였던 바 종이 원료인 다편(楮)이 넉넉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때 임금이 傳旨하기를 다편은 종래 國庫米를 갖고 교환하여 마련하였는데 앞으로는 境內僧人에게 衣糧을 지급할때 벗짚단(蒿節)·보리짚단(麩麥節)·대나무껍질(竹皮)·껍질 벗

饗院] 沙器匠²⁶⁰⁾ 380명. [內資寺] 용기장 8명, 화장 2명, 방직장 30명, 箴匠 2명. [內瞻寺] 용기장 8명, 방직장 30명, 성장 2명. [司導寺] 용기장 8명. [禮賓寺] 용기장 8명, 화장 6명. [司瞻寺] 印出匠 2명, 楮幣匠 2명. [繕工監] 磨造匠 8명, 조각장 10명, 竹匠 20명, 木匠 60명, 石匠²⁶¹⁾ 40명, 冶匠 40명, 蓋匠²⁶²⁾ 20명, 泥匠²⁶³⁾ 20명, 磚匠²⁶⁴⁾ 20명, 塗彩匠²⁶⁵⁾ 20명, 埃匠²⁶⁶⁾ 8명, 車匠²⁶⁷⁾ 10명, 雨傘匠²⁶⁸⁾ 10명, 簞匠²⁶⁹⁾ 10명, 簾匠²⁷⁰⁾ 14명, 把子匠²⁷¹⁾ 10명, 牀花籠匠²⁷²⁾ 4명, 石灰匠²⁷³⁾ 6명, 馬尾飾匠²⁷⁴⁾ 4명.

긴 삼대(麻骨) 등 물건으로 닥나무를 (5:1로) 바꾸어 종이를 제조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권65-8, 세종 16년 7월 임진).

260) 沙器匠은 沙器그릇을 만드는 장인이다. 全國各處의 磁器所에서 사기 그릇을 생산하였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89).

261) 石匠은 돌을 다루는 石手를 말한다. 石手는 碑碣·섬돌 따위를 만드는 장인이다(鄭道傳, 〈朝鮮經國典〉, 《三峯集》권14, 工典, 金玉石木攻皮埴埴等工). 세조 6년 8월의 繕工監소속 石手는 70명으로 조각장과 노야장·개장·전장·니장 등과 함께 배당된 체아직 수는 모두 給事1, 副給事2 등 3자리 뿐이었다(《세조실록》권21-10, 세조 6년 8월 갑진).

262) 蓋匠은 기와로 지붕을 덮는 장인이다. 세조 6년 8월 繕工監에 소속된 蓋匠의 수는 24명이고 그 체아직 수는 주261 참조(同上).

263) 泥匠은 미장이다. 흙손으로 벽을 바르는 장인이다. 세조 6년 8월, 繕工監에 소속된 泥匠의 수는 30명이고 그 체아직 수는 주261 참조(同上).

264) 磚匠은 벽돌을 만드는(굽는) 장인이다. 세조 6년 8월 繕工監 소속 磚匠의 수는 30명이고 그 체아직 수는 주261 참조(同上).

265) 塗彩匠은 색칠을 전담하는 장인이다.

266) 埃匠은 구들을 놓는 장인이다. 埃은 구들장 밑에 있는 고랑으로 불길과 연기가 통해서 나가는 길인데 굴 또는 고래라고 한다. 埃에는 直埃과 曲埃이 있으며 方言으로 굴뚝이라 한다. 이와 같은 火坑으로 된 방을 온돌방이라 한다(권오영외 4인, 《앞의 책》, p.790).

267) 車匠은 수레를 만드는 장인으로서 車人이라고도 한다. 황제 軒轅氏가 최초로 만들었으며, 夏禹때 奚仲이 改造하였다고 한다(同上).

268) 雨傘匠은 우산을 만드는 장인이다. 우산 중에서는 비단에 기름을 먹여 만든 織이 있었으나 後代에는 종이로 만들었다. 조선시대에는 朝士나 貴族이 아니면 우산을 쓸수 없었으며 婦女나 아이들은 집문앞의 좁은 길에서 짧고 작은 우산을 썼다(同上).

269) 簞匠은 竹席(삿자리)를 만드는 장인이다(同上).

270) 簾匠은 발을 만드는 장인이다. 발은 房의 안팎을 가려서 막는 물건이다(同上).

271) 把子匠은 把子(바자)를 만드는 장인이다. 바자는 대나무·갈대·싸리나무·수수깡·

桶匠²⁷⁵⁾ 10명, 阿膠匠 2명. [濟用監] 숙피장 2명, 毛冠匠 2명, 하
 엽녹장 2명, 분장 2명, 黃丹匠²⁷⁶⁾ 2명, 裁作匠²⁷⁷⁾ 2명, 홍염장 10명,
 도침장 6명, 세답장 4명, 침선장 24명, 방직장 30명, 箴匠 2명, 靑染匠
 20명. [掌樂院] 풍물장 4명, 簣葉匠²⁷⁸⁾ 2명. [觀象監] 自擊
 匠²⁷⁹⁾ 10명. [典設司] 침장 2명, 다회장 6명. [典艦司] 船

왕골·역새 등을 발처럼 엮어서 만든 울타리이다(同上).

272) 牀(床)花籠匠은 꽃을 담은 그릇 등을 만드는 장인이다. 床花는 奠物床 등에 꽃은 假花로서 그 종류는 三層大水波蓮·二層中水波蓮·一層小水波蓮·牧丹江·紅桃三枝花·四季花·紙別建花·紅桃建花·月桂花·紙間花 등이 있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p.790~791).

273) 石灰匠은 석회를 구워서 만드는 장인이다. 석회는 靑石을 태워서 재가 된 상태에서 주로 葬事에 사용하였다. 석회는 또 화재나 도적을 막기 위하여 磚甃(벽돌)에 바르는데 쓰였다. 제조의 工程은 가마솥에 黑靑石을 넣고 3일동안 불을 지피면 들은 부드러워지고 그 색깔이 희게 되는데 거기에 물을 부으면 石灰가 이루어 진다(《문종실록》권 6-21, 문종 원년 3월 壬寅).

274) 馬尾篩匠은 소나무나 버드나무를 얇게 깎아서 칫바퀴를 만들고 말총으로 칫불을 만드는 장인이다. 紗羅로 칫불을 만든 것을 羅篩, 竹條를 짜서 만든 것을 竹篩라 한다. 어느 것이나 체는 가루를 곱게 쳐내는 등에 쓰이는 도구이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91).

275) 桶匠은 桶을 만드는 장인이다. 통은 板을 합쳐서 둘레를 만들고 대쪽으로 묶어서 만든 것인데, 아랫부분에 밑바닥을 설치하였다(同上).

276) 黃丹匠은 朱黃色의 塗料를 만드는 장인이다(同上).

277) 裁作匠은 옷 또는 옷감을 마름질(裁衣)하는 장인이다(同上 p.792).

278) 簣葉匠은 피리나 저의 청을 붙치는 장인이다(《百憲摠要》권3, 難解工匠名). 황염장은 그의 笙簧의 多大, 또는 부리모·청을 붙치는 장인 혹은 笙을 불때에 늘리는 쇠를 만드는 장인, 혹은 피리의 혀를 만드는 장인이다. 簣은 관악기속의 얇은 혀(葉)를 가리키는데, 竹皮 또는 銅片으로 만들어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91).

279) 自擊匠은 관상감소속으로서 물시계의 하나인 漏具(自擊漏)를 만드는 장인인데, (비록 그 신분이 낮으나) 勸工之意로 團領을 입도록 하였다(《明宗實錄》권 32-46, 명종 21년 4월 辛未). 즉 그는 漏局의 時·更·點을 스스로 치는 童子 人形式 물시계를 만드는 장인이다. 자격루는 세종 6년 5월에 蔣英實이 만들어 이듬해 10월 준공된 경복궁 書雲觀의 報漏閣에 설치하여 가동하였다. 그러나 기계장치가 미진하여 蔣英實과 金鑣이 다시 제작에 착수하여 세종 16년 6월에 완성, 그해 7월 1일 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자격루의 구조는 네개의 播水龍壺와 두개의 受水龍壺, 그리고 열두개의 잣대(箭) 및 톱니바퀴와 자동 시보장치 등으로 이루어 졌다. 자동 시보장치는 시간을 맡은 司辰木人과 三辰, 그리고 12神으로 구성되어 있다. 三辰 중의 하나는 鐘을 쳐서 時를 알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북을 쳐서 更을 알리며 나머지 하나는 鉦을 두드려 點을 알린다.

匠²⁸⁰) 10명. [內需司] 용기장 7명, 야장 2명, 주장 10명, 鑪匠 5명, 수철장 6戶, 大·中·小冶 각 2호, 沙器匠 6명, 木匠 2명. [昭格署] 용기장 4명. [司醞署] 용기장 4명. [義盈庫] 용기장 4명, 燭匠²⁸¹) 4명. [長興庫] 茵匠²⁸²) 8명, 塗楷匠²⁸³) 8명. [掌苑署] 용기장 8명. [司圃署] 용기장 10명. [養賢庫] 용기장 2명. [造紙署] 木匠 2명, 簾匠 8명, 紙匠 81명. [圖畫署] 배첩장 2명. [瓦署] 瓦匠²⁸⁴) 40명, 雜象匠²⁸⁵) 4명. [歸厚署]

그리고 12神은 각각 辰牌를 잡고 있어서 時에 따라 교대로 시간을 알릴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모든 장치는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밖에 드러나지 않으나 木人만은 冠과 帶를 갖추고 밖에 나와 있어 時刻에 따라 스스로 시간을 알린다(《世宗實錄》권65-1~3, 세종 16년 7월 병자 및 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89).

280) 船匠은 배를 改修하거나 改造하는 일을 하는 장인이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92).

281) 燭匠은 초(燭)를 만드는 장인이다. 초는 紅染蠟으로 만든 紅大燭과 5升布에 蜜蠟을 발라서 만든 布燭이 있다(《세종실록》 권43-28, 세종 11년 3월 辛未). 초의 제조법은 蜜蠟을 물에 끓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손으로 주물러서 조각을 만든다. 이것을 책상 위에 놓고 가는 木軸으로 문질러 편다. 그리고 蠟으로 軸을 싸서 끓는 물에 넣어 녹여서 흔적을 없앤다. 다시 책상위에 비벼서 둥글게 하고 매끄럽게 한다. 마지막으로 축을 제거하면 초가 된다(권오영외 4인, 《앞의 책》, p.792).

282) 茵匠은 등매 장인 또는 기직을 만드는 장인이다. 등매는 형짚으로 가선을 두루고 부들자리를 대서 만든 돛자리이다. 또한 기직은 왕골겹질이나 부들잎을 짚에 싸서 엮은 돛자리로 눈이 굵고 겹으로 드러나 날이 드물게 박힌 자리이다(同上).

283) 塗楷匠은 종이로 벽·천정·방바닥 등을 바르는(도배하는) 일을 하는 장인이다(同上).

284) 瓦匠은 기와를 굽는 장인이다. 기와(瓦)는 불로 구운 土器로서 夏代의 昆吾가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經國大典註解》 後集 上, 吏典). 조선시대에는 태종 6년 정월 처음으로 別瓦窯를 두고 提調와 副提調를 임명하였고 僧 海宣을 化主로 삼았다. 그당시 海宣이 항상 나라에 上言하기를 新都(서울)의 大小人家가 모두 草家지붕이어서 보기도 좋지 않고 火災우려도 있으니 別窯를 두어서 기와를 굽도록 하면 10년이 못가서 城中 여염집이 모두 기와집이 될 것이라 하였다. 나라에서는 그렇다고 여기어 諸道の 僧匠을 差出하여 使役케 하였는데, 忠淸江原道에서는 각각 僧 50명, 瓦匠 6명, 慶尙道에서는 僧 80명, 瓦匠 10명, 京畿豐海道에서는 각각 僧 30명, 瓦匠 5명, 全羅道에서는 僧 30명, 瓦匠 8명 등이었다(《太宗實錄》卷11-4, 太宗 6年 正月 己未). 各道로부터 差出된 瓦匠 40명은 그 후 瓦署소속의 瓦匠의 定員으로 된것이라 생각되며, 瓦匠을 돕는 僧(助役) 270명도 三別窯의 설치와 함께 9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권오영외 4인, 《앞의 책》, pp.792~793).

목장 4명, 야장 2명, 칠장 2명.

〔增〕 이상의 여러 관청 중에서 사섬시·전합사·소격서·사운서·귀후서는 지금 모두 혁파되었다. 내자시·내섬시·사도시·예빈시·제용감·전설사·장원서·사포서·양현고·도화서에서는 지금은 工匠이 없다. 그외의 여러 관청에서는 (工匠의) 名目(名色)이 옛것과 지금의 것이 서로 다르고 그 定員(額數)의 加減을 규정하지 아니 하였으며 (工匠의) 帳籍을 작성하여 工曹에 보존하여 두는 법도 점점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았으나 續大典 편찬시에 이를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모두 옛법에 따르고 고치지 아니한다.

【外工匠】〔原〕〔京畿〕 甲匠 3名, 冶匠 40명, 弓人 18명, 矢人 37명, 木匠 37명, 皮匠²⁸⁶⁾ 5명, 鑰匠 3명, 漆匠 3명, 沙器匠 7명. 〔忠淸道〕 야장 71명, 궁인 31명, 시인 54명, 弓弦匠 2명, 紙匠 131명, 席匠²⁸⁷⁾ 58명, 木匠 56명, 雕刻匠 1명, 피장 56명, 칠장 56명, 유장 4명, 磨造匠 2명, 墨匠 6명, 사기장 23명, 갑장 6명, 梳省匠 1명, 油具匠²⁸⁸⁾ 55명, 黃瓮匠²⁸⁹⁾ 1명. 〔慶尙道〕 야장 121명, 궁

285) 雜象匠은 궁궐·神殿·門樓 등의 추녀·용마루 또는 박공머리 위의 솟기와 위에 얹는 여러가지 짐승형상을 만드는 장인이다(《위의책》, p.293).

286) 皮匠은 갓바치 즉 가죽을 다루는 장인이다. 《經國大典註解》後集 上 吏典에 「生曰皮, 理之曰革」이라 하여 가죽을 다루기 전에는 皮라 하고 다룬 후에는 革이라 함을 나타내고 있다.

287) 席匠은 돛자리를 만드는 장인이다. 돛자리는 왕골이나 골풀의 줄기를 잘게 쪼개서 친 자리이다(권오영외 4인, 《앞의책》, p.793).

288) 油具匠은 油蓋也匠으로 油甃 갓모테를 엮어 짚이는 장인, 또는 기름에 짚이는 장인이다(同上).

289) 黃瓮匠은 충청도 공주 남쪽등지에 있는 陶器所에서 黃土로 질그릇을 구워내던 장인이다(《世宗實錄》권149-13, 地理志 忠淸道 公州牧).

인 59명, 시인 71명, 궁현장 3명, 피장 67명, 목장 69명, 석장 271명, 지장 260명, 유장 7명, 칠장 73명, 梳省匠 3명, 梳匠 2명, 扇子匠²⁹⁰⁾ 6명, 油具匠 58명, 箱子匠²⁹¹⁾ 6명, 갑장 11명, 목장 8명, 마조장 4명, 사기장 30명. [全羅道] 상자장 4명, 선자장 2명, 야장 68명, 궁인 40명, 시인 61명, 궁현장 2명, 지장 236명, 소장 1명, 석장 58명, 목장 59명, 피장 61명, 칠장 61명, 사기장 39명, 목장 6명, 유장 6명, 갑장 10명, 소성장 1명, 유구장 55명, 마조장 5명. [江原道] 야장 36명, 궁인 17명, 시인 30명, 궁현장 2명, 목장 28명, 상자장 2명, 피장 31명, 유구장 1명, 石匠 1명, 소장 1명, 마조장 6명, 지장 33명, 갑장 3명, 유장 2명, 칠장 28명, 鉛鐵匠²⁹²⁾ 2명, 소성장 1명, 刻匠 1명. [黃海道] 야장 34명, 궁인 19명, 시인 27명, 궁현장 2명, 갑장 3명, 목장 26명, 피장 28명, 지장 38명, 石匠 1명, 水鐵匠 3명, 유구장 1명, 마조장 7명, 유장 2명, 칠장 26명, 篋匠 3명, 연철장 1명. [永安道] 야장 36명, 궁인 26명, 시인 22명, 조각장 1명, 궁현장 22명, 목장 22명, 유장 4명, 칠장 20명, 피장 21명, 석장 1명, 갑장 5명.

290) 扇子匠은 부채를 만드는 장인이다. 부채중에는 쥐는 자루가 달린類와 접고 펴기를 任意로 할 수 있는 疊扇이 있다. 태종 18년 4월 예조에서 各品の 부채(扇子)를 詳定하였는데, 1·2品은 粉紅紈圓扇, 3·4品은 藍苧圓扇, 5·6品은 鶴翎扇, 參外官(7·8·9品)은 白摺扇 등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임금은 下敎하여 僉摠制 이상은 前例에 따라 圓扇을 쓰도록 하고, 3品이하 6品이상은 鶴翎扇을 쓰도록 하며, 參外官은 白摺扇을 쓰도록 하였지만 그렇게 시행되지는 아니하였다(《태종실록》권35-43, 태종 18년 4월 무신).

291) 箱子匠은 皮竹 또는 버들가지로 箱子를 만드는 장인이다. 상자는 광주리에 덮개가 있는 것을 말한다(권오영외4인, 《앞의책》, p.793).

292) 鉛鐵匠은 鉛分과 鐵分이 섞여 있는 鉛鐵을 제련하는 장인이다. 세조 10년 6월 承政院에서 王旨를 받들어 강원도 관찰사에게 馳書하기를 道內 諸邑에서 생산되는 鉛鐵을 鄉吏와 日守로 하여금 많이 채굴하여 얻는대로 進上하라고 하였다(《세조실록》권33-26, 세조 10년 6월 壬辰). 鉛鐵의 主産地는 강원도 金城, 황해도 서흥·봉산 등이다(《세종실록》권152-1·3·4, 권153-8 地理志).

〔平安道〕 야장 32명, 궁인 28명, 시인 27명, 궁현장 26명, 목장 26명, 피장 28명, 유장 8명, 칠장 27명, 소성장 1명, 鬢帽兒匠²⁹³⁾ 1명, 刻匠 1명, 甲匠 9명.

〔增〕 경국대전에는 各道·各邑에 모두 工匠의 여러 名目(名色)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外工匠에 관하여 帳籍을 작성하여 本道에 보존한다는 법규정이 없어졌고 官에서 使役시킬 일이 있을 때에는 勞賃을 주고 私工匠을 고용한다. 그러나 속대전 편찬시에는 여기 대하여 거론함이 없었으므로 앞으로는 경국대전에 따라서 일도내 각邑의 工匠의 名目과 定員數를 通算하여 기록함으로써 번잡함을 덜고 옛제도를 보존하도록 한다.

293) 鬢帽兒匠은 말총(馬尾)으로 만든 모자인 鬢帽을 만드는 장인이다. 성종 17년 2월 사복시 提調 尹塚 등이 啓하기를 사람마다 鬢笠 쓰기를 좋아하여 公馬·私馬할 것 없이 말총을 모두 잘라가므로 이를 禁止하는 法을 만들자고 하여 領敦寧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던 바 鄭昌孫과 尹弼商은 말총으로 만든 갓(笠)이나 모자(帽子)를 모두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고, 沈滄는 그것(중모나 중립)을 쓰는 것을 금지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盧思愼은 말총을 竊取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또한 違法(輕壤大典)이라 하였다. 이에 임금은 鬢帽은 1품이 쓰도록 허용하고, 鬢笠은 經國大典에 의거 前·現職 朝士를 막론하고 모두 쓸 수 있도록 하였다(《成宗實錄》권188-3, 성종 17년 2월 己卯).

第2部

大典會通 刑典・工典 解説

大典會通 刑典 解説/ 289

大典會通 工典 解説/ 415

第2部 刑典·工典 解説

第1編 刑典 解説

第1章 大明律의 依用과 刑罰의 種類

1. 大明律

大明律은 明나라의 刑法典이나 《經國大典》과 《續大典》에 의거 조선시대의 一般的인 刑法典으로서 依用하였다. 大明律은 明太祖가 吳王이었던 元年(1366) 12月, 左丞相 李善長이 總裁官으로, 參知政事 楊憲이하가 議律官이 되어 편찬한 律令이 모태가 되고 있다(皇明實錄 吳 元年 10月 및 南晚星, 《大明律直解》法制資料 제13집, 法制處, 1964.4, 解題). 吳王 3年(1368, 洪武元年), 吳王이 明帝를 칭한 후 吳의 律令을 大明律이라 하였으며 그후 洪武 6年·9年·16年·22年 등 네 차례의 改正·補完을 거쳐서 洪武 30年(1373)에 널리 天下에 반포하였다(南晚星, 앞의 글 및 《明史》卷93, 志69, 刑法1). 大明律은 460개條로서(《明太祖實錄》卷286, 洪武 22年 8月) 唐律을 모방하되 名例律·吏律·戶律·禮律·兵律·刑律·工律 등 六典體制를 갖추었다. 우리나라에서는 高麗史 卷84-1, 刑法志 서문에 고려의 刑法은 唐律을 채택하여 時宜에 맞게 적용하였다고 했으며, 高麗史 권84-30, 刑法志 職制에서는 禡王 3年 2월에 「令中外決獄 一遵至正條格」이라 하여 고려말에는 元나라의 法律인 至正條格을 적용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李成桂가 執權한 禡王 14年(1381) 9月 典法司에서 상소하여 刑事法典으로서 종래의 元律(至正條格) 대신 大明律을 모방하여 시행하도록 하자고 건의하였으며, 결국 조선왕조 건국을 눈앞에 둔 恭讓王 4年(1391) 侍中 鄭夢周의 주관하에서 至正條格과 大明律을 취사선택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新律을 마련하여 올렸다(《增補文獻備考》卷135-1, 刑攷9, 刑書). 그 해 7月 조선건국시의 太祖의 즉위敎書에 모든 公私犯罪에 대한 科刑과 斷罪는 大明律에 의거하도록 하였다(《太祖實錄》卷1-44,

太祖 元年 7月 丁未). 그 후 太祖 4年(1395) 政丞 平壤伯 趙浚이 金祗 등에
 게 명령하여 吏讀文으로 된 《大明律直解》 100여本을 만들어 반포 시행토록
 하였다(《大明律直解》金祗의 跋文). 大明律直解는 大明律 그자체는 아니고 우
 리의 실정에 알맞게 改撰한 우리의 一般法인 刑法典이다. 反面에 經國大典과
 續大典의 刑典은 우리의 고유한 特別法인 刑法典이므로 大明律直解에 우선하여
 適用되는 것이다(《續大典》刑典, 用律).

2. 死罪(死刑)

死罪는 死刑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死刑에는 絞·斬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極刑이라고도 하였다(《大明律直解》五刑 名義 및 《唐律疏議》卷1 名例5 死
 刑2). 같은 死刑이라도 絞刑으로는 屍身이 온전하나 斬刑으로는 머리와 몸통이
 分離됨으로 보다 더 냉혹한 重刑이었다. 死刑은 大辟이라고도 하며 漢代의 腰
 斬이나 明清代의 凌遲處死 등 여러가지 참혹한 형벌이 있었으며 唐律이나 大明
 律 등의 名例律 五刑 死刑條에서는 斬首와 絞首의 두 가지만 규정하였으나 《大
 明律直解》卷18, 刑律 盜賊 謀反大逆條에서는 凌遲處死를 규정하였고 또 조선
 시대의 실제상으로 역적을 다스림에 있어서 凌遲處死律을 시행하였음이 王朝實
 錄에 나타나 있다(《太宗實錄》권22-39, 태종 11년 11월 계유 및 《中宗實錄
 》권43-35 중종 16년 10월 정미). 絞首刑은 北魏에서 시작된 것이라 한다(金
 鐸敏·任大熙 《譯註唐律疏議》名例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12, p.104 및
 《大明律直解》名例律, 앞의 책, p.50). 死刑에 대한 속죄금은 唐律의 경우 銅
 120斤이고 大明律의 贖銅錢은 42貫이었으나 大明律直解에서는 이를 5升布
 210필로 환산하여 정하였다(同上). 反逆이나 殺人 등 死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도 80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10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不治의
 病(篤疾)에 걸린 자는 임금에게 보고하여 裁可를 받아야만 死刑執行을 할 수
 있었고 또 90세 이상 자와 7세 이하 자는 비록 死罪를 범하여도 處刑하지 아
 니한다(《大明律直解》名例律 卷1 老小廢疾收贖).

3. 流刑

流刑은 5刑의 하나로서 중하기가 死刑 다음이다. 즉 重罪를 범하였을 때 차

마 죽이지 못하고 (不忍刑殺) 먼곳으로 유배하여 죽을 때까지 거기 있게 하는 형벌로서 流刑者에게는 거처할 집을 주되 세곳에 거처하게 한다. 즉 大罪人에게는 멀고 황량한 곳(四裔)으로 추방하거나 해외로 유배하고 그다음 죄인은 九州밖, 또 그다음 죄인은 京畿(中國)밖으로 유배한다고 하였다(김택민·임대희, 《앞의 책》, p.103 및 《唐律疏議》卷1 名例4, 流刑). 따라서 流刑은 오늘날의 無期禁錮刑과 비슷하나 반드시 杖刑을 併科하고 멀리(주로 海島나 邊境 지역) 보내는 점이 다르다. 流刑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流 2000리에 杖 100대 치는 것(贖銅錢은 30貫이나 5升布 150필로 환산하여 정함), 流 2500리에 杖 100대 치는 것(贖銅錢은 33貫이나 5升布 165필로 환산하여 정함), 流 3000리에 杖 100대 치는 것(贖銅錢은 36貫이나 5升布 180필로 환산하여 정함) 등이다(《大明律直解》卷1, 名例律 5刑). 唐律에 있어서의 流刑의 속죄금은 流 2000리는 贖銅 80斤, 流 2500리는 90斤, 流 3000리는 100斤으로 규정되어 있다(《唐律疏議》卷1 名例4 流刑). 大明律에 규정된 流刑의 거리는 우리나라의 國土넓이상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서 세종 12년에 각도별로 2000리, 2500리, 3000리의 流配地 및 充軍處를 정하였다(《세종실록》전50-40, 세종 12년 윤 12월 丁未). 조선전기의 流刑은 配·流·竄·謫·放·徒·付處·安置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되고 있다(李泰鎭外 4인, 《譯註經國大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p.672 및 池哲瑚, 〈조선전기의 流刑에 관한 研究〉, 서울大 大學院 法學科 碩士學位論文, 1984).

4. 徒刑

徒刑은 5刑의 하나로서 중하기가 死刑·流刑 다음이다. 官에서 拘禁하여 소금굽기·쇠다루기 등과 같은 힘든 일을 강제로 시키는 형벌로서 지금의 有期 징역형과 비슷하다. 다만 杖刑을 併科하는 점에서 지금의 징역형과는 다르다. 徒刑에는 다섯 종류가 있는데 徒 1년에 杖 60대 치는 것 (贖銅錢은 12貫이나 5升布 60필로 환산하여 정함), 徒 1年半에 杖 70대 치는 것 (贖銅錢은 15貫이나 5升布 75필로 환산하여 정함), 徒 2년에 杖 80대 치는 것 (贖銅錢은 18貫이나 5升布 90필로 환산하여 정함), 徒 2年半에 杖 90대 치는 것 (贖銅錢은 21貫이나 5升布 105필로 환산하여 정함), 徒 3년에 杖 100대 치는 것

(贖銅錢은 24貫이나 5升布 120필로 환산하여 정함) 등이다(《大明律直解》卷1, 名例律 5刑). 唐代의 唐律疏議 卷1 名例3 徒刑의 속죄금은 徒1年은 贖銅 20斤, 徒1年半은 贖銅 30斤, 徒2年은 贖銅 40斤, 徒 2年半은 贖銅 50斤, 徒 3年은 贖銅 60斤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 徒라는 것은 奴라는 뜻이다. 대개 종으로 삼아서 恥辱을 주자는 것이다. 《周禮》秋官司圜에 奴는 남자가 죄로 말미암아 賤隸로 된 것이라 하였고 그에게 노역을 시키되 담장으로 둘러싸인 감옥(圜土)에 모아 가두어 교화시킨다고 하였다. 또 上罪는 3년이 지나서 석방하고 中罪는 2년, 下罪는 1년이 지나야 석방한다고 하였다(김택민·임대회, 《앞의 책》, pp.102~103).

5. 杖刑

杖刑은 5형중 두 번째로 가벼운 형벌이나 流刑·徒刑 등 重刑의 附加刑으로도 집행된다. 《大明律直解》五刑 名義에 의하면 杖刑은 사람이 罪를 犯하였을 때에 大荆杖(큰 모형나무가지로 만든 刑杖)으로서 60대에서 100대까지 치는 형벌로서 5등급이 있으며 10대마다 형이 1등급씩 加減된다. 또 杖刑에 쓰는 刑杖도 큰 荆나무가지로 만드는데 반드시 가지의 그루터기와 눈마디를 깎아내야 하며 관청에서 내린 較板을 써서 法대로 규격검사를 해야하고 힘줄이나 아교 같은 것을 덧붙이지 못한다고 하였다. 杖刑의 杖의 규격은 大頭徑이 4分5厘, 小頭徑이 3分5厘, 길이가 3尺5寸으로 하며, 小頭쪽(가는 쪽)으로 볼기를 친다(《大明律直解》獄具之圖). 속죄금은 《大明律》에는 杖 60이 동전 3貫 600文, 杖 70이 4貫 200文, 杖 80이 4貫 800文, 杖 90이 5貫 400文, 杖 100이 6貫 등으로 규정하였는데, 《大明律直解》名例律 5刑에서는 이를 5升布 18필·21필·24필·27필·30필 등으로 환산하여 정하였다. 唐代의 刑杖은 길이가 3尺5寸, 直徑이 大頭 3分2厘, 小頭 2分2厘(訊囚杖) 또는 大頭 2分7厘 小頭1分7厘(常行杖) 등이다(《舊唐書》권50-2139, 志30, 刑法). 또 속죄금은 《唐律疏議》卷1 名例1 杖刑에 의하면 杖 60대는 銅 6근, 杖 70대는 銅7근, 杖 80대는 銅 8근, 杖 90대는 銅9근, 杖 100대는 銅10근 등으로 되어 있다. 《說文解字》에 杖은 손에 잡는다(持)는 뜻이라고 하였으니 큰매를 들고 사람을 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書經》에 채찍(鞭)을 관리의 과실에 대한 형

벌(官刑)로 삼았다고 하였으니 唐代의 杖刑과 같다. 또 蚩尤(黃帝와 대결했다가 패망한 군주라고 전해오며, 조선전기까지 우리나라 武官들이 軍神으로 받들었음)가 五虐의 형벌을 제정함에 있어서 채찍형을 사용하였다고 한다(김택민·임대회, 《앞의 책》, p.101).

6. 笞刑

笞刑은 5刑 중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大明律直解》五刑名義에 의하면 輕罪를 범한 사람에게 小荊杖(작은 모형나무가지로 만든 매)으로서 10대에서 50대까지 치는 형벌로서 5등급이 있으며 10대마다 형이 1등급씩 加減된다고 하였다. 笞刑에 쓰는 매는 작은 荊나무가지로 만드는데 반드시 節目(옹이, 즉 가지의 그루터기와 눈마디)을 깎아내야 하며 관청에서 내린 較板(檢査器具)을 써서 法대로 규격검사를 해야하고 힘줄이나 아교같은 것을 덧붙치지 못한다. 태형의 매의 규격은 大頭徑이 2分7厘, 小頭徑이 1分7厘, 길이 3尺5寸으로 하며 小頭쪽(가는 쪽)으로 불기를 친다(《大明律直解》獄具之圖). 속죄금은 《大明律》에는 笞 10이 銅錢 600文, 笞 20이 1貫200文, 笞 30이 1貫800文, 笞 40이 2貫400文, 笞 50이 3貫 등으로 규정하였는데, 《大明律直解》名例律 5刑에서는 이를 5升布 3필·6필·9필·12필·15필 등으로 환산하여 정하였다. 《唐律疏議》卷1 名例1 笞刑에 의하면 笞10의 속죄금은 銅 1斤, 태 20은 동 2근, 태 30은 동 3근, 태 40은 동 4근, 태 50은 동 5근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작은 허물이 있는 자에게 매를 때려 그 허물을 부끄럽게 느끼도록 한다는 것이다. 漢代에는 笞刑에 대나무를 썼으나 唐代에는 가시나무(楚)를 썼다. 唐代의 태형에 쓰는 매의 길이는 3尺5寸(약105cm)이고 손잡이 부분의 직경은 2分(약6mm), 끝부분의 직경은 1.5分(약4.5mm)으로 규정되고 있다(김택민·임대회, 《앞의 책》, p.99 및 《舊唐書》卷50-2139 志30 刑法).

7. 刺字刑

刺字刑은 《書經》의 墨刑(黥刑)에 해당되는 형벌로서 죄인의 팔뚝이나 얼굴에 먹물로 罪名 등을 새겨넣는데 주로 강도와 절도를 범한 자에게 시행하였다. 世宗 26年 정월 형조에서 啓하기를 《大明律》의 刺字法을 살펴본즉 每字

各方 1寸5分, 每劃의 넓이는 1分5釐로 하되 위로는 팔꿈치를 넘지 못하고 아래로는 팔목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刺字之法은 의거할 法規가 없고 또 刺字 후에 즉시 석방하여 受刑인들이 이를 씻어내거나 먹을 빨아냄으로 墨跡을 지우니 앞으로는 刺字·字樣·字劃 등을 모두 《大明律》의 律文에 따라 시행하고 受刑인도 3일이 지나서 墨跡이 깊이 들어간 후에 석방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世宗實錄》卷103-9. 世宗 26年 정월 신미). 《大明律直解》권18 刑律 盜賊 監守自盜倉庫錢糧에 「모두 오른팔에 “盜官錢·糧·物”이라는 글자를 刺字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大明律直解》)에서는 팔뚝에 刺字하였으나 고려시대에는 얼굴에 새기는 전통이 있었다고 한다(이태진외 4인, 《앞의 책》, p.678). 老幼者에 대한 刺字는 일찌기 세종 11년 7월 王命으로 70세 이상자와 15세 이하자에게는 시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위의 책》권45-10, 세종 11년 7월 갑술). 이는 殺人·強盜를 제외한 70세 이상 15세 이하의 老幼者에 대한 杖刑禁止(同上)와 囚禁(구속수감)금지조치(《위의 책》권50-24, 세종 12년 11월 갑자) 등 寬刑主義의 所産이다. 또 세종 19년 11월 4貫500餘文을 횡령한 前任 洪川(守令) 任敬에 대하여 임금의 특명으로 刺字刑을 면제하고 杖刑만 科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大明律直解》刑律 卷18, 盜賊 監守自盜倉庫錢糧條에 의하여 杖90에 刺字刑을 科하도록 되어 있었다(《위의 책》권79-16, 세종 19년 11월 경술). 反面 世宗 30年 11月 竊盜의 累犯이 늘자 도망중인 절도범이나 竊盜收贖者를 所在官吏가 잡아서 刺字하도록 하였다(《위의 책》권122-8, 세종 30년 11월 신묘). 또 世宗 31年 正月 忠順衛 陳敬直이 赴防甲士 姜倫吉의 告身을 훔쳐서 月俸을 冒受한 事件에 대하여 임금은 功臣의 孫子라 하여 刑杖(杖100)을 면제하고 다만 刺字하여 外方으로 付處(流配)하였다(《위의 책》권123-2, 세종 31년 정월 신묘).

文宗 元年 3月 宮女의 竊盜事件에 관하여 임금은 그를 刑曹에 보내어 杖60에다 刺字刑을 科하고자 하였으나 都承旨 李季甸 등이 啓하기를 律文에 婦女犯罪에 대해서는 모두 刺字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우리나라의 法에서도 그러한즉 刺字를 면제함이 어떻겠는가 라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宮女(內女)가 절도죄를 범하면 決杖 후에 刺字함이 宮中法이라 하였다. 이제전 등이 주장을 굽히지 않자 결국 임금은 그들의 의견에 따랐다(《文宗實錄》6-31·32, 文宗 원년 3월 계해). 그러나 그해 9월 儒生 金瓘의 妻 今伊의 竊盜事件에는 장물을

계산하여 杖 100, 流 3000리에 처한 후 刺字律을 시행하고, 그 夫 金瓘도 從犯으로 論罪하여 杖 100, 徒 3년에 刺字之律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同知經筵 李思哲은 金瓘이 그 妻의 竊盜行爲를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全家入居 혹은 邊遠充軍으로 처리함이 좋을 것이라 하였지만 임금은 金瓘이 그 妻의 竊盜行爲를 事後에 알고 贓物을 숨겼으므로 知情窩主律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다(《위의 책》권9-36, 문종 원년 9월 경술). 그리고 賊吏에게는 刺字刑을 科할수 없으면 賊吏案에 등록하도록 하였다(《端宗實錄》권12-1, 단종 2년 8월 계미). 또 단종 3년 3월, 盜賊을 여러달 囚禁(구속수감)하면 滯獄이 되어 不便하므로 형벌이 결정되면(決罪) 刺字後에 즉시 全家徙邊하도록 하였다(《위의 책》권13-38, 단종 3년 3월 갑인).

世祖 3년 5월 영유현령 朴汝亨이 官鹽으로 部民의 麻와 바꾸어 私用하였으므로 杖80에 刺字하도록 하되 다만 刺字刑만은 면제하였다(《世祖實錄》卷7-38, 世祖 3년 5월 계미). 세조 11년 3월 前行上護軍 金新民이 上言하기를 도적의 얼굴(面上)에 刺字를 깊이하여 잘 보이도록 하자고 하였다. 팔뚝에 刺字하면 가리워져서 犯人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여 再犯 三犯하니 얼굴에 『竊某物幾貫』이란 글자를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위의 책》권35-26, 世祖11年 3月 癸酉).

成宗 13年 5月 官物인 종이 6張을 私用하고 紗帽와 繩笠·角弓 등을 뇌물로 받은 宋胤宗이란 官人에 대하여 의금부에서 杖 100, 流 3000리에 처하고 오른쪽 팔뚝위에 “盜官物”三字를 刺字하도록 啓한데 대하여 임금이 重臣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던 바 정창손·한명회·심회·윤필상·홍응·노사신·이극배·윤호 등 다수인은 啓한대로 시행함이 옳다고 하였으나 윤사혼은 우리나라가 開國한 이래 朝士에게 刺字한 적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정창손·한명회 등은 世宗 때 善山府使에게 刺字한 일이 있지만 송윤종이 훔쳐쓴 것이 表紙 6장뿐이니 刺字하지 않도록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심회·윤필상 등은 盜物이 적다고 가벼이 논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외에도 찬반 양론이 있었으나 이극배는 律文에 의하면 刺字함이 당연하나 刺字刑을 減免해 주는 것은 임금의 特恩이라 하였다(《成宗實錄》卷141-12, 成宗 13年 5月 己丑). 성종 20년 12월 경연에서 講을 마치고 刑曹의 用律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竊盜가 1貫文 이상을 훔치면 모두 刺字刑을 받게 되고 三犯이면 絞刑에 처해지나 牛馬를 훔친

자는 단지 徒 3년에 처할뿐 刺字하지 아니하고 비록 10犯이라도 死罪에 이르지 아니함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하니 앞으로는 牛馬를 훔친자에게도 刺字하고 三犯이면 絞刑에 處함이 어떻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임금은 刑曹로 하여금 그 可否를 의논하도록 하였다(《위의 책》권235-9, 성종 20년 12월 계사).

中宗 11年 7月 官府에서 물건을 훔친 羅壽千이란 자에게 杖 100, 徒 3년에 처하자 승정원에서는 刺字刑을 竝科해야 한다고 啓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아니 하였다(《中宗實錄》卷25-70, 中宗 11年 7月 戊戌). 中宗 11年 8月 名教(儒教)에 得罪한 韓亨允(吏曹參判)에 대하여 刺字刑을 科하자는 臺諫의 주장에 대하여 임금은 윤택하지 아니하였다(《위의 책》권26-9, 중종 11년 8월 계해).

그 후 刺字刑은 오랫동안 시행되지 아니한 듯 하였다. 英祖 16年 4月 임금은 여러 臣下들에게 근래에도 黥法(刺字法)이 있는가를 물었고 이에 右議政 俞拓基는 우리나라에서 明律을 專用하고 있다는 것과 明律에는 비록 刺字之文이 있으나 실제로 刺字刑을 시행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다. 이에 英祖는 律文에만 있고 실제 시행되지 않는 刺字法은 영구히 폐지한다고 하였다(《英祖實錄》卷51-18, 영조 16년 4월 정해 및 《增補文獻備考》卷134-23, 刑考8 恤刑 英祖 16年).

8. 壓膝刑

壓膝刑은 刑罰法規로서의 律文에 있는 刑이 아니나 英祖 元年 이전에는 수사 관행상으로 시행되어 온 것이다. 압슬형은 무거운 板을 罪人の 양쪽 무릎위에 두고 重壓하거나(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655) 또는 정강이를 木棒으로 강하게 누르는 형벌이다(沈載祐, <18세기 獄訟의 성격과 刑政운영의 변화>, 《韓國史論》34, 1995.12, 서울大, p.115). 如何間 압슬형은 烙刑과 더불어 잔학한 형벌로서, 世祖 때 殺人혐의자에 대하여 시행하라는 王命이 있었으나(《世祖實錄》卷24-18, 世祖 7年 5月 甲子) 中宗은 差使員이 倭奴를 推問할 때 압슬형을 시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他國人에 대하여 그와 같이 濫刑함은 부당하다고 하였다(《中宗實錄》卷15-14, 中宗 7年 2月 己卯). 光海君 때에도 逆獄事件에 압슬형을 시행하면서 혐의자에게 급히 壓膝하려는 신하들에게

逆獄事件에 압슬형을 시행하면서 혐의자에게 급히 壓膝하려는 신하들에게 임금
은 徐徐히 壓之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肅宗 15年 4月 廢妃反對事件과 관
련하여 朴泰輔에게 압슬형을 加한바 있다(《肅宗實錄》卷20-59, 肅宗 15年 4
月 辛卯). 그리하여 朴泰輔는 죽었지만 많은 사람이 同情하였고 드디어 英祖
元年 正月에 壓膝刑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즉 그때 임금은 下敎하기를 “漢文
帝와 우리 世宗은 笞背法을 폐지하였다. 壓膝刑은 律文에도 없고 五刑에 속하
지도 아니한다. 앞으로는 笞背法폐지의 先例에 따라 영구히 壓膝刑을 폐지한
다”고 하였다(《英祖實錄》卷3-30, 英祖 元年 正月 丁巳). 英祖 38年 윤 5월
임금이 영의정 申晩에게 말하기를 지난날 鏡賊(金一鏡)이 남에게 壓膝刑과 火
刑(烙刑)을 써서 虛名을 얻었다가 自身도 그후 바로 그 형벌을 받았다고 하였
다(《위의 책》권99-22, 영조 38년 윤5월 경오).

9. 烙刑

烙刑은 쇠를 불에 달구어 몸을 지지는 잔혹한 형벌로서 단근질이라고 한다.
烙刑에 관하여 中宗 9年 2月 朝講 때 講官들은 그것이 언제부터 비롯되었는지
모르나 근래 잔혹 시행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은 聖代에 시행할 형벌이 아니라
고 하였고 이에 임금은 “刑은 輔治之具라서 이를 폐지할 수는 없으나 奉行者가
欽恤의 뜻을 안다면 폐단은 없게될 것”이라 하였다(《中宗實錄》卷20-2, 中宗
9年 2月 丙申). 中宗 12年 12月 申壽麟의 妻가 그의 婢를 죽였는데 婢의 屍
身に 烙刑을 加한 흔적이 있으므로 임금은 이를 의금부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였다(《위의 책》권31-19, 중종 12년 12월 신미). 그 후 烙刑은 역적을 국
문할때나 誣告事件 때 가끔 시행되기도 하였는데 숙종 15년 4월 이른바 己巳
換局때 閔妃폐위를 반대하던 朴泰輔에게도 그것을 시행하였다. 烙刑은 원래 발
바닥만 지지도록 되어 있으나 朴泰輔에게 두 넓적다리를 지지서 대퇴골까지 닿
게 하였으므로 반대파인 재상 權大運도 이를 法外之刑이라 하여 後弊를 걱정하
였다(《肅宗實錄》권20-60, 숙종 15년 4월 신묘). 여하간 烙刑은 압슬형과
더불어 法外之刑으로서 英祖 5年 7月 그 시행문제를 논의하였는데 大臣들과
臺官들은 대체로 烙刑에 대하여 否定的이었다(《英祖實錄》卷23-4, 영조 5년
7월 기미). 그리하여 英祖 9年 8月 壓膝刑의 폐지예에 따라 烙刑을 영구히 폐
지하였다(《위의 책》권35-25, 영조 9년 8월 경오).

10. 全家徙邊

全家徙邊은 원칙적으로 평안도와 함경도의 邊境지역(예외로 강원도를 비롯한 타지역)에 全家族을 入居시키는 형벌로서 家舍를 官에서 몰수하여 本家の 근거를 없애 나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이태진외 4인, 《앞의 책》, p.693). 즉 世宗 29年 3月 서울과 지방에 도적이 盛行하였으므로 그들과 窩主를 잡는대로 依律論罪한 후에 兩界極邊으로 全家入居하게 하고 家舍를 官에서 몰수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다(《世宗實錄》卷115-20, 世宗 29年 3月 癸未). 또 世宗 29年 윤 4월에 은산현감 具文靖 父子가 國喪(王妃승하) 때 기생과 간통하는 등 風俗에 累가 되는 十惡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평안도 邊郡에 全家入居하게 하여 뒷날을 경계하도록 하였다(《위의 책》권116-8, 세종 29년 윤4월 丙子). 또 文宗 元年 7月 義昌君의 家奴 李山이 능성현에 살면서 船軍 金末生과 田地를 다투어 官(邑)에 소송하게 되었는데 訟庭에서 李山이 주먹으로 末生을 구타하고 그것을 守令이 制止하는데도 욕설을 하였으므로 以下陵上之風으로 그러한 罪를 犯하였다고 하고 王命에 따라 平安道 邊邑으로 全家入居하도록 하였다(《文宗實錄》卷8-40, 文宗 元年 7月 庚申). 端宗 즉위년 8월 刑曹의 文書창고 火災事件에 관하여 의금부의 啓에 따라 知情不告者는 依律斷罪후 全家徙邊하도록 하였다(《端宗實錄》권2-19, 단종 즉위년 8월 丙子). 또 世祖 7年 4月 그 父가 죽자 父妾인 婢를 父妾이 아니라고 官에 告訴하여 그 所生子女를 노비로서 부리고자 한 자를 忘親逆倫이라 하여 강원도로 全家徙邊하도록 하였다(《世祖實錄》권24-2, 세조 7년 4월 계유). 世祖 11年 11月 大司憲 梁誠之가 軍國便宜 10條를 올린 가운데에서 近日 壓良爲賤者에게는 杖 100을 科刑한 후 (極邊으로) 全家入居하게 함은 良法이라 하고 앞으로는 良人 漏丁者와 公私奴婢로서 隱匿된 자 등도 모두 杖 100을 科한 후 全家入居케 하자고 하였다(《世祖實錄》권37-26, 세조 11년 11월 기미). 《大明律》에서는 流刑이외 遷徙刑이 규정되어 있지만 (《大明律直解》五刑名義) 入居地로서 西北兩界에 限定한 것은 조선전기 2곳에 대한 徙民政策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이태진외 4인, 《앞의 책》 p.693).

中宗 9年 10月 임금이 승정원에 傳敎하기를 “근래 全家入居에 해당하는 죄

인이 종전보다 많은데 徒刑·流刑의 죄인과는 달리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므로 이는 死罪에 버금가며 한 사람의 罪로 전가족이 入居하게 되니 어찌 重刑이 아니겠는가. 有蔭子弟 및 功臣과 元惡鄉吏이외에는 配定되는 곳만 啓할뿐 그 罪名을 啓하지 않고 刑官이 斷罪하니 애매한 경우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 罪가 가벼운데 함부로 入居하게 한 자는 의논하여 刪定할 것이며 또 有蔭子弟·功臣·元惡鄉吏가 아닐지라도 임금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하라”고 하였다(《中宗實錄》卷21-10, 中宗 9年 10月 己酉).

中宗 13年 4月 刑曹에서 啓하기를 경상도 동래에 살고 있는 李春茂와 그 가족을 全家徙邊해야 하는데 그의 妻가 孝女로서 旌門을 세우게 되어 있어 本道監司가 그들의 全家入居를 면제되도록 啓請하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물었다. 이에 임금은 형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여 처리함이 좋겠다고 하였다(《위의 책》권32-56, 中宗 13年 4월 병술). 거기 대하여三公이 의논하여 啓하기를 그 妻의 善行으로 그 夫의 罪가 면제될 수는 없으나 全家徙邊을 하면 그 妻 宋氏도 같이 죄를 받게 되어 부당하니 全家徙邊이하의 죄로 그 夫를 죄주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위의 책》권34-27, 中宗 13年 8월 계유). 또 中宗 14년 정월 壓良爲賤의 죄를 범한 士人의 아들이 그 父의 罪를 代身 받게 되자 임금은 朝士가 全家徙邊의 律에 처해진 경우는 옛부터 없었다고 하고 徒刑에 처함이 좋겠다고 하였다(《위의 책》권35-19, 中宗 14년 정월 병진). 中宗 15년 정월 임금이 말하기를 燕山朝 때 作弊者는 모두가 無賴之徒인데 그 중에서 邊方으로 全家入居한 자는 달리 追放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위의 책》권38-23, 中宗 15년 정월 을묘).

中宗 16年 10月 宋祀連 등의 告變事件(安處謙등 被禍事件)으로 많은 사람들이 伏誅되거나 流配되었는데 그 때 杖刑을 받고 全家徙邊된 良賤人들도 모두 60여인이었다(《위의 책》권43-24·25, 中宗 16년 10월 기해). 또 中宗 19년 7월,三公이 議啓하여 訟官을 끌어낸 賤口를 全家徙邊하도록 하였다(《위의 책》권51-19, 中宗 19년 7월 丁丑). 또 中宗 23년 6월 漕運時에 領船·格軍 등이 米豆를 훔치고 일부러 敗船시키는 수가 있었으므로 상세히 조사하여 罪人들을 全家徙邊시키도록 승정원에 지시하였다(《위의 책》권61-57, 中宗 23년 6월 경술). 中宗 23년 7월 임금이 승지 尹仁鏡에게 傳言하기를 地方鄉吏는 비록 작은 죄를 지어도 반드시 全家徙邊하는데 서울의各司吏胥는 비록 죄가 있

어도 全家徙邊하지 아니함은 매우 부당하므로 刑曹에 傳言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위의 책》권62-3, 중종 23년 7월 임신). 또 중종 36년 6월에도 임금은 비슷한 말을 하였다(《위의 책》권95-34, 중종 36년 6월 丙辰). 그리고 중종 24년 4월 大司諫 魚得江이 말하기를 위법행위를 하는 자에게 杖 100을 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부끄러움을 모르며 利益이 있는 곳이면 죽음을 무릅쓰고 犯行하니 (그리하여 惡布가 유행하니) 부득이 全家徙邊法을 적용해야 불법행위(惡布)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위의 책》권65-34, 중종 24년 5월 갑오). 그는 또 자(尺量)를 속이는 자에게도 全家徙邊할 것을 주장하였다(《위의 책》권65-50, 중종 24년 5월 기미). 그 해 7월 말을 훔쳐서 中國人에게 넘긴 자에게 斷跟(발뒤꿈치를 짜름)·黥面(刺字)하여 絶島에 全家族을 노비로 삼아서 永屬시키는 律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하였다(《위의 책》권65-78, 중종 24년 7월 경자).

중종 34년 10월 경주의 官奴가 府衙에 突入하여 府尹을 능욕한 사건에 관하여 大司憲 尙震은 “賤人이 士族을 때리면 全家徙邊한다는 것은 律外之法이므로 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으며 다른 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하자, 임금도 全家徙邊法은 옛날에 없던 法이며 權奸이 立法한 것이므로 大臣에게 의논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事案의 輕重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위의 책》권92-3, 중종 34년 10월 신미). 그러나 西北 兩界의 軍民은 戍役(수자리 서는 兵役)의 苦됨을 견디지 못하고 他道로 流移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그것을 막고자 그러한 流移者를 받아 들인자(許接人)는 全家徙邊에 處하도록 立法하였다. 특히 西北人들이 황해도로 도망쳐 오는 자가 많아서 황해도의 許接人은 중종 36년 6월 1,300여인(戶首기준)으로 그들의 家族까지 合算하면 거의 만여명에 달하여 그들을 모두 全家徙邊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中國으로 가는 使節團의 人員(赴京人員)이 銀을 매매하면 杖 100대에 全家徙邊하도록 되어 있었다(《위의 책》권95-41~45, 중종 36년 6월 경신·을축 및 권 95-68, 중종 36년 7월 정유). 그런데 그 무렵 사간원에서 啓하기를 나이 70세된 자는 全家徙邊을 면제받으므로 使行中 70세된 자를 이용하여 밀무역하는 수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70세 이상자를 거느리고 가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임금은 대신들이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였고三公들은 이는 새로운 立法事項이므로 該曹와 같이 의논해야 할 것이라고 답하였

다(《위의 책》권95-79, 중종 36년 7월 계축). 중종 38년 3월, 전에 중국에 가서 밀무역한 바 있는 富商(通事로 위장) 閔億孫을 滅死·全家徙邊하였다(《위의 책》권100-43, 중종 38년 3월 신해).

明宗 6年 11月三公이 건의하기를 土豪品官이 鄉曲을 武斷하여 人吏를 威壓하고 백성을 凌虐하며 良丁을 은폐한 罪를 犯하면 全家徙邊도 부족하나 그들이 士大夫의 자손임을 감안하여 流三千里로 定配하였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罪를 犯한 자는 적발하여 士族·庶民임을 막론하고 全家徙邊律로 다스리자고 하여 임금의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明宗實錄》卷12-41, 明宗 6年 11月 丙戌). 명종 9년 6월 司憲府에서 啓하기를 《經國大典》 刑典 訴冤條에 의하면 品官과 吏民이 그들의 官職이나 守丞을 告發하면 그것이 宗社나 不法殺人에 관한 것이 아니면 모두 杖 100 徒 3년에 處한다고 하고 그 후 《後續錄》에서는 徒 3년이 가볍다고 하여 全家徙邊으로 刑量을 올렸으므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감히 守丞 등을 고발하지 못한다는 것과 위 法條에 비록 自己事件의 訴冤(告訴)경우는 들어 준다고 하였지만 守丞들이 위 條項을 惡用하여 貪暴하므로 이를 8道에 諭示하여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들이 伸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임금이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위의 책》권16-54, 명종 9년 6월 임신). 명종 15년 6월 士族(儒生)을 구타한 賤人에 대하여 全家徙邊할 것을 사헌부의 官員(法官)들이 啓請하였으나 임금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不允하였다가 여러 차례 啓하였으므로 允許하였다(《위의 책》권26-36, 명종 15년 6월 병신).

광해군 즉위년 7월 승정원에서 啓하기를 全家徙邊의 律은 入居인들이 子子孫孫 그땅(西北兩界)사람이 되라는 것이며 이는 邊方을 충실하게 하자는 것이므로 비록 도망쳐 나오는 자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일일이 찾아서 되돌려 보낸다는 것과 사면령이 있어도 그들은 고향에 돌아 갈 수 없는데 지금 만약 그들을 석방하여 돌려 보낸다면 邊土가 텅비게 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流刑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석방하여 돌려 보내라고 하였다(《光海君日記》卷6-11, 光海君 즉위년 7월 임진).

肅宗 35年 8月 수어사 閔鎭厚가 上言하기를 全家徙邊은 罪人인 戶主가 죽으면 그 妻子는 석방하여 고향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지금 兩南과 西北지방 모두가 흉년으로 流離飢餓상태이므로 전례에 따라 석방하여 돌

려 보내자고 하여 임금이 이를 옳다고 하였다(《肅宗實錄》 卷47-38, 숙종 35년 8월 무오). 또 숙종 36년 12월 司諫 柳述이 상소하기를 全家徙邊에 해당되는 자가 무려 1260명이나 되니 刑官으로 하여금 속히 廟堂(의정부)과 상의해서 임금에게 여쭙어 지시를 받아 刪定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위의 책》권 49-38, 숙종 36년 12월 신미).

영조 16년 4월 임금은 全家徙邊의 律文은 너무 重刑이라 하고 이를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던 바 右議政 俞拓基가 말하기를 이 法律은 옛날에는 없었으며 我朝(조선왕조)에서 邊塞의 空地를 實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이라 하였다. 이에 임금은 자세하게 심사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하였다(《英祖實錄》 卷51-18, 영조 16년 4월 정해). 드디어 영조 20년 7월 임금이 下敎하기를 全家徙邊之律은 처음에는 邊方을 충실하게 하자는 것과 犯人을 징계하여 善人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先王의 뜻이었으나 지금은 邊方백성이 이미 차있고 反面 그곳은 犯罪人의 도피처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쳐서 杖刑과 流刑으로 한다는 것이었다(《위의 책》권59-38, 영조 20년 7월 신사). 영조 52년 3월, 임금이 死去한 후 그의 行狀記에 의하면 甲子年(영조 20년) 5월, 임금은 續大典을 편찬할 때 全家徙邊律을 폐지할 것을 명령하면서 犯人이 죄가 있지, 그 妻子에게 무슨 허물이 있는가라고 하였다(《위의 책》권127-60, 영조 52년 3월 경진).

11. 付處와 安置

付處와 安置는 귀양간(流配) 죄인이 配所를 떠나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게 주거제한하거나 감금하는 것인데 付處는 귀양지가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서 황무지·해변 또는 邑村을 不問하고 地方官의 감시하에 있는 것이다. 특히 中道 付處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安置는 비교적 먼 해변이나 황무지로 귀양보내(流配하여) 함부로 配所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것이다. 安置중에서 圍籬安置는 外部와의 접촉을 일체 차단하였다. 여하간 付處나 安置는 주로 양반이나 관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絶島·海邊·本鄉·自願處 등 다양하였다. 太宗 4年 10月 죄를 지었다고 탄핵된 官人 및 그 가족이 廢庶人이 된후 外方으로 安置되거나 혹은 自願付處·自願安置되었다(《太宗實錄》 卷8-25, 太宗 4年 10月 壬辰). 《經國大典註解》 後集 下 刑典에 付

處는 「編配而不爲加役」이라 하여 流配를 하되 勞役을 加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安置는 「置之於此 不得他適也」라 하여 流配地를 떠나갈 수 없다고 하였다.

世祖 元年 8月, 付處된 武人의 全財産을 몰수하자는 卿宰들의 건의에 대하여 世祖는 그렇게 하면 그들은 반드시 굶어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였다(《世祖實錄》권2-13, 세조 원년 8월 병인). 또 世祖 4年 2月 임금이 의금부에 傳旨하여 安置한 사람 100여명중 成年은 바로 安置하고 미성년은 成人이 되기를 기다린 후 自願安置하도록 하였다. 定屬人과 付處人도 그렇게 하였다(《위의 책》권11-7, 세조 4년 2월 신묘). 睿宗 元年 2月 임금이 8道 관찰사에게 諭示하기를 “經國大典에서 모든 徒·流, 付處·安置·充軍·定役·徙民 중 도망자는 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國憲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流配하는 대로 곧 도망친다”고 하였다(《睿宗實錄》권3-29, 예종 원년 2월 계묘).

成宗 21年 10月 임금이 형조에 傳敎하여 付處人 중 8명을 예문관에 주어서 奴婢로 삼도록 하였다(《成宗實錄》권246-11, 성종 21년 10월 병인). 여하간 付處는 重罪에 해당되며 「次流罪名」이라 하여 流刑에 버금가는 罪名이라 하였다(《中宗實錄》卷11-5, 中宗 5年 4月 癸巳). 明宗 12年 8月三公이 啓하기를 庚辰年(中宗 15年)의 사면령에서는 단지 流刑(放流)이하라 하면서도 安置·充軍도 포함시켰는데 이번의 赦文內에서 雜犯 死罪人까지 모두 사면하면서 安置人과 充軍人만이 거론되고 있지 않으므로 감히 稟議한다고 하였다. 이에 임금은 답하기를 安置와 充軍에 해당되는 사람도 포함시키되 國家에 관계되는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中宗實錄》卷23-29·30, 中宗 12年 8月 丁酉).

第2章 禁刑日 및公私罪와 經赦·收贖 등

12. 禁刑日

禁刑日은 拷問과 刑罰(死刑·杖刑 등)집행을 禁하는 날을 말한다. 太宗 13年 11月 議政府의 啓에 의하면 刑曹에서 古制에 관하여 보고하기를 初8日·15日·23日을 禁刑日로 하였다고는 하나 明文은 없고 단지 律文(《大明律直解》卷28, 刑律 斷獄 死囚覆奏待報條)에 禁刑日에 관한 규정(日字不明示)이 있어

그날에 刑을 집행하면 笞 40에 처한다는 것과 또 禮曹로 하여금 文獻通考를 살펴 보도록 하였던 바 宋太祖 때 旬休日에는 일을 보지 않도록 하였으나 宋太宗 때에는 다시 일을 보게 하였고, 그후 每月 旬休日과 上巳(3월3일)·重午(5월5일)·重陽(9월9일, 이상 모두 음력)일은 모두 休務하도록 하되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는 것이었다. 또 齋戒日에는 死刑判決이나 死刑에 관한 文書에 署名을 하지 않으며, 매년 立春에서 秋分까지와 朔望(초하루·보름)·上下弦(음력7·8일과 22·23일)·24節氣·비오는 날·밤 등에는 모두 死刑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정부에서 이를 살펴본 바 고려이래의 三暇日은 宋의 旬休日과 같으며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에 구애받지 아니한다는 것과 오직 刑曹·漢城府·巡禁司에서는 齋戒日과 暇日에 拷問이나 刑執行을 하지 않고 종전의 禁刑日이외에 위 上下弦·24節氣·비오는 날·밤에는 死刑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太宗實錄》 卷26-39, 태종 13년 11월 丁亥). 위 實錄記事에 나타난 宋의 제도는 대체로 《唐律疏議》 卷30, 斷獄 死囚覆奏報決條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唐律疏議의 규정에 의하면 死刑禁止日(禁殺日)은 立春에서 秋分에 이르기까지와 大祭祀日 및 致齋日·朔望·上下弦·24節氣·비가 개이지 않은 날·밤이 새지 않은 때·斷屠月日 및 假日 등이다. 斷屠月은 正月 5月 9月이고, 禁殺日은 매월 10直日과 1日·8日·14日·15日·18日·23日·24日·28日·29日·30日(이상 음력) 등이다. 이에 위반하면 徒刑 또는 杖刑에 처하였다. 이 唐律에 근거를 두고 明律에서도 立春이후 秋分이전에는 死刑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등의 간단한 규정을 두고 있다(《大明律直解》 卷28 刑律 斷獄 死囚覆奏待報條).

世宗 21年 12月 刑曹에서 의정부에 보고하여 續六典 刑典에 규정된 것(위 太宗 13年 11月 丁亥의 記事參照) 이외에 宗廟·社稷에 대한 제사와 誓戒日에서 行祭日에 이르기까지, 및 임금과 왕비·世子の 생일 그리고 俗節인 重午(음력 5월5일 단오절)·中秋(음력 8월15일 추석)·重陽(음력 9월9일) 등에는 死刑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였다(《世宗實錄》 卷87-26, 世宗 21年 12月 戊寅). 이러한 世宗 때의 法制가 정리되어 《經國大典》 刑典 禁刑日로 등재된 것이었다.

13. 永不敍用

永不敍用이란 仕版에서 이름을 삭제하여 영원히 官職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이며 단순히 官職을 그만두게 하는 罷職보다 무거운 형벌이다. 太宗 5年 관리가 노비에 관한 訴訟을 誤決한 경우에는 職牒을 거두고 杖 80에 처하며 水軍에 充定하되 그 情狀이 현저한 자에 대해서는 職牒을 거두고 杖 100에 처하며 水軍으로 充定한 다음, 영구히 官職에 임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임금의 教旨가 있었다. 이것이 그때 續六典에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674). 太宗 16年 5月 司憲府에서 啓하기를 續六典에서는 “꾸민 말을 편파적으로 듣고 眞僞를 살피지 않아서 昏迷하여 誤決한 자는 잘못된 죄명(過名)을 기록해 두고 永久히 敍用하지 않으며 더구나 人間性이 나빠서 뇌물을 받고 誤決한 情狀이 현저한 경우에는 직첩을 거두고 杖 100에 처한 후 水軍에 充定한다”고 하였다.

또 太宗 15년에 吏曹에서 받은 教旨는 眞犯十惡·監守自盜·非法殺人·枉法受財 등 죄로 杖 100 이상을 受刑하면 法에 따라 任用禁止(依律不敍)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太宗 15년의 또다른 教旨에 따르면 단순히 혼미하여 誤決한 자는 永不敍用之例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죄명을 기록해 둘 뿐 죄를 받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이 두 教旨가 다르고 후자는 續六典의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太宗은 永不敍用之法은 經久之道(영구불변의 법칙)가 아니라 하고 이를 6曹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던 바 6曹에서 啓하기를 뇌물을 받고 誤決한 情狀이 현저한 경우 및 人間性이 나빠서 잘못을 알면서 誤決한 경우에는 太宗 5년의 教旨에 따라 職牒을 거두고 杖 100에 처한후 水軍에 充定하며 永不敍用하자는 것과 昏迷하여 誤決한 관리는 현직을 해임하고 笞 50에 처하되 만약 전에 犯行한 바를 용서 받은 경우에는 論罪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太宗實錄》 卷31-33, 太宗 16年 5月 丁酉).

永不敍用者를 許通하자는 논의는 成宗 16년 6월에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許通시키자는 것이 衆論이었고(《成宗實錄》 卷180-3, 成宗 16년 6월 계미), 明宗 6년 5월의 논의 결과 임금은 輕重을 가려서 付標하자는 것이었다(《明宗實錄》 卷11-53, 明宗 6年 5月 丙辰). 조선후기인 肅宗 23年 4月 영의정 柳

尙運이 말하기를 永勿除職之類가 10여년이 지난후 임금의 特恩으로 풀리는 것(疏釋)은 나쁘지 않다고 하였다. 그 당시 吏曹參議 李徵明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永勿除職之類가 死罪의 既遂가 아닌 限 法律로서 禁錮함은 도리어 貪吏의 경우보다 심하여 輕重에 어긋나니 變通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廟堂(정부)에서 의논하게 한 결과 柳尙運이 위와 같이 稟裁한 것이다.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永勿敍用之律이 본래 徒年刑(유기징역 상당) 보다 중(上)한 것이나 근래 매번 赦書가 들어와서(사면이 있어서) 罷職과 같은 科罪로 되었으니 法意와 맞지 않는 것과 3년이 찬 후에 임금에게 품의하여 지시를 받아서 사면하자고 하였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肅宗實錄》 卷31-20, 숙종 23년 4월 갑인).

14. 經 赦

經赦는 常赦·特赦 등의 사면령이 있음을 의미한다. 太宗 元年 12月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赦라는 것은 小人之幸이요 君子의 不幸이므로 赦가 없는 나라의 政事가 반드시 公平해진다는 것과 慶節이나 災異를 만날 때마다 임금이 사면령을 내려서 仁恩이 널리 미치나 奸僞之風이 그칠 수가 없을 것이므로 善한 자는 게을러지고 惡한 자는 방자해질 것이니 너무 자주 사면하여 小人들이 요행을 바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太宗實錄》 권2-22, 태종 원년 12월 기미). 《大明律直解》 卷1, 名例律 常赦所不原條에서는 무릇 10惡(謀反·謀大逆·謀叛·惡逆·不道·大不敬·不孝·不睦·不義·內亂)이나 殺人罪를犯하거나 官財物을 훔친 자 및 強盜·竊盜·放火·發塚(무덤을 발굴)한 자와 뇌물을 받고 法을 굽힌 자, 法을 굽히지 않고 뇌물을 받은 자, 詐僞·犯姦·사람을 略取하거나 略取한 후 매각한 자, 사람을 유인하여 奸黨에 넣거나 참조하는 말로서 남을 죽게한 자, 고의로 남의 죄를 증감한 자, 事情을 알면서 犯行을 放任하고 시키는대로 따르며 범인을 은닉하거나 끌어 들여서 단곳에 보낸 자, 吏胥가 중간역할(브로커)을 하여 뇌물을 官員에게 전달(說事過錢)하는 따위의 모든 眞犯은 사면령이 있어도 사면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世祖 2년 4월 임금은 명나라 황제로부터 誥命과 冕服을(封建諸侯로 特封) 받고 頒赦敍書를 내리기를 景泰7년(世祖2年) 4月 20日 새벽 이전의 범죄를 사면하되(발각여부, 종결여부 不問) 謀反大逆 및 謀叛者와 그 子孫이 祖父母·父母를 때리

고 욕하는 행위, 妻妾이 남편을 謀殺하는 행위, 노비가 主人을 謀殺하는 행위, 謀故殺人행위, 독약으로 남을 해치거나 저주하는 행위, 강도·절도 등은 제외하기로 하였다(《世祖實錄》 卷3-37, 世祖 2年 4月 己未). 世祖 6年 3月の 사면령에서도 强盜·奸盜를 제외한 徒刑 이하의 京獄罪囚를 사면하였고(《위의 책》권19-35, 世祖 6年 3月 丙戌), 世祖 9年 7月の 사면령에서도 강도와 절도를 제외한 죄를 사면하였으며(《위의 책》권30-36, 세조 9년 7월 경인) 또 世祖 10년 5월의 사면에 있어서도 강도만은 제외하였다(《위의 책》권33-18, 세조 10년 5월 경오). 이상의 사면은 모두 명나라의 勅使가 와서 勅書를 전달할때 반포한 것이다. 또 세조 13년 8월 이른바 逆賊평정후의 사면에서도 死罪와 강도·절도를 제외시켰으며 그의 濫刑한 官吏도 제외시켰다(《위의 책》권43-41, 세조 13년 8월 계축).

15. 私罪

私罪는 公罪에 대칭되는 범죄로서 예컨대 諫官의 諫言 등이 임금귀에 거슬리는 등의 직무수행에 따른 부득이 한 위법행위(公事)가 아닌 私私로운 행동으로 인한(私事) 범죄행위를 말하는데 비록 그 행위가 公事로 인한 것일지라도 임금을 고의로 속이는 행위와 청탁을 받고 법을 굽히는 행위 등은 私罪에 해당된다. 따라서 私罪는 公事로 인하지 않은 私事로 인한 범죄행위가 일반적이지만 비록 公事로 인한 행위일지라도 私慾(阿曲)으로 인한 행동, 예컨대 청탁을 받고 不正한 판결을 하는 따위는 私罪에 해당된다(김택민·임대희, 《역주 당을소의》 명례편, 한국법제연구원, 1994.12, pp.165~166, 第17條 名例17, 官當). 私罪를犯하여 杖 60刑을 받게된 관료는 임금에게 아뢰어 告身(관원자격 또는 그 임명장)을 1等 追奪(官階를 한등급씩 강등, 예 정3품인자를 종3품으로 강등하는 따위)하고, 杖 70刑을 받은 자는 2等(예 정3품인자를 정4품으로 강등), 杖 80刑을 받은자는 3等, 杖 90刑을 받은 자는 4等, 杖 100刑을 받은 자는 모든 告身(官階·官職 임명장)을 追奪한다는 《經國大典》刑典 推斷의 규정은 《大明律直解》 名例律 卷1, 文武官犯私罪條의 규정을 依用한 것으로 그 表現을 약간 달리하고 간추린 것이다. 즉 大明律에서는 杖 100인 受刑者는 罷職不叙라 하였고, 杖 90 이하인 受刑者도 모두 現職을 해임하여 雜職이

의 現職은 주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강등된 散官(官階)을 받을 뿐이다. 다만笞 50刑을 받은 자는 現職을 해임하고 다른 관직에 別途로 任用(別敍)하며,笞 40이하 刑을 받은 자는 附過還職(罪名을 적어두고 本職으로 돌려 보냄)한다고 하였다. 世宗 5年 正月 이 규정을 처음 依用할 때에는 《大明律》의 규정보다 한 등급씩 높여 私罪 杖 60은 2等, 杖 70은 3等, 杖 80은 4等, 杖 90은 5등으로 職牒을 回收(杖 100 受刑人은 公私罪를 막론하고 모든 職牒을 回收)하도록 하였으나(《世宗實錄》권19-9, 세종 5년 정월 기유), 세종 7년 12월 이를 《大明律》의 규정과 맞추어 杖 60은 收 1等, 杖 70은 收 2等, 杖 80은 收 3等, 杖 90은 收4等으로 職牒을 回收하고, 杖 100은 職牒을 모두 回收하며, 公罪 杖 100과 私罪 杖 90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속죄금을 받도록(受贖)하였다(《위의 책》권30-27, 세종 7년 12월 갑신). 私罪를 범하여 散官이 된 자는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임용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臺諫에서는 不忠不孝인자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도 再任用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贖金은 이를 듣지 아니하였다(《成宗實錄》卷49-6 성종 5년 11월 壬戌).

16. 同僚共犯公罪者

同僚共犯公罪者는 같은 관청의 관료가 公罪를 함께 犯한 경우이다. 同僚는 同官寮(《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刑典) 즉 같은 직무를 맡은 관료라 할 수 있으며 職級이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李珥가 大司諫 또는 副提學때의 經筵日記에 의하면 「李珥率同僚詣闕辭職曰」·「大司諫李珥謂同僚曰」·「副提學李珥謂同僚」라 하여 堂上官인 李珥가 司諫院 및 弘文館의 堂下官을 同僚라 적고 있다(《栗谷全書》, 栗谷思想研究院, 1978, 번각본, 卷29, 經筵日記). 公罪는 公事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된 것이며 私가 없고 왜곡됨도 없는 것(緣公事致罪而無私曲者) 즉 私情과 枉曲이 介在되지 아니한 公務遂行 중의 위법행위·法式 위반행위를 말한다(《唐律疏議》卷2 名例17, 官當, 《앞의 책》, p.166). 《大明律直解》名例律 卷1, 文武官犯公罪에 「무릇 內外大小軍民과 관청의 官吏가 公罪를 犯하여 笞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官에서 속죄금을 받고……杖罪 이상에 해당하면 명백히 文案을 작성하여 매년 한번 살펴보고 罪名을 기록하였다가 9년에 한 차례 所犯次數와 輕重을 通考하여 승진 또는 파직의 증빙으로 한다」

다」고 규정하였다. 또 《大明律直解》 名例律 卷1, 犯罪得累減條 公罪遞減之類에 의하면 같은 관청의 관료(同僚)가 公罪를 범하였으되 失錯(無私曲)이었을 경우에는 吏典(아전)은 3등급을 減하고 만약 刑執行이나 석방(決放)하기 전이면 또 1등급을 減해서 通考하여 4등급을 감하게 되며, 首領官(郎官·담당관)은 5등급을 減하고 佐貳官은 6등급을 減하며 長官은 7등급을 減하는 것이다. 그런데 《世宗實錄》 卷68-35, 世宗 17年 6月 甲子의 記事에 의하면 大小官吏에게 律文(大明律)을 살펴서 罪를 科할 때에 四等官吏遞減之法이 律文에 등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4等級으로 官吏를 衙門에서 나누어 詳定하는 法文이 없으므로 法官이 法律을 적용하여 科罪하면서 官리의 分等を 각각 다르게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犯罪에 대한 輕重의 타당성이 없으니 앞으로는 각 관청의 官吏를 中國의 四等之法에 準하여 法制化해서 그것을 參詳하여 모두 科罪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刑曹와 詳定所에서는 함께 의논하여 啓하기를 堂上官이 있는 각 관청(예컨대 6曹)에서는 行首가 長官이 되고 次官이하가 佐貳官이 되며 郎官이 首領官이 되고 (예컨대 仁順府少尹·判官이 佐貳官이 되고 南行이 首領官이 됨) 吏典이 首犯이 되는 등으로 4등급으로 나누자는 것이었다. 堂上官이 없는 각 관청(예컨대 奉常寺와 같은 것)에서도 官리를 4등급으로 나누어 行首를 長官으로 하고 次官 이하를 佐貳官, 南行을 首領官으로 하며 만약 그 사건에 提調도 관련되면 提調가 長官이 되고 祿官인 行首이하가 佐貳官이 되며 南行이 首領官이 된다. 그러나 관료가 2등급만 있는 곳(예컨대 5部)에서는 단지 正官 및 首領官으로 나누고 同等官만 있고 次官이 없는 곳(예컨대 宮直같은 곳)에서는 단지 首領官으로 論罪한다. 또 만약 提擧·別坐가 있는 곳(예컨대 惠民局)에서는 祿官과 통털어서 같은등급으로 하고 모두 吏典을 首犯으로 하는 등으로 分等遞減한다는 것이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

17. 誣告

誣告는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法司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大明律直解》 卷22 刑律 訴訟 誣告條에 “무릇 남을 笞刑에 해당하는 罪로 誣告한 자는 그 무고한 罪보다 2등급 加重하여 처벌하고 流刑·徒刑·杖刑에 해당하는 罪로 誣告한 자는 그 무고한 罪보다 3등급 加重하여 처벌하되

각각 杖 100, 流 3000리에 그친다. 만약 무고를 당한 徒罪人이 이미 服役을 하고 또 流罪人이 이미 流配되었으면 비록 是正되어 (방면되어)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服役日數와 돌아오는 날짜수를 계산하여 犯人에게 비용을 追徵하여 誣告당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만약 무고를 당한 사람이 (복역 등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田宅을 잡히고 팔았을 경우에는 犯人이 그 값을 준비하여 물려주도록 한다. 또한 被誣告人을 수행하던 有服親屬 1인이 致死하게 되면 誣告人을 絞刑에 處하고 그의 재산 중 半을 被誣告人에게 준다. 그러한 경우에도 被誣告人의 여비를 배상시켜 주도록 하고 팔려진 田宅을 물려서 돌려 주게 한다. 또 被誣告人에게 死刑이 집행되었으면 誣告人을 역시 反坐로 死刑에 處하고 未決이면 杖 100, 流 3000리에 處한 후 3년간 加役한다”고 하였다. 기타 同條項에는 被誣告人이 誣告事實을 과장하여 신고한 경우 및 誣告事實 일부만이 허위사실인 경우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反坐라 함은 허위사실로 남을 고발한 자에게는 고발한 바로 그 죄로 벌한다는 것이다(《經國大典 註解》後集 下 刑典).

18. 匿名書

匿名書는 자기 이름을 숨기고 혹은 남의 姓字를 빌려서 범죄사실이 적힌 글(犯狀)로서 몰래 投書하여 남의 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經國大典 註解》後集 下 刑典). 《大明律直解》 刑律 卷22 刑律 訴訟 投匿名文書告人條에 의하면 무릇 無名狀(자기 이름을 숨긴 고발장)으로서 남의 죄를 고소한 자는 絞刑에 처하고 그러한 無名狀을 본 자는 즉시 불태워 없애야 하며 그러한 文書를 관청에 들여 보낸 자에게는 杖 80에 처하고 관청에서 그것을 접수하여 推考(조사)한 경우에는 杖 100에 처하며 被告人(투서를 당한자)은 죄를 주지 아니한다는 것과 아울러 無記名 投書人(造作人)을 잡아서 無名狀과 함께 관청에 送致한 자에게는 銀 10兩을 상으로 준다는 것이다. 世宗 13年 5月, 남의 이름으로 忠州地方 官員들이 叛逆을 음모한다는 旨의 投書를 刑曹判書의 丘史에게 접수시킨 사건이 있어 刑曹判書 鄭欽之가 이를 임금에게 보고하였던 바 임금은 法에 따라 匿名書를 不問處理(不聽受)하고자 하였다. 그때 승지(代言)들은 署名(假名)이 명백하므로 匿名書로 論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世宗은 納書

者가 숨어서 現身하지 않으면 匿名書라 하였다(《世宗實錄》 卷52-17·18, 世宗 13年 5月 壬申). 반면 成宗 13年 9月, 성균관에 있어서의 匿名書事件에 관하여 임금의 특명으로 그 내용(補亡詩句)을 문제 삼아서 의금부로 하여금 조사시킨 바 있다(《成宗實錄》 卷146-1, 成宗 13年 9月 戊戌).

19. 收贖

收贖은 生命刑(死)·自由刑(流·徒)·身體刑(杖·笞)을 집행하는 대신으로 속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唐律에서는 화폐단위가 絹 몇 필로 되어 있었으나 속죄금만은 銅으로 받았다(김택민·임대희, 《앞의 책》, p.105). 明律에서는 唐律을 계승하여 속죄금을 銅錢으로 받았으며 우리나라(大明律直解)에서는 5升布로 換算하여 받도록 하였다. 속죄금 액수는 다음 장의 표와 같다.

太祖 7年 4月 刑曹典書 柳觀 등의 上言에 의하면 刑이란 聖人の 부득이한 輔治之具일 뿐이므로 돈으로 贖罪하게 하는 것이나 富者는 免罪하고 貧者만 受刑하게 됨은 聖人の 制刑之本意가 아니라는 것과 輕犯에 限해서만 속죄금을 받게 할 것 및 笞 40이 되면 極刑에 處하도록 되어 있는데 常布 5필을 銅錢 1貫의 값으로 치면 布 200필을 笞치면 極刑에 處하도록 되어 있어 불쌍하고 反面 杖 100을 受刑할 자가 贖布 30필로 함은 너무 가벼우니 布數를 3배로 늘려서 常布 15필을 銅錢 1貫으로 환산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都堂으로 하여금 논의케 하였던 바 刑曹의 건의대로 하도록 하였다(《太祖實錄》 卷13-13, 太祖 7年 4月 丁酉).

刑名	刑 量	贖 罪 金		
		唐	明	朝 鮮
笞 刑	笞 10	銅 1斤	銅錢 600文	5升布 3필
	20	2斤	1貫 200文	6필
	30	3斤	1貫 800文	9필
	40	4斤	2貫 400文	12필
	50	5斤	3貫	15필

杖 刑	杖 60	6斤	3貫 600文	18필
	70	7斤	4貫 200文	21필
	80	8斤	4貫 800文	24필
	90	9斤	5貫 400文	27필
	100	10斤	6貫	30필
徒 刑	1年 杖 60	20斤	12貫	60필
	1年半 杖 70	30斤	15貫	75필
	2年 杖 80	40斤	18貫	90필
	2年半 杖 90	50斤	21貫	105필
	3年 杖100	60斤	24貫	120필
流 刑	2000里 杖100	80斤	30貫	150필
	2500里 杖100	90斤	33貫	165필
	3000里 杖100	100斤	36貫	180필
死 刑	絞刑・斬刑	120斤	42貫	210필

太宗 2年 9月 流罪收贖之法을 定하였는데 그때 의정부에서 啓하기를 大明律의 流 3000里에 대한 贖銅錢은 36貫이므로 이를 우리나라에서 5升布로 환산(貫當 15필로 계산)하면 540필이 되나 실제 里數는 서울에서 제일 먼 곳이 慶源府로서 1,680里에 不過하니 실제 里數대로 계산하여 贖罪布를 받자고 하였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太宗實錄》 卷4-9·10, 太宗 2年 9月 癸未). 太宗 6年 3月, 의정부의 啓에 따라 銅錢 1貫(1000文)을 5升布 15필로 환산함은 과중하므로 이를 10필로 환산하게 하였다(《위의 책》 卷11-10, 太宗 6年 3月 丁酉). 流 3000里의 경우에는 실제 里數로 계산하면 거의 半減되니 실제로는 銅錢 1貫당 5升布 5필 남짓하게 환산되는 셈이지만 모든 경우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그 후 世宗 7年 3月 刑曹에서 啓하기를 종전의 犯罪收贖法에 의하면 笞 10대에는 楮貨 6張이고 10대가 증가할 때마다 6張을 더하여 杖 100이면 60張이었으나 世宗 4年(壬寅)이래 민간의 楮貨값이 떨어져서 笞 10대에 18張으로 되었으며 10대가 증가할 때마다 18張이 더하여 杖 100이면 180張이었다는

것과 지금은 笞 10에 銅錢 150文·楮貨 75張, 杖 100에는 銅錢 1500文·楮貨 750張 등으로서 이를 미루어 보면 杖 100 徒 3년에는 銅錢 6000文·楮貨 3000張, 杖 100 流 3000里에는 동전 9000文·楮貨 4500張이나 되어 婦女 및 公私賤口나 貧窮者 등은 杖刑을 집행하고 徒流刑에 대한 속죄금을 받게 될 때 破産하여도 쉽게 그 액수를 충당하여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 대하여 의정부와 6조에서 함께 의논하여 임금의 승인을 받아서 《大明律》에 있는 笞 10대에 贖錢 600文이란 액수를 3분의2 감액하여 200文으로 하고, 10대마다 200文을 더하여 杖 100이면 贖錢 2貫, 杖 60 徒 1年이면 4貫 등으로 매 1등에 1貫씩을 더하여 杖 100 徒 3年이면 8貫으로 하고, 杖 100 流 2000里에 10貫으로 하고 계속 매 1등에 1貫을 더하여 杖 100 流 3000里면 12貫, 絞斬(死刑)이면 14貫으로 하여 속죄금을 받도록 하였다(《世宗實錄》卷27-33, 世宗 7年 3月 己卯). 《經國大典》 戶典에 의하면 國幣로서 布貨와 楮貨(常布 1필이 楮貨 20張, 楮貨 1張은 米 1升到 準함)를 썼으나 《續大典》 戶典에서는 銅錢(100文이 1兩, 10兩이 1貫)을 쓰도록 하였다.

第3章 鄉吏와 驛吏·書員

20. 鄉吏와 驛吏

鄉吏는 道나 州府郡縣 등 지방관청에 근무하는 吏胥로서 서울에서 근무하는 京衙前에 대칭하여 外衙前이라고도 한다. 鄉吏는 戶長·記官·色吏 등 東班에 속한자와 書員·日守·羅將 등 西班에 속한 자가 있으며 양반인 官員 밑에서 實務에 從事하는 자들로서 고려전기에는 그 지방을 다스리는 위치(특히 戶長)에 있던 지배자였으나 고려후기로부터 차츰 그 地位가 떨어져서 조선시대에는 양반인 官員의 심부름꾼 정도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선양반의 줄기가 고려 鄉吏라 할 정도로 조선국초에는 仕路進出이 활발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태조 원년(1392) 9월 반포된 州郡鄉吏 免役法에 의거 製述業(文科) 及 第者나 生員·進士試 合格者·軍功이 현저하여 功牌를 받은 者·雜科를 거쳐서 所任을 받은 적이 있는자·都目去官者·三丁一子를 選上하여 免鄉된 자 등을 제외하고는 無故避役者나 冒受官職者 本人이나 그 子孫을 本役으로 돌려 보내도록 하여

禁錮가 시작되었다(《世宗實錄》卷47-2, 世宗 12年 正月 丙午). 그러나 世宗 30年 3月 徒刑이나 流刑을 받은 鄉吏를 驛吏(站吏)로 永屬시키자는 건의에 대하여 世宗은 鄉吏가 仕路에 通할 수 있는 자인데 站吏에 永屬시켜서 子孫을 禁錮함은 중대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였고 《經濟六典》에는 愿惡鄉吏만 그렇게 하고 기타의 雜犯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으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물었다. 여기 대하여 承政院에서는 驛의 站役을 一身에 그치도록 하고 子孫에게는 미치지 않도록 함이 좋겠다고 하였고 의정부의 大臣들(河演·金宗瑞 등)도 鄉吏의 犯行에 대하여 愿惡여부를 묻지 않고 徒刑과 流刑에 처해졌다는 사실만으로 驛吏로 영구히 박아 넣는 것은 가련하다고 하였다(《世宗實錄》卷119-15, 世宗 30年 3月 辛丑).

이로써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世宗代까지는 鄉吏의 벼슬길은 막히지 않았고 다만 驛吏에게만 그것을 막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下代로 내려올수록 鄉吏에 대한 억압이 加重되었고 그들의 벼슬길 또한 막혔다. 물론 鄉吏중에서도 근무처에 따라 監營吏는 邑吏보다 지체가 높았고 또 戶長 등 상급 鄉吏는 記官·色吏 등 중하급 鄉吏보다는 그 지위가 높았으며 그들중 상당수는 散階(官階)와 影職을 받기도 하였지만 양반들로부터 下待받고 賤視되었다. 그렇지만 鄉吏의 子弟들은 近代化過程에서 재빨리 新教育을 받고 새 時代에 적응하여 지배집단으로 浮上하였다. 즉 1925년경 전국 300여개 고을의 郡守중 260여명이 鄉吏의 子孫들이었으며 20세기 중엽에도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엘리트 多數가 鄉孫이었다(李勛相, 〈朝鮮後期の 鄉吏〉, 1988, 西江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驛吏도 鄉吏와 더불어 外衙前에 속하나 驛站에 소속되어 驛役을 세습적으로 부담하는 자였다. 驛吏는 그 신분이 비록 良人이라고는 하나 고려시대 이래로 언제나 犯罪人, 특히 叛逆者의 자손으로 충원되어 실제상 公賤과 다름없는 처우를 받았고 仕路不通이란 신분적 差待를 받았다. 조선전기에는 鄉吏중에서 村落에 農莊을 두고 良家女나 官婢를 妾으로 삼는 등의 非行이 있으면 《經濟六典》 元典에 의거 驛吏로 삼았고(《端宗實錄》 卷9-37, 端宗 元年 12月 丁未), 또 뇌물을 받고 不正行爲를 한 자는 《經濟六典》 續典, 刑典 元惡鄉吏 犯流者條에 의거 他道の 驛吏로 永屬시켰다(《위의 책》 卷12-21, 端宗 2年

12月 己卯). 驛은 公文의 전달과 公務旅行者에 대한 馬匹 및 宿食의 제공과 官需物資의 운송을 담당하는 交通·통신·운송기관이었다(조병로, <조선시대역제 연구>, 1990,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선시대에는 주요도로에 30리 거리로 역이 설치되었고 각역에는 역리와 역졸을 두어서 驛役을 맡겼다. 驛制는 신라 때 비롯되어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약 540개역이 있었다(《大典會通研究》兵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5.12, p.113).

21. 元惡鄉吏

元惡鄉吏는 나쁜 일을 恣行하는 鄉吏를 말하며 鄉吏는 道와 州府郡縣 등 지방관청에 소속되어 세습하는 吏職이다(해설편 20 참조). 元惡鄉吏에 대한 처벌 규정은 《經濟六典》元·續六典에도 등재되어 있었는데 世宗 2년 11월 禮曹에서 《經濟六典》元六典과 續六典內 各年度의 判旨를 啓한바에 의하면 洪武 21年(고려 昌王 즉위년, 즉 禍王 14年 戊辰) 都評議使司의 受判으로 다음과 같이 鄉吏가 官權에 의지하여 犯行을 恣行하는 것을 처벌한다고 하였다. 즉 ① 州郡吏로서 四方의 村落에 農舍를 사사로이 설치하는 자·② 民戶를 숨겨서 노비처럼 使役시키는 자·③ 稅를 거둘 때 제멋대로 稅率을 높였다가 낮추었다가 하여 收納후 盜用하는 자·④ 軍籍에 이름을 적어 넣을 때 富戶로부터 뇌물을 받고 제멋대로 면제해 주는 자·⑤ 權勢에 의탁하여 官爵을 不正으로 받아서 공공연히 避役하는 자 등은 모두 철저히 조사하여 犯罪가 重한 경우는 엄중히 處刑(置之典刑)하고 기타는 輕重을 나누어 論罪하되 收奪한 물건은 追徵하여 官에서 몰수한다는 것이었다(《世宗實錄》권10-13, 세종 2년 11월 경오). 端宗 3年 5月 兵曹의 보고에 의거 議政府에서 啓하기를 續刑典(《經濟六典》續六典 刑典)에 의하면 元惡鄉吏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陳告함을 허용하여 徒刑의 罪를 범한 자는 杖刑 집행 후 道內의 殘亡諸驛에 驛吏로 永屬시키고 流刑의 罪를 범한 자는 杖刑집행 후 他道의 殘亡諸驛의 역리로 永屬시킨다는 것이다. 또 正統 11年(世宗 28年)의 受敎에 의하면 황해도 站路에는 元惡鄉吏의 徒流者의 全家族을 站吏(驛吏)로 永屬시킨다고 하였다(《端宗實錄》권14-21, 端宗 3年 5月 戊午).

22. 書員

書員은 중앙에서 파견된 敬差官의 지시를 받아 각 고을에서 세금징수를 맡았던 하급관리로서 世宗 3년 7월 平安監司 金漸의 啓에 의하면 監考와 書員 등이 곡식의 損實을 踏驗함에 있어서 任意로 加減하여 폐단이 있다고 하였으며 (《世宗實錄》권12-27, 세종 3년 7월 무자), 世宗 12년 3월 戶曹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啓를 하였다(《위의 책》권47-25, 세종 12년 3월 을사). 世宗 19년 이후 새로운 貢法이 제정되고 損實踏驗法이 폐지되었지만 書員은 여전히 收稅吏로 남아서 作弊하였다(《端宗實錄》권9-29, 단종 원년 11월 신사). 그러나 그 무렵 書員은 西班의 外衙前으로서의 역할도 맡아 여러가지 일로 使役되면서 그 수가 늘어났다. 즉 世宗 31년 정월 집현전 副校理 梁誠之의 건의에 의하면 「書員·日守 其數無限」이라 하였고 (《위의 책》권127-4, 세종 31년 정월 신묘), 世祖 3년 4월, 吏曹의 啓에서도 書員의 定額이 없기 때문에 諸邑의 守令이 閑良人民을 多占하여 마음대로 부려 먹는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世祖는 吏曹의 청원에 따라 州府郡縣別로 書員의 定員을 책정하였고 《經國大典》 兵曹 外衙前條에서는 그 數를 다시 줄여서 法制化하였다.

成宗 19년 정월에 光州를 縣으로 강등하면서 그 四面의 土地를 인근小邑으로 떼주도록 하고 鄉吏·書員·日守 중 豪强者를 永安 5鎭의 殘邑으로 全家入送하도록 하는 節目을 만들게 하였다(《成宗實錄》권211-26, 성종 19년 정월 계해). 또 中宗 9년 10월 南兵使 李安世의 書啓에 의하면 함경도의 甲士 중에서 書員으로 되는 자도 있다고 하였다(《中宗實錄》권21-6, 중종 9년 10월 임인). 中宗 20年 正月의 평안도 祥原民戶 408戶중 記官·書員이 13家이고 官奴婢가 30餘 家라 하였다(《위의 책》권52-57, 중종 20년 정월 계유).

중앙各司에도 書員이 있었으며 校書館의 列字 書員과 같이 매우 苦된 技術 업무를 맡기도 하였지만 (《世祖實錄》권25-2, 세조 7년 7월 신축), 外貢雜物을 收納할 때 장난을 치는 등 폐단이 많아서 書員을 점차 除去하고 그 일을 書吏에게 맡기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書吏가 無識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반대론자도 있었다. 그러나 임금은各司 書員을 革去하되 文字를 해득하여 일을 맡길

만한 書吏를 골라 보내자는 의견에 따랐다(《中宗實錄》권88-6·7·8, 중종 33년 8월 을묘). 따라서 世祖 11년 이후 중앙各司의 書員이 없어졌다는 見解(《大典會通研究》兵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5.12, p.112에서 引用)는 착오라고 하겠다. 여하간 그후 書員은 각지방에서 田稅를 징수하는 책무를 맡아 不正行爲를 계속하여 書吏·監考·勸農官 등과 함께 得罪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明宗實錄》권11-59·62, 명종 6년 7월 경인·무술, 《宣祖實錄》권2-28, 선조 원년 12월 계사, 《景宗實錄》권10-12, 경종 2년 10월 을해).

23. 成衆官

(1) 成衆官의 意義와 種類

成衆官은 대체로 조선전기에는 侍衛職 내지 특수 軍人層 또는 上級京衙前에 해당되고 下級京衙前인 吏典과 구별되고 있다. 成衆官과 같은 뜻을 가진 말로써 成衆之官·成衆處·成衆諸衙門·成衆諸員·成衆愛馬·成衆者 등이 있다. 이들은 수십명 또는 수백명이 同官·同職에 종사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內侍·茶房의 別監을 비롯하여 司衣·司彝·司樽·司覆 등 文班소속의 宮官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나 고려 후기 事元이래 宮中宿衛의 강화를 위하여 忽赤·忠勇·兮達赤·別保 등의 宿衛軍士가 신설되고 그들의 성격이 元나라의 愛馬와 비슷하여 그들을 愛馬라 호칭하였으며 나중에는 종래의 成衆官들까지도 宿衛의 임무를 띠게 되어 愛馬와 구별이 모호해져서 成衆官·成衆愛馬·愛馬 등으로 부르게 된것이라 한다(金昌洙, 〈成衆愛馬考〉, 《東國史學》9·10, 1966, pp.17~35 및 韓永愚 《朝鮮前期 社會經濟研究》 乙酉文化社, 1983, pp.316~320).

成衆官과 成衆愛馬가 同意語로서 혼용되면서도 때때로 양자가 서로 구별되는 경우도 있다. 즉 成衆愛馬는 兵曹소속의 侍衛軍士를 가리키고 成衆官은 東班소속의 官員임을 나타내고 있다(《世宗實錄》권52-14, 세종 13년 4월 壬戌). 그러나 成衆官에게도 兵書와 陣圖를 講習시켜서 시험보여 뽑아 쓰도록 한 점에서 그들을 文武로 兩斷해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太祖實錄》권4-1, 태조 2년 7월 경술). 또 成衆官과各司의 吏典은 분명히 구별되고는 있지만(《위의 책》권10-14, 세종 2년 11월 경오) 吏典들이 去官한후 內侍·茶房 등 成衆處에 入屬되기를 바랐으므로 그 중 才行이 검비하고 保舉가 명백한 자는 入

屬을 허용하였다(《위의 책》권39-3, 세종 10년 정월 병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 오면서 成衆官으로 호칭되는 자의 범위는 훨씬 넓어져서 고려 때의 成衆官인 宮官과 侍衛軍士 이외에 조선초기에는 錄事·知印 등의 吏胥들이 새로이 成衆官으로 불리우고 別侍衛·內禁衛·忠順衛 등 새롭게 설치된 禁衛軍士들도 成衆官으로 호칭되었다고 한다(김창수 <앞의 글> pp.28~34 및 한영우 《앞의 책》 p.320). 그러나 世宗 11년 7월 別侍衛 등이 上言하기를 그들에게도 成衆官의 例에 따라 遞兒職을 加給하여 달라고 한 점에 비추어 성중관과 별시위는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世宗實錄》권45-1, 세종 11년 7월 병오). 반면에 成衆官을 內禁衛·忠義衛·忠順衛·別侍衛內直院·司樽院(조선후기에는 內直院·司樽院이 빠지고 忠贊衛·族親衛가 추가)之類라 하고 錄事와는 달리 喪服을 규정한 점(《端宗實錄》권1-2, 단종 즉위년 5월 을유 및 《英祖實錄》권1-3, 영조 즉위년 8월 을미)에 비추어 성중관과 녹사는 구별된다. 그외에도 上林園·圖畫院·掖庭署·典樂署 등 雜職官署의 官員들과 奉常寺 소속의 祭官인 齋郎·武工·各司吏典 등도 成衆官으로 호칭되었다(한영우 《앞의 책》 p.320)고 하나 史料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成衆官과 이들 齋郎이나 各司吏典 등은 概念上 분명히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世宗實錄》권40-11, 세종 10년 윤4월 기축).

반면에 세종 12년 7월 司譯院 權知錄事 등의 狀告에 의거, 禮曹에서 啓하기를 永樂 21年(世宗 5年) 9月 27日 王旨內에 各殿 行首 內侍 茶房 架閣庫 錄事·宣差房 知印·三軍 錄事·別侍衛 等 成衆衙門 入屬人 犯罪者를 모두의 金부에 下獄하여 시행하자고 하였는데 그러한 成衆衙門 入屬人을 일응 成衆官으로 볼 수 있으며(《위의 책》권49-6, 세종 12년 7월 경신), 세종 17년 7월 兵曹의 啓에 의하면 續典謄錄內에서 別侍衛도 모두 成衆官이라 호칭하였으나 兵曹와 鎭撫所에서는 의례히 軍士로서 論罪한다고 하였다(《위의 책》권69-9, 세종 17년 7월 병신). 이와 같이 成衆官의 概念上的 混線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영우 교수는 넓은 의미의 成衆官과 좁은 의미의 成衆官을 나누어 보았다. 그는 成衆官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內侍(別監)·茶房(別監)·錄事·知印 등 상급 서리를 들고 이를 좁은 의미의 成衆官이라 하였다. 그러나 世祖때에 이르러 內侍(뒤의 內直)·茶房(뒤에 司饗)·知印 등이 혁파되어 錄事만이 남게 되었고, 조선후기에 이르면 錄事를 成衆官이라 하기 보다는 內禁衛·忠義衛·忠贊衛·

忠順衛·別侍衛·族親衛 등 禁衛軍士를 成衆官이라 하게 되었다(한영우 《앞의 책》, pp.320~321 및 《英祖實錄》권1-3, 영조 즉위년 8월 을미)는 것이다.

內侍·茶房은 고려전기에는 그 지위도 높고 중요한 직책이었으나 고려말기에는 宿衛·近侍를 맡은 武人職으로 성격이 변하였으며 조선초기에는 內侍院의 관원 중 別監(內直·司樽別監)만을 成衆官으로 호칭하였다(한영우, 《앞의 책》, p.323 및 《世祖實錄》권10-11, 세조 3년 11월 임오·권31-3, 세조 9년 윤 7월 정축). 그러나 內侍院은 세종 때에 內直院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세조 12년 정월 吏曹의 啓에 따라 內直 司樽院 別監이 모두 혁파되고 그 所任 諸事는 忠義衛와 忠贊衛를 差定하여 맡기도록 하였다(《世祖實錄》권38-3, 세조 12년 정월 임자). 茶房도 고려말에는 內侍와 마찬가지로 近侍·宿衛의 임무를 맡았으며 처음에는 定額이 없다가 공양왕 2년 10월에 左右番 합하여 100명으로 정하였다(《高麗史》권75-41, 志29, 選舉3, 成衆官條). 조선초기에는 茶房에서 內廚의 蔬菜를 공급하는 일도 맡았으며 100명의 別監이 계속 존속하다가 세종 29년 茶房의 호칭이 司樽院으로 바뀌었고(《世宗實錄》권115-15, 세종 29년 2월 병진), 세조 12년 內直別監과 함께 혁파되었다(한영우, 《앞의 책》, p.324).

知印과 宣差는 본래 都評議使司에 소속된 吏屬의 일부로서 고려말기 昌王때 20명의 知印을 나누어 10인을 知印이라 하고 10인을 宣差라 하여 바깥 심부름을 맡겼다(《高麗史》권77-22·23, 志권31, 百官2, 諸司都監各色 都評議使司條). 조선건국 후 都評議使司가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知印·宣差도 의정부에 소속되었으나 태종 때 의정부 署事制度가 폐지되어 그 기능이 약화되자 의정부 소속의 宣差를 宣差房 知印이라 개칭하여 독립시키고, 태종 14년 5월 六曹에 새로이 知印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세종 18년 의정부 署事制가 부활되어 同王 21年 4月 宣差房 知印을 다시 의정부에 환속시켰다(《世宗實錄》권85-4, 세종 21년 4월 경인 및 《太宗實錄》권27-29, 태종 14년 5월 계유·권28-11, 태종 14년 8월 무신). 그 뒤 知印은 세조 12년에 內直 別監(內侍)·司樽院 別監(茶房)과 함께 혁파되었다(《世祖實錄》권38-3, 세조 12년 정월 임자).

고려·조선초기의 錄事에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8·9품의 品階가 있는 錄事와 流品外의 吏胥인 錄事가 그것이다. 成衆官은 주로 流品外의 錄事 중 架閣

庫·의정부·육조·중추원 등에 소속된 자만을 지칭하였다. 그중 架閣庫(圖書의 收藏을 맡음)錄事가 제일 많았으며 태종 14년 8월 현재 77명이었으나, 역시 세조 12년에 혁파되었다(同上). 都評議使司의 錄事는 6명뿐이었으나 定宗 때 그것이 議政府로 개편되면서 대폭 증원되었다. 그러나 태종 때 의정부의 기능이 弱화되자 의정부 錄事의 대부분이 架閣庫에 移屬되었다. 그후 세종 때 의정부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架閣庫에 移屬되었던 錄事들이 다시 의정부에 還屬되어 그 수가 늘어나서 世宗·世祖年間の 의정부 錄事는 74명 정도였다. 의정부의 錄事로서는 그외에 6명의 六房錄事와 2명의 承發案牘 錄事 합계 8명이 있어(《世宗實錄》권108-19, 세종 27년 6월 경신) 의정부에 관한 일을 맡고 위 74명의 錄事는 諸處差備 錄事라 하여 의정부 산하 각 衙門에 分送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자로 보인다(한영우, 《앞의 책》, p.327). 《經國大典》에서는 의정부소속 錄事가 19명으로 줄어 들었으며 東班 各衙門의 錄事는 모두 의정부에서 分送하도록 규정하였다(《經國大典》吏典 京衙前).

中樞院 錄事는 세종 14년에 처음으로 두었고 그 인원수는 세종 27년에 93명이었으며(《世宗實錄》권108-19, 세종 27년 6월 경신) 세조 6년 5월에 8품인 中樞院 錄事 1명과 權務 中樞院 錄事 93명이 있었고(《世祖實錄》권20-30, 세조 6년 5월 기해) 그외에 權務 中樞院 六房 錄事가 7명 있었다(同上).

六曹 錄事는 태종 14년 5월에 知印과 더불어 처음 두게 되어 18명이었고(《太宗實錄》권27-29, 태종 14년 5월 계유 및 권28-11, 태종 14년 8월 무신), 세종 12년에 24명(《世宗實錄》권49-10, 세종 12년 8월 경오), 《經國大典》에서는 다시 49명으로 증원되었다(《經國大典》吏典 京衙前條).

이상 조선초기의 上級吏胥인 成衆官의 총수는 약 4·5백명으로 下級吏胥인 吏典의 총수 1,200명~1,800명에 비하면 3분의 1에 불과하나 그래도 많은 수이므로 무리를 이룬 관리(成衆官)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그들중 20명내외가 去官하여 6품으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세조 때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여러 종류의 東班 成衆官이 대부분 혁파되고 오직 錄事만 남았으며 그수도 줄었다. 동시에 下級吏胥인 椽吏·典吏·書吏·令史·司吏 등도 세조 12년에 書吏로 一元化되었다(한영우, 《앞의 책》, p.328). 東班인 成衆官은 이상과 같이 流品外의 上級吏胥를 주로 지칭하지만 때로는 監察·奉禮 등 流品內의 관료를 지

칭하기도 하여(《世宗實錄》권55-8, 세종 14년 정월 갑신) 그 개념규정이 단순하지 않다.

(2) 成衆官의 入仕와 그 身分

고려시대에는 內侍·茶房·司楯·司衣·司彝 등 成衆官을 選補하는에 있어서 世籍·才藝·容貌를 심사하였다고 하니(《高麗史》권75-42, 志권29, 選舉3, 成衆官條), 신분적인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고려말기의 成衆官은 避役者들의 도피처가 되어 世籍이 현저하지 못하고 才藝가 不通한 자들이 섞여 들었으므로 공양왕 3년 4월에는 그 入屬할 者의 戶籍을 살피고 그 용모를 보며 그 재주를 시험하여 書·算·射·御 중 1藝를 通한 자를 뽑았고 그 定額을 정하였다(同上).

고려시대에는 入仕職으로서의 胥吏와 未入仕職으로서의 雜職吏屬 등 두계통이 있었는데 前者는 門蔭子弟·鄉吏子弟·南班子弟 중에서 任用하여 그 신분이 科擧를 통해서 進出한 官人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한영우, 《앞의 책》, p.330) 고려말에 이르면 入仕職인 胥吏가 다시 두 계층으로 分化되었는데 鄭道傳의 《朝鮮經國典》, 補吏條에 의하면 錄事·知印·宣差 등은 모두 士人이 하였으며, 椽吏·典吏·書吏·令史 등은 良家子弟로서 充定한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오면 入官補吏法에 따라 上級吏胥도 시험으로 선발하게 되었으니 文科·武科·門蔭·譯科·陰陽科·醫科와 吏科 등 7科를 두었다. 이들 시험은 流品官이 되는 入仕路로서 그중 吏科를 흔히 吏科取才라 하였다(《太祖實錄》권1-50, 태조 원년 8월 신해 및 한영우, 《앞의 책》, p.332).

吏科의 시험과목으로서는 조선국초에는 律文·書·算인듯 하였으나 世宗 元年에는 그 외에 家禮가 첨가되었고 同王 8년에는 다시 六典이 첨가되었으며 同王 28년에는 訓民正音이 첨가되었다(鄭道傳, 《朝鮮經國典》 補吏條 및 《世宗實錄》권3-18, 세종 원년 3월 경술·권32-9, 세종 8년 4월 갑신·권105-17, 세종 26년 윤7월 병술·권114-28, 세종 28년 12월 기미). 이와 같이 上級胥吏의 시험과목은 늘어난 반면 下級胥吏(吏典取才者)의 시험과목은 줄어들어서 吏科라 하면 前者만을 지칭하게 되었다(한영우, 《앞의 책》, p.334). 吏科합격자는 바로 成衆官이 되는 것이 아니라 同正職(影職)을 갖고 있다가 成衆官에 결원이 생기면 차례로 충원되는 것이었다(《世宗實錄》권3-18, 세종 원년 3월

경술 및 권 32-9, 세종 8년 4월 갑신·권53-29, 세종 13년 9월 계미와 《中宗實錄》권25-22, 중종 11년 5월 경자).

종래 吏科는 시험날자가 일정하지 않았고 합격자의 定員도 정해지지 않아서 너무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여 成衆官에 入屬하지 못하고 閑遊하는 자가 많이 생겼으므로 세종 원년 3월, 시험기일을 1년에 4번으로 제한하고 세종 8년에는 式年制로 고쳤으며, 합격자 정원도 70명으로 정하였다(위의 實錄). 그러나 세조 12년의 官制改革으로 吏科는 錄事를 뽑는 시험으로 되었다. 《經國大典》에 규정된 錄事取才의 내용은 매년 正月과 7月 年2回 시험보이되 5經 중 1經, 4書중 1書, 大明律, 經國大典, 啓本·牒呈·關中 1, 楷書, 諺文(한글), 行算 등 8과목을 시험보였다. 吏科는 外形上으로는 조선후기까지 존속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변질되어 流品官이 되는 入仕路로서의 의미는 시대가 내려갈수록 점차 소멸되어 갔다. 이는 錄事去官者의 流品官으로의 승진이 어렵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吏科 응시자의 신분도 조선전기에는 科擧 응시자와 다름없었고 庶孽들은 雜科 응시나 成衆官 入屬도 될 수 없었지만(한영우, 《앞의 책》, pp.337~338 및 《世祖實錄》권21-22, 세조 6년 8월 庚午) 조선후기에는 士族들이 吏科 응시를 기피하여 中人이하 신분층의 시험이 되었다. 물론 조선 전기에도 吏科 응시자는 士族이기는 하나 地方의 寒門이거나 才能이 부족한 士族이었으며 그중에는 부유한 차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가난한 시골양반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그 응시자가 非士族층이었으므로 錄事 그 자체를 中人 또는 下人으로 보았다(한영우, 《앞의 책》, pp.339~340 및 《中宗實錄》권 89-6, 중종 33年 11월 경인·《世宗實錄》권41-10, 세종 10년 8월 경자, 李重煥의 〈擇里志〉, 黃玪의 〈梅泉野錄〉).

조선전기의 成衆官은 吏科 出身者이외에 門蔭子弟도 入屬하였다. 태조 6년에 반포된 《經濟六典》에서는 正從1品の 長子는 正從7品에, 正從2品の 長子는 正從8品에, 正從3品の 長子는 正從9品에 각각 임명한다는 것과 만약 長子가 有故하면 長孫에게 職을 주되 1등급 감하고, 次子도 이와 같다는 것이다(《世宗實錄》권29-6, 世宗 7年 7月 壬午). 태종대의 《續六典》에서는 門蔭대상자를 功臣 및 2품이상의 子·孫·婿·弟·姪과 京官 實行 3品官·外官 3品 守令의 子·孫, 臺諫(6品 이상官), 政曹(吏曹와 兵曹의 6品이상官)를 거친 자의 子로서 20세 이상이 된 자로 하고 예문관에서 經書 1種을 시험보여 합격자에게

牌를 주고 吏曹에 還報하여 同正職을 주며 同正職을 받은 자는 재능을 고려하여 實職에 임명한다는 것이다(《成宗實錄》권4-3, 성종 원년 3월 계미). 門蔭者도 고려시대와 달리 간단한 시험이나마 보게 하였으므로 門蔭取才라 불리우게 되었다. 同正職은 고려시대에 비하여 많이 축소되었으며 《經國大典》 반포 이전에 모두 소멸되었다(한영우, 《앞의 책》, pp.342~343).

태종 13년 7월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무릇 門蔭出身法은 承蔭子弟로 하여금 모두 예문관에 나아가서 1經을 講試하여 大義에 능통하면 文科의 例에 따라 牌를 준 然後에 仕進을 허락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나이의 壯幼를 불문하고 經의 通否도 살피지 않고 모두 조정에 벼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太宗實錄》권26-3·4, 태종 13년 7월 기축). 그러나 門蔭出身者를 實職品官으로 흡수하기는 어렵게 되어 세종 8년 4월 吏曹의 啓에 따라 門蔭出身者 중 內侍·茶房·宣差房 등 成衆處에서 벼슬하기를 원하는 자를 스스로 원하는 바에 따라 才能을 헤아려서 選定하여 보내도록 하였다(《世宗實錄》권32-13, 세종 8년 4월 기축). 또 同王 13년 9월에도 吏科出身人 및 門蔭取才 入格者 중에서 成衆官에 들어가기로 원하는 자는 詳定所의 受教에 따라 각각 所定 衙門에 分定하여 차례를 기다려서 入屬하도록 하였다(《위의 책》권53-29, 세종 13년 9월 계미). 門蔭出身者들은 錄事·知印·別監 등 文班 成衆官으로 들어간 자가 많았지만 內禁衛·忠順衛·忠贊衛 등 武班소속 成衆官에 入屬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하여 吏科取才와 門蔭取才의 성격상의 구별도 모호하게 되어 吏任取才 또는 吏科라 부르게 되었다.

門蔭出身者の 成衆官 入屬은 慣行上으로 인정되어 오다가 《經國大典》 吏典 取才 蔭子弟條에 錄事로 入屬하고자 하는 자는 들어 준다고 成文化하였다. 同條文의 내용은 功臣 및 2품이상官의 子·孫·壻·弟·姪(原從功臣은 子·孫)과 實職 3品者의 子·孫 및 吏曹·兵曹·都摠府·司憲府·司諫院·弘文館·部將·宣傳官을 지낸 적이 있는 자의 子로서 나이 20세 이상 자에게 取才시험 응시를 허용하여 任用한다고 하였다. 시험과목은 5經중 1經과 4書중 1書を 講하도록 하였고(《大典會通》에서 폐지되었음) 매년 정월에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續六典》에 比하면 不定期시험을 定期시험으로 하고 시험과목도 1書を 추가하였다. 吏科제도는 본래 門蔭子弟들의 入仕를 위해서 설치된 것은 아니고 일반 良人농민 등 비교적 신분이 寒微한 자를 상대로 吏를 뽑

자는 것인데 門蔭子弟에게 침식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士族子弟들이 錄事 등 吏胥로 나가지 않았으므로 자연히 吏는 中間身分이하 자의 것이 되었다.

門蔭取才시험에 관하여 中宗 11년 5월, 參贊 金安國은 講學 書冊의 첫권 첫면을 抽出하여 잠간 읽게 하고서는 句讀조차 이해하지 못하여도 점수(略·粗)를 준다는 것과(略은 1分, 粗는 半分임) 시험시기도 매년 정월로 되어 있지만 응시자가 원하는 대로 시험보인다고 하였다(《中宗實錄》권25-22, 中宗 11년 5월 경자). 그리하여 門閥子弟들이 시험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서 學問에 힘쓰지 않으니 아는 것이 없고 관료가 된 후(發身)에도 行事に 어둡고 職務에 태만하다는 것이다(同上).

이상과 같이 成衆官은 吏科合格者나 門蔭取才시험 合格者로서 충원되었지만 그외에도 吏典 去官人과 生員·進士가 成衆官으로 入屬하는 수가 있었다. 書吏·椽吏·令史 등 下級胥吏인 吏典도 3,600일의 근무일수를 채우면 7품 이하로 去官하여 取才시험을 거쳐서 驛丞이나 渡丞이 될수 있었으나(《經國大典》吏典, 京衙前 書吏條), 실제로 그것이 쉽지 않았다. 더구나 英祖代의 《續大典》의 같은 條에서는 計仕去官法이 폐지되어 吏典이 流品官으로 進出하는 길은 法制上으로도 봉쇄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品官대신 成衆官으로 入屬되기를 희망하게 되었지만, 그중에서도 才行과 保舉를 심사하여 入屬시켰다. 生員·進士가 成衆官에 入屬된다는 것은 조선후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으나 조선전기에는 많았다고 한다. 그것은 門蔭子弟가 吏任取才를 거쳐서 南行으로 入仕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서인데 成衆官에 入屬하여 散官職을 얻은 후 文科에 급제하면 바로 參上職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成衆官의 任期와 流品官으로의 승진 및 그 대우

고려말기 成衆愛馬는各司의 人吏와 같이 만 9년이 지나야 승진(品官으로 進出)할 수 있었다. 조선초기의 成衆官의 복무연한은 그 종류와 시기에 따라 달랐는데 세종 12년 8월 律學博士 등의 狀告에 의거 吏曹에서 啓하기를 의정부와 6曹의 錄事 24인 중 1년에 2인씩 去官(12년 所要)하고, 知印은 30인중 1년에 1인씩 去官하며, 檢律은 60인중에서 1년에 1명씩 去官하니 律學은 늘어도 去官할 수 없으므로 律學도 成衆官(錄事 등)의 例에 따라 1년에 2인씩

去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世宗實錄》권49-10, 세종 12년 8월 경오). 그런데 세종 27년 6월 吏曹에서 의정부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知印 金礪志 등이 上言하기를 錄事나 知印이 같은 의정부의 衙前인데 六房 錄事는 1都目 건너서 差아직을 받고 8년이내에 去官시키는데 홀로 知印만이 8·9년만에 처음으로 差아직 7·8品職을 받고 30인이 만약 例에 따라 都目에서 去官한다면 15년이 되어도 去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吏曹에서 成衆官의 去官法을 參詳하니 內直(別監)과 茶房(別監)은 각 100인인데 1년에 4인씩 去官시키고 의정부 錄事 74인을 1년에 3인씩 去官시키면 25년이 된 후에야 모두 去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中樞院 錄事 93인을 1년에 3인씩 去官시키면 31년이 지나야 去官하게 되고 六曹 錄事와 中樞院 六房 錄事는 모두 25인인데 1년에 2인씩, 13년이 지나면 去官되며, 의정부와 6房 承發案牘 錄事는 모두 8인으로 1년에 1인씩 8년이 지나면 去官된다는 것이다. 그러하니 知印 30인중 1년에 2인씩 15년만에 去官시키는 것이 不利하지도 않은데 난잡하게 上言함은 심히 不當하다는 것이다(《위의 책》권108-19, 세종 27년 6월 신유). 위 成衆官 去官人員數를 합산하면 1년에 19명인데, 세조 9년 5월에 이르면 정채된 인원이 늘어났고, 1년에 21명씩 去官시켰다는 것이다(《世祖實錄》권30-26·27, 세조 9년 5월 을사).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총 14,620명을 500년으로 나누면 연평균 29명이 되는데(《大典會通研究》 戶典·禮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 12, p.489), 좋은 대조가 된다.

조선초기의 成衆官은 20여년이 지나야 去官되며, 사람에 따라서는 30년이 지나도 去官하지 못하고 심지어 평생토록 去官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世宗實錄》권120-8, 세종 30년 4월 정축·권50-4, 세종 12년 10월 갑술 및 《世祖實錄》권10-11, 세조 3년 11월 임오·권24-25, 세조 7년 6월 임오). 成衆官 去官人은 麗末 이래로 지방 守令으로 進出하였으나, 成衆官 出身 守令의 無能으로 부득이 文科及第者를 守令으로 任用하게 되자 成衆官들이 守令으로 進出하는 길이 차츰 막혀서 世祖代에 이르면 매우 침체되어 임기를 마친 成衆官으로서 實職에 임명되지 못하고 대기중인 자가 세조 7년 6월 현재에 80여명, 세조 9년 11월 현재는 127명이 되었다(《世祖實錄》권24-25, 세조 7년 6월 임오 및 권31-29, 세조 9년 11월 임오). 成宗代에는 錄事가 10년간을 계속 근무하면 去官할 수 있었으므로(《成宗實錄》권142-19, 성종 13년 6월 정묘

· 권196-1, 성종 17년 10월 병자) 매우 단축된 셈이다. 또한 《經國大典》吏典 取才條에 의거 成衆官(錄事)이 去官한후 取才시험을 거쳐서 守令으로 나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錄事가 실제상 守令 기타의 實職 流品官으로 進出하기는 매우 어려웠다(한영우, 《앞의 책》, p.357).

조선국초 守令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閑良官(前職官吏)·成衆官 去官人·吏典 去官人·科擧出身者 등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成衆官去官人은 세종 6년에서 16년에 이르는 10년간 132명이나 (守令으로) 進出하였다(《世宗實錄》권 66-21, 세종 16년 11월 계사). 세조 때에도 成衆官 去官者가 守令으로 進出하는 수가 많았으며(《世祖實錄》권5-7, 세조 2년 9월 경오 및 권12-10, 세조 4년 4월 을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經國大典》에서도 錄事가 去官한후 守令으로 進出할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成衆官 去官者인 守令중 80·90%는 무능하여 해임(貶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의 폐해가 컸다고 한다(《世宗實錄》권66-21, 세종 16년 11월 계사·신묘). 따라 守令의 교체가 너무 자주 있어서 1·2년간에 4·5인의 수령이 교체됨으로써 迎送之弊가 적지 않았는데 그것은 成衆 去官人의 才能여부를 묻지 않고 모두 그들을 守令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다(《위의 책》권50-8, 세종 12년 10월 갑신).

成衆官 去官人 중에서 능력이 우수한 자는 京官職을 주고 그 다음인 자에게 守令으로 임명하였으며 성적이 중간 이하인 자에게는 西班으로 敍用하였지만(《太宗實錄》권28-11, 태종 14년 8월 무신 및 권32-32, 태종 16년 12월 신미 와 《世宗實錄》권33-7, 세종 8년 8월 계해) 무능한 守令이 속출하였므로 세종 17년 정월 成衆官 去官人을 守令에 任用할 경우에는 四書·二經·元六典과 續六典 및 續典謄錄·治民方略 등을 시험하여 합격해야 하도록 하였다(《世宗實錄》권67-7, 세종 17년 정월 경자). 《經國大典》吏典 取才 守令條에 講시험에서는 四書·一經·大明律·經國大典을 보도록 하였고 製述로서 治民方略을 시험보게 하였다. 成衆官 去官者에 대한 시험제는 守令 임용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세종 20년경부터는 京官 임용시에도 해당되어 經書·六典에 대한 講시험과 治民方略에 대한 製述시험을 보이도록 하였다(《世宗實錄》권81-5, 세종 20년 4월 정묘). 그러나 東班 成衆官이 錄事로 一元化된 세조 12년을 전후해서는 去官후 東班 京官 任用은 거의 폐쇄되고 오직 守令取才만

허용되었다(한영우, 《앞의 책》, p.361).

守令 取才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西班遞兒職의 자리가 비는대로 任用하여 한 期(3개월간)의 녹봉만 주되 影職을 自願하면 이를 들어준다(《經國大典》 吏典 京衙前, 錄事條)고 하였다. 成衆 去官人이 實職 品官 또는 影職을 받는 경우에는 6품을 받게 된다(《世宗實錄》권120-8, 세종 30년 4월 정축 및 권120-20, 세종 30년 5월 을미). 물론 成衆 去官人이 받는 6品職은 그것이 實職이든 影職이든 淸要職은 아니었고 地方官의 경우에는 縣監·察訪에 불과하였으며 京職인 경우에도 繕工監 注簿나 通禮院 引儀 또는 別提 등의 無祿官과 같이 격이 떨어지는 관직에 국한되었다(한영우, 《앞의 책》, p.362). 成衆 去官人은 비록 限品敍用 등 신분적인 제약은 받지 않았지만 文科及第 등 科擧시험 합격이나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高位職으로 올라가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국초부터 세조 때까지 80년간의 전체 문과급제자 총수 1,318명중 현직 錄事는 29명이었다고 한다(한영우, 《앞의 책》, p.363). 또한 成衆官 去官人이 守令 取才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守令으로 任用되는 것은 아니었다. 세종 때에는 그런대로 잘 任用되었으나(《成宗實錄》권33-5, 성종 4년 8월 계해) 세조 7년에 이르면 成衆官 去官人으로서 京外職에 임명될 대기자가 80명이나 되었고 자리가 비지 않아서 평생토록 임용되지 못한자가 많아졌으며(《世祖實錄》권24-25, 세조 7년 6월 임오) 세조 9년에는 成衆官 去官人으로서 자리가 없어 未受職된 者가 더욱 늘어나서 127명에 이르렀다(《위의 책》권31-29, 세조 9년 11월 임오).

세조말년에 이르면 成衆官 去官人의 침체문제가 특히 심각해졌는데, 그 이유는 세조의 집권과정에서 功을 세운 成衆官들을 위하여 別仕와 加資를 濫授한 데 있으며 그에 따른 모순을 완화하기 위하여 同王 12年 成衆官數를 줄이고 成衆官 去官人의 수효도 종전의 매년 20여명 선에서 10명선으로 줄였으므로 성종 4년에 이르면 未受職者가 50·60명에 불과하였다(한영우, 《앞의 책》, p.364 및 《成宗實錄》권33-5, 성종 4년 8월 계해). 그러나 성종 13년 6월 錄事 去官人으로서 守令取才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影職에 任用하였지만 그 합격자는 京職 任用시험에 다시 합격해야 守令任用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京職의 자리부족으로 비록 수십년이 되어도 모두 임용할 수가 없었다(《成宗實錄》권142-19, 성종 13년 6월 정묘). 그리하여 吏曹에서는 앞으로 1年

4都目으로 매 都目마다 2인씩 任用하여 1等(3개월) 受祿후 해임(作散)하되 뒷날 才品에 따라 다시 任用하도록 하고 取才 入格者로서 無祿官이 되기를 원하면 그대로 任用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의논하게 하였던 바 鄭昌孫·韓明滄·許琮·李繼孫 등은 錄事輩들이 모두가 지방사람으로서 서울에서 客地生活하면서 10여년간 어렵게 근무한 후 비로소 去官하여 千辛萬苦 끝에 벼슬자리를 얻었는데 지금 1等(1期 즉 3개월간) 受祿後 곧 해임시킨다면 비록 자리가 비는대로 다시 任用한다고는 하지만 끝내 그럴 가능성이 없으므로 經國大典에 의거 시행함이 옳다는 것과 祖宗朝에서는 錄事 去官者를 곧바로 守令으로 任用하였는데 지금은 試可法을 만들어 먼저 京職에 임용한 후 守令으로 임용하게 하였지만 主簿·引儀 등에 2·3개월 임용하는 것이 관리로서의 실무에 익숙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試可法을 폐지하여 막힌 것을 통하게 하되 다만 스스로 원하면 無祿官은 허가하자고 하였다(同上). 그리고 尹弼商·洪應·尹壕·李克增 등은 근간에 錄事 取才者가 任用되는 자가 적고 積滯되고 있으므로 吏曹로 하여금 빈자리가 나는 대로 우선 임용하면 2·3년간에 거의 任用시킬 수 있는데 별도로 新法條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同上).

결국 성종 17년경부터는 吏曹의 주장이 관철되어 守令 取才시험 합격자에게 1等祿(3개월간의 녹봉)을 지급한 다음 즉시 해임시키는 제도가 실시되었으므로 不平과 원망의 소리가 높았다(《成宗實錄》권195-2, 성종 17년 9월 기유 및 권 196-1, 성종 17년 10월 병자). 그러나 吏曹에서는 錄事로서 관직에 임용해야 할 자가 거의 50명이나 되는데도 벼슬자리가 없어 침체되고 있으니 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결국 이 법은 錄事 去官者의 맹렬한 반대와 洪應·李瓊全 등의 반대상소로 곧 폐지되었다(《위의 책》권196-1·11, 성종 17년 10월 병자·경인).

試可法이나 一等受祿置散法이 폐지되어 經國大典의 규정으로 돌아갔지만 錄事 去官者의 品官으로의 進出門戶가 넓어진 것은 아니었다. 中宗 11年 5月 領事 鄭光弼과 持平 尹止衡의 보고에 의하면 錄事출신자를 監察이나 縣監으로 임용하려고 하였으나 司憲府에서 署經을 거부한 일이 非一非再하였다고 한다(한영우, 《앞의 책》, pp.367~368 및 《中宗實錄》권25-18, 중종 11년 5월 무술). 이와 같이 16세기 이후 錄事의 地位가 떨어진 이유는 기술직·전문직을 천시하는 士林政治의 영향 때문이라 하겠다(한영우, 《앞의 책》, p.371).

(4) 成衆官의 地位變動과 遞兒職

成衆官은 비록 去官하기 이전까지는 實職品官 아닌 단순한 胥吏이지만 參下 掾아직을 받는 品官이었다(《世宗實錄》권33-7, 세종 8년 8월 계해). 成衆官 중에서도 의정부 錄事나 중추원 錄事 등은 掾아직 수가 많아서 入仕한지 얼마 안되어 7品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나 內直別監과 司樽別監은 掾아직 수가 적어서 入仕한지 10여년이 되어도 8·9에도 오르지 못한다고 하였다(《世祖實錄》권10-11, 세조 3년 11월 임오). 《經國大典》 吏典 京衙前 錄事條에서는 錄事가 514일을 근무하면 官階를 올려 주되 從6品에서 去官한다는 것이다. 《經國大典》 兵典 番次都目에서는 內禁衛·別侍衛·族親衛·忠義衛·忠贊衛·忠順衛 등 西班 成衆官의 掾아직을 규정하고 있으나, 錄事 즉 東班 成衆官의 掾아직은 아무 곳에서도 규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세조 12년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한영우, 《앞의 책》, pp.373~374). 그렇다면 經國大典에 규정된 錄事의 승급은 단순한 散階로서의 승급이라 할수 있다.

成衆官에게 掾아직을 주게 된 것은 세종 4년 11월의 실록 記事에 나타나 있는데 전에 濟用監 錄官 掾아직이 혁파됨에 따라 知印과 錄事에게 줄 官職이 없어졌으므로 의정부 錄事와 宣差房 知印에게 7品職(司宰監 直長)과 8品職(京市署 錄事)인 祿官職을 하나씩 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다(《世宗實錄》권18-16, 세종 4년 11월 갑술). 고려시대는 양반관료 뿐만아니라 胥吏·成衆官·工匠 등 모든 職役종사자에게 祿俸을 주었으나(《高麗史》권80-1, 志34, 食貨, 祿俸條), 고려말기에 이르러 국가재정이 곤궁해지고 祿俸制度가 문란해지면서 祿을 받아야 할 實職官吏들이 녹을 못받고 檢校나 添設官 등이 녹을 받는 등의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새왕조 건국을 전후하여 職事가 있는 관료에게 녹봉을 주고 檢校·添設職 등에게는 녹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다. 祿官제도는 특히 成衆官을 위시하여 流外雜職이나 下級吏胥에 대한 보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었다(한영우, 《앞의 책》, pp.375~376 및 이재룡 〈朝鮮前期遞兒職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35·36合輯, 1967).

이 祿官制度의 특징은 수 많은 受祿대상자가 소수의 제한된 祿官에 교대로 임명되어 일정기간 祿을 받게 하는 것으로서 보수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

는 것이다. 이것이 세종 때 이후 체아직제도라는 형식을 띠고 더욱 발전된 것이라 한다. 祿官은 그 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태종 14년 8월에 詳定된 수는 128명의 錄事·知印에게 24자리 뿐이었다. 따라서 交代制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職務不誠實 事例도 생겨서 세종 8년 8월에는 內侍·茶房別監과 宣差 架閣庫·三軍 錄事 등 成衆官중 祿官체아직의 재임시에 근무성적이 좋았던 사람은 東班 京官職이나 守令으로 임용하고 성적이 나빴던 사람은 西班으로 임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한영우, 《앞의 책》, pp.376~378 및 《世宗實錄》권33-7, 세종 8년 8월 계해).

成衆官에게 주어진 祿官 체아직은 세종 22년 정월까지는 모두 東班職이었으나 그 후에는 일부 錄官外에는 西班체아직으로 바꾸었는데 그 이유는 직무代 行이나 빈번한 交遞 등으로 인한 遺失·錯誤· 직무소홀· 反庫· 解由 등에 따른 폐단이 생겼기 때문이었다(《世宗實錄》권88-1, 세종 22년 정월 계축). 西班 체아직을 除授하게 되면 東班체아직과는 달리 체아직 그 자체의 실무는 담당하지 않으므로 폐단이 생기지 않으나 그 후 대부분의 成衆官의 체아직이 다시 東班의 그것으로 환원되고 일부만이 西班체아직으로 제수되어 並存하였다(한영우, 《앞의 책》, p.378).

세조 6년 5월 관제개혁 때 成衆官의 체아직에 대해서도 감축하여 총 56자리의 체아직 가운데에서 10자리가 감축되었다. 이는 成衆官의 총수 430명의 10%에 해당되는 46자리의 체아직만이 남게 된 것으로서 태종 14년 8월 당시의 19%에 비하면 거의 半으로 되는 것이나 체아직의 총수는 그때 보다 2배 정도 많아졌다. 이때 혁파된 체아직은 西班 체아직이고, 남은 체아직은 東班 參下職이었으며 그중에서도 權務職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혁파된 체아직 중에서도 參下職 가운데 제일 높은 7品職이 제일 많았다. 또한 이때부터 1년 兩都目を 1년 4都目으로 바꾸어 3개월마다 체아직을 交遞 受職 하도록 하여 受祿기간이 半으로 줄어 들었다(한영우, 《앞의 책》, pp.378~380).

세조 12년 정월 成衆官이 재정적인 이유로 많이 혁파되고 架閣庫(전체 체아직 46자리 중 架閣庫 체아직이 16자리)이 혁파되었으며 그 후 東班 成衆官인 錄事의 체아직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錄事는 去官후에 品官으로의 進出도 어렵게 되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떨어져서 中人

化하여 양반사회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게 되었지만(한영우, 《앞의 책》, pp.380~381) 그러나 조선초기의 成衆官의 신분은 士族層에 속하였다. 비록 그들의 직책이 錄事 등 上級吏胥였을지라도 門蔭子弟(士族)가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成衆官 去官者는 대체로 16세기 이전까지는 6品 實職으로 나갈 수 있었으므로 下級吏胥인 吏典이나 鄉吏·驛吏들과는 신분상으로 뚜렷이 구별되었다. 世宗 32년 정월 집현전 부제학 梁誠之가 備邊10策을 올렸는데 서울에서는 文武百官·受田有蔭·成衆愛馬·前衙各品·生員 進士 등 戶를 都城衛라 하여 都城軍인 各司 吏典·諸邑 匠人·公私賤口 등 雜戶와 구별하였다. 그는 그 이외에 閑良子弟나 年壯生徒를 모두 뽑아서 兵으로 삼고 忠順衛 중 武才가 있는 자를 內禁衛나 別侍衛로 移屬하자고 하였다(《世宗實錄》권127-5, 세종 32년 정월 신묘).

세조 4년 4월 임금이 諸道 觀察使에게 내린 御書에 의하면 신분의 尊卑에 따라 號牌의 종류를 셋으로 나누었는데 ①堂上官 이상은 牙牌를 사용하고 ②東西班 3품이하 成衆官 및 有蔭子弟는 山柚子木을 쓰며 ③無蔭良人·公私賤·鄉吏·驛子·府吏·胥徒·民丁·軍士 등은 雜木 白色牌를 사용하였다(《世祖實錄》권12-8, 세조 4년 4월 임술). 여기서도 成衆官은 東西班 3품이하의 官員 및 有蔭子弟(士族)와 같은 처우를 받고 있었다. 또 衣冠制度에 있어서도 세종 31년 정월에 제정된 禁制條件에 의하면 流品朝士·衣冠子弟·成衆官은 笠子の 頂竹數가 30 이하이며 그밖의 사람은 15 이하였고 그리고 이들 이외는 9升 이상 배로 된 의복이나 비단주머니 등을 금지하였다(《世宗實錄》권123-6, 세종 31년 정월 병오). 文宗 즉위년 9월의 司憲府 上疏에 의하면 9升 이상의 衣服은 流品朝士·衣冠子弟·成衆官 외는 엄금한다는 세종 31년(己巳年)의 下敎가 解除되었지만 六典謄錄上的 금지는 폐지되지 않았다고 하였다(《文宗實錄》권3-50, 문종 즉위년 9월 병인). 또 世祖 2年 3月 집현전 直提學 梁誠之는 여러 가지를 건의하는 중에서 服色을 정하여 上下를 분별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元人은 白色을 숭상하고 明人은 黑色, 日本人은 青色을 숭상한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朝冠公服은 中國을 모방한 것이지만 常時 白衣를 입기 좋아한다는 것 및 堂上官 이상을 1色으로 하고 6品 이상을 1色으로 하며 流品員成衆官·衣冠子弟를 1色으로 하고 諸衛軍士를 1色으로 하며 京外 良人·吏胥를 1色으로 하고 公私賤口·工匠을 1色으로 한다는 것이었다(《世祖實錄》권3-26, 세조 2년 3

월 정유). 따라서 成衆官은 流品朝士나 有蔭子弟와 같은 類로 취급하였다.

세종 14년 3월 詳定所에서 啓하기를 犯法 所生 男女는 從父爲良할 수 없으나 1品 이하 東西流品官과 文武科 出身人·生員·成衆官·有蔭子孫이 公私婢子를 作妾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世宗實錄》권55-27, 세종 14년 3월 을유)고 하여 成衆官을 流品官이나 文武科出身者·生員·有蔭子孫 등과 같이 우대하자고 하였다. 또한 세조 6년 3월의 受教에서도 成衆官과 有蔭子孫이되는 徒刑을 받은 자를 모두 강원도의 驛吏로 삼는다고 하여 成衆官을 有蔭子孫과 같이 대우하였다(《世祖實錄》권19-26, 세조 6년 3월 무인).

이와 같이 조선초기의 成衆官은 다른 士族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으며 成衆官 즉 府史·胥徒(錄事) 역시 士流라는 인식은 성종 4년 8월 대사헌 徐居正의 상소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成宗實錄》권33-5, 성종 4년 8월 계해). 그러나 16세기 中宗 때에 이르면 錄事는 일반 士流와 완전히 구별되는 下位身分으로 전락되어 流品官 進出이 막히고 士族들로부터 賤視되어 入屬이 기피되었다. 그리하여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조선후기에 이르면 錄事는 中人 또는 中流人이 되었고 雜科出身者인 中人보다 下位에 있었다(한영우, 《앞의 책》, p.384). 18세기 전기인 英祖 즉위년 8월 景宗이 승하하였을 때에 喪服에 관한 記事를 보면 錄事는 書吏와 같이 취급하였고 成衆官은 內禁衛·忠義衛·忠贊衛·忠順衛·別侍衛·族親衛 등만을 의미하여 有職事 前銜各品인 자와 같이 취급하였지만 18세기후기 正祖 13년 7월 遷園時의 服色을 보면 그들 西班 成衆官들조차도 三醫司·雜職 등 中인과 같이 취급하였으며 錄事는 書吏와 함께 그밑으로 취급하였다(《英祖實錄》권1-3, 영조 즉위년 8월 을미 및 《正祖實錄》권27-48, 정조 13년 7월 신축).

(5) 結 言

앞의 서술을 요약함으로서 結言을 대신하고자 한다. 즉 고려·조선시대의 成衆官은 어떤 고유한 官名이 아니라 同一관청에 수십명 혹은 수백명씩 집단을 이루고 소속되어 있던 하급관리들의 汎稱으로 流品官도 있고 流外官吏도 있었지만 대개 후자를 의미하였다. 또한 成衆官은 文班도 있고 武班도 있었으며 麗末에는 주로 文班중의 宮中侍衛官을, 鮮初에는 文班중의 상급胥吏를, 조선후기에는 武班중에 侍衛兵種을 주로 지칭하였다. 조선초기의 상급胥吏로서의 成衆

官중에서는 錄事와 知印 그리고 內侍院(內直院)·茶房 소속의 別監 등이 있었는데 총인원은 대략 4~5백명에 이르렀으나 세조 12년에 別監과 知印이 혁파되어 錄事만 남게 되었다(한영우, 《앞의 책》, p.385).

成衆官에 入屬하는 방법은 吏科取才가 기본을 이루고 있었는데 吏科의 시험 과목과 시험기일, 그리고 선발 인원수 등은 처음에는 일정치 않았으나 세종 8년에 제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매 3년마다 70명씩 선발하여 합격자에게 初入仕職으로서 同正職을 제수하고 成衆官의 자리가 비는대로 그들을 차례로 入屬시켰다. 그러나 東班 成衆官이 錄事로 일원화된 이후에는 吏科取才가 錄事取才로 되어 《經國大典》에 등재되었다. 그러나 錄事取才는 吏科取才와 내용이 많이 달라져서 시험기일이 매년 2회로 바뀌고 정원도 없으며 합격자에게 주는 同正職의 제수도 폐지되었다. 吏科取才에 있어서의 신분적 제약은 科擧에 있어서와 기본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우선 工匠·商人·賤人 등은 제외되고 良人 농민 이상의 신분은 허용되었으나 庶孽子孫이나 賊吏의子和孫 그리고 祖上 중에 賤人이 끼어 있는 자(조선후기의 良人은 대개 여기에 속함)는 제외되었다. 吏科응시자는 寒微한 家門出身者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門閥子弟 중 才能이 약간 떨어진 자도 많았다고 한다. 그외 生員·進士와 吏典 去官人의 入屬도 있었다(한영우, 《앞의 책》, pp.385~387).

成衆官에 入屬된 후에는 약 20년간의 임기를 마쳐야 去官해서 流品官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成衆官에 따라서는 10년전후하여 去官하는 수도 있었다. 成衆官의 임기를 마친 사람은 6品官으로 제수되었으며 그들에게 제수되는 관직은 京官職도 있었고 外官職도 있었는데 外官職인 守令으로 나가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해임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세종 이후에는 수령채용(取才)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에 限해서 守令임용을 허용하였다. 京官職에 제수되는 경우에는 淸要職에는 임용하지 않았으며 守令取才시험 실시이후 京官職제수도 차츰 철폐되었다. 수령취재시험에 불합격하면 西班채아 직을 받게 하였으며 影職을 자원하면 그것을 허용하였다(한영우, 《앞의 책》, pp.387).

成衆官 去官人은 매년 20명 내외였으나 世祖末年 이후 그수가 줄어들어 經國大典에서는 10명으로 규정되었다. 成衆官 去官人이 去官즉시로 모두 流品官職을 받는 것은 아니고 자리가 부족하여 대기하는 수가 많았다. 그러나 成宗代

이전에는 1년에 20명 내외의 成衆官 去官人이 6品官으로 進出하여 침체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후 매우 침체하였다.

成衆官은 약 20년간 胥吏로 복무하는 동안 科田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7품 이하의 差役을 받았다. 差役의 자리는 成衆官 총수의 5분의 1에서 9분의 1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1년에 두 번(세조 때 이후로는 4번)씩 교대로 받게 되었다. 성중판에게 주어진 差役은 대체로 東班職중에서 사무량이 많고 비교적 격이 떨어지는 架閣庫·濟用監·都染署 등 參外官이 많았으며 差役을 받으면 그 관서에 가서 일을 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差役의 除授는 세조 말년에 폐지되었으며 差役이 혁파된 이후에는 성중판의 재임기간 514일이 찰때마다 품계를 높여서 종6품 宣務郎에 이르러 去官이 허용되었다(한영우, 《앞의 책》, pp.388~389).

成衆官의 신분지위는 일반士流와 다름 없었으나 16세기를 전후하여 錄事의 지위가 점차 떨어져서 錄事出身者의 流品官進出이 극도로 폐쇄되었다. 그리하여 양반자제 즉 門蔭子孫들의 入屬기피로 庶流들만이 入屬하여 드디어 錄事는 中人化하였다. 조선후기의 成衆官은 錄事 등 東班의 上級吏胥를 의미하기보다는 內禁衛·忠義衛·忠贊衛·忠順衛·別侍衛·族親衛 등을 의미하였으며 그러한 의미의 성중판도 18세기후기에 이르면 三醫司나 雜職과도 같은 中人으로 취급되었다.

第4章 雇工 및 奴婢·丘史와 才白丁團聚

24. 雇工

雇工은 雇傭契約에 의하여 (혹은 契約없이) 일정기간 (혹은 무기한 또는 단기간) 고용살이 하는 자이다. 雇工은 主人집 소유의 奴婢는 아니면서 빈궁하여 남에게 寄食하여 살아가는 자로서(有賃·無賃) 그 身分이 良人인 경우 軍保의 대상이 되나 나라에서는 그들을 가련하게 여기어 寄食하는 그 戶口內에서 作保(保人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이름만 軍保로 되어 있지 실제상 身役이 없었다(《成宗實錄》卷3-23, 成宗 元年 2月 己卯). 즉 조선전기의 雇工은 대개 奴婢가 아니었고 가난하여 남에게 寄食할뿐, 그 身分은 良民이었으므로 法上 당연히 軍

役者로 기록되었지만(《世祖實錄》卷46-38, 世祖 14年 6月 丙午), 실제상 軍役者로 抄定하지는 아니하였다(《위의 책》권28-20, 세조 8년 5월 條). 그러나 조선후기의 실제상 雇工은 寄食하는 집의 婢와 결혼하여 婢夫가 되는 수가 많았고 良人보다 賤人인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또 雇工은 18세기초까지는 男子가 많았으나 그 후 차차 女子가 많아져서 婢雇工化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18·19세기 雇工을 保有하고 있는 雇主의 身分은 양반·中庶人·平民·奴婢 등 4개 階層 모두이나 그중에서 中庶人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平民층·노비층·양반층의 순서이다(韓榮國, 〈朝鮮後期の 雇工〉, 《歷史學報》 81집, 1979, pp.81~124). 조선후기의 雇工에 관한 韓榮國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의 雇工은 時期에 따라 그 概念과 性格이 달랐는데 조선국초로부터 正祖 7年(1783) 雇工法제정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雇主家에 寄居하면서 衣·食을 지급받는 代價로 力役을 제공하는 無賃의 使役人口(中國의 雇工이 長期間의 年限과 賃金이 約定된 점에서 다르다)였다. 그러나 正祖 7년부터 雇工은 원칙적으로 賃金(10兩 이상)과 期限(5년 이상)을 雇主와 約定하고 雇主家에 寄食하면서 雇主의 지시에 따른 力役을 제공하는 雇傭人口를 의미하였다. 無賃의 使役人口로서의 雇工은 乞人類가 스스로 力役의 제공을 전제로 衣食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寄食하게된 雇工(仰役雇工)과 凶年에 굶주림을 면하기 위하여 收養된 雇工(收養雇工) 등 두 종류가 있었다. 前者는 雇工으로서의 出入이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後者는 收養事目的 규제로 마음대로 雇工의 處地를 벗어날 수 없었다. 또 仰役雇工은 肅宗 6年(1680) 雇工立案制가 시행되면서 長期服役을 원하는 雇工과 一時服務에 그치려는 雇工으로 區分되어 前者만이 公式적으로 雇工으로 호칭되었고 後者는 凡人으로 취급되었다. 또 前者는 官청과 私家(雇主家)에 立案·入籍되어 服役하는 동안 明律에 따르는 處遇(準奴婢)를 받는 仰役立案雇工이었고 後者는 立案·入籍되지 않고 本來의 身分대로 刑法上 處遇되는 仰役無案雇工(더부살이)이었다. 收養雇工은 나라에서 제정한 事目에 따라 凶荒時에만 발생하는 收養立案雇工이 원칙이었으나 慣行上 無立案 收養人口도 있었다. 仰役 및 收養立案雇工들은 대체로 營農이외 諸役에 投入된 使役인구였고 雇主도 대개는 농촌지역의 營農家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正祖 8年(1784)부터 제도상 발생하기 시작하여 주로 農業勞動에 投入된 有賃의 長期雇傭雇工(受

賃立案雇工)은 그 수가 매우 적었으며 새경(私耕)을 받는 머슴類의 雇工이 많아진 것은 노비제가 폐지된 19세기말 부터였다. 그러나 그들은立案이 必要없는 受賃雇工이었다(한영국, <위의 글>, pp.122~124).

다음으로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雇工에 관한 記事를 살펴보기로 한다.

세종 9년 12월 兵曹에서 啓하기를 律文에 의하면 雇工人錢이 一人當 一日 60文으로 되어 있으므로 서울과 지방의 官員들이 役人錢을 징수할 때 律文에 의하도록 하고 임의로 增減할 수 없다고 하였다(《世宗實錄》 卷38-17, 世宗 9年12月 丁卯). 또 세종 10년 11월 平民인 主人집 안주인을 간음한 婢夫를 雇工人이 家長妻를 간음한 律文(《大明律直解》 卷25, 刑律 犯奸)에 따라 絞刑에 處하였다(《위의 책》권42-13, 세종 10년 11월 신해).

세조 7년 4월 정창손·권람 등 大臣과 승지들이 事目을 만들어서 임금에게 올렸는데 그 중에서 雇工人을 모두 雜色軍案으로 刷出해 내어 某戶 雇工이라 기록하도록 하되 單寒無依人이나 篤疾人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世祖實錄》 卷24-2, 世祖 7年 4月 癸酉). 또 세조 7년 7월에 改正된 戶籍·軍籍 事目に 의하면 雇工이나 婢夫와 같은 依托할 곳 없는 單寒人(寄寓者)은 良人이라 하여 別途로 1戶를 만들면 반드시 逃散하게 될 것이니 率丁例에 依하도록 한다고 하였다(《위의 책》권25-9, 世祖 7年 7月 壬戌). 세조 8년 정월 경상도 敬差官의 보고에 의거 兵曹에서 啓하기를 大小人員이 거느리고 사는 雇工은 혹은 少時에 父母가 모두 죽어 버려진 어린이나 혹은 父母를 잃은 어린이가 남에게 양육되어 他家에 寄食하는 자로서 父母의 이름이나 그 身分이 良賤 어느 쪽인지 모른다고 하였다(《위의 책》권27-9, 세조 8년 정월 임술). 또 世祖 8年 5月 忠淸·全羅·慶尙道軍籍都巡察使 李克培가 말한 賫去事目に 의하면 單寒無依者가 혹은 雇工이 되고 혹은 婢夫가 되는데 이들 僑居寄生者는 軍役者로 뽑지 않도록 하자고 하였다(《위의 책》권28-20, 세조 8년 5월 계묘).

성종 2년 11월 司瞻寺主簿 宋瑛이 啓하기를 地方의 雇工이 모두 族親이 없는 無賴人이므로 寄食家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고을에서는 日守로 삼기도 하고 혹은 卒伍로 편성하기도 하여 家主가 使役시킬 수 없게 되자 하루 아침에 雇工들이 쫓겨나서 도적이 되거나 流亡人이 되니 앞으로는 國役に 소속시키지 않도록 하자고 하였다(《成宗實錄》 卷13-6, 成宗 2年 11月 庚戌). 家長(雇主)이 雇工과 같은 常民일 때, 雇工이 주인집 女子를 간음하였다고 해서 士大夫집 女

子를 간음함과 같이 死刑에 處함은 (法律上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다는 도승지 洪貴達의 주장에 대하여 成宗은 女子가 정조를 지켜야 함은 班常간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흥귀달이 死中求生을 거듭 주장하자 임금은 이를 의정부에서 의논하도록 하였다(《위의 책》권108-3, 성종 10년 9월 무오). 反面에 집주인이 雇工을 죽였을 경우에도 단지 杖 100대에다가 徒 3년에 처할뿐 殺人罪로 論罪하지 아니하였다(《위의 책》권146-20, 성종 13년 9월 을축).

永安道에서는 비록 士族일지라도 본래 노비가 없고 良民을 많이 占有하여 雇工이라 하였다(《위의 책》권188-14, 성종 17년 2월 무술). 또한 영안도에서는 軍士들에게도 노비가 없어서 오로지 雇工을 노비로 삼는다고 하였다(《위의 책》권195-1, 성종 17년 9월 을사). 그리하여 영안도에서는 雇工을 노비처럼 相傳한다고 하고 이는 他道에서 雇工을 모두 軍卒로 삼는 것과 다른 점이라 하였다(《위의 책》권195-4, 성종 17년 9월 壬子). 성종 18년 2월 한명회등이 啓하기를 永安道人인 上京從仕者(上京侍衛者)에게는 同居親族인 雇工中 2인을 他役에 配定하지 말도록 하자고 하였고 승정원에서는 婢夫 雇工 등을 모두 軍役に 充定하면 주인집에서 그들을 모두 내보내게 됨으로 그들이 끝내는 逃散할 것이라 하였다(《위의 책》권200-4, 성종 18년 2월 을해). 그러나 임금은 한 나라의 法이 南北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해서는 안되며 良民을 노비처럼 世傳시키는 것도 옳지 않다고 하였다. 沈滄는 영안도의 土豪들은 管下라 하면서 良民을 노비로 삼은지 오래되었으므로 하루 아침에 모두 빼앗아서 定役하면 분해하고 원망할 것이므로 管下라 하지 못하게 하되 家內에서 거느리는 사람은 多少를 막론하고 雇工이라 하여 錄案하면 차츰 軍丁化될 것이라 하였다. 그의 여러 사람도 각기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위의 책》권200-6·7, 성종 18년 2월 신사).

중종 4년 윤9월 領事 朴元宗이 지방의 軍籍에 관하여 말하기를 守衛들이 죽거나 도망친 자의 軍額數를 맞추기 위하여 雇工이나 거지 등과 같은 無賴之徒로서 充定하니 머지 않아 그들은 또 도망칠 것이라 하였다. 이어서 朴元宗은 金壽童과 柳順汀·盧公弼·成希顏 등 여러 사람과 함께 건의하기를 軍籍事目에 의하면 거지와 같은 無依之人과 雇工이나 婢夫와 같은 他人家에 寄托한 사람들은 軍役に 配定할 수 없다는 것과 富豪들 중에서는 婢夫·雇工이라 冒稱하면서

良民들을 많이 占有하여 使役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1戶내에서 3인을 넘지 못하게 하고 만약 濫占하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本人과 官吏를 엄중히 논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中宗實錄》 卷9-40 및 42, 中宗 4年 윤 9月 丙子·丁丑). 중종 6년 12월 臺諫들은 중국에서는 奴가 없을 경우 雇工으로서 奴로 삼게 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위의 책》권14-57, 중종 6년 12월 기축).

중종 24년 8월 水軍 車莫松이가 非兩班인 吳潤山의 雇工으로서 潤山의 딸 今伊와 姦通한 사건에 관하여 大明律에 의하면 雇工이 家長之女와 간통하면 死刑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士大夫집안에서는 모두 雇工이 없고 常人들만이 雇工을 사용하여 雇工과 主人집 딸이 서로 혼인하는 수가 많으므로 律文에는 비록 死刑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럴수는 없다는 의견에 따라 中宗은 減死하도록 하였다(《위의 책》권66-5, 중종 24년 8월 경진). 중종 33년 정월에도 土豪들이 良丁을 雇工이라고 하면서 濫占하고 있다는 것과 3인이 넘으면 찾아내어 軍役に 充定하자는 건의가 있었다. 또한 雇工 중에서도 流移 無依據者는 軍役に 充定할 수 없으나 재산이 있으면서 雇工이라 칭하고 避役하는 자는 軍役に 充定함이 옳다는 주장도 있었다(《위의 책》권 86-68·69, 중종 33년 정월 갑오).

雇工의 신분이 비록 良人이라고는 하나 17세기초에 이르면 노비와 인척관계가 있었음이 나타나 있다(《宣祖實錄》 卷201-15, 宣祖 39年 7月 己卯). 또 17세기후기인 顯宗 11年 8월에 雇工이 主人집 女人을 간음한 사건에 있어서 綱常에 관계된다고 하여 律文(大明律)에 따라 死刑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노비와는 다르다고 하여 처형은 그 本人에 그치게 하고 守令의 파직이나 所居邑의 강등조치 등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顯宗改修實錄》 卷23-3, 顯宗 11年 8월 경자). 숙종 3년 5월의 實錄記事에 의하면 雇工歌라는 것이 전해오는데 宣祖가 지었고 동래부사 이복이 우리말(諺語)로 번역하였으며 외설적인 내용이 있다고 한다(《肅宗實錄》 卷6-30, 숙종 3년 5월 신축).

18세기 후기인 正祖 즉위년 12월 御史의 民情담지 결과에 의하면 세력있는 富民이 뇌물을 바쳐 軍役을免하고 뿌리없는 雇工을 대신 내세우니 그런 자들은 곧 도망을 쳤으므로 軍伍의 명부가 虛數로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正祖實錄》권2-70, 정조 즉위년 12월 임술).

正祖 10年 6月 婢夫가 妻의 上典에게 꾸짖고 욕설을 한 사건에 관하여 雇工에 관한 律文(大明律)을 준용(旁照)하자는 주장이 있자 判中樞府事 金燧도 그 당시의 말구종(마부)들이 雇工·婢夫등속이라 하고 雇工이 家長에게 욕설함을 처벌하는 규정은 大明律에 있으며 婢夫도 他人의 率下에 있으니 雇工과 같이 보아서 論罪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下教하기를 婢夫와 雇工을 똑같이 보아서 律文을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다시 논의하여 婢夫가 그집 婢를 아내로 삼아서 그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냐를 따져보고 거기서 살 경우에만 輕重을 나누어 죄를 議定하라고 하였다(《위의 책》권21-55·56, 正祖 10년 6월 甲申). 正祖 17年 12月 雇工인 婢夫가 妻上典에게 發惡하였으므로 妻上典이 그를 治罪(科刑)하다가 過失致死케한 사건이 있었는데 行司直 鄭民始와 戶曹判書 沈頤之는 婢夫가 妻上典에게 凌犯(덤비는 따위)하는 일이 있으면 妻上典은 笞·杖 몇대로 다스릴 수 있고 간혹 뜻밖에 致死케 하는 수가 있으니 허용된 杖數內라면 不問處理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正祖는 奴婢를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그 上典에게 허용했고, 다만 官에 告하지 않은 형벌은 杖刑에 불과하다는 것과 처의 주인집에 살고 있는 婢夫가 妻上典에게 發惡하는 言動을 함은 그 情狀이 매우 나쁘니 妻上典이 治罪하다가 우연히 致死케한 경우에는 部官이 刑曹에 보고하여 처리케 하되 구속·수감(成獄)은 하지 말도록 하라고 하였다(《위의 책》권38-64·65, 正祖 17년 12월 丁丑).

純祖 20年 10月 西部 幼學 許璘이 그 婢夫 姜龍雲을 때려 죽인 사건을 刑曹에서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事件 內容은 許璘의 老父에게 위 姜龍雲이가 주먹질하여 눈가에 상처를 입혔으므로 許璘이 이를 보고 다듬잇 방망이로 姜龍雲의 머리를 때려 죽게한 것이었다. 正祖 17年の 법(受教)에 의하면 他人家에 살고 있는 婢夫가 그집의 婢인 妻의 上典을 향해서 發惡하는 말을 함은 情狀이 매우 나쁘니 治罪하다가 우연히 그를 죽게하더라도 구속·수감하지 말며 그 情狀이 그렇게 나쁜 경우가 아니면 임금에게 草記(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本件은 死者의 행동이 매우 나쁘기는 하였지만 過失致死가 아니므로 擅殺罪를 면치 못할 것이라 하고 姜龍雲은 率下 婢夫일뿐 奴婢와는 다르므로 雇工을 때려 죽인 경우의 刑律을 準用할 것인지 草記로 임금에게 품의한 것이었다. 이에 임금이 下教하기를 姜漢이 妻上典에 욕지거리하다가 부족하여 손으로 쳤으니 이는 風化에 관계되며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따라

서 이 건은 官에 告하지 않고 擅殺한(멋대로 죽인)경우와는 매우 다르니 許瑛에게 한 차례만 刑問(刑推)한 후 석방하라고 하였다(《純祖實錄》 卷23-15·16, 純祖 20年 10月 庚寅).

25. 奴婢

(1) 奴婢序說

奴婢는 우리나라의 前近代社會에 있어서 最低의 신분층으로서 사람과 가축의 중간에 위치하여 매매·증여의 대상물이 되는 非人格體였다. 그러나 Roma와 Germane의 노예가 권리의 객체일 뿐, 전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었던 것과는 달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의 노비는 권리의 객체인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도 될 수 있는 半人格體였다. 따라서 高麗·朝鮮의 奴婢 중에서는 住宅과 田土뿐만 아니라 奴婢를 所有하기까지 하였다. 즉 노비가 노비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仁井田陞, 《中國身分法史》, 東京大學出版會, 1942 初版, 1983 複刻版, p.860 및 周藤吉之〈高麗末期より朝鮮初期に至る奴婢の研究〉(二) 《歴史學研究》 9-2號, 1939, pp.67~69). 또한 노비주가 자기의 노비를 죽였을 경우 事前에 官에 告하지 않고 濫殺하였으면 殺人罪가 成立되어 비록 刑量은 보통의 경우보다 적었지만 처벌받게 되었다(《世宗實錄》권 105-24·25, 세종 26년 윤7월 신축). 그러나 실제상 솔거노비를 上典이 함부로 죽이고도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김석형, 《위의 책》, pp.77~79).

그런데 노비는 法規範的 개념으로는 賤人과 일치하지만 社會通念上으로는 다르다. 즉 賤人은 노비와 일부 良人을 포함한 일련의 하층민을 통칭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身良役賤층으로서 18세기의 攷事新書에서는 皂隸·羅將·日守·漕軍·水軍·烽軍·驛保 등을 들고 있으며, 어떤 이북학자(홍중식)는 승려·倡優·巫覡·皮工·白丁 기타의 賤役人을 奴隸와 더불어 賤民 또는 賤人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法制上으로는 良人身分이었다(金錫亨, 《朝鮮封建時代 農民의 階級構成》, 사회과학원, 1957, 재편집, 서울 서원, 1993, pp.18~21). 여하간 17세기초 金時讓은 우리나라에서 軍役に 應하는 자(良人)는 겨우 15만명이나 私賤은 40여만명이라 하였다(《增補文獻備考》권162-15, 戶口考

二). 法制上 公賤과 私賤은 대체로 公奴婢와 私奴婢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孝宗 8年 충청감사 李慶億의 啓에 따라 賤人의 役을 男從父役·女從母役을 定制로 할 때 司憲府에서도 蒼頭(下人)之籍, 幾半國中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賤人이 많아진 이유는 一賤則賤(公私奴婢, 父良母賤, 從母, 母良父賤, 從父)의 原則 때문이라 하였다(《위의 책》권162-22 戶口二). 私奴婢중에서는 率居奴婢와 外居奴婢가 있고 公奴婢중에서도 選上奴婢와 納貢奴婢가 있는데 북쪽의 金錫亨은 率居奴婢를 서양의 奴隸로(公奴婢중에서는 노예에 해당하는 자가 없다고 함), 外居奴婢를 農奴로 比定하였다(金錫亨, 《위의 책》, pp.79~89). 그러나 술거노비가 외거노비로 될 수도 있고, 외거노비 또한 주인의 부름을 받아 언제나 술거노비로 되는 실정이었으므로 양자간에 본질적인 차이를 두기는 어렵다고 하겠다(《東野彙輯》 권2 및 《大東稗林》 病後慢錄).

노비들은 원칙적으로 노비주에 대하여서만 의무를 부담할 뿐 국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兵役·納稅 등의 의무를 지지 않았으나 조선전기에는 雜色軍으로서, 또한 조선후기에는 東伍軍으로서 軍役의 의무를 졌고 地主에 부과된 田稅를 예속농민 입장에서 부담하였으며 각종 雜役에 동원되는 등으로 봉건국가와 노비주로부터 二重三重으로 收奪되었다. 물론 노비중에서는 免賤되지 못한 양반의 천첩자들과 같이 田宅과 奴婢를 소유한 부유한 외거노비가 있었는데 그들은 사회경제적으로는 이미 노비가 아니었으며, 다만 세습적인 慣行과 法律의 힘에 의하여 노비신분으로 되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이래로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른바 一賤則賤의 원칙(《高麗史》권85-44, 刑法2, 奴婢)에 의거 父母중 어느 한 쪽이 노비이면 그 자식들이 노비가 되어 百世가 내려가도 노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노비 世傳法을 磻溪 柳馨遠은 비판하면서 中國에는 비록 노비가 있어도 모두 本人이 罪를 지어 沒入되었거나 스스로 팔려간 자일 뿐 그 族系를 따져서 世世로 노비가 되게하는 법은 없다고 하였다(《磻溪隨錄》권26, 兵制 및 《增補文獻備考》권162-22, 戶口考二). 물론 중국에는 노비세습법이 전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3세기말·14세기초의 元나라에서는 그러하였다(김석형, 《위의 책》, p.31). 如何間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노비주와 노비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적인 생산관계 이상의 君臣·父子와 같은 綱常 내지 人倫關係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것처럼 엄격했던 것이다.

노비의 起源에 관하여 조선시대의 治者(儒者)들은 聖人인 箕子가 만든 여러 가지 좋은 제도중의 하나로서 不易之制라고 하였다. 箕子東來說을 믿거나 말거나 우리나라에서는 古朝鮮과 扶餘·辰韓·三國時代 등 古代國家 및 고려·조선에 걸쳐서 奴婢制度가 있었음은 《三國志》 魏書30, 烏丸鮮卑 東夷傳30, 韓傳과 《三國史記》 《高麗史》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많은 公私撰 史料를 통해서 알 수 있다. 3000여년간이나 奴婢가 이땅에 存在하였지만 그 명칭이 같다고 하여 그 성격이 같을 수는 없다. 古代의 노비가 노예와 비슷하였다면 고려·조선시대의 노비는 농노와 비슷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노비조차도 여러 층이 있었고 그 성격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노비에 관한 法制는 高麗史 刑法志와 經國大典·續大典·大典通編·大典會通 등 法典의 刑典에 등재되어 마치 刑事制度에 부수한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려·조선시대의 노비는 토지 이상으로 주요한 재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양반·지주들은 그들을 통해서 경작하고 그들의 身貢을 받아서 살아가고 또한 富를 축적하였던 것이다.

여하간 노비제가 法典의 刑典속에 규정되고 있음은 노비의 절대다수가 범죄인과 그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漢書》 地理志에서도 古朝鮮의 犯禁 8條에 「相盜者 男沒入 爲其家奴 女子爲婢」라 하였고, 《周禮》 秋官 司厲의 註에서도 「今之奴婢 古之罪人也」라 하였다. 《經國大典》 刑典 贓盜條에 「強盜妻子 永屬所在官 奴婢」라 하여 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도적의 가족 뿐만 아니라 멀쩡한 양반들도 역적으로 몰리면 그 가족들이 노비가 되었다. 특히 15세기 중엽의 政變 때 많은 연루자의 가족과 3寸이내의 친족들이 官奴婢가 되거나 소위 功臣이란 자들의 私奴婢가 되고 있음을 實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世祖實錄》 권4-22·23, 세조 2년 6월 을축·병인 및 권 5-8·9·10, 세조 2년 9월 갑술, 권8-31·32 세조 3년 8월 임자 등). 반면에 성공한 쿠데타에 가담한 노비들은 原從功臣이 되어 노비신분을 면하고 良人이 되었다(《위의 책》 권5-2, 세조 2년 8월 경술). 기타 婢의 경우 宗室이나 양반의 첩이 되어 속량되는 수가 많았다. 노비는 일반 犯罪뿐만 아니라 고려이전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적국인인 포로나 반란이 일어났을 때의 반란지역민들이 집단적으로 賤民이 되어 鄉·所·部曲 등 특수지역에 살면서 노비와 같은 처우를 받았던 데에서도 생겨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향·소·부곡의 천민들은 조선시대에

들어 오면 거의 良人化되었다고 한다(김석형, 《앞의 책》, pp.104~113).

(2) 朝鮮前期의 奴婢

① 公私奴婢의 身貢과 그 經濟的 價値

태종 8년 8월 公奴婢의 身布를 奴는 추포(常5升布) 5필, 婢는 4필로 정했으나(《太宗實錄》권16-8, 태종 8년 8월 계묘), 세종때의 身貢은 奴 1명당 元貢이 正布 1필 餘貢이 楮貨 2張, 婢는 元貢이 正布 1필 餘貢이 楮貨 1張이었는데 세종 7년 6월 戶曹의 啓에 따라 奴의 餘貢은 錢 100文, 婢의 그것은 錢 50文으로 하였다(《世宗實錄》권28-24, 세종 7년 6월 임자). 그러나 세종 28년 11월 貢法 시행에 맞추어各司 노비의 身貢도 年分法을 쓰도록 하여 다음해 정월부터 시행하였다. 즉 所耕田의 收稅 1石 이상을 全貢, 1石 이하를 半貢, 10卜 이하 無所耕者는 전부 면제하고 貢法을 시행하는 道에서는 所居 州縣의 기준에 따라 下下年은 免貢, 下中年은 半貢, 下上年 이상은 全貢으로 하되 全貢之數는 木棉布이면 2인당 1필, 綿紬는 3인당 1필, 正布는 혼자 1필을 납부하도록 하였다(《위의 책》권 115-2, 세종 29년 정월 계유). 성종 16년 乙巳에 제정된 經國大典 戶典 徭賦條에 의하면 外居奴婢는 選上·雜故이외에는 나이 16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에게서 모두 身貢을 거두어 司贍寺에 납부하도록 하되 奴는 綿布 1필 楮貨 20張, 婢는 綿布 1필 楮貨 10張이라는 것이다(당시 楮貨 1張 값은 米 1升, 세종때는 米 1斗). 公賤의 수는 태종 17년에 116,000여명, 세종 21년에는 21만 수천명, 세조 7년에는 20수만명, 성종15년에는 京外之數가 실로 352,000여명이었다(周藤吉之, 〈앞의 글〉, 《歷史學研究》 9-1호, 1939, p.36).

私奴婢의 경우에는 主人을 위하여 力役을 직접 부담하는 이외 穡무지를 개간하여 주인을 위해서 수확한 곡식을 비축해 두거나(김석형, 《앞의 책》, p.87), 소작인으로서 주인에게 무거운 소작료를 납부하는 등으로 가혹한 수탈을 당하였다(周藤吉之, 《위의 글》, p.19). 때로는 主人이 外居奴婢村에 身貢을 받으러 갔다가 被殺되는 수도 있었다(김석형, 《위의 책》, p.84). 기술자들인 工匠중에서는 私奴婢와 良人도 있었으나 公奴子가 많았고 그중에는 護軍 蔣英實과 같이 벼슬한 사람도 있었다(周藤吉之, 《위의 글》, pp.38~39).

私奴婢는 상속·매매·증여의 대상물이 되는데 상속에 관해서는 《經國大典》과 《續大典》의 刑典 私賤條에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증여는 주로 임금인 功臣에게 몇명·몇십명 또는 십여명씩 賜給하였으며 세조 3년 2월에는 소위 亂臣의 奴婢 1,170여명을 빼앗아서 宗親 및 功臣에게 나누어 주었다(周藤吉之, 《위의 글》, pp.60~61 및 《世祖實錄》권6-25·26, 세조 3년 2월 을미). 노비의 매매값은 고려 成宗 5年 7月, 奴 15세 이상 60세 이하의 경우 布 100필, 15세 이하 60세 이상은 50필이었으며, 婢 15세 이상 50세 이하 120필, 15세 이하 50세 이상은 60필이었다(《高麗史》 85-42 刑法2, 奴婢). 또 고려말기와 조선국초의 노비값은 대체로 5升布 150필이었으므로 牛馬와의 교환비율은 말 1필과 노비 2·3명으로 하여 거래되었지만 太祖 7年 6月 노비값을 2·3배로 올려 노비 1명당 布300필~400필로 정하여 牛馬값과 같도록 하였다(《太祖實錄》권14-15, 태조 7년 6월 임술). 세종 8년 정월에는 도망노비의 役價를 정하였는데 그 당시 楮貨 1張을 쌀 1斗로 또 쌀 1斗를 銅錢 40文으로 쳐서 1年の 役價로 1,440文을 징수하여 本主에 還給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쌀로 치면 1年 米36斗였다(周藤吉之, 〈위의 글〉(二), 《歷史學研究》9-2號, 1939, pp.61~63 및 《世宗實錄》권 31-6, 세종 8년 정월 갑인). 《經國大典》 刑典 私賤條에 의하면 노비를 매매할 때에는 官에 告해야 하며 만약 私和하여 몰래 매매한 경우에는 그 노비와 代價를 모두 몰수한다고 규정하였다. 또 그 값은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는 楮貨 4,000張이고 15세 이하 51세 이상은 3,000장이라 하였다. 이를 쌀값으로 환산하면 400斗·300斗였고 馬1마리가 上等馬의 경우 楮貨 4,000장이었으니 건장한 노비값과 상등말값이 같다는 것이다(周藤吉之, 《위의 글》, p.63).

② 公私奴婢의 逃亡·投托·略奪

조선시대 호적을 살펴보면 逃亡奴婢가 매우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立役과 身貢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한 몸부림의 결과였다. 《經國大典》 刑典 公賤條에 公賤을 숨겨두고 使役시킨 자는 論罪後 役價를 1명당 매일 楮貨 6장씩 추징하되 노비값의 배가 되면 그친다고 하고 私賤도 이와 같다고 하였다. 도망노비에 관한 처벌규정은 《大明律直解》권6 戶律 婚姻편의 出妻條 속에도 있다. 그러나 成宗 12年 10月, 사노비가 도망쳤을 때의 明律의 刑이 너

무 가볍다고 하여 私賤을 숨겨서 1년이 지나지 않으면 明律에 의거 論罪하되 2명이상을 經年 使役시켰을 경우에는 公賤과 같이 평안도 殘亡諸邑으로 全家徙邊시키도록 하였다(《成宗實錄》권 134-8, 성종 12년 10월 경술 및 《大典續錄》刑典 公賤).

公私賤은 또한 무거운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왕실 직속의 內需司나 權勢家에 投托하는 자가 많았다. 특히 內需司의 노비는 雜役이 면제되었고 田稅도 면제되어 그 부담이 가벼웠으므로 많은 公私賤이 여기에 투탁하였다. 그러나 士大夫들이 宮中을 상대로 소송하기가 어려워 王命으로 推刷하거나 금지 또는 陳告하도록 하였던 바 1인당 180여명에서 600여명까지 陳告한 경우도 있었다(《成宗實錄》권10-39, 성종 2년 6월 기유). 反面에 허위로 陳告한 경우도 많았으므로 그 해 10월 刑曹의 啓에 따라 投托者와 함께 不法陳告者도 처벌하도록 하였다(《위의 책》권12-14, 성종 2년 10월 을미). 즉 大君·君 등 宗室이나 土豪 및 功臣家에 投托하는 노비가 적지 않았으므로 임금은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이를 推刷하도록 하였지만 그것이 쉽지는 아니 하였다(《文宗實錄》권4-15, 문종 즉위년 10월 경진 및 《世祖實錄》권3-8, 세조 2년 2월 신축과 《成宗實錄》권40-6, 성종 5년 3월 계묘).

고려멸망의 원인으로서 田土兼併과 他人의 노비를 약탈하거나 壓良爲賤 등을 들고 있는데(《太祖實錄》권6-8, 태조 3년 8월 기사), 이와 같은 약탈이나 壓良爲賤을 辨正하기 위하여 태조 4년 12월에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였고(《위의 책》권8-17, 태조 4년 12월 갑진), 태종초에는 남의 노비를 빼앗아 계속 仍執據執하는 자를 징계하도록 하였다(《太宗實錄》권 3-13, 태종 2년 3월 정유).

고려시대에는 壓良爲賤으로 良人을 노비로 삼은 경우와 戶籍不明者가 巨室의 노비로 된 경우 및 負債로 노비가 된 경우가 많아서 (周藤吉之, 〈앞의 글〉(二), p.70과 《高麗史》권79-3, 食貨2 및 권91-9, 宗室2, 江陽公滋傳) 이를 금지 또는 計徵還償한다는 刑法規定을 두고 있다(《위의 책》권85-18·46, 刑法2, 禁令條와 奴婢條). 조선시대에도 그러한 일이 있어서 太祖 元年과 定宗 元年에는 빚을 진 良人을 노비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제가 논의되었고(《太祖實錄》권2-14, 태조 원년 11월 갑오 및 《定宗實錄》권1-16, 정종 원년 6월 갑인). 成宗 10년 4월에는 壓良爲賤을 試圖했던 2品 환관이 파직되었다(《成

宗實錄》권103-5, 성종 10년 4월 병신). 또 世祖 5년 2월부터 號牌法이 시행되면서 無籍의 良民이 많이 勢家에 投托해서 노비가 되었으므로 예종 원년 4월 이를 推刷하여 屬良하도록 하였다(《예종실록》권5-10, 예종 원년 4월 갑술). 그러나 苦役을 피하여 權勢家の 노비로 된 자들이 많았으나 쉽게 推刷할 수가 없었다(《成宗實錄》권40-6, 성종 5년 3월 계묘 및 권240-9, 성종 21년 5월 병인). 그리하여 成宗朝에 「齊民中 私賤十居八九」라 할 정도로 노비 숫자가 많았다(周藤吉之, 〈앞의 글〉(二), p.71).

③ 奴婢의 財産所有와 富奴

고려·조선시대의 노비 중에서는 부유한 주인의 농장관리인(庄主)이 되어 富를 축적한 자도 있었고 또한 富商인 노비도 있어서(周藤吉之, 〈앞의 글〉(二), pp.67~68) 세종 12년 4월, 詳定所에서 啓하기를 大小人員의 嫡妻가 無子일 경우에도 賤妾子의 相續分은 불과 노비 10명이라 한데 대하여 임금은 賤人으로서 노비 百餘名을 所有한 자도 있었다고 하였다(《世宗實錄》권48-2, 世宗 12年 4月 乙亥). 세종 21년 9월에는 효령대군의 家奴들이 전라도에서 流亡하는 民戶 340여명을 불러들여서 그중 60여호를 影占하여 노비처럼 使役시켰다고 한다(《위의 책》권86-30, 세종 21년 9월 병진). 이러한 세력있는 집의 노비들은 良民을 侵虐하고 良民의 田地·家舍·牛馬 등을 橫奪하는 수가 많았다. 그 중에는 成宗 때 忠淸道 鎭川의 私奴 林福과 같이 벼 8,000여石을 비축하여 饑饉時에 벼 3천石을 바쳐 賑濟之資로 이바지해서 드디어 그 네 아들을 放良시킨 경우도 있었다(《成宗實錄》권181-28, 성종 16년 7월 병자 및 권 182-2·6, 성종 16년 8월 경진·을미). 그 때 전라도 南平에 사는 私奴도 벼 2,000石을 바쳐 賞받으려(從良) 하였으나 나라에서는 納粟從良이 常例化될까봐 꺼리고 있었다(《위의 책》권182-10, 성종 16년 8월 무신). 이들 부유한 노비들은 主家の 長利에 편승하여 자기 곡식도 長利로 내놓아 富를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부유한 노비들이 상속자(자식)없이 죽었을 때 별도의 文契가 없는 限 그 재산(노비와 田宅 등)은 죽은 노비의 주인 몫이 되었다(《世宗實錄》권42-15, 세종 10년 11월 임술). 이것이 세종 15년 續六典에 등재되어 죽은 노비의 재산은 그 자식에게 상속시키되,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本主에게 준다는 것으로 되었고(《世祖實錄》권11-6, 세조 4년 정월 기축) 이것은

다시 《經國大典》 刑典 公賤條에 등재되었다. 中國(元·清)의 경우에도 노비가 田地와 家畬를 소유하는 수는 있었으나 노비가 노비를 소유한 적은 없었고, 또한 田宅의 所有도 언제나 本主로부터 빼앗길 수 있는 不安定한 소유형태였지만 조선의 노비들의 소유권은 비교적 상당히 보호되고 있어 특수하였다(周藤吉之, 〈앞의 글〉(二), p.69)

④ 奴婢의 婚姻關係와 그 所生子女

다음으로 노비들의 혼인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고려 靖宗 5年, 賤者隨母法이 만들어져서(《高麗史》권85-43, 刑法二, 奴婢), 奴와 婢 사이에서 낳은 子女는 從母法에 따라 婢의 주인에게 歸屬되었다. 이 법은 고려후기를 거쳐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시행되었다(《世宗實錄》권51-3, 세종 13년 정월 을해 및 《經國大典》 刑典 公賤). 노비가 노비를 所有하고 있을 때 公賤이 自己婢妾에게 장가들어 낳은 子女는 屬公시켰으며 私賤인 경우에는 奴의 本主에게 주도록 하였으므로(《太宗實錄》권28-16, 태종 14년 8월 계해), 從父法을 취한 셈이다. 또한 세종 18년 6월 公私賤口가 妻의 婢를 娶해서 낳은 子女는 兄弟간에 使役시키는 일이 없도록 本妻에게 他夫의 子가 있으면 그에게 주고, 없으면 妻의 本主에게 주며, 그 妻가 良人이면 夫의 本主에게 주도록 하였다(《世宗實錄》권72-37, 세종 18년 6월 무오). 즉 前者인 경우는 從母法, 後者인 경우는 從父法을 취한 셈이다. 이는 《經國大典》 刑典 賤娶婢產條에 정리·등재되었다.

良夫가 公私婢나 官妓를 취해서 낳은 子女는 고려시대 이래의 賤者隨母法에 따라 女子쪽 主人의 재산이 되나 公私賤夫가 良女를 취하는 것은 法上 금지되어 처벌된다(《高麗史》권85-41·46, 刑法二, 奴婢).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상당히 있었으며 一賤則賤의 原則에 따라 所生子女는 賤人이 되나 洪武 25年(恭讓王 4年) 正月이후 違律相婚의 경우에는 所生者가 良人이 됨을 허용한다(《위의 책》권85-44·46, 刑法二, 奴婢). 元나라의 경우에는 良男과 婢 사이의 子女는 良人이 되고 奴와 良女 사이의 子女는 노비가 되어 從父法을 취했으나 그 婢가 竊婢일 경우에는 所生子女가 노비로 되며 또 그 良女가 竊良女일 경우에는 所生子女가 良人이 되는 등으로 從母法을 취하였다(周藤吉之, 〈앞의 글〉(三), 《歷史學研究》 9-3호, 1939, p.24, 有高岩, 《元代奴隸考》).

우리나라는 母系尊重의 舊俗에 따라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男歸女家の

전통을 이어 子女들이 外家에서 生長하였으므로 本宗의 重함을 모르고 “母賤者皆賤”이라 하였다(《太宗實錄》권27-1·2, 태종 14년 정월 기묘). 고려시대에도 후기에 이르면 良人男子와 賤人女子사이에 낳은 子女(庶孽)중에서는 良人이 되어 崔沆·崔嬭 父子와 辛旽처럼 크게 출세한 사람도 있었으며(周藤吉之, 〈위의 글〉(三) p.26) 조선시대에 이르면 그러한 자들이 더욱 늘어 났고 특히 조선후기에 이르면 위정자들의 庶孽許通 논의와 서얼자신들의 활발한 疏通運動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직에 취임하게 되었다(李鍾日, 《朝鮮時代 庶孽身分變動史 研究》, 1987,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태종 원년 7월 예천부원군 權仲和가 상소하기를 흉포한 賤口가 良女를 많이 娶해서 所生子女가 모두 私賤이 됨으로써 賤口가 날로 늘어나고 良民이 날로 減少되어 國役부담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니 앞으로는 그러한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을 강제로 이혼시키고 所生子女는 司水監(太宗 3年 6月 乙亥에 司宰監으로 改稱)에 소속시키자고 하여 임금이 이에 따랐다(《太宗實錄》권2-6, 太宗元年 7월 甲寅). 태종 5년 9월에는 公私賤이 良女와 相婚함을 금지하여 男女 및 所生子女를 屬公시키되 本主가 그 情을 알지못한 경우에는 노비의 屬公을 免한다고 하였다(《위의 책》권10-17, 태종 5년 9월 갑인). 그러나 그 후에도 公私賤口가 良女를 犯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奴는 本主가 몰랐다고 하여 屬公을 면했지만 良女는 官婢가 되었으므로, 태종 13년 9월 충청도 도관찰사 李安愚의 상소에 따라 그들을 강제이혼시킬뿐 良女를 公賤으로 삼지말고 重犯恣行者만 徒 3년에 처하도록 하였다(《위의 책》권26-21, 태종 13년 9월 정축).

세종 7년 5월에는 전라감사의 關文에 의거한 刑曹의 啓에 따라 公私賤이 良女를 娶하여 낳은 子女는 모두 屬公시키되 父가 있는 관청의 續案(노비의 帳籍)에 등재·수록하고 良女인 母는 강제이혼시켜서 친정으로 돌려 보내게 하였다(《世宗實錄》권28-12, 세종 7년 5월 경오). 또 세종 11년 6월에는 刑曹의 啓에 따라 本宮의 奴와 良女 및 補充軍女간의 所生子女는 屬公시켜서 從父法을 취하였다(《위의 책》권44-24, 세종 11년 6월 병술). 그러나 세종 21년 12월에는 임금이 刑曹에 傳旨하여 穆祖이하의 宗姓子孫은 男女를 막론하고 모두 良人이 되어 있는데 女孫중에서 公私賤口에 시집가서 낳은 子女가 간혹 免賤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이들을 모두 良人으로 삼으라고 하였다(《위의 책》권87-26, 세종 21년 12월 무인). 그러나 세종 26년 6월에는 그 범위를 제한하

여 宗姓은 袒免이상親, 女孫은 總麻이상親 이외의 賤口所生者는 從良시키지 않기로 하였다(《위의 책》권104-36, 세종 26년 6월 을사). 端宗 5년 2월에는 私賤이 良女를 취해서 낳은 子女도 이미 錄案된자 이외에는 屬公하지 않고, 公賤이 良女를 취한 경우와 같이 從父法에 따라 奴主에게 귀속되게 하였다(《端宗實錄》권11-6·7, 단종 2년 5월 무오). 이것이 그대로 《經國大典》 刑典 公賤條에 등재되었다.

太祖 6년 7월 良人이 公私婢와의 사이에 낳은 子女(주로 서얼)중 自己婢妾所生이면 永久히 해방시켜 良人을 삼게 하여 骨肉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太祖實錄》권12-2, 태조 6년 7월 갑술). 태종 5년 9월에는 祖父의 婢妾所生子女도 同氣骨肉이므로 부리기에 마땅치 않다고 하면서 自己婢妾 所生처럼 財主로서 永久放良하여 司宰監에 소속시키도록 하였다(《太宗實錄》권10-10, 태종 5년 9월 무술). 太宗 14년 정월에 2품이상자의 賤妾所生子는 5품까지의 限品敍用法이 성립되었고(《위의 책》권27-2, 태종 14년 정월 기묘) 태종 14년 6월에는 예조판서 黃禧의 건의에 따라 公私婢가 良夫에 시집가서 낳은 子女는 從父法에 의거 良人으로 하였다(《위의 책》권27-48, 태종 14년 6월 무진). 태종 15년 3월에는 3품이하 자의 賤妾所生子의 限品敍用法이 성립되었다(《위의 책》권29-12, 태종 15년 3월 병오). 즉 3品所生은 限6品, 4品所生은 限7品, 5·6品所生은 限8品, 7·8品所生은 限9品, 9品·權務所生은 限學生, 庶人所生은 限白丁으로 되어 있다. 세종때에 吏曹判書 許稠와 右議政 孟思誠 등이 公私婢子가 良夫에게 시집가서 낳은 子女가 從父法에 따라 良人이 되는 것에 反對하는 啓를 올렸으나 임금의 允許하지 아니하였다(《世宗實錄》권25-15, 세종 6년 8월 임자 및 권45-9, 세종 11년 7월 기사). 세종 12년 8월에는 刑曹에서 啓하기를 세종 7년 8월부터 公私婢가 良夫에게 시집갈려면 京中各司나 地方各官(公婢경우) 혹은 本主(私婢경우)에게 신고하여 허가 받도록 되어 있으나 私婢의 경우 그 신고여부가 不明하다고 하였다(《위의 책》권49-26, 세종 12년 8월 경인).

從父法에도 폐해가 생기고 反對者가 늘어나자 세종 14년 3월 임금은 大臣들의 논의를 거쳐 이를 개정하였다. 즉 세종 14년 7월 1일 이후 公私婢가 良夫에게 시집가는 것을 禁하며 위반자는 明律에 의거 論罪한다고 하고 또한 犯法하여 낳은 男女는 從父法에 따라 良人으로 하지 않고 官이나 主人에게 돌려 준

다고 하였으며 다만 1품이하 東西班 流品이나 文武科 出身人·生員·成衆官·有蔭子孫 등이 公私婢를 作妾했을 경우 및 나이 40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백성(平民)이 公私婢子를 娶하여 낳은 자식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太宗 14年 6月 28日 이후 世宗 14年 6月 말일 이전에 公私婢子가 良夫에게 시집가서 낳은 子女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此限不在)고 하였다(《위의 책》권55-22~28, 세종 14년 3월 갑술·갑신·을유·병술). 그리하여 원칙적으로는 賤者隨母法으로 되돌아 왔다. 그러나 그후 穆祖이하 宗姓子孫의 賤妾子女에 대해서는 예외로 從良하였다가(《위의 책》권77-42, 세종 19년 6월 신사) 그 범위를 宗姓祖免이상親으로 제한하여 從良시켰다(《위의 책》권104-36, 세종 26년 6월 을사)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세종 29년 3월 刑曹의 보고에 의거 의정부에서 啓하기를 甲午(太宗 14年) 6月 28日이전, 2품 이상 者가 公私婢와의 사이에 낳은 子女중 自己奴婢의 경우 贖身되나 그 子孫은 그렇지 못한 反面, 3품 이하 9품 이상의 賤妾子孫은 능히 自贖됨으로 不公平하니 2품 이상의 子孫의 경우도 3품 이하의 예에 따라 贖身하도록 하자고 하여 임금이 이에 따랐다(《위의 책》권115-17, 세종 29년 3월 기사). 또 세종 29년 4월에는 世宗 14年 이후 良夫가 公私婢와의 사이에 낳은 子女에 관하여 東西班 流品·文武科出身·生員·成衆官·有蔭子孫 및 平民 40세에 자식이 없다가 낳은 아들의 경우 이외는 良夫가 公私婢를 娶함을 禁斷시키되 만약 즉시 이혼하지 않고 위법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하여 낳은 子女는 從良시킬수 없다고 하다가 그후 모두 從良하였는데 그로 因하여 公賤이 날로 減少되었으므로 세조 5년 10월, 그러한 違法行爲로 낳은 子女를 모두 從賤하도록 하였다(《世祖實錄》권18-2, 세조 5년 10월 계축). 그러나 親功臣의 公私賤妾의 所生은 모두 從良한 바 있다(《위의 책》권15-6, 세조 5년 정월 신축).

세조 6년 5월 刑曹都官(掌隸院의 前身)이 啓하기를 무릇 私賤이 壬子(세종 14년) 7월 1일 이후 諸司의 吏典·雜職人·平民·鄉吏에게 시집가서 낳은 子女인지와 交嫁(결혼)年月의 眞僞를 조사하지 않고 함부로 從良한 경우 및 牧子·鹽夫·驛吏에게 불법으로 시집가서 낳은 자를 違法으로 從良한 경우에는 모두 公賤例에 의거 從賤하도록 하였다(《위의 책》권20-32, 세조 6년 5월 경자). 그 당시에는 이들 鹽干·驛吏의 婢妾所生은 父役處로 定役했었다. 世祖 7

年 2月 刑曹에서 啓하기를 公處婢가 良夫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녀 중 妓女의 所生은 贖身 免賤하고 기타 諸邑婢 所生은 贖身하지 않고 從良함은 일반 公賤의 立法例와 달라서 公賤이 날로 減少하게 되어 甚히 不可하니 앞으로는 東西班 流品 朝士와 文武科出身·生員進士·成衆官·有蔭子孫 등 및 平民으로서 나이 40이 되어도 자식없는 자가 公處婢에게 장가들어 낳은 자식중 長子는 都官(장예원)에 신고하여 나이가 비슷한 노비로서 代替하여 贖身하도록 하고 私賤은 本主의 情願에 따라 역시 公賤例대로 施行하자는 것인데 임금의 이에 따랐다(《世祖實錄》권23-20, 세조 7년 2월 정유). 그러나 同年 6月에는 다시 이를 改定하여 天順 5년(世祖 7年) 2月 26日이전에 東西班·文武科出身·生員·進士·成衆官·有蔭子孫이 公私婢를 娶하여 妾으로 삼은 자의 子女로서 이미 從良된자는 다시 贖身시키지 말도록 하고 公私婢가 일반 良夫에게 시집가서 낳은 子女로서 이미 從良된 자는 補充軍에 永屬시킨다는 것이다(《위의 책》권24-30, 세조 7년 6월 무술).

그 후 世祖는 良民을 많이 확보하여 軍額을 늘리고자 賤系從父法을 만들었으나 세조 14년 6월 成均進士 宋希獻이 上書하여 반대하기를 從父法은 賤女가 그 자식을 良人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자식의 아버지를 良人身分者로 바꾸어 말할 우려가 있는 등 폐단이 있다고 하였고 여러 卿宰들도 從父法을 반대하였으며 특히 신숙주는 現行 從父法은 公賤이 그 자식을 良人으로 하기 위하여 반드시 某鄉吏·某胥徒의 자식으로 冒稱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몇년이 못가서 公賤은 날로 減少되어 그 폐단이 매우 클 것이라 하면서 從母法을 주장하였으므로 임금의 이에 따랐다(《위의 책》권46-32·34·35, 세조 14년 6월 壬寅). 그리하여 《經國大典》刑典에서는 원칙적으로 賤者從母法을 取하되 宗親과 功臣 및 양반의 妾子女에 관해서 無贖身 또는 贖身으로 從良하도록 하는 특별규정(賤妾·賤妻妾子女·公賤)을 두었다.

⑤ 妓女와 良人간의 所生子女의 身分歸屬

고려시대에는 官妓가 楊水尺 또는 身良役賤者 중에서 나왔으나 조선시대의 官妓는 公賤(邑婢)중에서 選上되거나(京妓) 뽑혔다(官妓)(周藤吉之, 〈앞의 글〉(三), p.64). 太宗 14년에는 다른 賤妾所生과 마찬가지로 妓妾所生도 從良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世宗 12年 12月 刑曹에서는 官妓가 官人と 同居하면서

낳은 子女는 從良을 인정하되 各官에 供役할 때 낳은 경우는 訴良을 인정하지 말자고 啓하였고 결국 이듬해 正월 從母法을 취하였다(《世宗實錄》권50-32, 세종 12년 12월 갑신 및 권 51-3 세종 13년 正월 을해). 그러나 세종 15년 2월, 京中 女妓의 子女가 衆所共知로 作妾하여 낳은 자식인 경우는 從父爲良시켰다(《위의 책》권59-18, 세종 15년 2월 무술). 그러다가 세종 19년 5월에 이르면 官人의 妓妾들이 그 夫를 자주 바꾼다는 이유로 다시 소급하여 從賤하도록 하였으나(《위의 책》권77-17, 세종 19년 5월 무술), 세종 21년 윤 2월 知中樞院使 成達生·前中樞院使 曹備衡·知中樞院事 李中至 등이 상소하여 그들의 妓妾子가 太宗 14년의 教旨(《經濟六典》續典)에 의거 從良되었다가 世宗 19년의 教旨에 따라 전부 從賤되었으니 다시 良人이 되도록 허락하여 달라는 것과 그것이 잘 안되면 다른 노비로서 贖身爲良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에 임금은 刑曹에 명하여 모두 贖身하여 주도록 하였다(《위의 책》권84-24, 세종 21년 윤2월 신묘). 또한 세종 28년 7월에는 宰相의 妓妾所生子가 평생동안 賤役에 종사하여 아무일도 할수 없게된 것은 가련하니 앞으로는 京外의 女妓가 流品朝士에게 시집가서 낳은 子女는 나이가 비슷한 노비로서 그 父의 願에 따라 贖身免賤하도록 하였다(《위의 책》권113-23, 세종 28년 7월 을미).

그 후 成宗 9年 11월에 이르러 妓女는 定해진 夫가 없으므로 大小員人의 妓産을 전부 贖身 從良시키는 것은 綱常을 어지럽히는 일이라 하고 앞으로는 宗親 및 大小人員이 집안에 데리고 있는(家畜) 妓妾外에 때때로 立役하는 女妓와의 相奸所生은 贖身을 不許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經國大典》 刑典 賤妻妾子女條에서 「倡妓·女醫, 家畜所生外, 勿許爲良」이라 규정하게 되었다(周藤吉之, 〈앞의 글〉(三), pp.36~37).

⑥ 良賤不明인 者의 訴良과 良賤相訟

노비나 아니냐 하는데 있어 法的判斷 기준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戶籍인데도 고려말경에 이르면 흥건적의 난(공민왕 10년) 등으로 戶籍이 망실되어 良賤混淆가 심해져서 혹은 壓良爲賤으로 혹은 以賤從良으로 訟獄이 盈庭이라 하였다(《高麗史》권79-3, 食貨2, 戶口). 그리하여 공양왕 4년 2월 人物推辨都監에서는 決訟法을 정하여 良人이라 호소하는 자는 비록 良籍이 없더라도 그 賤籍이 不明하면 良人으로 하되 本主에게 비록 賤籍이 없더라도 여러代 노비로

부린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決給한다고 하였다(《高麗史》 卷85-37, 刑法2, 訴訟).

그 해 12월, 李太祖가 즉위한지 半年후의 下教에 의하면 노비여부는 실제 使役有無를 기준으로 하되 至正 辛丑(공민왕 10년) 이후 도망노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太祖實錄》권2-20, 태조 원년 12월 계유). 그러나 그러한 기준으로도 노비여부를 분명하게 해결할 수 없어서 태조 7년 4월에는 良賤籍 모두 不明한 자는 身良役賤으로 결정하여 官司의 使令으로 定屬시켰다(《위의 책》권13-11, 태조 7년 4월 경진). 다시 태종 5년 9월에는 良賤不明者를 司宰監水軍으로 충당하되 公處奴婢의 경우는 비록 舊籍이 없더라도 使役된지 오래 되었으면 움직이지 아니하고 (司宰監水軍으로 충당하지 않고) 公賤으로 決定한다고 하였다(《太宗實錄》권10-10, 태종 5년 9월 무술).

태종 13년 9월에는 相訟奴婢 中分法을 만들어서 소송당사자들에게 인원수 대로 소송목적물인 노비를 나누어 주도록 하였고(《위의 책》권26-20, 태종 13년 9월 정축), 良賤相訟事件 중 未決事件은 前決有無를 막론하고 소송목적물인 노비를 모두 司宰監水軍으로 소속시켰다(《위의 책》권26-25, 태종 13년 9월 계미). 相訟奴婢 中分法은 소송의 번거로움을 막고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만든 法이었지만 所期의 成果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폐단이 있었으므로 未決事件중 良賤不明(賤籍不明)者의 경우 限時法으로 모두 司宰監에 소속시켰던 것이나 그후에는 屬公시키기로 하였다(《위의 책》권26-38, 태종 13년 11월 정해 및 권26-51, 태종 13년 12월 정묘). 太宗 14년에는 奴婢辨正都監에서, 同王 15년에는 各司奴婢刷卷色이 良賤相訟을 辨正하거나 公賤을 推刷하였다. 同年 12월에는 戶口成籍을 마쳤지만 公私奴婢의 訴良은 심히 많았다. 그리하여 太宗 17年 正月 25日이후 公私奴婢의 訴良이 禁止되고 同年 윤5월에 公賤의 推刷가 완료되어 同年 9月 사헌부에서는 京外 公私賤 訴良未畢事의 是非를 막론하고 모두 補充軍에 소속시켰다(周藤吉之, 〈앞의 글〉(三), p.41 및 《太宗實錄》권34-22, 태종 17년 10월 무인).

⑦ 公私賤의 度僧과 僧人의 子女

公私奴婢들이나 良人들이 고려말경 賦役을 피하기 위해서 중이 되려는 자가 많았으므로 공민왕 5년 6월부터 허가(度牒)를 받아야만 중이 될 수 있도록 하

였다(《高麗史》권85-19, 刑法2, 禁令). 그러나 보통사람은 丁布 50필을 납부하면 중이 되었으나 公私賤人은 중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아니하였다(《위의 책》권84-29, 刑法1, 職制). 조선시대에 오면 태조 원년 9월, 중이 되기 위해서는 양반자제는 5升布 100필, 庶人은 150필, 賤人은 200필을 所在地 관청에 납부하여 度牒을 받아야만 하였다(《太祖實錄》권2-6, 태조 원년 9월 임인). 그러므로 公私奴婢가 그와 같이 많은 丁布를 내어 중이 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였다.

태종 6년 3월에는 寺社의 많은 田土와 奴婢를 屬公시켰으며 태종 8년 5월에는 양반자제들에게는 丁錢 5升布 100필만 내면 度牒을 내주었으나 公私奴婢를 포함한 有役人丁 등의 剃髮은 금지되었다(周藤吉之, <앞의 글>(三), p.43 및 《太宗實錄》권15-24, 태종 8년 5월 무오). 그러나 태종 16년 8월 禮曹의 啓에 따라 그해 7월 이후 自願하여 중이 되려는 자에게는 丁錢을 받고 度牒을 내주고 7월이전에 삭발한 자 중 各宗 大選外 僧人은 다음해 3월 말일 限으로 良賤 및 중전에 度牒을 받은 有無를 막론하고 丁錢 없이 度牒을 成給하되 그후의 無度牒僧人은 依律論罪한다고 하였다(《위의 책》권32-10, 태종 16년 8월 신유). 世宗 11年 4月에는 司憲府에서 啓하기를 몰래 머리 깎고 중이 된 자가 많다는 것과 위법으로 (丁錢납부 및 度牒없이) 중이 된 자를 還俗시키고 그 父母 및 師僧과 寺主 등을 모두 엄중히 논죄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賤役을 면하고자 은밀히 머리깎는 자들이 많으니 이들을 수색하여 즉시 科罪해야 한다고 하였다(《世宗實錄》권44-6, 세종 11년 4월 신묘). 그럼에도 불구하고 公私賤口나 避役逃亡者가 度牒을 濫受하여 이를 賣買하는 등으로 公私賤口로서 중이 된 자가 많아져서 軍額이 날로 減少하였으므로 세종 20년 3월, 다시 度牒法을 申明하여 里正이 無度牒 僧人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論罪하였다(《위의 책》권80-22·33, 세종 20년 2월 계유·3월 병오).

세조는 佛敎를 믿어 佛寺를 일으키고 중들을 많이 使役시키면서 大量으로 度牒을 발급하였지만 그 중에서는 公私賤도 포함되어 세조 7년 3월에는 公私賤口가 제멋대로 중이 되는 것을 금지시켰으며 佛經을 암송할 줄 알고 僧行있는 자 중에서 골라 正布 30필을 받아서 度牒을 발급하도록 하였다(周藤吉之, <앞의 글>(三), p.44 및 《世祖實錄》권23-27, 세조 7년 3월 경술). 그러나 세조 7년 6월 刊經都監을 설치하였고 同王 8年 3月 예조의 啓에 의하면 회암

사重修時와 그 이전 세조 4년 유점사 등 여러곳의 赴役 僧人 수만명에게 度牒을 내주었다(《위의 책》권28, 세조 8년 3월 기사 및 권 24-25, 세조 7년 6월 을유). 세조 10년 이후에는 나라에서 國役이 있으면 官에서 空名度牒 수천 백통을 발급하여 幹事者가 한통당 綿布 몇필로 팔아서 役事 비용에 충당하였다(《위의 책》권33-13, 세조 10년 5월 무오).

그러나 睿宗 원년 10월 임금은 한명희와 최항 등에게 명하여 禁僧條件을 草하도록 하였는데 그들의 草啓에 의하면 度牒法이 비록 《經國大典》에 있으나 그 중에서 鄉吏·驛子·官奴 등이 避役하기 위하여 위법으로 삭발한 자가 많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心經·金剛經·薩怛陀·法華經 등을 시험보여 合格者에게 丁錢으로 正布 50필을 받고 度牒을 내주며 위반자는 처벌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睿宗實錄》권8-14, 예종 원년 10월 정축). 成宗 원년 3월에는 시험과목 중 분량이 많은 法華經은 빼고 또 丁錢도 正布 30필로 줄여 주었으며 이것이 그대로 《經國大典》 禮典 度僧條에 등재되었다. 그리고 성종 9년에는 公私賤으로서 중이 된 자 중 度牒이 없는 자는 還俗시키고 私賤도 屬公하였다(周藤吉之, 〈앞의 글〉(三), p.45). 또 《經國大典》 刑典 公賤條에 避役하여 僧尼가 된 자에게는 杖 100을 친 후 極邊殘邑의 노비로 永屬시키고 사정을 알고 있었던 師僧尼는 制書有違律로 論罪하고 還俗시켜서 身役을 지운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大明律直解》권4, 戶律 戶役 私度僧道條의 杖 80보다 刑을 加重시킨 것이었다.

世祖 12년 정월 僧人의 子女에 관해서는 良妻所生일지라도 公賤에 소속시키도록 經國大典(世祖 7년의 辛巳大典 刑典을 의미)에 규정되어 있다는 형조의 啓에 대하여 임금은 제주도의 僧人은 軍人이 되어 妻子를 거느리고 있어 平民과 다름 없으니 良女와의 사이에 낳은 子女는 賤人으로 삼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世祖實錄》권38-4, 세조 12년 정월 갑인). 또 世祖 12년 6월에는 僧人이 良女를 奸하여 낳은 子女를 公賤으로 하여 이를 推刷하도록 하였다(《위의 책》권39-13, 세조 12년 6월 갑인).

⑧ 奴婢에 대한 法制上的 差待와 賤人들의 버슬길(軍功受職 등)

우리의 前近代社會는 儒敎的 身分制社會였으므로 그 身分等級에 따라 刑罰法規가 다를 수밖에 없었고 특히 노비의 主人에 대한 범죄는 엄중히 처벌하였

으며, 반대로 主人의 노비에 대한 범죄는 가벼웠다. 이는 《經國大典》 刑典 用律條에 의하여 依用하게 된 大明律의 여러 條文에 나타나 있으며 奴婢主는 노비에게 자유롭게 구타·감금 등 私罰을 科할 수 있었으므로 濫殺하지 않는 限 처벌되지 아니하였고 반대로 노비가 주인에게 犯行하면 엄벌하였음은 물론 贖身放良되어 自由人이 된 노비였던 자도 옛주인을 구타하면 노비가 家長을 구타한 경우의 형벌(斬首刑)에서 1등급을 減하여 杖100 流3000里에 처하였고 심지어 노비였던 자가 舊家長에게 욕설만 하여도 明律의 家長을 욕설한(꾸짖은) 경우의 형벌(絞首刑)에서 2등급을 減하였으며 舊家長을 告訴하면 受理하지 않고 오히려 告소인을 杖 100 徒 3년에 처하도록 하였다(《世宗實錄》권57-35, 세종 14년 9월 계유 및 《大明律直解》권20, 刑律 鬪毆 奴婢毆家長條·권21, 刑律 罵詈 奴婢罵家長條 등과 《經國大典》 刑典 告尊長條). 노비와 그 주인간의 犯罪문제가 아닌 단순한 良賤人間에도 刑罰法規上에 差別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大明律直解》권20 刑典 鬪毆 良賤相毆條에 의하면 노비가 良人을 구타하면 보통사람이 타인을 구타한 경우보다 刑을 1등급 加重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篤疾成病이 되면 犯人을 絞首(死刑)하고 致死한 경우에는 斬首한다고 하였다. 반대로 良人이 타인의 노비를 구타한 경우, 단순폭행에는 처벌규정이 없고 致傷이나 致死해야 처벌하는데, 보통사람의 경우보다 減 1등하고 致死가 故意的인 殺害로 인정될 때만 絞首刑에 처한다고 하였다.

賤人들은 고려전기에는 거의 벼슬길이 막혀 있었으나 武臣亂이후 그들의 官職進出이 활발하여 그 중에서는 高官으로 올라간 자도 많았다. 그러나 忠烈王이 元에 올린 글에 나타난 바와 같이 八世戶籍에 賤類가 없어야 벼슬할 수 있다는 원칙은 고려후기에도 준수되어 母系가 官人·官妓 기타 賤類였을 때에는 限品(보통 7품 이하)으로 入仕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것도 清要職은 바랄 수 없었다. 《高麗史》권95-37, 列傳8 金漢忠傳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록 고려 전기에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金漢忠이 登科하여 高位職으로 올라갔으나 그 妻가 文宗의 婢妾之女라는 이유로 臺省의 官료가 되지는 못하였다. 또 고려중엽에도 《高麗史》권121-3, 列傳34 庾碩傳에 있는 바와 같이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 兪承·전라 二道의 按察使를 거친 良吏였음에도 그의 증조모가 예종의 後宮(平主吏女)의 딸이라 하여 臺諫이나 政曹의 벼슬은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려후기에 이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賤女所生子 중 崔沆(官妓의 子)

· 崔嬪(婢妾의 子) · 辛曉(寺婢의 子)처럼 政權을 좌우한 자도 있었다. 그와 같은 賤妾子孫이 아닌 노비들도 고려후기에는 功을 세워 將軍까지 된 자가 있었다(周藤吉之, <앞의 글>(三), pp.50~53).

조선시대에 오면 유교의 名分論에 따라 다시 嫡庶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태종은 王室의 족보인 璿源錄 · 宗親錄 · 類附錄 등을 만들어 王室內에서부터 嫡庶를 差待하였다(《태종실록》권24-21, 태종 12년 10월 무인; 권26-34, 태종 13년 10월 무진; 권27-3, 태종 14년 정월 신묘; 권29-47, 태종 15년 6월 경인; 권34-16, 태종 17년 9월 갑인). 그러나 일정범위의 宗親들의 賤妾子女들은 모두 從良陞班되었다. 반면에 일반 士大夫家門의 賤妾子女들의 從良 · 陞班은 그렇게 쉽지 아니하였다. 물론 조선전기에도 軍功이나 技術로서 賤妾子女나 노비 등 賤人들이 免賤하여 官人이 된 경우도 있으나 巴山君 趙得琳과 같은 특수한 예외 경우 이외는 限品敍用法의 適用으로 微官末職에 그쳤다. 즉 世祖 13년의 李施愛亂 때에는 軍器 · 軍糧을 수송한 노비를 포함하여 參戰(征討)한 有功노비 1200여명이 免賤되어 新良人이라 하였으며 그들 중 甲士로 된 자도 있었다(《世祖實錄》권42-43, 세조 13년 6월 계축 및 周藤吉之, <앞의 글>(三), p.61). 또 그 해 建州衛 李滿住의 征討 때에도 有功노비가 免賤되었다(《위의 책》권46-13, 세조 14년 4월 무오). 成宗 2년 8월에도 原從功臣인 妾子는 限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公私賤은 모두 免賤하였는데(《成宗實錄》권11-16, 성종 2년 8월 을축), 그러한 원종공신은 조선중엽의 임진왜란 · 병자호란 등 外患과 反正 등 政變 그리고 이괄난 및 조선후기의 戊申亂 등 內憂에 이르기까지 많이 量産되어 多數 公私賤이 免賤되었다. 宣武 原從功臣 錄券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錄券을 살펴보면 원종공신 중 公私賤人이 아주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원종공신수는 宣祖 때의 扈聖 原從功臣이 2,475인(《宣祖實錄》권186-3, 선조 38년 4월 기유), 仁祖 때의 靖社 原從功臣이 대략 2,000명~2,500명으로 적은 편이나 宣祖 때의 宣武 原從功臣과 英祖 戊申亂 때의 奮武 原從功臣은 각각 8,000명~9,000명이나 되었다(《大典會通研究》吏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3.12, 해설편, p.240).

⑨ 奴婢의 軍服務(軍役)關係

다음으로 노비의 軍服務關係를 살펴보자. 고려말 禡王 4년에 倭寇를 대비하

여 烟戶軍이 창설되었는데 烟戶軍은 人吏·驛子와 公·私奴婢로 구성되었다(《高麗史》권81-28, 志35, 兵1). 또 禡王 10년에는 각 道の 閑良子弟를 골라 補充軍이라 하여 府兵을 實하게 하였다(《위의 책》권81-31, 志35, 兵1). 조선 시대에도 烟戶軍이 있으나 奴婢가 포함된 軍으로서는 조선전기부터의 雜色軍과 조선중엽부터의 東伍軍이 주된 것이다. 또한 補充軍도 고려시대와는 달라서 조선 태종이후 주로 賤妾所生이나 身良役賤층으로서 구성되었다. 여하간 雜色軍·東伍軍·補充軍(補充隊)에 관해서는 《大典會通研究》 兵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5.12, pp.374~391, 해설편 20,21,22에서 서술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한다. 다만 덧붙칠 것은 公私婢가 平民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 중 지방 거주자는 津尺·倉庫直·牧子·干·急唱 등 役을 지우고 서울 거주자로서 有實한 사람은 錢내 差備로 삼으며 그외 사람은 繕工監의 營繕干으로 삼되 立役者에게는 奉足 2명을 주고 16세에서 60세까지 복역시키는 등 補充軍의 예에 의한다는 것이다(《世宗實錄》권57-29, 세종 14년 9월 병진). 또 세종 19년 6월에는 公私婢가 平民에게 시집가서 낳은 딸을 闕內之任으로 差定하도록 하였다(《위의 책》권77-41, 세종 19년 6월 무인). 또 나이 16세가 되어도 補充軍으로 付籍하지 아니하거나, 付籍된후 기한내에 現身하지 아니하거나, 現身後 도망친 자에 대해서는 申告를 받아 公賤은 本司로 되돌려 보내고 私賤은 都官(장예원의 前身)에 소속시켜서 그 子孫들을 賤人으로 한다는 世祖 7年 7月の 《經國大典》 刑典(《세조실록》권33-30, 세조 10년 6월 갑진에 써 있다)의 규정은 성종 5년의 《經國大典》(甲午大典) 刑典에서 정리된 후(《成宗實錄》권40-2, 성종 5년 3월 무자의 掌隸院의 啓), 다시 “告狀後過三年 不受立案者”도 陳告 還賤 대상자로 추가되어 現存《經國大典》(성종 16년의 乙巳大典) 刑典으로 전해온 것이다(周藤吉之, <앞의 글>(四), pp.69~70). 그리고 서울 雜色軍의 편제는 25인을 隊로 하여 隊正을 두고 5隊를 旅로 하여 旅帥를 두며 3旅를 1將이 거느리게 하였는데 그 將을 里將이라 하였으며 里將은 分番·宿衛하였다(《世祖實錄》권41-24, 세조 13년 3월 경인). 그러나 예종 원년 6월 吏曹判書 洪應이 啓하기를 里將·里帥를 혁파하고 지방 守令이 軍民을 겸하여 통솔하는 예에 의거 五部の 官吏가 품계에 따라 겸무하도록 하자고 하여, 임금이 啓한대로 하게 하였다(《睿宗實錄》권6-4, 예종 원년 6월 무오).

그외 奴軍으로서 公私賤중에서 武勇있는 자를 뽑아 세조 5년 9월에 창설한

壯勇隊가 있다. 成宗 元年 2月 壯勇隊에 이미 入屬된자 이외 새로 賤人이 入屬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成宗實錄》권3-23, 성종 원년 2월 기묘) 良人중 入屬者가 없어서 성종 6년에 壯勇隊를 壯勇衛(正祖 9年 7월에 창설된 壯勇衛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로 개칭하였지만(《위의 책》권62-6, 성종 6년 12월 신묘) 여전히 良人의 入屬이 부진하여 구성원은 주로 賤人이었는데 그들도 所定근무를 마치고 去官하면 免役되었다. 壯勇隊는 5衛중 忠武衛 5部에 分屬되며, 各 1隊씩 輪次 入直하였는데 그들의 遞兒職으로서 上林園職을 1년에 4都目으로 하여 歲末·4月·7月·10월에 5품 이하 중9품까지 모두 30명을 임용하였으나 그후 澈아직수가 6품이하 15명으로 줄어졌다(《世祖實錄》권17-27, 세조 5년 9월 정유 및 《大典會通研究》 兵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5.12, p.19·p.32).

⑩ 奴婢訴訟과 그 辨正機構

고려 중엽이후 田制와 奴婢制가 문란하여 종래의 都官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자, 元宗 10년·충렬왕 14년·27년·공민왕 원년·禡王 7년·14년 등으로 여러차례 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였다(《高麗史》권 77-27, 志, 百官2, 諸司都監各色). 또 충렬왕 7년 人物推考都監을 會問司로 고치고, 공양왕 3년에는 人物推辨都監을 두었으나 이듬해에 혁파하고 都官에게 그것을 주관하도록 하였지만 奴婢相訟은 쉽게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조선에서도 태조 즉위초에 고려제도에 따라 都官을 두고 노비에 관한 일을 관장시켰으며 都官은 세조 12년에 辨定院으로 개칭하고 同王 13년에는 掌隸院으로 改稱하였다. 그러나 都官이나 掌隸院에서 고려말기 이래로 지속되었던 奴婢相訟을 해결하기 어려워서 조선초기에도 奴婢辨正都監을 여러 번 별도로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태종 6년 3월 寺社奴婢 8만여명을 屬公시켰는데 그들 중에는 苦役으로 도망치거나 生死不明 등으로 立役이나 收貢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奴婢推刷色을 별도로 만들어 그들을 推刷하였다. 조선시대의 노비변정도감은 태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 5回 別立되었다(태조 4년에서 정종 원년까지, 정종 2년부터 태종 원년까지, 태종 5년·14년, 성종 12년). 그러나 노비에 관한 분쟁은 여전히 지속되었고 骨肉相爭이 深化되었으므로 태종 13년 9월 임금은 相訟奴婢를 소송당사자 두 편에 나누어 給與하는 이른바 奴婢中分 決絶法을 만들어 서

을에서는 그해 10月, 지방에서는 12月까지 相訟을 결판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태종 14년에 誤決을 호소하는 자가 있었으므로 그 해 4월 노비소송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비변정의 大都監을 설치하여 100인의 官員이 1만여건의 노비변정을 심리·판결하였다.

그 후 세종·문종 때에도 奴婢爭訟은 여전히 많았으나 관료들의 반대로 변정도감은 설치되지 아니하였다. 단종 2년 3월 都官의 相訟未決의 노비 숫자가 4,848건이나 되었다고 하며 세조 말년에는 노비소송을 맡은 官員이 豪勢의 무리를 겁내어 誤決하거나 決訟을 지연시켰으므로 弱者의 억울함이甚했다고 하며 그래서 成宗 12년에 奴婢斷訟都監을 別立하여 掌隸院과 함께 年內에 판결을 마치도록 하였다(周藤吉之, <앞의 글>(四), pp.74~76 및 <成宗實錄>권 125-2·3, 성종 12년 정월 무인·기묘). 그러나 農事철인데도 無知한 백성들이 노비의 相訟 때문에 서울에 雲集하여 米價가 올랐고 지방민 또한 마찬가지로 농사를 돌보지 않고 爭訟을 일삼으면서 郡縣에 몰려들었으므로 掌令 李杵의 啓請에 따라 임금이 斷訟都監과 掌隸院에 傳旨하여 原被告 및 事件關係人이 모두 서울에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잠시(가을까지) 停訟하도록 하였다(<成宗實錄>권 128-4·5·6, 성종 12년 4월 갑인). 노비에 관한 소송을 신속히 종결지으려 하다 보니 誤決이 많아졌으므로(<위의 책>권 129-20, 성종 12년 5월 신축), 임금은 斷訟都監이 재판(決折)한 文券을 재조사(磨勘)하기 위하여 郎廳 20명을 揀擇하여 보고하도록 吏曹에 지시하였다(<위의 책>권 129-23, 성종 12년 5월 임인). 그러나 斷訟都監의 決訟文券의 磨勘은 翌年인 成宗 13년 12월까지 계속되었다(<위의 책>권 149-7, 성종 13년 12월 을해).

太宗 14年 윤 9월에 宗親·駙馬와 文武官의 노비수를 品階別로 限定(1品 130명~150명, 2品 100명~130명, 3品 90명~100명, 4品 80명~90명, 5·6品 60명, 7·8·9品 30명, 有職人子孫 20명, 庶人子孫 10명, 公私賤人受職者 10명, 無職 公私賤人 3명 등)하도록 의정부와 6조에서 의논하여 啓하였으나 品階로서만 그렇게 노비수를 限定하기도 어려워 시행되지는 못하였다(<太宗實錄>권 28-30, 태종 14년 윤9월 정묘). 이는 士大夫家의 過多한 노비를 屬公하자는 의도가 엿보이나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자 太宗은 寺社의 田土와 노비를 屬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⑪ 公奴婢의 推刷 및 陳告와 推刷機構

나라에서는 도망치는 公奴婢의 推刷을 위하여 奴婢刷卷色·奴婢推刷色·推刷都監을 설치하는 한편 사람에게 陳告를 허용하여 施賞하였다. 태종 5년 9월 敗亡寺社의 奴婢가 무식한 僧人의 私庄에 移置되어 使役된 경우 및 革去寺社 奴婢가 누락된 경우 등에는 사람들에게 陳告를 허용해서 그 3분의 1은 陳告者에게 주고 나머지는 屬公하도록 하였다(《太宗實錄》卷10-11, 태종 5년 9월 무술). 또 소송당사자 양쪽 모두가 不當하여 屬公된 노비가 도망쳤을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陳告를 허용하여 陳告者에게 3분의 1을 賞給하고 나머지는 屬公하였다(《위의 책》권11-28, 태종 6년 6월 갑자 및 권18-26, 태종 9년 9월 을미). 그러나 태종 14년 2월 의정부의 啓에 의하면各司奴婢를 推刷함에 있어서 官員의 不用心으로 누락자가 많았으므로 成籍하여 매년 季月에 出生·死亡者를 刑曹에 보고하고 3년에 1次 改籍하자는 것이었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위의 책》권27-10·11, 태종 14년 2월 임자). 同年 8月에는 刑曹의 상소에 따라 도망노비 신고자에게는 신고된 노비 1명당 楮貨 50張을 賞으로 주고 形止案에 付籍되지 않고 누락된 노비의 신고자에게는 楮貨 100張을 賞으로 주도록 하였다(《위의 책》권28-14, 태종 14년 8월 무오). 또 同年 9月에는 刑曹都官의 啓에 따라 公奴婢를 숨겨두고 使用하는 자는 職牒을 收取하고 杖 80을 친후에 水軍으로 充定하도록 하였다(《위의 책》권28-23, 태종 14년 9월 임오). 태종 15년 8월에는 安城君 李叔蕃의 상소에 따라各司(公)奴婢刷卷色을 두도록 하였다(《위의 책》권30-21, 태종 15년 8월 계사).

태종 17년 윤 5월各司 奴婢刷卷色の 상소에 의하면 公奴婢가 文契不明으로 많이 遺失된 반면에 良人이 軍役을 피해서 들어온 자가 있는가 하면 私賤이 主人을 背反하고 投屬한 자 등이 있다고 하고 앞으로 官吏의 引繼引受(解由)時에 奴婢에 관한 것을 明白히 하고 노비 10명당 頭目 1명을 정하여 노비의 도망이나 移居時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도망노비의 이웃·里正長과 함께 도망자·避役者를 推刷하도록 하되 推刷하지 못한 경우에는 推鞠 刑問한다는 것과 甲午年(太宗 14年) 6月 28日 이후(官婢가) 良夫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은 이미 내린 바 있는 教旨에 의거 從父爲良한다는 것이었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太宗實錄》권33-45·46, 태종 17년 윤5월 신유). 태종 17년 6월各司 奴

婢刷卷色은各司의奴婢 116,602명에 대한推刷를 마쳤는데 그중 奴가 59,585명 婢가 60,017명이었다(《위의 책》권33-58, 태종 17년 6월 정해).

세종 즉위년 9월에는奴婢刷卷色을貢賦詳定色으로 고쳤다(《世宗實錄》권 1-22, 세종 즉위년 9월 신미). 세종 3년 9월 刑曹에서 啓하기를 종래 公奴婢 중 帳籍에서 누락된 노비 3명 이상을 陳告하면 모두 免役되어 그로 인하여各司奴婢가 많이 免役되었으므로 장차各司의 일을 廢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앞으로는 그러한 경우에 免役대신 陳告된 노비중 壯實한 자로서 賞給하자고 하여 임금에 이예 따랐다(《위의 책》권13-16, 세종 3년 9월 을해). 세종 15년 정월 《續刑典》(新撰 經濟續六典 內의 刑典)의 諸司 逃漏奴婢 陳告條에 의하면 公奴婢중 逃漏避役者는 他人의 陳告를 허용하여 陳告者에게 신고된 노비수의 3분의 1을 賞으로 주어 受賞者가 죽으면 6개월내에 本司로 되돌려 보내야 하며 子孫이 계속 부리고 되돌려 보내지 아니하면 依律論罪한다고 하였다(《世宗實錄》권21-6, 세조 6년 7월 경자). 세종 19년 11월各司奴婢推刷色(그 무렵에 다시 설치됨)이 상소하기를各司의 노비가 贖身한 후 代納된 노비가 곧 도망치는 일이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贖身된 本主(贖身된 노비)가 生存하였을 경우에는 그로서 充立하도록 하자고 하여 임금에 이예 따랐다(《世宗實錄》권 79-16, 세종 19년 11월 임자). 그리하여 세종 21년 5월의各司奴婢推刷色의 啓에 의하면 노비명부(正案·續案)상으로 124司, 見推노비 21만수천명, 未推노비 2만 수천 명이었다(《위의 책》권85-30, 세종 21년 5월 기미). 세종 23년 4월에는 의정부에서 啓하기를各司노비 5·6명 이상을 陳告한 公賤은 終身免役시키도록 하였던바 京中の 壯實노비가 免役되고자 하여 모두 蜂起하여 陳告하였고 陳告된 노비는 모두 京外에 散居하는 자들로서 實所得이 없었으므로 陳告者에게는 續典에 의거 所告奴婢를 賞給하고 免役을 不許하자고 하여 임금에 이예 따랐다(《위의 책》권92-22, 세종 23년 4월 을해). 이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종 3년에 京中各司奴婢중 逃漏한 奴婢를 陳告한 자의 免役法을 고쳐서 賞給法으로 바꾸었는데 그 후 다시 免役法으로 고쳤던 것을 세종 23년에 다시 賞給法으로 바꾸었던 것이다. 세종 23년 5월에는 노비를 陳告하여 受賞한 자가 受賞後 그 노비의 所生子女를 使役함을 不許하고 모두 屬公시키도록 하였다(《위의 책》권92-27, 세종 23년 5월 기유). 그 후 29년 8월에 세종은 지방 각 고을 守令들로 하여금 宮奴婢를 推刷 成籍하여 內需所로 보내어 자

세히 조사하도록 하였다(《위의 책》권117-10, 세종 29년 8월 계미).

세조 6년 7월 諸司推刷 提調의 상소에 의하면 漏落된 노비를 陳告한 자에게 그 3분의 1을 賞으로 주도록 하였으나 대체로 陳告된 노비는 陳告者를 원수처럼 보아서 服役하지 않고 도망쳤고 受賞者도 자신에 限하여 使役시키도록 하였을 뿐 子孫에게 상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陳告를 꺼리어 逃漏者數가 수만명이나 되었으므로 陳告된 노비 3명당 1명(2명 陳告경우는 1명)을 永久히 주도록 하고 이듬해 12월말일까지 自首하는 경우에는 自首한 노비 본인과 그를 숨겨 주었던 許接人들 모두 論罪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世祖實錄》권21-6, 세조 6년 7월 경자). 세조 7년 4월 諸司奴婢推刷 都提調 黃守身 등의 啓에 의하면 간사한 무리들이 나이를 속여 除役하거나 혹은 무거운 役을 피하여 가벼운 곳에 就役하고, 혹은 生을 死로, 賤을 良이라 하여 公賤이 날로 減少할 우려가 있어 임금이 諸司推刷色에 명하여 그동안 公賤을 推刷한 결과 지금 20수만명이나 成案하였다는 것과 推刷을 못다한 경우 및 陳告相訟 未決奴婢는 都官의 主掌으로 속히 分揀하여 續案에 등록하라는 것 및 陳告 受賞奴婢는 受賞者가 子孫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屬公한다는 것이었다(《위의 책》권24-1, 세조 7년 4월 임신). 《經國大典》刑典 公賤條에서는 逃漏奴婢 陳告의 경우 每 4명당 1명을 賞으로 주도록 하고 3명 이하 陳告 경우에는 貢布 및 楮貨를 賞으로 주도록 하였다.

成宗 9年 12월에 奴婢推刷都監 提調가 事目을 啓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推刷時 도망·은닉의 흔적이 현저하여도 直招할 수 없는 자는 朝士·功臣·有蔭子孫·軍士 등이나 그 이외는 刑杖을 치면서 직접 推問할 수 있다는 것과 諸司奴婢 중 違法으로 避役하여 僧尼가 된 경우에는 還俗시키고 各道 散居의 諸司奴婢는 20년에 1次 推刷함에 있어 世宗 21年(己未年)의 例에 따라 朝官을 破견하여 推刷 成籍시킬 것, 그리고 여러 고을의 담당 吏胥·奴子頭目 등이 뇌물을 받고 逃漏奴婢를 숨겨주는 수가 있으므로 그들이 소관 노비를 遺漏하였을 경우에는 담당 吏胥와 頭目奴子 등을 처벌하되 사면령이 있어도 용서하지 않고 殘驛吏 및 奴로 永屬시키며, 여러 고을의 노비 및 營노비·鄉校노비 등도 모두 推刷 成籍시킨다는 것이었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成宗實錄》권99-1, 성종 9년 12월 기축). 그러나 이듬해인 성종 10년 정월에 이르러 朝官 破견을 가을까지 정지하고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推刷 成籍시켰다(《위의 책》권100-10,

성종 10년 정월 기묘). 그 때 推刷都監의 啓에 따라 諸司 逃漏奴婢가 스스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自首者와 그를 숨겨 주었던 사람(許接人) 모두에게 죄를 주지 않고 그 役價나 身貢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였다(《위의 책》권100-5, 성종 10년 정월 기사). 성종 15년 8월 推刷都監은 京外奴婢 261,984명, 諸邑·諸驛奴婢 90,581명을 推刷하였다(《위의 책》권169-3, 성종 15년 8월 정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推刷되지 못한 公賤이 10만명 이상이나 되었으며 그 이유는 陳告者에게 賞으로 준 노비가 도망쳤을 경우에 陳告者가 죽게 되면 도망친 노비 대신 다른 노비로서 나라의 推刷에 응해야 하므로 도리어 그 가족이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누구도 陳告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임금은 賞給된 노비는 상속이 可能하도록 永給法으로 고치게 하였다(《위의 책》권170-6, 성종 15년 9월 임인). 또 그러한 未推刷奴婢를 모두 推刷하기 위하여 그 후 推刷修改都監이 설치되었고 성종 19년 정월 그 都監 提調 孫舜孝등이 修改案을 올리면서 얻어진 公賤이 2000여명이라 하였다(《위의 책》권211-15, 성종 19년 정월 경술).

(3) 朝鮮後期の 奴婢

① 公奴婢의 종류와 身貢의 減免

公賤은 노비의 소유주가 왕실 또는 國家로서 內奴婢·寺奴婢·官奴婢·驛奴婢·校奴婢 등이 여기에 속하였는데 內奴婢는 內需司와 각 宮房소속의 노비를 말하고 寺奴婢는 中央各司 소속의 노비를 말하며 官奴婢는 各邑이나 監營·兵營 소속 노비로서 邑奴婢 또는 營奴婢라고도 하였다. 기타 驛노비는 역에, 校노비는 향교에 소속된 노비이다(全炯澤, 《朝鮮後期 奴婢身分研究》, 一潮閣 1989, pp.1~2 및 《備邊司謄錄》192冊, 純祖 元年 3月 15日과 《星湖僊說類選》卷4,下). 公賤에 대칭되는 私賤은 士庶之奴라 하였다(同上). 私賤 즉 私奴婢의 소유주는 대개 士大夫였으나 때로는 庶人과 賤人도 있어서 노비가 노비를 소유(중국에서는 이를 重口라 함:仁井田陞)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庶人이나 賤人인 노비 소유주는 거의 양반의 良妾子孫(庶人) 또는 賤妾子孫(賤人)이었을 것이고 士族과 血緣關係가 전혀 없는 私賤人이 노비를 소유하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公賤의 경우에는 富를 축적하여 노비를 소유하는 수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후기의 內奴婢 가운데는 內需司 노비수가 제일 많았고 寺奴婢 중에서는 戶曹에 소속된 자들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內奴婢의 경우 함경도와 평안도·황해도 등 북부에 많은데 비하여 寺奴婢의 경우는 경상도와 평안도에 압도적으로 많았다(平木實, 《朝鮮後期奴婢制研究》 知識産業社, 1982, pp.35~42). 《續大典》刑典 私賤條 註에 노비의 1년간의 身貢이 奴에게서는 綿布 2匹, 婢에게서는 綿布 1匹半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顯宗代에 이미 奴1필반, 婢1필로 감액하였다(《萬機要覽》〈財用篇〉奴婢貢 給代條). 그러나 실제상 성균관의 경우 영조 11년 이후에도 종전대로 징수하였고(平木實, 《앞의 책》, p.113) 또 英祖 13年 5月 左承旨 柳維의 所啓에 의하면 노비 한 사람 당 身貢은 그의 役價와 잡비를 합하여 7·8냥에 달하고 있는데 (《備邊司謄錄》101冊 영조 13년 5월 16일), 綿布 1필당 2냥씩 계산하면 奴 2필 婢 1필 반은 奴는 4냥 婢는 3냥에 해당됨으로 사실상 거의 배를 받아내고 있었다는 것이다(平木實, 《앞의 책》, p.70).

英祖 31年(1755), 노비 身貢制의 개혁이후各司奴婢의 身貢이 奴 1필, 婢 반필로 減貢되는 등 그 폐단이 약간 시정되었지만 私奴婢에 대한 시정은 잘 이행되지 않았다(《備邊司謄錄》155冊 英祖 47年 12月 18日 및 152冊 英祖 44年 10月 7日과 133冊 英祖 33年 7月 18日). 英祖 31年(1774), 임금은 婢에게 身貢을 부과시키는 일은 漢唐代에도 없던 잔인한 법으로서 영구히 減輕함이 옳다고 하였다(《위의 책》116책 영조 31년 2월 7일). 그후 英祖 50년 3월 임금은 앞으로 公私賤을 막론하고 女子인 노비는 身貢을 전부 減免한다고 하였다(《위의 책》156책, 영조 50년 3월 11일). 그러나 婢貢의 폐지 범위를 寺婢뿐만 아니라 驛婢에 까지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臣下들이 반대하였지만(平木實, 《앞의 책》, pp.80~81 및 《承政院日記》1349冊 영조 50년 3월 12일) 英祖는 寺婢와 驛婢는 다를 것이 없다고 하고 寺婢貢의 폐지로 인한 不足財源 充當(給代)을 常賑穀으로 하도록 하였는데 驛婢도 그렇게 함이 좋다는 것이었다(《備邊司謄錄》156冊 영조 50년 3월 14일 및 《承政院日記》1349冊 같은 연월일). 하지만 常賑穀은 水害나 가뭄 또는 도적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에 放出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므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서(《承政院日記》1349冊 英祖 50년 3월 13

일) 驛婢貢에 대한 給代는 역에 소속되어 있는 馬位田結에서 얻어지는 24,000냥으로 충당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임금도 이에 따랐다(《承政院日記》1349冊 영조 50년 3월 15일). 反面 私婢에 대한 給代는 실시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私婢의 소유자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平木實, 《앞의 책》, p.84).

노비 身貢은 종래 奴 2필, 婢 1필반에서 顯宗代에 奴 1필반, 婢 1필로 감액된 뒤 다시 영조 31년부터 奴 1필, 婢 반필로 감액되었다가 영조 50년에는 婢貢을 없앴음을 앞에서 살펴 보았거니와 조선후기 私奴婢의 大多數를 占하는 이들 外居노비들은 主人의 土地를 빌려서 耕作할 뿐만 아니라 自耕地를 所有하거나 第3者의 土地를 빌려서 耕作하는 小地主 또는 小作人으로서 그 地位가 변화되었다. 비록 主人의 땅을 빌렸을 경우에도 小作料는 他小作人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全炯澤, 《앞의 책》, pp.75~79).

② 內寺奴婢의 選上·立役制에서 納貢制로의 變化와 雇立制의 등장

內奴婢와 中央各司의 寺奴婢뿐만 아니라 지방 각 고을의 官奴婢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후 상당수가 死亡·逃散으로 없어져서 궁방전의 경작이나 邑中의 使喚과 京邸奴婢의 役을 일반 백성(사노비 포함)들을 동원해야만 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그 결과 公奴婢는 選上·立役者라는 地位에서 벗어나 身貢 납부자라는 경제적부담자로 전환되었는데 위와 같이 身貢의 부담마저 減少되었으므로 그들이 소속 官司로 부터 經濟的 예측관계를 벗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全炯澤, 《앞의 책》, pp.42~119). 外見上 《度支志》와 《秋官志》에서는 正祖代까지 공노비의 選上·立役이 계속된 듯 보이지만 실은 매월 급료를 주어서 고용한 雇立人이었다(全炯澤, 《앞의 책》, pp.90~96). 그러한 雇立人의 신분은 대체로 노비였던 것 같다고 하지만(同上) 17세기 이후에 이르르면 良賤身分의 混淆로 종래 良人의 立役 職種인 皂隸·羅將·使令·書吏·書員 등 吏胥職에도 公私賤人이 募立되고 있었다(柳馨遠 《磻溪隨錄》 권15, 〈職官之制〉上 皂隸條)는 점에 비추어 종래 賤人의 立役處에도 良人이 雇立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다만 土木工事に 있어서의 募軍이나 雇立人 같은데에서 노비가 많았던 것은 否認할 수 없으나 대체로 그들이 月 6·7斗 또는 그 이상의 雇價나 勞賃을 받고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는 점에서 選上·立役制에서 賦役動員되어 身役을 제공하던 조선전기의 노비와는 그 성격이 달랐다(全炯澤,

《앞의 책》 pp.96~105). 이들의 급료는 戶曹에서의 料米와 兵曹에서의 料布 이외 刑曹에서의 贖錢을 그 財源으로 하고 있으며 常平廳과 같이 米布를 취급하는 衙門은 해당 衙門에서 雇價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大同法실시 이후 새로 등장한 貢人도 종전의 노비의 役을 대신하거나 雇立하였다(全炯澤, 《앞의 책》, pp.105~108).

노비로부터 받아들이는 納貢 物品은 米·布·錢이 주종목이었으나 기타 지방 특산물도 있었다. 매년 수납된 노비의 身貢은 각 중앙관청의 경상비로 썼을 뿐만 아니라 救荒을 위한 賑資로도 사용하였다. 納貢노비의 수는 成宗 때 35만 명, 孝宗 때 19만여명이었으나 英祖 때에는 立役奴婢가 納貢奴婢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줄어들어서 同王 31年 乙亥 減貢給代時에 給代摠에 나타난 수는 內奴婢가 5,574명 寺奴婢가 30,617명으로 모두 36,191명에 불과하였다. 각 관청별로는 戶曹·成均館·尙衣院의 納貢奴婢가 특히 많았다. 그들 納貢奴婢는 중앙관청과 지방관청간의 二重收貢으로 괴로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중앙관청과 宮房 사이에도 二重으로 收奪당하였고 官奴婢들도 本主와 本官(邑)으로부터 二重으로 收奪되어 도망칠 수밖에 없었으므로 減貢으로 도망자를 줄여 보자는 것이 爲政者들의 속셈이었지만 막상 減貢하고 나니 관청의 不足경비의 충당문제로 課外侵徵이 행하여 질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노비들의 생활은 減貢前과 별로 달라질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나라에서는 노비들을 良人身分으로 올려 줌으로서 冒避현상을 막고자 하였다(全炯澤, 《앞의 책》 pp.110~119).

③ 奴婢의 推刷와 그 담당기구

《經國大典》刑典 公賤條에 의하면 公賤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한 번씩 續案(노비의 출생·사망기록부)을 작성하고 20년마다 正案을 작성하여 本邑·本道·本司·司瞻寺·掌隸院·의정부·형조에 備置하도록 하였다. 조선후기의 노비 推刷도 前期에 비하여 外形上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나 다만 《續大典》刑典 公賤條에서各司奴婢는 式年마다 推刷하고 內奴婢는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推刷한다는 것과 노비를 명부에서 누락시킨 守令·色吏와 숨겨준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비롯하여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조선전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종 때의 奴婢辨正都監을 비롯하여 成宗代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奴婢推刷都監이 설치되었고 中宗 9年과 明宗 11年에도 설치되어 약 50년

에 한 번씩 설치하였으나 조선중엽에는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을 겪고난 후 사회가 혼란하여 근 100년동안 설치되지 않았다가 孝宗 6년(1655)에 한번 마지막으로 설치되었을 뿐이다(平木實, 《앞의 책》, pp.91~94). 물론 노비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掌隸院이 있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그 기능이 현저히 弱化되어 固有업무인 노비소송문제도 거의 그 職掌이 刑曹와 漢城府로 이관된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備邊司謄錄》115冊 영조 22년 4월 15일). 특히 刑曹는 刑獄을 관장하는 기관이었지만 그안에 掌隸司가 있어 隸一房에서는 京司奴婢, 隸2房에서는 外方奴婢를 맡아서 이들과 掌隸院을 겸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는 중론에 따라 영조 40년 10월 장예원을 폐지하고 그해 11월 27일 새로 保民司를 설치하였다(平木實, 《앞의 책》, pp.125~127).

여하간 孝宗初의 案付奴婢 19만여명 가운데에 收貢奴婢는 겨우 27,000여명이나 이들은 司膳寺에 소속하는 노비만이고 그외에도 의정부·尙衣院·충훈부·중부시·성균관·4學 등의 노비와 官奴婢(營·邑노비) 등이 있어서 收貢奴婢가 위 27,000여명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지만 10여만명은 새로 推刷할 수 있다고 하고 명부에서 누락된 노비는 士夫 및 品官의 妾과 그 子女가 많다고 하였다(《孝宗實錄》권14-6·7, 효종 6년 정월 임자·갑인).

孝宗 6年 正月 27日의 奴婢推刷都監 설치목적은 不足되는 財政(歲入 10만 석에 歲出 12만석)에 충당하기 위해서였지만 직접적 동기는 孝宗의 軍備擴張의욕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따라서 隱漏奴婢의 推刷뿐만 아니라 無後奴婢의 은닉재산도 推刷 대상이 되었다. 설치 당초의 推刷都監의 구성은 右議政을 都提調로 하고 禮·戶·刑曹의 判書와 漢城判尹 및 刑曹參判을 提調로 하였다. 또 堂下官으로서 都廳 2명과 郎廳 4명(각 2道씩 담당)을 두었다. 또 推刷御史를 道別로 2명씩 파견하려고 하였으나 경상도의 경우는 노비수가 10만명이 넘어 2명의 御史로 推刷하기가 어려워 경기·강원御史 각 1명을 감하여 경상도로 보내어 4명이 推刷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그러나 평안·황해·함경도는 中國使臣의 접대와 饑饉·大雪 등으로 추후 보내기로 하였다(全炯澤, 《앞의 책》, pp.121~126). 孝宗 6年 2月 17日에 마련된 推刷都監의 事目은 모두 26개 항목에 이르고 있는데 그 내용은 守丞·監官(時任座首로 임명)·色吏·頭目과 御史·監司등에게 推刷에 관한 업무지침을 시달하고 숨겨진 노비들에게 自首를 권유하여 免責을 약속함과 동시에 隱漏하였다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重罰을 받

게 됨을 알렸다. 위 事目에 이어서 備忘記로서 祖父때부터 生員·進士試 入格이나 文武科에 及第하여 그 자식과 손자가 冒良하고 있을 때에는 良人이 될 것을 허락하되 自首者에 限한다고 하였다(全炯澤, 《앞의 책》, pp.127~129 및 《孝宗實錄》권14-11·12, 효종 6년 2월 계유와 《承政院日記》134冊, 효종 6년 2월 19일).

효종 6년 8월에는 위 五道推刷事目的 문제점을 보완하여 兩西 및 함경도 推刷事目을 마련하였는데 약간의 항목을 추가·변경한 것이었다. 이러한 三道推刷事目도 실시과정에서 다시 문제점이 있어 同王 7년 7월 京中各司奴婢 推刷事目에서는 또 한 두 항목을 추가·변경하였다. 즉 노비에게 軍功·納粟·納銀으로 免賤·免役·免貢을 허가한다는 公文은 啓下公文이 아니면 還賤시킨다(五道推刷事目)고 하였으나 壬辰·丁酉의 兵亂時의 陣中에서 納米하여 免賤된 자는 비록 啓下公文이 아니라도 그 公文中에 承傳이란 말이 있으면 허락하여 주고 비록 元帖을 잃었더라도 依格 立案者는 허락하며 그 중 違格者는 還賤하고 公賤 중 비록 軍功으로 部將·守門將·判官·主簿 등의 帖文을 받았더라도 免賤의 公文이 없는 자는 허락하지 말며 南漢山城 軍功人은 따로이 詳察 처리 하라는 教(王命)가 있었다는 것이었다(전형택, 《앞의 책》, pp.130~132).

그 때 각 道에서 奴婢成冊이 上送되었는데 이때의 추쇄작업의 결과는 孝宗 8年 6月 「八道 新舊奴婢 摠數 別單」과 「京中各司 新舊奴婢 摠數 別單」으로 임금에게 上納되었다. 그 내용은 일부지방(忠淸左道)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元奴婢수가 대폭 감소하여 舊案의 200,515명이 新案에는 92,759명이었다. 그러나 舊案은 新案보다 雜頃奴婢나 公頃奴가 훨씬 많아서 이들을 뺀 實奴婢(收貢可能奴婢)에 있어서는 舊案 69,306명보다 新案이 79,992명으로 약간 증가되었다. 反面 京中各司奴婢의 추쇄실태는 舊案 41,995명에 비하여 新案 12,567명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元奴婢에서 公頃·雜頃者를 제외한 實奴婢도 舊案 15,350명에 비하여 新案 11,674명으로 減少하였다(전형택 《앞의 책》 pp.132~141). 노비추쇄 결과 成果가 좋은 守衛이나 監司는 포상 내지 加資되고 추쇄실적이 적은 자들은 문책되었다(전형택, 《앞의 책》, pp.141~142 및 平木實, 《앞의 책》, pp.105~106).

④ 逃隱奴婢 推刷事業의 不振과 그 弊端

孝宗이후에도 逃亡·隱漏奴婢數는 늘어 갔으므로 推刷를 계속하였으나 연기 또는 6년에 한 번씩하는 등으로 활발하지는 아니하였다(《備邊司謄錄》67冊 肅宗40年 8月 5日). 또 영조 때의 《續大典》에서는 陳告者에게 신고인원 6명 당 1명씩을 상으로 주도록 하였고各司奴婢는 式年마다 推刷하고 內奴婢는 10年限으로 추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法典의 규정대로 추쇄하지는 못하여 英祖 15年 11月 侍讀官 趙明履가 啓하기를 “西學 한 곳에서만 천여명이던 四學奴婢가 30년 동안이나 추쇄를 실시하지 못하여 지금은 100명도 못 남았다”(《備邊司謄錄》105冊 영조 15년 11월 11일)고 할 정도였다. 추쇄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흉년 때문인데(平木實, 《앞의 책》, p.108 및 《承政院日記》784冊, 영조 10년 8월 9일) 그로 인하여 도망·隱漏노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노비의 추쇄 때에는 본래 서울에서 推刷官을各司別로 내려 보내어 실시하였으나 추쇄 때 거느리고 간 吏隸들의 농간이 심하여 폐단이 흑심하였으므로 英祖 4年 8月 京官의 派送을 금지하고 本道의 剛明守令으로 하여금 추쇄를 맡겨 成案하여 上送하게 하였지만 京官과견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고 도망한지 오래된 자와 죽은자까지 추쇄하여 隣徵·族徵과 白骨侵徵의 폐단이 생겼다(《承政院日記》668冊, 영조 4년 8월 11일 및 684책 영조 5년 5월 13일과 전형택, 《앞의 책》, pp.146~148). 그리하여 조정에서 논의를 거듭한 후 영조 11년경부터는 평안도의 寺奴婢의 추쇄를 비롯하여 守令들이 추쇄를 맡게 되었으며 그후 영조 16년 4월에는 推刷官을 監司로 하여금 감독하게 해서 노비를 侵漁하거나 규정 이상으로 徵斂하는 자는 임금에게 보고하여 論罪하도록 하였다(《備邊司謄錄》106冊, 영조 16년 4월 6일). 그러나 그후에도 頗下(免貢)奴婢에게 納貢(錯抄)하게 하거나 노비頭目을 매로 때려서 奴婢가 加現하도록 獨括(加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承政院日記》987冊 영조 21년 6월 5일).

조정에서는 그러한 폐단을 막고 노비들의 圖頃을 예방하기 위하여 奴婢案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노비안은 노비가 살고 있는 고을에서 추쇄때 노비의 根派를 相考하기 위하여 해마다 出生·逃故를 기록한 초안을 만들고 이것을 기초로 3년간의 出生·逃故를 기재한 續案을 만들도록 하며, 이 式年 續案을 기초

로 다시 10년마다 奴婢根派 具載之案인 正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承政院日記》1165冊, 영조 35년 2월 24일). 그러나 奴婢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奸吏들이 농간을 부려 실제의 수보다 훨씬 많은 노비수가 기록되는 등 폐단이 생겼다(전형택, 《앞의 책》, pp.146~147).

그 다음 私奴婢에 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18세기의 사노비들은 海島나 北方邊境지역으로 도망쳐서 숨어 살거나 山에 들어가서 중이 되기도 하였는데 그들 중에서는 戶籍 기타 文書(補充隊立案 등)를 위조하여 良人身分을 冒稱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奴婢主들은 逃漏奴婢들을 推刷하게 되는데 推刷에는 폐단이 따랐으므로 우선 60年을 定限(時效)으로 하여 그 이상 시일이 흐른 久遠 逃漏奴婢에 대한 推刷는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전형택, 《앞의 책》, pp.188~195). 그렇게 하여도 奴婢推刷에 따른 폐단은 여전히 컸으며 推刷過程에서 良民들조차 많은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나라에서는 흉년에 推刷를 禁함은 물론 使行이나 軍備 확보 등의 이유로 자주 推刷함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잦은 推刷의 금지는 奴婢들에게 叛主意識을 심어 주어서 가난하고 힘없는 노비주의 推刷를 어렵게 하였고 심지어 被殺당하게 하였다(전형택, 《앞의 책》, pp.196~199).

⑤ 推刷官 파견제도의 폐지와 定摠法(比摠法)의 실시 및 그 副作用

推刷官이 중앙에서 파견되지 않고 지방의 各邑에서 「도망치고 숨어서 帳籍에서 빠진 內寺奴婢(궁중노비와 중앙 각관청의 노비)」를 推刷하게 된 후 京司와 外邑이 서로 不信하고 의심하게 되어 노비들의 부담만 加重되었다. 그리하여 英祖 21年 嶺南審理御史 金尙迪이 寺奴婢에 대한 侵虐을 解消하려는 釐正策으로서 道內의 內寺奴婢數를 일정하게 (T/O를) 정하고 各邑의 出生자의 多寡에 따라 貢額을 증감시키되 道內 전체 內寺奴婢수에는 변동이 없게 하자는 定摠法(比摠法)의 시행을 건의하였다.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의를 거쳐서 결국 英祖가 備邊司로 하여금 節目을 정하도록 하고 嶺南에서 그것을 시행하게 하였다(《承政院日記》987冊, 영조 21년 6월 5일 및 平木實, 《앞의 책》, pp.116~117). 그 때의 《嶺南寺奴婢節目》에 의하면 (i)式年 推刷官加括之規와 戶曹 錯抄之法을 폐지하고 查括·代頃·出貢 등은 각각 해당고를 수령이 맡아서 거행하되 관찰사가 摠察한다는 것과 出貢實數는 庚申年(영조17년)條를

기준으로 하여 각 고을 수령이 貢案과 戶籍을 考閱하여 逃故·隱漏를 搜括한뒤 年末에 實貢數를 수정 成冊하여 監營에 보고하면 監營에서 一道를 摠察 磨勸하여 都成冊한 뒤 戶曹에 上送한다. (ii)매년 加括이나 頃下를 행할 때에 守令이 下吏에게 위임하여 虛名을 冒錄하거나 거짓 逃故로 冒頃하거나 逃故者나 病廢者를 頃下하지 않고 族徵·隣徵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監營에서 積發하여 狀聞 論罪한다. (iii)定摠法 실시후 노비에 여유가 생긴 邑에서 新括數를 減數 보고한뒤 사사로이 取用하면 田結隱漏之律로 論罪한다. (iv)推刷는 兩式年(6年)에 1回 監司가 주관하여 실시한 후 奴婢案을 수정 모두 成冊하여 該曹에 上送하되 京司에서는 10년마다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守令과 監司를 監査케 한다는 것 등이었다(전형택, 《앞의 책》, pp.149~150 및 平木實, 《앞의 책》, pp.118~119).

그후 兩湖에서도 地方守令의 노비추쇄로 인한 폐단이 加重되고 寺奴婢의 逃故로 인한 頃下로 貢摠이 해마다 減少되어 英祖 40年 7月 戶曹判書 具允明의 陳言과 領議政 洪鳳漢의 찬성으로 그 이듬해부터 定摠法(比摠法)이 실시되었다(《承政院日記》1232冊 영조 40년 7월 14일 및 1240冊, 영조 41년 윤 2월 20일). 이와 같이 三南에서 定摠法이 실시되어 京司에서 추쇄관을 下送하여 추쇄하는 번거로움 대신, 추쇄를 각 邑에서 주관하게 되었으나 內奴婢의 추쇄는 여전히 서울에서 10년마다 추쇄관을 보내어 실시하였는데 私奴婢를 內奴婢로 파악 추쇄하거나 以死爲生, 以無爲有 등으로 추쇄 노비수를 늘이는 등 폐단이 컸다. 그리하여 正祖 2年 비변사에서 內需司 推刷官의 혁파를 논의하게 되었는데 推刷官이 뇌물을 받고 內奴를 빼주기도 하고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良民을 內奴로 적어 넣는 등의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노비 頭目이 추쇄를 보조하면서 노비를 侵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正祖 2年 2월 「八道 內奴婢 推刷革罷節目」을 만들어 노비추쇄를 일체 금지하는 대신 內奴婢까지도 포함하여 定摠法을 실시하였다(《正祖實錄》권5-13·14, 正祖2年 2月 丁酉 및 《備邊司謄錄》159冊, 正祖 2年 2月 6日). 물론 內奴婢는 寺奴婢와 합하여 奴婢摠을 정한 것이 아니라 內需司와 5宮 奴婢를 합쳐서 定摠하였다. 그 때 「內寺奴婢 減貢給代事目」에 의거 파악하면 8道の 寺奴婢의 合計는 30,617명으로 그 중 영남이 20,350명이며, 內奴婢는 5,574명으로 그중 황해도 1,220명, 함경도 1,595명, 평안도 1,199명 등이다(전형택, 《앞의 책》, pp.153~154). 여하

간 正祖 2年 2月の 節目에 의거 推刷官의 파견을 폐지하는 대신 각 고을에서 10년에 한 번씩 노비案을 수정하여 巡營에 보고하고 巡營에서는 그것을 정리하여 內需司와 刑曹에 上送하도록 하였다(平木實, 《앞의 책》, pp.122~125).

定摠法은 노비추쇄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만든 法이지만 새로운 폐단이 생겨나고 있었다. 英祖 29년 4월 嶺南御史 李宗得은 노비는 出生이나 死亡 등으로 定數가 있을 수 없는데도 定摠法下에서는 노비수를 고정시킴으로서 폐단이 심하다고 하였다(《承政院日記》1093冊, 영조 29년 4월 2일). 그 무렵 좌의정 李天輔가 말한 바와 같이 人口增減이 고을마다 다르며 관찰사가 그 실상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邑別로 조정할 수도 없었다(《위의 책》1093冊, 영조 29년 4월 14일). 더구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지나간 후에는 노비수가 현저히 줄어 들게 되는데도 定數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노비의 부담은 3重·4重이 되었다(《위의 책》1321冊, 영조 47년 9월 16일). 그리하여 正祖 2年 2月 全羅監司 鄭元始가 지적한 대로 白骨徵布나 隣·族 侵徵의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위의 책》1414冊, 정조 2년 2월 20일). 또 賜牌奴婢로서 寺奴婢를 劃給하고서도 奴婢 定數를 減해주지 아니하고 身貢을 거두었으므로 실제로 收貢이 가능한 노비수와 奴婢案의 노비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또 推刷官을 혁파한 뒤 노비의 搜括이나 充定을 각 邑 守令에게 일임함에 따라 노비의 도망이나 冒避 등이 그 이전보다 훨씬 쉽게 되었다. 그후 경기도와 下三道의 各道內 各邑別로는 定摠(比摠)의 변동이 있었으나 兩西와 함경도에는 그러한 변동이 없었고 道別 定摠數는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이와 같이 實在 노비수는 격감하고 있는데도 定摠法下에서 上納할 貢額이 고정되어 있어서 남은 노비들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져서 도망이나 隱漏가 加速化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노비의 搜括이나 充定을 맡은 守令이나 胥吏·奴婢頭目 등의 농간으로 남은 노비들의 부담이 더욱 加重되어 노비의 도망이나 冒避를 촉진시키는 결과가 되었다(전형택, 《앞의 책》, pp.155~167).

⑥ 奴婢所生의 身分·身役의 歸屬問題

高麗時代이래의 一賤則賤의 原則의 固守는 良人 人口의 減少와 노비 인구의 增加로 軍丁의 不足現象을 초래하는 등 國役부담자의 減少化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李珣는 東湖問答에서 이를 개탄하였고 顯宗 10年(己酉)에 이르러 宋時烈의 주장에 따라 奴婢從母爲良法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肅宗 4年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南人측의 刑曹判書 李元禎과 領議政 許積이 公私賤 良妻所生 從母役法으로 인한 奴主간의 詞訟으로 倫紀가 무너지게 되었다(《肅宗實錄》권7-12·13, 숙종 4년 4월 신미)고 하면서 從母爲良法을 반대하였다. 이때 비로소 同法이 폐지된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李相佰, 平木實), 《續大典》刑典 公賤條에 분명히 肅宗 元年(乙卯)에 還賤이라 하였고 또 英祖때의 기록은 모두 숙종 원년 許積의 주장으로 同法이 폐지되었다고 하였으니 南人들의 執權初期인 숙종 원년부터 폐지되었다는 견해(전형택, 《앞의 책》, p.210~212)도 있다.

그러나 肅宗 6年 庚申大黜陟으로 남인정권이 무너지고 西人이 집권한 뒤 肅宗 10년, 西人인 右議政 南九萬이 奴良妻 從母爲良法の 실시를 주장하였고 같은 黨인 領議政 金壽恒, 戶曹判書 鄭在嵩, 禮曹參判 徐文重 등이 이에 찬동하여 임금의 允許를 받아 再實施하게 되었다(《承政院日記》306冊 숙종 10년 10월 23일). 하지만 肅宗 15年 己巳換局으로 南人이 再執權하자 좌의정 睦來善이 奴婢와 奴婢主의 相訟으로 인한 名分紊亂(奴主猶君臣也)을 이유로 奴婢 從母爲良法の 폐지를 啓請함에 따라 權大運動의 찬동으로 숙종은 다시 이 法の 폐지를 명하였다(《肅宗實錄》卷21-49, 숙종 15년 12월 을해). 숙종 20년 甲戌獄事로 西人이 再執權한 뒤 良丁의 확보를 목적으로 從母爲良法の 실시를 주장하는 논의가 숙종23년·28년·34년·37년·40년 등으로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전형택, 《앞의 책》, pp.212~213 및 平木實, 《앞의 책》, pp.136~137).

英祖代에 이르러 奴良妻所生 從母爲良法の 再實施論이 대두되었다. 영조 6년 9월 우의정 趙文命이 이를 주장하였고 行工曹判書 尹淳·吏曹判書 宋寅明·漢城判尹 金取魯·行副司直 宋眞明 등이 찬동하였으나 일부 반대론과 英祖의 주저로 곧 시행되지는 못하였다(《承政院日記》711冊, 영조 6년 9월 20일). 그러나 3개월후 경기 암행어사 金尙星이 隣·族之徵의 악순환과 良丁不足의 해결책으로서 奴良妻所生의 從母爲良法을 강력히 주장하여 다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전형택, 《앞의 책》, p.214 및 《承政院日記》716冊 영조 6년 12월 26일). 그렇다고 奴良妻所生이 從母爲良法에 따라 완전한 良人으로 쳐우되지는

아니하여 보충대에 넣어서 掌隸院에서 贖錢을 징수하였다. 贖錢 징수문제는 영조 25년 정월 영의정 金在魯의 건의에 따라 폐지되었지만(《承政院日記》1039冊, 영조 25년 정월 28일) 그 후에도 그들이 侵害당하는 일이 있었다(《英祖實錄》권77-21, 영조 28년 8월 을묘). 뿐만 아니라 노비수의 감소에 따라 各邑·各驛이 凋弊하여졌으므로 英祖 37年 12月 강원감사 金孝大가 奴良妻所生 從母爲良法の 폐지를 주장하였고(《承政院日記》1200冊, 영조 37년 12월 1일) 영의정 洪鳳漢도 名分論을 내세워 폐지론에 찬동하였지만 黨論(노론)에 따라 폐지하지는 아니하였다(전형택, 《앞의 책》, pp.217~218).

반면 士族이 公私婢를娶한 경우의 所生子女문제는 주로 賤妾子女문제로서 대체로 앞章(조선전기의 노비)에서 서술한 바와 같고 또한 조선후기의 疏通運動에 따른 仕路의 擴大와 陞班化문제는 《大典會通研究》史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3.12, pp.363~433에 서술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平民인 良人이 公私婢를娶하여 낳은 子女의 身分·身役의 歸屬문제만 살펴 보고자 한다. 從母法에 의하면 그들 子女의 신분은 당연히 公私賤이 될 것이나 英祖 23年, 함경감사 李宗城의 狀啓에 나타난 바와 같이 茂山 이북의 各鎭堡의 土卒이 公私賤을娶하여 낳은 자식을 노비안(本案)에서 頃下(삭제)하여 本鎭으로 刷還하였는데(《備邊司謄錄》118冊 영조 23년 8월 3일) 이와 같이 필요에 따라 從父法에 의거 良人化하였다. 또 조선전기부터 驛吏·鄉吏·鹽干·牧子 등이 自己婢와의 사이에 낳은 子女는 父役處에 定役하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刑典 賤妻妾子女條). 이는 조선전기에도 男從父役 女從母役으로 시행된 경우가 있었음을 의미한다(平木實, 《앞의 책》, p.148). 조선중엽인 顯宗 13年 10月 임금은 “驛卒이 私婢를娶하여 낳은 자식이 아들이면 父役에 따르고 딸이면 母役에 따르는가”라 물었고 參贊 閔維重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顯宗改修實錄》권26-26, 顯宗 13년 10월 정묘). 柳馨遠도 《磻溪隨錄》권22, 兵制 後錄 驛吏驛卒條에서 驛吏가 私婢를娶하여 낳은 자식이 男子이면 父役에 따르고 女子이면 母役에 따른다는 것이 國制이나 近年에 또 新法을 만들어 男女를 막론하고 모두 驛에 속하게 한다는 것과 公賤을娶하면 그렇지 않으나 驛吏가 私婢를娶하여 낳은 자식은 驛奴婢가 된다고 하였다.

驛婢와 良夫간의 所生子女는 언제나 驛奴婢가 되었지만 반대로 驛奴와 良女간의 所生子女는 從母法の 시행여부에 따라 驛吏로 신분이 올라갈 수 있었거나

驛奴로 머물거나 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續大典》刑典 公賤條에서는 그 所生이 驛役을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驛吏로 올려 준다고 하여 從母法을 취하였다. 또 같은 條에서 驛奴가 公私賤을娶하여 낳은 所生은 남자는 父役に 속하고 여자는 母役に 속한다고 하여 男從父役, 女從母役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續大典》刑典 公賤條에서 驛奴良妻所生이 驛役을 自願하는 경우에는 從良例에 따라 驛吏로 승격시키고 그 子女도 모두 驛에 소속시킨다고 하였지만 正祖 8年 正言 洪聖淵의 상소에 의하면 “근래 良女나 私賤女가 驛奴의 妻가 되어 낳은 子女는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驛奴婢로 刷還하고 있다(《備邊司 臚錄》167冊 正祖 8年 7月 5日)”고 하였다. 그러나 正祖 15年 4月 30日의 《承政院日記》(1687冊)에 의하면 驛奴良妻所生을 驛役に 입속시켜 陞吏만은 인정하도록 하여 남자의 경우 良人신분 취득이 가능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는 男從父役 女從母役法(아들은 父役に 따르고 딸은 母役に 따른다는 것)은 조선전기에도 中宗 10年 2月 知事 申用漑가 함경도에서의 軍額 감소방지와 良人확보책으로 임금에게 건의한 바 있으나 실현을 보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여하간 이 법은 父의 役이 子에게 세습되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나 형제와 자매간에 신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奴主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孝宗 8년에 충청감사 李慶億이 임금에게 男從父役 女從母役法의 실시를 건의하여 定制가 되었다(《增補文獻備考》卷162 戶口考2)고 하였으나 驛奴婢에 관한 記事일 뿐, 公私賤 一般에 관한 것은 아니며, 正祖 11年 7월에 이르러서야 함경도 일부지방에서 실시된 것이라 한다(平木實, 《앞의 책》, pp.138~140 및 《承政院日記》1629冊, 正祖 11年 7月 4日).

⑦ 私奴婢의 軍役負擔

조선전기에도 雜色軍·補充軍 등 賤人이 入屬하는 군대가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軍役은 良人の 몫인 良役이었다. 그러나 壬辰倭亂을 계기로 賤人 특히 私賤을 兵力資源으로 활용할 필요가 생겨서 東伍軍이 창설되었다. 東伍軍은 宣祖 27年 柳成龍의 주장에 따라 鎭管을 중심으로 지방군을 조직·편제하면서 설치되었는데 처음에는 良人和 公私賤이 같이 充定되었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면 거의 公私奴들만이 입속하는 兵種이 되었다. 良人の 경우는 이미 身役을 지고 있는데다가 다시 東伍軍役까지 지게 되어 一身兩役의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公奴婢 역시 身貢納付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다(전형택, 《앞의 책》, pp.169~170 및 《景宗實錄》권4-20, 경종 원년 8월 계해). 東伍軍이 賤人軍隊化한 것이 숙종·경종 年間이나 良人이 東伍軍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기 시작한 것은 英祖 12년이라 할 수 있다(《備邊司謄錄》99冊, 영조 12년 5월 16일 및 102冊 영조 13년 12월 17일). 영조 25년경에 이르르면 각 邑의 東伍軍은 모두가 私賤·無依者로 充定되고 있었던 것이다(《英祖實錄》권70-30, 영조 25년 12월 계묘). 東伍軍에 관해서는 《大典會通研究》兵典編, 한국법제연구원, 1995.12, pp.379~391 해설편 22 東伍軍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그 다음 監司와 兵使의 赴戰之卒인 각 道의 牙兵도 私奴層으로 充定되는 군대였다. 牙兵은 원래 牙下親兵으로 監司·兵使·水使뿐만 아니라 中央軍의 大將에게도 手下親兵으로 두게 되었는데 摠戎廳牙兵은 仁祖 8년에 처음 두게 되었고 守禦廳牙兵도 그 비슷한 시기에 두게 되었다고 한다(육군사관학교 군사연구실,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後期篇, 1977, pp.154~156 및 《仁祖實錄》권22-33, 인조 8년 4월 을해). 이들 軍營의 牙兵은 屯田을 耕作하였으므로(《顯宗改修實錄》권12-12, 현종 5년 11월 경술) 屯牙兵이라고도 하였다. 牙兵도 東伍軍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良賤혼성부대였으나 英祖代에 들어 와서 良丁 不足의 심화와 良人들의 기피로 私奴軍化하였다(전형택, 《앞의 책》, pp.171~172).

훈련도감의 三手兵도 良人과 賤人의 혼성으로 구성되었으며(《承政院日記》1788冊, 正祖 22년 3월 11일), 그외에도 私奴는 良人과 함께 長山別將 소속 軍兵·馬兵 雜色軍·燧燧軍으로도 充定되었다(《備邊司謄錄》127冊 英祖 30년 12월 19일, 163冊 正祖 5년 12월 7일 및 《正祖實錄》권5-3, 정조 2년 정월 신미). 영남에서는 또 寺奴를 防軍에 入屬시켰으므로 以奴爲良者가 많이 나타나서 寺奴가 크게 감축되었으며(《承政院日記》1167冊 영조 35년 4월 17일), 寺奴로서 正兵의 名色을 가진 자도 있게 되었다(《正祖實錄》권13-9, 정조 6년 정월 경신). 이와 같이 私奴의 軍役入屬이 조선후기에 보편화되고(《備邊司謄錄》98冊 영조 11년 12월 21일) 종래 良人이 맡았던 砲保 기타 保人·巡營吏·羅將 등도 奴軍이 맡게 되어(《備邊司謄錄》67冊 숙종 40년 2월 7일) 奴軍은 良軍과 다름없게 되었다(《위의 책》97冊, 영조 11년 정월 6일).

물론 그들 私奴軍들도 조선후기에 일반화된 身役의 租稅化현상에 따라 대개 收布軍化되었는데 私賤 東伍軍이나 牙兵의 收布(米·錢)軍化는 영조 중엽경에 이르던 보편화 된 것으로 보인다(《英祖實錄》권68-19, 영조 24년 9월 무인 및 권43-21, 영조 13년 3월 무술, 권89-23, 영조 33년 5월 병오와 《備邊司謄錄》132冊, 영조 33년 5월 18일 및 전형택, 《앞의 책》, p.174). 私奴軍의 부담은 영조 때 대체로 良軍의 절반 즉 良軍이 米 12斗 또는 錢文 1兩2錢인데 私奴는 米 6斗 또는 錢文 6錢이었다(同上). 이점은 정조 때도 마찬가지로서 良牙兵이 米 6斗인데 私奴牙兵은 米 3斗씩 부담하였다(《正祖實錄》권33-27, 정조 15년 9월 신묘). 이는 私奴의 경우 奴主에게 身貢을 바치고 國役을 지게 되어 一身兩役의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東伍軍이나 牙兵에게도 保人을 주었다. 東伍軍保는 孝宗 5年 영남에서 처음 실시되어 1인당 1명을 定給하여 米7斗를 내게 하였지만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備邊司謄錄》17冊 孝宗 5년 9월 29일 및 31冊 肅宗 원년 12월 4일). 그후 숙종 33년 東伍軍 1인 마다 子姪이나 戚屬 중에서 保人을 선임하여 米 5·6斗씩 거두게 하였다(《위의 책》58冊, 숙종 33년 5월 17일). 牙兵保는 영조 21년 砥平 수어청 屯牙兵保로서의 良人을 私賤으로 바꾸어 준 것이 기록에 보인다(《承政院日記》985冊 영조 21년 4월 5일). 東伍保나 牙兵保 이외에도 조선후기에는 良丁 不足의 심화로 종래 良人이 지고 있던 驛保·營牌保·軍需保·烽燧軍保·進上保·軍器保·官匠保·紙物保 등 각종 保人으로 私奴들이 作定되어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었다. 특히 驛卒의 경우 良保 1명 대신 私奴保 2명씩을 定給하였다(전형택, 《앞의 책》, pp.175~176 및 《備邊司謄錄》81冊, 영조 3년 2월 21일 및 96冊 영조 10년 9월 5일과 《肅宗實錄》권65-11, 숙종 46년 4월 신축·《英祖實錄》권81-35, 영조 30년 5월 병오). 이들 私奴인 保人들은 外居奴婢였으며 率居奴婢는 除外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備邊司謄錄》88冊 영조 6년 9월 25일 및 《英祖實錄》권68-19, 영조 24년 9월 무인과 전형택, 《앞의 책》, p.176), 奴軍으로서 “兩班單奴無不充定”(《備邊司謄錄》97冊 영조 11년 정월 6일)이라 하였으니 가난한 양반의 단 한사람의 率居奴婢도 充定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의 保人 중 私奴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총융청과 수어청에만 모두 20,000여명이 소속되어 있었다(《備邊司謄錄》96冊, 영

조 10년 9월 5일). 대체로 이들 私奴軍은 正祖 7年の 壯勇營의 경우 26哨 중 6哨가 私奴로 구성되었으니 (《正祖實錄》권38-33, 정조 17년 10월 신사) 良人軍의 4분의 1이 조금 못된다. 이러한 비율은 정조 3년 木川縣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정조 22년의 壯勇外營의 경우는 군사 22,022명 중 私奴軍이 6,463명으로 약 30%를 차지한다.全體軍에 대한 納布軍의 비율은 良軍이나 奴軍 모두 60%정도로써 조선후기 軍役의 경향이 實役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전형택, 《앞의 책》, pp.176~178).

⑧ 奴婢의 免賤·贖良

노비의 免賤은 그렇게 쉽지는 아니하였으나 조선후기에 오면 納粟·軍功 등으로 널리 免賤되었다. 특히 私奴婢의 경우에는 주인에게 몸값을 치르고 贖良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私奴婢의 納價贖良은 그 몸값을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贖良된 노비를 隱漏노비라 하여 이유없이 再贖시키는 등 侵虐하는 폐단이 있었다. 그리하여 나라에서는 그러한 폐단을 막기위하여 禁令을 내리기도 하고 歷良爲賤律로 다스리기도 하였으나 그 폐단은 줄지 아니하였다. 納價贖良 대상자는 주로 부유한 外居奴婢들로서 그들은 贖良이 된 후에도 勒贖·再贖 등의 방법으로, 옛주인이나 그 주인이었던 자들의 자손으로부터 侵虐을 당하였다(전형택, 《앞의 책》, pp.179~184).

조선후기에 오면 私奴婢도 公賤과 마찬가지로 哨官 등 軍職을 띄거나 軍功·捕盜 등의 공로로 免賤될 수 있었다. 조선전기에도 노비들은 正軍에 소속되지는 아니하여도 壯勇衛·彭排·隊卒 등에는 충당되었다(천관우, <조선초기의 5衛의 兵種>, 《史學研究》18호, 1960). 또한 조선중엽에는 함경도의 內需司 奴子 및 公私賤으로서 武才가 있는 자를 뽑아서 事變이 있을 때 助戰·赴防하게 하였다(《明宗實錄》권16-55, 명종 9년 6월 갑술). 《續大典》兵典 試取條에 의거 寺奴가 都試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으면 免賤되었는데 그의 親騎衛나 各道의 別武士도 都試를 거쳐서 免賤되기도 하였다(전형택, 《앞의 책》, p.221).

奴軍 중에서 敵과 싸워서 현저한 軍功을 세운자에게 從良을 허가하였다(《위의 책》권19-49, 명종 10년 11월 신사). 壬辰倭亂이 발발하자 軍功으로 免賤해야 할 자가 아주 많아져서 나라에서는 宣祖 25年 11月 軍功廳을 설치하고

軍功事目を 정하였는데 公私賤이 賊의 목 하나(1級) 베면 免賤하고 들을 베면 羽林衛, 셋을 베면 許通, 넷을 베면(4級) 守門將에 任用한다고 하였다(《宣祖實錄》권51-8, 선조 27년 5월 갑신). 賊을 射殺하였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射殺 2명이 斬首 1級에 準하여 論賞하기로 하였지만 허위신고가 많아서 뒤에는 射殺 4명이 斬首 1級에 準하도록 하였다(平木實, 《앞의 책》, pp.155~156). 노비들은 거듭 功을 세움으로서 免賤되어 官職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限品敍用의 규정에 따라 종6품을 頂点으로 하였고 그것도 실제상으로는 매우 어려워 羽林衛에 입속될 뿐이었다(同上). 또 戰死者가 公私賤이면 자식 1명이 免賤되었다(《宣祖實錄》권55-32, 선조 27년 9월 기해).

軍功 이외에도 逆賊을 잡거나 죽인 공로로도 노비가 良民이 되어 官階를 받는 수가 있었다. 仁祖 24년에 정해진 “逆賊就捕事目”에 의하면 (i)巨魁를 斬首하여 목을 바친자가 公私賤이면 그 子女를 免賤한 후 堂上實職을 除授하고, (ii)賊軍 2명 이상을 귀순시킨 公私賤은 免賤후 米布를 題給하고 (iii)賊이 모여 있는 곳을 상세히 정탐한 公私賤은 免賤하였다(《備邊司謄錄》10冊 仁祖 24년 4월 1일). 역적을 잡거나 (또는 죽이거나) 신고한 노비가 免賤된 事例는 顯宗·肅宗·英祖年間に 상당수 있었다(平木實, 《앞의 책》, pp.157~158 및 《備邊司謄錄》60冊, 70冊, 83冊 등). 또 原從功臣인 公私賤이 免賤되었고(《備邊司謄錄》84冊 영조 4년 6월 5일), 試才합격자인 公私賤이 免賤되기도 하였다(《肅宗實錄》권16-45, 숙종 11년 10월 계사).

원래 軍役은 良役이었으므로 公私賤의 役이 아니었다. 그러나 國難을 당하여 良人보다 더 많은 公私賤을 兵力化하기 위해서 宣祖 26년 6월 公私賤 武科를 설치하여 합격자를 免賤從良하여 羽林衛에 입속 시키도록 하였다(《宣祖實錄》권39-22, 선조 26년 6월 정유). 이때 합격자인 奴子가 私賤인 경우에는 奴主에 대한 補償으로 奴主가 朝官 또는 儒生이면 陞職 또는 官職除授, 庶擘인 경우에는 許通, 公賤인 경우에는 함께 從良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私賤의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奴主의 除職 등)가 있었으므로 公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다(《위의 책》권39-22, 선조 26년 6월 정유 및 권65-28, 선조 28년 7월 병술). 그러나 公私賤 武科는 선조 27년 이후 몇번 실시되었다가 흐지부지 된 것으로 보인다(平木實, 《앞의 책》, pp.159~162). 또 노비가 斬級軍功을 세운 후 아주 간단한 시험으로 武科及第를 시켜 주었는데 이를 斬級武

科라 하였다(《宣祖實錄》권40-36, 선조 26년 7월 기사 및 平木實, 《앞의 책》, pp.162~165).

納粟에 의해서도 奴婢가 從良되었다. 조선시대의 納粟從良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종 16년의 가뭄 때 私奴 朴福이 쌀 3,000石을 바쳐 자식 4명을 從良한 것에서 비록된다(《成宗實錄》권182-6, 성종 16년 8월 을미). 그후 明宗 8年 嶺湖南에 큰흉년이 들어 納粟策을 써서 公私賤에게는 從良, 驛吏는 免役, 諸色軍人에게는 官職(影職)을 주도록 하였다. 그의 補充隊 入屬者 중 未准仕者나 漏落者도 納粟하면 從良되었다(《明宗實錄》권15-59·60, 명종 8년 12월 계유). 조선중엽의 경우 從良에 소용되는 곡식의 양은 50石에서 100石으로 보이거나 최고 米160石까지 이르기도 하였다(위 《明宗實錄》같은 年月日의 記事 및 《新補受教輯錄》禮典 惠恤條). 그런데 宣祖 16年 5月 兩司(臺諫)에서는 庶孽과 公私賤의 許通仕路 및 納粟從良을 시행하지 않도록 건의하였으나 임금이 윤택하지 아니하였다(《宣祖實錄》권17-13, 선조 16년 5월 임오).

선조 25년 12월의 경기·황해도의 調度御史別事目에 의하면 500石 이상 募粟·募運한 公私賤을 從良하도록 하였으나(《위의 책》권33-33, 선조 25년 12월 을묘), 그 이듬해 2월의 納粟事目(《위의 책》권35-25, 선조 26년 2월 신축)에 비추어 볼 때 15石 정도이면 公私賤이 免賤된 것이 아닌가 推定된다(平木實, 《앞의 책》, pp.168~169). 그런데 納粟從良이 公賤의 경우는 별문제가 없으나 私賤에 있어서는 奴婢主의 손실보상문제로 公賤을 代給해야만 하였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리고 중앙의 관원들이 每品 各4·5張씩의 空名告身帖이나 免役免賤帖을 갖고 지방에 내려가서 필요할 때 쓰도록 하였다(《宣祖實錄》권121-12, 선조 33년 정월 신유). 또한 募粟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도마다 10여명씩의 募粟者가 배치되기도 하였다(《위의 책》권100-1, 선조 31년 5월 을유).

仁祖 때에도 募粟中 私奴의 免賤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노비主에게는 公賤의 代給대신 官職除授 기타로 補償해 주기로 하였다(《備邊司謄錄》6冊, 仁祖 19年 5月 2日). 顯宗 때에는 寺奴婢가 免賤을 원하여 納粟한 경우, 奴子는 免賤을 허가하되 婢子는 己身免役만 허가되었다(《承政院日記》174冊 顯宗 3年 6월 3일 및 《備邊司謄錄》22冊 顯宗 3年 6월 9일). 그 무렵(顯宗3년)의 納粟價는 米10斛 정도였다(《顯宗改修實錄》권7-26, 顯宗 3年 7월 임신). 그후

숙종 9년 2월 함경도에서 納粟制가 실시되어各司 및 內司의 노비의 贖良이 허용되었으나 官奴婢(各邑노비)는 결원이 있으면 後弊가 있다고 하여 不許되었다(《肅宗實錄》권14上 숙종 9년 2월 신묘). 그 후 숙종 23년, 29년에도 納米許贖策이 시행되었으나 驛奴婢·各司奴婢·內奴婢 등에게는 허용(前2者は 희망자가 없음)되었으나 官奴婢(邑奴婢)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숙종 44년에도 關西地方의 노비에 대한 納米許贖策이 시행되었는데 숙종 29년의 納粟額에 비하여 두 배가 되었다. 즉 15세~30세의 노비는 50石, 31세~40세의 노비는 40石, 41세~50세의 노비는 30石, 51세~55세의 노비는 20石, 56세~60세의 노비는 10石을 바쳐야만 하였다(平木實, 《앞의 책》, pp.173~174). 《續大典》刑典 贖良條에서 工匠代給奴의 贖良價를 錢 100兩(布 50필상당) 이내로 한 것은 대체로 위 숙종 44년의 41세~50세의 納粟贖良價와 같게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노비(內寺官驛의 4名色노비)들의 贖良의 價단으로는 아전들의 농간이 심하여 公賤이 날로 감소되고 있었다는 점이다(전형택, 《앞의 책》, pp.208~209 및 《承政院日記》1127冊 英祖 32年 정월 10일·1689冊 正祖 15年 4月 20日).

또 淸에 妓女나 婢子를 보냈을 경우에 그녀들의 父母나 同生등이 免賤되는 것과 중국으로 가는 使臣의 差備譯官의 경우 그 친족을 면천하는 등으로 나라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특혜조치로서의 免賤이 있었다. 또 宮을 지을 때 鐵을 바치거나 농번기에 소를 바친 자 및 銀錢을 바친 자에게도 免賤한 예가 있다(平木實, 《앞의 책》, pp.175~177).

士族의 子孫이나 非士族이라도 3代 從良(冒良登科者)이면 公賤의 경우 代口贖身으로 免賤될 수 있었다. 특히 大王의 同姓子孫은 6대이내는 贖身을 하지 않아도 從良되었고 7대에서 9대까지는 代口로 贖身하고 外孫은 6대이내(外孫의 外孫包含)는 代口贖身할 수 있었다. 그러나 代身하는 노비가 虛無人(虛名代贖)인 경우가 많아서 顯宗 2年の 事目에서는 호적대조를 철저히 하고 虛名者나 자기노비 아닌 자 혹은 相訟奴婢를 납부하려다가 적발되면 본인과 노비頭目·監官·色吏 등을 一律로 論罪하고 守命을 잡아다가 엄중히 조치하며 監司도 重律로 논죄하였다(平木實, 《앞의 책》, pp.177~180 및 《承政院日記》145冊 孝宗 8年 5月 6日;《備邊司謄錄》21冊 顯宗 2年 4月 24日·23冊 憲宗 3年 3월 17일).

도망쳤거나 帳籍에서 빠진 노비를 신고한 경우에도 從良되는 수가 있었다. 孝宗 2년에는 官奴婢가 官奴婢를 陳告하고 寺奴婢가 寺奴婢를 陳告하면 免賤되었으나 官奴婢가 各司奴婢를 陳告하는 것은 금지되었다(平木實, 《앞의 책》, p.181 및 《受教輯錄》刑典 公賤條). 孝宗때에는 公賤으로서 누락된 實貢奴婢 7명 내지 10명을 신고하면 免賤되었으나 顯宗 8년에는 陳告者에게 綿布를 賞으로 줄뿐 免賤시키는 法은 停止하였다. 그러나 肅宗 4년에는 다시 逃漏奴婢 30명을 陳告하면 贖良시켜 주었는데 이때에 虛僞陳告者가 많았다(同上). 숙종 41년에도 노비 陳告時에 南兵使까지 介入된 허위 신고사건이 있어 의금부에 잡아다가 문초하였다(《備邊司謄錄》68冊 숙종 41년 4월 11일).

조선국초부터 奴軍이었던 壯勇隊의 경우도 軍功을 세우거나 試才에 뛰어난 성적을 올린 자는 조선중엽에 이르면 從良될 수 있었다(平木實, 《앞의 책》, pp.182~183 및 《光海君日記》권80, 광해군 6년 7월 무인). 또 태종 15년 身良役賤者나 賤妾子 등으로 구성된 補充隊도 光海君 5년경에 이르면 從良의 길이 넓어졌다. 즉 補充隊에 입속한 사람은 30개월간의 근무기간을 마치고 都目을 기다려서 去官하여 軍役に 卽定하는 것이 바꿀 수 없는 法인데도 오늘 入屬하여 내일 去官하고 去官한 후에는 十中八九는 軍役을 謀避한다는 것이었다(《光海君日記》권69, 광해군 5년 8월 신해). 이와 같이 從良된 新良人들은 대다수가 無役 閑遊人이 되었지만 그중에서 상당수가 三醫司·書吏가 되어 「三醫司·書吏之中 此類過半」이라 할 정도가 되었다(《위의 책》권149 광해군 12년 2월 경오). 그 후 補充隊의 去官制가 有名無實하게 되자 仁祖 때에 이르면 地方의 公私賤이 賑恤廳에 布10필을 바치고 勤力副尉 出身이 된 후에 良役に 始定되었다(平木實, 《앞의 책》, p.185 및 《備邊司謄錄》9冊 仁祖 23년 10月 5日).

軍功이나 納粟이외에도 公私賤은 孝行이나 貞節 등 儒敎的인 德目으로 免役·免賤되기도 하였다(《肅宗實錄》권64-30, 숙종 45년 11월 무인 및 《英祖實錄》권22-29, 영조 5년 6월 을해). 그리고 私奴婢의 免賤은 主人(上典)의 恩典으로 시행되기도 하였고 나라에서 代價를 지불하거나 公奴婢를 代給하여 贖良시켜 주는 수도 있었다(전형택, 《앞의 책》, pp.185~186).

⑨ 良役・賤役의 混淆와 新良人의 處遇 등

書吏와 皂隸는 각 관청에 배속된 아전과 下人(使令)으로서 그 신분이 조선 전기에는 良人이었으나 후기에 들면 奴子도 入屬하게 되었다. 그 중 皂隸는 身良役賤 즉 7般賤役이었지만 雇工과 함께 良人으로 보았다(《成宗實錄》권 191-8, 성종 17년 5월 임신 및 《備邊司謄錄》17冊 孝宗 5년 5월 6일). 그러나 皂隸에 충당할 인원의 부족으로 효종 3년경부터는 逆家奴婢·沒官者·京居奴子인 年少者 중에서 뽑아서 의금부에 주어 分番立役하도록 하되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近道の 奴子 중에서 충당하며 그 所生이 남자면 皂隸職을 세습시키고 여자이면 의금부의 婢子로 삼도록 하였다(《備邊司謄錄》15冊, 孝宗 3년 정월 23일). 17세기의 柳馨遠도 皂隸 중에서는 良賤이 섞여 있다고 하였고 심지어 私賤 중에서도 書吏로 되는 자가 많다고 하였다(《磻溪隨錄》권 15-33, 職官之制 上). 선조 36년 경에 이미 在京 公私賤 중에서 書吏에 投屬한 자가 많다고 하였으며(《宣祖實錄》권 165-42·43, 선조 36년 8월 계축), 숙종 3년 3월에도 書吏는 본래 良人이 말아서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私賤이 많이 말는다고 하였다(《肅宗實錄》권 6-16, 숙종 3년 3월 정축). 肅宗 40년에는 경상감영에서의 文書直·下典·使令·保人·伺候·雜役·匠冊·匠保 등에도 (良人에서) 公私賤으로 換定하였다(《備邊司謄錄》67冊, 숙종 40년 2월 7일).

公私賤으로서 새로이 良人이 된 사람(新良人)은 바로 良人으로 陞進받지는 못하였고 補充隊에 일정기간 入屬, 去官한 후라야 비로소 軍役に 充定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인조때)에 이르면 바로 혹은 보충대에 하루 정도 입속시키고 良役に 充當하고 있었는데 이는 위법이라 하였다(《備邊司謄錄》9冊 仁祖 23년 9월 23일 및 10월 5일). 또 新良人은 良役に 充定하는 경우에도 일반 正軍에 소속시키기 보다는 砲手·殺手 등 특수부대나 奉足으로 삼았다(《宣祖實錄》권 108-2, 선조 32년 정월 계미).

이상과 같이 종래 良人들이 부담하고 있던 여러가지 役務를 賤人들이 맡게 되었고 또한 널리 從良되었으며 종래 賤人이었던 新良人의 處遇 또한 舊良人과 차별은 있었지만 良役을 지는 등 良賤間의 거리는 매우 좁아졌다. 더구나 良·賤民間의 혼인이 많아지자 이른바 良賤混淆는 加速化되었다. 그러한 상황아래 身分差待 緩和論者였던 英祖가 長期間 在位하면서 여러 가지 人道主義的인 寬

刑措置를 취함과 동시에 官에 보고하지 않고 노비에 대하여 私刑을 科하다가 제멋대로 죽인 자를 처벌하도록 하였다(《英祖實錄》권36-22, 영조 9년 12월 을묘 및 《續大典》刑典 殺獄條). 또한 英祖는 노비주가 노비에게 사사로이 亂杖을 치는 등, 刑杖을 私的으로 行使하는 것을 금지시켰다(《備邊司謄錄》132冊, 영조 33년 5월 18일 및 140冊 영조 37년 8월 9일).

⑩ 19세기 초 內寺奴婢制의 폐지

18세기 후기에 이르면 노비들의 도망과 隱漏가 더욱 많아져서 隣徵·族徵의 惡循環이 持續되었다. 그들은 役이 무겁고 고달픈 이외에도 인간의 밑바닥을 의미하는 노비라는 이름 그 자체가 싫어 도망치는 수가 많았다(《備邊司謄錄》164冊 正祖 6년 2월 3일). 그리하여 正祖 8년에는 노비라는 호칭 대신 예컨대各司 匠保 따위로 바꾸자는 논의도 있었다(《위의 책》167冊, 正祖 8년 10월 29일). 正祖 14년에는 寺奴婢란 명칭을 寺保로 바꾸고 良丁歲抄의 例에 따라 闕數를 代定하자는 건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들은 신중론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였다(《위의 책》176冊 正祖 14年 4月 14日 및 平木實, 《앞의 책》 p.193).

노비인구의 격감과 族徵·隣徵의 악순환으로 身貢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국가재정이 惡化되어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전형택, 《앞의 책》, pp.229~231). 사실, 良役이나 奴婢身貢이나 18세기 후기에는 다같은 1필이었으므로 이름을 良人으로 바꾸어 줌으로서 다소나마 도망치는 자의 숫자를 줄여서 국가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內寺奴婢의 革罷論(《正祖實錄》권38-62, 정조 17년 12월 기사 및 권40-46, 정조 18년 8월 경신과 《承政院日記》1796冊 정조 22년 9월 14일, 1798冊 同年 10월 10일, 1798冊 同年 10월 11일, 1799冊 同年 10월 25일 등)은 대체로 宋時烈의 學問을 계승한 老論系였다. 여기 대하여 반대론은 名分論과 私奴婢에의 波及效果를 우려한 南人系관료이거나 時派에 속한 人士(일부 僻派포함)들이었다(전형택, 《앞의 책》, pp.232~236).

正祖자신은 노비신분층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蔡濟恭을 비롯한 南人系 측근 人士들의 영향으로 名分論에 따라 內寺奴婢制의 혁파를 반대하였다(同上). 물론 南人系 學者중에서도 實學派라 불리우는 畿湖地方의 南人

들이 노비제의 완화 내지 폐지를 주장하였다. 磻溪 柳馨遠의 뒤를 이은 星湖 李瀾은 노비신분의 세습제와 노비매매를 반대하였다(李瀾, 《星湖僊說》人事門奴婢條 및 《星湖僊說類選》권4下, 禁賣奴婢條). 그의 정조 19년 첨지 양주익도 良賤合一을 내세워 노비제를 혁파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농포자 정상기도 노비들이 本主나 本司에 納貢하고 또 本官에 充役됨으로 부담이 良役보다甚하다는 것과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公私賤과 良人을 같이 편성하여 貧富의 差에 따라 身貢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梁周翊 《無極集》권3, 疏). 그 다음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주장한 茶山 丁若鏞도 노비신분의 세습제를 반대하였으며, 少論 實學者 柳壽垣도 노비제의 폐지를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들에 대한 지나친 수탈이나 私刑·疊贖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奴良女所生子女의 신분귀속도 從母法에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전형택, 《앞의 책》, pp.237~238 및 柳壽垣 《迂書》권7, 論奴婢貢役).

南人·時派가 執權하고 있던 18세기말까지는 그런대로 內寺奴婢制가 존속하였으나 19세기초 老論·僻派가 집권하자 바로 純祖 元年 正月 內寺奴婢案을 敦化門밖에서 소각시키고 內寺奴婢들을 모두 良人化하였다. 그때 해방된 노비들은 內奴婢 36,974명, 寺奴婢 29,093명이었다(《純祖實錄》권2-20, 순조 원년 정월 을사). 이들 良人化된 宮房의 노비와 중앙관청의 노비(內寺奴婢)들은 모두 外居 노비들로서 身貢을 바쳐왔으며 그들의 身貢으로 宮房과各司가 유지될수 있었다. 따라서 內寺奴婢 혁파후 內需司 및各司의 수입감소에 대한 給代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한 給代는 壯勇營이 말도록 하였지만(平木實, 《앞의 책》, pp.197~201 및 《承政院日記》1832冊, 純祖 元年 正月 28일), 壯勇營의 財力만으로는 不足하여 進上物을 減하기도 하고 貢物이나 大同米를 내주기도 하였다(전형택, 《앞의 책》, p.243 및 《純祖實錄》권2-47, 순조 원년 3월 임진 및 권3-32, 순조 원년 8월 기유).

內寺奴婢의 혁파로 良人身分을 취득하게된 노비들은 대체로 良役(軍役)에 充定되어 身布를 내게 되었으나 일부 특수한 役(함경도의 宮屬假率 등)을 지고 身役錢을 바친 경우도 있다. 이는 노비를 假率이란 이름의 保人으로 이름을 바꾸어 준 셈이다(전형택, 《앞의 책》, pp.243~244 및 《承政院日記》1840冊, 순조 원년 8월 6일).

순조 원년에 內寺奴婢가 혁파된 뒤 중앙관청의 公奴婢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순조 원년 9월, 戶曹判書 李書九가 건의하기를 籍産奴婢(죄를 지어 籍沒된 노비)가 沒入되면 戶曹에서 寺奴婢의 例에 따라 收貢하는 것이 度支(戶曹)의 古法規라는 것과 앞으로는 籍産奴婢가 外邑에 살면 해당邑의 官奴婢로 삼고 서울에 사는 경우에는 刑曹에 할애해 주어서 명부에 올려(錄案) 使役시키도록 하자고 하여 임금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承政院日記》1841冊 純祖 원년 9월 20일).

① 官奴婢의 立役과 그 폐지 및 私奴婢의 혁파

官奴婢는 좁게는 邑奴婢를 의미하나 넓게는 監營 및 兵·水營의 營奴婢를 포함한다. 公奴婢는 그외에도 驛奴婢와 校奴婢 등이 있다. 이들 官奴婢를 비롯한 公奴婢는 순조 원년에 폐지된 內寺奴婢(外居奴婢)들과는 달리 거의 立役奴婢였다.

太宗 13年 4月, 地方 各官의 奴婢數를 定하였는데 留守官 노비 200戶內 公衙 丘從 30戶, 大都護府·牧官 노비 150戶內 丘從 25戶, 單府官 노비 100戶內 丘從 20戶, 知官 노비 50戶內 丘從 15戶, 縣令·監務 노비 30戶內 丘從 10戶, 無官各縣 노비 10戶(1戶는 3丁)로 하되 그 定數外의 노비는 각각 所居地에서 典農寺에 소속시켜서 過不足을 조정하게 한다는 것과 男女 나이 66세 이상인 자와 15세 이하인 자는 計上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太宗實錄》 권25-21, 태종 13년 4월 임술). 이것이 바탕이 되어 《經國大典》刑典 外奴婢條에서 그 數를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同條에서는 邑奴婢뿐만 아니라 兵營과 水營의 奴婢 및 鄉校와 驛의 노비수도 규정하고 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총수는 55,000명 정도로 계산된다(전형택, 《앞의 책》, p.247).

그러나 그러한 外奴婢들의 各官別 定數는 조선후기에 들어 오면 거의 채워지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顯宗 3년의 李敏迪과 同王 4年の 경상감사 李尙眞의 보고 속에서도 나타나며(《顯宗實錄》권5-48, 현종 3년 7월 을미 및 《顯宗改修實錄》권9-45, 현종 4년 10월 임인), 同王 7年の 황해감사 李尙逸이 「諸道 官奴婢 累經變亂 日漸耗少」라고 한데서도 알수 있다(《위의 책》권15-42, 현종 7년 5월 임진). 더구나 18세기에 이르면 官奴婢의 減少현상이 深化되어 英祖 21年 4月 宋寅明이 「近來 外方各邑 奴婢絶少」라고 하였다(《承政院日記》 985冊 영조 21년 4월 5일). 이러한 官奴婢의 부족현상은 正祖·純祖代 등 18

세기 후기와 19세기 전기에 이르면 더욱 심해져서 큰 고을에도 불과 십여명 내지 이십여명 밖에 남지 않아서 案付奴婢 大時存奴婢의 비율이 10:1도 되지 아니하였다(전형택, 《앞의 책》, pp.248~249 및 《承政院日記》1714冊, 정조 17년 2월 9일·《같은 책》2027冊 순조 13년 4월 20일과 규장각도서 No.12319 河東府 官奴婢 籍沒奴婢 校奴婢 癸卯式 改續案). 그리하여 남아 있는 少數의 官奴婢들은 役을 중첩적으로 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못건디고 또 도망칠 수 밖에 없었다. 동시에 官에서는 雇丁 傭奴하거나 寺奴婢의 劃給을 요청하였으나 그것도 限界가 있었다.

官奴婢의 減少는 도망이외에 官家 賜牌등도 원인이 되고 있었으므로 《續大典》刑典 公賤條에서는 寺奴婢를 定給하도록 하고, 官奴婢는 일체 賜牌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규정은 숙종 4년 11월 영의정 許積이 掌隸院의 啓目에 의거 임금에게 請하여 諸官家의 賜牌奴婢는 各司奴婢로 定給하고 各官奴婢는 일체 주지 않도록 한 것에서 비롯된다(《肅宗實錄》권7-40, 숙종 4년 11월 임인). 官奴婢의 減少原因은 또 지방의 方伯 守令이나 그 幕僚(裨將)나 衙客들의 官妓畜妾行爲에도 있다(《承政院日記》1767冊, 정조 20년 9월 18일). 또한 英祖 7年 이후 奴良妻所生을 從母爲良한후 各邑과 各驛의 노비가 격감하였음은 물론이다(전형택, 《앞의 책》, p.252).

官奴婢의 減少에 따른 대책으로서 官奴婢의 他處移給의 禁止(《典錄通考》와 《受教輯錄》刑典 公賤條 및 《新補受教輯錄》刑典 公賤條)와 賑荒時의 納粟贖良 禁止(同上) 등의 조치를 취하고 官奴婢가 尙衣院 針線婢·醫女·丘史 등으로 差役된 후의 所生을 官奴婢案에서 頗下하지 않고 本邑에 송환하도록 하였다(同上). 또 英祖 4年 戊申亂때 大臣이하 諸官의 跟隨가 모두 原從功臣이 되어 免賤되었으므로 八道官奴가 跟隨로 冒錄하여 免賤된 자가 無數하였기에 賤人이 跟隨로 되는 것을 금지하였다(《備邊司謄錄》84冊 영조 4년 6월 5일).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寺奴婢의 劃給이 불가피하였다. 英祖 11년에 公忠道の 營노비로 40명을 획급한 이래 同王 17년과 21년·22년에 몇몇 고을로 寺奴婢를 획급한 바가 있고 同王 30년에는 京畿水營에, 同王 36년에는 강원감영에 寺奴婢를 획급하도록 한바가 있다(전형택, 《앞의 책》, pp.252~253 및 《備邊司謄錄》97冊, 109冊, 113冊, 116冊, 127冊, 138冊). 그러나 寺奴婢는 選上이나 立役

의 의무가 면제되고 納貢의무만 있는 자이고 촌락에서 良民과 다름없이 살고 있는 자들이었으므로 그러한 자들을 官奴婢로 획급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수입도 감소하게 됨으로 英祖 37年 4月부터 寺奴婢의 획급을 금하였다(《承政院日記》1192冊, 영조 37년 4월 17일).

그외 官奴婢의 供給은 범죄로 인하여 籍沒된 자(犯人과 그 가족)로부터도 있었다. 조선후기에 들어 와서 官奴婢의 부족이 심화되자 籍沒人들을 絶島나 邊境으로 定配하는 대신 官奴婢가 부족한 고을로 직접 定屬하는 일이 많아졌다. 영조 때에는 禁酒令에 위반한 자를 邑奴婢로 定屬시키기도 하였다(전형택, 《앞의 책》, p.254 및 《英祖實錄》권88-20, 영조 32년 10월 갑신과 《備邊司謄錄》140冊, 영조 37년 5월 28일). 또 公債를 갚지 못하여 관노비로 定屬되기도 하였다(《續大典》戶典 徵債條의 註 및 《肅宗實錄》권65-12, 숙종 46년 4월 신축).

官奴婢는 독자적인 살림을 하였지만 官에 직접 身役을 제공하였고 지방관청에는 官奴廳이 설치되어 있었다. 官奴婢의 老除年齡은 60세였으나 英祖 50년 2월, 官婢의 老除를 50세로 낮추었다(《承政院日記》1348冊, 英祖 50年 2月 14日). 官奴婢의 身役으로서 倉庫의 檢察·官屯의 看檢·使客接待·房子·水汲 등 잡역을 맡은 이외에 官屬을 도와서 量田이나 犯罪人追捕에 참여하거나 庫子 일을 맡아서 환곡의 출납 등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官奴는 자기가 보관하는 官物을 횡령하거나 民間의 財物을 侵奪하는 수도 있었다(전형택, 《앞의 책》, pp. 256~258 및 《弘齋全書》권157, 〈審理錄〉忠淸道 文義縣 趙完璧獄과 《承政院日記》1767冊, 正祖 20年 9月 6日). 官奴婢는 또 功臣의 丘史나 樂工·針線·醫女 등으로 選上되기도 하였다(《續大典》刑典, 公賤 및 《正祖實錄》권 6-67, 정조 2년 11월 을묘와 《受教輯錄》刑典 公賤). 그러한 選上으로 官奴婢의 수가 줄어 들어서 村백성을 假官奴로 使役시키거나 寺奴婢를 官奴婢로 획급할 수 밖에 없었다. 또 官奴는 숙종 36년 이후 吏奴隊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守令의 手下兵이 되는 등 軍役까지 부담하였으므로 役의 過重으로 도망과 冒避가 촉진되었다(전형택, 《앞의 책》, pp.261~262 및 《增補文獻備考》권10, 兵考2 制置2와 《備邊司謄錄》94冊, 英祖 9年 10月 3日).

官奴婢도 다른 公奴婢처럼 軍功·武才試取·捕盜 등의 功勞와 孝行·節義·納粟·代口贖身 등으로 免賤할 수 있었다. 특히 英祖 4년의 戊申亂때 官奴들

중에는 免賤된 자가 많았다(전형택, 《앞의 책》, pp.262~266 및 《英祖實錄》권22-3·4·5, 영조 5년 4월 경진·《承政院日記》683冊, 영조 5년 4월 20일·《備邊司謄錄》84冊, 영조 4년 6월 5일·《같은 책》79冊, 영조 2년 4월 8일과 《續大典》刑典 捕盜·贖良條, 《肅宗實錄》卷64-30, 肅宗 45년 11월 무인·《英祖實錄》권22-28, 영조 5년 6월 갑술). 그러나 官奴婢는 다른 公賤에 비하여 納粟이나 代口贖身으로 免賤되는 것이 매우 불리하였다. 그것은 官奴婢의 減少로 지방관청에서의 供役體制의 유지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免賤을 억제하려는 爲政者들의 입장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선후기의 官奴婢들은 대체로 범죄인이나 그 가족으로서 籍沒된 자이거나 公私賤인 범죄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官奴婢들이 제한받기는 하였지만 免賤의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었고 결국 官奴婢도 私奴婢와 더불어 高宗 23年(1886年) 정월에 이르면 그 신분세습제가 폐지되어 一身에 限하여 使役되다가 (《高宗實錄》권23-1 및 《日省錄》高宗 23年 正月 2日) 高宗 31年(1894年)의 甲午改革 때 폐지된 것이다(전형택, 《앞의 책》, pp.265~266). 즉 高宗 23年3月에는 刑曹에서 奴婢所生의 賣買禁止와 그 所生의 良人化를 法制化하는 〈私家奴婢節目〉이 제정되었으며 高宗 31年 6月에는 軍國機務處의 提案에 따라 班常과 門閥의 등급 폐지와 함께 公私奴婢를 일체 폐지하고 人身매매를 금지시켰던 것이다(平木實, 《앞의 책》, pp.205~207 및 《日省錄》高宗 23年 3月 11日과 《高宗實錄》권31, 高宗 31년 6月 28日). 또 그해 7월에는 驛奴婢·倡優·皮工들도 免賤을 받게 되었다(《高宗實錄》권32, 고종 31년 7월 2일). 이상과 같이 1894년의 甲午改革 때 모든 公私奴婢가 法制上으로는 완전히 폐지되었지만 그 이듬해까지도 범죄로 인하여 노비로 籍沒하는 일이 있었고 私奴婢도 존재하였으므로 內務衙門의 訓示를 통하여 沒役을 금지시키고 班家奴隸의 행패를 엄금하도록 하였다(《高宗實錄》권33, 고종 32년 3월 10일). 古老들의 傳言에 의하면 私奴婢는 20세기초까지 존속하다가 소멸되었다고 한다.

(4) 結言

이상 여러 항목에 걸쳐서 고려말 이후 조선왕조 말엽까지의 노비제도를 살펴 보았다. 요컨대 고려말의 사회경제적·정치군사적 혼란을 극복하고 儒教를

建國理念으로 삼아서 창립된 조선왕조는 정치·군사·사회·경제 등 각 방면에 있어서 儒敎思想에 지배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노비문제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었는데 태종 6년 3월의 寺社의 田土와 奴婢의 屬公도 排佛崇儒策의 發露였다.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이들 屬公奴婢의 立役과 身貢을 통해서 統治組織의 維持와 財源確保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노비의 相續·良賤交嫁所生의 身分歸屬·度僧·法律上的 地位 등 社會經濟的 諸關係에 있어서도 儒敎의 承重·排佛·上下差別 등의 思想이 多分히 加味되어 있었다. 따라서 尊卑·貴賤의 等級을 엄격하게 하는 名分論으로 身分階級을 固着시키고자 하였다(周藤吉之, <앞의 글>(四), pp.91~92). 政治·軍事的인 關係에 있어서도 奴主間의 關係는 君臣間의 關係와 같다고 하여 奴婢는 직접 국가에 대해서 권리행사나 의무 부담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그 주인(官廳이던 個人이던)에 대해서만 충성하도록 요구되었다. 동시에 노비는 정규군(正軍)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더구나 벼슬은 바랄 수도 없었다. 免賤된 노비조차도 官職이라야 雜職에 任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軍役に 관해서는 爲政者의 필요에 따라 특수 兵種으로 편입되었으며 특히 조선중엽이후 노비의 兵力資源 活用이 加速化되었다.

고려·조선의 노비제도가 唐宋이나 元明의 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高麗法制가 唐律을 근간으로 하였고 朝鮮의 刑法으로서 大明律을 依用하였음은 歷史的事實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朝鮮의 治者들이 항상 말하는 “千里不同風 百里不同俗” 그대로 우리 法制의 특수성과 固有性을 유지하여 왔다. 특히 婚姻法이 그러하였고 身分法이 그러하였다. 奴婢法에 있어서도 賤者隨母法이라던지 一賤則賤의 원칙·奴婢身分 永久世襲制·母系존중의 원칙 등 中國의 그것과 다른 점이 많다.

우리나라의 노비제도는 고조선에서부터 조선왕조말기까지 3천년간 존속하여 왔으며 노비들은 인간사회의 밑바닥에서 온갖 수모와 학대를 받으면서 酷使당하고 착취되었다. 더구나 인간취급보다는 동물에 가까운 취급을 받으면서 매매·상속·증여의 대상물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양의 노비보다는 처지가 좀 나았으며, 특히 조선시대의 지배이념인 儒敎的인 仁思想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대우를 받는자도 있었고 所有權이 보장되어 노비자신이 土地나 노비 등 재산을 소유한 자도 적지 않았다. 특히 外居奴婢중에서는 굉장한 富를 축적하여 스스로 贖良할 수도 있었고 軍功이나 孝行·節義 등으로 免賤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自身이 남의 所有物이란 처지와 過重한 役부담이 늘어나서 도망치는 자가 不知其數였다. 그리고 良賤이 애매한 경우도 적지 않아서 조선국초부터 노비소송에 여념이 없었고 訴良者가 줄을 이어서 良賤辨正에 온 國內가 시끄러웠다. 동시에 도망친 奴婢의 推刷와 陳告로 國力이 낭비되고 있었다. 奴婢身分을 면하는 방법으로 軍功·納粟 등 合法的인 方法이나 逃亡·隱漏 등 不法的인 方法이외에도 僧人이 됨으로서 苦役을 免하고자 하여 나라에 서는 度牒法을 만들어 이를 억제하였다.

또 良賤間의 혼인이나 公賤을 첩으로 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했으나 그러한 事例가 굉장히 많아서 所生子女의 身分歸屬이 문제되고 있었다. 즉 士族 내지 良人과 賤妾간의 所生子女는 고려시대에는 隨母法에 따라 從賤시켰으나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太祖부터 太宗때까지는 儒敎思想에 따라 中國式인 從父法을 취하여 良人의 增加를 도모했다. 그러나 그 결과 換父易祖라는 敗常亂倫의 弊가 생겼고 또한 公賤의 減少도 초래되어 世宗때에는 이를 고쳐서 원칙적으로 隨母法을 취하되 例外를 두어 世祖初까지 그대로 지속되었으나 世祖末年에 이르러 軍額의 增加를 도모하여 다시 從父法을 채용하였다. 그러나 士人·관료들의 반대 때문에 이를 고쳐서 隨母法으로 하되 贖身의 길은 열어 두었다. 또 官妓所生 子女도 太宗 때에는 從父法에 의거 免賤되었으나 世宗 때에 이르러 從賤되었다. 그러나 官僚들의 妓妾所生子女는 贖身 從良시켰다. 成宗 때가 되면 家畜倡妓이외 所生의 從良을 禁하였다. 이것은 유교사상의 영향과 조선의 특수 사정에 基因된 것이다(周藤吉之, <앞의 글>(三), pp.37~38).

奴婢主가 왕실인 內奴婢나 중앙관청 소속의 寺奴婢(各司奴婢)는 일찌기 選上·立役奴婢에서 外居·納貢奴婢로 轉換되었지만 私奴婢중에서도 外居奴婢가 훨씬 더 많았다. 이들 外居·納貢奴婢들은 어느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전국 各處에 散居하면서 獨自的인 家戶와 經理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外居·納貢奴婢들은 法制的인 身分上으로만 奴婢主에게 예속되고 있었을 뿐, 社會經濟的으로는 독립되어 身貢이라는 부담만 지는 半自由人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더구나 도망쳐서 숨은 노비들은 신분을 冒稱하고 納貢義務마저 지지 않아서 신분적·경제적 예속에서 모두 벗어나고 있었다.

그리하여 奴婢主인 궁중이나 관청 또는 양반관료들은 도망노비에 대한 推刷를 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推刷에 따른 副作用과 폐단이 너무 컸으므로 推刷를

제대로 하게 할 수도 없었다. 公奴婢에 관해서는 英祖 때 定摠法(比摠法)을 嶺南부터 실시하여 推刷의 책임을 監司와 守令에게 맡겼지만 白骨徵布나 族徵·隣徵의 副作用으로 奴婢의 도망을 加速化할 뿐이었다. 私奴婢의 推刷도 폐단이 커지자 나라에서는 제한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私奴婢들은 더욱 쉽게 도망칠 수 있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노비들이 널리 軍役을 저서 軍功·納粟 등으로 免賤되는 자가 많아졌고 공노비의 身貢이나 良人の 良布가 18세기 후기 이래 같은 1필이었으므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다를것이 없었으며 良役に 賤人들이 많이 入屬하고 良賤交嫁가 보편화되어 良賤의 混淆가 심화되었으므로 구대여 良人과 賤人을 나눌 필요가 없게 되었다. 더구나 조선후기 오랫동안 與黨의 地位를 누렸던 西人(老論)系 人士들은 良人확보책을 固守하여 奴婢해방에 적극적이었으므로 결국 純祖 元年에 內寺奴婢(궁중노비와 중앙각관청의 노비)를 혁파하게 되었다. 反面에 朱子學的 名分論에 보다 철저하였던 人士(주로 南人系)들은 노비제 존속을 강력히 원하여 각 지방관청 소속의 官奴婢와 개인소유인 私奴婢의 혁파는 근 100년을 더 기다려야만 하였다. 더구나 각 지방의 官奴婢는 여러가지 雜役을 맡은 立役奴婢였을 뿐만 아니라 犯罪人이나 그 家族으로 充當되었으므로 쉽게 해방될 수가 없었다. 또 私奴婢의 경우는 雇立制나 小作制보다 노비노동에 직접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中小地主 양반층(주로 南人系)의 利害를 전혀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1894년의 甲午改革 때 法制上으로 노비제를 완전히 혁파한 후에도 10여년간 더 존속되었다.

26. 妾子女와 義子女 및 養子女의 奴婢相續分

(1) 良妾子女分

良妾子女는 良人인 妾에게서 태어난 子女이다. 妾子에 대한 奴婢相續의 규정은 太祖 6年 7月の 辨定都監의 疏 중에 있는데 조선건국이후 受判된 法條중 現行性있는 19條를 임금에게 올린 가운데에 妾子로서 傳繼(상속)의 明文이 없는 자에게는 7분의 1을 준다고 하였다(《太祖實錄》권12-2, 태조 6년 7월 갑술). 그러나 그해 8월 奴婢辨定都監에서 上言하기를 大小宗의 嫡妾之法은 전적으로 “承家繼嗣”를 중요시하여 嫡室에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妾子가 마땅히 繼

嗣해야 하므로 良妾子孫에게 奴婢를 專給하고 良妾에게도 아들이 없을 때에는 自己婢妾에게 아들이 있으면 비록 傳繼(상속)시킨다는 明文이 없더라도 半을 주고 나머지 반은 屬公하며, 그 妾이 他人의 婢인 경우에는 그 사이에서 난 아들에게 단지 7분의 1만 주고 나머지는 屬公한다고 하여 이를 임금이 允許하였다(《太祖實錄》권12-4, 태조 6년 8월 신묘). 또 太宗 5年 9月 의정부에서 各年の 受判중 영구히 遵守할 奴婢決折條目 20條를 올려서 임금의 允許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嫡室에 子息이 없는 경우, 良妾子息에게 奴婢를 全給하고 良妾子息도 없는 경우에는 賤妾子息에게 7분의 1을 주며, 良妾子息이 있는 경우에는 賤妾子息에게 10분의 1을 준다고 하였다. 또 嫡室에 子息이 있는 경우에는 良妾子息에게 7분의 1을 주고 賤妾子息에게 10분의 1을 주며, 嫡室에 딸만 있는 경우에는 良妾子에게 3분의 1을 주고 良妾子가 承重子이면 반을 준다고 하였다(《太宗實錄》권10-10, 태종 5년 9월 무술). 그런데 世宗 24년 7월부터, 子息이 없는 前嫡母의 奴婢도 後妻所生 承重長子에게 3분의 1을 주고 또 嫡子가 없는 경우의 承重·奉祀子인 賤妾子에 관해서는 定制가 있으나 子息이 없는 嫡母 및 前嫡母·繼嫡母의 노비를 전혀 주지 않도록 한 것은 承重之義에 어긋나고 또 情理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前嫡母가 죽은 후 그 남편(妾子의 生父)이 使役하던 前嫡母의 노비는 嫡子가 없는 경우 承重 良妾子에게 5분의 1, 賤妾子에게 7분의 1을 주며 나머지는 모두 本宗(친정)에 돌려준다고 하였다. 또 자식이 없는 嫡母 및 繼嫡母의 노비는 承重良妾子에게 3분의 1을 주고 賤妾子에게 5분의 1을 주며 그 나머지 노비는 己行格例에 의하여 시행한다고 하였다(《世宗實錄》권97-7, 세종 24년 7월 갑술).

(2) 賤妾子女分

賤妾子女는 賤人(奴婢)인 妾에게서 태어난 子女이다. 太祖 6年 7月의 辨定都監의 疏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良妾子에게는 傳繼의 明文이 없더라도 7분의 1을 주도록 하였으나 賤妾子에게는 明文이 없이는 爭望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해 8月의 辨定都監의 上言에서는 自己婢妾의 子에게는 비록 傳繼의 明文이 없더라도 半을 주고 他人婢妾의 子에게는 7분의 1을 주되 나머지는 屬公한다고 하였다. 또 太宗 5年 9月의 奴婢決折條目 20條에서는 自己婢妾子나 他人婢妾子의 구별없이 嫡子와 良妾子가 없는 경우에는 7분의 1을 주고 그러한 경우

良妾子(良妾子)가 있는 경우에는 賤妾子(賤妾子)에게 10분의 1을 준다고 하였다(위의 各 實錄 記事參照). 世宗 12年 4月 嫡子(嫡子)와 良妾子(良妾子) 모두 없을 경우에는 賤妾子(賤妾子)에게 노비 10명이내를 주고 나머지는 使孫(使孫) 4寸까지 나누어 주도록 하자는 詳定所(詳定所)의 啓(啓)에 대하여 世宗(世宗)은 비록 賤妾子(賤妾子)라도 父母(父母)를 承重(承重)할 경우에 奴婢(奴婢)를 어찌 減(減)하여 줄 수가 있겠는가라 하고 다시 논의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世宗實錄》권 48-2, 세종 12년 4월 을해). 또 세종 24년 7월 承重子(承重子)인 賤妾子(賤妾子)에게 노비를 주는 것에 관해서는 앞에서 살펴 보았다.

(3) 義子女分

義子女(義子女)는 前妻(前妻)의 後妻所生子女(後妻所生子女)에 대한 호칭인 동시에 後妻(後妻)의 前妻所生子女(前妻所生子女)에 대한 호칭이다. 太宗(太宗) 7年 5月 刑曹右參議(刑曹右參議) 安魯生(安魯生) 등의 상소에 의하면 子息(子息)이 있는 後妻(後妻)가 亡夫(亡夫)의 奴婢(奴婢)를 남편의 前妻(前妻)의 子(子)에게 주지 않음은 매우 잘못된 것이니 노비가 많으면 셋으로 나누고 적으면 둘로 나누어 前妻(前妻)의 子(子)에게 먼저 주고 그 나머지를 後妻(後妻)가 使役(使役)하다가 죽은후 前後妻(前後妻) 子息(子息)들이 先給(先給)노비를 포함하여 平均(平均)하여 나누어 갖도록 하자는 것이었다(《太宗實錄》권 13-26, 태종 7년 5월 을해). 태종 16년 5월에도 죽은 父母(父母)의 노비를 子息(子息)들이 平分(平分)하도록 하자는 朴崑(朴崑)의 上言(上言)이 있었다(《위의 책》권 31-40, 태종 16년 5월 신해). 결국 世宗(世宗) 17年 5月(世宗 17年 5月)에 詳定所(詳定所)의 啓(啓)에 따라 繼母(繼母)의 未分奴婢(未分奴婢)는 元數(元數)를 半(半)으로 나누어 받은 義子(義子)(前妻(前妻)子(子))에게 주고 나머지 받은 《經濟六典》(經濟六典)에 의거 4寸(本宗)(本宗)까지 나누어 주되 (총수가 홀수라서) 1명의 노비가 남으면 그것은 義子(義子)에게 주도록 하였다(《世宗實錄》권 68-13, 세종 17년 5월 정해).

세종 20년 7월 우리나라의 官員(官員)이 명나라 禮部(禮部)에 가서 繼母(繼母)와 繼祖母(繼祖母)의 服制(服制)를 물었던 바 親母(親母)와 親祖母(親祖母)의 그것과 같다는 회답을 받았다(《위의 책》권 82-11, 세종 20년 7월 을사). 喪禮(喪禮)와 祭禮(祭禮)는 그 당시 財産相續(財産相續)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해 9월 의정부의 啓(啓)에 따라 세종 17年(世宗 17年) 繼母(繼母)의 노비를 義子(義子)에게 半分(半分)하여 주도록 한 것을 다시 천명하였다(《위의 책》권 82-22, 세종 20년 9월 계사). 그런데 세종 24년 7월 刑曹(刑曹)의 보고에 의하여 議政府(議政府)에서 啓(啓)하기를 그때의 世俗(世俗)이 자식없이 죽은 亡妻(亡妻)의 노비를 남편이 부리다가 改娶(改娶)하면 그 노비를 亡妻(亡妻)의 本宗(本宗)(前妻(前妻)의 子(子))으로 돌려준은 옳지 않고 繼母(繼母)의 노비를 奉祀義子(奉祀義子)(前妻(前妻)의 子(子))에게 半分(半分)하여 주는 法(法)이 정해졌는데도 오직 前母(前母)의 노비

만 奉祀義子が 부릴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後妻所生 承重子에게 3분의 1을 주자고 하였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위의 책》권97-7, 세종 24년 7월 갑술). 《經國大典》刑典, 私賤條에서는 子女없이 죽은 前母·繼母의 노비는 義子女에게 5분의 1을 주며 그 義子が 承重子이면 3분을 加給한다고 하였으므로 약 5분의 4를 친정집(동생이나 조카)에 되돌려 준다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受教輯錄》刑典 私賤條(明宗 9年 承傳)에 의하면 前母·繼母와 義子女간의 母子大義는 親母子와 輕重을 따질수 없을 정도라 하고 오로지 財主(前母·繼母)의 처분의사에 따르도록 하였다. 조선중엽 義子和 本族(繼母의 친정조카)간의 재산상속에 관한 분쟁의 판례분석으로서 文淑子, 〈義子女와 本族간의 재산상속분쟁〉, 《古文書研究》8, 1996.3, pp.41~68이 있다. 위글에 의하면 재판관이었던 羅州牧使 金誠一은 대체로 義子女에게 勝訴判決을 내리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면 儒敎文化的 보급으로 義子女라는 用語自體가 사라질 정도로 前後娶인 母와 그 子女간은 親生子여부에 상관없이 法上 똑같은 자식이요, 똑같은 兄弟姊妹間처럼 인식되었다.

(4) 養子女分

養子女는 남의 자식을 거두어 길러 자기 자식으로 삼거나 생활상의 편의 또는 의지하고자 하여 기른 남의 자식을 말한다. 고려 때는 異姓養子도 繼後子(奉祀者)로 될 수 있었으나 조선시대에는 外孫奉祀 등의 예외는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異姓養子の 繼後資格이 박탈되었다(朴秉濠, 《韓國法制史考》, 法文社, 1987, pp.355~379). 특히 조선후기에는 親生子인 妾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同姓同本인 繼後子 즉 同宗의 姪行(심지어 수십촌)에서 入養하여 嗣子(奉祀子)로 삼는 慣行이 보편화하였다(17세기~19세기의 각 氏族의 족보에서 확인).

養子중에서 3歲前에 거두어 기른 자를 收養子라 하고 그 이후에 입양한 자를 侍養子라 하였다. 평양쪽의 윤국일, 《앞의 책》, p.477에서는 성종이후 시양자는 가족관계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양자는 代를 잇기 위한 수양자(繼後子와 혼동)뿐이라 했으나 박병호, 《앞의 책》, pp.355~356 및 조선총독부 중추원, 《李朝の財産相續法》, 1936, pp.235~237에서는 本人死後 宗祀를 계승할 繼後子와 養子(수양자)는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世宗實錄》권61-8,

세종 15년 7월 을축에서는 收養子を 繼嗣로 삼았다고 하였다. 《經國大典註解》前集 刑典에 收養子は 自己아들과 같다고 하고 그를 後嗣로 세우면(立後) 그 양부의 노비를 嫡妻에게 子女가 있는 養父母의 例에 따라 준다고 하였다. 《經國大典》刑典 私賤條에서 子女가 없는 養父母의 奴婢에 관한 註에서 3歲前(收養子)이면 全給한다고 하였는데 夫妻 한쪽이 죽은후에 살아있는 配偶者가 自己 親族중에서 收養한 경우에는 비록 3세전일지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經國大典註解》前集 刑典). 그러나 통상의 경우에는 侍養子에게는 7분의 1, 收養子에게는 그 나머지 전부를 주도록 하였다(《위의 책》後集 下 刑典). 조선후기에는 繼後子(同宗의 姪行)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조선전기에는 同姓·異姓의 收養子·侍養子가 상당수 있어서 재산상속을 중심으로 논의가 많았다(《世宗實錄》권102-29, 세종 25년 11월 을해 및 조선총독부 증추원 《앞의 책》, pp.231~26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收養子가 繼後子가 되는 수가 있다고 하여 同一개념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송준호). 특히 《高麗史》권85-46, 刑法志2, 奴婢, 공양왕 4年條에 人物推辨都監이 奴婢決訟法을 정한 가운데 同宗之子나 3歲前에 버린 아이를 거두어 戶口에 付籍하여 收養子로 삼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과 같이 相續(傳給)시킨다고 하였으며 태조 6년 7월에서 조선건국이후의 現行法令 19條를 상소한 가운데에서도 3세전의 收養子は 자기 아들과 같으므로 비록 傳繼(相續)의 明文이 없더라도 양부모의 노비를 모두 준다고 하고 侍養子의 경우에는 明文이 있으면 그대로 주되 明文이 없으면 半만 주도록 하며 나머지 반은 本宗의 主祀者나 孝道하는 친척들에게 差等決給한다고 하였다(《太祖實錄》권12-2, 태조 6년 7월 갑술). 태종 5년 9월 의정부에서 올린 奴婢決折條目 20條에서도 收養子에게는 奴婢를 專給(全給)하고 侍養子에게는 同姓이면 3분의 1, 異姓이면 4분의 1을 주며 그 나머지 노비는 使孫 4寸이내 친족에게 나누어 주고 4寸이 없으면 屬公한다는 것이었다(《太宗實錄》권10-10, 태종 5년 9월 무술). 養子의 노비상속분은 그 후에도 몇 차례 개정되어 경국대전에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이태진의 4인, 《앞의 책》, p.730).

27. 丘史

丘史에 관하여 《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刑典에서는 “丘는 《고려사》에서 驅라 하였고 《說文解字》에서 史를 官屬이라 하였다”고 했다. 따라서 丘史는 官에 소속되어 심부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高麗史》권75-23 限職, 仁宗 3年條에서는 驅史·電吏·杖首·所由·門僕·注膳·幕士·大文 등 자손은 軍人子孫처럼 許通赴擧케 하여 과거합격자에게는 限職을 준다고 했다. 따라서 丘史는 軍人과 같은 신분이었으나 조선시대에 와서 그 신분이 떨어져서 노비와 같은 처우를 받았다고 한다(윤국일, 《앞의 책》, p.473). 太宗 10년 정월에 元尹과 正尹에게 丘史 각3명을 주도록 하였으나(《太宗實錄》권19-1, 태종 10년 정월 무인), 世宗 7年 9월 司憲府의 啓에 의하면 高官과 일부 요직에 있는 郎官들이 定數이외의 丘史들을 많이 거느려, 심지어 40여명까지 거느리면서 수행원으로서의 임무이외 土木工役이나 재산상의 營利를 도모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다. 成宗 원년 2월 임금이 승정원에 傳旨하기를 중앙各司의 京居奴婢가 적으니 丘史를 本司에 還屬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물었고 다들 찬동하여 이틀후 尙書院에 傳旨하여 功臣의 丘史와 奴婢중 京居人을 本司에 還屬시키고 外居노비로서 보충해 주도록 하였다(《成宗實錄》권3-5, 성종 원년 2월 기미·신유). 성종 13년 3월, 右承旨 李世佐의 啓에 의하면 東班 堂上官에게는 丘史가 있으나 西班 堂上官에게는 없다고 하였다(《위의 책》권139-18, 성종 13년 3월 정유). 《孝宗實錄》권7(효종 2년)에 의하면 丘史란 공신들에게 賞으로 주는 노비라고 하여 賤人신분으로 떨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윤국일, 《앞의 책》, p.473).

28. 才白丁團聚

(1) 才白丁團聚는 才人과 白丁들을 한데 모아서 단속한다는 뜻이다. 才人·白丁은 無役之丁이라 하였고 團聚는 그들이 도적이 되는 것을 禁하도록 하는 것이라 하였다(《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刑典). 고려시대에는 州府郡縣民의 다수가 당해 지방의 土豪인 戶長에게 다스림을 받았고 土地상속자인 장자이외에는 중앙에서 파악되는 軍役대상이 되지 않아서 이들을 白丁이라고 하였다는 것

이다(李佑成, 〈閑人白丁의 新解釋〉, 《歷史學報》19, 1962).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면 良人 男丁이 모두 軍役의 대상자로 되면서 白丁은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는데 禾尺들을 新白丁으로 하여 良人으로 취급하고자 하였으나 그들에게 軍役의무는 지우지 않음에 따라 그후 그들에 대한 專稱으로 쓰게 되었다고 한다(姜萬吉, 〈鮮初白丁考〉, 《史學研究》18, 1964). 그러나 才人·白丁의 軍役に 관하여 太宗 때에 그들을 軍人으로 活用하고자 하는 건의도 있었으나 允許되지 아니하고(《太宗實錄》권8-14, 太宗 4年 9月 丁巳) 身貢을 받는 賤役人으로 남을 수 밖에 없었다(《위의 책》권20-27, 太宗 10年 11月 甲子). 그후 才人禾尺은 平民과 雜居하면서 軍役의무를 짐으로서 納貢의 의무를 면제 받기도 하였으나(《위의 책》권27-43, 태종 14년 6월 갑인)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일뿐 대체로 임금이 사냥할 때 물이꾼으로 活用되는 정도였다(《위의 책》권25-11, 태종 13년 3월 계미 및 권28-28, 태종 14년 윤9월 계묘 등). 물론 그후에도 才人 禾尺(白丁)들은 임금이 사냥할 때에 물이꾼으로는 가끔 동원되었지만(《中宗實錄》권46-21, 중종 17년 10월 신묘; 권81-5, 중종 31년 정월 을축) 보통 軍兵으로는 동원되지 않았다. 다만 예외로 세종 원년 5월의 대마도 왜구 정벌 때와 같이 거국적인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 才人禾尺도 일부 징집되었다(《세종실록》권4-4 세종 원년 5월 무오). 그 무렵 나라에서는 그들을 軍籍에 올려 平民과 雜居시키면서 農事를 익히도록 하였으나(《위의 책》권18-17, 세종 4년 11월 정축) 잘 될 수가 없었다. 그 후 成宗 4年 12月 兵曹에서는 그들이 한 고을의 平民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나 되는데도 作保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啓하였으나 임금은 自願하는 자만을 保人으로 삼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成宗實錄》권37-8, 성종 4년 12월 갑술). 비록 그들이 正規軍兵으로서는 동원되지 않았지만 지방관이 멋대로 使役하여 고통을 못참고 도망치는 일도 있었다(《中宗實錄》권41-40, 중종 16년 3월 정사 및 권52-38, 중종 19년 12월 무술).

才人과 白丁의 身分이 처음에는 良人이었다고는 하나 工匠과 더불어 조선 전후기에 걸쳐서 賤民으로 인식되었다(《世祖實錄》卷3-26·30, 世祖 2年 3月 丁酉 및 《宣祖實錄》권51-8 선조 27년 5월 을유, 조선총독부 중추원 《앞의 책》, p.673). 그리고 才人과 白丁(禾尺)은 별개의 賤役人이었으나 조선국 초부터 같은 部類의 異邦人으로 인식되었다. 즉 그들은 우리나라에 歸化해온

北方民族의 후손(韃靼遺種)으로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山谷間에 모여 살기도 하고 끼리끼리 혼인하며 농사를 짓지 않고 짐승(주로 소)잡는 일을 生業으로 하면서 구걸행각과 도적질도 하여 才人禾尺·禾白丁·才白丁·新白丁 등으로 混稱되었다(《太祖實錄》권2-6, 태조 원년 9월 임인 및 《世宗實錄》권40-9, 세종 10년 윤4월 갑신·권120-4, 세종 30년 4월 갑자와 《世祖實錄》권3-30, 세조 2년 3월 정유). 白丁(禾尺)을 才人과 混稱하게 된 것은 그들이 農業勞動에 적응되지 못하고 柳器제조·판매나 皮革판매 등 副業을 하는 이외 줄타기와 歌舞 등으로 生計를 유지하는 자도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나라에서는 才人 禾尺을 白丁으로 改稱하여 土地를 주어서 農民化(一依平民錄籍)하고자 하였으나 그들 新白丁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떠돌아 다니면서 사냥이나 牛馬屠殺·皮物다루기 또는 도적질을 하면서 살아 갔다(《위의 책》권69-19, 세종 17년 8월 병인·권40-9, 세종 10년 윤4월 갑신·권97-20, 세종 24년 8월 계사·권115-19, 세종 29년 3월 계미)는 것이다. 반면에 白丁 중에서는 벼슬을 받은 자도 있었고(《위의 책》권116-6, 세종 29년 4월 경신), 軍人이 되는 자도 있었지만(《文宗實錄》권7-13, 문종 원년 4월 을유), 大多數의 新白丁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2) 世宗 2年 11月 禮曹에서 啓하기를 太祖 元年の 司憲府의 受判에 의하면 農牛를 韃靼禾尺에 팔거나 산 자는 모두 宰殺律(《大明律直解》卷16, 兵律 廐牧)로 論罪한다는 것과 世宗 元年の 議政府의 受判에 의하면 禾尺才人は 農業을 하지 않고 오직 弓馬로서 (사냥질을) 일삼아 良民과 서로 혼인하지 못하여 한 무리를 이루어 살면서 모이고 흩어짐이 無常하며 牛馬를 屠殺하여 良民이 害를 받으니 그들을 平民과 서로 혼인시켜서 安業시키되 舊習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그들이 기르는 가축을 몰수하고 里正長에게도 죄주자는 것이었다(《世宗實錄》권10-12, 세종 2年 11月 庚午).

世宗 5年 10月 兵曹에서 啓하기를 才人과 禾尺은 본시 良人이나 그 직업이 賤하여 백성들이 모두 그들을 異類로 보아서 더불어 혼인하기를 부끄럽게 여기니 白丁으로 호칭을 바꾸어 平民들과 서로 혼인하여 섞어 살게 하고 그 戶口를 帳籍에 올려 閑田을 주어서 농업에 종사토록 하며, 사냥에 동원하는 일과 柳器나 가축·갈기(털)·고기·뿔 등의 貢物을 면제해 주어 편하고 넉넉하게 살도

록 하자는 것과 武才있는 자는 侍衛牌로 삼고 그 다음은 守城軍으로 충당하되 그중에서 武才가 탁월한 경우에는 都節制使(후일의 節度使)로 하여금 取才시험을 보여 兵曹에 보고하면 병조에서 다시 시험보여 甲士職으로 任用하도록 하자 것이었다. 또 만약 그들이 종전대로 生業을 계속하면서 農桑에 종사하지 않고 떠돌아 다니면 법률에 의하여 論罪함과 동시에 호적을 살펴서 本籍地에 되돌려 보내자고도 하였다. 임금의 이에 따랐다(《위의 책》권22-3, 세종 5년 10월 을묘). 그러나 그후에도 禾白丁 또는 才白丁으로 불리우는 그들 異邦人(韃靼人)들은 우리의 平民과 혼인할 수도 없었고 또한 땅도 받지 못하여 구걸이나 강도·절도로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위의 책》권120-4, 세종 30년 4월 갑자 및 《文宗實錄》권8-14, 문종 원년 6월 계미와 권10-9, 문종 원년 10월 임오·《世祖實錄》권3-30, 세조 2년 3월 정유).

成宗 4年 8月 刑曹에서 啓하기를 前의 受敎에 의하면 才人·白丁이 도망쳤다가 붙잡히면 徙民逃亡例에 따라 斬刑에 처하고 부득이 다른 곳에 出入할 경우에는 날자를 한정하여 行狀(여행허가증)을 주고 行狀없이 나다니거나 기한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制書有違律로 論斷한다고 하여 법이 매우 엄했다는 것과 官에서 行狀 받기가 매우 어려워 부득이 行狀없이 父母妻子의 奔喪 또는 救病하러 가다가 처벌받는 수가 있으니 앞으로는 그러한 경우에는 죄를 면제해 주고 行狀을 즉시 발급하지 않은 守衛는 관찰사로 하여금 糾察토록 하자는 것이었다. 임금의 이에 따랐음은 물론이고 이어서 傳旨하기를 3日程 거리에 15日이상 往來하는 곳에만 行狀을 발급하고 그 나머지 경우는 里正에게 告하여 出入하도록 하되 이에 위반하면 法대로 論罪하라고 하였다(《成宗實錄》권33-16, 성종 4년 8월 경진).

成宗 元年 2月 兵曹의 啓에 의하면 白丁도 保人으로서 軍籍에 편성된 바 있으나 有名無實하였고(《成宗實錄》권3-23, 성종 원년 2월 기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成宗 4年 12月 兵曹에서 또 才人 白丁중 產業이 있고 富實한 자가운데에서 自願에 따라 軍籍에다 保人으로 편성하자고 啓하였지만(《成宗實錄》권37-8, 성종 4년 12월 갑술), 成宗 6年 4月에는 全羅道 觀察使의 啓本에 의거 兵曹에서 다시 啓하기를 才人 白丁이 농업이나 양잠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사냥이나 고기판매를 영업으로 하여 입에 풀칠(糊口)하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모두 卒伍로 예속시켜서 平民(編戶)과 같이 役을 지운다면 장차 그 苦役을 참

지 못하고 모여서 도적이 되어 도리어 良民에게 害를 끼치니 재산이 풍족하고 軍伍로 充員되기를 원하는 자에게만 그것을 허용하고 産業(生業)이 없는 자에게는 定役하지 말며 閑田을 주어서 農桑을 권장하여 數十年을 기다린 후 그들이 富實해진 다음에 定役시키자는 것과 또 앞으로는 才人 白丁이라 호칭하지 말며 平民과 섞여 살도록 해서 서로 혼인하게 하자고 하여 임금이 이에 따랐지만(《위의 책》권54-6, 성종 6년 4월 경인), 그대로 될 수는 없었다. 成宗 7年 7月 임금이 각 道の 觀察使에게 下書하기를 才白丁은 본래 모두 異類(異民族)로서 農業에 從事하지 아니하고 無人之地에 屯聚하여 오로지 盜賊질을 일삼았으므로 民間에 分置하여 섞여 살도록 하면서 점차 良民이 되도록 하였으나 守令이 제대로 그들을 살피지 않아서 제멋대로 山行하고 또한 良民들이 받는 被害가 적지 않으니 엄중히 그들을 糾察하도록 하되, 이에 어긋난 경우에는 비단 守令 뿐만 아니라 監司도 문책하겠다고 하였다(《위의 책》권69-9, 성종 7년 7월 기미).

成宗 15年 11月 刑曹判書 魚世謙 등이 와서 啓하기를 近日 牛隻을 屠殺(幸殺)한 자를 잡아 보니 士大夫家의 行廊에서 많이 (범인이) 나왔다고 하자 임금은 이를 領敦寧 이상 및 議政府와 6曹判書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이에 鄭昌孫은 만약 범죄의 흔적이 있다면 비록 朝士나 宰相家의 行廊일지라도 수색함이 옳다고 하였고 韓明滄는 才白丁이 屠殺을 영업으로 삼으면서 서울에 와서 사는 자가 많다는 것과 朝士가 만약 그들과의 許接을 제멋대로 하였다면 마땅히 엄중히 論罪하고 婦女子가 살고 있는 곳 이외에는 搜探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沈滄는 뚜렷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搜探케 하자고 하였고 洪應은 尊卑를 막론하고 搜探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李克培도 대체로 洪應의 견해와 같았으나 徐居正은 단지 양반이라고 하여 節目을 細分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搜探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즉 官秩이 낮은 小小朝士나 有蔭子弟·軍士·寡婦之家 등에는 비록 양반집이라고는 하나 나라에서 尊敬할만한 곳은 아니므로 刑曹에서 所聞만으로 搜捕해도 무방하며 宗宰大夫之家에는 함부로 수색할 수 없고 다만 犯行이 있으면 엄중히 痛懲함이 좋겠다고 하였다. 魚世謙은 양반은 모두 士族이므로 비록 그 집 行랑일지라도 역시 한 집안 내이니 이유없이 돌입하여 搜捕함은 士族을 대우하는 것에 어긋남으로 안된다고 하고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나 告發이 있으면 수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反面 孫舜孝는 소잡는 일을 業으로 삼는 자가 모두 都城안에 들어 와서 不義之家에 寄食하거나 空家에 살면서 제멋대로 행동하니 捕盜將으로 하여금 軍士들을 거느리고 가서 잡아 들이도록 하자고 하였다. 그외에도 여러 사람이 이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임금은 人君이 士大夫를 重히 대접한다는 것과 비록 萬牛을 잃을지라도 士大夫를 대접하는 禮를 잃을 수는 없다고 하고 이어서 刑曹에 傳旨하기를 牛馬를 屠殺하는 자를 所聞에 따라 잡아 들이되 士大夫家の 경우에는 所聞이 확실한 경우에만 임금에게 아뢰어 推考하도록 하라고 하였다(《위의 책》권172-7·8, 성종 15년 11월 계묘).

白丁들에 대한 同化政策으로 자기네들끼리 혼인하지 못하게 하고 平民들과 혼인하도록 하였지만(《위의 책》권222-12, 성종 19년 11월 경오)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살기가 어렵게 된 그들 才白丁은 결국 서울 都城안 까지 들어 와서 密屠殺하거나 도적질을 할 수 밖에 없었다(《위의 책》권233-10, 성종 20년 10월 기해·권232-10, 성종 20년 9월 신사·권234-15, 성종 20년 11월 무진). 성종 20년 12월 大司諫 李栻이 啓하기를 지금 도적이 흥행하여 서울과 지방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모두 才白丁之類인데 이들은 恒産이 없으면서 使役됨이 甚苦하여 도적이 되는 것이니 나라에서 그들의 살길을 열어 주어야만 도적이 그칠 것이라는 것과 그들을 良民과 혼인시키는 것이 실로 美法이나 州縣에서는 그들을 異類로 보고 良民측에 끼워 주지 아니하려 하여 才白丁들은 產業에 종사하지 않고 모여서 도적이 되어 그 폐단이 크므로 일응 그들에게 良民처럼 賦役을 부담시켜서 平民化시키자고 하였다(《위의 책》권235-7, 성종 20년 12월 임진). 성종 22년 4월 行僉知中樞府事 金永濡가 上言하기를 우리나라의 才人 白丁은 그 先代가 胡種으로서 말달리기와 활쏘기를 잘 하고 그 性格이 모두 驍勇하여 徒步로 짐승을 잡으며 험한 산길을 平地처럼 다니고 飢寒에도 病들지 않으며 달리기를 잘하여 1當 100이니 그러한 자들을 軍丁으로 뽑아 北征에 쓰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위의 책》권252-19, 성종 22년 4월 무진).

(3) 中宗初에 白丁인 唐來와 彌勒 兄弟가 原從功臣(反正時의 准功臣)에 參錄되었는데 그는 원래 強盜였으므로 도적잡는데 適格이라 하여 捕盜將을 삼았다(《中宗實錄》권2-44, 중종 2년 3월 신미). 그러나 그들은 천거자인 金浦縣

令 朴永文과 함께 중종 2년 12월 大司諫으로 부터 탄핵당하였다(《위의 책》권 4-63, 중종 2년 12월 정해). 또 중종 5년 8월 安骨浦에 侵入한 倭賊을 白丁이 활을 쏘아 的中시켰다는 實錄記事 속에서 白丁은 別種人이라는 것과 그들은 활쏘기로 사냥하고 柳器를 만드는 것을 영업으로 하여 平民(編氓)과 다르다고 하면서 고려 때에는 楊禾尺이라 했다는 것이다(《위의 책》권12-1, 중종 5년 8월 정해). 중종 7년 11월 柳順汀이 말하기를 南原品官이 強悍하여 府內 才白丁 2000餘人을 모두 使役시켰다고 하고 品官 1명당 30~40인씩의 才白丁을 (品官집) 울타리 안에서 살도록 하였지만 衙前들이 擧出해 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임금은 品官의 作弊는 비단 南原 뿐만 아니라 下三道가 모두 그럴 것이니 監司들이 이를 糾察하도록 하라고 하였다(《위의 책》권17-12, 중종 7년 11월 갑술). 중종 9년 12월 大司憲 宋千禧도 경상도 함안에서 土豪品官으로서 才白丁 30여인을 집안에 숨겨둔 자가 있었음을 말하였다(《위의 책》권 21-35, 중종 9년 12월 정미). 중종 12년 7월 3公의 啓에 의하면 江界府使 朴英이 才白丁을 濫占하였으므로 파직되었다고 하였다(《中宗實錄》권28-23, 중종 12년 7월 丙子).

중종 9년 10월 한성부 左尹 李繼福의 書啓에 의하면 나라에서 白丁을 異種으로 보아서 軍役に 充定하지 않으나 守令으로 부터 부과된 役務가 많아서 그 고통이 10배나 되었으므로 도적으로 轉換된 자가 많았다고 하였다(《위의 책》권21-6, 중종 9년 10월 임인). 중종 9년 12월 執義 金崇祖가 말하기를 전라도 각 고을의 才人들이 恒産도 없고 定居함도 없이 朋結作黨하여 民財를 覬覦하고 殺人과 도적질을 하였으므로 큰 걱정이라고 하였다. 이에 좌의정 鄭光弼도 말하기를 비단 才人만이 아니고 白丁도 그렇다고 하고 무리를 지어 覬覦한다고 하자 임금은 대체로 도적은 빈궁에서 일어나고 또한 守令이 存撫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위의 책》권21-33, 중종 9년 12월 갑진). 때로는 白丁인 罪囚가 捕盜官을 殺害하기도 하였고(《위의 책》권34-49, 중종 13년 9월 갑인). 結黨하여 殺人·強盜질을 恣行하기도 하였다(《위의 책》권55-22, 중종 20년 9월 기사).

才白丁 중 일부는 同化되어 農夫가 되었으므로 사냥에 動員함은 不可하다고 한 적이 있으나(《위의 책》권41-40, 중종 16년 3월 정사)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직부터 下番軍士와 함께 才白丁도 사냥에 動員하는 일이 많았다

(《太宗實錄》권25-11, 태종 13년 3월 계미·《世宗實錄》권3-19, 세종 원년 3월 임자·《中宗實錄》권46-21, 중종 17년 10월 신묘·권81-5, 중종 31년 정월 을축). 또한 중종 19년 12월 臺諫의 啓에 의하면 全羅左水使가 順天 才人 白丁 200여명과 그 近營 4·5里內 居民들을 제멋대로 부려 먹었으므로 吏民이 고통에 못이겨서 모두 逃散하였다는 것이다(《위의 책》권52-38, 중종 19년 12월 무술).

중종 19년 12월三公의 啓에 의하면 歸化人들도 才人 白丁 例에 따라 한 곳에 모여 살도록 되어 있으나 당시 여러 고을로 흩어져서 살고 있음은 부당하다는 것이다(《위의 책》권52-44, 중종 19년 12월 무신). 그러나 才人 白丁도 보통사람과 다름이 없고 용모로서도 분별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위의 책》권57-2, 중종 21년 5월 정해), 중종 23년 4월에는 巡邊使가 才白丁 중에서도 武才가 있고 勇建能步者는 節度使로 하여금 뽑아 (軍人으로) 쓰게 하자고 하였다(《위의 책》권61-14, 중종 23년 4월 정사). 중종 31년 9월 임금의 傳旨에 의하면 才白丁 雜色軍의 數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위의 책》권82-37, 중종 31년 9월 임술). 또 중종 36년 5월의 賑恤廳 節目에 의하면 才人 白丁들은 本是 恒産이 없는 사람으로서 유희를 專業으로 하여 마을에 橫行하면서 양식을 동냥질하거나 도적질(겁탈)하면서 살아가는 族屬이라 하였다(《위의 책》권95-28, 중종 36년 5월 기해).

明宗 16년 10월 임금은 승정원에 傳旨하기를 서울에 있는 男女 才人들을 남김없이 列名하여 抄啓하라고 하였다(《明宗實錄》권27-59, 명종 16년 10월 경오). 明宗 때의 大賊 林巨正이 白丁신분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나 임진왜란 중인 宣祖 27년 10월 승정원에서 啓하기를 白丁과 山尺(산속에 살면서 사냥이나 약초를 캐서 生活)들 40여명이 (平民의 통솔하에서) 도적이 되고 있다는 것과 심지어 서울 都城內에도 才人이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있다고 (범죄단체를 조직한다고) 하였다(《宣祖實錄》권56-16, 선조 27년 10월 임자). 反面 그 무렵 軍功廳의 啓에 의하면 公私賤이나 才人 白丁·匠人·山尺 등 賊類들도 賊의 목을 베면 免賤 또는 벼슬을 주었다는 것이다(《위의 책》권51-8, 선조 27년 5월 을유).

(4) 조선 전기에 良人 신분이었던 (그러나 실제로는 賤待되었던) 白丁은 前

述한 바와 같이 조선후기에 이르면 名實共히 최하층의 賤人으로 취급되었고 常賤人으로 부터 下待받는 (反面 白丁은 常賤人에게 言語上으로도 尊待) 매우 賤한 신분자가 되었다. 純祖 9년 6월 우의정 金思穆도 白丁은 지극히 賤한 자라 하고 常人과 감히 같이 어울릴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당시 白丁이 婚娶 때 冠服을 입고 日傘을 펴 들었다고 하여 고을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冠服을 빌린 사람을 亂打하고 白丁집을 헐어 버렸으므로 그 罪를 다스리고자 하였으나 백성들이 府衙에 投石하는 등 저항함으로 “不能嚴治其罪”라 하였다(《純祖實錄》 권12-29, 순조 9년 6월 갑오).

第5章 立案·申聞鼓 其他

29. 立案

立案은 文憑과 같은 뜻으로서 증빙이 되는 文書(文案)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刑典). 즉 立案은 매매·상속·증여·入養 등의 경우 뿐만 아니라 告身의 망실이나 物件을 도난당하였을 때에도 官에서 발급해주는 公證書·證明書·確認書와 같은 것이다(박병호, 《韓國法制史攷》, 法文社, 1987, pp.36~53). 立案에 관한 實錄의 記事는 《太宗實錄》권9-14, 太宗 5年 4月 己亥條에 비롯하여 《世宗實錄》권10-10, 世宗 2年 11月 己巳·권29-25, 世宗 7年 8月 丙申과 《成宗實錄》卷202-13, 成宗 18年 4月 癸巳, 《仁祖實錄》권46-85, 仁祖 23年 10月 丁未·《肅宗實錄》권8-55, 肅宗 5年 12月 戊辰 등 여러 곳에 보이며 《經國大典》에서도 吏典 告身條와 戶典 買賣限 및 刑典 贓盜條·私賤條 등에 규정이 있고 《續大典》禮典 奉祀條에도 보인다. 官에서 立案을 成給할 때에는 이웃이나 證人·筆執 기타 관계인을 조사하여 그들이 立證해야 했으며 立案을 斜給받으면 權利關係가 명확해짐으로 權利者보호 뿐만 아니라 去來安全에도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立案의 斜給만으로 法律關係가 확정(매매가 有效히 成立)되는 것은 아니다(박병호, 《위의 책》, pp.37~49 및 위 세종실록 등). 立案制度는 고려 때에도 있었고 조선 전후기에 걸쳐서 있었지만 특히 노비의 매매·상속의 경우에는 조선후기까지 立案이 잘 이행되었다. 그런데 부동산(田宅)과 노비의 매매·상속 등에 있어서 재산권

변동요인(계약성립 등)이 발생한 후 일정기간 내에 官에 신고하여 立案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이성무외 4인, 《講註經國大典》주석편, 앞의 책, p.517). 그러나 成宗 18年 4月 都承旨 李世佑가 啓한 바와 같이 奴婢傳得者가 期年(1年)內에 官에 신고서를 제출(告狀)하여 立案을 받도록 《經國大典》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상 期年內에 告狀만 제출해야 할 뿐 반드시 立案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임금인 領敦寧이상에게 논의하도록 하였던 바 1年이란 告官의 期限일뿐 立案을 받고 받지않는 기한은 아니라는 洪應 등의 의견이 있어서 이에 따랐다(《成宗實錄》卷202-13, 성종 18년 4월 기사).

30. 申聞鼓

申聞鼓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으로 대궐문안 의금부 당직청에 설치한 큰북을 치게 하였던 제도 또는 그 북을 지칭하는 말이다. 중국에서는 堯임금이 下情上達을 위하여 敢諫之鼓를 두었다고 하며 南朝 때에도 登聞鼓라는 이름이 보이고 唐代이후 朝堂에 이를 설치하여 宋·明이 이를 계승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申聞鼓제도는 皇帝에게 直訴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臺諫에게 알리는 수단이었지만 조선에서는 主掌官 또는 觀察使와 司憲府에 호소하여도 분명한 구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임금에게 上訴하는 제도인 점에 차이가 있다(이태진외 4인, 《앞의 책》 p.713 및 한우근, 〈申聞鼓의 설치와 그 실제적 效能에 대하여〉, 《이병도화갑기념논총》, 일조각, 1956 및 윤국일, 《앞의 책》, p.469).

이러한 제도는 조선에서는 태종 원년 7월 登聞鼓라는 이름으로 중국 宋朝 故事에 따라 처음 설치하여 (《太宗實錄》권2-2, 태종 원년 7월 을사) 다음 달에 申聞鼓로 고쳤다(《위의 책》권2-6, 태종 원년 8월 정사). 태종 원년 11월 君臣間의 대화에 의하면 신문고는 三代(夏殷周)之法이며 지방사람이 지방관 및 사헌부에 호소하여도 어느 곳에서나 명백히 해결하여 주지 않은 경우에 북을 치게 하는 제도라고 하였다(《위의 책》권2-19, 태종 원년 11월 경자). 太宗 2년 정월 의정부의 上訴에 따라 申聞鼓는 대궐안에 설치하여 巡軍令史 1명과 螺匠 1명이 지키도록 하되, 신문고를 치려고 오는 자가 있으면 令史가 官吏에게 달려가서 보고하게 한다. 관리는 북을 치는 사유를 알아보고 國事犯 고발

등의 경우에는 즉시 복을 치도록 하되 政治의 得失이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伸冤하지 못한 경우는 소정 절차를 거쳤을 때(非其越訴) 그 진상을 듣고 복을 치도록 한 후 螺匠을 시켜서 그자의 所居地를 알아 두도록 하였다. 그때 임금이 下敎하기를 무릇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 伸冤되지 않은 자가 告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主掌官, 지방에서는 守令과 監司에게 告하되, 究治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헌부에 올리고, 사헌부에서도 究治하지 않으면 신문고를 치게 하라고 하였다.

원통하고 억울함이 명백함에도 위 官司에서 究治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죄주고 越訴者(下級官廳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상급관청에 提訴하는 자)에게도 照律 論罪하되 만약 不軌를 음모하여 장차 社稷을 위태롭게 하거나 宗親이나 勳舊를 謀害함으로서 禍亂을 일으키는 자를 고발하는 것이라면 곧바로 신문고 있는 곳에 와서 복을 치도록 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면 田 200結과 奴婢 20명을 賞으로 주되 官職이 있는 자라면 3등급을 넘어서 任用(錄用)하며 官職이 없는 자에게도 곧바로 6品으로 任用하고 公私賤口는 許通하여 良人으로서 삼는 동시에 7品으로 바로 任命하며 犯人의 家舍·財物·奴婢·牛馬 등은 多少를 막론하고 신고자에게 준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誣告의 경우라면 도리어 무고 내용인 그 죄로 처벌한다고 하였다(《위의 책》권3-6, 태종 2년 정월 기유). 그러나 그후 실제로 申聞鼓를 치는 자들은 노비에 관한 소송을 잘못 판결하였다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앞으로는 그러한 判禁奴婢事로 신문고를 칠수 없도록 하였으나 그후에도 노비문제로 신문고를 치는 일은 계속되었다(《위의 책》권3-14, 태종 2년 3월 무술 및 권7-1, 태종 4년 정월 갑인).

한편으로 司憲府의 決定이 부당하다고 하여 신문고를 치다가 도리어 무고죄로 몰리어 멀리 귀양가거나 水軍으로 充軍되는 등 처벌받는 일도 있었다(《위의 책》권3-28, 태종 2년 5월 신해). 또한 관료들의 陳言에 의하면 신문고는 억울한 일을 伸冤하기 보다는 소송의 誤決云云으로 간사한 무리들의 기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하였다(《위의 책》권8-13, 태종 4년 9월 정사). 신문고를 치는 이유도 雜多하여, 혹은 官職에 임용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또는 녹봉이 적다고 하는 경우(《위의 책》권15-9, 태종 8년 3월 경술 및 권19-31, 태종 10년 4월 기해), 혹은 從妹와 노비문제로 다투었다가 從妹가 他人과 간통하였다고 申告한 것이 허위라고 하여 파직된 官人의 妻가 억울하다고 하여

치는 경우(《위의 책》 권17-11, 태종 9년 2월 경인), 혹은 원종공신으로 參錄하여 달라는 것(《위의 책》 권22-36, 태종 11년 11월 계해) 등이 있었다. 태종 10년 4월 사간원에서는 申聞鼓를 치는 자들 중에서는 분김에 남을 해치려는 자가 있으며 특히 公平無私하게 일을 하는 守丞을 참조하는 경우도 있어 政令이 행하여질 수 없고 賦役이 고르게 될수도 없으니 宗廟社稷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고 平民이 私感을 갖고 守丞을 참조하는 자 등은 엄히 다스리자고 하였다(《위의 책》 권19-34, 태종 10년 4월 갑진).

또한 태종 12년 12월 재산문제로 계모와 전처 자식이 서로 다투다가 계모가 전처 자식이 父妾과 간통하였다고 하자 그 전처 자식이 自殺하였으므로, 사헌부에서 계모의 爵牒을 환수하고 고문하였는데 계모의 親生子가 신문고를 쳐서 고문을 한 사헌부의 관료들(그중 掌令과 持平은 자살자의 친구)이 귀양가게 되었다(《위의 책》 권24-30, 태종 12년 12월 임술). 그리하여 태종 15년 7월 임금이 下旨하기를 근년에 신문고를 쳐서 호소(申呈)하는 자들은 거의 노비에 관한 일이고 기타不法으로 罪를 받았다는 등으로 立法의 뜻과 다르고 和氣를 沮傷할 것이므로 中外 大小人民이 만약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伸怨되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經濟六典》에 따라 시행하라고 하였다(《위의 책》 권30-2, 태종 15년 7월 계묘). 태종 14년 8월 巡禁司가 義禁府로 개칭됨에 따라 (《위의 책》 권28-15, 태종 14년 8월 신유) 申聞鼓는 의금부 當直廳에 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후에도 노비소송이 誤決되었다고 신문고를 치다가 구속된 사람이 있었는데(《위의 책》 권34-3·4, 태종 17년 7월 갑자), 그로 인하여 사람들은 신문고를 기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종 10년 5월 私婢가 광화문에 있는 鐘을 쳐서 그 원통함을 호소하였는데 승정원에서 그 까닭을 물었던바 의금부의 당직원들이 신문고 치는 것을 금지하였으므로 종을 쳤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세종은 신문고를 설치함은 下情을 上達하고자 함인데 “왜 禁하느냐”라 하고 “만약 호소내용이 不實하면 치는 자에게 죄가 있을 뿐이요 어찌 복을 받은 관리에게 관계될 것인가”한 후 사헌부에서 그 당직원을 국문하도록 하였고 드디어 의금부 관계자가 파직되었다(《世宗實錄》 권40-18, 세종 10년 5월 을해). 세종 16년 정월 申聞鼓를 升聞鼓로 바꾸었으나 (《위의 책》 권63-11, 세종 16년 정월 임인), 그후 다시 申聞鼓로 改稱하였다.

세종 21년 윤2월 刑曹의 보고에 의거 의정부에서 啓하기를 《續刑典》(經濟六典의 續六典 刑典)에 규정된 내용(京中則呈主掌各司 外方則呈守令·監司 不爲究治 具告憲司 亦不究治 乃來擊鼓)대로 복을 치기보다는 임금의 行幸時에 간혹 御駕앞에 突入하여 申訴하는 자가 있어 大駕를 놀라게 하니 앞으로는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그런자를 違令律로 論罪하고 그런자의 호소도 受理하지 않기로 하자고 하여 임금이 이에 따랐다(《위의 책》 권84-21, 세종 21년 윤2월 기묘).

문종 원년 9월 知經筵 金宗瑞가 啓하기를 지금 申聞鼓를 쳐서 訴冤하는 자가 심히 많으므로 앞으로는 큰일이 아니면 복을 치지 못하게 하고 망녕되이 호소하는 자는 律文에 의거 죄주자고 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작은 일로 복을 치는 것을 禁할수 없다고 하고 또 忘訴加罪法이나 御駕앞에서 申訴하는 자는 是非를 막론하고 죄주는 法은 無知한 행위자에게는 차마 적용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文宗實錄》 권9-30, 문종 원년 9월 계묘). 문종 2년 4월 의금부에서 국문당하는 죄인의 母가 申聞鼓를 쳐서 애걸하였으므로 減刑(杖 80)하였다(《위의 책》 권13-17, 문종 2년 4월 정해).

세조 원년 8월 임금이 刑曹에 傳旨하기를 그가 임금되기전 都統使時에 보니 申訴者들을 의례히 해당 관청에 보내어 分揀하도록 하였으므로 지금 愚民이 駕前에서 濫訴하는 자가 많은데 舊制度는 冤抑未伸者에게 擊鼓自訴를 허용하되 임금이 가마앞(駕前)에 突入하면 소송한 바를 들어주지 않고 違令律로 論罪한다는 것이라 하고 앞으로는 舊制度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世祖實錄》 권2-3, 세조 원년 8월 무신). 그러나 그후 세조는 申聞鼓를 치는 제도를 금지하였는데 성종 2년 12월, 이를 다시 부활하여 그후 《經國大典》에 등재하게 된 것이다(《成宗實錄》 권13-23, 성종 2년 12월 임오).

명종 8년 6월, 사헌부의 啓에 의하면 申聞鼓는 대궐문밖의 의금부에 있으며 郎官 2인이 항상 直宿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궐 근처 謁문에 들어와서 鐃(징)을 치니 宮禁深嚴之地가 訟庭과 같아졌다는 것과 中宗때에 神武門밖에서 鐃을 치는 자가 있어 놀랐지만 지금은 징을 치는 자가 계속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推考하여 治罪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금은 근래 관리들이 그 訴冤之事를 모두 해결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迷劣한 자들이 謁내에서 징을 치는 것이니 그 원통함이 가벼우면 버려두고 무거우면 推問하라고

하면서 사헌부의 啓에 不允하였다(《明宗實錄》권14-68, 명종 8년 6월 병술). 그리하여 그후 임금에게 直訴하려는 자는 申聞鼓보다 擊錚(징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續大典》刑典 訴冤註에 “申聞鼓 今無之 訴冤者 許擊金于差備門外 謂之 擊錚”이라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申聞鼓는 英祖 47年 11월에 다시 부활되어 昌德宮 進善門 및 時御所 建明門 남쪽에 설치되었다. 그때 英祖는 下敎하기를 옛법(신문고)을 회복한 이후 差備門이나 街道를 막론하고 징을 치는 자(鳴金者)에게는 비록 4件(刑戮及身·父子分揀·嫡妾分揀·良賤分揀)에 관한 것을 호소하는 경우라도 刑杖을 치고, 4件에 관한 것이 아니면 湖沿에 充軍하며, 또한 비록 申聞鼓를 치는 경우라도 4件에 관한 일이 아니면 刑杖으로 推問한후 定配함을 定式으로 한다는 것이다(《英祖實錄》권117-31, 영조 47년 11월 기미). 신문고가 다시 설치되자 濫雜한 일로 쓸데없이 임금에게 호소(徒啓)하는 자가 생겨났으므로 그 다음 달에 이를 철거하였다가 다시 설치하였다(《위의 책》 권117-34, 영조 47년 12월 신묘). 그리하여 《大典通編》刑典 訴冤註에 “申聞鼓依原典復置”라 하였다. 영조 48년 5월에 임금은 4件事가 아닌 일로 복을 치는 자는 嚴刑 3次후 海島로 充軍하며 비록 4件에 관한 일이라도 守令(土主)을 고발(申聞)하는 경우에는 같은 벌을 준다고 하였다(《위의 책》 권118-32, 영조 48년 5월 경신). 영조 49년 3월 靑陽人이 山訟문제로 신문고를 치는 등 鄉民들이 微細한 일로 복을 쳐서 監司와 守令이 미리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前全羅監司 洪樂性이 그 폐단을 대략 陳述하여 임금이 그것(地方官問責)을 후회하였다(《위의 책》 권120-11, 영조 49년 3월 기해).

正祖 元年 2월에 (임금이) 下敎하기를 임금이 畿內에 있으면 差備門에서 징을 치고 動駕(거동)時에는 衛外에서 징을 치는 것이 古制라는 것과 英祖때 申聞鼓를 復設한 후에는 擊錚之制를 금지시켰으므로 지금은 임금이 거동할때에도 징치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衛外擊錚의 경우에는 古例에 따라 刑曹에 移付해서 推問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임금에게) 보고하라고 하였다(《正祖實錄》 권3-17, 정조 원년 2월 병진). 그해 6월 형조판서 張志恒이 啓言하기를 英祖 때 申聞鼓를 설치한 후 街路擊錚者는 4件事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刑杖을 쳐서 멀리 귀양보냈는데 日前의 動駕時에 高靈女人이 街路에서 징을 쳤으므로 舊例대로 거행할 것을 請한다고 하자 임금이 批答하기를 門禁이 엄하여 입궐하

여 복칠 길이 없으니 下情이 上達될 수 없다고 하고 앞으로 4件事는 受理하여 刑例(형벌규정)대로 진술을 듣고(捧供), 4件事가 아니면 刑杖으로 推問한후 그것을 듣지 않도록(勿施)하라고 하였다(《위의 책》 권3-57, 정조 원년 6월 갑진). 그러나 정조 6년 6월 영의정 徐命善의 啓에 따라 申聞鼓를 金桴(의금부) 當直處에 설치하고 桴의 거동시에 징을 치는 것을 엄금하도록 하였다(《위의 책》 권13-43, 정조 6년 6월 을해).

그런데 정조 7년 정월 검토폰 兪士萬의 啓言에 의하면 申聞鼓와 擊錚의 法은 小民들의 숨겨진 원통함을 伸冤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만든 것이나 근래 奸民들의 거짓이 날로 자라나서 아주 적은 일과 시시한 일로 그것을 치니 각도에 특별히 신칙하여 징을 치는 무리들을 명백히 조사함으로써 그러한 잡다한 越訴之弊를 막자고 하였다. 이에 兪士萬이 批答하기를 엄히 막으면 下情이 上達되지 않고 너무 풀어 주면 奸弊가 滋生하니 조정에서 中外有司之臣에게 맡겨 그 속사정을 궁구하여 法律에 비추어 헤아려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이를 신칙하였다(《위의 책》 권15-15, 정조 7년 정월 경술). 그해 7월 영의정 정준겸이 啓言하기를 근래 兪士萬의 거동시에 징을 치면서 호소하는 자가 계속되니 신문고를 桴外에 설치하여 兪士萬의 郎官이 그것을 관장하되 북을 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兪士萬 當상관에게 보고하여 草記해서 兪士萬에게 올리도록 하면 저절로 濫雜하게 될 근심이 없어질 것이라 하였다. 이에 兪士萬은 英祖때 신문고를 설치하여 桴內에서 擊錚함을 금지하였고 그후 衛外擊錚도 금지하였으나 丙申 丁酉年間(正祖 즉위년과 원년)에 衛外擊錚을 금하지 않도록 특별히 명령하였음은 桴內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데다가 桴外의 擊錚까지 막으면 下情을 上達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 하고 桴外에 신문고를 설치하자고 한 건의는 좋으나 그것을 승지가 주관할 것인지 兪士萬 當상관이 주관할 것인지 出置後事가 실로 難處하다는 것과 擊錚法도 전부터 있던 固有法인데 전혀 못하도록 막기도 어려우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들을 말하라고 하였다. 諸臣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건의 사항은 보류되었다(《위의 책》 권16-12, 정조 7년 7월 신축).

정조 16년 5월 전 兪士萬의 손자 兪東善이 兪士萬부 書吏를 假稱하여 진정하려고 桴문으로 몰래 들어온 일이 있었다. 이때 兪士萬이 下敎하기를 申聞鼓를 설치한 후 진정하러 오는 자가 있으면 該曹에서 推問·草記함은 先朝의

定式으로서 근래 門禁이 비록 엄하나 入直堂上官이 진정서를 받아본후 올릴만한 일이면 즉시 草記하여야 하는데, 하물며 大臣家の 訴冤을 막았으니 당해 入直당상관을 해임하고 郎官을 잡아다가 처벌하며 守門將卒에게는 엄중히 곤장을 쳐서 取調하라고 하였다(《위의 책》 권35-24, 정조 16년 5월 계해). 정조 22년 3월 額外禁軍 尹而烈이 武科시험에 억울하게 떨어졌다고 함부로 입결하여 북(신문고)을 쳤는데 그로 인하여 조사한 결과 착오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시험관계관도 파직 등으로 문책당하였지만 북을 친 자도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함부로 결문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곤장형을 받았다. 그당시 북은 進善門과 建明門에 설치되어 있었다(《위의 책》 권48-23·24, 정조 22년 3월 임신).

31. 號牌

號牌은 왕족과 朝官으로부터 庶民·公私賤에 이르기까지의 16세 이상 모든 남자가 패용하도록 하였던 일종의 신분증명서였다. 호패의 기원은 元에서 비롯되어 고려 공양왕 3년에 水陸軍丁에 한하여 시행하였으나 잘 시행되지 않았고 조선시대에 와서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조선 태종 13년 9월부터 처음 시행되었으나 3년후 중단되었으며 세종 때에는 호패법 復立의 건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세조 3년 人口搜括政策의 일환으로 호패법이 재차 실시되어 성종 즉위년까지 10여년간 계속되었으나 또 중단되었다. 세 번째로 광해군 4년경 실시하다가 곧 중단하였고 네 번째는 인조 4년부터 이듬해까지 실시하다가 중단되었다. 다섯 번째로 숙종원년 紙牌法을 만들었다가 同王 3年 號牌法을 실시한 이후 典錄通考에 등재되었고 英祖때에는 續大典에 등재되었다. 이와 같이 호패법 시행이 여러 번 중단된 것은 良民들이 고풍된 國役(軍役 등)을 피하기 위하여 호패를 빌려차거나 위조하는 등 實效性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종 때에도 호패를 실제 받은 사람은 전체인구의 1~2할에 불과하였고 성종 때에도 호패를 받은 자 중 국역 부담자는 1~2할에 불과하였다. 호패의 재료와 기재내용은 신분에 따라 달랐다. 《속대전》호전, 호적에 의하면 2품이상은 牙牌(태종때도 同一), 3품 이하는 角牌(태종때는 4품 이상 鹿角), 생원·진사는 黃楊木牌(태종때는 5품 이하 黃楊木, 7품이하는 자작목패), 雜職·士庶人·書吏·鄉吏는 小木方牌, 公私賤은 大木方牌(태종때는 庶人이하 雜木牌)로 규정되

어 있다. 《續大典》刑典 偽造條에서는 호패위조범은 斬刑에 처하도록 하여 신분질서유지와 國役해당자의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李鍾日, 〈朝鮮前期의 戶口·家族·財産相續制研究〉, 《國史館論叢》14집 1990, 국사편찬위원회, pp.15~21 및 《增補文獻備考》卷162, 戶口考2, 號牌).

第2編 工典 解説

1. 城底

城底는 서울 都城 밖 10리 이내의 지역이다. 조선초기부터 서울은 五부와 城底10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한성부의 관할에 속하였다(권오영의 4인 《앞의 책》 p.754). 그러나 도성 10리밖 居民들이 한 때 楊州·高陽 등 고을에 分屬하여 京外の 兩役に 시달렸으므로 成宗 5年 正月에 종전대로 서울 4부에 還屬시켰다.(《成宗實錄》卷37-10, 成宗 5年 正月 甲申). 《世宗實錄》卷148, 地理志 京都 漢城府에 의하면 都城의 둘레는 9,975步(8개 문안)이며, 5部 49坊 17,015戶이고, 城底 10리는 동쪽으로 楊州의 松溪院 및 大峴까지, 서쪽으로 楊花渡 및 高陽의 德水院까지, 남쪽으로 한강 및 노량진까지 이르는 구역이다. 世宗 10年 윤4월의 京城(서울) 5部の 戶口는 16,921호, 103,328명이고 管領이 46명이었으며, 城底 10리의 戶口는 1,601戶, 6,044명이고 管領이 15명이었다.

城底各리의 管領은 勸農官을 겸하도록 하였다(《世宗實錄》卷40-11, 세종 10년 윤4월 己丑). 世宗 20年 12월의 京中戶數는 18,422戶였고 城底10리의 戶數는 1,930戶였다(《위의 책》卷83-24, 세종 20년 12월 戊辰). 城底 10리의 東·西·南方에 普濟院·弘(弘)濟院·濟川亭·沙坪院 등 네 개의 큰 院이 있었는데, 이는 世祖가 승려들에게 명하여 세운 것이다. 普濟院은 東大門밖 3리지점에 위치하였으며 3月3日과 9月9日에 老人과 宰樞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 곳이다. 弘(弘)濟院은 沙峴의 북쪽 들에 있었는데 중국 使臣이 서울에 오는 날 이 곳에 머물러 옷을 갈아 입었다. 濟川亭은 한강 북쪽 언덕에 위치한 樓亭으로 風光이 뛰어나서 중국사신이 오면 맨 먼저 이 樓亭에 올랐으며, 또한 高官들을 영접하고 전송하는 자가 날마다 모여 들었던 곳이었다. 沙坪院은 한강의 남쪽 모래 언덕에 있었으며 날이 저물어 한강을 건너지 못한 나그네들이 유숙하던 곳이다(권오영의 4인 《앞의 책》 pp.754~755와 《新增東國輿地勝覽》卷3-24~34, 漢城府, 樓亭 및 驛院). 이러한 院은 한성부에서 보살피서 수리하였으며, 普濟院과 弘濟院에는 田2結50負를 주었다(《世宗實錄》卷30-16,

세종 7年 11月 乙卯). 기타 城底지역의 院으로는 南山 남쪽의 梨泰院과 전국 교의 서북쪽에 箭串院이 있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卷3-34, 漢城府, 驛院). 成宗 5年 正月, 京畿지방에서의 연이은 흉년(失農)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서울에서 거지가 많았으므로 普濟院은 東部와 北部 소속, 梨泰院은 南部 소속, 洪(弘)濟院은 西部 소속으로 각각 賑濟場을 설치하여 各部 官員이 교대근무하여 굶주리는 백성을 구출하도록 하였다(《成宗實錄》권37-10, 成宗 5年 正月 甲申).

2. 伐木·伐石禁止法

伐木禁止法은 經濟六典에 규정되어 있으나 감독관청에서 잘 점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世宗 21年 9月부터 漢城府에서 서울의 城底 10里를 전담하여 벌목을 엄금하도록 하였으며 司憲府에서 한성부의 勤慢을 살피도록 하였다. 또한 城底 10里 밖은 소재지 守令으로 하여금 伐木을 엄금시키도록 하였으며 觀察使가 守令의 勤怠를 점검하도록 하였다(《世宗實錄》卷86-27, 世宗 21年 9月 癸丑). 그리고 睿宗 元年 3月の 都城內외의 松木禁伐事目이 반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都城內외의 山에서 松木을 베는 자는 杖 100에 처하고 그 家長이 만약 朝官이면 파직하며 閑散人이면 外方으로 付處하고 平民이면 杖 80에 處하되 贖罪金品을 받는다.

둘째 都城內외의 四山(白(北)岳山·南山·仁旺山·駱山)에는 兵曹와 漢城府의 郎官으로 하여금 분담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살피도록(檢察) 해서 매월 말 임금에게 보고한다.

셋째 잘 檢察하지 못한 四山의 監役官 및 병조와 한성부의 당해 郎官은 그 官階를 강등(降資)하고 山直에게는 杖 100에 처한 후 充軍한다.

넷째 산기슭에 사는 사람을 병조와 한성부에서 作統하여 분담시켜서 禁防케 하며 밤나무와 잡목도 모두 禁伐케 한다.

다섯째 三角山 기슭에 사는 백성도 山直이를 定하여 禁伐하게 하며 禁防을 하지 못한 자는 四山의 山直이의 例로서 罪를 준다.

여섯째 四山 및 三角山의 寺社의 僧人이 伐木하는 것도 山直이로 하여금 禁

防하게 한다.

일곱째 禁防의 勤慢사항은 승정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임금에게 아뢰도록 하고 불법행위자를 색출한다.

여덟째 道峰山도 都城 主山の 來脈이므로 병조로 하여금 위 條項에 따라 檢察하여 禁伐하도록 한다(《睿宗實錄》권4-27 예종 원년 3월 경인).

이와 같은 엄한 禁令때문에 都下의 땔감나무 값이 폭등하였으므로 그 해 8월 임금이 中外 官府에 諭示하여 소나무 이외의 雜木은 禁伐을 해제하였다(《위의 책》권7-7, 예종 원년 8월 을축).

그 다음 採石의 금지는 문종 원년 6월 工曹의 보고에 의거 의정부에서 啓하기를 都城 四山の 伐石之禁은 이미 왕명이 있으나 그 한계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伐石者가 많으니 앞으로는 城內는 四山, 城外는 동쪽으로 普濟院 盧原驛, 남쪽으로 伐兒峴 靑坡驛, 서쪽으로 沙峴 등의 山등성을 限界로 하여 비록 國用일지라도 伐石하지 못하게 해서 地脈을 保全하자고 하였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文宗實錄》권8-27, 문종 원년 6월 계사).

세조 9년 10월 병조에서 啓하기를 들은 山脈의 骨節이니 단지 都城의 산등성이 內面의 伐石을 禁하는 것 만으로는 안되고 都邑의 主山來脈 즉 함길도 長白山脈에서 鐵嶺에 이르기까지, 강원도 淮陽府 嵐谷에서 金城縣 馬峴 및 注波峴에 이르기까지, 狼川 杭峴에서 경기도 加平縣 華岳山에 이르기까지, 楊州 五峯山에서 三角山 普賢峯 및 白岳에 이르기까지, 동쪽으로는 寶燈洞에서 多也院 鼓巖祭壇에 이르기까지, 서쪽으로는 香林寺에서 綠磻峴 洗踏巖과 北帖 延昌尉 農所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伐石을 금지하도록 하고 官廳 및 寺社造成과 大小人員의 造家·造墓時에는 서울에서는 工曹에 申告하고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伐石處를 심사하도록 해서 임금에게 아뢴 후 量給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이에 위반하여 伐石하는 자가 있다면 違制律로 論罪한다고 하였다. 임금이 이에 따랐다(《世祖實錄》권31-22, 세조 9년 10월 丁未).

3. 蠶室

蠶室은 누에 치는 집이다. 古代 중국에서는 周代이전에 이미 잠실이 설치되었다고 하였고(《禮記》24篇 祭儀) 우리나라에서도 古代이래 양잠이 行해졌을

것이나 조선시대에는 太宗 16년 2월, 비로소 경기도 加平의 朝宗縣과 楊根의 迷原縣에 잠실을 설치하였다. 이듬해 정월에는 開城·加平·淸風·泰仁·遂安·義城·洪川 등지에 都會蠶室을 설치하여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6道에 각각 一所를 두게 되었다. 그러나 都會잠실은 운영상의 폐단 때문에 端宗 2년에 폐지하고 諸邑에 잠실을 두도록 하였다가 成宗 元年에 다시 都會잠실제를 부활하였다. 中宗代에 이르면 民間에서의 보급이 활발하여 시범장소로서의 잠실의 운영은 그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 중앙잠실은 세종때에 이미 都城의 동쪽 아차산 아래의 樂天亭(뚝섬)부근에 外잠실을 두어 잠실內官(환관)이 관리하였고 경복궁·창덕궁 두곳에 內잠실이 있었다. 그 후 世祖代에 아차산 밑에 東잠실을 加置하고 서쪽으로 연희궁에 西잠실을 설치하였다. 西잠실은 別坐 2인이 전담하였는데 이들은 여름철에는 양잠을 관리하고 양잠이 끝나면 尙衣院에서 근무하였다. 또 成宗代에 漢江邊 圓壇洞(현 잠원동)에 新잠실을 두었다. 中宗反正 때 이들 中央잠실은 전면 폐지되었다가 中宗 4년에 東·西·新잠실 세 곳만 復置되었지만 中宗 12年 8월에 이곳도 폐지되었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p. 255~256 및 p.762).

여하간 成宗 3年 2월에 桑木培養節目이 마련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낙천정(동잠실)과 연희궁(서잠실) 두 잠실 근방에 뽕나무를 더 심어 民戶에 분담시켜 看護하게 하고 잠실 內官과 分尙衣院 官員이 이를 檢察하게 한다.

둘째 각 관청(諸司)으로 하여금 뽕나무를 더 심게하고 잠실에서는 땅을 골라 뽕나무 씨를 뿌리게 해서 그 성과에 따라 賞罰을 시행한다.

셋째 栗島 등지의 自生 뽕나무를 잘 가꾸게 하되 이에 마음을 쓰지 않은 官吏에 대해서는 依律論罪한다.

넷째 지방의 民戶를 大中小로 나누어 뽕나무를 차등을 두고 심게 하며 관원을 파견하여 조사하도록 해서 그 숫자를 과장되게 보고한 경우에는 守令은 파직하여 내쫓고 監司도 科罪한다.

다섯째 각 道의 잠실 都會근방의 땅에는 뽕나무 씨를 뿌리게 하되 守令이 그 培養에 用意하지 않고 民間에서 뽕나무를 取한 경우에는 監司가 이를 조사해서 파직시켜 내쫓도록 한다(《成宗實錄》卷15-14, 成宗 3年 2月 戊寅).

4. 京役吏

京役吏는 서울에 머물면서 지방관청의 (서울관계) 일을 대행하던 鄉吏이다. 처음에는 소속지방의 貢物·立役 등의 일을 代行하였으나 그 후 땀감을 준비하여 바치는 일을 하였다. 京役吏의 起源은 고려초 지방 土豪의 子弟를 볼모로 서울(개성)에 데려다가 억류하면서 대접(중앙고관의 딸과 혼인시키는 등)하고 동시에 그 지방행정의 고문역을 맡겼던 其人制에 있다. 그러나 그 후 其人은 여러 중앙관청에 나누어 배정되어 役을 지게 됨으로써 노예처럼 괴롭게 된 것이다(《經國大典註解》後集 下 工典). 즉 고려 成宗이후 중앙집권이 강화되면서 土豪는 鄉吏로 格下됨과 동시에 其人也 그 신분이 떨어지고 고려 文宗때에 其人에게 役을 지운 이래 高宗 때에는 농사일에 동원되었으며 忠烈王 이후 其人은 宮室營造의 役夫로서 노예와 다름없는 苦役に 시달리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其人은 宮中에서 노예와 같이 苦役に 使役되다가 太宗 9年 이후로는 각 중앙관청으로 땀감을 바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권오영외4인 《앞의 책》 p.767). 太宗 16년 6월 兵曹에서 啓한 바에 의하면 各道 各邑의 其人 元數는 490명인데 그 중 苦役處의 其人이 300여명이고 수월한 곳의 其人이 100여명이므로 매년 1月1日 4番으로 나누어 3개월 교대로 苦된 곳과 수월한 곳을 차례로 돌려가면서 근무시키는 其人苦歇 輪番之法을 만들어서 시행하였다는 것이다(《太宗實錄》卷31-56, 太宗 16年 6月 丙戌). 世宗 4年 3月 其人을 390명으로 하고 그 대신 줄어든 100명의 役務는 奴子를 정하여 맡도록 하였다(《世宗實錄》권15-15, 世宗 4年3月 己卯). 世宗 11年2月에는 각 고을의 크기와 넓이 그리고 殘盛에 따라 其人數를 고르게 再配定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향리 50명중 其人 1명, 경상·전라·충청·황해·강원 등 道에서는 향리 30명중 其人 1명을 差出하도록 하였다(《위의 책》권43-17·18, 世宗 11年2月 戊子). 그러나 경국대전에서는 경기도에서 90인마다 1인, 강원·황해도에서는 70인마다 1인, 경상·전라·충청도에서는 50인마다 1인을 정하여 其人(京役吏)이 모두 332인이 되었다.

5. 工匠

工匠은 器物을 만드는 자(作器者)이다(《經國大典註解》後集 上 吏典). 工은 마음을 巧妙하게 하고 손을 수고롭게 하여 器物을 만드는 자이고, 匠는 百工을 통칭하는 말이다(권오영의 4인 《앞의 책》 p.771 및 《才物譜》4, 人譜).

工匠은 三國時代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제도상으로 정착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고려시대의 工匠은 세습제로서 中央 各官廳에 여러가지 명목으로 일정수가 배속되어 있었다. 즉 供造署(中尙署)는 임금의 사용하는 장식품의 제작을 담당하였으며(《高麗史》권77-5, 百官志2) 畫業·小木匠·草匠·紅鞞匠·朱紅匠·彫刻匠·螺鈿匠·漆匠·花匠·紙匠·珠簾匠·竹篠匠·御蓋匠·黃丹匠·梳匠·磨匠 등이 소속되어 있었고 掌冶署는 金屬細工을 맡은 곳으로서(《高麗史》권 77-6, 百官志2) 銀匠·和匠·白銅匠·赤銅匠·鏡匠·皮帶匠·金箔匠·生鐵匠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또 都校署는 雜細工을 맡은 곳으로(《高麗史》권77-7, 百官志2) 木業·石業·彫刻匠·石匠·粧覆匠·泥匠 등이 소속되어 있었고 掌服署(尙衣局)는 御衣製作을 맡았으며(《高麗史》권77-4, 百官志2) 繡匠·幘頭匠·靴匠·帶匠·花匠·鞞鞋匠·笏袋匠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이상 《高麗史》권 80-14, 食貨志3). 기타 軍器監·都染署·雜職署·掖庭局·奉車署(尙乘局) 등에 있어서도 여러 工匠이 배속되어 있었다(《위의 책》권80-15 食貨志3). 이들 고려시대의 工匠은 연간 300일 이상 복무해야 일정한 급료(곡식)를 받을 수 있었다(同上).

조선시대의 工匠은 官匠과 私匠으로 나누어지고 官匠은 다시 京工匠과 外工匠으로 나누어진다. 京工匠은 《經國大典》工典, 京工匠에서는 工曹를 비롯한 30개 관청에 130種 2,795명(水鐵匠 36戶제외)이었으나(권오영의4인 《앞의 책》 p.771), 그 후 많이 줄어 들었다. 즉 《大典通編》工典, 京工匠에서는 5개 관청이 혁파되고, 존속하는 관청 중에서도 內資寺를 비롯한 10개 관청에서는 工匠이 全無하였으며 그외 여러 관청에서도 工匠의 名目과 인원수의 증감이 있었다. 여하간 이들 京工匠들은 주로 兵器의 제작과 王室 및 양반관료들의 생활 필수품 및 장식품의 제조에 종사하였다. 外工匠은 모두 27종으로 약 3,450

명이며 冶匠과 같은 일부 工匠을 제외하고는 대개 농사에 종사하면서 일정기간 官役에 복무하였다. 그들의 신분은 대개 良人과 公賤이었으나 때로는 私賤도 있었다. 그들은 출신의 良賤을 막론하고 가장 우수한 자에게 雜職제아직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官匠制는 財政의 궁핍과 관료들의 횡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燕山·中宗代를 전후하여 붕괴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대신 私匠들이 公役에 동원되었다(권오영외 4인 《앞의 책》 pp.771~772 및 姜萬吉 〈朝鮮前期 工匠考〉, 《史學研究》12, 1965).

6. 亂塵例

亂塵例는 조선시대의 塵案(시전상인의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상행위나 허가 받은 품목 이외의 상품을 파는 상행위를 단속하던 例이다. 조선 초기부터 서울에는 六矣塵(선전·면포전·면주전·지전·저포전·내외어물전)을 중심으로 많은 市塵이 있었으나 나라에서는 육의전만을 특별히 보호하고 다른 시전에는 엄격한 제한을 가하였다. 이 제한을 넘어 상행위를 하면 역시 난전으로 규정하여 商品을 몰수하고 杖刑을科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였다.

육의전을 중심으로 37개 시전에 國役을 부담시키고, 그 代價로 난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난전행위자로부터 압수한 물품이 소정의 벌금액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杖 80刑에 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법적인 상행위가 많았으므로 숙종이후 李滄의 건의에 따라 국가에서도 난전을 직접 단속하게 되었고 난전단속권을 가진 시전의 수도 종래의 37개에서 47개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말연초(12월25일부터 익년 1월5일까지)에 특별히 난전을 허용하여 자유롭게 상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한편 난전단속 특권이 남용되기도 하여서 영조 40年 10月 영의정 洪鳳漢은 禁亂塵이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救弊節目의 제정을 건의하였다(《英祖實錄》卷104-27, 영조 40년 10월 辛丑).

그러한 추세는 正祖代에로 이어져서 正祖 15年(1791)에 이른바 辛亥通共이 成立하게 되어 禁亂塵의 특권부여를 六矣塵으로 제한하고 그외의 商品은 자유판매가 허용되었다. 이러한 난전례에 의한 상행위의 지나친 단속은 이 시대의 상공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劉元東 〈商業〉, 《한

국사》, 10 국사편찬위원회 1984, pp.280~295 및 河原林靜美 〈18·19세기에 있어서 塵人과 私商에 대하여〉, 《封建社會解體期の 社會經濟構造》 청아출판사 1982, pp.105~146와 《續大典》 刑典 禁制). 끝으로 言及할 것은 六矣塵(六注比塵)이란 명칭의 由來는 6曹의 用達商이었기 때문이라는 說과 國役의 10분의 6을 담당한 때문이라는 說이 있다(정재각외 3인 《國譯大典會通》 1960, 高大出版部, pp.623~624). 그리고 亂塵行爲 중 軍兵이 手造物을 파는 行위는 허용되었으나 그것도 폐단이 있어서 小小한 物件 이되는 단속대상으로 삼았다(《增補文獻備考》권163-5·6, 市糴考1).

後 記

지난 4년간 당원에서는 朝鮮時代 500년간의 綜合法典인 大典會通을 譯註하고 解説하였다. 譯註 및 解説者는 그 동안 朝鮮時代의 官制와 身分制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工夫하면서 法制와 社會現實간의 乖離與否 問題를 探究하였다. 그 結果 얻어진 結論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乖離가 심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法制는 王의 下敎로서 施行되고 일단 成文化되면 王命遵守라는 儒敎倫理(忠) 그대로 철저히 遵守되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祖宗成憲不可變이란 孝思想 때문에 先王의 法制는 매우 尊重되어 變動하는 社會現實에 副應하지 못한 結果를 招來하였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追加法令이 制定되어 變化하는 社會現實에 適應되도록 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譯註 및 解説者의 古法制에 대한 研究過程은 1960年代 내지 1970年代 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그 당시 위 본인은 法制處로 부터 아주 많은 古法制 資料를 入手하여 탐독하였다. 法制處에 있어서의 많은 古法典의 國譯本은 대체로 간단히 註釋을 붙친 단순 번역서였으나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古法制 研究者들의 葛藤이 되었다. 그러나 때로는 번역을 맡은 사람이 내용을 理解못한 채 現代語로 옮겨 놓은 듯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는 의미 또한 통하지 않았으며 誤譯部分도 간혹 발견되었다. 法制處 譯註本 이외 高尙의 大典會通 國譯本도 있었으나 法制處本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1992년 11월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任用된 후 譯註 및 解説者는 大典會通을 번역·주석·해설을 하면서 古法典의 法文 속에 담긴 뜻을 이해하고자 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한 史料와 既成의 研究논문 등을 참고하여 註釋과 解説을 되도록이면 充實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淺學菲才한 위 본인으로서는 所期의 成果를 충분히 거두었다고 할 수 없다. 同學의 기

탄없는 지적을 받아 고쳐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譯註 및 解說 作業을 일단 마치고 젊고 有能한 人材들이 이 사업을 계속 맡아서 발전시켜 주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桑榆之木을 바라본다.

1996. 12.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실에서

譯註 및 解說者 李 鍾 日 上白

大典會通

卷之六

十三

大典會通卷之六

大典會通

卷之六

十二

外工匠原

京畿

甲匠三冶匠四十七弓人十八矢人三漆匠七木匠三十七皮匠五鑰匠三漆匠七

匠三沙器匠七

忠清道

冶匠七十一弓人三十一矢人五

漆匠五十八木匠五十六磨造匠二雕刻匠一皮匠五十六

十三甲匠六梳省匠一油具匠五十五黃瓮匠一

慶尚道

冶匠一百二十九

矢人七十一弓弦匠三皮匠六十七木匠六十九

十三梳省匠三梳匠二扇子匠六油具匠五十八

全羅道

箱子匠四矢人六十一弓弦匠二紙匠六十八弓人

三十六梳匠一席匠五十八木匠五十九皮匠六

甲匠十梳省匠一油具

江原道

冶匠三十六弓人

弦匠二木匠二十八箱子匠二皮匠三十一油具

匠一石匠一梳匠一磨造匠六紙匠三十三甲匠

匠六洗踏匠四針線匠二十四紡
織匠三十箴匠二青染匠二十
掌樂院 風物匠四簧葉

匠**觀象監** 自擊匠十
典設司 針匠二多
典艦司 船匠十
內

需司 瓮匠七冶匠二鑄匠十
六戶大中小冶各二沙器匠六木匠二
鑄匠五水鐵匠
昭格

署 瓮匠四
司醞署 瓮匠四
義盈庫 瓮匠四
長興庫 茵匠八
燭匠四

八**襟匠**
掌苑署 瓮匠八
司圃署 瓮匠十
養賢庫 瓮匠二
造紙

署 木匠二簾匠八
紙匠八十一
圖畫署 楮貼匠二
瓦署 瓦匠四十
歸 雜象匠四

厚署 木匠四冶匠二
漆匠二
增 以上諸司中司瞻寺典艦司
昭格署司醞署歸厚署今皆

革罷內資寺內瞻寺司導寺禮賓寺濟用監典設
司掌苑署司圃署養賢庫圖畫署今無工匠其外
諸司則名色之新舊互異額數之加減無定成籍
藏本曹之法寢廢不行續典時不為舉論故今並
仍舊不改

大典會通 卷之六 十二

大典會通

卷之六

十一

染匠十紅染匠十洗踏匠八擣砧匠十四
鍊絲匠七十五紡織匠二十草染匠四

軍器寺

漆匠十二磨造匠十二弓弦匠六油漆匠二鑄匠
二十生皮匠四甲匠三十五弓匠九矢人一百

五十錚匠十一開城府五木匠四冶匠一百三十
開城府五十楊根十鍊匠一百六十開城府五十

楊根十阿膠匠二
鼓匠四鍊絲匠二

校書館

出匠六均字匠四十四
出匠二十刻字匠十四

鑄匠八雕刻匠八
木匠二紙匠四

司饗院

沙器匠三
百八十

匠二紡織匠二
三十箴匠二

內膳寺

篋匠八紡織匠
三十箴匠二

司導寺

篋匠八

匠十竹匠二十木匠六十石匠四十冶匠四十蓋
匠二十泥匠二十磚匠二十塗彩匠二十埃匠八

禮賓寺

篋匠八
花匠六
印出匠二
櫛幣匠二
磨造匠八雕刻

繕工監

車匠十雨傘匠十篋匠十簾匠十四把子匠十牀
花籠匠四石灰匠六馬尾篩匠四桶匠十阿膠匠

二
熟皮匠二毛冠匠二荷葉綠匠二粉匠
黃丹匠二裁作匠二紅染匠十擣砧

濟用監

二黃丹匠二裁作匠二紅染匠十擣砧

大典會通 卷之六

十

奸錄案軍兵則不可移定匠額依亂厘例移法司科
罪○舊例宗廟社稷各陵寢諸上司所用水鐵器本
曹卜定海西而進排詳定後自本道其價米輸納宣
惠廳定貢人出給使之擔當備納凡十一種之器

○司養院沙器匠人子枝毋定他役世傳其業○頒

賜冊子粧緘不如法則校書館掌務官論以造作不

如法之律供奉御用之物加二等增尚方弓人矢人

非在鄉者勿許冒入取才擇定

京工匠原本曹

草笠匠八紗帽匠二都多益匠二多
繪匠二網巾匠二帽子匠六瓮匠十

三各給助役二人味匠四銀匠八金箔匠二裹皮
匠二靴匠六鞞鞋匠六熟皮匠十花兒匠二斜皮

匠四氈匠四入絲匠二漆匠十豆錫匠四鑄匠二
十螺鈿匠二鋤匠八楷貼匠二針匠二鏡匠二雕

刻匠二銅匠四周皮匠六汗致匠二鞍籠匠二水
多介匠二筆匠八竹匠二鞞骨匠二印匠二鐵看

擔當納冰或有私相買賣之弊則契任刑配

增繕工監兩提調有故則凡

時急啓日本曹舉行

陵修改奉審同○該監進排竹索長木私借與者隨現勘罪諸

各司毋得以私事橫侵工匠○凡有貢物衙門臺庫
監察公故依幕鋪陳雜物罷貢人進排之規元定處
屬賑廳元定外
自戶曹上下

工匠原

京外工匠成籍藏於本曹本司本道本邑

私賤

勿屬年滿六十除役

續各司匠人成案藏于本曹本司最緊匠

人有闕勿拘軍士保率官屬公賤以可當人充定

未成

才人定限傳習而不勤者並與訓誨匠人
依違令律論該司官員無得以他務帶喚

○瓮店匠

人勿論軍兵及公私賤以陶為業者本曹收稅取用

○水鐵匠人元額未充定者隨現即定

間雜人設廬治處本曹摸

大典會通

卷之六

十

大典會通 卷之六

九

職下吏治罪

紙一卷重十一兩以上次草注紙重九兩以上公事
紙重六兩以上官教紙重四斤以上上品擣鍊紙六
紙長一尺一寸廣一尺四寸楮注
紙長一尺一寸廣一尺四寸楮注

斤以上擣鍊楮注紙二斤以上大好紙白綿紙長二
尺四寸五分廣一尺七寸五分重三斤十四兩小好

尺長二尺二寸五分廣一尺七寸五分重三斤十四兩小好

尺五寸五分重二斤五兩 ○闕內外諸上司所用遮

日帳典設司進排 ○江上運石募民兩契分任國役

內需司郊草則運石契獨當輸運惠廳戶曹及各司
外倉穀物卸下負石入庫等事兩契分半舉行 ○兩

契人等作案兩件一畱京兆一送內司以絕任意陞
黜之弊郊草船運之際或有民間收斂之事毋論大

小移送刑曹杖一百定配 ○貫馬錢則江村坊民與
運石募民兩契人等一體舉行俾杜憑藉謀免之弊

○江村兩班自稱尊位縱奴作弊沮戲契人不使之
卸下負石者契人等指名告官家長論以豪強律 ○

負石時閒雜無賴輩無端惹鬧攘奪為計者杖一百
遷徙 以戶兵曹運冰馬貫錢出給江民募人設契

家處則設警守軍士四名通守如有蓋尾
撤毀處分授人及軍士推論分徵修補 ○社稷署

內外祭壇修掃及墻垣頽圯處修築兵曹及時舉行

○尚衣院每年五織造停罷英宗癸丑下教 ○司饗院燔造

磁器一年二次春秋進上廣州楊口晉州昆陽最宜

斫木地方面色則三十稅一所經各邑勿稅違者守令

需用木物焰硝廳吐木每十木稅一○收稅時若取

別燔巧制者勘處○燔院柴場山田之在廣 ○咨文

州者令地方官踏驗收納以除勒徵民弊

表紙麤造匠人初次杖八十每次加一十至杖一百

而止造紙器具破毀各該司隨即改排 ○闕內外諸上司所用紙地

長興庫豐儲倉每朔定式進排有違定式者官員罷

大典會通 卷之六 九

大典會通 卷之六



門隨毀修築自肅靖門東邊舞砂石至敦義門北邊

北邊舞砂石至光熙門南邊南村家後五千四十二

步半禁衛營自光熙門南邊南村家後至肅靖門東

步半御營廳 傍近居人分授看直四山監役官令

其山直分 ○漢城府郎官分掌四山檢舉緊關禁忌

處立標城內全數及城外玄武主山東指緊關外青

大君家北帖先蠶祭壇至及自普濟院西越邊安巖

洞猪房洞東大門外至則並山脊內外西指緊關外

白虎慕華館後歷沙峴司畜署帖青坡後至則山脊

內面朱雀案山南山外面自南大門城外歷典牲署

後行至伐兒峴自伐兒峴東行豆毛浦後山往十里

後山迤至水口則山脊內外並立標 ○凡家岱依

山處則令觀象監審視山脊山麓臨壓 ○社稷後墻

禁忌處勿折給冒受造家者治罪撤去

內外分授看守本署官員每日考察內則署奴外則

錄會計○代立價一朔綿布續代設其人貢物舊例

五匹違者論罪價物沒官鄉吏每歲輪次來京預受價責應如例謂之其人

設後革其法使京人預受價責應如例謂之其人○

進排炭以十五斗為一石每一石一百五十斤增承

傳中官望炬代杻木進排時操縱貽弊者該中官及○

不飭之該司堂郎並勘罪○陵幸

時植炬限京兆治道餘則屬外邑

雜令原造尾濫惡不如法者重論私窰則論罪後本

篆烙○銀錫鍮銅器皿並刻斤兩及造作年月日○

着標家舍大君六十間王子君公主五十間翁主及宗親

文武官二品以上四十間三品以下三十間庶人十

間毋得用熟石續都城周圍一萬四千九百三十五

步用周尺尺量為八東西南北量其險夷分授三軍

大典會通 卷之六 八

大典會通

卷之六

七

司宰監柴場今廢

續

各陵寢香炭山陵官望報定標

宮房柴場內山

直限二十戶屬該宮
其餘居民應役本官

○奉常寺坡平山柴場革罷戶

曹宣惠廳給價各送五百兩

本寺貿用○成均館柴場周

圍二十里立標割給

自楊根南面淵陽里至驪州廣州境

寶物原諸邑寶物產處成籍藏於本曹本道本邑看

守

京役吏原

諸邑鄉吏

京畿則每九十人定一人江原黃海道則七十人定一人慶尚

全羅忠清道則五十人定一人

每歲輪次來京本曹分定

諸司備炭木

司宰監二百三十三人一人每十日燒木五十七斤二日杻炬一柄重十斤遺

在多則或三日納一柄繕工監九十九人一人每日炭五斗五升○諸處所支供餘燒木炭並報戶曹

懲唐柑子唐柚子各八株唐乳柑二十株洞庭橘十株
栽唐柑子復戶唐柑子唐乳柑各五株乳柑洞庭橘

各十五株栽植者給綿布三十匹若受賞及復戶後
不用心培養致令枯損者還納賞布又還本役復戶

人栽植數每六年通計元數外倍數者量給賞布每
歲抄啓聞增外邑人私植松一千株可成材者該守

令親審報觀察使論賞○江華府沿邊每歲
送海松子播種並與種枳數文別單以聞 ○鴨島

栗島放養牛馬者本主以違令律論

鐵場原諸邑產鐵處置冶場成籍藏於本曹本道本

邑每當農隙吹鍊上納觀察使以各場附近諸邑貢

邑中擇有職廉謹者一人定為
監治官使專監役守令考察

柴場原用柴諸司於水邊給柴場奉常寺尚衣院司

寺內需司並周圍二十里內資寺內贍寺司宰監緡
工監昭格署典牲署司畜署並十五里司圃署五里

大典會通

卷之六

七

大典會通

卷之六

六

木浮石分屬三軍門嚴禁彰義門以外屬摠戎廳
禁護○安眠申邊山今屬兩道水使及地方官

每年春冬十月令四山分授人無分授處松雜木栽

植違者科罪備局所在海松子多數每朔本曹郎官

巡審禁伐○守令使其境內民人栽植桑木轉報本

曹成案考其虛實賞罰懲勸○幸行時駐蹕處增定

限犯耕者嚴禁其他講武習射之場令所在官雜木栽植禁

火禁伐○掌苑署京外果園差定苑直看守官員往

來考察江華南陽開城府以本署奴差定果川高○

龍山漢江等處果園踏損者依禁獵例論○濟州等

三邑稀貴果木令居民栽植培養考其勤慢賞罰勸

大典會通

卷之六

六

二月內栽種桑或下種計條授傍近居民培養栗島
 奉常寺內資寺禮賓寺濟用監司圍署諸司田耕治
 時勿令侵損桑木各司內桑木計條置簿並本曹
 擲奸不能檢察官吏論罪○掌苑署各處果園官員
 分掌每年果木或栽或接其株數置簿移文本曹本
 曹擲奸不能檢察官吏論罪栽接人不用心以致枯
 損者隨其多少論罰各司內果木計株置簿本曹
 並考察○外方定禁山禁伐木放火安眠串邊山則
 海運判官海島則萬戶考察每年春栽植稚松或下
 種培養歲抄具栽種數啓聞違者山直杖八十常該
 官杖六十○蠶室都會處種桑培養民戶並令種桑
 大戶三百株中戶二百株小戶一百株守令檢察培
 養無主野桑禁斬伐觀察使巡審考察違者論罪○
 桐木各司各十條栽植培養本曹檢察外諸邑各三
 十條觀察使檢察○箭竹須待經年剪取又擇地移
 栽○濟州三邑柑橘柚木每年栽接榷木廬木山柚
 子木二年木定傍近人看守歲抄具數啓聞○應尚
 全羅道沿海諸邑柑橘柚木每秋觀察使定差使員
 看審具數啓聞○監役官今為四山參軍內外山伐

大典會通

卷之六

五

鹽船十四隻晉州牧場運藁船五隻全羅道左右倉

興永興兩本宮三百二十一隻濬源殿一隻交濟倉

載如司饗院內需司壽進宮龍洞宮明禮宮於義宮

彰義宮大君房公翁主房王子君房諸嬪房郡主房

宗親府者老所議政府敦寧府內農圃守禦廳摠戎

廳京畿監營司僕寺繕工監軍器寺讀書堂諸司凡

運柴草船並令賃用三津別將亦屬均役廳每年

給漕船退材以補津船改造句檢往來公私船隻

栽植原諸邑漆木桑木果木條數及楮田莞田箭竹

產處成籍漆木桑木果木藏於本曹本道本邑栽植

培養都城內外山立標分授旁近人禁伐木石定監

軍職人依東班計仕遷轉○景福宮昌德宮主山及

來脉山脊山麓禁耕外山則只禁山脊○本曹漢城

府堂下官和會分掌考察如有伐取者杖九十並分

受人山直杖八十當該官杖六十木石並沒官木則

十隻壽進宮十隻龍洞宮十隻明禮宮十隻於義宮
 十隻彰義宮十隻大君房八隻公主房八隻王子君
 房六隻翁主房六隻諸嬪房五隻郡主房一隻宗親
 府六隻耆老所六隻議政府十二隻敦寧府六隻內
 農圃四隻禁衛營二十七隻御營廳十隻守禦廳三
 十四隻撫戎廳十隻京畿監營六隻司僕寺二隻繕
 工監八隻軍器寺二隻讀書堂
 四隻每隻減捧稅錢四十文 ○漁鹽商船之屬於

內司及各司者罷之江上人都庫專利者嚴加禁斷

犯者以亂 ○公私用車子漢城府烙印錄案冒錄他人車子

者家長及官吏以制書有違律論 **增**諸宮家各衙門

船隻並屬均役廳英宗庚午○自均役廳給掌標收稅之後本曹烙印點船之規觀察

使歲抄啓聞之法並廢 ○訓練都監二十五隻禁衛

營七隻御營廳七隻江華一百三十一隻忠清道採
 鯨船十二隻禦邊船二十二隻漕運護送船七隻統
 營採鯨船八隻慶尚道左右倉漕船五十隻蘇山運

大典會通 卷之六 五

大典會通

卷之六

四

監坡州之臨津屬摠戎廳各其軍門自辟別將地方
官定津夫給復賃私船使用增漢江及露梁各十隻
西水庫五隻
銅雀五隻
○仍騎津船橫涉他所者勿論大夫士

庶以定配律論者船主不即告官○各津過涉及往來

船致敗而他船人不即拯救者船主津夫並杖一百

別將從重決棍○京江私船每年推刷一依原典六

中小尺量並刻字號烙印船主姓名具錄成案一年

一度收稅每船納稅錢三文三兩無烙印路引不付本

者減半以補津船改造○外方則所在邑守○諸宮
令錄案收稅以補軍需每歲抄觀察使啓聞

家各衙門船隻亦定額錄案量宜減稅而額外則勿

施司養院二百隻訓鍊都監四十隻糧餉廳十隻江
華二百隻永宗二十隻喬桐三隻並全減內需司

定五戶自京都至楊根自竹山至尚州自鎮川至星
州自稷山至全州自開城府至中和自抱川至淮陽
為中路定三戶餘小漢城府觀察使考察
路定二戶除雜役

舟車原

水運諸渡船五年修理十年改造

海船長四十二尺廣

十八尺以上為大船長三十三尺六寸廣十三尺六寸以上為中船長十八尺九寸廣六尺三寸以上為小船長十六尺廣九尺以上為中船長四十一尺廣八尺

尺以上為小船 ○諸司諸邑諸驛並置大車便車曲

魚船用尺營數同 車杠轉輸物險阻處不 續各津官船錄案定額分屬

諸軍門差別將檢察廣津四隻松坡九隻三田渡三隻新川二隻漢江十五隻露梁

十五隻楊花渡九隻孔巖五隻鐵串一隻 ○松坡別

將兼管廣津三田渡新川屬守禦廳漢江別將屬訓

鍊都監露梁別將屬禁衛營楊花渡別將兼管孔巖

鐵串屬御營廳兵曹差出○楊根之龍津屬訓鍊都

大典會通

卷之六

四

大典會通

卷之六

三

釐以布帛尺準黃鐘尺則長一尺三寸四分八釐○量之制十勺為合十合為升十升為斗十五斗為小

斛平石二十斗為大斛全石○衡之制黃鐘之管其容水重八十八分十釐為分十分為錢十錢為兩十

六兩為斤大稱一百斤中稱三斤續每秋分日京則本

曹外而營鎮收聚公私用斗斛更校烙印其造制不

如法者印跡不明者以違令律論諸司諸邑行用大

二尺廣一尺一寸二分高一尺七寸二分小斛容八

十五斗長二尺廣一尺高一尺四寸七分斗長廣各

七寸高四寸升長四寸九分澆廣各二寸軍門大

斛一從戶曹銅斛○凡公私所用並準地部斗升如

有奸民之私自贏縮者隨現重繩該署官員以制書有違律論

院宇原京城底院則五部外方院則守令定附近居

民為院主修葺濟川亭漢江渡丞考察看守○自京

學上林苑承文院零祀壇漢江壇○五所掌成均館
彰義宮隆福殿文禧廟南關王廟全溪大院君宮宣
武祠延曙碑閣車洞碑閣南壇司寒壇議政府中樞
府朝房司憲府內閣朝房放馬苑典獄署○紫門監
內冰庫供
上今革 ○凡營繕處該掌官員與本司官員一同

檢舉 各處營繕加數瞞報者官員罷職○大內時急
修改役鉅期促則九營繕分力僱役○凡修理

從某至某識年條類毀在三年 增 宮墻依都城例分
內者該工匠科治官員論責

屬三軍門隨毀石築

度量衡原 諸司諸邑度量衡本曹制造 送諸邑量則各
道令觀察使依私處所造每歲秋分日京平市署外

制平校烙印 巨鎮平校並烙印 度之制十釐為分十分為寸十寸

則周尺長六寸六釐以營造尺準黃鐘尺則長八寸
九分九釐以造禮器尺準黃鐘尺則長八寸

則周尺長六寸六釐以營造尺準黃鐘尺則長八寸
九分九釐以造禮器尺準黃鐘尺則長八寸

大典會通 卷之六 三

大典會通

卷之六

二

廟療病家惠化門○八所掌空闕內各司景福宮宗

親府西學宣武祠南營興化門外政府朝房北郊厲

壇東活人署牛毛煖取假家昭義門○九所掌隆福

殿昭顯官璿源錄廳闕外軍堡集春營吏曹宗親府

司諫院朝房○繕工監官員各一人分差隨毀隨補

鞍峴五所掌車洞碑閣延祐宮六所掌流霞亭奎章

閣朝房七所掌中樞府朝房八所掌景慕宮北一營

九所掌淨業院碑閣敦義門○北漢行宮今屬摠戎

廳補九營繕今為五所掌一所掌宗廟毓祥宮延祐

宮長生殿燾所宗親府中學敦寧府朝房儀寶府弘

文館朝房淨業院先蠶壇瞻星臺木覓堂馬祖壇右

巡廳○二所掌社稷老德興大府朝房敦寧府吏曹東

搖鈴幕景福宮耆老所議政府朝房敦寧府吏曹東

學流霞亭鍾閣先農壇養正齋下含春苑左巡廳○

三所掌永禧殿儲慶宮璿源錄廳大嬪宮南別宮奉

常寺神室北壇厲壇內資寺捲草閣上含春苑中樞

府禮曹西學內瞻寺牛毛假家上下當直○四所掌

景慕宮景祐宮東關王廟慶熙宮十二別堂於義本

宮義禁府議政府班列朝房司諫院朝房慕華館南

觀察使巡檢 ○中朝使臣來往諸驛分授近邑修理陳鋪

器血亦分定補添倭野人來往諸驛所在邑修理廢今續紫

門監九營繕分掌闕內闕外各處修理之役紫門監

所各殿各堂內各司公廨修補差備門內各項器用

造作內水庫供上 ○營繕一所掌宗廟上下備邊司

者老所右巡廳瞻星臺先蠶壇肅靖門二間水口門

典獄署 ○二所掌社稷德興大院君祠宇義禁府金

吾當直敦寧府朝房北漢行宮南關王廟廣智營旅

帥營西活人署東大門 ○三所掌永禧殿毓祥宮於

義宮彰義宮奉常寺議政府中樞府宣仁門外政府

朝房鐘閣南大門 ○四所掌光明殿芳林苑敦化門

外政府朝房中學司諫院司憲府慕華館漢江壇五

大典會通

卷之六

二

含春苑放馬苑南學敦寧府驛馬營左巡廳雩祀壇

弘文館朝房光熙門 ○六所掌長生殿儀賓府南別

宮訓鍊院上林苑西營南壇木覓堂彰義門 ○七所

掌詞寒壇先農壇成均館東學燾所太平館東關王

大典會通 卷之六

六十步為一里三十里為一息○凡祭享受香時前

期清道京部官外地○西路置騎撥自京至義州南

北路置步撥自京至東萊三十五站

營繕原官闕則典涓司公解則各其司官員分掌看

守有漏毀處報本曹修理每年春秋本曹巡審啓聞

景福宮昌德宮昌慶宮本曹堂下官各二人分掌檢

察間閣雜物錄解由授受轍德宮德開城府廢○闕內

間閣作衙門處其司官吏看守軍士入直處遞番日

典涓司官員同部將看審如有破毀遺失之物移文

刑曹推覈追徵○都城各門各處軍營警守所所在

部官吏定傍近居民看守錄解由授受如有破毀遺

失之物分徵直宿軍士若看守人

○軍士遞番之日遞相看審傳受

營繕修理則只報觀察使役人吏日守官奴○諸道

鄉校間閣守令隨毀隨補解由並錄授受備陳

大典會通卷之六

仁政殿編輯

工典原屬衙門尚衣院繕工監修城禁火司典

典洞司
今革

橋路原都城內道路大路廣五十六尺兩旁溝廣各二尺

湖若侵占掘取或置污穢之物者並罪本部溝渠

官吏及管領川池城墻分授近人置簿看守

橋梁本曹漢城府考察修治橋至長通橋訓練都監

自長通橋至太平橋禁衛營自太平橋至永渡橋御

營廳四山參軍分掌巡視沙夷石頽處報該司修築

外方道路每十里立小墩三十里立大墩置驛里數

地名續八道路程依皇朝例用周尺六尺為一步三百

大典會通 卷之六

大典會通

卷之六

一

大典會通卷之六

工典目錄

橋路

營繕

度量衡

院宇

舟車

栽植

鐵場

柴場

寶物

京役吏

雜令

工匠

京工匠

外工匠

大典會通

卷之六

目錄

一

大典會通

卷之五

五十三

家舍得決瓦家一間二卷草家一間一卷斜出則
 瓦家一間一卷草家一間十張田地得決則十負
 二卷斜出則一卷奴婢得決一口三卷斜出則一
 卷皆用楮注紙毋過二十卷

空盛四間準
 瓦家一間

大典會通卷之五

一百綿布二匹代錢文七兩○徒一年綿布二匹

代錢文七兩○徒一年半綿布三匹代錢文十兩

五錢○徒二年綿布四匹代錢文十四兩○徒二

年半綿布五匹代錢文十七兩五錢○徒三年綿

布六匹代錢文二十一兩○流二千里綿布八匹

代錢文二十八兩○流二千五百里綿布八匹二

十二尺六寸代錢文三十一兩二錢六分補流二千五百

里綿布九匹代錢文三十一兩五錢

○流三千里綿布十匹代錢文

三十五兩○刑推一次贖準杖一百

決訟該用紙續廢

大典會通

卷之五

五十三

大典會通

卷之五

五十二

貶下守令反詈上營依投印律論

笞杖徒流贖木續

笞一十綿布七尺代錢文七錢○笞二十綿布十
 四尺代錢文一兩四錢○笞三十綿布二十一尺
 代錢文二兩一錢○笞四十綿布二十八尺代錢
 文二兩八錢○笞五十綿布一匹代錢文三兩五
 錢○杖六十綿布一匹七尺代錢文四兩二錢○
 杖七十綿布一匹十四尺代錢文四兩九錢○杖
 八十綿布一匹二十一尺代錢文五兩六錢○杖
 九十綿布一匹二十八尺代錢文六兩三錢○杖

抑執而買賣者杖一百徒三年增曾經東班雜職謂有

御寶告身者

勿為決杖王府決杖代以金贖營門決杖代

以拿問

英宗辛巳下教

○各道錄啓罪人新伯到任後看詳

文案如有傳生之端改錄狀聞無亦以無狀聞過限

不狀聞者該房該曹執奏

正乙宗巳下教

○各衙門各軍門

各宮房不為文移於平市署推捉屜人者嚴禁○各

宮房非導掌差汰柴穀催運而以圖署牌子侵責京

外者該宮首任刑配作備人嚴刑三次勿限年遠配

匿不以聞之道帥臣先罷後拿守令徒三年定配限

五年禁錮○命牌毀傷者杖八十徒二年

馬牌破傷者同

補

大典會通

卷之五

五十二

大典會通

卷之五

五十一

隨駕差祭時責立馬匹責出諸且於貢人坊民者並

以制書有違律論令貢人圖免祭者同律 ○在鄉宗親貽弊

民人者宗簿寺嚴飭禁斷橫行外方作弊官府者拿

托以推奴徵債私門結縛亂傷其身者遠地定配宗臣士夫以外上侵擾各厘人者平市署草記科

罪 ○凡大小使命統制使兵水使推奴徵債者該道

觀察使隨現狀聞 ○京外關節之禁另加申飭違者

勿論貴賤從重論斷 ○掖庭下人侵虐索賂者各司

吏屬操縱受賂者勿論多少許訴法司並計贓論 ○

兩界良人冒認為奴婢率來者及興販人等潛引上

來者並杖一百流三千里 ○外方商賈所馱載邀路

雜令續宗親宰相自已所訟該司可以聽理者毋得

紛紜啓達違者重推○京司不由巡兵營而直關外

邑者二品以上重推三品以下罷職五軍門捕盜廳事係軍務及讖

捕則直關○外方監邑京司毋得推捉畿邑吏卒犯科者移關該營勘治

京司毋得直囚○各邑身役錢布京主人處毋得替徵儒

憑藉疏廳求請外邑先徵邸入錢者亦禁斷○諸上司及軍

門如有分付五部之事必關由漢城府施行○各司

奴婢他役者其提調毋得啓請還給雖都提調一應

匠人則毋得啓請還給而移文本曹則本曹分揀各

司殘盛參酌粘啓補今廢○有貢物各司及五部官員

大典會通 卷之五 五十一

大典會通

卷之五

五十

成文記論
仍給勿改

○欲改者具由告官之法

見原典

並指白文

與官署而言之白文文記亦告官改給

應用白文外
以違法白文

謀免其罪者以據
執他人奴婢律論

○外祖父母遺書並皆通用○繼

母傳係文記用官署

嫡母庶
母同

○偽造文記奸詐現著

者杖一百流三千里若其祖先所為則減等論

闕失
及燒

火立案奸偽
現露者同律

○凡文記官署非財主所在處勿受理

○傳得買得奴婢限內告狀者雖在期年後並給立

案期年後過一年則勿聽○自萬曆壬辰五月以後

戊戌十二月以前買賣文記雖未斜出證參明白者

皆許施行

誣罔擊錚者以詐不以實律論掘移納招後逃匿者以決後仍執律論官吏之決折有違法理者以知非誤決律論○觀察使守令占山於道內境內者拿問定罪鄉校案山望見處入葬者家長論罪並勒限掘移○因墳山爭訟以人臣不敢言之說白地誣人上言呈官者嚴訊得情於誣人惡逆本律減等除收贖杖一百島配補奴犯主山無論曲直嚴刑三次仍本役島配勿揀赦前

文記

續

父母奴婢和會文記一人未著名則勿施

母父

未分奴婢其子女等和會分稔草文記成置雖或一人有故未著名而各自執持積年使用則不可以未

大典會通

卷之五

五十

大典會通

卷之五

四十九

處偷葬者禁斷者雖一人家舍百步內不得現出則許令山主告

官啓聞後自官掘移○法理應禁之地占山落訟者法理不當

禁之地禁葬落訟者並刑推懲礪山大村內及他人墳

訟者指示地師刑推懲礪主喪人定配決給訟官論罪理曲不就辨於官擲奸

仍滿三十日不就訟者親着人處決給○私自禁葬

而違法作挈者並重論率婦女上山禁葬者有家長

配○發軍相鬪者拔劍放砲射者杖一百徒三年

傷人重者杖一百流三千里○作黨伐喪打破喪舉

者依發塚未至棺槨律論犯樞者依發塚見棺槨律

論○破金井毀築灰者依平治他人墳墓為田園律
論○穿壙處放火或投穢物作戲者依穢物灌人口
鼻律論○成墳後放火或插木者依延燒官民房屋
律論○置塚謂之真塚○凡山訟見屈後不為掘移
者依詐不以實律論

業者杖一百流三千里

依強盜例許人捕告賞布五十匹。一人於二三處非理

立訟者同律

○構誣訟官者杖八十濫為者杖一百事理

重者徒三年

相率作黨侵辱訟官者並遠地定配

○山訟與他訟一體

具訟體施行○士大夫勒葬誘葬偷葬之類各別痛

禁犯者依奪入閭家律論該邑守令知而不禁者拿

處

常賤父母山繼葬處士大夫占奪者同律勒限移葬

○士大夫墳墓隨其品

秩各有步數冒禁偷葬者依法掘移

但高玄墳墓子孫廢祭而或他

人侵葬不為禁止至于二三年後則依原典凡訟田宅過五年例勿聽偷葬犯墳則不在此限○雖無步

數之人壘壩有龍虎內養山處勿許他人入葬龍虎外則雖或養山勿許廣占○龍虎濶遠或至五六門

步亦不可一準龍虎惟在訟官量度彼此圖局山勢遠近參酌處決有主山及人家近

大典會通

卷之五

四十九

大典會通

卷之五

四十八

聯名告狀而中立觀變臨決輒欲共分者考其立訟

日數給三分一其一不就訟者勿論○奴婢田宅放

賣後價直倍前則謀欲還退自作元隻伴為勝負以

分其利者一切準今價徵還○他人時執奴婢未訟

前放賣者凡訟田民已決後仍執者並杖一百徒三

年○凡盜賣奴婢役價徵盜賣者田地花利同○凡士族

持衰甘心立訟者勿聽山訟則不論若無代訟人而事窮

勢迫者許令葬後更訴其被論人在喪者亦於葬後聽理○族親相

訟凌辱尊長劫脅卑幼者先正其罪後聽理親兄弟叔姪間

無故起為爭端者啓聞科罪○長立決訟衙門以教誘人爭訟為

限事在六十年以前則勿聽其冒占良人及他人奴婢爭訟者各依本律論

事在六十年以前連二代良役者雖自己奴婢亦勿

聽橫侵者以壓良為賤律論雖連二代良役而或投屬或已入訟辨者勿論

代數相訟得決度數相等而事在六十年前者以時執

者為主○原典五年見戶典田宅條三年見公賤條之限以月計

續典六十年三十年之限以年計被罪徒流充軍及公差外任人中無

子婿奴婢可以代訟者外○凡詞訟官違法聽理者

以制書有違律論補部官聽訟二十兩以上從重論勤部屬刑配訟隻不在當部亦勿

受狀○凡訟一隻在外方則就訟於隻在官京法司勿

為推捉本官誤決不得伸理者○爭訟田民者當初外冒法越訴者亦勿聽

大典會通 卷之五 四十八

大典會通

卷之五

四十七

上言者三度以後則該曹勿受理○相訟奴婢兩邊

不當者屬公若甲乙更訟乙者理屈不現相訟屬公

奴婢過三年則勿聽決以三十六朔為限○原典凡誤

情理迫切事不待決折堂郎遍改許即訴他司者亦

在三年定限內過三年勿聽○壓良為賤則雖過三

年當辨其不訴之○凡久遠田民相訟一定大小限

故而依律抵罪施行祖六十年謂之大限三十年謂之小限○若相訟

限內奴婢入宣頭案驛奴婢入形止案而稱以本主

推尋者用小限事在三十年以前十式年則勿聽若

主投屬本主相訟得決而逃避過三十或稱祖上逃

年者不可以過限論用六十年大限奴婢或稱奴良妻所生爭訟而非當身現存者用大

者終不現以致過限者元隻雖不齊現取招勿論過
限許令更訴○祖上奴婢相訟不勝過限而陰囑他
子孫告狀一切論○凡訟呈誤決者啓移他司先辨
以過限勿許接訟

官吏正誤決或因訟者歸咎或以法外相其誤決移

他司改分揀者勿計度數○三度得伸云者接訟三

度之內一隻再伸之謂也再度見屈之後更爲起訟

者以非理好訟律論後一落一勝則更訟二度得勝之

勝後乙者設或更勝累度勿施○外方已決之訟與

掌隸院所決者一體論以初度○再度官作財主則

依再度得伸例勿許聽理○再度得伸後屬公亦涉

聽理勿爲屬公○短訟連三次得伸者勿許聽理

一般奴婢其族屬雖換面相訟覈計得決度數兩度
得伸後勿聽起若不干前訟之別人持明白文記落訟

大典會通

卷之五

四十七

大典會通

卷之五

四十六

所納可考文書官吏監封元告元隻同着名置簿以

憑後考

決訟後落訟文券為造的實情狀
可惡者官上封置燒火者禁斷

凡訟前等

官已決折未立案而遞雖非交代後等官成給○始

訟後五十日之限

見原典私賤

除官員不坐日計之

五日內

不就訟過三十日者給就訟親着者之法在原典而
不須滿五十日後可決假如甲者過三十日不就訟

則乙者就訟雖未滿三十日給乙者乙者親着必至
二十一日甲者不就訟必滿三十日然後決給乙者

乙者親着之二十一日甲者不就訟之三十一日並計
元隻俱不現之日而充之且甲者理屈退避乙者就

訟將近二十一日則不可以甲者一二日出現旋
棄乙者之親着勿用甲者出沒間着凡爭訟同

凡訟告狀後年限內元隻齊現取招者外只一二度

追呈一二度上言者並勿以連訟論

若甲者限內告
狀長立督現乙

賤律論

補充隊續公私賤贖良後補充隊圖出於他道他邑

者勿施○女人之已屬補充隊者與男丁一體從良

○自己婢妻所產子女不屬於補充隊而現發者定

為公賤本主毋得使役若被其嫡族之發告沒為公賤則甚係傷倫因他事現發

者外其嫡族陳告勿施連二代良役事在六十年前非當身見存雖無帖文亦勿沒入公賤**補**今廢

聽理續田民聽訟各有該掌漢城府掌田宅掌隸院掌奴婢本曹並掌田宅

奴婢法律○成均館奴婢訟諸法司毋得直決移送本館查處○宗親家事係雜訟勿呈宗簿寺告本曹

推或一道文記內田民並付則勿為分掌並聽理只

治奴婢而不爭田宅只訟田宅而不爭奴婢元告元隻

則以不爭之意元告取招後只聽所訟

大典會通

卷之五

四十五

實律論

私奴婢贖良價同

○寺奴娶私賤所生贖良於妻上

典者私賤子女之贖良於母上典者並許良而父上

典勤作奴婢者以壓良為賤律論

贖良者限內不受立案則屬公掌隸

院 ○凡賤口雖并子孫永許為良者嫁娶賤口所生

則勿許免賤 ○咸鏡道私賤自他道移來者勿許贖

良元居民願贖者亦令自就其主贖良 ○已贖奴婢

稱以贍物侵徵者先世贖給奴婢至子孫還為撓奪

者並以壓良為賤律論

贖良已過數代後稱以舊典換面來侵者同律

○

非自己奴婢或盜賣或偽贖而本主推尋則盜賣價

徵於盜賣者

偽贖價同

已贖奴婢則勿侵違者以壓良為

赦令義禁府具罪目別單稟旨○貪贓現著者勿論守令

邊將職秩高下雖值大赦審理勿為錄啓○代射代講而定

配者十年內勿赦大赦勿拘此限○疏放與赦宥不同時推

人外事係未發覺者勿許追免

贖良續公賤代口贖身者所代奴婢累式年戶籍相

考名付的實然後以年歲相當者計口以奴代奴以

婢代婢如或冒偽現露則其當身監管官邑吏頭目並

杖一百流三千里守令削職觀察使罷職贖身後十年內代納

奴婢物故者還賤○公賤詐為贖身者還賤邑吏杖一百遠地定配官員以制書有違律論○工

匠代給奴贖良價毋過錢文百兩濫徵者以詐不以

大典會通

卷之五

四十五

大典會通

卷之五

四十四

常賤女子劫奪成姦者絞為從限已身
極邊為奴未成者杖一百流三千里
○宮女通姦

外人者男女皆不待時斬
懷孕者亦待產行刑而
不用產後百日之例

赦令 每赦令時罪人放未放京則本曹義禁府外

則觀察使分等錄啓者已至配所未至配所未及就囚

時囚徒流案俱不見錄該司查出別單書入○減死

罪人觀察使混錄放秩者自本曹考察未及到配

自發配官修啓凡係徒年則勿論輕重皆放死勿論減

流三千里減等則皆為徒
年疏決時減等務為慎惜
○凡宥旨前事啓請上裁

赦令六朔後者則并勿舉論
○永不除職者過十年
遇赦永不敘用者過三年遇赦稟旨書入大赦則勿

○同罪被謫而生者蒙放收敘死者仍在罪籍則每

上及曾經侍從臣雖物故
勿為檢驗○土族婦女同

姦犯續

凡姦犯律應不待時者懷孕則待產行刑○

士族姦總麻以上親及總麻以上親妻者不待時絞

姦大功以上親良妾者絞常賤之姦妻母者斬姦同

母異父姊妹者絞姦從父兄弟妻者杖一百流三千

里男女同強者男斬女不坐並依本律○士族婦女恣行淫慾瀆亂風

教者并姦夫絞其窮不自存流離道路丐托身者與常賤無異不可以士族論并姦夫

推勿○婢夫姦妻上典者男女皆不待時斬強姦成者男同律女

不坐未成者斬待時而閭巷人婢夫則○士族妻女只以作妻居生於率下有同雇工者論

劫奪者勿論姦未成首從皆不待時斬士族妻女劫奪者同律○

大典會通

卷之五

四十四

大典會通

卷之五

四十二

下致死者永不敘用自有其律而檢屍有妨事體勿
論凡京獄檢驗一依外邑例以備局事目舉行

○初覆檢實因死謂因以致實若有疑端則三四檢覆京則

漢城府堂下官三檢則本曹啓稟發遣郎官舉行○
外則觀察使定差員覆檢**增**殺人匿埋者依例檢驗

其他已瘞者勿為掘檢○凡當掘檢者勿為私自開
檢必先啓聞舉行○初覆檢法不敢相通檢吏私自開

宣泄者嚴刑定配**補**其他已瘞者勿檢指白骨檢驗
之謂若不計久遠通指已瘞則豈有匿埋檢驗之教

此後又或有年久而不可掘檢聞後施行○啓
正宗丁酉下教○檢驗謀避守令拿問重勘

下罪人物故該衙門移文漢城府檢屍後單子入啓

單子該衙門舉行**增**正雜職人妻士定配罪人物故
族婦女犯殺人雖正法勿為檢驗

則地方官親往檢驗報巡營轉啓以聞羅州黑山水

路千餘里無以及時馳檢別將亦印信官使別將馳
檢報營啓聞**增**鞠獄外定配宗勳文蔭武下大夫以

犯家舍搶奪財產者以強盜律論所奪財產還給○

外方殺獄觀察使同道內剛明守令查治其難決者

啓移本曹稟處增在鄉堂上朝官殺人該道觀察使啓聞拷訊補內侍係干殺越依朝官

例京外獄官自斷訊推增殺獄久囚罪人年滿八十證援俱絕

者減死定配補久囚年七十以上者區別狀聞稟處正宗庚戌下教○未嫁女

爲人劫姦其父母毆殺其人於姦所者以應死而擅

殺律杖一百補姦賊未捉於姦所一房同食無異姦

所勿爲完決狀聞稟處

檢驗續凡檢屍京則當部官外則地方官親往停屍

處檢驗後立案成給致死者雖是他邑人地方官依例檢屍毋得推諉○守令打管

大典會通 卷之五 四十三

大典會通

卷之五

四十二

毆擅殺其讐言人者減死定配其父被殺不告官與讐人私和受其葬需日久

而後擅殺復讐言者勿用復讐律用私和律杖一百徒三年○其父與人鬪而被咬腐傷致死於六十日之

後其子女與婦擅殺其讐言人者依大明律附例折跌肢體加限二十日之例其子只用擅殺本律其婦女

分揀○妻復夫讐言母復子讐言擅殺其讐言人者依子孫擅

殺行兇人律杖六十○不告官擅殺其奴婢者用大

明律杖徒之法而如當房人口悉放從良之文勿用

婦女因妬殺婢者鐘路決杖定配率接之婢夫肆發惡言情理絕悖而治罪邂逅致死為成獄非

絕悖治罪邂逅則獄具後草記稟決○雇主殺雇工比平人相殺減一等杖一百流三千里○明

火賊登時打殺者外不告官擅殺者依法抵罪○殺

獄受賂私和者依本律勘罪○被殺人親屬打破正

其惡非為償其子之命也從今以後一依法文施行
如有情節痛惡不可不別據處斷者則依司之臣隨

時稟 ○繼母嗾其夫故殺子女者以一律論或於妖
妾黜其

妻與女乃丐乞交嫁常漢產長子女率現則惡
其汚穢門戶潛殺其外孫者並其妖妾不待時絞 ○

殺妻父母者以謀殺總麻親律論 ○殺妻上典者不

待時斬謀殺未行者不
限年邊遠定配 ○顛狂失性而殺人者減死

定配殺人者耳聾口啞無以推問則不為
取服徑先處斷有乖常法亦依此律 ○鄰兒因

戲相詰顛仆致死而犯者年未十歲則分揀十歲
以上十

五以下因戲殺
人者次律減等 ○其母與人潛姦其子於姦所刺殺

姦夫者參酌定配 ○其父被人毆打傷重而其子毆

打其人致死者減死定配 ○其父被殺成獄不待究

大典會通

卷之五

四十一

○下等驛三十名○水軍二十名

殺獄續凡殺人之律雖有疑端推官惟期承款不為

細究詳覆之後三覆審慎蓋所以恤刑而若係殺人

則其不克慎三尺為準是豈王者之道曾前參以情

法減律之類雖不條列于續典此則俱在該曹謄錄

凡於啓覆參情法考前例莫曰承款務為消詳稟旨

裁決英宗甲子下教○殺獄關係甚重必須詳慎年未滿兒

十五歲以下勿以為證○故殺人者皆用辜限○父母殺

子女兄殺弟而其用意凶慘者並以鬪毆殺律論謀殺

子制法而未行者遠地定配○父殺子兄殺弟罪止杖徒制法本意而先朝受教定為一罪者蓋出於欲懲

隨奴五
跟奴二

典獄署

差備奴四
跟隨奴一

活人署

差備奴十四
跟隨奴四

尾

署

差備奴九十
跟隨奴三

歸厚署

差備奴二十
跟隨奴六

四學

差備奴各十
跟隨

隨奴各二

五部

差備奴各四
跟隨奴各一

文昭殿

差備奴七

外奴婢原

元額未準則
勿給他處

兵馬節度使鎮二百名○水軍節度使鎮一百二

十名○府六百名○大都護府牧各四百五十名

○都護府三百名○郡一百五十名○縣一百名

○屬縣四十名○府鄉校三十名○大都護府牧

鄉校各二十五名○都護府鄉校二十名○郡縣

鄉校各十名○上等驛五十名○中等驛四十名

大典會通

卷之五

四十一

大典會通

卷之五

四十

十奴世子侍講院

跟隨奴五

宗學

跟隨奴四

修城禁

火司

跟隨奴五

典設司

跟隨奴六

豐儲倉

跟隨奴九

二隨奴

廣興倉

跟隨奴九

典艦司

跟隨奴十六

典涓

司

跟隨奴四

內需司

跟隨奴四

翊衛司

跟隨奴八

昭

格署

跟隨奴四

宗廟署

差備奴十

社稷署

跟隨奴九

一奴平市署

跟隨奴一

司醞署

跟隨奴二

義盈庫

差備

隨奴十五

長興庫

跟隨奴二

冰庫

跟隨奴四

掌

苑署

跟隨奴二十

司圃署

跟隨從見在員職品加

八隨奴

典牲署

跟隨奴二十

司畜署

跟隨奴三十

造

紙署

跟隨奴五

惠民署

跟隨奴十二

圖書署

差備

差備奴一四
跟隨奴一四
春秋館 差備奴三
承文院 差備奴九十二
跟隨奴九十二
通禮

院 差備奴二十九
跟隨奴二十九
奉常寺 差備奴十一
跟隨奴一百五
宗簿寺 差備

奴十跟
奴四跟
校書館 差備奴十二
跟隨奴十二
司饗院 差備奴十一
跟隨奴五

內醫院 差備奴七
跟隨奴七
尚衣院 差備奴五
跟隨奴七十
司僕寺 差備

奴十四跟
奴八跟
軍器寺 差備奴二百
跟隨奴二百
內資寺 差備奴十九
跟隨奴七

七奴
內膳寺 差備奴六十
跟隨奴六十
司藥寺 差備奴十七
跟隨奴十七
禮賓

寺 差備奴一百
跟隨奴一百
司膳寺 差備奴六
跟隨奴六
軍資監 差備

十二跟隨
十二跟隨
濟用監 差備奴三十
跟隨奴三十
繕工監 差備奴十二
跟隨奴五

七奴
司宰監 差備奴三十
跟隨奴三十
掌樂院 差備奴七
跟隨奴七
觀象監

差備奴十三
跟隨奴十三
典醫監 差備奴九
跟隨奴九
司譯院 差備

大典會通

卷之五

四十

大典會通

卷之五

三十九

賓府

差備奴十
八跟

敦寧府

差備奴三
十一跟

中樞府

差備

奴十二
跟隨

義禁府

差備奴十
一跟

吏曹

差備奴十

七十
戶曹

差備奴二
十七

禮曹

差備奴十
七

兵曹

差備

奴十九
跟隨

刑曹

差備奴二
十五

工曹

差備奴十
七

漢城府

差備奴十
五

司憲府

差備奴三
十四

都摠

府

差備奴二
十六

忠翊府

差備奴二
七

五衛將

差備

十
內侍府

差備奴三
十七

承政院

差備奴十
八

掌

隸院

以差備奴七
〇二百六十二
跟隨

司諫院

差備奴七

經筵

差備

弘文館

差備奴十
一

藝文館

差備

均館

差備奴三
十五

訓練院

差備奴十
五

尚瑞院

差備

君十三名王子君十二名一品十名二品九名三品堂上官七名三四品五名五六品四名七品以下三名

大君十 **王子君八** **一品宗親六文武官**

五 **二品宗親五文武官四** **三品宗親三**
官堂上加

一 **文武官二**
堂上官 **四品宗親二文武官一**

五六品宗親文武官各一
經筵九品至各一

諸司差備奴跟隨奴定額原

差備奴 以京奴及選上充定跟隨同選上不足處以補充隊充定○每番刑曹先考京奴羸

縮定選 以公賤選上具數啓聞續差備奴跟隨原典皆

宗親府 員無定額加則加跟隨減則減忠勳府儀

議政府 差備奴二十四 **忠勳府** 差備奴一百三十 **儀**

大典會通 卷之五 三十九

大典會通

卷之五

三十八

廳

水工六二人廳多

別監十六

世子宮

原飯監四人廳多

別司饗四人廳多

兩官則加二

湯水色四人廳多

兩官則加二

牀排色四人廳多

炙

色四二人廳多

飯工六四人廳多

泡匠二

酒色二

茶色二

餅工二兩官則有

蒸色四二人廳多

燈燭色

二城上十

二水賜間四器四人廳

水工四

二人廳多兩官則

加

別監十八三洗手間三水賜間

世孫宮

續飯監二人

燈燭色兼酒色二

城上三

別監十

水賜間別監

世子宮水賜間別監兼

跟隨

原

闕內大君四名王子君三名宗親文武官堂上官二名三品以下一名闕外則并公私大

大殿原 飯監六四人廳多 別司養食十四八人廳多 湯水

色十四十多人廳 牀排色十八八人廳多 炙色六四人廳多

飯工十二十多人廳 泡匠二 酒色四 茶色四

餅工二 蒸色十八八人廳多 燈燭色四 城上三十

四二水賜間六銀器 水工十八二茶房十 別

監四十六四洗手間四水賜間 **增** 東山別監二屬
掖庭政院提差二屬掌苑署本署望報

王妃殿原 飯監四二人廳多 別司養食六二人廳多 湯水

色四二人廳多 牀排色四二人廳多 炙色四二人廳多 飯

工六四人廳多 泡匠二 酒色二 茶色二 餅工

二 蒸色四二人廳多 燈燭色四 城上八四人廳多 銀器

大典會通 卷之五 三十八

大典會通

卷之五

三十七

千里管領切鄰知而不告者減一等不報官吏重推

北道宮屬人及土豪品官同居婢夫雇工外冒占良人容隱役使者以制書有違律論三人以上杖一百

徒三年知情色吏面里任切鄰同律宮屬人犯此罪則內需司別差罷黜並勿揀赦前

賤娶婢產原公私賤娶自己婢所生給已之官主娶

妻婢所生給妻之官主若娶良妻而又娶其良妻之

婢所生給已之官主若其良妻有他夫并產子女則

給其子女

闕內各差備原分二

文昭殿原飯監二別司饗四湯水色四牀排色四
炙色四飯工六泡匠四酒色四茶色二

餅工四蒸色兼莊子色四城上四守僕四水工二
別監六闕內各差備同原典文昭殿差備今無

祀條從分數分給夫之於妻亦同○私賤無子女身死

者已物給已之主見原典公賤條○公賤則給其官亦見原典而身死久

遠勿施當身生時具證筆放賣他人者毋得混入如

或娶他婢有子孫而其主記上者以制書有違律論

公賤同○公賤有收養為子仍屬續案而傳孫者亦毋得記上○隱漏奴婢推尋者

雖累年之後只徵三年身貢一年貢奴綿布二匹婢綿布一匹半○京

人及他道人之北道奴婢只收身貢毋得率來使喚

關西一切勿許買賣潛相買賣者燒其文券勿施如

同推奴者守令親查得實依定式四金六金贖良其不呈官侵虐者各別科罪初未精查而本主繼起則當

該守令啓聞論罪○誘匿兒童待壯為奴婢者杖一百流三

大典會通 卷之五 三十七

大典會通 卷之五

三十六

處而本族外不得與他見原典本條既不得與他則自不

得放賣其放賣文記勿許斜給初無子女者其奴婢田宅已區處他人而

元財主後若有子女則許其刷還受者雖已身死亦勿拘身死勿改之法許改○繼母以其夫之已物稱

以別給或放賣偏給已出則前母之子無以資活原典云無子女夫妻奴婢生存者區處則有子女者之

奴婢生存者固不當區處更申法意田宅同○凡父祖傳來奴婢其一般

奴婢處毋得許與放賣○凡娶親屬人之婢其所生

與本主為五寸以下親者依放役奴婢所生例許本

主役使骨肉相殘不得使喚之文本不載法典官吏眩於俚俗相傳之言決訟之際每為屬公甚

不當祖父婢妾所生乃是同生四寸不可使役至於五六寸親屬漸遠使喚固無不可勿為屬公○

妻於夫沒後收養已族為子女者其夫邊奴婢以奉

子其分數以嫡子承重者論○嫡有女又有繼後子

又有養子女者奴婢嫡女與繼後子平分而繼後子

則加給奉祀條養子女只依分數○無子女前母繼

母奴婢義子女分數時乳母新奴婢所生則奉祀服

喪之義子女處全給使孫勿論有子女前母奴婢其

物而無子女身死則依原典無子女者奴婢本族外

無得與他之法異母同生處傳給勿以無子女前母

奴婢例分數除出亦勿給前母○班祔人奴婢先給

邊使孫○使孫圖見決訟類聚○班祔人奴婢先給

主祭者五分之一無過十口餘給使孫不問男女凡

食者雖其身死在於父母之前其同生等分財之時
皆就其應得奴婢數內計此分數抽出施行餘給本
族假如奴婢數少則○無子女夫妻奴婢生存者區
只給主祭者田地同

大典會通

卷之五

三十六

大典會通

卷之五

三十五

理 三度得伸勿更聽理凡爭訟同○相訟奴婢不與

半給田宅同○相訟奴婢畢決後京中十日近道三十日遠道五十日內具錄奴婢名數納官過限不納

者杖八十續父母奴婢不為和會者呈官分執無子女身沒

勿為分給而其妻守信則給○而新奴婢例無文券

相辨歸一者外以元奴婢例平均分給乳母新奴婢

不入於同生分執數而假令兄弟中既無乳母新奴婢又無他奴婢可分得者則必有負沒不能生活之

弊除出得者四○無子女嫡母奴婢妻子女分數外

餘還本族而勿論生沒均給原典無同生則三寸無

同生皆沒然後三寸三寸皆沒然後四寸之謂而官吏只給見在者不給身死者甚為不當更申法意三

寸以下同○嫡無子者奴婢如有繼後子則不可謂嫡無

其奴婢及價物並沒官年十六以上五十以下價楮貨四千張十五以下五十以下

以上三千張若盜賣則價物徵於盜賣者田宅同○放役奴

婢後所生許子孫役使○無後身死人奴婢收養使

孫等三年內毋得相分田宅財產同○凡奴婢因事功為

良者以公賤充給○據執他人奴婢及決後仍執者

杖一百徒三年徵役價給主其不均分執者合執專

利者論罪後其應得奴婢屬公田宅同○相訟奴婢元

告被論中自知理屈累月不現再囚家僮後滿三十

日不現者始訟後五十日內無故不就訟過三十日

者並給就訟者以就訟庭親著名字為驗雖呈誤決勿許聽理唯親著時有奸偽者許更

大典會通

卷之五

三十五

大典會通

卷之五

三十四

記子之於親亦不須官署○須具證筆帳親及顯官

妻奴婢雖無傳係生存者區處本族外不得與他如

有妾子女義子女養子女亦毋過其分妻適他者其

所區處不用○偽造文記姦詐現著者移送他司更

年證筆者同外欲改者具由告官改給受者身死勿

則啓聞受覈改於子孫夫之於妻妾許改○用祖父母以下遺書

祖及父則須手書祖母及母則須族親中顯官證筆

衆所共知未手書者疾病者並依婦人例○三歲前

雖遺書有勿與他之語勿用○傳得奴婢者期年

內告官受立案若財主成文契而死者召侍病族親
或奴婢閱實給立案田宅同各其所居處告官有相
折未成立案而遞○凡買賣奴婢告官私和買賣者
交代官吏成給

子承重則五分之一加二分○無子女前母繼母奴

婢**義子女**五分之一承重子則加三分○有子女前

母繼母奴婢**義子**承重則九分之一○無子女養父

母奴婢**養子女**七分之一三歲前則全給宦官以宦官為子者並依三歲前

○嫡有子女養父母奴婢**養子女**七分之一三歲前

則七分之一十分之一一謂嫡有子女則侍養子女給

則父奴婢給養子女七分之一餘並給妻子女母奴

婢從本分給妻子女養子女餘還本族七分之一謂

嫡有子女則收養子女給七分之二如嫡無子女而

只有良妻子女則收養子女與收養子女平分賤妻子女

女則給五分之一母奴婢從本○父母祖父母外祖

父母妻父母夫妻妻及同生和會分執外用官署文

大典會通

卷之五

三十三

一○嫡無子有女者奴婢**良妾子**承重則其分加二

分○無子女嫡母奴婢**良妾子女**七分之一承重子

則加三分餘還本族無同生則三寸無三寸則四寸親良妾子孫給七分之一賤妾

子孫給十分之一本族人數雖多都無本族則屬公給假如奴婢數少則先給妾子女

同下**賤妾子女**十分之一承重子則加二分○無子有

女嫡母奴婢**良妾子**承重子七分之一毋過三口**賤**

妾子承重則十分之一毋過三口○嫡及良妾無子

女者奴婢**賤妾子女**平分承重子則加五分之一○

嫡及良妾皆無子有女者奴婢**賤妾子**承重則其分

加二分○嫡無子女而良妾無子有女者奴婢**賤妾**

內奴婢寺奴婢一并革罷純祖辛酉○籍產奴婢居京者劃給本曹居外者仍

屬該官使役

私賤原未分奴婢勿論子女存沒分給身沒無子孫者不在此限

未滿分數者均給嫡子女若有餘數先給承重子又

有餘則以長幼次序給之嫡無子女則良妻子女無

良妻子女則賤妻子女同田地○父母奴婢承重子

加五分之一如眾子女各給五口承重子給六口之類**眾子女平分良妾**

子女七分之一如嫡子女各給六口良妻子女各給

女同**賤妻子女十分之一**○嫡無子女者奴婢良妾

子女平分承重子則加五分之一**賤妻子女五分之**

大典會通 卷之五 三十三

大典會通

卷之五

三十二

所生男從父役女從母役

娶良女所生驛役自願者依從良例陞驛吏其子女

一體屬驛○內司婢嫁驛奴所生勿為屬驛

驛婢嫁良賤夫所生男女並

屬驛奴婢

三水甲山六鎮官婢嫁驛吏奴所生男並從母役其餘端川以北女從母役驛

有吏女奴婢四名目郵官納價循囑以奴陞吏以婢

陞女者勿論數多少觀察使摘發啓聞科罪○一應

屬公奴婢及強盜妻子女各道觀察使歲抄小名啓

聞京各司屬奴婢小名亦移文本曹並置簿檢舉○屬公限當奴婢子枝無遺推刷訟案並錄屬公後

隨卽續案施行○強盜妻子女永屬各邑者所在官有產業鄉戶保授務令存恤觀察使巡行嚴加考察

若係公賤則各還其司○公賤犯罪○犯罪屬公人若

者既已仰役配 **補定屬官婢只役其身勿侵所生○**

勿定樂工及奉足○官奴娶寺婢之所生各邑稱以假官屬立役者摘發推論○營奴婢觀察使不稟朝家劃給書院者嚴防○官婢依法贖身免役外作妾率畜者嚴

立科條刷還還賤守令私與者不推還者並以制書有違律論不發覺觀察使一體論

罪○品官除役率畜者以土豪律論○官奴婢代口納贖者一並還賤其家長杖一百觀察使推考守令

罷職凡公賤守令私自贖良者設賑○公私賤娶時官奴婢許贖濫為者並繩以重律

良妻所生男女並從母役顯宗己酉始命從良肅宗乙卯還賤辛酉又從良己

巳還賤而已屬良役者勿論英宗庚戌又命○驛吏辛亥正月初一日子時為始所生並從母役

娶良女所生男為驛吏女為驛女娶公私賤所生男

女並從母役仍自贖其身者驛女嫁良夫所生男為驛

吏女勿屬驛嫁公私賤所生男從母驛奴娶公私賤許良為驛吏女勿屬驛

大典會通 卷之五 三十一

奴婢則一切勿許其圖出者並該官繩以重律

賜牌奴婢

及丘史物故外母得以雜項代受○殘邑及直路官
奴婢禮賓寺奴婢江都松都所在奴婢並勿許○功
臣賜牌丘史除兩界海西京畿江原道
外三南非直路完邑所在奴婢中定給○公私賤及

官屬背本主本官投托內需司者限已身沒為邊邑

官奴

冒占內司奴婢者
以冒占良民律論

○成均館奴婢勿許免賤

四學

鄉校及奉常寺同雖有
免賤之勞論以他賞

本司外勿差他役

四學濟用
監通禮院

同 勿定舟師格軍

社稷
署同

○本曹京奴婢諸各司無得

望定○諸司奴婢避苦就歇者及官吏循其私囑而

擅自那移者並依軍籍擅移律杖一百徒三年

米糶
諸司

奴婢勿許
斜付投屬

○官奴婢移屬諸司者禁斷罷還

濟州三
邑奴婢

代贖啟子雖三代以上登科者須自首後如右論陳告現出者勿論 ○ 官女只以各司

下典選入女內婢定可充選寺婢則非特教勿選良家

杖六十徒一年 ○ 宗親府議政 ○ 私賤入屬工匠案

及奉常寺熟手者以公賤代給過五年後給代工

數數外勿許給代他司同 ○ 奉常寺熟手勿論良賤

逢點增奉常寺掌樂院員役以本 ○ 功臣賜牌奴婢

則以寺奴婢丘史則以官奴婢本家指名望定掌隸

院入啓定給一等功臣奴婢十三口丘史七口二等

史二口 ○ 久遠功臣賜牌及因事賞賜未及受出者

各其門長顯官懸保書呈以防奸偽增諸宮房各衙

門賜牌者勿論新舊一官家賜牌以寺奴婢定給官

時受出毋得續續疊受

大典會通

卷之五

三十一

大典會通 卷之五

三十

年身貢○陳告奴婢全數逃公田土奴婢潛告官房替當其訟者嚴刑邊屬三

十口以上則公賤免賤私賤以公賤代給免賤官則

必以官奴婢陳告各司奴婢則必以各司奴婢陳告後免賤○推刷官所畜官婢托以陳告免賤瞞報掌

隸院者削職免賤人還賤無時陳告者一切防塞式年推刷始許

陳告而守令親覈虛實施以賞罰十歲以下母得陳

僧奸所生陳告立訟人給賞○陳告公賤續案中有

其續案無連續階梯而或稱久遠奴婢子孫與其戶籍及官文書符合無疑者聽

籍有一字差錯勿許聽理論以誣告之律○各官奴婢時方使役而只載官案不錄續案者稱以漏落陳

告受賞當該守令推刷差使員並論以欺罔之律凡逃漏現出之數每歲抄啓聞其祖與父出身進

者仍許為良其父出身進而其子冒良者及其父祖隱漏冒良雖未登科而其孫為出身生進者並許

一百徒三年守令推考五口以上色吏杖一百遠地定配守令罷職十口以上色

吏守令加等論減年歲等雜歧者五口以上守令色吏依漏

落三口以上律論七口以上與漏落五口以上同律防軍寺奴偽頃及漏案者三名

以上守令營門決杖如有容隱役使者不計口數多少役

使久近杖一百徒三年徵役價私賤同○逃○許接

公驛吏許接者亦同罪其役價徵給本驛○公私賤之容隱役使公私賤者杖一百流三千里亦徵役價

面里任切隣知而不告者守令不檢舉者並以制書

有違律論勿揀赦前若其容隱者自首則免罪役價

免徵逃漏當身自首則免罪前貢免徵陳告逃漏奴婢者每六口賞

一口毋過五口北道奴婢陳告者以他道奴婢賞之陳告五口以下則給所告奴婢三

大典會通

卷之五

三十

大典會通

卷之五

二十九

年者續案磨勘時可據文書上送該曹憑考頃下逃

者有父母則勿以逃逃懸錄逃○逃者外案付奴婢

逃接京中者仍留錄案役使兩界人物則一一刷還

女之屬上京後所生子奴婢所生六口實役者立役

女勿付京案查還本官其父母俱是公賤則免一口三口實役者父母免

貢雖父母俱歿之後同生五口實役者軍功納粟免

賤免役免貢者非啓下公文則勿施以功勞奉承傳

母已妻兄弟子女婦婿外母得望定如有冒偽而現

露則成給堂上官郎官從重推考該吏遠配告狀人

依欺罔律論免賤人還賤增凡免賤帖入啓時先考
京外帳籍應許免賤外詐偽濫雜者勿施循私許免
者該堂該道實貢奴婢漏落三口以上用情色吏杖

臣隨現勘律

監視取所管人一族切鄰等供招成立案本曹本司

本道本邑各藏一件又給屍親一件以憑後考該吏

及一族等知情以生為死者勿論經赦全家徙邊官

吏以制書有違律論續各司奴婢每貳年推刷內奴

婢則限十年推刷內司推刷時道臣別為廉察其侵

斂尤甚者自本道決杖定配○各衙門京奴婢生產

物故其司直報漢城府歲抄啓聞寺奴婢生產物

故今則每年自各○各邑公賤老除物故關由掌隸

該邑查報戶曹院成送立案施行兩斜出每無作木補充隊錢文二

過三朔不為成給守令罷職○以生為死者杖一百

流三千里增公賤物故如無當該邑檢狀勿施○掌

大典會通

卷之五

二十九

逃已過三十

大典會通

卷之五

二十八

夫則產後給假十五日○選上及收貢時侍丁免貢
則父母年歲及所生立役處奉足則戶首名字及立
役處載於都目狀並錄○功臣丘史及丘史之奉足
受立案年月以憑檢舉

以外居奴婢給身沒三年後還本役有妻存仍給○陳

告逃漏奴婢者每四口賞給一口三口以下則追徵
各年貢布及楮貨

給賞○容隱役使者論罪後徵役價每一口一日楮
貨六張倍本價而止逃亡或身死者徵役價後以其

奴婢徵償賤名在正續案者過五年乃許陳告年
四歲以下六十歲以上人不在計口論賞之例○良

人雖無良籍良族良役○凡賤人所係從母役唯賤
人娶

已久者勿許陳告屬賤○公賤無子女身良女所生從父役僧人所生雖良
亦從賤告者與逃漏奴婢同賞

死者奴婢田宅屬於本司本邑私賤則並其財
產許本主區處○公

賤物故者京中本司及所居部官員外方守令親臨

父母或已身名字明白現付外援引投托者並勿聽
理○內需司奴婢掌隸院檢舉成正續案本院本曹

本司本道本○京外立役奴婢免貢給奉足二口首戶
邑各藏一件

於奉足每一年收綿布正布各一匹○京則分二番
相適立役外則分七番相適選上選上如有故願代

替者所在官收價於陳省並錄以送每一朔綿布二
匹○選上闕役者杖八十準限追立不即捉送該吏

杖一○奴冒代者杖一百永屬殘驛吏不能檢舉守令
以他○各司○奴受職七品以下除○奴婢年十五以

罷黜○還本役○諸邑奴婢無奉足○奴婢年十五以
仕者

下六十以上者篤疾廢疾者所生三口以上貢役者

免貢役三口以上貢役者並免一口八十以上又給

侍丁一口九十五以上全給侍丁父母雖非公賤亦給
○京奴年滿五十除樂籍免貢役○奉足侍丁免貢

役奴婢每三年推刷改給立案奉足則雖有故改立
案時充給○立役婢子臨產一朔產後五十日給假

大典會通

卷之五

二十八

大典會通

卷之五

二十七

以家畜論○娶妾婢所生子女依原典妻婢所生例

無贖身從良

他人婢作妾所生買為已奴者依自己婢妾所生許屬補充隊

公賤原

公賤每三年成績案

各司官員先自推刷覈實同掌隸院官員磨勘

成籍外方則其官守令推刷報觀察使

○公賤有流亡者本官即報上

司移文諸道根尋發還

時到處安業者仍留錄績案京奴婢逃居外方者論罪

提還不能檢舉官吏及知而不告所管人切隣並以制

書有違律論若避役為僧尼者決杖一百極邊殘邑

官奴婢永屬知情師僧尼以制書有違律論還俗當

差私賤論罪給主

○每二十年成正案藏於本曹議政府掌

隸院司贍寺本司本道本邑

正案付奴婢訴良或相訟者及案內父母或祖

至九代代口贖身外孫六代以上代代口贖身七代以

下勿論應贖者上言則掌隸院必先移文敦寧府宗

受教孝宗朝乙未以後勿施○會大王嫡孫勿限代○庶孫限九代外孫限七代勿論公私賤代口贖身

功臣娶公賤所生並許為良○東西班三品正職之

子與孫軍職僉使之類不在此例曾經吏兵曹司諫院司憲府弘

文館都摠府宣傳官之子娶公賤所生許令代代口贖

身士族朝官者之子與孫嫡妻無後當以公賤所生

承重者明查得實亦許代代口贖身而西北公賤依法

勿許雖是西北公賤大王姓孫則許贖○宗親及大小人員娼流女

醫家畜者所生許良之法見原惟除仕無出入者方

大典會通 卷之五 二十七

大典會通

卷之五

二十六

賤妻妾子女原宗親總麻以上外姓小功以上親賤

妾子女並從良無贖身立役

親功臣賤妾子女同。娼妓女醫家畜者所生。

外勿許為良大小員人同。

○大小員人

文武官生員進士錄事有蔭子孫及無嫡子孫者之

妾子孫承重者娶公私婢為妻妾者之子女其父告掌隸院

覈實錄案

無父則嫡母無嫡母則同生無同生則祖父母告。自己婢妻婢所生外皆贖身以

無病年歲相當者贖本主若不聽則告官鄉吏驛吏鹽干牧子等嫁自己婢所生於父役處定役不通仕

路移文兵曹屬補充隊年滿十六不告者告狀後過

三年不受立案者付案後不立役者許人陳告還賤

女無役。告者依陳告奴婢例論賞。有服親母得陳告。他人奴婢則贖身後補充隊錄案立役者已

曾去官者勿許陳告

續

大王姓孫六代以上無贖身從良七代

者依上書詐不實律論事理不可施行而該司矇隴受理者重究

停訟原外方詞訟務停後務開前以春分日為務停秋分日為務開

除十惡奸盜殺人捉獲付官逃奴婢仍役據奪奴婢

等據執盜耕盜賣他人田地同一應關係風俗侵損於人外雜訟

並勿聽理京中則惟恒居外方者聽歸農其臨決觀

勢欲歸農者勿聽續遇荒年則本曹取旨行移該道

凡推奴徵債等項一切停止

賤妾原二品以上有子女公私賤妾許以自己婢告

掌隸院贖身私賤則從本主情願○凡贖身須用年歲相準奴婢若逃亡者本身生存則充

立不得充立者還賤

大典會通 卷之五 二十六

大典會通

卷之五

二十五

為兄奴為主其他至冤極痛事情則例刑取招此外

並嚴刑啓達勿施

申聞鼓今無之許冤者許擊金于差備門外謂之擊錚

原典復置○凡上言者使之三日內持戶口現身該堂親審其真贋過三日不現則勿施○上言之語涉

不經事係干恩者勿施杖一百勿贖如有代製者同罪

四件事血書者勿施○勿論山訟他訟泛及題外原情燒火勿論訟理曲直加等勘罪

被守令杖死而擊錚者先行按查罪在守令則罪之

如係誣罔則以部民告訴律論告狀內切已冤抑者外自己不干事並錄

者依原典施行○非理好訟擊錚者杖一百流三千里○願

畱守令擊錚者杖一百重者徒三年○事係微細可

呈諉道及諉司而冒濫上言者依越訴律論事理重

摘發報本曹則勿論陵屬身
犯偷斫者依大明律加三等

訴冤原訴冤抑者京則呈主掌官外則呈觀察使猶

有冤抑告司憲府又有冤抑則擊申聞鼓鼓在義禁府當直廳

凡上言當直員考司憲府退狀受啓義禁府司憲府所理不考退狀○凡上言啓下五日內回啓如或過

限具不即回啓辭緣以啓關係宗社及非法殺人外吏典僕隸告

其官員者品官吏民告其觀察使守令者並勿受杖

一百徒三年品官吏民則黜鄉陰嗾他人發狀者罪亦如之

其自己訴冤者並聽理誣告者杖一百流三千里品官

吏民則亦黜鄉**續**擊申聞鼓者刑戮及身父子分揀嫡妾分

揀良賤分揀等項四件事及子孫為父祖妻為夫弟

大典會通

卷之五

二十五

大典會通

卷之五

二十四

家者以故燒自
已房屋律論

○各司官員及下屬徵責免新罰禮

許參等事者依官吏受財不枉法律計贓論不檢舉

職○外方鄉校鄉所任及諸軍門將校及軍卒稱以

免新禮徵斂者從重決棍不發覺將領從重論罪身

軍官及軍卒犯者依諸軍門例論增陵園墓木犯斫而不能摘發則

犯斫人及陵官分輕重論罪陵園墓拱抱大木何板

發則陵官徒三年陵軍流二千里二株以上次次加

等止流三千里松雜大木何板一株以上陵軍杖

一百四株以上徒二年七株以上徒三年陵官五株

以上罷職七株以上奪告身三等十株以上陵軍流

三千里陵官徒三年中木十株以下陵軍杖八十

株以上杖一百二十株以上徒一年三十株以上徒

二年陵官五十株以上奪告身三等三十株以上罷

職小木十株以上陵軍笞四十二十株以上杖六十

牌一切
禁斷
○閭家奪入者徒三年定配其稱借貫者同

擲奸其有無報漢城府入啓而掩置不報者以制
書有違律論○外方則令觀察使查出一體勘罪○

自賣其身者以賣妻律論買者○花郎游女及巫女

畱住城中者並摘發論罪花郎游女所在摘發良家
子女永屬殘邑奴婢公私

賤杖一百流三千里○巫女率畜者勿論三司與他司所
檢舉官員罷黜增巫女率畜者勿論三司與他司所

屬並刑配○變着女服出入人家者杖一百絕島定配勿

良賤○豪強品官武斷鄉曲凌虐百姓者杖一百流三

千里○鄉戰者勿論彼此並杖一百遠地定配○守

令游棘民家民塚者以制書有違律論增鄉民之磨
崖築臺刻石

等媚悅土主者首唱○毀家出鄉者一切禁斷增勒
人刑配守令重勘

大典會通 卷之五 二十四

大典會通 卷之五

二十二

契房者刑配不係屨案而亂屨者京兆主管凡亂屨使市

折價不及贖錢則除贖杖八十諸官士大夫家所屬亂屨尤

現捉而毆打禁吏拘雷屨人徵還贖錢者摘發家長

依律定罪○諸軍門軍兵手業物件勿以亂屨施行

處決○司與諸軍門所屬干係訟獄者一邊進來一嚴

刑驅迫亂屨人者決杖亂屨勿施衛廳所屬物件勿為

屬公違者施以制書有違律○扈亂屨物件勿為

規司直為科治勿用人進來之並禁斷○三法司本曹

府漢城府毋得在家出禁毋得昏夜出禁京城禁標外毋

得出禁亂屨禁條外毋得劫出他條量定時刻毋得

踰越先以禁條申嚴飭勵後出禁禁吏憑依橫拿者

杖一百假稱禁吏間里作拏者論以遠配之律增三

法司木牌外加作紙牌一切嚴禁補監察出

勿濫及○上自宮禁下至閭閻章服戎服外非土產

則毋得服着禁軍扈衛軍官及醫女針線婢勿禁僭衣士族婦女服着一

依其夫爵品外用大緞錦繡鳳釵金玉釵珠鈿假鬢

者惟新婦勿禁**增**毋論紗緞綾紬凡係有紋者一切嚴禁犯者市民並施一律譯官商賈自轡府先梟

示後狀聞物堂下官馬鞍用銀入絲者增堂下官乘

騎律赴燕書狀官通信使從事官勿論○中庶人墳

墓石物踰制者勿用石人望柱國喪張樂挾娼者勿

良賤不限國忌正日及致齋日動樂者並嚴禁科罪

○市價刁蹬者斗升不準式者用木碾惡米者稱以

外上勒買廛人者平市署並主管而市里犯禁人本署毋得徵贖報本曹科罪**增**都庫

大典會通 卷之五 二十二

大典會通

卷之五

二十二

守令邊將發覺則鄉所亦同罪營
門發覺則守令邊將以隱結律論
嶺阨禁養處定標

內以山腰冒耕放火者依松田冒耕放火例論監官

山直亦與松田○奔競者都日政定日後吏兵曹堂

司官員家非同姓六寸異牛馬私屠者庶人犯禁者

年士夫則坐其家長同律○兩都水原廣州等邑及

論都城內庶人騎馬者三醫司譯官律官日官寫字

前銜勿錄事禁軍亦勿禁而神祀者京城內外大

限十里○會飲者三人以上具肴饌會飲者只治辦

杖一僧尼濫入都城者杖一百永屬殘邑奴婢許接

尼者治罪還俗○僧人有公並禁並禁斷而申嚴舊典其

事者勿禁增勿論公私並禁

十株以上犯斫則監役官罷職伐石則勿論多少
同律松雜木五十株以上犯斫則監役官拿處 **冒**

耕者以強占官民山場律論神武門外岳之下屈

○諸道封山禁松犯斫者重論以一大松犯斫十株以上

減死定配○材木偷斫一杖六十年監官山直杖六十徒
一年三十株以上杖八十徒二年監官山直等未發

覺者同律○生松犯斫入處宜松山船材帥臣守令
私自徵贖守令邊將計贖論

擅許擅伐者以私賣軍器律論中外公廨修改時亦

者決杖營門松田放火者以一律論山直監官不得

許題者重推因封山外元田焚灰則與故犯有間田主決杖定配
失囚律論受財故縱者以枉法律論○封山失火或

監色從重決棍監官山直重棍守令勿罷封標內設庄者杖一百

流三千里鄉如有犯耕而山直監官發告則只治犯人

大典會通 卷之五 二十一

大典會通

卷之五

二十一

杖一百流三千里○京城十里內

東自大菩洞水踰峴牛耳川上下伐

里長位松溪橋至中梁浦以川為限○南自中梁浦

箭串橋新村豆毛浦至龍山以川江為限○北自大

菩洞曾賢峯猪噬峴我嵐山延曙舊館基大棗里至

石串峴西南合流處以山脊為限○西自石串峴時

威洞沙川渡城山望遠入葬者依盜園陵樹木律論

亭至麻浦以川江為限

勒限掘移○陵寢火巢外案

禁標內偷葬者減死定配

○空闕松木偷斫者不

限年邊遠定配京城十里內松木犯斫者依律定罪

生松元株一株以上枯松元株二株以上並杖一百

徒三年生松枝葉枯松植柯伐取者並杖一百掩置

不告官家長與犯人同罪隱匿犯人者遠配○山直

以山底人代立或憑藉斫松者或恐嚇索賂者杖一

百監役官拿處○山直與無賴輩作契

四山標內

見

典

木根莎根採取者土石掘取者並依生松例論

生

松

發則一體削職如犯越生事查問
辱國則觀察使以下加等定罪
○平安道江邊七

邑義州江界楚山昌用錢者以一律論地方官道臣

律○咸鏡道端川以北同咸鏡道富寧以北商賈入去者以制書

有違律論勿論犯禁與否並禁斷而與販之○海浪

島往來者依越外境律自北路往來西關無行狀

者巡營成給行狀現發則地方官拿問定罪招引人物

入去兩界者勿論人並以一律論籍官而如有隱匿

現發者與招引同罪不檢舉守令拿兩界人物招引

賣買者以次律論兩界邊民逃移內地者刑推刷還

邊民入彼地而守令匿不以報者罷黜面里任等

大典會通 卷之五 二十一

大典會通 卷之五

二十

徒三年○奉使人挾帶商賈者拿問嚴處入去者依詐冒軍人

論例○西北邊開市義州會寧慶源等地開市時地方官差使員眼同擲奸有禁物不能

摘發而追後現挾持麥貨者與使行時挾持者同律

發則拿問定罪亦論賞人馬匹潛商者以次律論守令犯○交通清

人和賣贓物者以一律論把守將吏棍○西北沿邊犯

越採麥佃獵者首從皆境上斬犯越首倡者籍沒家

採麥律論○犯越人容接教誘者與犯人同罪知而

不告者良賤邊地殘邑為奴出身以上邊堡充軍陳

告者與潛商陳告同賞○犯越地界守令邊將自為捕納者

年定配座首兵房軍官島配守令邊將自為捕納者

將功折罪若掩現徵贖於犯越人則計贓論守令邊

將不能摘發而現捉於

軍知情者與犯人同罪節度使不能摘發而因他現

觀察使則節度使削職觀察使不能摘發而因他現

賂者減死定配小通事憑籍作○倭館開市時訓導

員開市監官監市軍官 麥貨潛商者首從皆館前斬

不入倭館而被捉者受賂故縱者並嚴刑後他道極

邊定配捕告人參酌論賞○隨後現發則其時訓別

以下拿問嚴處東萊府使亦拿問訓別以下知情則

與犯人同罪○鄉通事及商賈等與倭人期會潛入

絕島買賣者依潛賣禁物 商賈出入館中托以買賣

例論不檢舉官員罷職 漏通事情者為從受賂倭人誘引女子潛入行姦者

其女人則杖 倭人處負債者倭物偷取者並館前斬

一百徒配 倭館闌入者以一律論官吏出入而不能 倭館朝市

各營邑及私商船運米買賣者各衙門稱以公貨訓

切防 倭人賫來雜物浦口潛商者知情通 並杖一百

大典會通 卷之五 二十

大典會通 卷之五

十九

十匹元有職者加階堂上則否鄉吏驛吏免役賤人免賤徒流以下放免仍給犯人所持物色商賈

私托物貨貿易唐物者並受寄人杖一百徒三年物

貨未滿二十貫則減一等不檢舉書狀官義州府尹並以制書有違律論勿揀

前赦在我境潛賣禁物者減死定配義州府尹罷職○

載人定配凡禁物被捉一切沒官漏洩本國事

情者杖一百徒三年關係重者絞不檢舉書狀官以制書有違律論

他國人處路程記書給者清人處負債者並以一律

論詐冒軍人姓名入去者潛隱入去者並杖一百馬刷

驅人不逢點逃歸者杖一百他道定配中間逃躲流落彼地者境上斬○客使出來時

遮道呼訴者他道遠地定配只論憑藉彼人居間受

吏兵曹司憲府司諫院○京城內巫覡居住者閭閻

內僧尼留宿者乞糧見父母同生論罪○外官所犯

貪汚虐民外勿許風聞舉劾○守令非因公事越境

者以制書有違律論○已受婚書而再許他人成婚

者其主婚者論罪離異續赴燕入使臣渡江時書狀

事眼同搜檢挾持一參貨者境上斬入去後現發者回

並拿問首譯領將囚禁科罪而八色定數外銀貨賫

去者以一律論送草記待允下始許如有擅自許越

者監司府尹以先送金銀寄置灣上者依強盜律論

受寄者知而不告者並杖一百流三千里許人捕告

大典會通 卷之五 十九

大典會通 卷之五

十八

彩者用花席者用朱漆器者用絲花鳳金銀露布花者用焰硝者官舍及堂下官以下婚姻人用紗羅綾

段屬毯者

土族婦女童京妓勿

禁濫收私債者

十分為率每月取一分如十升

取一升之類每年取五分如十升

取五升之類年月雖多不過一倍

私占柴草場者並

杖八十○戲壽婚姻祭享外用油蜜果者街路供佛

唱魂者喪人庶人僧人都城內騎馬者

老病者及兩宗判事勿禁

新屬人侵虐者並杖六十○凡犯禁財物勿沒官○

葬用古塚者依發塚律論

許發塚者及葬師同

○私奴婢田地

施納寺社巫覡者論罪後其奴婢田地屬公○士人

敗常及犯賊者士族婦女失行者

夏適三夫者同

錄案移文

內行野祭者士族婦女遊宴山間水曲及親行野祭

山川城隍祠廟祭者科場吏典僕隸漏洩交通者故

不檢劾者並杖一百○代納貢物者杖八十徒二年

永不敘用聽從守令以制其物沒官○大小員人用

紅灰白色表衣白笠紅靴者酒器外金銀青畫白磁

器者庶人男女則並禁紅紫衣紫帶金銀青畫酒器

鞍飾銀鐙子斜皮○如手巾首帕縷紐之類細瑣之物

勿禁○凌染灰色衣兩具白色衣士族婦女兒闕內

拜跪背坐及加率跟隨者衙前跪宗親妻女堂上官

母妻女婦有蔭新婦外用有屋轎子者寺刹外用真

大典會通

卷之五

十八

大典會通

卷之五

十七

打角夫各三匹人蓼則各三斤鞦韆以下各十斤赴遼東者布

事官十匹從人蓼二十兩為一包十斤為八包今則蓼入

禁條以銀代蓼每蓼一斤代銀二百兩 挾帶雜文書

者並杖一百潛賣禁物者闊細布絲紋席厚紙貂皮

浦所及客館賣杖一百徒三年重者鐵物牛馬金銀

軍器之類絞付囑者並○驛馬濫乘者私與者並杖一百

流三千里加數者在道者經驛不換者科場舉子借

述者代述者並杖一百徒三年○私出入官府者父子

婿兄弟不在此限○驛儒生婦女上寺者尼朝官娶

放出侍女水賜者毀文書重造紙者用紙人減都城

勿禁侵損者杖八十

同

罵告舊家長者各減毆罵告家長律二等論○凡下
官罵差等官者於罵入本律加一等隔等者又加一
等以此遞加至杖一百而止工商賤隸勿論有無職
各又加一等補婢夫凌辱家長者杖八十徒二年非
居生於率以下者杖一百○吏卒罵五品以上官者杖
一百六品以下者減三等杖七十事理絕悖者杖一
百徒三年罵他衙續以親母或親兄弟誣罔陳告為
門官者各減一等

他人奴婢者依子孫誣告祖父母父母之律不待時

絞○凡子孫告訴其祖父母父母者勿辨曲直依法

論罪以明彝倫

禁制 **原** **奔競者**

吏兵曹諸將堂上官吏兵房承旨司憲府司諫院判決事之家非同姓八

寸異姓妻親六寸婚姻家隣里人而出入者

杖一百流三千里○赴京及

使隣國員人賚定數外物貨者

赴京使布十匹書狀官以下正官各五匹

大典會通

卷之五

十七

大典會通

卷之五

十六

用官物者杖一百流三千里○各邑書員操縱作弊者依元惡鄉吏例論

銀錢代用

原

律稱銀錢並以國幣準計

銀價依七品願納銀者

聽錢十文準楮貨一張補楮貨今廢

罪犯準計

原

律稱罰俸錢一十日準笞一十半月笞

二十一月笞三十兩月笞五十○犯充軍者準杖一

百徒三年邊遠充軍者為奴者全家徙邊者屬殘驛

吏者並準杖一百流三千里

告尊長

原

子孫妻妾奴婢告父母家長除謀叛逆反

外姦奴妻婢夫告家長者杖一百流三千里

舊奴婢雇工毆

到日本偷取供帳雜物者依律
處斷在我境索賂作挈者同罪
○各邑上納綿布麻

布各五同以上詐欺偷取者斬
該上納綿布錢文接置

吏以監守自盜律論○邑吏與牟利輩符同偷竊者
移送捕盜廳定限督捧後移本曹照律處置過限終

不納者蕩滌以計贓律論若守令
知情成送兩件陳省者拿問定罪

元惡鄉吏
原元惡鄉吏
操弄守令專權作弊者陰受

橫歛濫用者冒占良民隱蔽役使者廣置田庄役民
耕種者橫行里間侵漁營私者趨附貴勢邀避本役

者避役在逃隱接村落者假仗官威
侵虐民人者良家女及官婢作妾者許人陳告亦許

本官京在所告司憲府推劾科罪犯徒者永屬本道

殘驛吏犯流者永屬他道殘驛吏守令知而不舉劾

者以制書有違律論續守令遞代之際官吏乘間擅

大典會通

卷之五

十六

大典會通 卷之五

十五

初犯成羣作賊三人以上賊滿一貫以上者二人賊

滿二貫以上者及再犯者勿論賊多少並勿分首從

杖一百絕島殘邑為奴○乘夜聚黨殺越人命者勿

論得財與否不待時斬妻子為奴聚黨遮截於道路劫奪人財者亦以

明火律論○雖明火作賊同黨既少物件不多又無殺越人命者依竊盜例絕島為奴○賊人妻子以私

出嫁婢入於本主戶內者勿為定屬○強盜窩主律不

至死者杖一百絕島為奴賊人十四歲以下○白晝

場市掠奪物貨者劫姦女人者並首倡斬為從限已

身島配無賴輩聚會場市竊牛○偷取使行方物潛

賣清人者首從皆以一律論領將決杖定配通信使所帶人

盜徒流者平安永安道各其道極
邊其餘道絕島各邑永屬為奴
凡刺字者封署刺

處仍囚過三日乃放者軍人犯盜刺字
○冒出外境偷取彼

人財物者絞盜內地物轉賣彼境者以潛賣禁物論

並勿揀赦前○凡贓贖物送戶曹○凡被盜者詳錄

所失物件形標告官受立案以憑後考續御厨物偷

竊者以盜大祀神御物律論內醫院銀器偷竊者同

偷竊者與在殿內者有異絕島永屬為奴○凡偷竊

應死者小功親自首則罪人減死定配○殿庭所排

磚石掘取者杖一百徒三年增御庫物偷竊者以

強盜律論陳告捕捉者論賞各衙門銀布偷竊者官

司私庫雜物偷竊者各衙門銀布偷竊者官
只依竊盜律論○帳籍偷取者邊遠定配○竊盜

大典會通 卷之五

十四

捕二十名以上者論賞吏卒交通賊黨者○捕盜廳

被告之人在十里外則必啓請後捕來○有錢穀各

司晝夜直官員不謹被盜者罷職旋即捕獲者免罪

隱蔽不告者罷職指捕人依捕強盜例論賞○匿名書罪人

捕告者以劇賊捕告例論賞○以儒為名者雖係關

鞫情勿送捕廳庶人則強竊盜外亦勿增捕廳詳錄

罪囚名字別書推覈月日作為文案以憑後考逆家婦女

應坐者勿為拘留捕廳直令押送配所○凡係鞫囚已自王府推問者勿下捕廳

贓盜原強盜不死者依律論罪後刺強盜二字再犯

處絞強盜妻子永屬所在官奴婢裔主律不至死者論罪後刺強窩二字全家徙極邊三犯處絞犯

賊五名以上承款啓聞則勿論正刑未正刑指示捕

捉人出身閑良加資

加資教旨必書所捕賊人名字以防其濫

公私賤免

賤鄉吏驛吏免役

其免賤免役與受賞從自願

指捕一二名則出

身遷六品職良賤米布施賞

賞例見原典

獷悍劇賊雖捕

一名依捕強盜五人例論賞

凡捕盜論賞時以賊賊并計以給

○凡

指捕論賞人討捕使守令如有循私冒錄者論以欺

罔永不敘用○賊人同黨如有自相發告吐實伏法

者免罪給銀五十兩七八口以上免罪加資給銀一

百十兩○守令指捕論賞一切防塞

若境內獷悍劇賊乘機捕捉顯

有功力則依原典加資

○各邑官屬別定助捕人通計一年所

大典會通

卷之五

十四

大典會通 卷之五

十二

階鄉吏賤人給綿布五十匹

凡遇強盜所管官吏及鄰里人院主驛吏等不

救者論罪○里內有盜賊接居其切鄰所管人知而不告者重論

續捕盜將外方捕

盜時須揀賊證俱備閱實有據者捕之如不即輸情

必須覈實者亦質問於捕盜將一應所捕人囚所在

官令觀察使分揀決放

賊黨援引人衆所共知為賊者在前作賊在逃未獲者明

有事狀或有杖痕者外其

○盜賊就捕者自其邑窮

問取服後移送討捕使違者以制書有違律論○關

西海西治盜一體令兵營主管○賊人承款考覆討

捕使勿為直啓觀察使親問結案後修啓

指示捕捉人亦覈實

以啓而非本土人則勿施○賊人考覆前

徑斃者妻子定屬指捕施賞等事並勿論○捕明火

才白丁團聚原京外才人白丁盡刷分保各坊各村

成籍有職及安業居本曹漢城府本部本道本邑各

藏一件每年考其生產物故逃亡啓聞置簿逃亡者

依徒流付處人逃亡例論廢

捕盜原捕竊盜及殺牛馬者一人給綿布十匹每一

人加二匹至五十匹而止都給平強盜則一人五十

匹每一人加五匹至百匹而止其為首捕強盜者賞

職元有職者加階鄉吏賤人為首捕二人以上者給

綿布五十匹捕一人者給三分之二○五度先告竊

盜十貫以上者三度先告強盜者受階元有階者加

大典會通 卷之五 十三

大典會通 卷之五

令先罷後拿依律科罪

補失囚未捕守令公罪

○賊

人破獄逃躲者待其本罪承服依律斬

刑獄鎖匠符

脫枷杻破獄門逃躲者查得其事狀依治盜例訊問取服啓聞斬當該守令營門決杖未決杖前觀察使

勿得罷黜○越獄罪人他死

○殺人在逃者捕告人

不分首從勿拘度數並依原典捕盜條論賞

許接戶首依藏

匿罪人律論自首者免罪又依凡人例給賞切隣面里任知而不告者亦依藏匿律論不用心捕捉官吏

以制書有違律論

○濟州三邑人逃移他境者科罪即還原

籍許接人杖一百流三千里增特教酌處罪人逃躲

者地方官嚴勘

緣坐罪人擅離者地方官本律外加一等○定配罪人逃失邑守令以制

書有違律論○定配罪人中路逃躲地方官拿問嚴處領去將差刑推定配

判付外並循例刑推增無論親鞫庭鞫值大雨劇暑

則設草菴假家於訊推處正宗○時囚每五日錄啓

補流囚家屬許從○輕囚放釋過後還囚堂上重勘

郎廳先汰後拿下吏刑配

逃原徒民逃亡者妻子屬殘驛奴婢捕獲則戶首

斬自現則還元徒處妻子放增今廢○犯強盜永屬

者二度處斬徒流付處安置充軍定役及竊盜永屬

者三度處斬徒民逃亡守令罷黜所管人京則首領外則

勸農里正統主及切隣等知而不告者以制書有違

律論○徒流付處安置充軍徒民定屬人等身死或

逃亡守令親自覈實報觀察使觀續死囚逃亡邑守

大典會通 卷之五 十二

大典會通

卷之五

十一

自十一月初一日至正月晦日
自五月初一日至七月晦日
事干綱常賊盜男人

杖六十以上女人杖一百以上外其餘杖一百以下

並收贖自願受杖者聽續獄者所以懲有罪本非致

人於死而邪寒盛暑凍餓疾病間有非命致死其令

中外官吏淨掃囹圄療治疾病無家人護養者官給

衣糧如有懈緩不奉行者嚴加糾理英宗乙卯下教○重囚

外罪名稍輕而身病極重者月令看審報典獄官典

獄官報本曹保授姑放禁府罪囚則月令直報本府

邊保放一啓稟保放○死囚外遭親喪者限成服啓稟保放

罪人遭親喪及承重喪者給配○凡罪人拷訊嚴刑別

暇歸葬過三月後還發配所

以一律論戶長印為造者絕○偽造號牌者以印信

偽造律論○偽造宰相書簡關係重者邊遠定配增

宮差盜踏圖署偽造關牒者嚴刑遠配營邑之匿不

以聞者隨現重勘

恤囚原京司憲府外觀察使檢察獄囚囚死則典獄署報本曹本

曹移文漢城府義禁府則直移文外則守令移文鄰

官檢屍覈實方許埋葬其致死根因救療形狀漢城

府觀察使啓聞凡檢屍依檢屍圖○當該官吏不能

救恤多致物故者重論○雖非監禁人拷訊後物故

者亦啓○刑死人無如有不牢不修漏通侵虐等事

則杖一百○罪人罪名始囚日月拷訊及決罪數各
其司每十日錄啓外則節季啓決訟○隆寒極熱時

大典會通

卷之五

十一

大典會通 卷之五

十

者私門之用刑者並以濫刑律論○各營編裨用棍

者繩以重律地方官不為論報者罷職推考補一日杖母

過百度

偽造原偽造印信者印文雖未成處斬妻子永屬諸

邑奴婢捕告者給犯人財產○偽造楮貨者絞捕告

者官賞正布二百五十匹都給平分仍給犯人財產續祭

享所用中脯私造及貿納者並以一律論○私鑄錢

文者匠人及助役人並不待時斬主接者同謀分利者亦以一律論設

爐未行者捕告人依捕強盜例論賞○打造假銀者

以次律論以私鑄錢律論○偽造印信刻造者模畫篆文者並

行刑有乖法意依夜未明例待朝行刑

濫刑原

官吏濫刑杖一百徒三年致死者杖一百永

不敘用

續

外方奉使者正二品以上及議政府司憲

府官外毋得用刑 ○曾經朝官人觀察使節度使毋

得刑棍

軍務則狀聞後決棍

○雖奉命使臣以私事殺人者亦

償命 ○京外官吏法外用刑者雖邂逅致斃勿為分

揀其聽使下屬不坐

原典濫刑殺人者永勿敘用乃終身禁錮之意歲抄勿為書入

○各邑鄉所軍官面里任等答杖殺人者出於私意則斷之以法出於公事則覈其濫刑與否而酌輕重

定罪色吏勿論公私一依平人相殺例處之

○捕盜廳剪刀周牢之刑嚴

禁 ○竊盜外足杖者軍務外用棍者守令之用圓杖

大典會通

卷之五

十

大典會通

卷之五

九

摠府郎闈帥曾經時任人蔭官曾經敦寧都正以上入關係殺人及贓汚外該府遲晚者並勿為請刑直

請依受教照律

別軍職長番內侍醫官二品以上亦用此例○閣臣勿論時原任勿請刑

勿項鎖時任拿推者政院先捧閣職遞差傳旨該府勿為拿囚開坐捧供後出送待命所原任勿用此例

補年分尤甚邑勿配

配滿十人移定於道內數少邑○配所勿定於家在道內

禁刑日原

京外各衙門每遇大殿王妃誕日王世子

生辰大祭祀及致齋朔望上下弦停朝市日勿行拷

訊決罰

大殿誕日則並前後各一日

上項各日及二十四氣雨未

晴夜未明勿行死刑

續罪人行刑除大祭齋戒日中

祀以下非親行齋戒日則勿拘

大祀中祀齋戒詳見禮典

○薄昏

庚寅英宗 ○笞杖枷杻長廣厚薄準大明律式定欽恤典

則正宗 ○未結案而用逆律結案於次律而加極律

者並禁除丙申 ○推鞫罪人用刑時準次前直招者

及有徑斃之慮者及或有情節更問者則委官意見

論啓停刑庚子 ○宗班犯逆妻孥應坐者雖用本律

勿為奴婢從祀文廟儒賢 ○係關倫常罪人雖微罪

京司草記外方狀聞待覆啓舉行 ○軍門梟示罪人

非臨敵時則先捧俦音次捧傳旨 ○本曹重囚完決

時三堂合坐舉行 ○禁獄囚懸枷之罰 ○宗親及文

臣時任史官及曾經侍從以上入武臣內乘宣傳官

大典會通

卷之五

八

啓稟以九月十月內擇日舉行而罪人行刑則必待

季冬啓覆後立春前如有追發罪囚則稟旨追覆○
國穀偷竊者計贓論若論至一罪則依例考覆

親問以啓○凡京外官推考各其司直捧公緘照律始啓

奉傳旨推考則勿拘傳旨須原情取招○凡推考緘

答在京官人三度抗拒後收職牒進來推考又不遲

晚則啓請刑推外邑守令三度抗拒則啓請刑推並

移義禁府處置○司憲府推緘捧傳旨後過三十日

未勘者移送本曹照勘增宗親儀賓文增除答背刑

陰武正一品不得推考亦勿捧緘辭增除答背刑

世宗庚戌○禁劓鼻刑足世宗甲子○禁處絞人推殺孝宗壬辰○
除鞫囚左扭英宗己酉○罪人未結案而傳旨正法者身

已死而追施逆律者非軍法梟示者並禁除英宗己卯○
禁朱杖撞問雖有特教執法之臣爭執○除亂杖刑

罪人江華府則勿為定配○江華府流罪以下直斷

開城府已見原典江華陞留守後亦○凡徒流付處

安置定屬人本曹置簿他司及外方定配罪人亦移

文本曹置簿憑考檢舉京外罪人到配後該道觀察使舉其罪名及到配日字狀

聞發配日○捕盜廳承服罪人移送本曹變辭者

勿為還送日次嚴訊取服○外方死囚各邑同推每

月三次舉行距巡營六七未泮式守令推考推闕同

者以違令咎五十二次三次者以稽緩制書杖一百

並公罪○罪囚刑訊前先捧手寸刑推時解枷○檢

後不即會推推後不即完決延拖時月者當該堂郎

次者依外方關○凡死罪啓覆秋分後承政院即為

大典會通 卷之五

七

同補。功臣子與孫雖工商賤隸拷訊時啓請原從。同補配享功臣子孫世宥。○贖賄流配勿付功議。○

孕胎女依年七十例除刑推收贖。○徒流以下之罪

喪前所犯而喪後發覺者喪前發覺而喪後勘斷者

並從勘斷時收贖補。雜犯徒流獨身人之親年未滿

贖。○凡罪人酌處未出獄而臺啓爭執者不得發配

已發則前進金吾符棘罪人及正二品以上都事押

徒配以上京驛子押去次次交付配所。○絕島無

官守處則罪人勿為編配黑山島等極惡地特敘外

特重者外勿為定配鞦子。○濟州三邑人流配者

三邑內互相定配西北道罪人犯禁者外。○京外

啓目於行在所議處命下後隨駕長官踏印以入○
罪當罷職者照大明律則為奪告身有非本意從續

典施行○守令虛錄還上者勿以公罪照入○倉庫
軍器失火守令陵上失火陵官以本律照勘後公罪

收贖懸入不慎火燒倉庫倉吏庫子杖○御史書啓
一百其道內殘驛徒役三年勿揀赦前

貪贓被論者觀察使親按啓聞勿委查官該道查啓
雖或見脫

事理重者義禁府覆啓查還上虛錄田結私用者
查勿許道查直為議律

在囚未及議處而遇赦蒙放則追覈實犯然後禁錮

禁府照律計贓計其石數移送吏曹依其石數勘定
禁錮年限而其限年從徒年限後始計補外官犯贓

直用本律囚家僮還徵○原從功臣非死罪勿項鎖拷訊時啓

稟○凡擬罪時功臣子與孫綱常贓盜外杖流以下

許贖而曾孫以下某朝某朝某功臣付標以啓從原

大典會通 卷之五 七

大典會通

卷之五

六

斷○醜辱王子君大臣者邊遠充軍○常賤毆打士

族事情明白者杖一百徒三年傷者杖一百流二千里補常賤罵有品雜

歧官及無品士族者杖六十事理重者杖六十徒一年搆捏誣訴者比犯人加等論○凡獄訟

子之於父弟之於兄妻妾之於夫奴之於主設有可

問事勿為證質同祖孫○罪人原情口傳取招勿許文

字書納○常賤出身干犯重罪平問而不服則本曹

啓稟刑推外方出身勿論常賤士○京外執法之官

按罪之時如有罪犯一律者雖情有可原必啓稟處

置毋得擅斷減死○王府議讞直請照律勿以參酌

為請擬律不合者承政院察推行在時禁府畱都堂上開坐捧招以白文

論賞○為惡疾藥用誘致兒童于山間割所肝膽肢體因以滅跡者斬妻子流二千里捕告者賞布百匹

○蟲毒造畜人許人告訴而得實者給綿布三十匹

誣告者反坐任切鄰知而不能檢舉以致毒害人物者以制書

有違律論○蠱毒案付人出入他境者治罪逃○杖一百流三千里許接及切隣除收贖杖一百

罪犯綱常情理深重者杖一百流三千里噫本有其秉

性豈有犯此律者而若有所犯教化之不宣官吏之不及蘓瓊者然其犯者此律猶輕而未俗浮誇難信

求諸古事於此等處亦不無抱冤者此其時京外法之官其可泛以考律處之其宜濺諒情偽者也

謂之好○不奔父母喪者以其父謂之孽三寸以其母謂之三寸叔母爭訟奴婢者欲免庶名嫡母及外祖母

等謂之他奴婢者右○叛主奴婢仍本役絕島定配

○出嫁姊妹之奴毆其主同生親者以本服期親照

大典會通

卷之五

五

○儒生發惡於土主會吳聖廟或官門外者杖一百

流三千里

者徒配 文

○邑民向官長放砲者作變處

不待時斬

首謀同律脅從減死定配○鎮卒屯卒怨望將領結黨放砲者雖未殺害首犯梟示

為從刑推定配○吏卒謀殺帥臣者首謀梟示○軍

服騎馬作變官門者不待時斬妻子為奴

郡邑下人符同作變

一齊潰散者首倡以一律論為從○變易姓名詐稱

漂漢人誑惑村民欺罔國家者不待時斬○奴放火

其主家祠板者絞

只用故燒官民房屋律

○撥卒棄置有旨者

以一律論當該守令拿處○毀破山殯剝取假葬衣

衾者噉食死人肉者並以強盜律論

掘取骸骨者依律科斷捕捉者

孥戮勿施
純祖壬午

○弑父母祖父母舅姑夫伯叔父母兄弟

者奴弑主官奴弑官長

已上勿論
已行未行

雇工弑家長者

烝後母者淫姦伯叔母姑母姊妹子婦者奴姦女上

典者放賣嫡母者毆辱父母者燒火父屍者已上並

三省推鞠

倩工之人受值十兩議限五年以上立券入籍者以雇工論不受值立券入籍一

二年使喚者
依凡人論

○網常罪人

官弑父母夫奴弑主
官奴弑官長者

結案正

法後妻子女為奴破家瀦澤降其邑號罷其守令

從時

居邑○縣令以上降縣監縣監勿革而序諸縣之末
限十年復舊○反逆緣坐自有本律破家以下用此

律守今勿罷○
陵寢所在邑不降

結案後徑斃者一體論○聖廟位

版打破偷出者並斬

為從杖一百流二千里○位版
失火私造者杖一百流二千里

大典會通 卷之五

五

大典會通

卷之五

四

議以啓參鞫臺官毋得獨啓○舉兵逆魁兄弟妻妾

並坐誅

非舉兵則只依本律○雖劇逆其妻勿為正法

○逆賊父年八十者

減律絕島定配二三歲兒應在放流者勿為定配為奴

則不在此限○父子俱為惡逆或事件不同各生兇謀者外勿以知情同參取服直施緣坐律○宦官養

子本非血屬犯逆緣坐不合○逆獄干連及緣坐定

配罪人毋得給由逃亡者杖一百還配給由守令先

亡未即還推現出於營門摘發則守○逆獄罪人情

令拿問定罪罪人杖一百絕島定配○誣告

節已著而王府吏隸受賂毒殺者用知情律○誣告

謀逆者不待時斬○陵上放火者殿牌作變者移義

禁府設鞫

為從分輕重絕島或極邊定配○殿牌作變事關逆節外勿為逮鞫本處不待時斬

親問乃啓濟州三邑則使節制使○三日內毋得再行

拷訊拷訊十日後決罰移置報管廳待期○答續除

壓膝刑英宗甲辰○除烙刑英宗癸丑○除刺字刑英宗庚申○盡

除全家徙邊律肅宗戊辰丁酉次第減定若干條○

凡推鞠訊杖廣九分厚四分三省則廣八分厚三分

用營造尺○凡刑訊一日一次推鞠雖嚴重毋過二次英宗

乙丑下教○凡關係惡逆誣上不道干

犯大訓者外勿為設鞠文字聞非直犯惡逆則抉摘

者一切禁○婦女身犯大逆自主陰計緊援逆招者

外勿問英宗乙丑下教○推鞠罪人請刑請拿請查鞠廳完

大典會通 卷之五 四

大典會通 卷之五

三

祿官○文武官及內侍府有陰子孫生員進士犯十
惡奸盜非法殺人枉法受贓外笞杖並收贖公罪徒

私罪杖一百以上決杖○議親有服之女雖出嫁請
罪時依本服論○鄉吏驛吏公私賤犯徒流者依律

天文生例論強盜妻子外公私賤犯永屬徒邊者同
○軍人犯徒充軍者徒年限滿後放○喪前所犯徒

流以下之罪發於喪後者除十惡外收贖自願受
罪者百日後決罰○獄囚情涉疑似者具由取旨○

凡亂言者啓聞推覈杖一百流三千里若干犯於上

情理切害者斬籍沒家產誣告者反坐知而不告者

各減一等○匿名書雖係干國事父子之間亦不得

傳說如有傳說者累日不燒者並依律論○京外死

罪本曹報議政府詳覆○死罪三覆啓外則觀察使

定差使員同其邑守令推問又定差使二員考覆又

造以下端打膝下不至藤肋一取旨乃行庶人及犯

功臣議親拷訊啓請時外則報觀察使濟州三邑則

文武官內侍府士族婦女僧人觀察使啓聞本曹開城

府觀察使流以下直斷各衙門管以下直斷不用刑

皮鞭○節度使所管人軍務外所犯杖以上移文觀

察使推斷○宗親家內奴屬以自已事有所勾問者

直捉推問○犯私罪杖六十者啓聞追奪告身一等

兵曹每品分正從為等越等守職者曾經守職者非

因罪犯未出謝者皆並計持告身逃匿者經赦亦奪

○二品以上畢推取旨三品以下雖功臣議親照律

以啓○凡同僚共犯公罪者有堂上官衙門行首為

長官次官以下為佐貳官堂下官為首領官之類為

品首領下官無堂上官衙門行首為長官次官以下

佐貳官七品以下為首領官有二等官處只分長官

首領官同等官處只以首領官論有無祿官處通計

大典會通 卷之五 三

大典會通 卷之五

二

門並移文本曹囚違者重推外各司各文囚禁○祿官

錄事將校之正妻毋得○凡囚禁人直舉罪名懸錄○祿官

囚徒其泛稱犯罪者本曹勿施如誣以他罪枉囚現

露則當該官員罷職○各衙門拘留人之弊一切防

禁非大段公事則本曹京兆亦勿拘留○諸官家私

拘留知家者亦禁斷○犯馬犯禁者外因私事係者法司無得囚拘犯者論以制書有違律增以

父母代子以兄代弟以妻代夫次知囚禁者並嚴禁

犯者以制書有違律論英宗辛巳○犯者該署官員

○卿宰禁推該府草記待批下捧供

推斷原凡拷訊訊杖長三尺三寸上一尺三寸則廣八分厚二分

以上十五以下非強盜殺人則勿囚犯盜者免刺○
違避公事者囚家僮毋過三人過二日即放未過三

日勿復囚兵曹本曹漢城府司憲府承政院掌隸院
宗簿寺觀察使守令外移本曹囚之增宗簿寺非設

都監係璿源錄事勿為用牌續罷內司獄肅宗○議
囚禁補宗簿寺今屬宗親府續宗親儀賓資至顯祿絃

政身犯惡逆外勿為拿問增宗親儀賓資至顯祿絃
相者社人勿以輕罪繫囚○朝官犯罪被推於本曹

顯祿絃今上輔國○朝官犯罪被推於本曹
司憲府司諫院而應囚者並啓移義禁府堂上譯官

推治○內侍有罪者啓聞囚禁犯死罪先囚後啓違
者先罷後推○正科出身及東西班正職外如納粟

軍功常賤出身之類勿為移義禁府○落點別將與
僉使萬戶有異本曹推治增直赴承傳未及放榜者

亦勿移雖未放榜壯元擿花已付職者
則否補兼引儀依御醫例王府拿囚○原典直囚

衙門外備邊司補今屬政府捕盜廳直囚其餘各司及軍

議政府

大典會通 卷之五 二

大典會通 卷之五

淹延者杖一百永不敘用經赦則永不敘用

日錄啓前有故則次旬五日決訟月日每朔具移本曹

考勤慢處之京外官獄訟趁不處決滯囚經年者查

或稱理順而拒逆者另加摘發治罪

囚禁原杖以上囚禁文武官及內侍府士族婦女僧

人啓聞囚禁如司饗院掖庭署之犯死罪者先囚後

啓聞人犯殺盜淫傷人者同或有搜索寺刹事啓

臣及堂上官士族婦女犯死罪鎖項堂下官庶人婦

女鎖項足杖則鎖項關係宗社者不在此限凡捉

拿押行之時鎖項堂上官士族婦女犯死罪外否士

族婦女凡詞訟許子孫婿姪奴婢中代之僧人直推○

自巳事及獨子僧人訟父母事外勿聽理○年七十

大典會通卷之五

仁政殿編輯

刑典

屬衙門掌隸院典
獄署增掌隸院今革

用律

原

用大明律

續

依原典用大明律而原典續典

有當律者從二典

決獄日限

原

凡決獄大事

死

限三十日

徒中事

日小事

笞杖十日

從文券齊納證
佐俱到日始計

辭證在他處事須參

究者隨地遠近除往還日數亦於限內決訖若牽連

不得已過限者具由啓聞

詞訟同凡誤決如父子
嫡妾良賤分揀等項情理

迫切事許即訴他司其餘決折堂上官及房掌遞代
後更訴遞代後過二年者勿聽○知非誤決者故為

大典會通

卷之五



大典會通

卷之五

二

文記

笞杖徒流贖木

雜令

決訟該用紙

大典會通

卷之五

目錄

二

大典會通 卷之五

禁制

訴冤

停訟

賤妾

賤妻妾子女

公賤

私賤

賤娶婢產

關內各差備

跟隨

諸司差備奴跟隨奴定額

外奴婢

殺獄

以下續

檢驗

姦犯

赦令

贖良

補充隊

聽理

大典會通卷之五

刑典目錄

用律

決獄日限

囚禁

推斷

禁刑日

濫刑

偽造

恤囚

逃亡

才白丁團聚

捕盜

贓盜

元惡鄉吏

銀錢代用

罪犯準計

告尊長

大典會通

卷之五

目錄

一

卷之六 工典

工典目錄 一一五

外奴婢 八九

殺獄 九〇

檢驗 九三

姦犯 九五

赦令 九六

贖良 九七

補充隊 九九

聽理 九九

文記 一〇七

雜令 一〇九

笞杖徒流贖木 一一二

決訟該用紙 一一三

橋路 一一七

營繕 一一八

度量衡 一二一

院宇 一二二

舟車 一二三

栽植 一二六

鐵場 一二九

柴場 一二九

寶物 一三〇

京役吏 一三〇

雜令 一三一

工匠 一三五

京工匠 一三六

外工匠 一四〇

大典會通目次

卷之五 刑典

刑典目錄……………五

用律……………九

決獄日限……………九

囚禁……………〇

推斷……………二

禁刑日……………二六

濫刑……………二七

偽造……………二八

恤囚……………二九

逃亡……………三一

才白丁團聚……………三三

捕盜……………三三

賊盜……………三六

元惡鄉吏……………三九

銀錢代用……………四〇

罪犯準計……………四〇

告尊長……………四〇

禁制……………四一

訴冤……………五七

停訟……………五九

賤妾……………五九

賤妻妾子女……………六〇

公賤……………六二

私賤……………七三

賤娶婢產……………八二

闕內各差備……………八二

跟隨……………八四

諸司差備奴跟隨奴定額……………八五

尚
中
御
纂

乙丑補輯

大典會通

中外印頒

刑典·工典

大典會通

朝鮮王朝文獻通考

연구보고 96-2 大典會通 研究 - 刑典·工典編 -

1996년 11월 26일 印刷

1996년 11월 30일 發行

發行人 朴 松 圭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東 洋 商 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1-190호

값 15,000 원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89-8323-003-7 93360

